

320.1
통 147
=2



光復이후 50年間の

經濟日誌

(景氣循環變動과 主要經濟施策)

1995. 5

統計廳

B0008358 060109



머 리 말

올해는 光復 50週年을 맞는 뜻깊은 해입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50年間의 우리 經濟發展史는 試鍊과 克服, 挫折과 希望, 沈滯와 興隆으로 點綴되었던 격동의 半世紀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解放 後 우리 經濟는 國토분단과 6·25전쟁 등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貧困의 惡循環과 慢性的 인플레이션에 시달렸으며 外國 援助에 의존하는 消費經濟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60年代에 들어와 經濟跳躍의 기초를 닦기 시작한 후, '70年代에 이르러서는 본격적으로 産業化를 추진하면서 世界에서 類例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의 高度成長을 이룩하였습니다.

뒤이은 '80年代는 외형적 성장보다는 經濟效率을 더욱 중시하면서 物價安定과 産業構造의 高度化 및 內實化를 함께 추구했던 기간이었습니다. '90年代에 들어와 初期에는 과거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하였던 輸出과 製造業의 신장세가 다소 鈍化되었지만, 文民政府의 출범과 함께 對外 경제여건의 好轉에 힘입어 경제가 活力을 되찾으면서 새로운 跳躍을 위한 行步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한편 景氣綜合指數가 작성되기 시작한 '70年 이후의 경기순환변동 상황을 보면 우리 經濟는 모두 6차례의 景氣循環을 경험하였으며, 現在의 景氣는 '93年 1月을 起點으로 하는 제 6순환기의 擴張局面에 위치하면서 힘차게 上昇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 1月 WTO(國際貿易機構)체제가 정식으로 출범하면서 이미 國境없는 無限경쟁의 냉엄한 國際經濟 질서가 형성되어 가고 있는 등 우리 經濟는 새로운 挑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적절히 對應하려면 經濟의 內實을 더욱 굳게 다지고 競爭體質化를 圖謀하면서 國家 競爭力을 한층 강화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와같은 轉換期的 요청에 副應하여, 景氣綜合指數 작성, 景氣豫測 및 動向分析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우리 廳은 이번에 「經濟日誌」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 經濟日誌는 경기순환기별로 生産, 投資, 輸出 등 주요 경제지표의 變動推移를 圖表와 함께 수록하고, 아울러 8·15解放 이후 현재까지의 주요 經濟施策들의 推進背景과 內容 등을 날짜별로 要約·整理 함으로써, 景氣調節을 위한 정책 선택의 樣相을 다시금 조명해 보는 한편 經濟 與件과 環境의 變化에 따른 經濟施策의 발자취를 더듬어 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經濟日誌가 경제시책의 日誌式 輯載에 불과하여 과거 半世紀 동안 시행되어온 經濟施策의 足跡을 온전히 담기에는 質的으로나 量的으로 크게 미진하지만, 과거 經濟發展史를 개략적으로 再照明, 吟味하여 現在 우리 앞에 展開되고 있는 새로운 挑戰에 슬기롭게 대처하고 世界化를 향한 우리 경제의 나아갈 座標를 설정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기를 期待 합니다.

앞으로 이 經濟日誌의 내용을 좀더 충실히 補完하고 發展시켜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그동안 본 日誌를 작성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인 統計分析課 담당직원 여러분의 勞苦에 대하여 致賀하는 바입니다.

1995年 5月

統計廳長 李 康 雨

이용자를 위하여

- 이 경제일지는 경제 각 부문별 시책을 간추려 수록하였으므로 여기에서 제외된 주요 시책이 있을 수 있음.
 - 어느 한 시책을 시행하기 위한 조치이거나, 또는 어느 한 시책의 후속적 시책으로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책 등은 원칙적으로 제외함.
 - 경제시책 **년·월·일**은 원칙적으로 시행일을 기준으로 하였으나 시행 시점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시책(법규)의 발표일, 제정일 또는 결정일 등을 기준으로 함.
 - 경제시책의 **비고**란에는 당해 시책과 직접 관련된 경제시책의 시행일을 표시함.
 - 이 경제일지의 **부록**에는 주요 경제시책의 색인(Index)을 날짜별로 그리고 부문별로 정리해 놓았음.
 - “순환기별 경기동향”내의 통계표(table)에서 **국면평균**은 각각 기준순환일(정점)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확장 및 수축국면의 평균은 기준순환일(정점)이 중복계산되어 **순환기평균**과는 상이할 수 있음.
- ※ 경제일지의 내용에 관한 제안이나 문의는 **통계조사국 통계분석과**로 하시기 바랍니다(☎ [02] 222-1922~23).

10월 19일 통계용어

만든 사람들

- 統計調査局長 : 趙彙甲
- 統計分析課長 : 李仁植
- 擔當 事務官 : 洪殷杓
- 擔 當 職 員 : 金信鎬
金大鎬
金蕙媛
鄭恩貞
曹啓鉉
金慧蓮
洪承姬
金善女
金賢雅
崔允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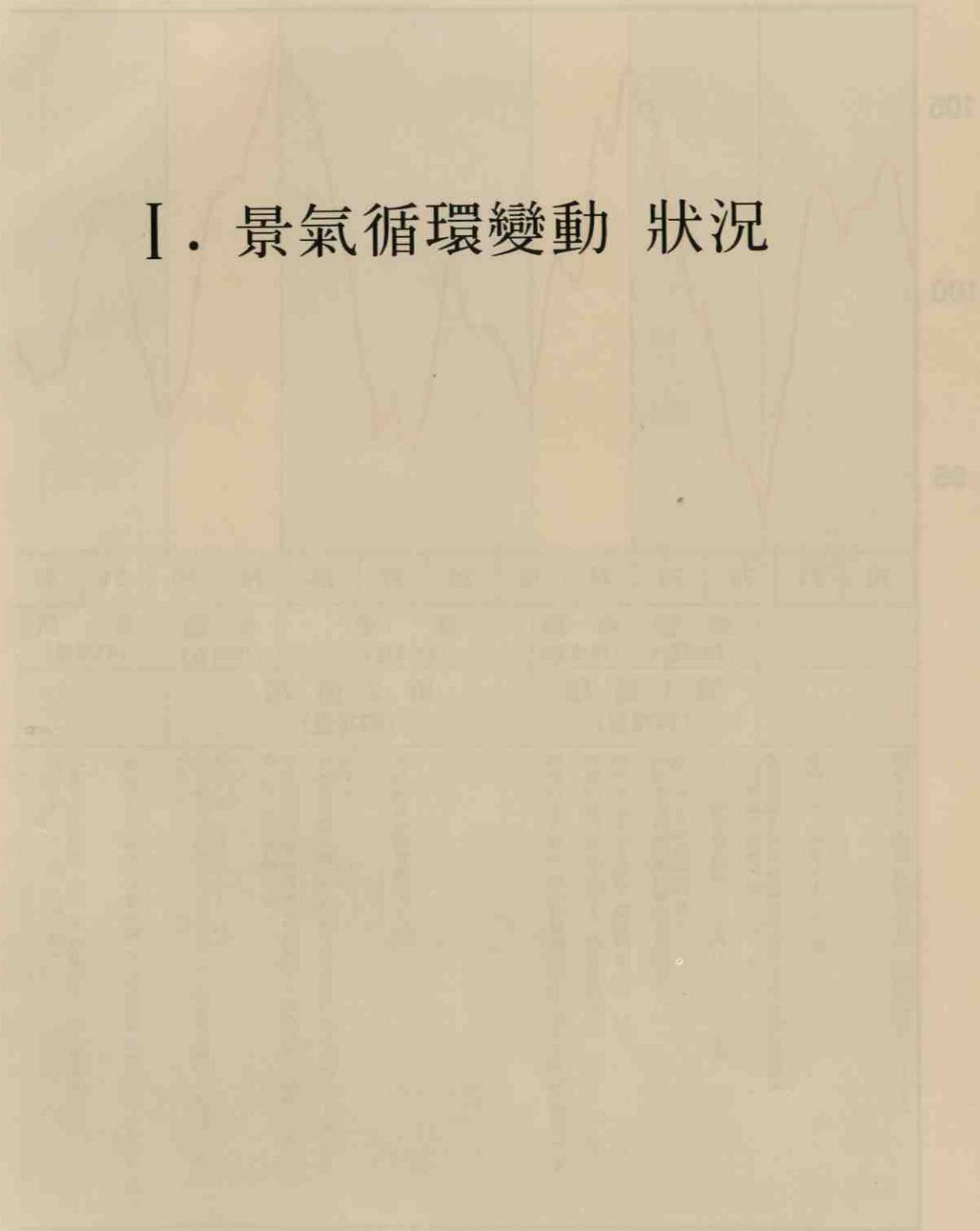
차 례

머리말

이용자를 위하여

I. 景氣循環變動 狀況	1
1. 景氣循環變動과 主要經濟施策	2
2. 景氣循環期 및 基準循環日	5
3. 循環期別 景氣動向	6
4. 項目別 成長 寄與率	29
5. 循環期別 主要 景氣調節施策	31
6. 擴張局面別 景氣指標 推移 比較	37
II. 主要經濟施策	67
1. 1940年代	69
2. 1950年代	83
3. 1960年代	107
4. 1970年代	149
5. 1980年代	209
6. 1990年代	333
附錄1 年度別 經濟施策 索引	545
附錄2 部門別 經濟施策 索引	5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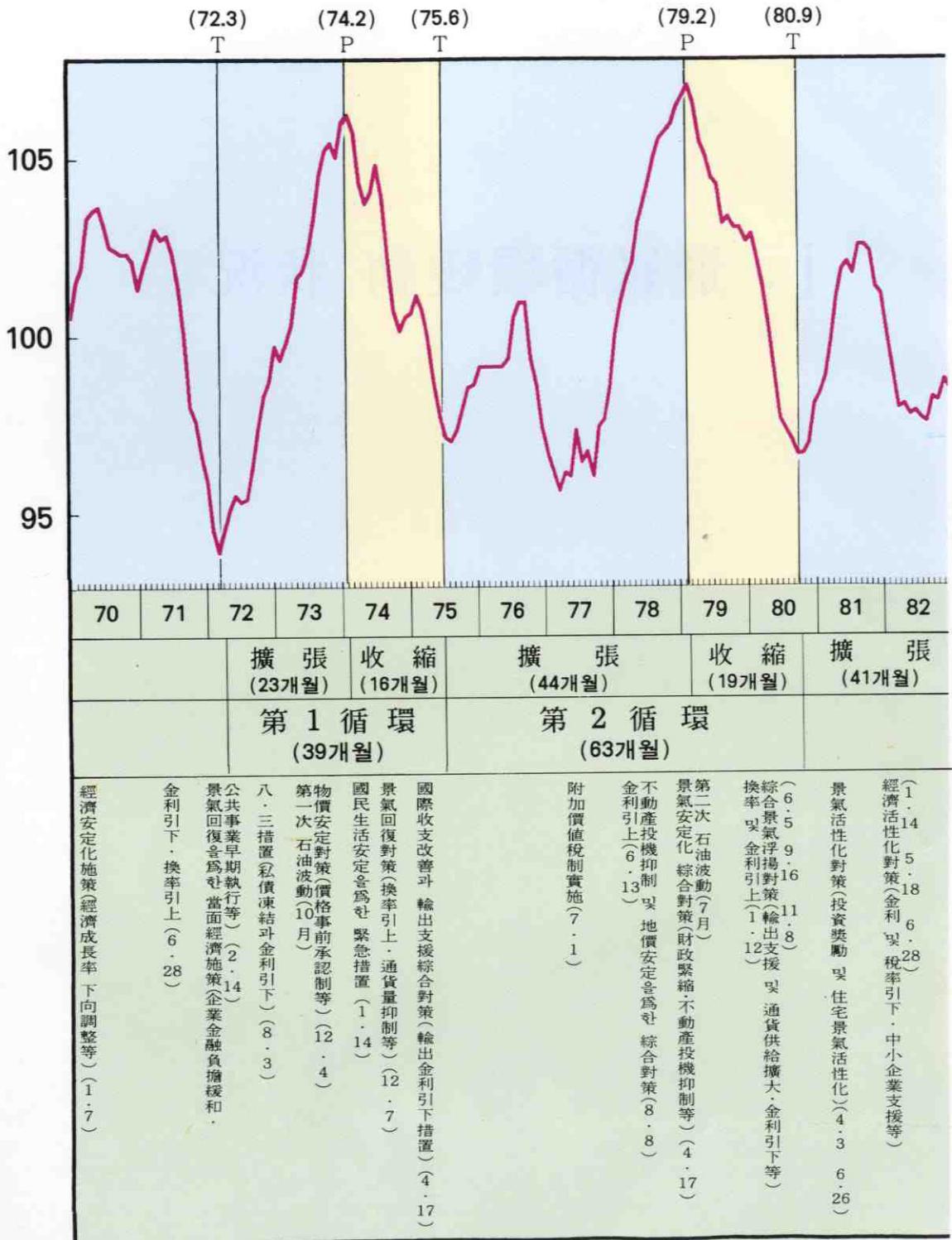
(1950) (1955) (1960) (1965) (1970)



I. 景氣循環變動 狀況

年次	1950	1951	1952	1953	1954	1955	1956	1957	1958	1959	1960	1961	1962	1963	1964	1965	1966	1967	1968	1969	1970
國內生產毛額	100	105	110	115	110	115	120	125	120	125	130	125	130	135	140	135	140	135	140	135	140
零售額	100	105	110	115	110	115	120	125	120	125	130	125	130	135	140	135	140	135	140	135	140
製造業	100	105	110	115	110	115	120	125	120	125	130	125	130	135	140	135	140	135	140	135	140
建築業	100	105	110	115	110	115	120	125	120	125	130	125	130	135	140	135	140	135	140	135	140
服務業	100	105	110	115	110	115	120	125	120	125	130	125	130	135	140	135	140	135	140	135	140

1. 景氣變動과 主要經濟施策



(72.3)
T

(74.2)
P

(75.6)
T

(79.2)
P

(80.9)
T

105
100
95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擴張
(23개월)

收縮
(16개월)

擴張
(44개월)

收縮
(19개월)

擴張
(41개월)

第 1 循環
(39개월)

第 2 循環
(63개월)

經濟安定化施策(經濟成長率下向調整等) (1·7)

金利引下·換率引上(6·28)

公共事業早期執行等(2·14)

景氣回復을爲한 當面經濟施策(企業金融負擔緩和·
物價安定對策(價格事前承認制等)(12·4)
第一次石油波動(10月)

八·三措置(私債凍結과金利引下)(8·3)

國民生活安定을爲한 緊急措置(1·14)

景氣回復對策(換率引上·通貨量抑制等)(12·7)

國際收支改善과 輸出支援綜合對策(輸出金利引下措置)(4·17)

附加價值稅制實施(7·1)

金利引上(6·13)

不動產投機抑制 및 地價安定을爲한 綜合對策(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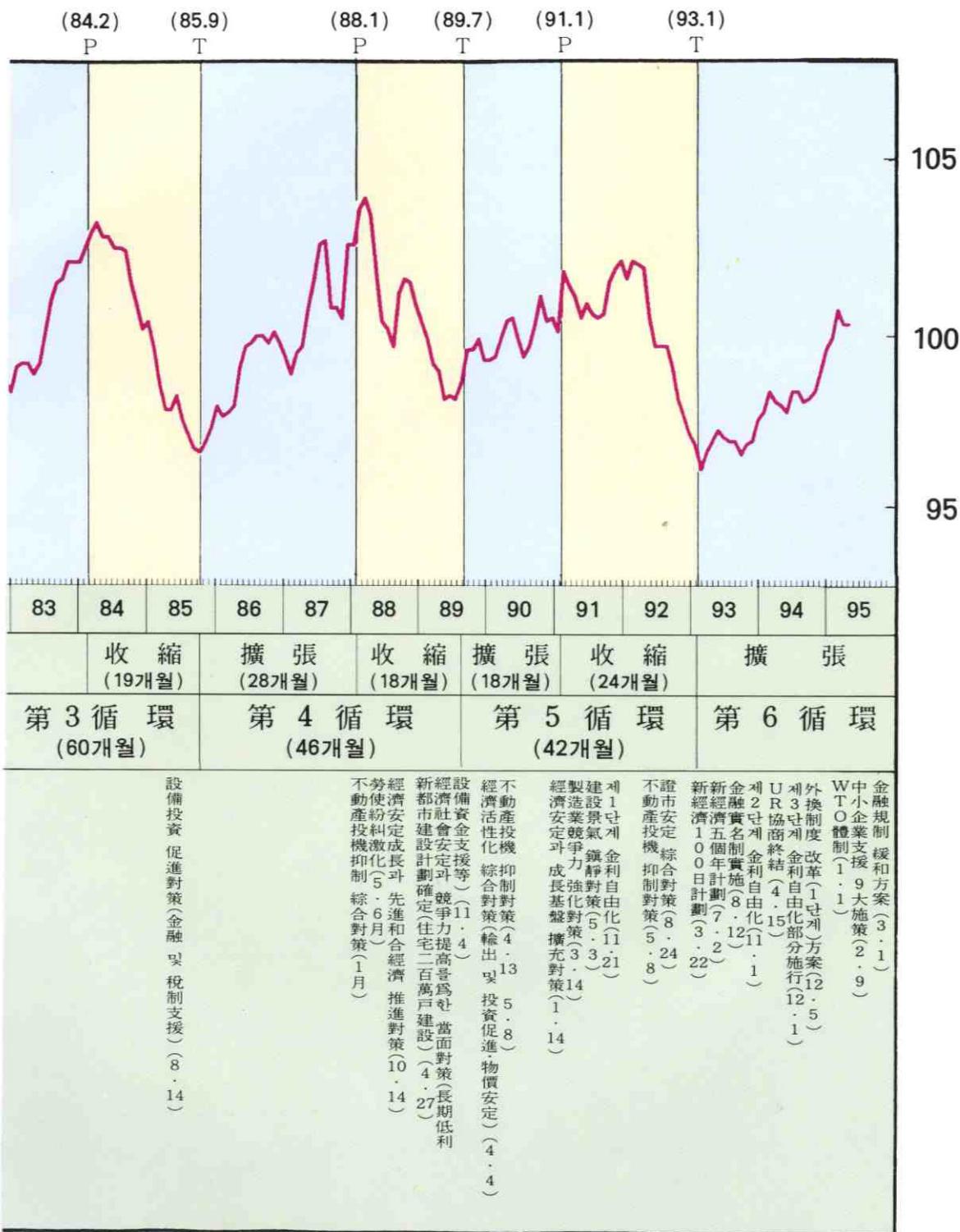
第二次石油波動(7月)

景氣安定化 綜合對策(財政緊縮·不動產投機抑制等)(4·17)

綜合景氣浮揚對策(輸出支援 및 通貨供給擴大·金利引下等)
換率 및 金利引上(1·12)

景氣活性化對策(投資獎勵 및 住宅景氣活性化)(4·3 6·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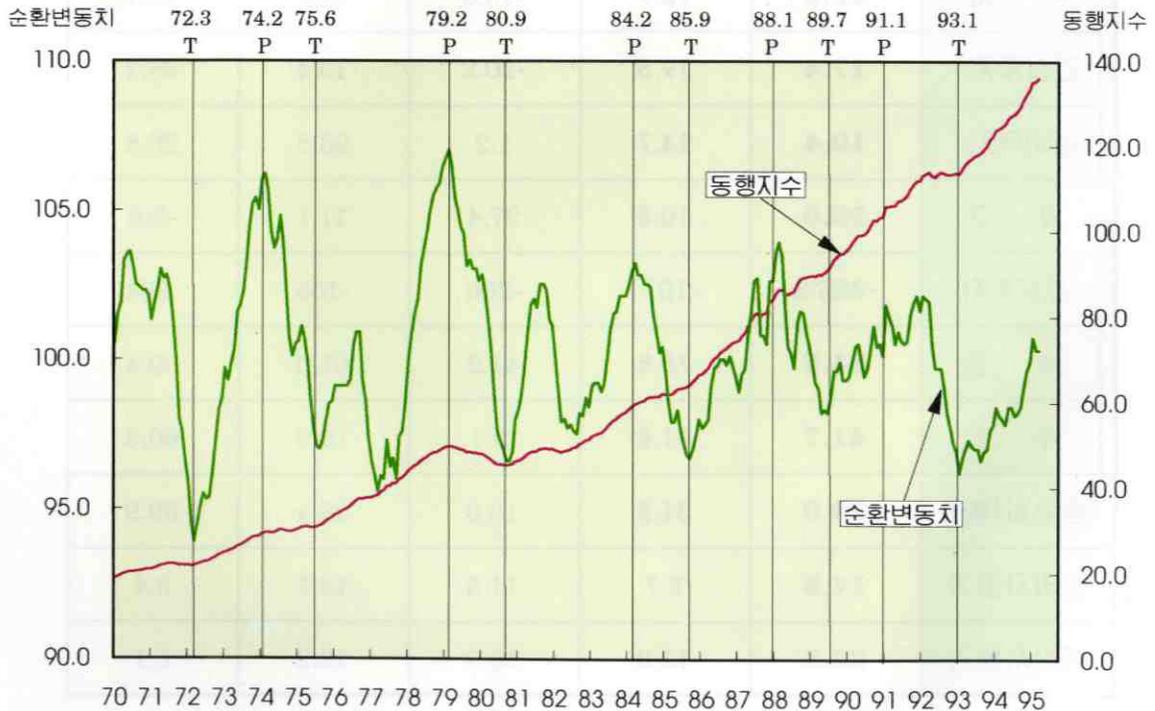
經濟活性化對策(金利 및 稅率引下·中小企業支援等)
(1·14 5·18 6·28)



2. 景氣循環期 및 基準循環日

순환기	기준순환일			국면지속기간(개월수)		
	저점	정점	저점	확장	수축	전순환
제 1 순환기	72.3	74.2	75.6	23	16	39
제 2 순환기	75.6	79.2	80.9	44	19	63
제 3 순환기	80.9	84.2	85.9	41	19	60
제 4 순환기	85.9	88.1	89.7	28	18	46
제 5 순환기	89.7	91.1	93.1	18	24	42
제 6 순환기	93.1	-	-	-	-	-

동행지수 및 순환변동치



3. 循環期別 景氣動向

가. 제 1 순환기 【 '72.3(I) ~ '75.6(II) 】

(1) 주요 경제지표

	순환기 평균	확장국면('72. I ~ '74. I)			
		국면 평균	'72. I ~ '72. II	'72. III ~ '72. IV	'73. I ~ '73. II
동행종합지수	10.4	12.1	2.5	7.7	16.8
GNP(실질)	8.1	9.3	4.1	5.1	13.1
산업생산	23.9	25.8	9.2	20.0	30.3
민간소비	6.4	6.8	5.3	4.5	8.0
내구재	10.6	13.2	5.8	9.4	15.3
비내구재	6.1	6.9	5.8	4.5	8.8
투 자	17.2	16.9	-13.8	20.6	28.7
건설투자	17.4	19.5	-20.2	19.4	28.1
설비투자	19.4	14.7	1.2	23.8	26.8
재 고	23.0	10.8	27.4	11.1	-3.8
경상수지	-4273	-1071	-266	-105	-284
수 출	54.5	75.5	41.2	61.0	90.4
수 입	41.7	41.8	-0.1	10.9	60.5
총통화(M2)	29.0	31.5	19.6	28.4	39.9
소비자물가	14.5	8.7	11.5	12.1	3.4
생산자물가	22.2	13.0	16.3	12.2	5.1

주) 경상수지 : 백만달러(누계)

확장 및 수축국면 평균은 각각 기준순환일(정점)을 포함하여 산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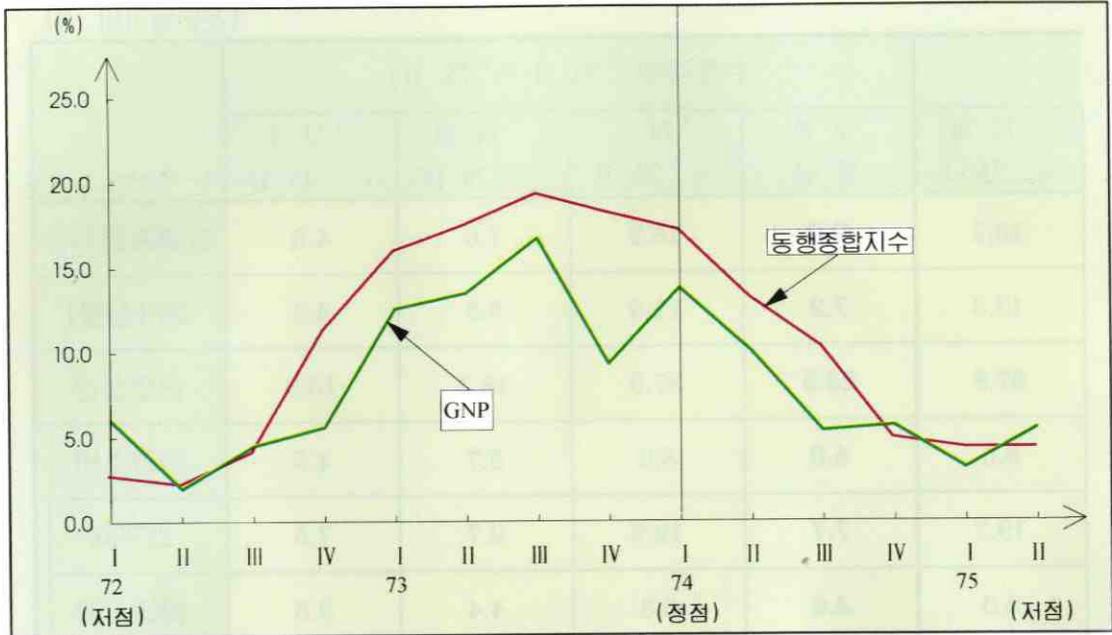
(전년동기비, %)

'73. III ~ '74. I	수축국면('74. I ~ '75. II)				
	국면 평균	'74. I ~ '74. II	'74. III ~ '74. IV	'75. I ~ '75. II	
18.2	9.0	15.2	7.6	4.3	동행종합지수
13.3	7.2	11.9	5.5	4.3	GNP(실질)
37.8	23.5	37.9	18.7	13.9	산업생산
8.5	6.0	8.0	5.7	4.5	민간소비
19.3	7.7	12.9	2.7	7.5	내구재
8.0	4.8	6.3	4.4	3.6	비내구재
27.2	19.4	21.2	12.1	25.0	투 자
40.4	21.5	38.9	4.5	21.0	건설투자
9.8	21.9	0.7	33.5	31.7	설비투자
9.4	41.0	35.2	57.3	30.5	재 고
-416	-3593	-874	-1149	-1570	경상수지
98.2	28.4	79.8	14.8	-9.6	수 출
77.7	49.0	75.3	53.0	18.8	수 입
36.1	25.8	29.8	23.0	24.7	총통화(M2)
8.1	23.8	21.0	27.4	22.9	소비자물가
16.6	37.7	39.2	44.6	29.4	생산자물가

(2) 주요 경기지표의 변동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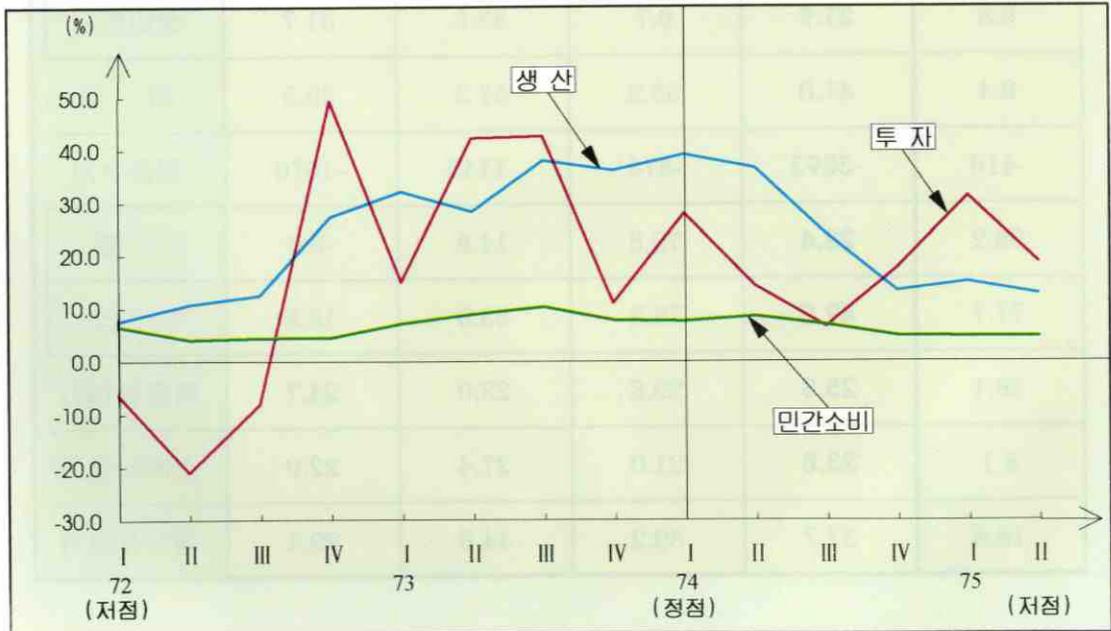
GNP · 동행종합지수

(전년동기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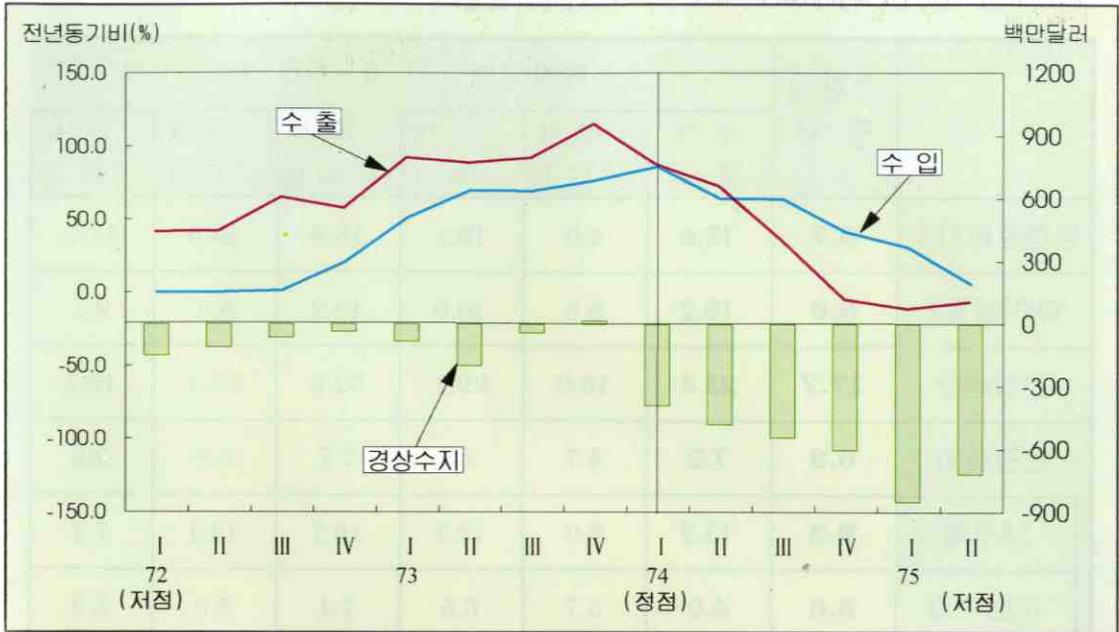


생산 · 소비 · 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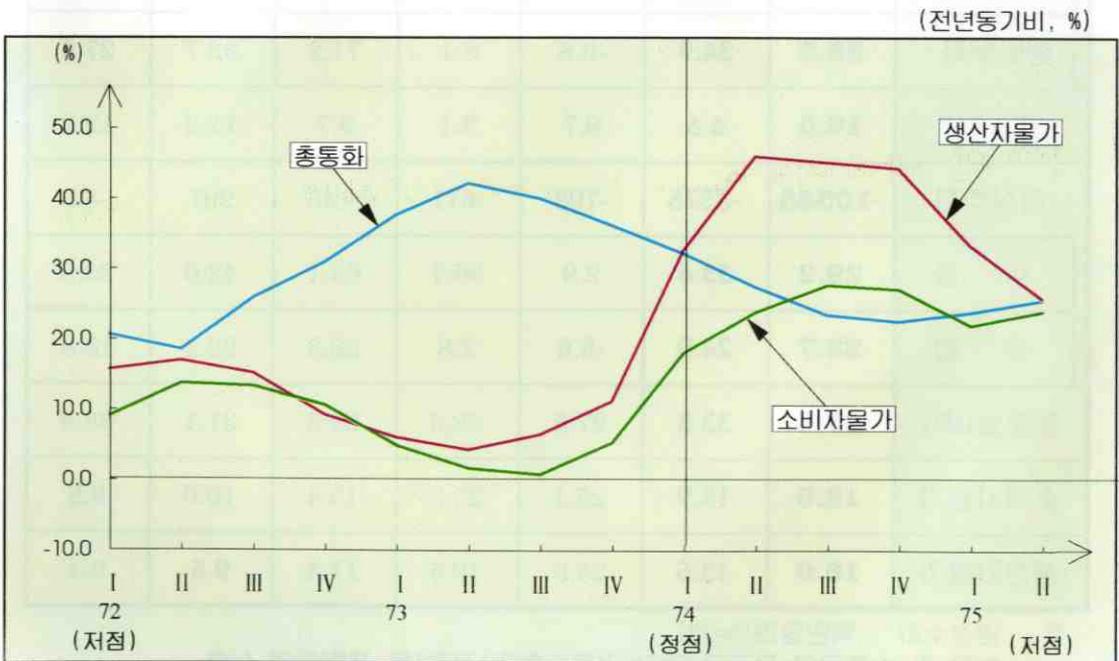
(전년동기비, %)



경상수지 · 수출 · 수입



통화 · 물가



나. 제 2 순환기 【'75.6(Ⅱ) ~ '80.9(Ⅲ)】

(1) 주요경제지표

	순환기 평 균	확장국면('75.Ⅱ ~ '79.Ⅰ)					
		국 면 평 균	'75.Ⅱ ~'75.Ⅲ	'75.Ⅳ ~'76.Ⅰ	'76.Ⅱ ~'76.Ⅲ	'76.Ⅳ ~'77.Ⅰ	'77.Ⅱ ~'77.Ⅲ
동행종합지수	8.7	12.6	4.0	10.3	16.8	13.6	11.5
GNP(실질)	8.0	10.2	5.5	10.0	13.2	8.4	9.2
산업생산	17.7	23.4	16.0	29.1	32.5	22.4	19.3
민간소비	6.3	7.2	4.7	7.3	7.7	5.8	3.9
내구재	9.3	13.9	9.0	12.7	15.7	13.1	7.4
비내구재	5.6	6.0	3.7	6.5	7.1	5.0	3.3
투 자	16.7	23.4	3.2	2.4	26.9	19.7	27.3
건설투자	13.9	18.7	6.1	-0.6	10.1	10.0	32.2
설비투자	25.3	34.9	-3.8	8.1	71.2	32.7	27.3
재 고	16.5	6.6	9.7	3.1	9.7	11.3	12.2
경상수지	-10583	-3375	-798	-611	-146	207	-82
수 출	29.2	33.6	2.9	56.7	65.1	42.0	23.3
수 입	23.7	24.0	-5.6	2.8	39.3	22.4	18.8
총통화(M2)	31.4	33.5	27.5	28.6	29.5	31.1	35.8
소비자물가	18.0	15.9	25.1	25.3	15.4	10.0	9.8
생산자물가	18.0	13.5	25.3	19.5	11.4	9.5	9.1

주) 경상수지 : 백만달러(누계)

확장 및 수축국면 평균은 각각 기준순환일(정점)을 포함하여 산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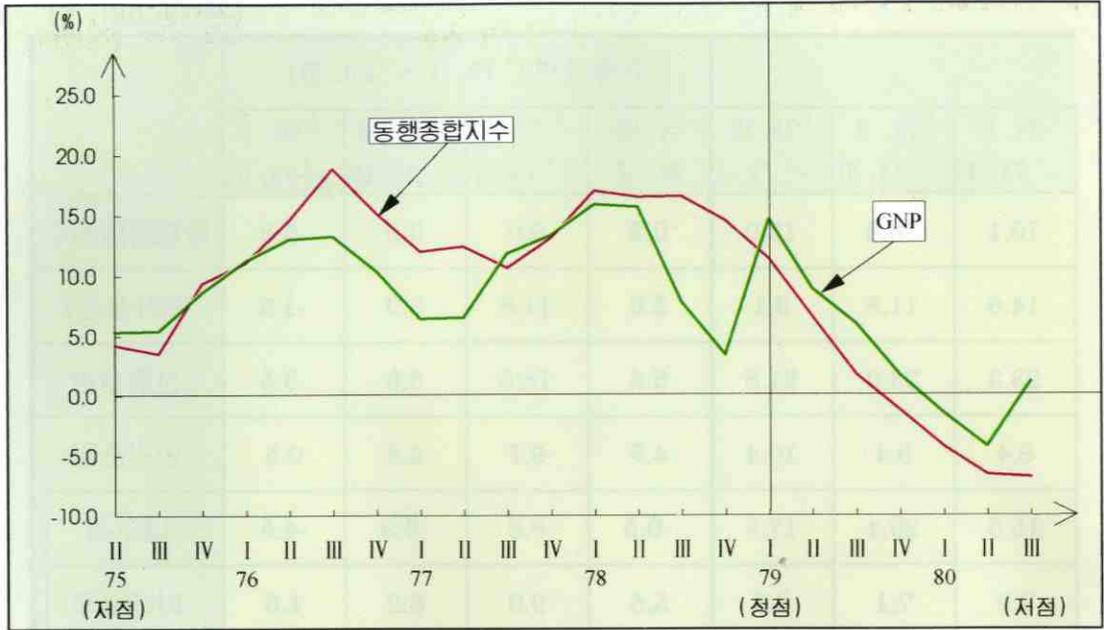
(전년동기비, %)

			수축국면 ('79. I ~ '80. III)				
'77. IV ~'78. I	'78. II ~'78. III	'78. IV ~'79. I	국 면 평 균	'79. I ~'79. II	'79. III ~'79. IV	'80. I ~'80. III	
15.1	16.6	13.0	0.2	9.0	0.3	-5.8	동행종합지수
14.6	11.8	9.1	3.8	11.8	3.9	-1.5	GNP(실질)
23.3	23.0	21.8	5.4	18.5	5.8	-3.5	산업생산
8.4	9.4	10.4	4.9	9.7	6.8	0.5	민간소비
15.5	20.4	17.3	-0.6	8.6	-3.9	-4.5	내구재
7.0	7.1	8.3	5.6	9.0	8.2	1.6	비내구재
47.5	38.2	22.7	2.6	20.2	2.8	-9.3	투 자
46.4	35.8	9.7	4.2	6.2	8.5	0.0	건설투자
51.9	47.7	44.0	3.9	46.3	-3.0	-19.7	설비투자
15.6	-3.5	-5.0	36.6	13.3	49.2	43.9	재 고
60	-344	-1661	-8160	-2278	-1873	-4009	경상수지
31.2	25.4	22.3	17.5	18.6	18.8	16.0	수 출
30.2	33.7	50.3	26.1	49.1	26.5	10.6	수 입
43.6	39.3	33.0	26.5	29.5	24.5	25.8	총통화(M2)
11.8	13.9	16.2	22.3	18.0	18.8	27.6	소비자물가
10.1	11.4	12.0	27.4	13.6	23.6	39.1	생산자물가

(2) 주요 경기지표의 변동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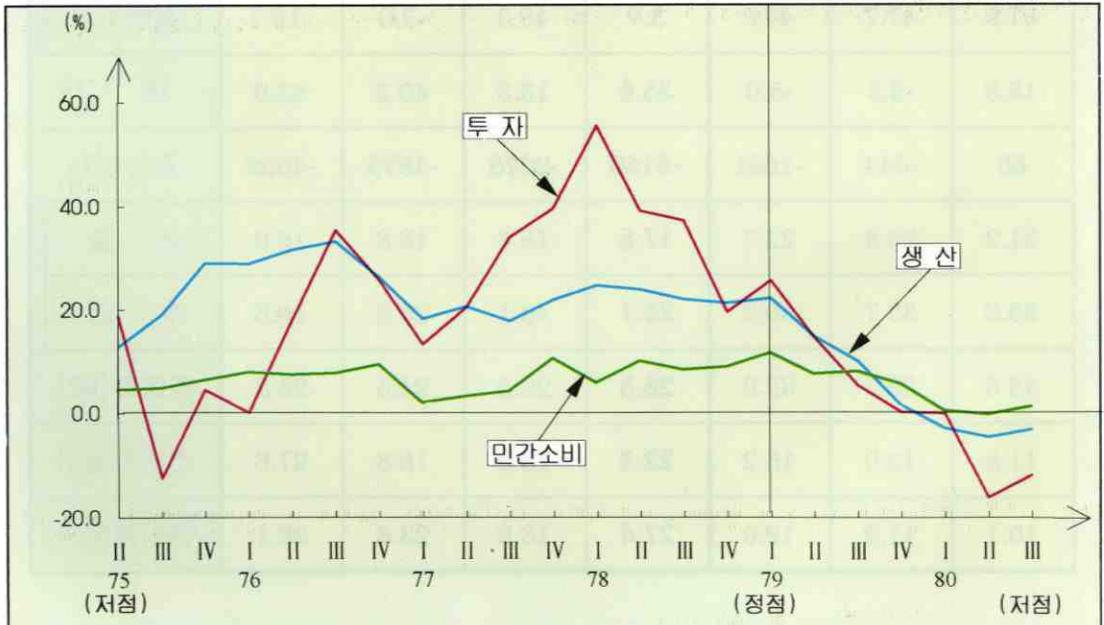
GNP · 동행종합지수

(전년동기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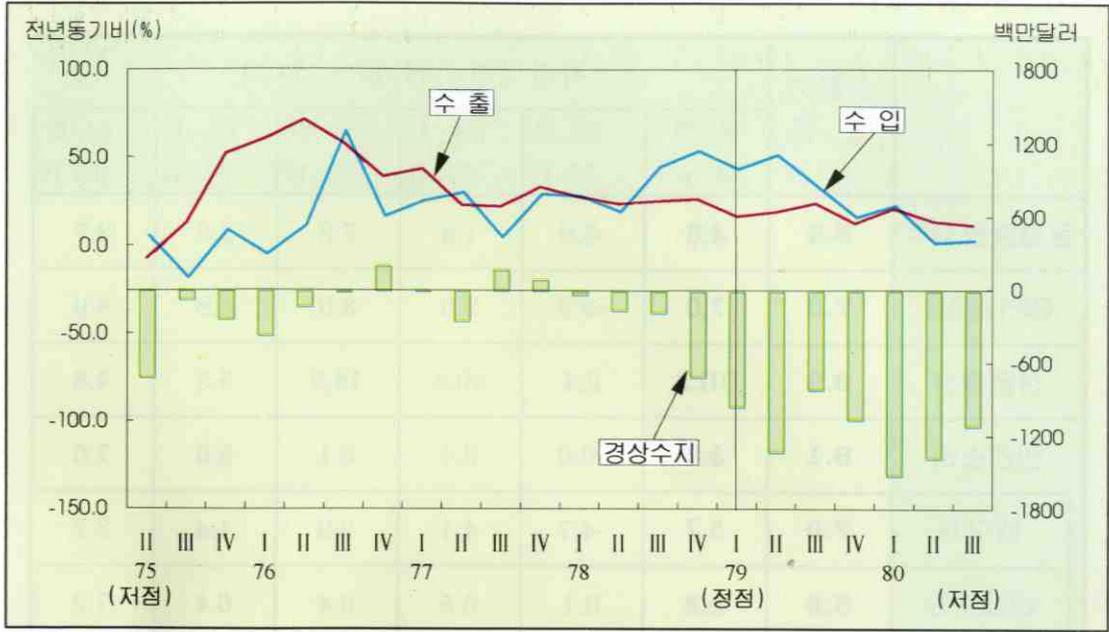


생산 · 소비 · 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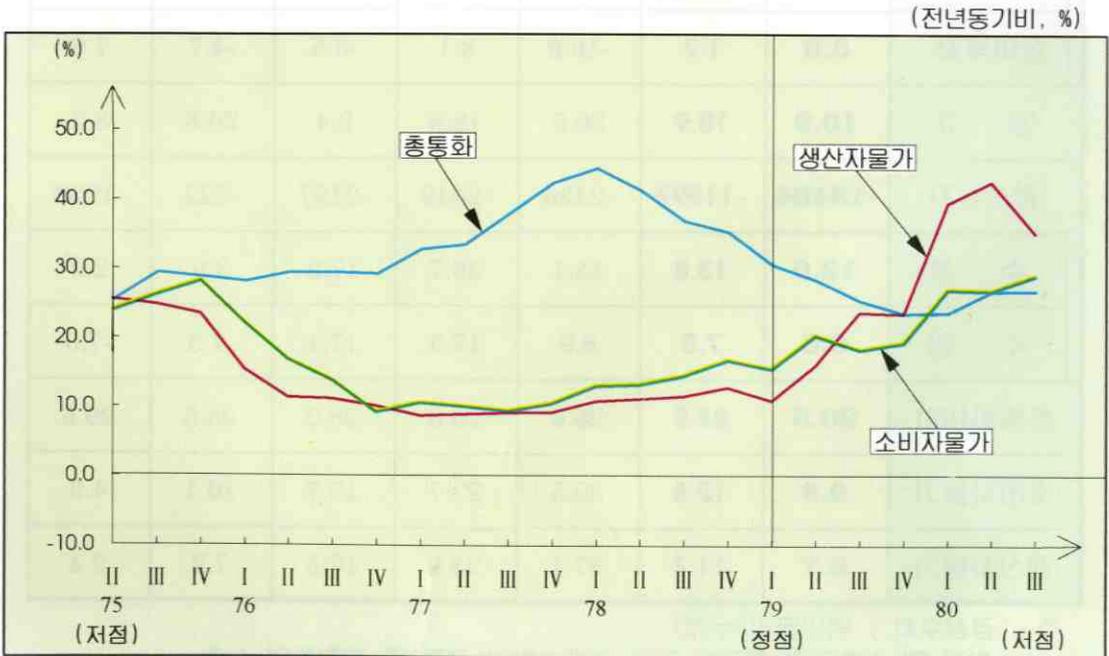
(전년동기비, %)



경상수지 · 수출 · 수입



통화 · 물가



다. 제 3 순환기 【'80.9(Ⅲ) ~ '85.9(Ⅲ)】

(1) 주요 경제지표

	순환기 평균	확장국면('80.Ⅲ ~ '84.Ⅰ)					
		국면 평균	'80.Ⅲ ~'80.Ⅳ	'81.Ⅰ ~'81.Ⅱ	'81.Ⅲ ~'81.Ⅳ	'82.Ⅰ ~'82.Ⅱ	'82.Ⅲ ~'82.Ⅳ
동행종합지수	5.5	4.8	-5.9	1.6	7.8	2.6	2.7
GNP(실질)	7.0	7.0	-3.9	2.0	8.0	6.8	8.0
산업생산	9.9	10.2	0.4	10.4	14.9	5.3	4.8
민간소비	6.1	5.8	-0.9	3.4	6.1	5.6	7.0
내구재	7.0	5.7	-4.7	4.1	2.9	1.4	3.7
비내구재	5.9	5.8	0.1	3.5	6.4	6.4	7.2
투 자	6.0	5.8	-11.4	-5.0	-2.7	5.2	16.0
건설투자	7.8	9.0	-7.5	-9.8	-2.2	13.8	21.2
설비투자	3.8	1.7	-16.6	3.1	-3.5	-4.7	7.9
재 고	10.9	10.9	30.5	12.8	9.4	20.8	8.3
경상수지	-13464	-11997	-2426	-2449	-2197	-722	-1928
수 출	12.0	13.8	15.1	26.7	17.2	3.9	2.0
수 입	6.6	7.0	6.9	17.5	17.1	-7.3	-7.0
총통화(M2)	20.5	24.5	26.4	26.6	28.2	26.5	29.6
소비자물가	9.8	12.8	30.5	23.7	19.7	10.1	4.3
생산자물가	8.7	11.7	37.1	23.9	17.5	7.2	2.4

주) 경상수지 : 백만달러(누계)

확장 및 수축국면 평균은 각각 기준순환일(정점)을 포함하여 산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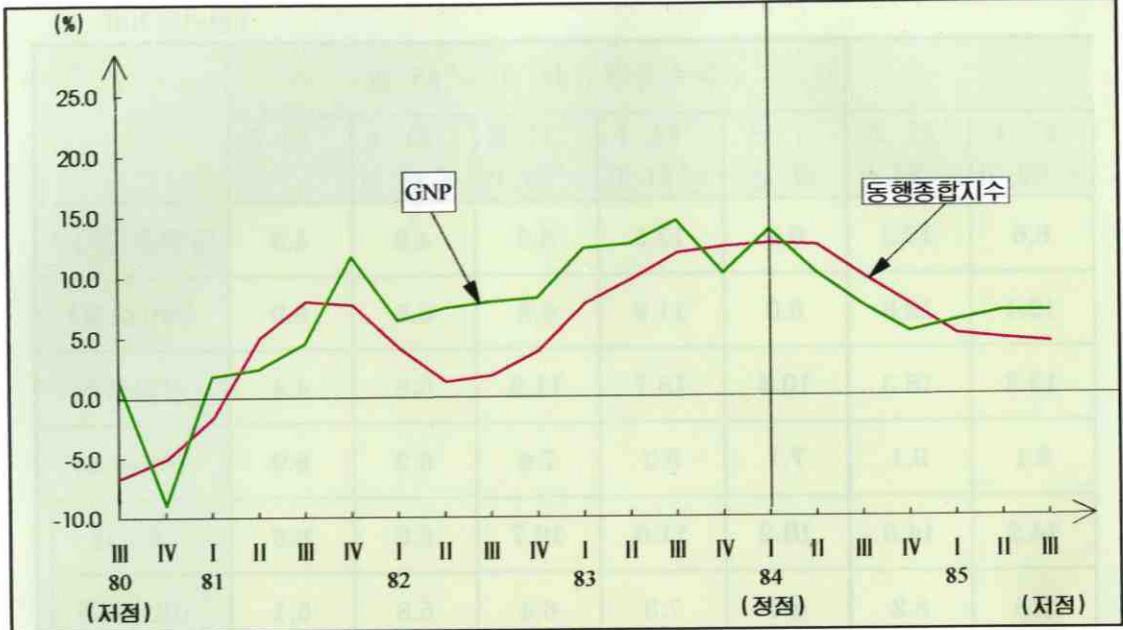
(전년동기비, %)

		수축국면('84. I ~ '85. III)					
'83. I ~'83. II	'83. III ~'84. I	국면 평균	'84. I ~'84. II	'84. III ~'84. IV	'85. I ~'85. II	'85. III	
8.6	12.2	8.0	12.5	8.6	4.8	4.3	동행종합지수
12.4	12.8	8.0	11.9	6.3	6.5	6.9	GNP(실질)
13.3	18.3	10.4	18.7	11.9	3.8	4.4	산업생산
9.1	9.1	7.1	8.3	7.6	6.2	6.0	민간소비
14.2	14.3	10.2	11.6	12.7	6.6	9.8	내구재
7.8	8.2	6.3	7.3	6.4	5.8	5.1	비내구재
17.8	15.9	7.6	13.8	7.1	3.5	4.5	투 자
24.7	18.0	6.0	8.4	5.2	5.5	3.6	건설투자
8.6	11.8	10.6	22.5	11.3	0.5	6.0	설비투자
-1.3	0.8	9.4	5.0	13.1	11.2	7.2	재 고
-1650	-626	-2137	-1145	-228	-1033	268	경상수지
4.8	22.5	11.1	26.7	14.2	-4.5	4.7	수 출
2.9	15.0	7.7	27.3	9.6	-6.9	-6.0	수 입
23.5	15.4	10.9	12.6	9.1	10.1	12.9	총통화(M2)
4.4	2.3	2.3	2.1	2.6	2.0	2.7	소비자물가
0.9	-0.6	0.9	-0.2	1.7	1.3	0.5	생산자물가

(2) 주요 경기지표의 변동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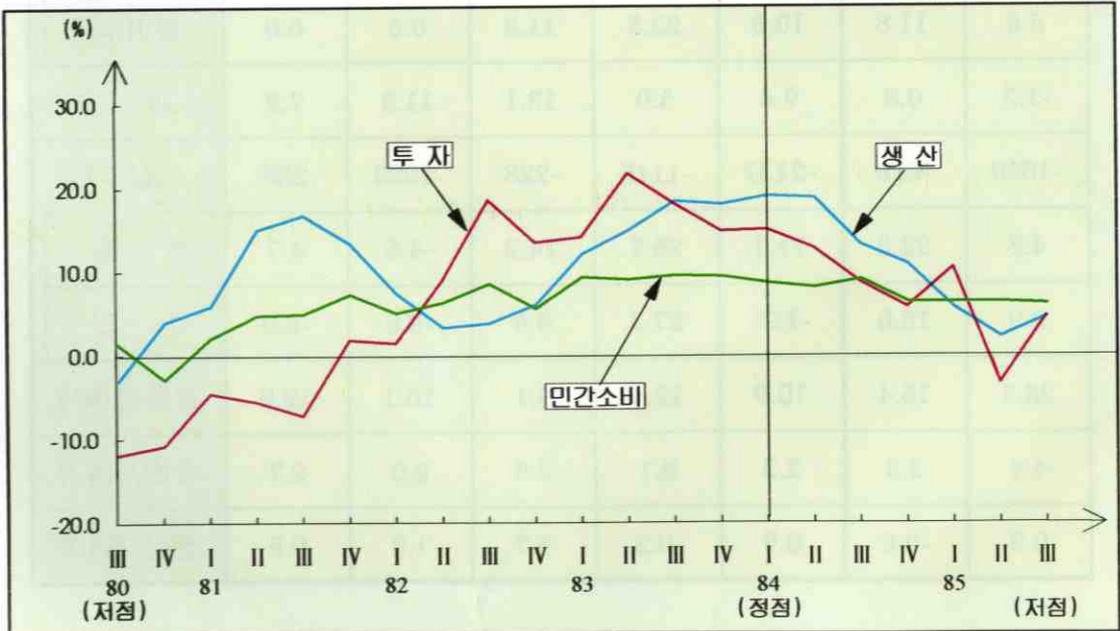
GNP · 동행종합지수

(전년동기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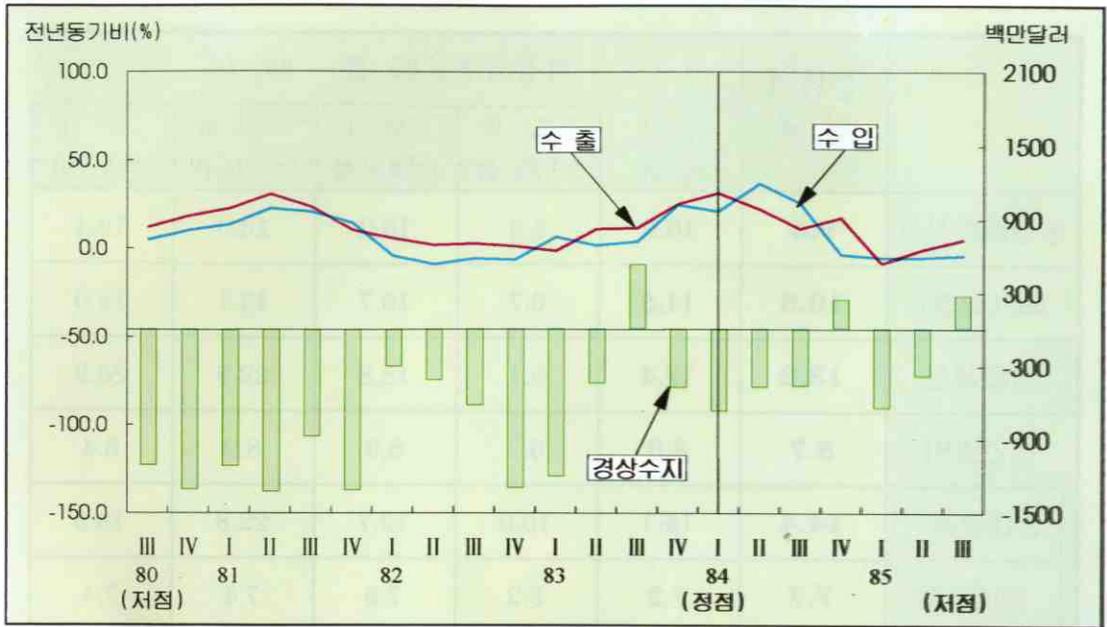


생산 · 소비 · 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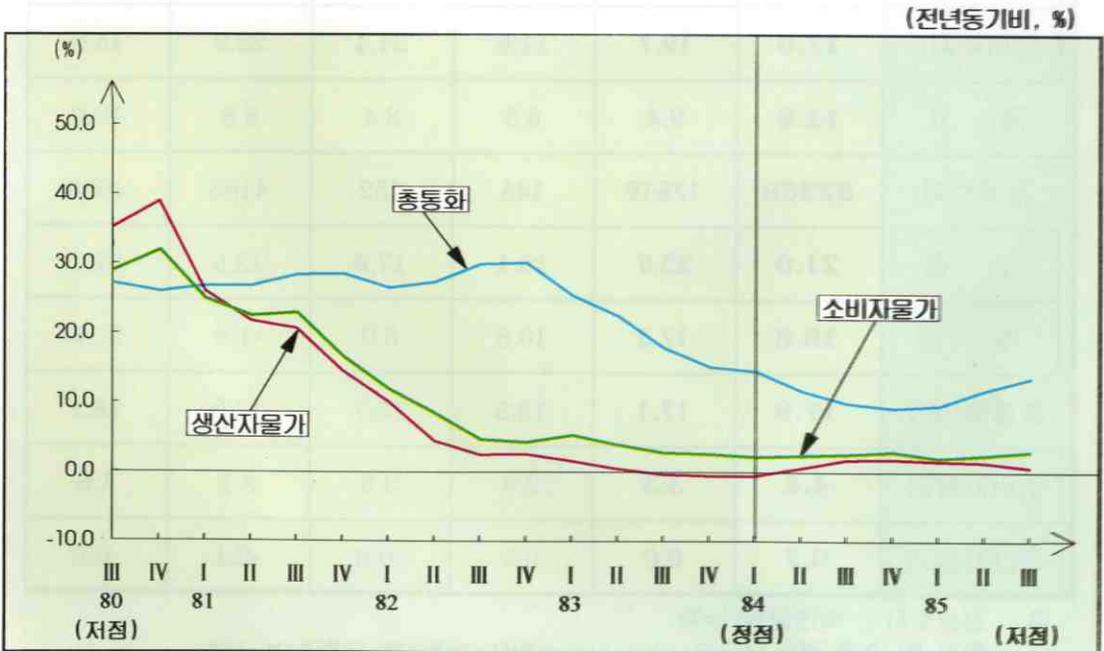
(전년동기비, %)



경상수지 · 수출 · 수입



통화 · 물가



라. 제 4 순환기 【'85.9(Ⅲ) ~ '89.7(Ⅲ)】

(1) 주요 경제지표

	순환기 평균	확장국면('85.Ⅲ ~ '88.Ⅰ)				
		국면 평균	'85.Ⅲ ~ '85.Ⅳ	'86.Ⅰ ~ '86.Ⅱ	'86.Ⅲ ~ '86.Ⅳ	'87.Ⅰ ~ '87.Ⅱ
동행종합지수	9.5	10.9	5.5	10.2	13.0	12.4
GNP(실질)	10.6	11.6	6.7	10.7	13.1	15.0
산업생산	13.8	17.4	5.1	18.8	22.9	20.9
민간소비	8.7	8.0	6.7	8.0	8.2	8.4
내구재	14.4	16.1	10.0	13.7	22.8	19.5
비내구재	7.7	7.2	6.2	7.9	7.4	7.4
투 자	12.9	12.7	6.3	12.6	8.8	13.5
건설투자	10.4	8.1	3.5	4.5	0.6	11.7
설비투자	17.0	19.7	11.6	24.4	22.9	15.9
재 고	11.9	9.4	6.5	8.4	8.8	12.9
경상수지	32269	17519	145	452	4165	4606
수 출	21.0	23.9	10.1	17.6	13.5	37.1
수 입	18.6	17.3	10.8	6.9	-1.8	21.6
총통화(M2)	17.6	17.1	13.5	15.7	17.9	18.1
소비자물가	4.4	3.3	2.8	3.5	2.1	1.6
생산자물가	0.7	0.0	0.5	-0.9	-2.1	-0.5

주) 경상수지 : 백만달러(누계)

확장 및 수축국면 평균은 각각 기준순환일(정점)을 포함하여 산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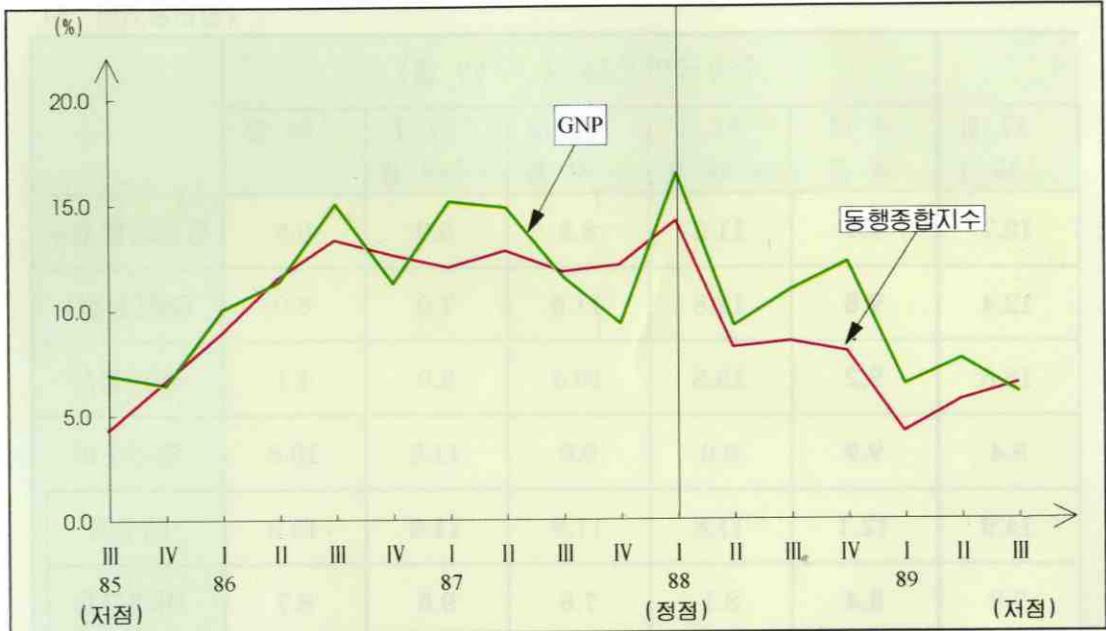
(전년동기비, %)

'87.Ⅲ ~'88.Ⅰ	수축국면('88.Ⅰ ~ '89.Ⅲ)					
	국면 평균	'88.Ⅰ ~'88.Ⅱ	'88.Ⅲ ~'88.Ⅳ	'89.Ⅰ ~'89.Ⅱ	'89.Ⅲ	
12.7	7.9	11.2	8.3	5.0	6.5	동행종합지수
12.4	9.8	12.8	11.6	7.0	6.0	GNP(실질)
18.8	9.2	13.8	13.4	3.0	4.1	산업생산
8.4	9.9	9.0	9.0	11.2	10.8	민간소비
14.9	12.1	11.8	11.9	11.9	13.8	내구재
7.0	8.4	8.1	7.6	9.5	8.7	비내구재
19.2	13.9	15.4	12.7	12.6	16.3	투 자
16.3	14.2	17.2	11.0	12.9	17.3	건설투자
22.6	13.7	12.3	15.2	13.1	14.9	설비투자
9.9	15.7	8.4	19.7	17.4	19.4	재 고
8151	17653	5829	8331	2564	928	경상수지
35.5	18.5	28.4	29.2	7.1	0.4	수 출
38.6	23.7	30.8	23.7	20.3	16.3	수 입
19.5	18.7	18.9	18.7	19.0	17.7	총동화(M2)
5.5	6.5	7.4	7.0	5.6	5.7	소비자물가
2.0	2.2	2.8	2.7	1.6	1.0	생산자물가

(2) 주요 경기지표의 변동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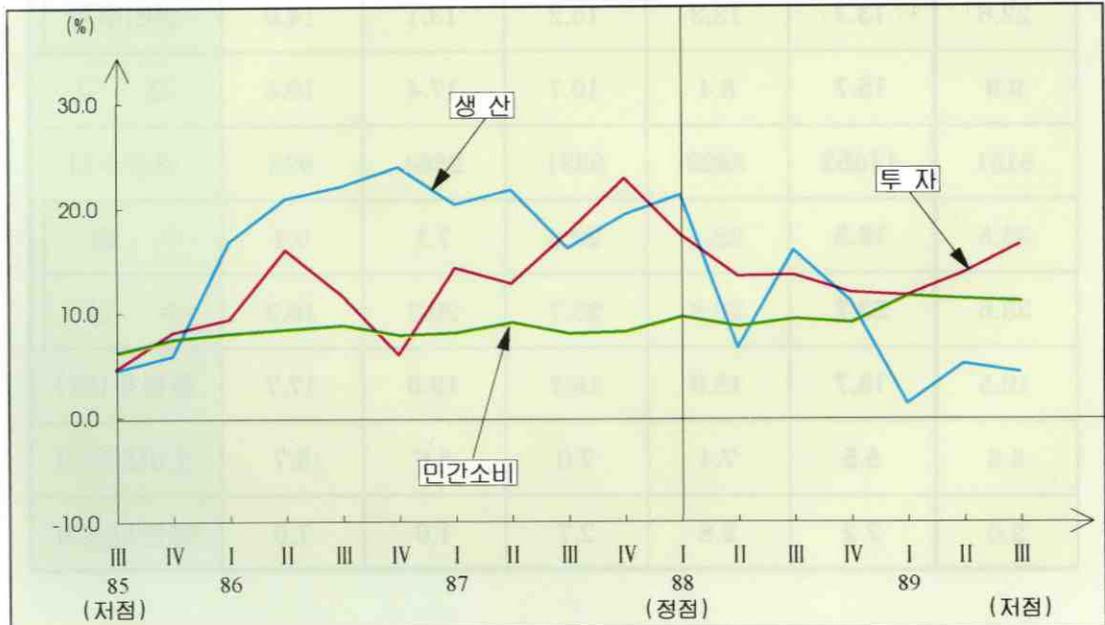
GNP · 동행종합지수

(전년동기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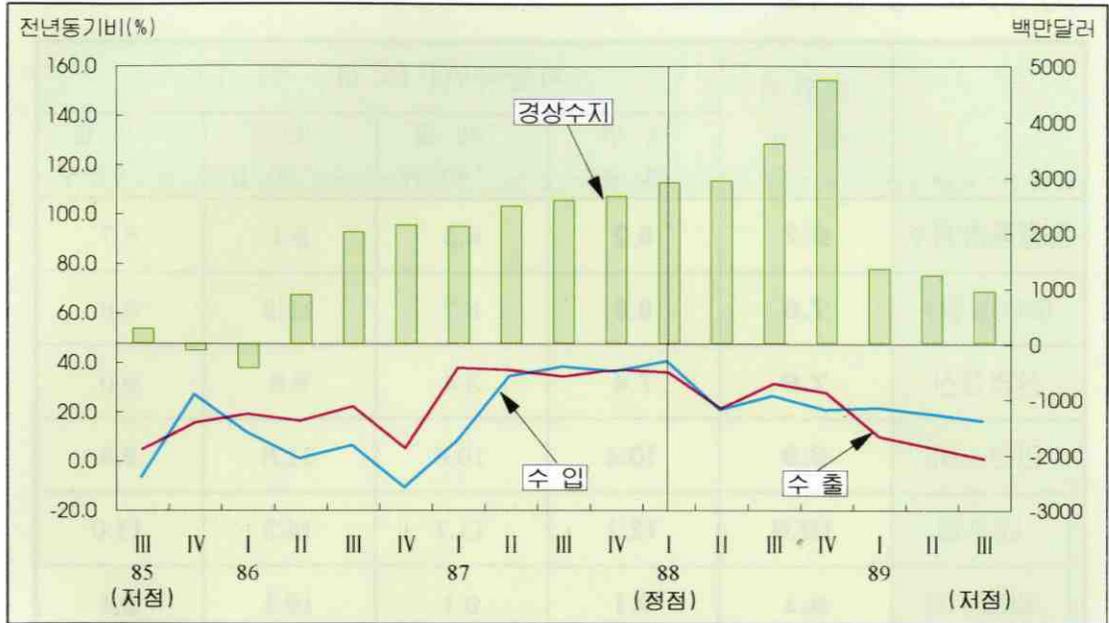


생산 · 소비 · 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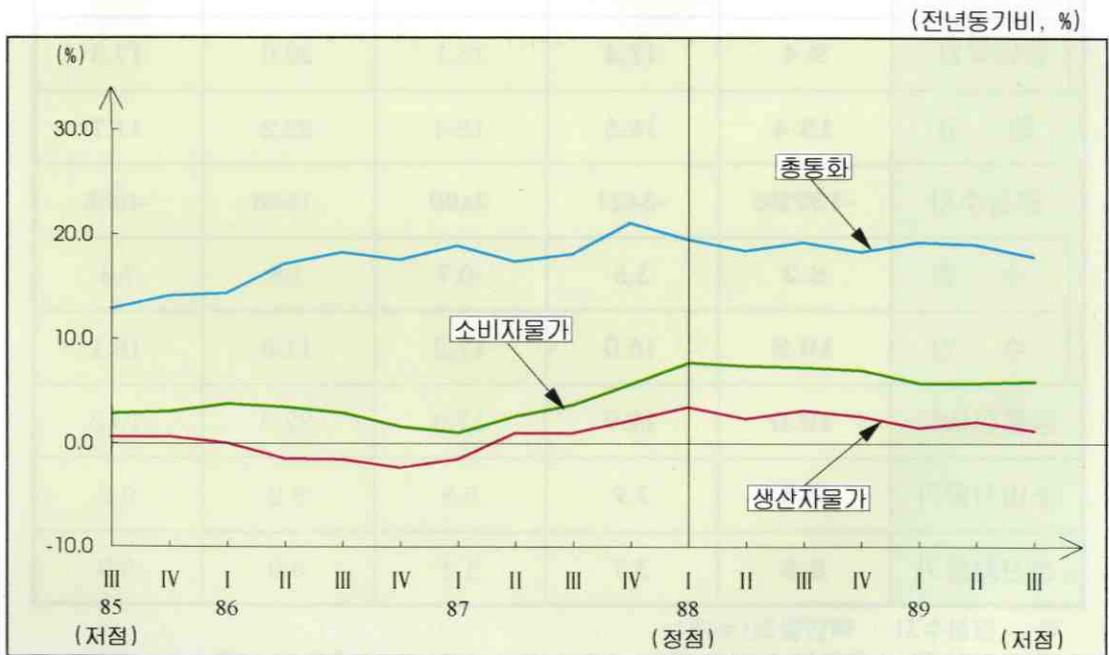
(전년동기비, %)



경상수지 · 수출 · 수입



통화 · 물가



마. 제 5 순환기 【'89.7(Ⅲ) ~ '93.1(Ⅰ)】

(1) 주요 경제지표

	순환기 평 균	확장국면('89.Ⅲ ~ '91.Ⅰ)			
		국 면 평 균	'89.Ⅲ ~ '89.Ⅳ	'90.Ⅰ ~ '90.Ⅱ	'90.Ⅲ ~ '91.Ⅰ
동행종합지수	6.7	8.2	6.5	9.1	8.7
GNP(실질)	7.6	8.8	6.7	11.3	8.6
산업생산	7.0	7.4	3.4	8.8	9.0
민간소비	8.9	10.4	10.6	11.8	9.3
내구재	10.0	12.1	11.7	14.3	11.0
비내구재	8.1	9.1	9.1	10.1	8.4
투 자	12.6	23.0	18.5	29.5	21.7
건설투자	15.2	27.5	21.1	37.9	24.9
설비투자	9.4	17.4	15.1	20.0	17.3
재 고	15.4	16.6	18.4	22.2	11.7
경상수지	-13726	-3421	2490	-1526	-4385
수 출	6.2	3.5	-0.7	1.8	7.4
수 입	10.3	16.0	17.2	11.6	18.1
총통화(M2)	19.0	19.9	17.9	22.9	19.2
소비자물가	7.5	7.9	5.8	8.2	9.2
생산자물가	3.3	3.7	1.4	3.0	5.8

주) 경상수지 : 백만달러(누계)

확장 및 수축국면 평균은 각각 기준순환일(정점)을 포함하여 산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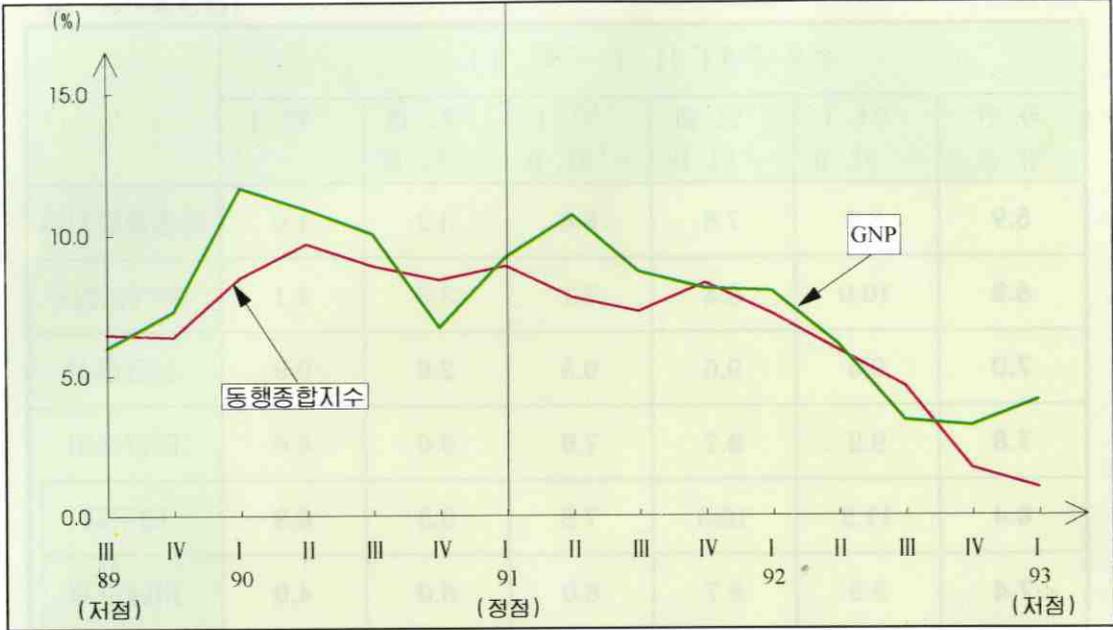
(전년동기비, %)

수축국면('91. I ~ '93. I)						
국면 평균	'91. I ~ '91. II	'91. III ~ '91. IV	'92. I ~ '92. II	'92. III ~ '92. IV	'93. I	
5.9	8.4	7.8	6.6	3.2	1.0	동행종합지수
6.8	10.0	8.4	7.1	3.3	4.1	GNP(실질)
7.0	9.5	9.6	9.5	2.6	0.9	산업생산
7.8	9.2	9.7	7.9	5.6	5.6	민간소비
8.4	11.2	12.3	7.8	3.3	6.8	내구재
7.4	8.2	8.7	8.0	6.0	4.9	비내구재
5.1	16.9	9.2	4.2	-4.7	-4.9	투 자
6.2	17.4	9.9	3.5	-3.5	1.1	건설투자
3.8	16.4	8.2	5.3	-6.7	-12.4	설비투자
13.7	10.0	17.8	17.7	12.6	7.3	재 고
-14037	-5511	-3217	-4464	-65	-781	경상수지
8.7	13.6	7.5	8.7	5.8	7.2	수 출
7.4	23.5	11.3	4.4	-3.6	-4.5	수 입
18.3	18.5	18.7	18.4	18.5	16.7	총통화(M2)
7.4	9.3	9.4	7.1	5.4	4.6	소비자물가
3.3	6.0	3.5	2.0	2.4	1.6	생산자물가

(2) 주요 경기지표의 변동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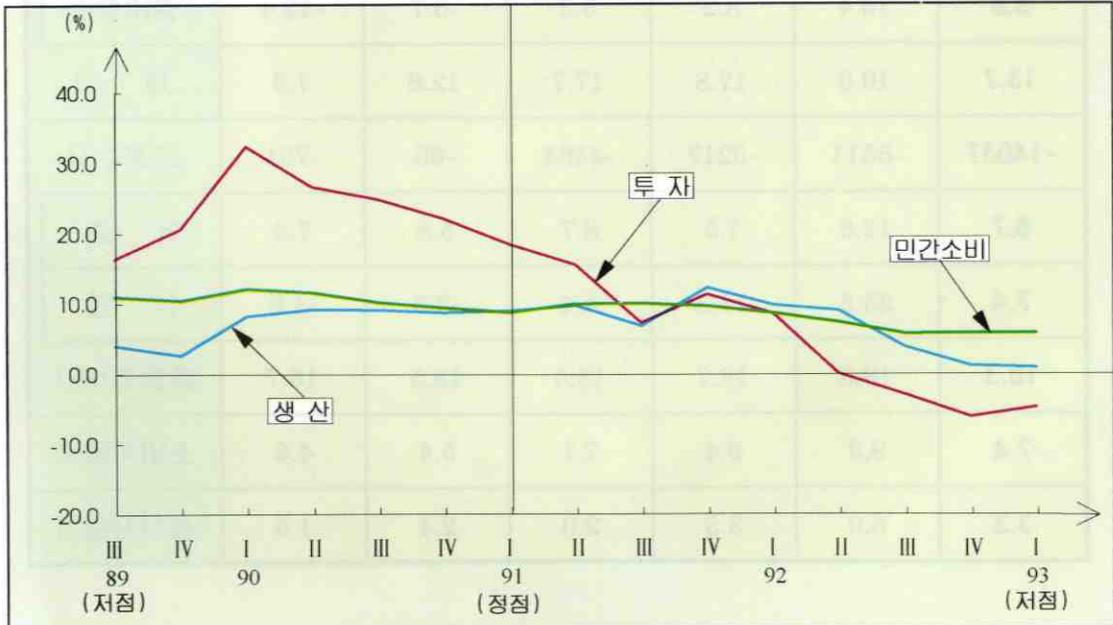
GNP · 동행종합지수

(전년동기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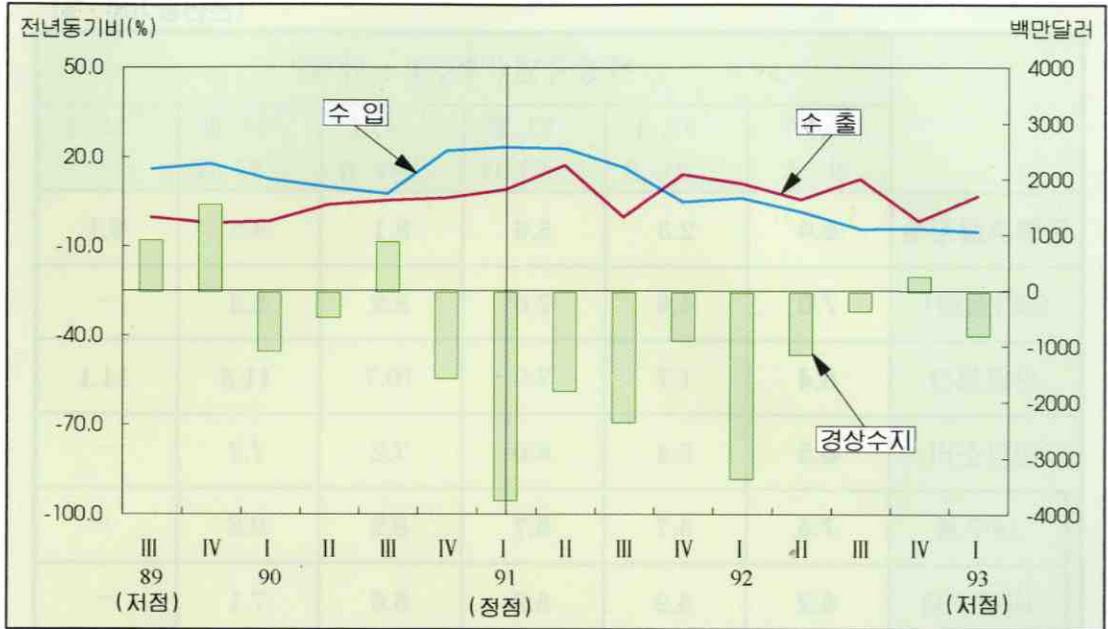


생산 · 소비 · 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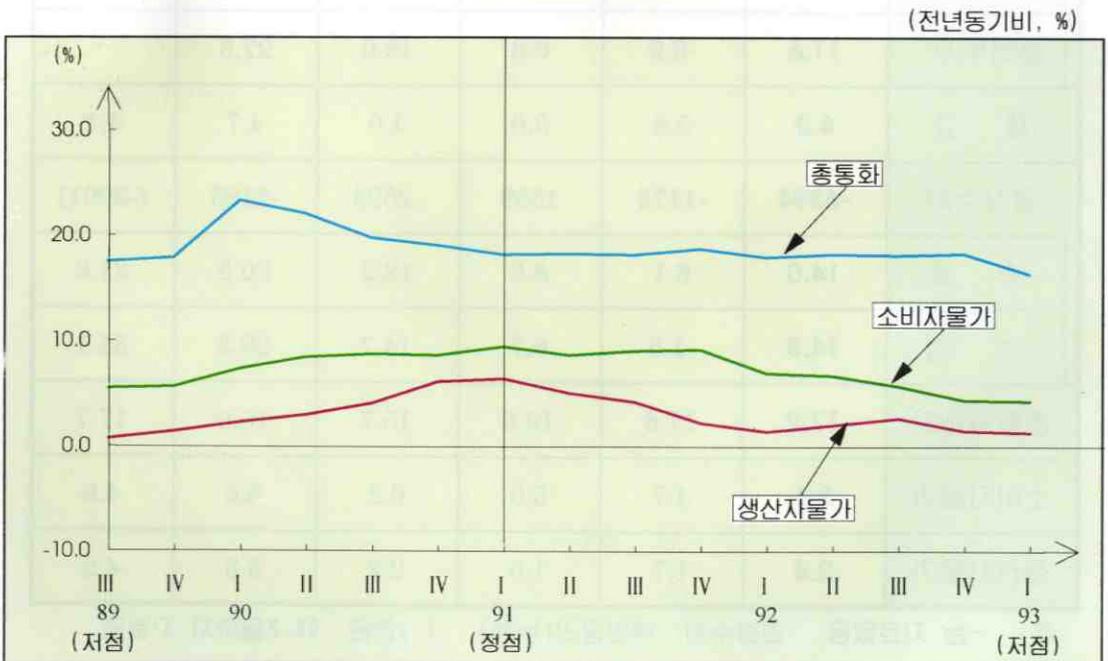
(전년동기비, %)



경상수지 · 수출 · 수입



통화 · 물가



바. 제 6 순환기 【'93.1(I) ~ 현재】

(1) 주요 경제지표

(전년동기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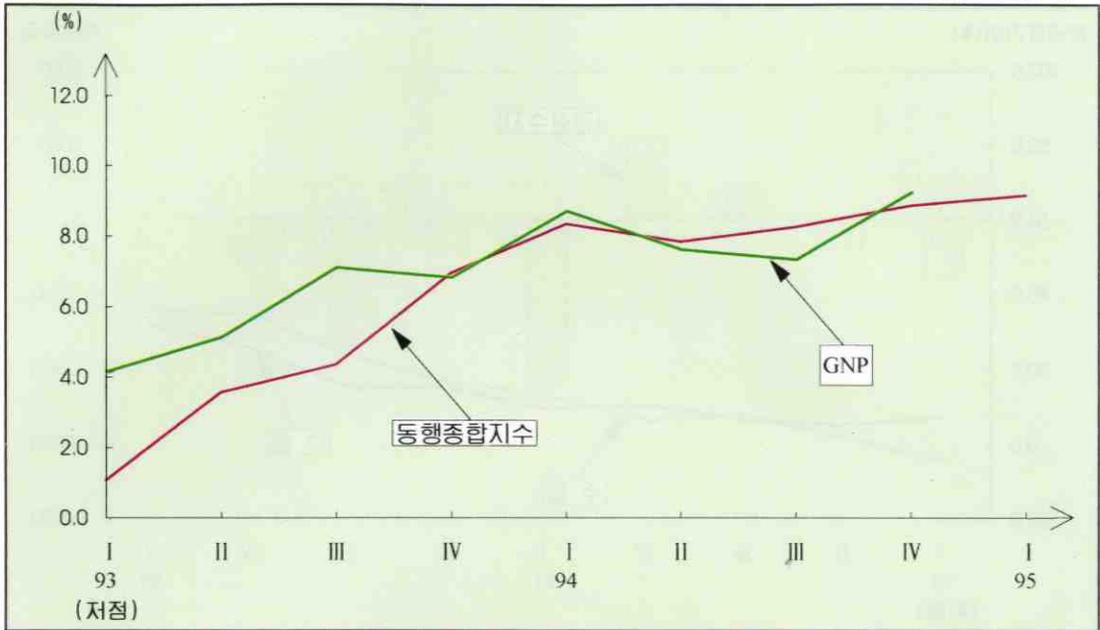
	확장국면('93. I ~ 현재)					
	국면 평균	'93. I ~'93. II	'93. III ~'93. IV	'94. I ~'94. II	'94. III ~'94. IV	'95. I
동행종합지수	6.4	2.3	5.6	8.1	8.5	9.1
GNP(실질)	7.0	4.6	7.0	8.2	8.3	-
산업생산	8.4	1.7	7.0	10.7	11.3	14.1
민간소비	6.5	5.4	6.0	7.2	7.7	-
내구재	7.6	5.7	6.7	8.2	9.8	-
비내구재	6.2	5.2	5.9	6.6	7.1	-
투 자	8.4	-1.1	11.2	10.4	13.1	-
건설투자	6.6	3.2	13.9	4.9	4.5	-
설비투자	11.6	-6.9	6.8	19.0	27.6	-
재 고	4.3	5.6	3.0	4.0	4.7	4.1
경상수지	-6394	-1175	1559	-2593	-2185	(-2001)
수 출	14.0	6.1	8.5	12.2	20.5	31.6
수 입	14.8	-1.5	6.7	14.7	29.3	35.1
총통화(M2)	17.2	17.6	19.6	15.7	15.6	17.7
소비자물가	5.4	4.7	5.0	6.2	6.4	4.6
생산자물가	2.4	1.7	1.5	2.2	3.3	4.2

주. -는 자료없음. 경상수지: 백만달러(누계), ()안은 '95.2월까지 자료임.

(2) 주요 경기지표의 변동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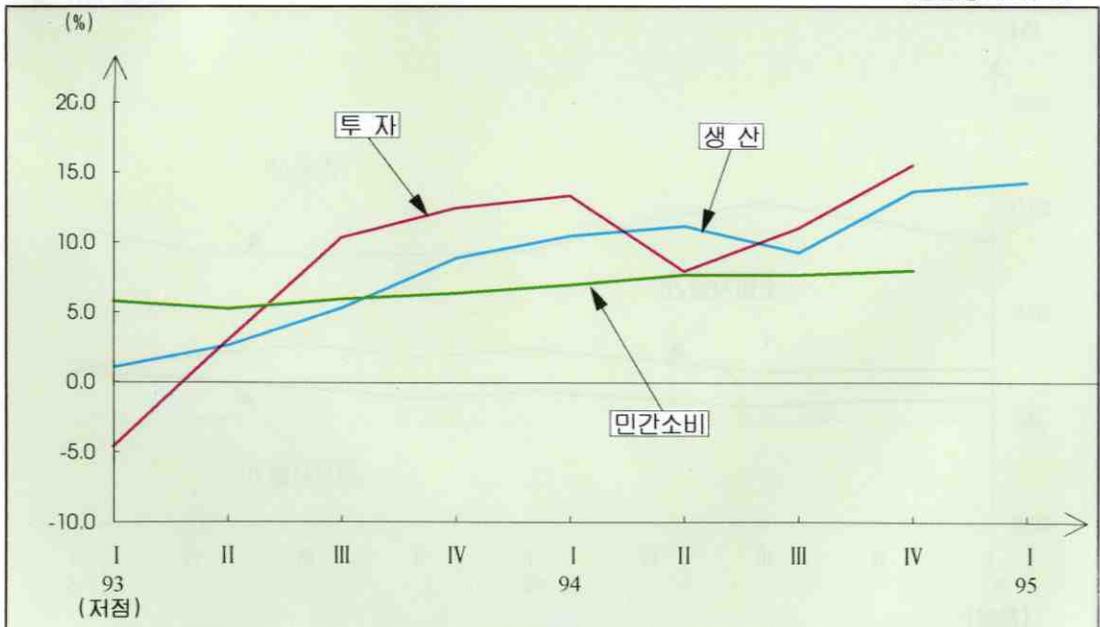
GNP · 동행종합지수

(전년동기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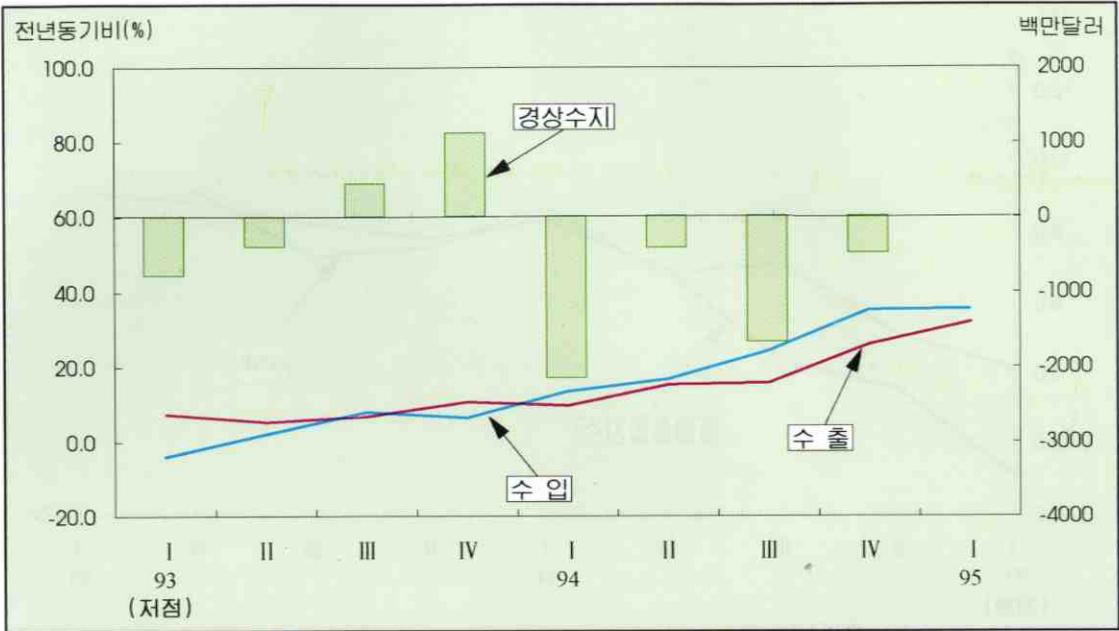


생산 · 소비 · 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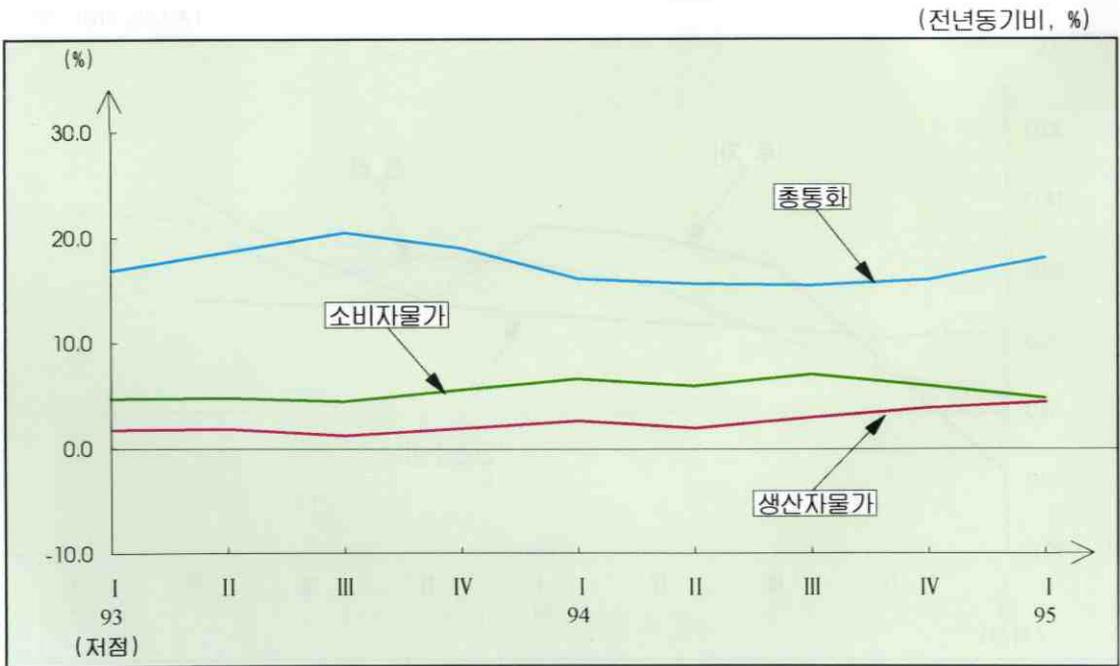
(전년동기비, %)



경상수지 · 수출 · 수입



통화 · 물가



4. 項目別 成長 寄與率

가. 생산활동별 기여율

(기간평균, %)

	농림 어업	제조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서비스업
제 1 순환기	12.4	31.3	14.1	9.5	16.6	16.3
확장국면	14.7	31.7	1.4	12.0	21.1	19.2
수축국면	9.0	30.6	1.4	14.5	9.9	11.9
제 2 순환기	6.7	28.5	1.7	14.1	9.8	33.2
확장국면	3.7	28.1	1.7	15.5	10.9	33.2
수축국면	18.7	30.3	1.5	8.6	5.6	33.4
제 3 순환기	14.1	32.1	2.8	9.2	13.1	28.1
확장국면	19.2	30.1	2.3	10.0	12.7	24.4
수축국면	4.6	35.9	3.6	7.8	13.8	35.0
제 4 순환기	2.3	36.1	2.8	6.1	14.5	33.4
확장국면	0.9	40.7	2.9	7.3	17.0	29.0
수축국면	4.4	28.9	2.7	4.2	10.5	40.3
제 5 순환기	1.8	26.9	3.2	15.8	13.5	42.9
확장국면	-4.4	26.3	3.3	26.5	15.0	35.0
수축국면	6.6	27.4	3.1	7.5	12.3	49.1
제 6 순환기	-1.6	30.6	4.1	11.6	11.1	44.3

주) 서비스업에는 운수창고 및 통신업, 금융보험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정부서비스생산자 등 포함.

자료) 국민계정

나. 지출항목별 기여율

(기간평균, %)

	최 종 소비지출	총고정자본 형 성	재화와 용역의수출	(-) 재화와 용역의수입
제 1 순환기	72.0	30.7	31.6	25.5
확장국면	67.2	16.2	55.8	24.3
수축국면	79.1	52.4	-4.7	27.4
제 2 순환기	55.9	45.7	35.7	41.0
확장국면	53.3	46.8	43.3	40.7
수축국면	66.3	41.3	5.4	42.2
제 3 순환기	52.9	22.0	34.1	15.5
확장국면	50.5	20.9	40.9	20.2
수축국면	57.3	24.1	21.4	6.8
제 4 순환기	57.6	30.4	37.8	36.9
확장국면	47.1	31.5	54.3	31.5
수축국면	74.2	28.6	11.8	45.5
제 5 순환기	82.1	44.6	35.9	48.2
확장국면	74.4	83.9	5.1	54.5
수축국면	88.1	14.0	59.9	43.3
제 6 순환기	56.6	41.7	64.6	62.9

주) 수출은 FOB기준, 수입은 CIF기준

자료) 국민계정

5. 循環期別 主要 景氣調節施策

가. 第 1 循環期

- '71. 6. 28 換率인상 및 金利인하
- '71. 9. 4 物價安定 綜合對策
- '71. 11. 1 支給準備率 인하
- '72. 1. 17 金利인하
- '72. 2. 14 景氣回復을 위한 당면 경제시책
- '72. 3. 15 物價凍結 조치
- '72. 4. 21 當面 經濟施策의 보완
- '72. 8. 3 經濟의 安定과 成長에 관한 긴급명령
(8·3조치)
- '72. 12. 16 支給準備率 인상
- '73. 5. 16 支給準備率 인상
- '73. 12. 4 物價安定 대책
- '74. 1. 14 國民生活 安定을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
(1·14긴급조치)
- '74. 2. 5 綜合 物價安定 대책
- '74. 2. 18 建築規制 조치
- '74. 8. 1 支給準備率 인하
- '74. 12. 7 國際收支 改善과 景氣回復을 위한 특별조치
(12·7조치)
- '74. 12. 12 建築規制 해제
- '75. 4. 17 輸出支援 종합대책

나. 第 2 循環期

- '75. 7. 1 支給準備率 인상
- '75. 12. 5 中東進出 촉진방안
- '76. 2. 2 수출금융 限度去來制 실시
- '76. 8. 2 金利인상
- '77. 5. 14 流動性 규제 강화
- '77. 8. 1 外資導入 요건 강화
- '78. 2. 23 支給準備率 인상
- '78. 5. 22 建築規制 조치
- '78. 6. 13 金利인상
- '78. 6. 26 建築規制 조치
- '78. 8. 8 不動産投機 抑制 및 地價 安定을 위한
종합대책(8·8조치)
- '79. 4. 17 景氣安定化 종합대책(4·17대책)
- '79. 7. 13 下半期 經濟運用대책
- '79. 9. 1 공공 建築物 신축 전면 허용
- '79. 11. 15 建築制限 조치 전면 해제
- '80. 1. 1 支給準備率 인하
- '80. 1. 12 換率 및 金利인상(1·12조치)
- '80. 2. 29 生필품 價格 특별관리
- '80. 6. 5 當面 經濟運用의 과제와 대책
- '80. 8. 27 短資社의 중소기업 지원 확대
- '80. 9. 16 經濟活性化 방안(9·16조치)

다. 第 3 循環期

- '80. 9. 16 經濟活性化 방안(9·16조치)
- '80. 10. 2 중소기업 의무 대출비율 조정
- '80. 11. 8 景氣活性化 대책(11·8조치)
- '80. 12. 13 不動產景氣 활성화대책
- '81. 4. 3 産業합리화 및 投資 장려
- '81. 6. 26 住宅景氣 활성화조치
- '81. 7. 1 특정지역 해제
- '81. 7. 1 支給準備率 인하 및 단일화
- '82. 1. 14 當面 經濟對策 방안(1·14조치)
- '82. 5. 18 當面 經濟對策(5·18대책)
- '82. 6. 28 投資促進을 통한 경제활성화 대책
(6·28조치)
- '82. 12. 22 住宅 投機抑制 대책
- '83. 2. 16 不動產 投機抑制 대책
- '83. 4. 18 土地 및 住宅問題 종합대책
- '83. 12. 12 住宅 投機抑制 대책
- '85. 2. 18 物價 및 不動產 대책
- '85. 5. 20 不動產 종합대책
- '85. 6. 28 臨時投資稅額 공제제도
- '85. 8. 14 設備投資 촉진을 위한 金融 및
稅制지원 확대
- '85. 9. 5 住宅建設 활성화조치

라. 第 4 循環期

- '85. 9. 5 住宅建設 活性化 조치
- '86. 1. 27 제 2金融圈 金利인하
- '86. 3. 24 貸出金利 인하
- '86. 9. 12 輸出金融 단가인하
- '86. 10. 31 大企業에 대한 輸出金融 단가인하
- '87. 4. 2 證市安定대책
- '87. 4. 21 大企業에 대한 貿易金融지원 축소
- '87. 6. 2 貿易金融제도 개편
- '87. 7. 20 貿易外 지급제한 완화
- '87. 8. 7 大企業에 대한 貿易金融지원 축소
- '87. 10. 30 貿易金融 단가인하
- '87. 11. 11 國際收支 黑字 대책
- '88. 1. 12 不動産 投機抑制 대책
- '88. 2. 7 國際收支 黑字管理 대책
- '88. 2. 15 外貨與信 제한
- '88. 3. 10 物價安定 종합대책
- '88. 5. 27 油價·換率 연동제도
- '88. 7. 20 不動産 投機抑制 대책
- '88. 8. 10 不動産 종합대책
- '88. 12. 31 원貨절상
- '89. 2. 21 物價安定 종합대책
- '89. 4. 27 住宅 200萬戶 건설계획

마. 第 5 循環期

- '89. 7. 4 임시 投資稅額 공제제도
- '89. 11. 14 經濟社會安定과 競爭力 제고를 위한
당면 대책
- '89. 12. 12 證券市場 부양대책(12·12조치)
- '90. 4. 4 景氣活性化 종합대책(4·4대책)
- '90. 4. 13 不動產 投機抑制 대책
- '90. 4. 20 物價安定 대책
- '90. 5. 8 不動產 投機抑制와 物價안정을 위한
특별보완 대책(5·8조치)
- '91. 1. 12 物價安定 대책
- '91. 1. 14 經濟安定과 成長基盤 擴充 대책
- '91. 2. 2 物價安定 대책
- '91. 5. 3 建設投資 動向診斷과 建設景氣
진정대책(5·3대책)
- '91. 7. 9 建設投資 적정화 및 新都市 建設
안전 대책
- '92. 1. 14 經濟安定과 產業競爭力 제고 대책
- '92. 4. 4 消費財 輸入 억제를 위한 조정관세
- '92. 5. 22 不動產 投機抑制 대책 일부 완화
- '92. 7. 1 建築許可 제한 일부 해제
- '92. 8. 24 證券市場 安定을 위한 종합대책
- '92. 10. 20 設備資金 공급 원활화 대책

바. 第 6 循環期

- '93. 1. 1 建築許可制限 해제
- '93. 1. 1 住宅建築 物量 할당제 폐지
- '93. 1. 26 金利인하
- '93. 3. 22 新經濟 100일 계획
- '93. 3. 26 金利인하
- '93. 4. 29 臨時 投資稅額 控除制度 적용시한 연장
- '94. 1. 14 證市安定 대책(1·14조치)
- '94. 1. 28 證市安定 대책(1·28조치)
- '95. 2. 9 中小企業支援 9大 施策

6. 擴張局面別 景氣指標 推移 比較

가. 70년대 확장국면

(월평균증가율, 전년동월(기)비, %)

		72년 확장국면 ('72.3~'74.2)	75년 확장국면 ('75.6~'79.2)
경 기	동행종합지수	1.35	1.10
생 산	산업생산지수	2.69	1.86
소 비	민간소비	6.8	7.2
	내구재	13.2	13.9
	비내구재	6.9	6.0
투 자	투 자	16.9	23.4
	건설투자	19.5	18.7
	설비투자	14.7	34.9
무 역	경상수지	-1071	-3375
	수 출	75.5	33.6
	수 입	41.8	24.0
통 화 · 금 용	통화(M1, 평잔)	40.8	32.8
	총통화(M2, 평잔)	32.5	34.1
	어음부도율	0.21	0.12
물 가 · 임 금	소비자물가	0.84	1.09
	생산자물가	1.54	0.84
	임금상승률	13.8	33.4

주) 경상수지 : 백만달러(누계)

1. 경기 동향

(동행종합지수, 월평균증가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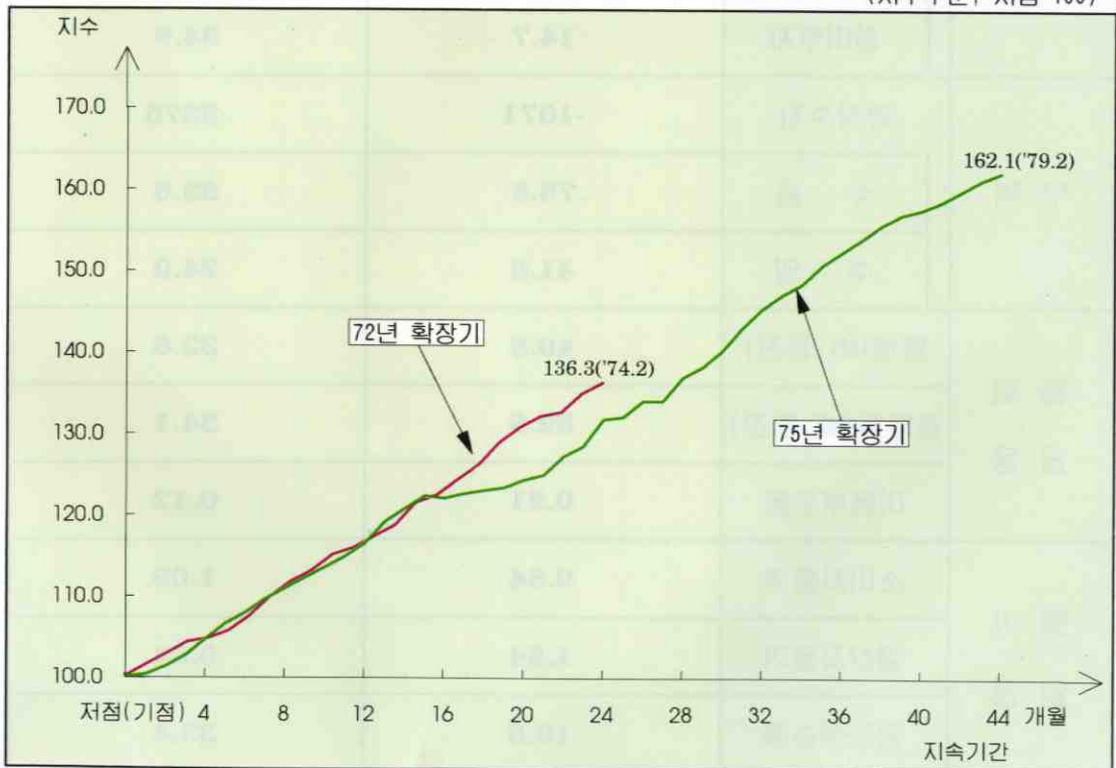
	저점~ 6개월	7~ 12개월	13~ 18개월	19~ 23개월	24~ 28개월	29~ 44개월	국 면 평 균
72년 확장기	1.20	1.46	1.59	1.13	-	-	1.35
75년 확장기	1.27	1.27	0.92	0.89	1.29	1.06	1.10

주) 72년 확장기('72.3~'74.2)

75년 확장기('75.6~'79.2)

동행종합지수

(지수수준, 저점=100)



2. 생산 동향

(월평균증가율, %)

	저점~ 6개월	7~ 12개월	13~ 18개월	19~ 23개월	24~ 28개월	29~ 44개월	국 면 평 균
72년 확장기	2.25	2.72	3.27	2.50	-	-	2.69
75년 확장기	2.78	2.46	1.03	1.16	3.08	1.45	1.8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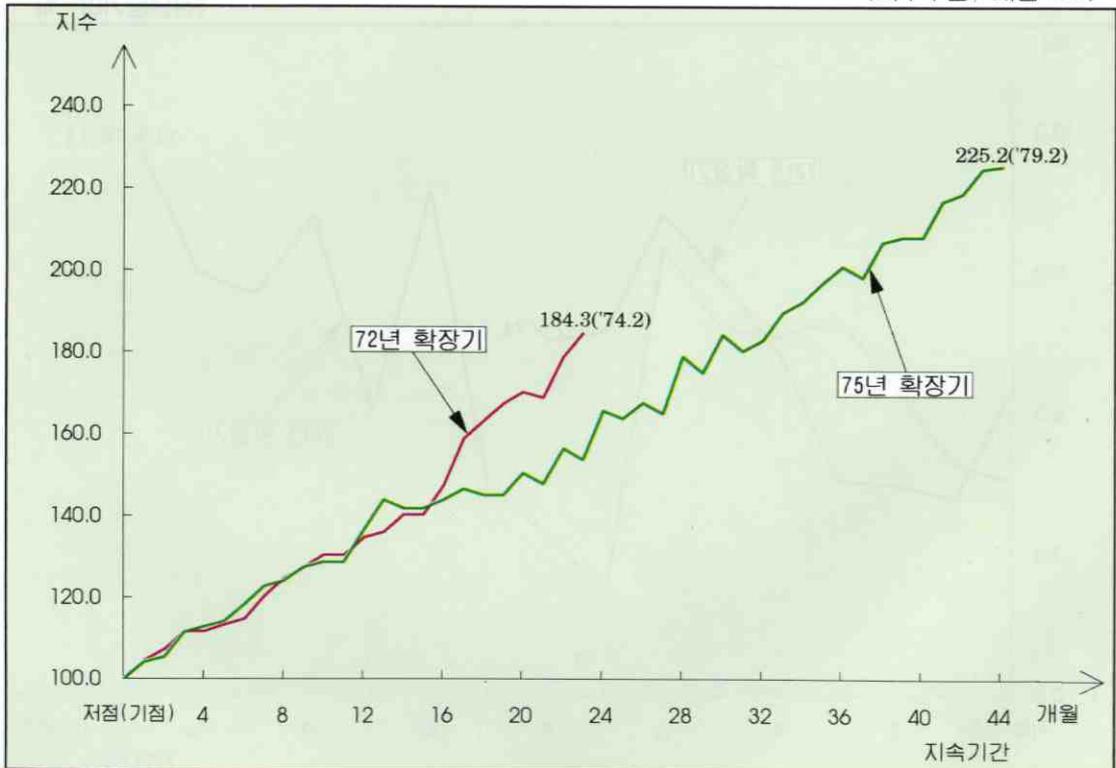
주) 72년 확장기('72.3~'74.2)

75년 확장기('75.6~'79.2)

자료) 산업생산지수(총지수; 계절조정지수)

산업생산

(지수수준, 저점=100)



3. 소비 동향

(전년동기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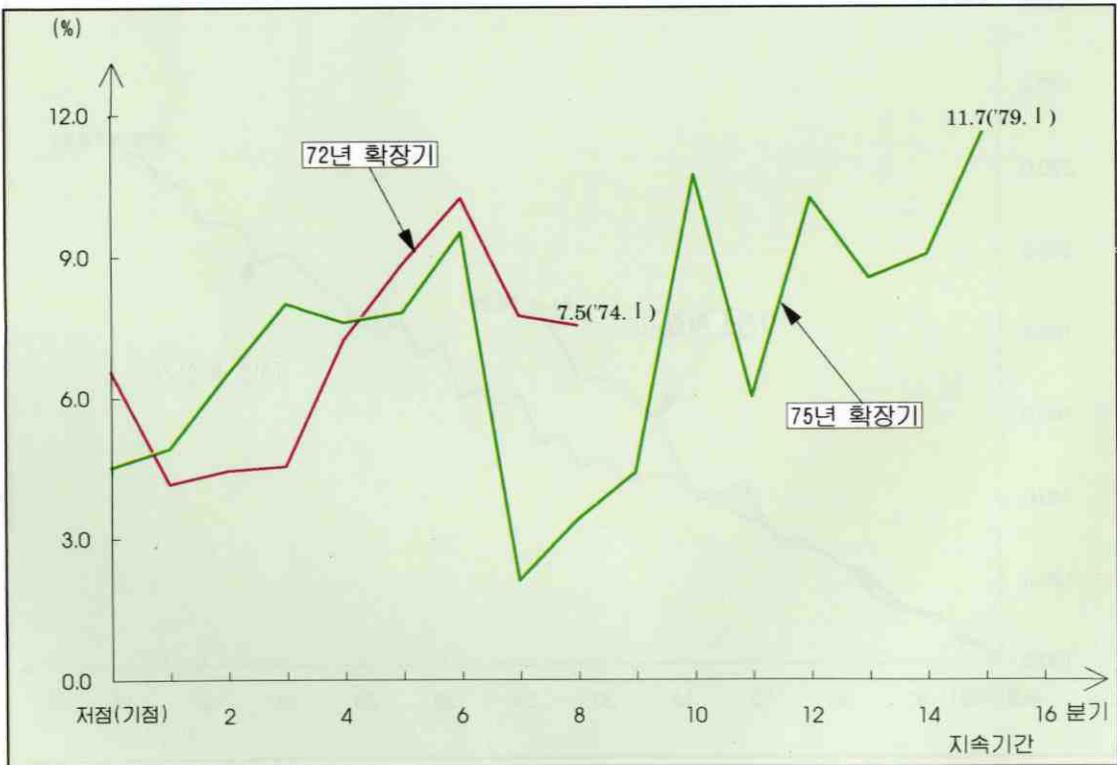
		저점~ 2분기	3~ 4분기	5~ 6분기	7~ 8분기	9~ 10분기	11~ 15분기	국 면 평 균
72년 확장기	민간소비	5.0	5.9	9.5	7.6	-	-	6.8
	내구재	6.7	11.3	20.2	18.0	-	-	13.2
	비내구재	5.4	6.1	10.3	6.7	-	-	6.9
75년 확장기	민간소비	5.3	7.8	8.7	2.8	7.6	9.1	7.2
	내구재	10.7	11.9	16.4	10.8	7.9	19.2	13.9
	비내구재	4.2	7.5	8.1	1.5	7.6	6.7	6.0

주) 72년 확장기('72. I ~'74. I) 75년 확장기('75. II ~'79. I)

자료) 국민계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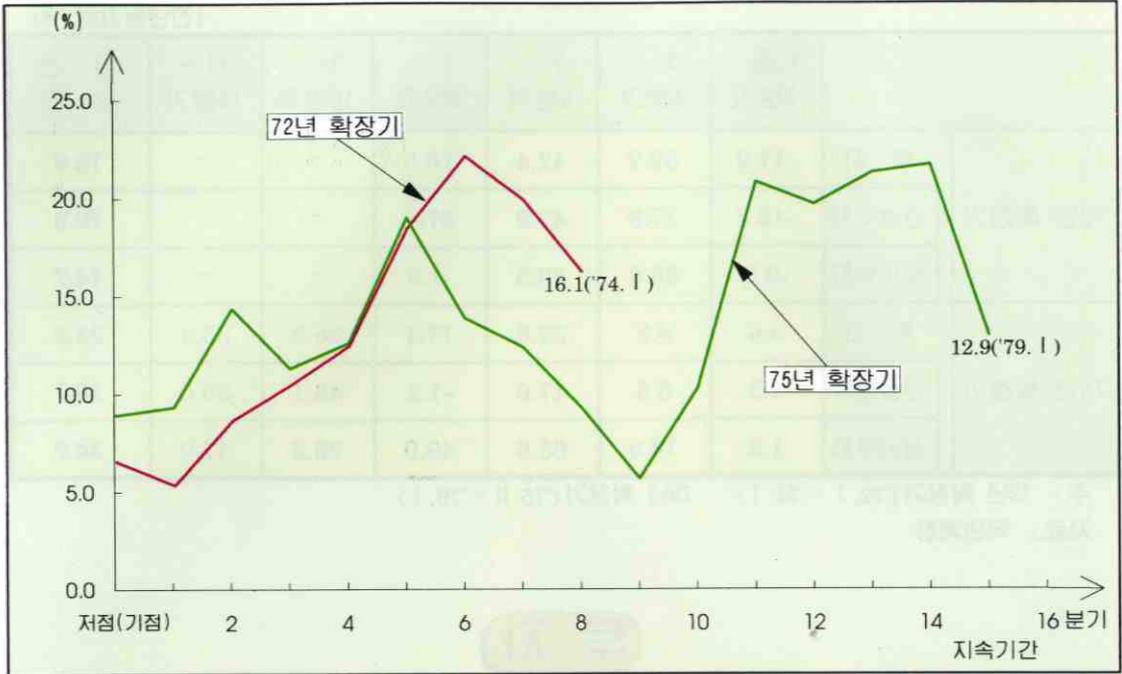
민간소비

(전년동기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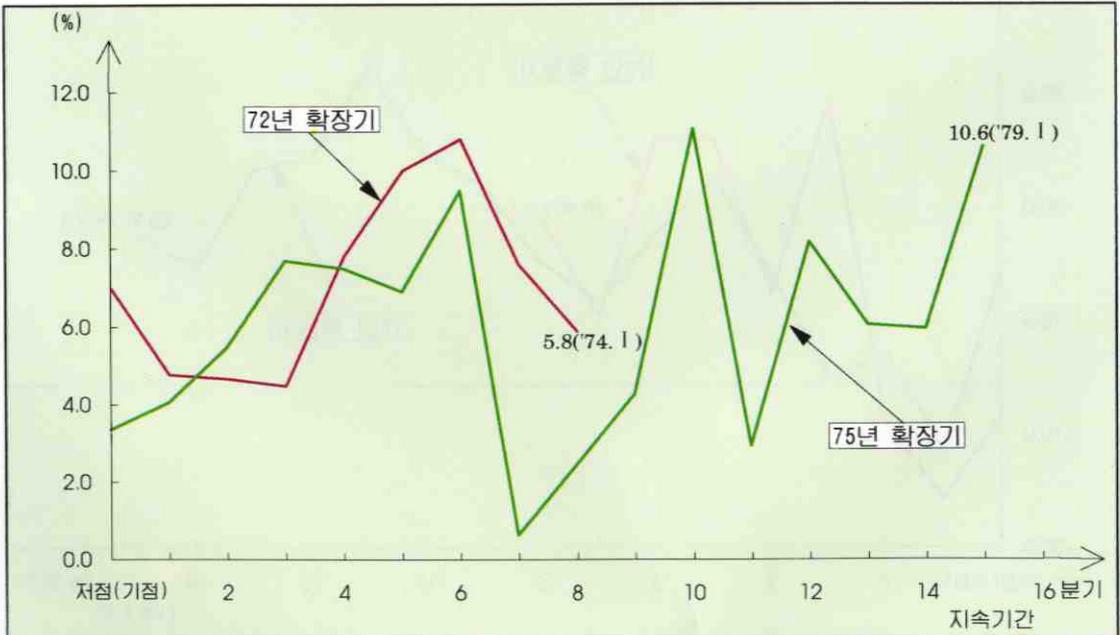
내구재

(전년동기비, %)



비내구재

(전년동기비, %)



4. 투자 동향

(전년동기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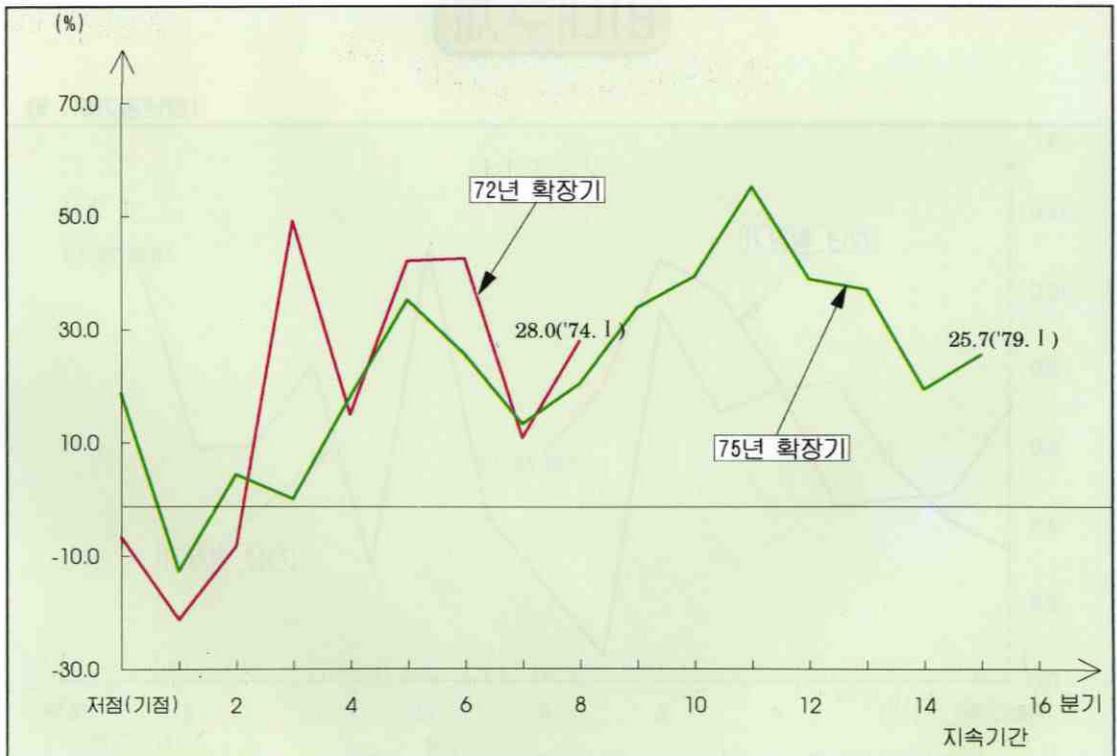
		저점~ 2분기	3~ 4분기	5~ 6분기	7~ 8분기	9~ 10분기	11~ 15분기	국 면 평 균
72년 확장기	투 자	-11.9	32.2	42.4	19.5	-	-	16.9
	건설투자	-16.8	27.9	47.9	37.4	-	-	19.5
	설비투자	-0.3	38.0	30.5	-1.6	-	-	14.7
75년 확장기	투 자	3.6	9.3	30.6	17.1	36.8	35.4	23.4
	건설투자	4.2	5.6	17.6	-1.2	46.1	30.0	18.7
	설비투자	1.9	18.0	65.6	49.0	26.2	47.0	34.9

주) 72년 확장기('72. I ~ '74. I) 75년 확장기('75. II ~ '79. I)

자료) 국민계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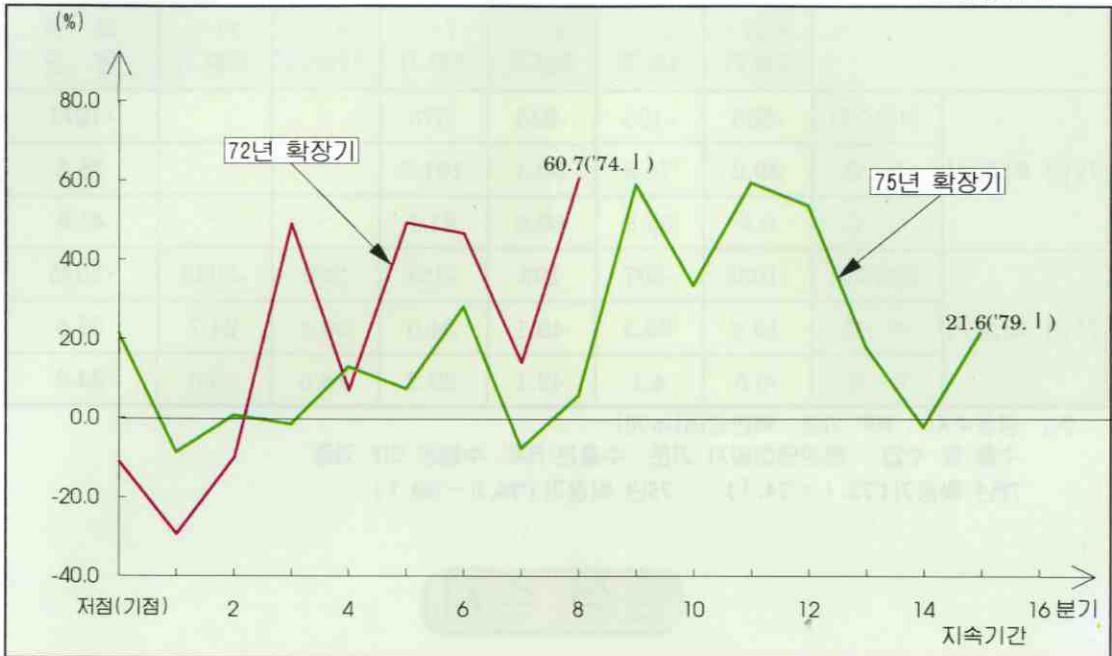
투 자

(전년동기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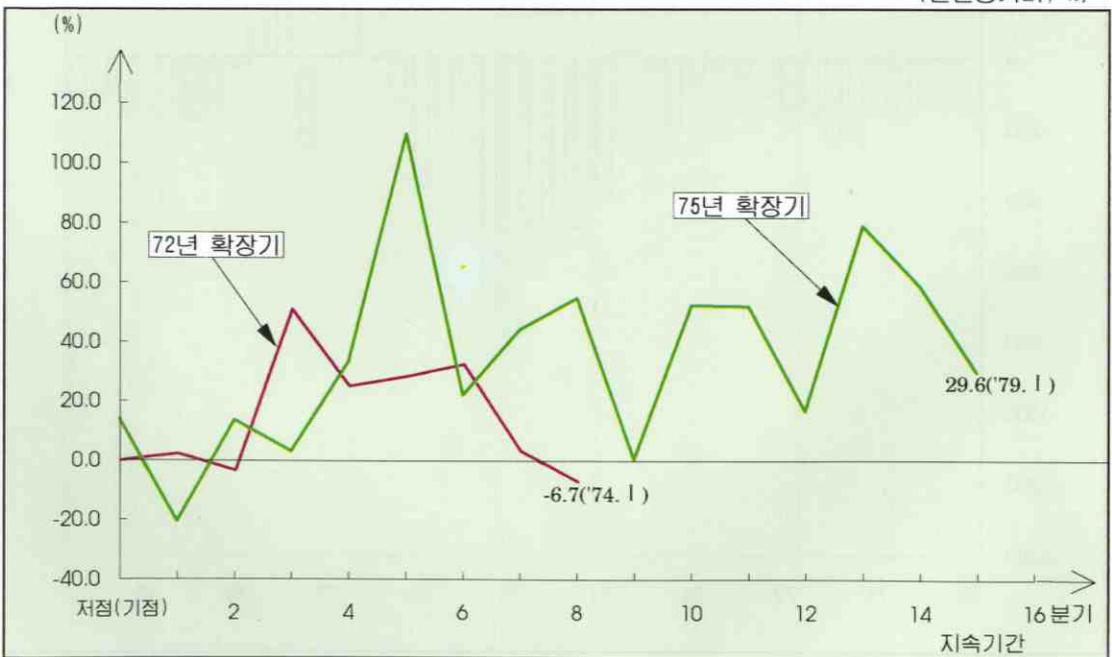
건설투자

(전년동기비, %)



설비투자

(전년동기비, %)



5. 무역 동향

(전년동기비, %)

		저점~ 2분기	3~ 4분기	5~ 6분기	7~ 8분기	9~ 10분기	11~ 15분기	국 평 균
72년 확장기	경상수지	-333	-123	-243	-373			-1071
	수 출	49.0	74.8	90.4	101.2	-	-	75.5
	수 입	0.4	35.8	69.8	81.7	-	-	41.8
75년 확장기	경상수지	-1036	-507	193	-253	266	-2038	-3375
	수 출	19.4	66.3	49.1	34.0	28.4	24.7	33.6
	수 입	-0.5	4.1	42.1	29.2	18.5	39.5	24.0

주) 경상수지 : BOP 기준, 백만달러(누계)

수출 및 수입 : 통관면허일자 기준. 수출은 FOB, 수입은 CIF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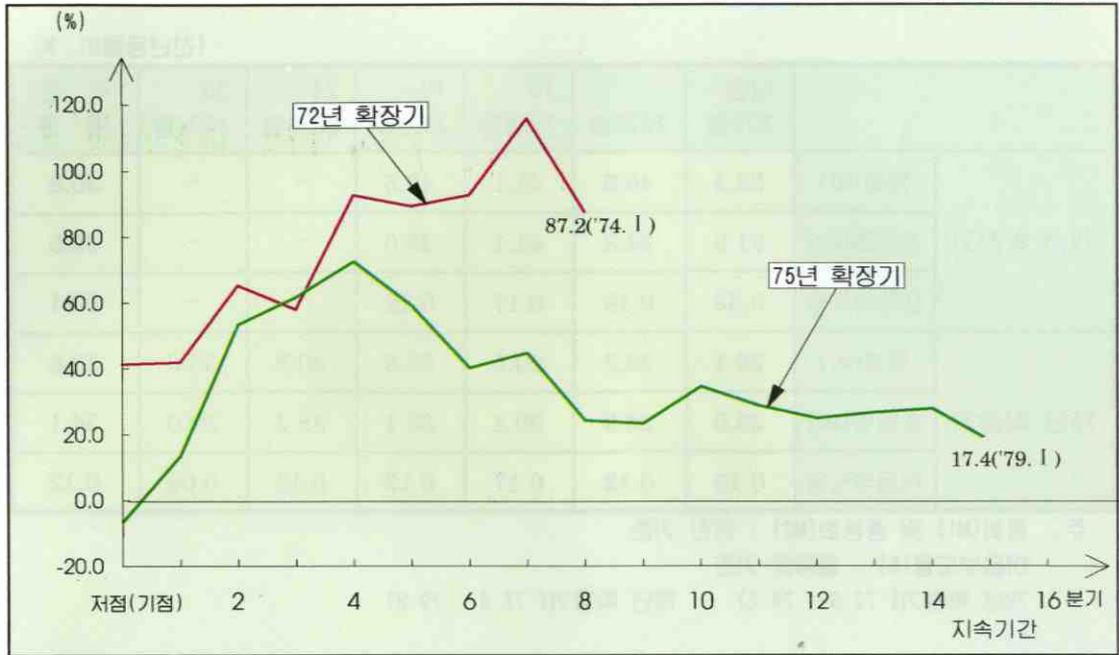
72년 확장기('72. I ~ '74. I) 75년 확장기('75. II ~ '79. I)

경상 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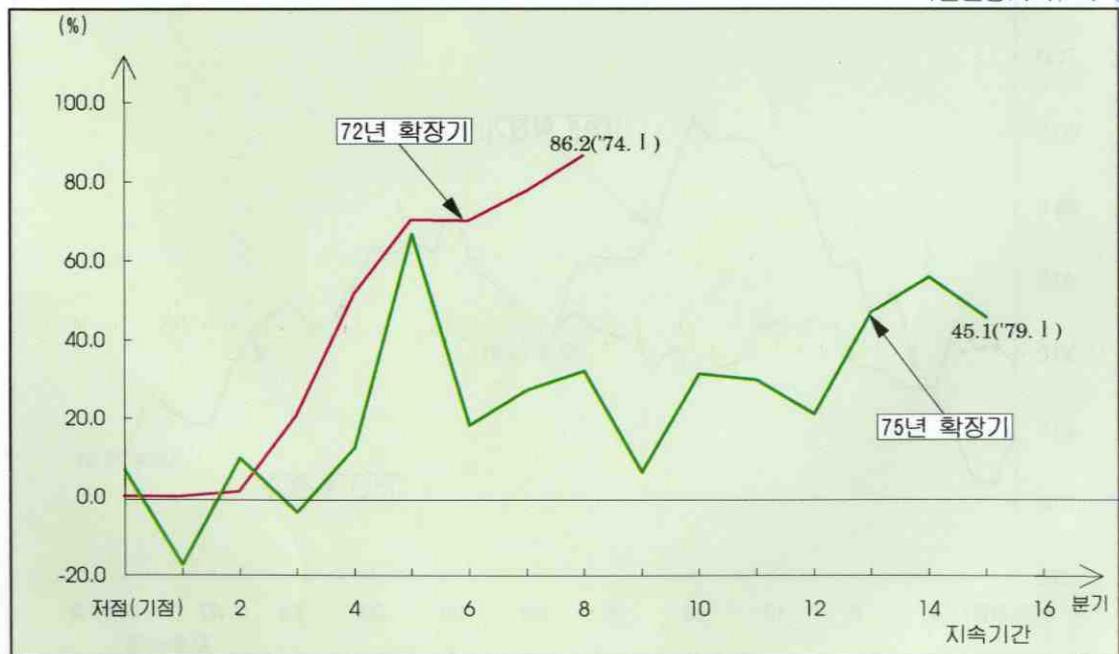
수 출

(전년동기비, %)



수 입

(전년동기비, %)



6. 통화 · 금융 동향

(전년동월비, %)

		저점 ~ 6개월	7 ~ 12개월	13 ~ 18개월	19 ~ 23개월	24 ~ 28개월	29 ~ 44개월	국 면 평 균
72년 확장기	통화(M1)	22.4	46.5	41.1	40.5	-	-	40.8
	총통화(M2)	21.9	34.3	41.1	35.0	-	-	32.5
	어음부도율	0.32	0.19	0.17	0.12	-	-	0.21
75년 확장기	통화(M1)	29.1	32.3	29.5	33.5	40.8	33.0	32.8
	총통화(M2)	29.0	28.9	29.4	33.1	38.2	39.0	34.1
	어음부도율	0.15	0.12	0.17	0.12	0.12	0.09	0.12

주) 통화(M1) 및 총통화(M2) : 평잔 기준

어음부도율(%) : 월평균 기준

72년 확장기('72.3~'74.2) 75년 확장기('75.6~'79.2)

통화(M1)

(전년동월비, %)



총동화(M2)

(전년동월비, %)



어음부도율

(전년동월비, %)



7. 물가 · 임금 동향

(월평균증가율, %)

		저점~ 6개월	7~ 12개월	13~ 18개월	19~ 23개월	24~ 28개월	29~ 44개월	국 면 평 균
72년 확장기	소비자물가	0.76	-0.32	0.53	2.72	-	-	0.84
	생산자물가	0.40	0.29	1.03	5.10	-	-	1.54
	임금상승률	9.8	12.7	15.1	19.0	-	-	13.8
75년 확장기	소비자물가	1.38	1.04	0.52	1.14	0.70	1.31	1.09
	생산자물가	0.75	0.96	0.55	0.95	0.61	0.97	0.84
	임금상승률	29.1	34.0	37.1	31.4	31.7	34.9	33.4

주) 72년 확장기('72.3~'74.2) 75년 확장기('75.6~'79.2)

자료) 소비자 및 생산자물가지수(총지수), 임금상승률: 임금(전산업)의 전년동월비

소비자물가

(지수수준, 저점=100)



생산자물가

(지수수준, 저점=100)



임금상승률

(%)



나. 80년대 및 현 확장국면

(월평균증가율, 전년동월(기)비, %)

		80년 확장국면 ('80.9~'84.2)	85년 확장국면 ('85.9~'88.1)	89년 확장국면 ('89.7~'91.1)	현 확장국면 ('93.1~'95.3)
경 기	동행종합지수	0.65	1.03	0.78	0.70
생 산	산업생산지수	1.10	1.74	0.86	1.02
	중화학공업	-	2.11	0.84	1.78
	경공업	-	1.06	0.35	0.61
소 비	민간소비	5.8	8.0	10.4	6.5
	내구재	5.7	16.1	12.1	7.6
	비내구재	5.8	7.2	9.1	6.2
투 자	투 자	5.8	12.7	23.0	8.4
	건설투자	9.0	8.1	27.5	6.6
	설비투자	1.7	19.7	17.4	11.6
무 역	경상수지	-11997	17519	-3421	-6394
	수 출	13.8	23.9	3.5	14.0
	수 입	7.0	17.3	16.0	14.8
환 율	원/달러	726.4	853.2	697.5	799.4
	원/100엔	311.4	536.6	487.6	771.5
	엔/달러	234.2	163.6	143.5	104.7
통 화 · 금 융	총통화(M2, 평잔)	24.7	17.3	20.0	17.2
	회사채수익률	19.3	12.9	16.3	13.0
	어음부도율	0.13	0.09	0.04	0.15
물 가 · 고 용	소비자물가	0.67	0.27	0.73	0.49
	실업률	-	4.27	2.91	2.84
	임금상승률	16.0	9.2	19.3	13.1

주) -는 자료없음. 경상수지: 백만달러(누계)

1. 경기 동향

(동행종합지수, 월평균증가율, %)

	저점~ 6개월	7~ 12개월	13~ 18개월	19~ 24개월	25~ 28개월	29~ 41개월	국 면 평 균
80년 확장기	0.73	0.66	-0.27	0.64	0.83	0.98	0.65
85년 확장기	0.99	1.10	0.83	0.94	1.43	-	1.03
89년 확장기	0.73	0.68	0.93	-	-	-	0.78
현 확장기	0.67	0.78	0.51	0.96	(0.37)	-	0.70

주) ()안은 저점후 26개월('95.3)까지 자료임.

80년 확장기('80.9~'8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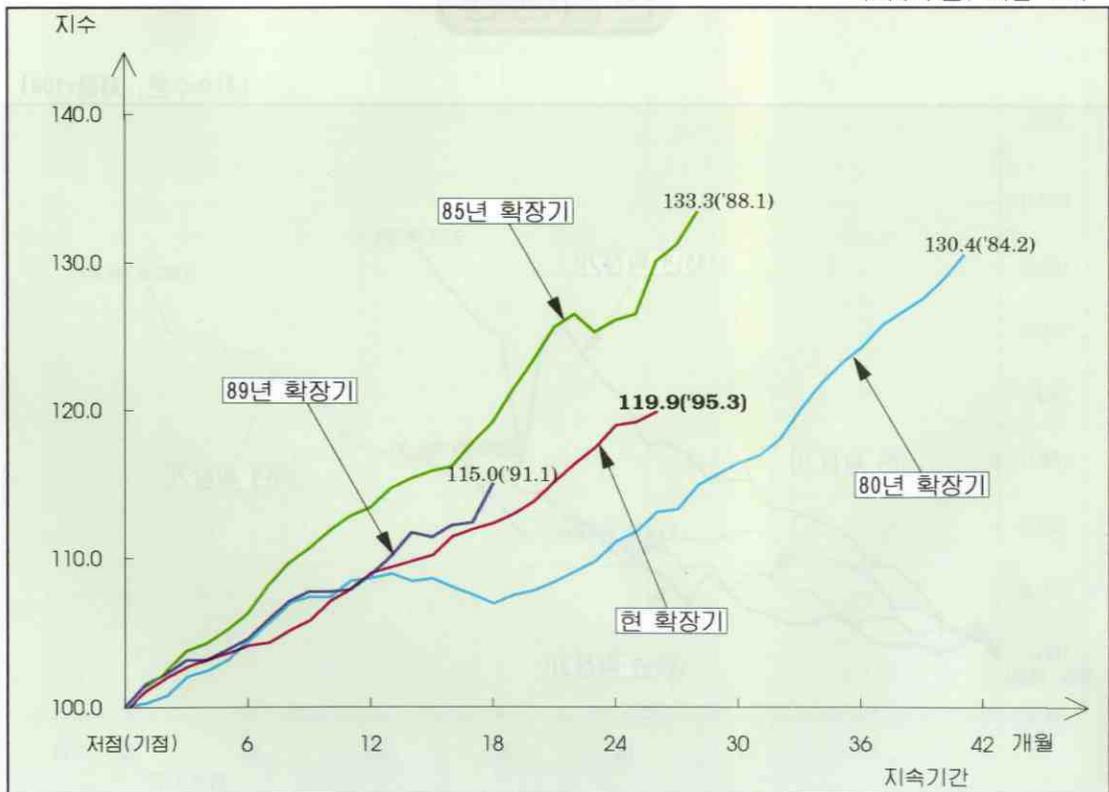
85년 확장기('85.9~'88.1)

89년 확장기('89.7~'91.1)

현 확장기('93.1~현재('95.3))

동행종합지수

(지수수준, 저점=100)



2. 생산 동향

(월평균증가율, %)

		저점~ 6개월	7~ 12개월	13~ 18개월	19~ 24개월	25~ 28개월	29~ 41개월	국 면 평 균
80년 확장기	산업생산	1.81	1.12	-0.30	0.81	1.53	1.41	1.10
	중화학공업	-	-	-	-	-	-	-
	경공업	-	-	-	-	-	-	-
85년 확장기	산업생산	2.17	1.85	1.53	1.17	2.14	-	1.74
	중화학공업	3.20	1.07	3.27	0.65	2.52	-	2.11
	경공업	1.86	0.63	1.80	1.03	-0.51	-	1.06
89년 확장기	산업생산	0.36	0.83	1.44	-	-	-	0.86
	중화학공업	-1.25	2.68	1.12	-	-	-	0.84
	경공업	-0.81	1.40	0.46	-	-	-	0.35
현 확장기	산업생산	0.90	1.07	0.15	1.92	(1.12)	-	1.02
	중화학공업	2.40	1.16	0.38	1.58	(6.77)	-	1.78
	경공업	1.40	-0.15	-0.12	-0.02	(4.65)	-	0.61

주) ()안은 저점후 26개월('95.3)까지 자료임.

자료) 산업생산 : 산업생산지수(총지수; 계절조정지수)

중화학공업 및 경공업 : 산업생산지수 [제조업(중화학공업, 경공업), 원지수]

산업생산

(지수수준, 저점=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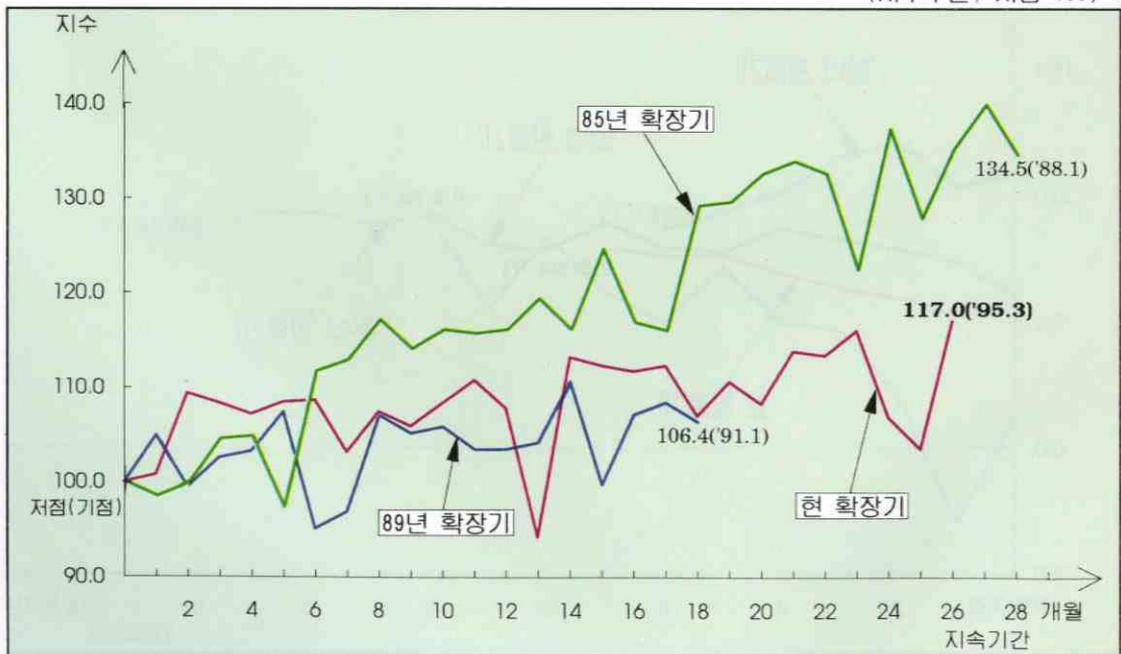
중화학공업

(지수수준, 저점=100)



경공업

(지수수준, 저점=100)



3. 소비 동향

(전년동기비, %)

		저점~ 2분기	3~ 4분기	5~ 6분기	7~ 8분기	9~ 10분기	11~ 14분기	국 면 평 균
80년 확장기	민간소비	0.1	4.8	6.1	7.3	7.4	9.0	5.8
	내구재	-1.5	1.3	2.7	5.0	6.4	15.0	5.7
	비내구재	0.7	5.4	6.6	7.5	7.3	7.9	5.8
85년 확장기	민간소비	7.0	8.4	7.8	8.4	8.7	-	8.0
	내구재	11.7	16.8	21.0	16.8	16.2	-	16.1
	비내구재	6.5	8.5	6.9	7.2	7.2	-	7.2
89년 확장기	민간소비	11.0	10.8	9.0	-	-	-	10.4
	내구재	12.3	13.0	11.0	-	-	-	12.1
	비내구재	9.5	9.5	8.0	-	-	-	9.1
현 확장기	민간소비	5.5	6.5	7.5	7.8	-	-	6.5
	내구재	5.5	7.7	8.8	11.1	-	-	7.6
	비내구재	5.4	6.2	6.9	7.0	-	-	6.2

주) 80년 확장기('80.Ⅲ~'84.Ⅰ)

85년 확장기('85.Ⅲ~'88.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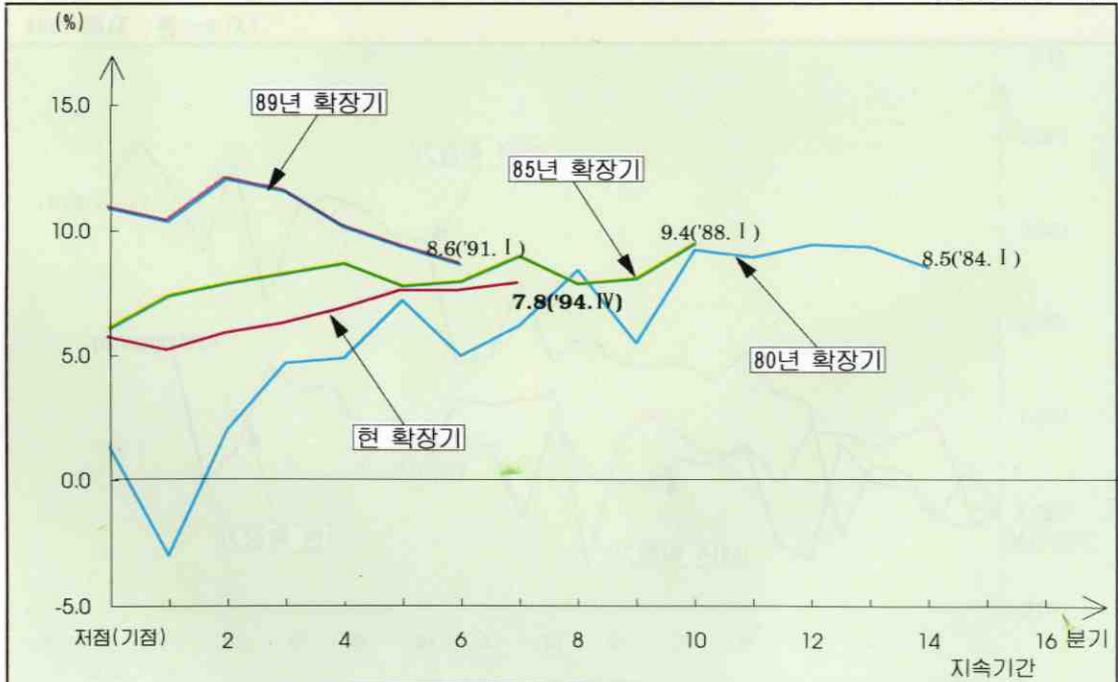
89년 확장기('89.Ⅲ~'91.Ⅰ)

현 확장기('93.Ⅰ~'94.Ⅳ(현재))

자료) 국민계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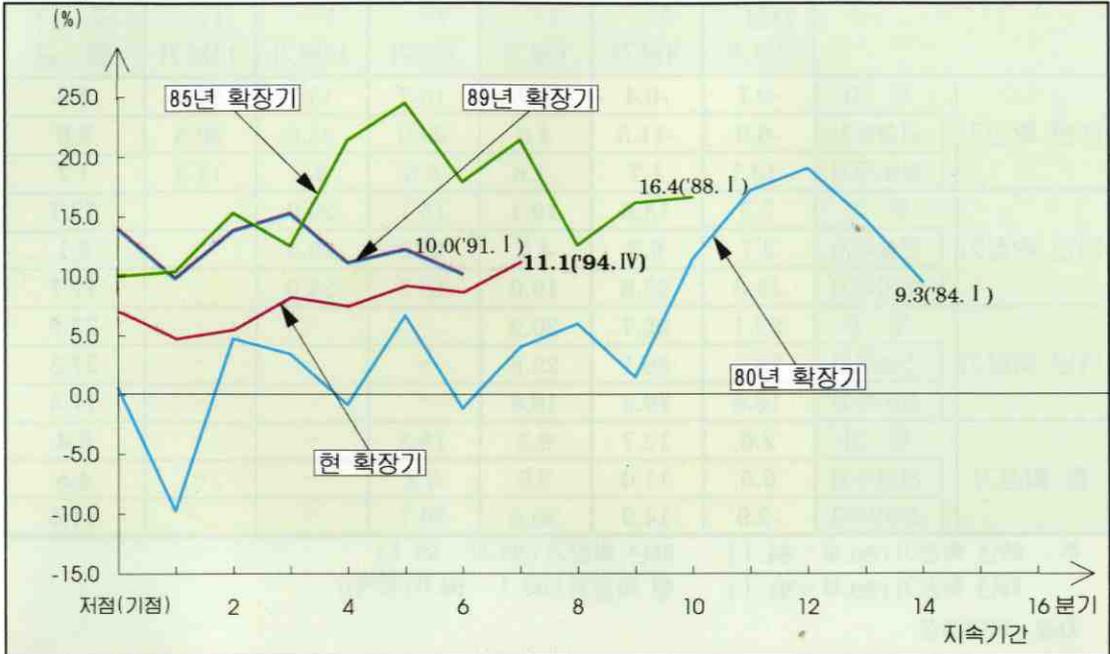
민간소비

(전년동기비, %)



내구재

(전년동기비, %)



비내구재

(전년동기비, %)



4. 투자 동향

(전년동기비, %)

		저점~ 2분기	3~ 4분기	5~ 6분기	7~ 8분기	9~ 10분기	11~ 14분기	국 면 평 균
80년 확장기	투 자	-9.1	-6.4	1.7	13.7	13.7	17.3	5.8
	건설투자	-6.0	-11.3	4.8	20.0	21.8	20.5	9.0
	설비투자	-13.1	1.7	-1.6	5.8	2.6	11.9	1.7
85년 확장기	투 자	7.3	13.8	10.1	15.1	20.0	-	12.7
	건설투자	2.7	6.7	4.7	12.9	16.4	-	8.1
	설비투자	14.3	25.8	19.0	18.5	24.0	-	19.7
89년 확장기	투 자	23.1	25.7	20.2	-	-	-	23.0
	건설투자	28.9	30.1	22.8	-	-	-	27.5
	설비투자	16.8	19.3	16.6	-	-	-	17.4
현 확장기	투 자	2.6	12.7	9.3	15.3	-	-	8.4
	건설투자	6.5	11.0	2.5	6.2	-	-	6.6
	설비투자	-2.9	14.9	20.8	30.7	-	-	11.6

주) 80년 확장기('80.Ⅲ~'84.Ⅰ)

85년 확장기('85.Ⅲ~'88.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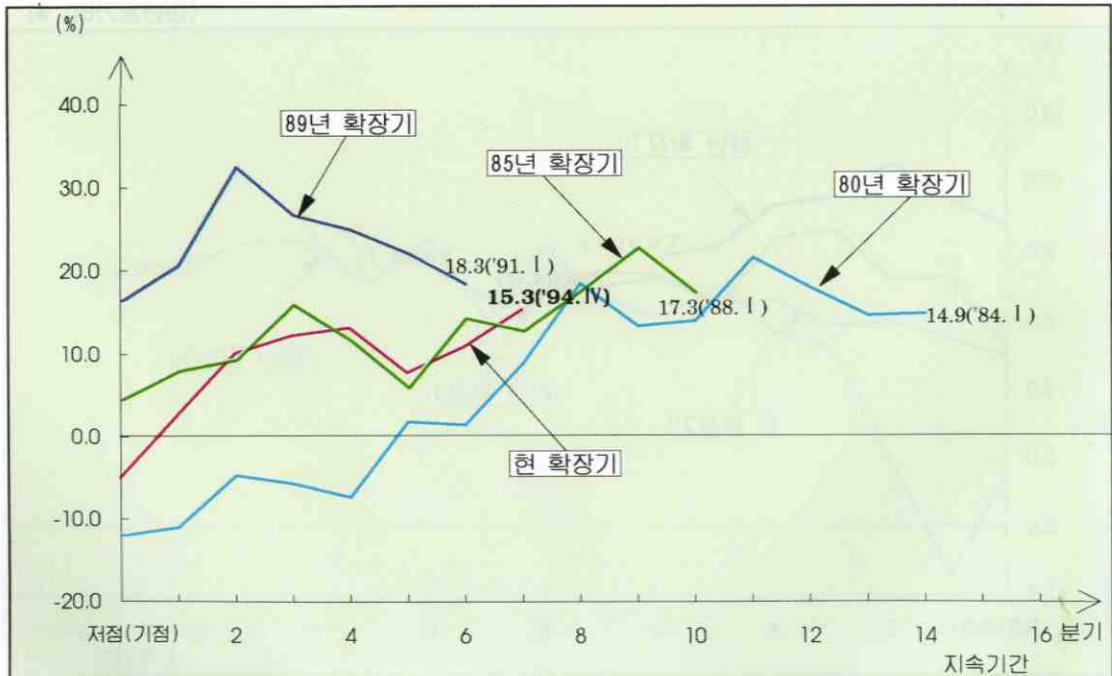
89년 확장기('89.Ⅲ~'91.Ⅰ)

현 확장기('93.Ⅰ~'94.Ⅳ(현재))

자료) 국민계정

투 자

(전년동기비; %)



건설투자

(전년동기비, %)



설비투자

(전년동기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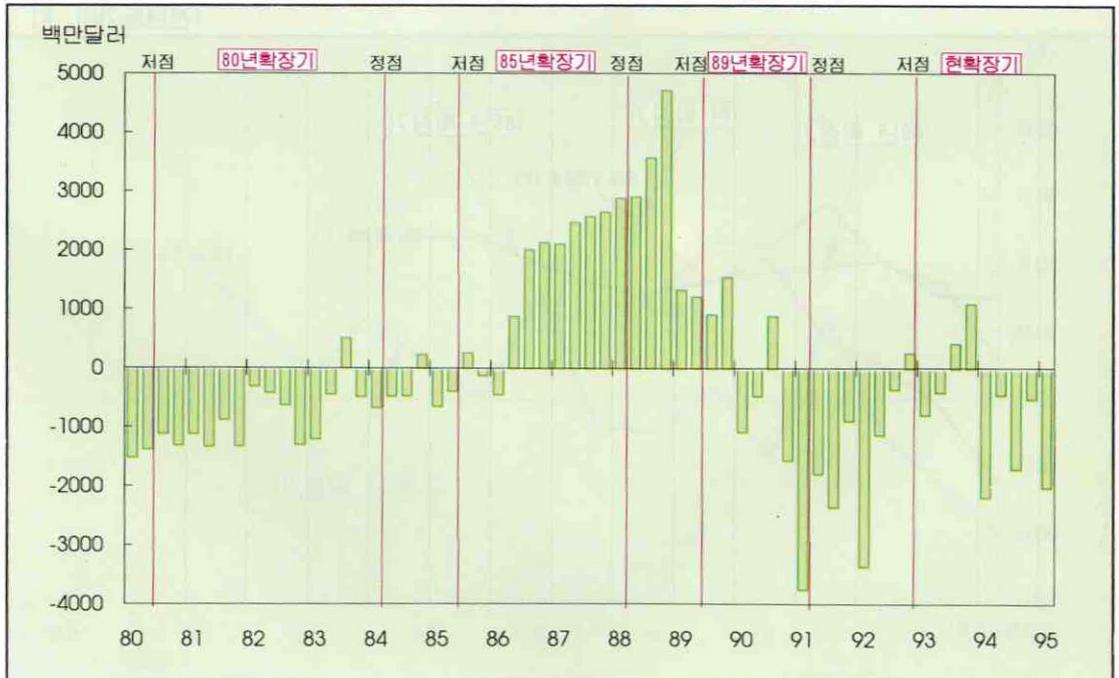
5. 무역 동향

(전년동기비, %)

		저점~ 2분기	3~ 4분기	5~ 6분기	7~ 8분기	9~ 10분기	11~ 14분기	국 면 평 균
80년 확장기	경상수지	-3544	-2206	-1626	-1043	-2510	-1068	-11997
	수 출	17.5	27.2	8.3	2.4	-0.1	19.6	13.8
	수 입	8.9	21.2	4.6	-8.2	-1.0	11.4	7.0
85년 확장기	경상수지	-293	2912	4262	5070	5567	-	17519
	수 출	13.1	19.1	21.3	35.3	36.3	-	23.9
	수 입	11.2	4.2	-1.0	36.6	38.7	-	17.3
89년 확장기	경상수지	1421	445	-5287	-	-	-	-3421
	수 출	-0.8	5.3	8.1	-	-	-	3.5
	수 입	15.7	9.3	23.1	-	-	-	16.0
현 확장기	경상수지	-733	-1045	-2116	(-2500)	-	-	-6394
	수 출	6.2	9.9	15.1	28.6	-	-	14.0
	수 입	1.5	9.5	20.0	35.0	-	-	1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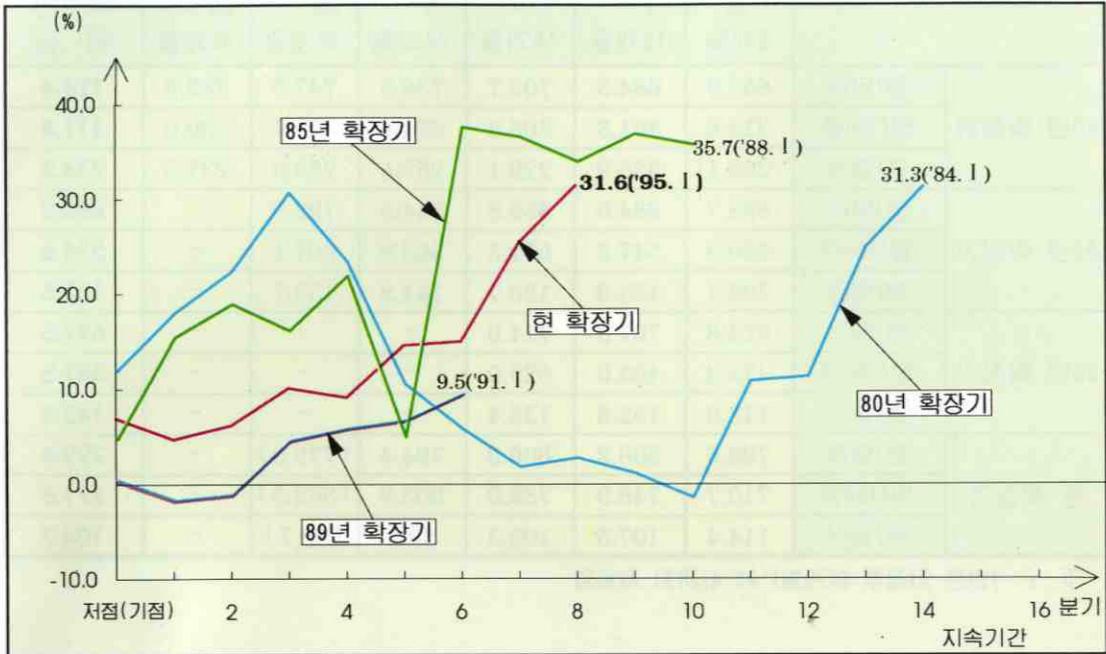
자료) 경상수지: BOP 기준, 백만달러(누계), ()안은 '95.2월까지 자료임.
수출 및 수입: 통관면허일자 기준. 수출은 FOB, 수입은 CIF 기준

경상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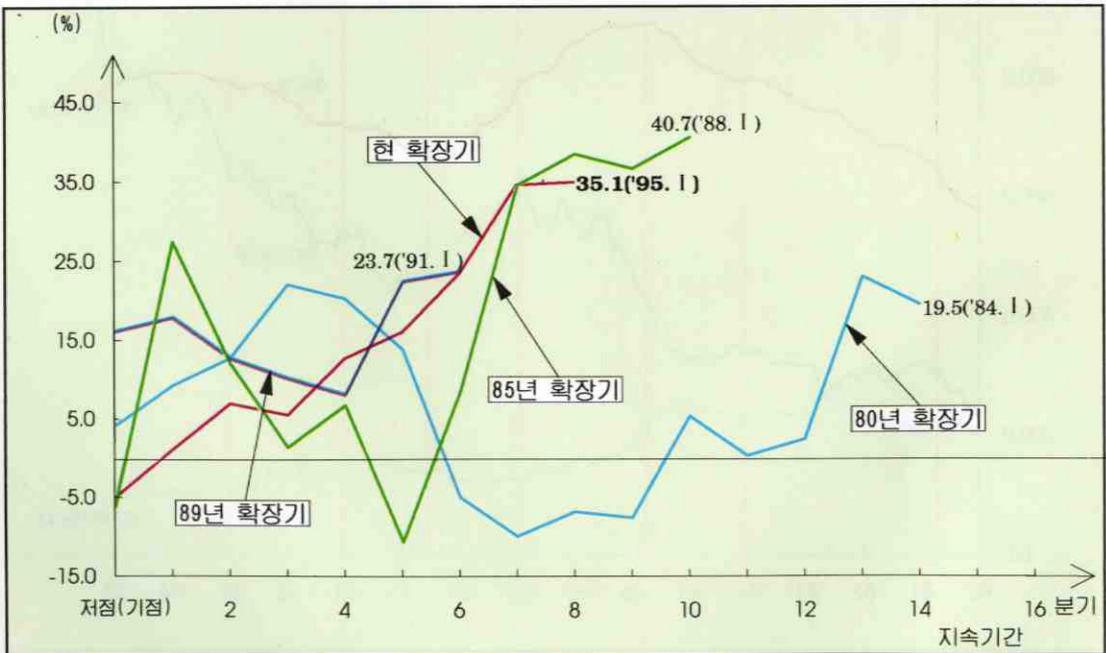
수출

(전년동기비, %)



수입

(전년동기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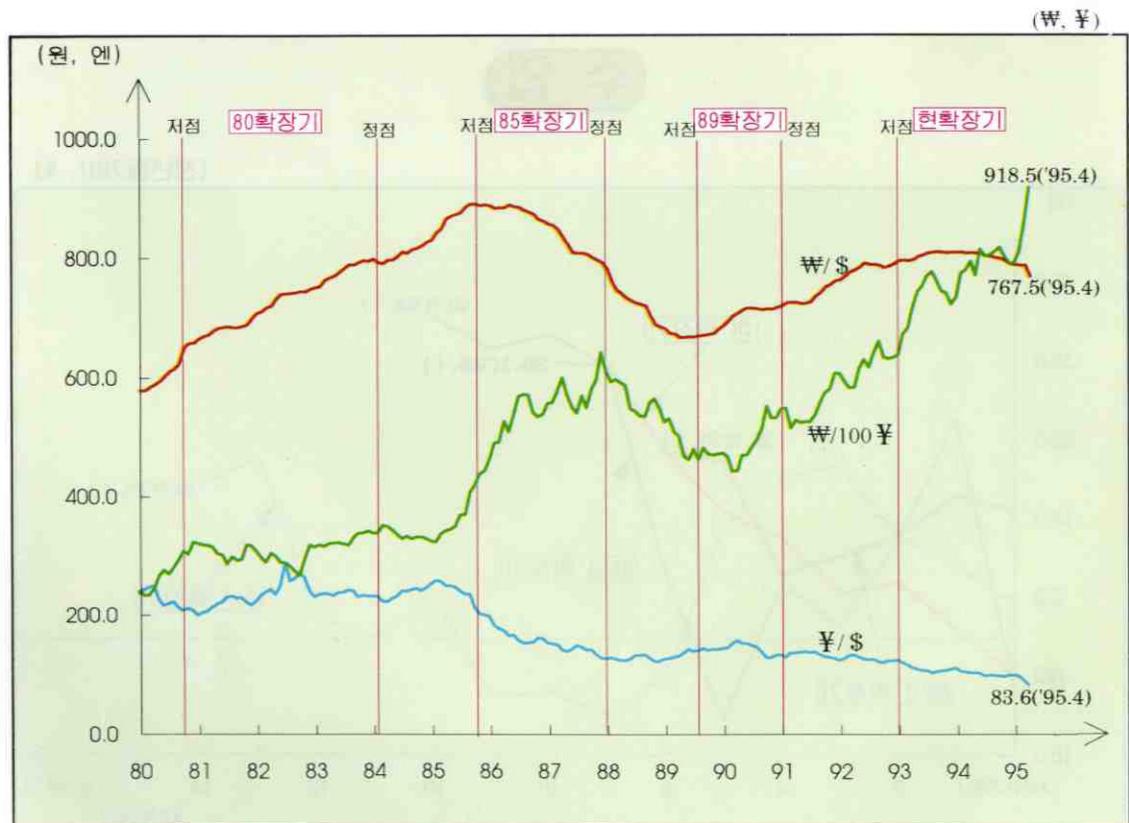


6. 환율 동향

(월평균 기준; 원, 엔)

		저점~ 6개월	7~ 12개월	13~ 18개월	19~ 24개월	25~ 28개월	29~ 41개월	국면 평균
80년 확장기	원/달러	657.8	684.3	702.7	736.9	747.5	782.5	726.4
	원/100엔	313.6	301.3	305.8	291.6	300.7	330.0	311.4
	엔/달러	209.1	225.9	229.1	257.6	253.0	237.3	234.2
85년 확장기	원/달러	888.7	884.0	859.8	814.5	792.9	-	853.2
	원/100엔	450.9	547.3	551.5	563.9	607.1	-	536.6
	엔/달러	203.1	163.0	156.7	144.8	133.7	-	163.6
89년 확장기	원/달러	673.8	707.8	714.9	-	-	-	697.5
	원/100엔	473.3	463.0	529.0	-	-	-	487.5
	엔/달러	143.0	152.3	135.4	-	-	-	143.6
현 확장기	원/달러	798.6	808.2	806.0	794.4	(779.9)	-	799.4
	원/100엔	710.7	746.9	789.9	803.3	(862.5)	-	771.5
	엔/달러	114.4	107.5	103.3	99.2	(90.7)	-	104.7

주) ()안은 저점후 27개월('95.4)까지 자료임.



원/달러



엔/달러



7. 통화 · 금융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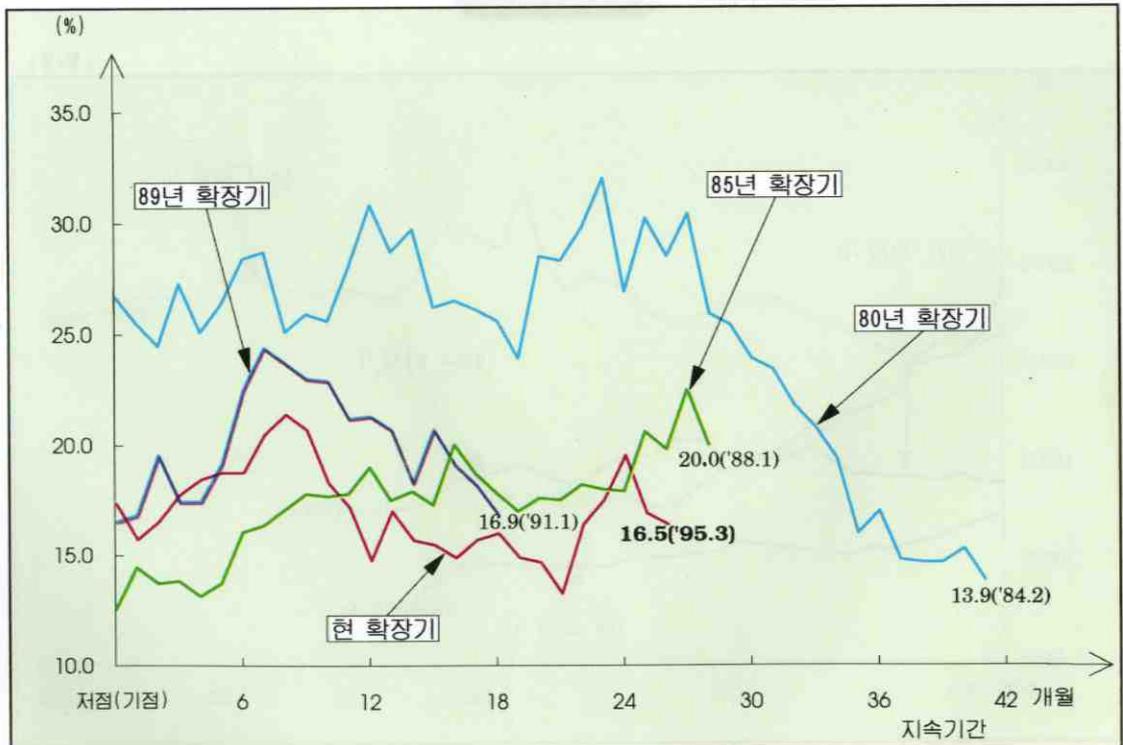
(전년동월비, %)

		저점~ 6개월	7~ 12개월	13~ 18개월	19~ 24개월	25~ 28개월	29~ 41개월	국 면 평 균
80년 확장기	총통화(M2)	26.3	27.4	27.1	28.2	28.8	18.5	24.7
	회사채수익률	26.8	22.8	24.4	15.9	15.6	14.2	19.3
	어음부도율	0.17	0.13	0.14	0.15	0.07	0.11	0.13
85년 확장기	총통화(M2)	14.0	17.6	18.2	17.7	20.7	-	17.3
	회사채수익률	13.3	12.8	12.8	12.9	12.8	-	12.9
	어음부도율	0.08	0.10	0.11	0.09	0.06	-	0.09
89년 확장기	총통화(M2)	18.5	22.8	19.0	-	-	-	20.0
	회사채수익률	15.8	15.7	17.6	-	-	-	16.3
	어음부도율	0.04	0.04	0.04	-	-	-	0.04
현 확장기	총통화(M2)	17.8	18.9	15.9	16.2	(16.7)	-	17.2
	회사채수익률	12.2	13.0	12.4	14.0	(15.2)	-	13.0
	어음부도율	0.11	0.14	0.16	0.19	(0.23)	-	0.15

주) 총통화(M2) : 평잔 기준, 회사채수익률 및 어음부도율 : 월평균 기준
 ()안은 저점후 26개월('95.3)까지 자료임.

총통화(M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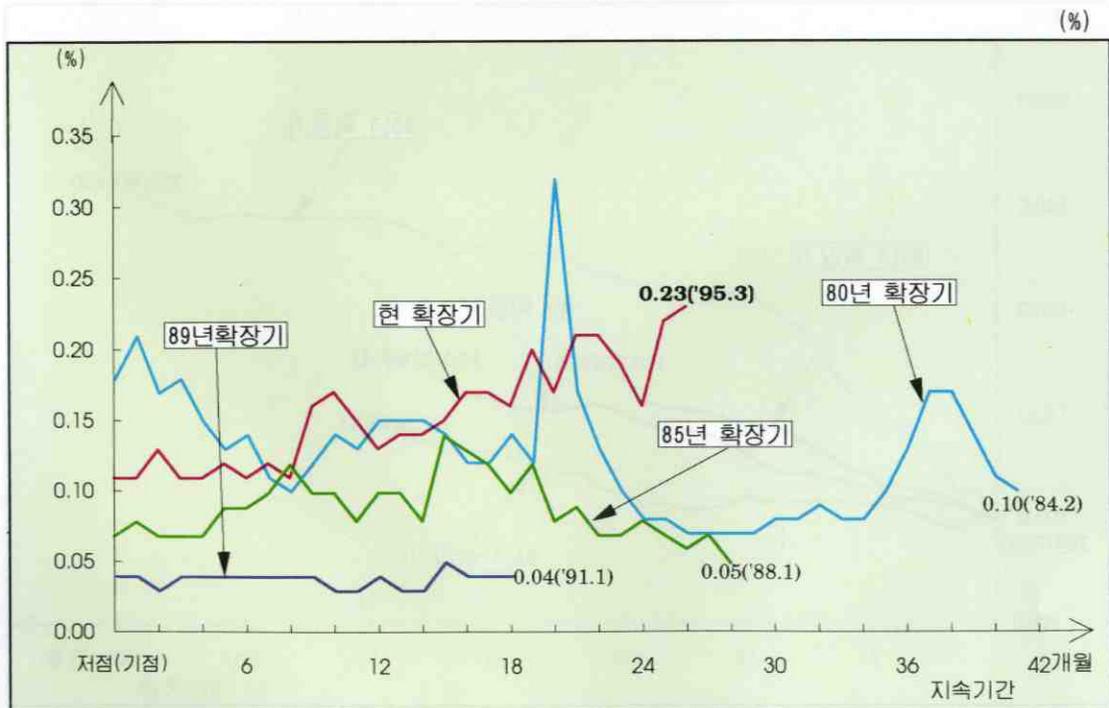
(전년동월비, %)



회사채수익률



어음부도율



8. 물가 · 고용 동향

(월평균증가율, %)

		저점~ 6개월	7~ 12개월	13~ 18개월	19~ 24개월	25~ 28개월	29~ 41개월	국면 평균
80년 확장기	소비자물가	1.80	1.55	0.17	0.45	0.28	0.20	0.67
	실업률	-	-	-	-	-	-	-
	임금상승률	21.4	19.9	19.2	15.0	12.8	11.4	16.0
85년 확장기	소비자물가	0.23	0.15	0.02	0.64	0.33	-	0.27
	실업률	5.24	4.47	4.20	3.83	3.07	-	4.27
	임금상승률	9.9	8.6	7.3	7.0	15.2	-	9.2
89년 확장기	소비자물가	0.71	0.78	0.68	-	-	-	0.73
	실업률	3.04	2.82	2.86	-	-	-	2.91
	임금상승률	25.3	16.9	14.7	-	-	-	19.3
현 확장기	소비자물가	0.54	0.49	0.63	0.17	(0.80)	-	0.49
	실업률	3.15	3.07	2.79	2.48	[2.29]	-	2.84
	임금상승률	12.4	9.0	14.7	16.2	-	-	13.1

주) ()안은 저점후 27개월('95.4)까지 자료임.

[]안은 저점후 26개월('95.3)까지 자료임.

자료) 실업률(비농가, 계절조정지수), 임금상승률: 임금(전산업)의 전년동월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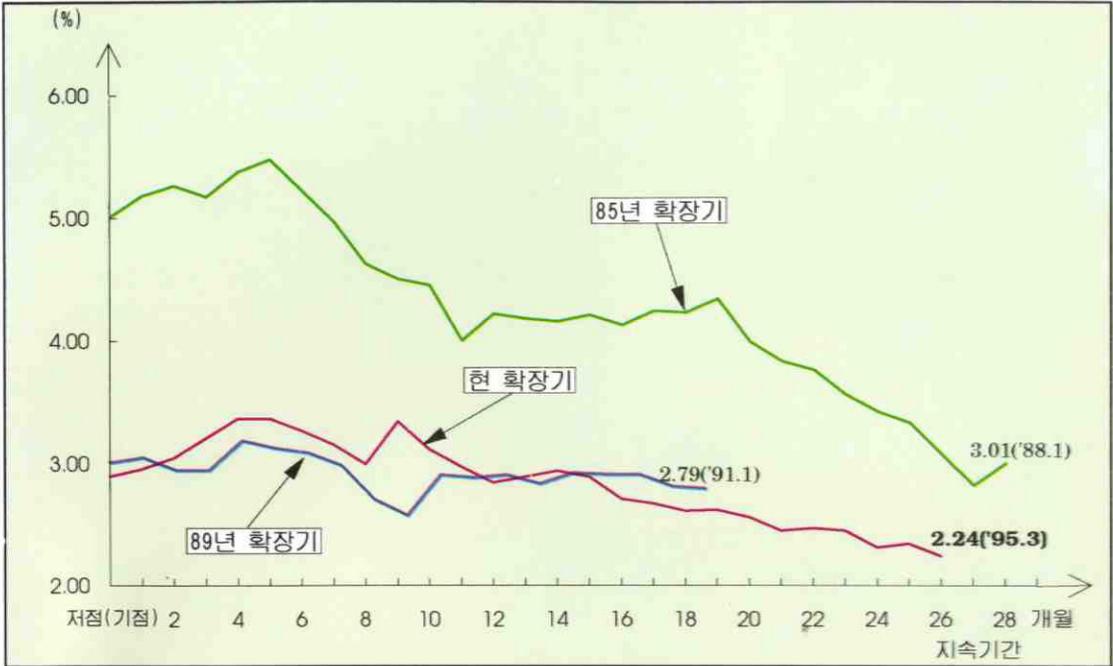
소비자물가

(지수수준, 저점=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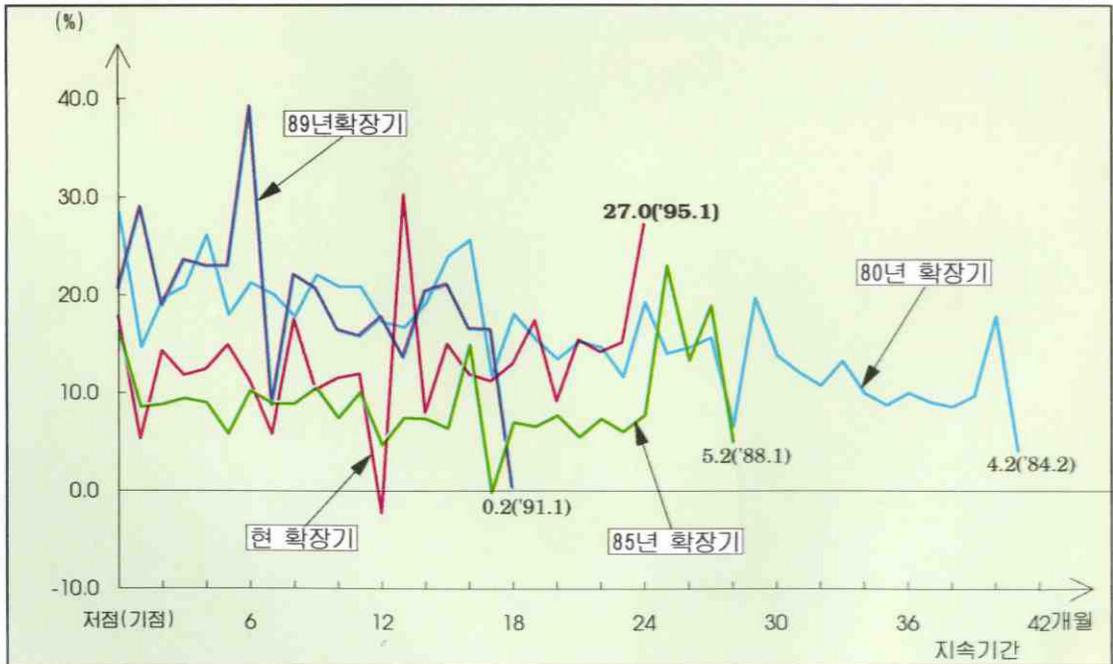
실업률

(%)



임금상승률

(%)



Ⅱ．主要經濟施策

1940 年代



년월일	경제시책	배경 및 취지	주요내용	비고
'45. 8. 15	<8·15 解放>			
'45. 9. 25	國庫金の 獨立 金庫制 實施	지방의 자금경색을 방지 하기 위한 목적의 미국식 貸上金 제도	· 정부는 재정 자금을 所要時 마다 조선은행에서 차입하고 각 지출관 명의로 국고금을 시중은행에 분산 예치	'49.6.1 페이지
'45.10. 1	公定換率	GARIOA원조 및 美軍政廳의 對民間 채무 지급에만 적용	· 환율: 15圓/달러	
'45.10. 5	小作料 三一制 施行	가혹한 高率소작료와 소작 인들의 半農奴的인 신분을 완화 ※ '45.10.5 「小作料의 三一制 법령」 공포	○ 소작료의 物納제도 - 소작료는 원칙적으로 物納 으로 하고, 경우에 따라 金 錢 납부 ○ 소작료의 「三一制」 - 소작료는 당해 耕地수확물 의 1/3이하로 하고 三一制 이상 소작료의 신규계약 체결 금지 ○ 소작계약의 준수 - 소작계약의 일방적 해제는 무효	미군정청 법령 제 9호
'45.10.20	融資許可制 (自由與信 限度制)	해방 후 방만한 은행 與信 으로부터 야기될 신용인플레 를 예방하고 자금을 효율적 으로 배분하려는 목적 美軍政廳 재무국장(Charles Gordon)의 통첩 「10만圓을	· 10만圓이상의 貸付에 있어 서는 먼저 금융기관이 용자 신청서를 접수하여 재무부 에 제출 · 재무부는 해당 행정기관을 경유, 타당성을 검토한 후 용자를 허가	

년월일	경제시책	배경 및 취지	주요내용	비고
'45.11. 2	稅制의 承繼	초과하는 與信 확장 신청에 관한 件」 관련	※ 1947.8月末 용자허가 기준 금액을 50만圓으로 인상 ○ 美軍政은 일제 말기의 稅制를 그대로 이용 - 직접세: 소득세, 수익세, 재산세 등 - 소비세: 주세, 물품세, 직물세 등 - 교통세: 인지세, 통행세, 입장세 등 - 기타 관세 및 톨세	미군정청 법령 제 21호
'45.11. 5	<朝鮮勞組 全國平議會 結成>	해방과 더불어 공산주의자들이 노동운동을 주도하면서 '45.11.1「조선광산 노동조합」 등 16개의 산업별 노조 결성	· 전국 16개의 산업별 노조로 구성된 左傾的 노동단체	
'45.12月	<Bretton Woods協定 發效>	제 2차 세계대전의 파괴와 고통에서 벗어나 인류번영을 이룩하기 위한 노력의 결실	· IMF(국제통화기금) 및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창설	'71.8.15 Bretton Woods 체제붕괴

년월일	경제시책	배경 및 취지	주요내용	비고
'46. 1. 3	貿易許可制 實施	상무부 商務局(뒤에 무역국 으로 개칭)을 무역행정 主務 機關으로 지정 ※ '46.1.3 「對外무역 규칙」 제정	· 對外去來에 대한 허가제 · 일반인의 해외여행, 통신교 류 등의 규제	
'46. 3.10	〈大韓獨立促成 勞動 聯盟 結成〉	左傾적인 「조선노조 전국 평의회」에 대항하기 위하여 결성		
'46. 6. 1	預金金利 引下	高率의 인플레이와 이에따른 예금의 감소로 악화된 금융 기관의 收支 개선 목적	· 예금금리를 해방전에 비해 0.2~0.4%p 인하 해방전 '46.6.1 정기예금 3.4~3.5% 3.2% 당좌예금 0.3% - 特當예금 2.2% 1.8% 통지예금 2.5% 2.2% 기타예금 2.5% 2.2%	'46.10.5 보완조치
'46. 7. 4	輸出入 統制	주로 재외교포와 귀환동포 의 해외재산 반입금지 목적	o 수출입금지 대상 - 국외의 개인 및 단체가 직 간접적으로 이해 관계를 갖는 수출입 - 국내외 개인·단체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국외재산, 귀금속, 地金 등	
'46.10. 5	貸出金利 引上	'46.6.1 「예금금리 인하」 조치의 보완조치 ※ 美軍政廳의 통첩인 「대출금리에 관한 件」 에 관련	o 신규 및 更新대출금리 - 군정정보증대출금리: 年5.5% - 기타대출: 最低 年 7.3% 최고 年 11% - 연체이자: 最低 年 14.3% 최고 年 18.25%	

년월일	경제시책	배경 및 취지	주요내용	비고
'46.10. 8	關稅令 改定	무역助長 및 密輸出入 制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품관세: 10% · 밀수출입 제보자에 대하여 보상금 지불(5만圓 한도) · 쌀 밀수출에 대한 엄중한 처벌 	

년 월 일	경 제 시 책	배 경 및 취 지	주 요 내 용	비 고
'47. 6. 16	朝鮮換金銀行 設立	외환관리를 美軍政廳과 조선환금은행으로 二元化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선환금은행은 미군정청 직속기관으로서 대외무역 규칙에 관한 업무를 담당 ※ '50.6.12 한국은행 설립과 동시에 일체의 외환업무를 韓銀에 이관 	미군정청 법령 제 145호
'47. 7. 15	公定換率	조선환금은행의 對美 달러 화 공정환율로서 軍政廳의 對民間체무 지급에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환율: 50圓/달러 	
'47. 8. 25	貿易關係法令 整備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산 등 6개 항과 김포공항 을 開港으로 지정 수출대금으로 받은 외화는 상품수입 결제에만 사용 	미군정청 법령 제 149호

년월일	경제시책	배경 및 취지	주요내용	비고
'48. 1月	<GATT 發效>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	· 자유무역주의를 기초로 국제 무역질서 형성	관련 '67.4.15
'48. 2月	外換預置證制度	외국환의 집중 관리 목적	· 민간무역으로부터 수취한 外換 등의 예치 · 수입대금 결제 목적으로 예입한 수출대금 등에 대하여는 예치증명서 발급	
'48. 4.14	銀行檢査制度實施	종래 금융기관업무에 대한 검사는 은행의 合併, 부정사건의 발견 등 특수한 경우에 한하여 실시 이러한 검사방법으로는 해방후의 혼란기에 행해진 대출의 적정성 여부 파악 곤란	· 각 은행과 지점은 매년 1회 이상 재무부 이재국 은행검사관으로부터 受檢 · 검사대상: 은행의 모든업무 ※ '50.5.5 「한국은행법」 제정후 은행감독원에 검사권 이양	
'48. 7. 1	自由賣買 換率	'48.2月 「外換預置證制」 실시에 따라 형성된 최초의 자유 매매 환율	· 환율: 850圓/달러	
'48. 8.15	<政府樹立>	'48.7.17 「헌법」 및 「정부조직법」 제정		
'48. 9.11	韓·美財政 및 財産에 관한 最初 協定		· 軍政기간 중 미국이 한국에 제공한 일체의 기구·물자 및 기타재산을 재수출하지 않기로 약정	조약 제1호

년월일	경제시책	배경 및 취지	주요내용	비고
'48. 9. 28	政府間 換率 策定	「韓美間 換金에 관한 잠정 협정」 체결에 따라 한국과 미국정부간 환율책정	· 환율: 450圓/달러	
'48. 12. 10	韓·美 經濟 援助 協定	미국이 마샬플랜에 의한 경제원조(ECA)를 제공하는 데 따른 雙務협정으로서 受援國의 이행사항을 규정 경제원조에서 유발될 수 있는 인플레이를 억제하기 위한 디스인플레이 정책	○ 경제안정 9원칙(Dodge Line)의 이행 - 균형예산 - 경제안정을 위하여 통화 및 금융 통제 - 외환관리 및 수출입허가제를 포함한 무역통제를 포함 - 환율설정 - 공정가격으로 식량배급 - 식량수출 - 외국인 투자 및 상사활동도모 - 수출산업 발전 - 정부소유 생산시설의 운영 또는 처리의 효율화	조약 제2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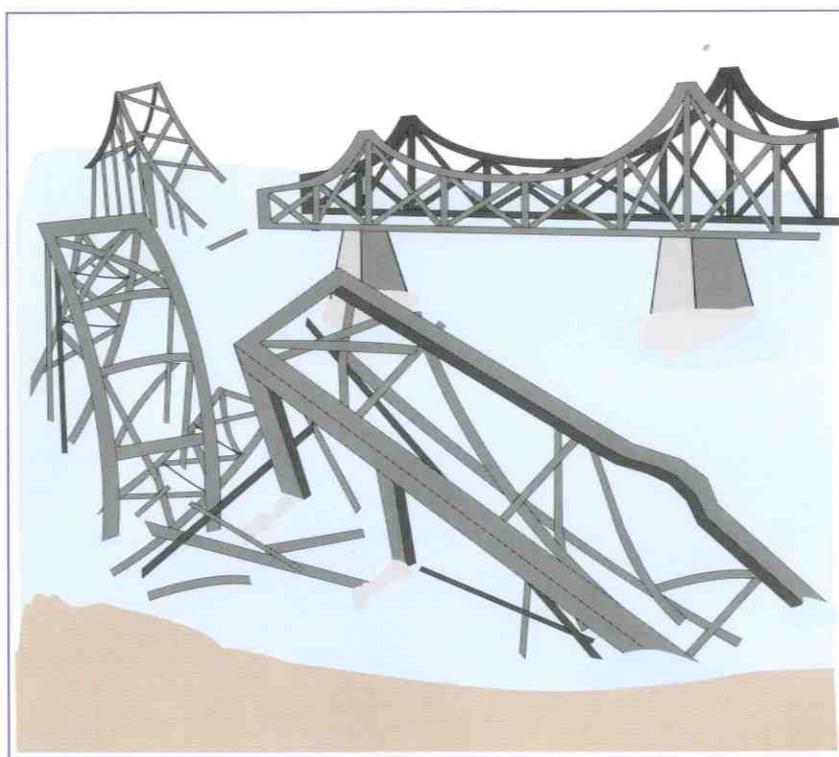
년 월 일	경 제 시 책	배 경 및 취·지	주 요 내 용	비 고
'49. 2. 1	國稅調查 實施	재정적자 누적, 인플레이, 산업활동 위축 등 경제적 혼란을 극복하고 건전 재정기를 마련 및 국민조세 부담 조정 목적 ※ 建國後 최초로 실시한 國稅 조사	○ 과세 형평 - 소득세 및 인세계통의 부담 완화 - 浮動구매력 흡수와 소비억제를 위하여 사치품 및 소비·유통면에 증과세 - 동산 및 無體재산에 대한 重課를 위하여 일반소득세와 영업세등 과세범위의 개선 - 최소한의 세금 신설과 과세 대상의 확대 - 國民皆納主義를 원칙으로 영세 소득층에 輕課하고 고소득층에 重課 ○ 과세방법 개선 - 영업세 과세방법을 前年 실적주의에서 現年실적주의로 전환 - 세법의 간소화와 민주화를 위한 세법의 통합, 분리, 명문의 간결화, 용어의 통속화 강구	
'49. 2. 15	輸入 쿼터制	수입물자의 需給을 원활히 하고 可用외환의 효율성 제고	· 정부의 物動계획에 따라 수입물자의 질과 양을 통제	
'49. 5. 17	輸出入 許可品目 發表		· 수출 33種, 수입 30種	
'49. 6. 1	國庫金の 朝鮮銀行 集中	獨立金庫制('45.9.4시행)하에서 시중은행이 국고금을	○ 국고금의 분산예치 금지 - 재무부는 매월 혹은 매 3개	

년 월 일	경 제 시 책	배 경 및 취 지	주 요 내 용	비 고
		財源으로 興信을 확장함으로써 금융질서가 교란되고 통화증발, 물가등귀 초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월씩 세출예산에 증당할 자금을 조선은행에서 일괄 차입하여 조선은행에 예치 - 5月末 현재 각 지출관 구좌를 일괄 동결 ○ 보완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급격한 국고금 집중으로 인해 야기될 시중은행의 자금경색을 감안하여 조선은행의 특별용자를 병행 	
'49. 6. 13	複數換率制度 實施	'49.6.13 「대외무역거래 및 異國換취금 규칙」 공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율의 2원화 - 정부보유 外換 공정환율: 450圓/달러 - 일반환율: 900圓/달러 	'49. 7. 17 일반환율 폐지
'49. 7. 1	金利調整	<p>'46年 金利조정 이후에도 인플레이는 종식되지 않고 은행의 경영상태도 여전히 부실</p> <p>'49년 후반기부터 ECA원조가 본격적으로 개시될 것이므로 그 受援態勢를 정비하기 위하여 금융체계를 정상화할 필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受信 金利 조정 - 정기에금금리 인상: 年 3.2% → 3.5% ○ 興信 金利 조정 - 중앙은행 再割引金利와 일반은행 금리의 과도한 격차를 축소시킴으로써 중앙은행 표준금리의 금융시장에 대한 영향력 강화 - ECA물자 受配資金 또는 정책목적 특수자금을 특별저리로 대출: 年9.85% - 당좌대월 및 延滯貸出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금리 인상 	

년 월 일	경 제 시 책	배 경 및 취 지	주 요 내 용	비 고
'49. 7. 15	稅制改編	'48. 8. 15 정부수립후 한국 실정에 부합되는 稅制를 확 립하기 위하여 美軍政下의 稅法을 정리, 개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세 및 법인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세에 포함되어 있던 법인세의 독립 - 소득세를 일반소득세와 특별소득세로 구분 - 소득세중 양도소득 과세 폐지 - 법인세율 인하: 40 → 35% ○ 간접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세를 영업세로 개편 하고 외형 표준에 의하여 課稅 - 음료세를 酒稅와 청량음료 세로 분리 ○ 신설 또는 폐지 세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설: 증여세와 면허세 - 폐지: 특별행위세, 법인 자본세, 骨牌稅, 이익배당세 <p>※ 세제 개편에 따라 제정한 稅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49. 7. 15 소득세법 8. 10 임시조세조치법 8. 13 영업세법 10. 1 유흥음식세법 10. 20 입장세법 10. 21 주세법 11. 7 법인세법 12. 20 국세징수법, 청량음료세법 '50. 2. 9 마권세법 2. 24 통행세법 	

년 월 일	경 제 시 책	배 경 및 취 지	주 요 내 용	비 고
			3.10 면허세법, 인지세법, 전기가스세법 3.22 상속세법 4.10 물품세법 5. 1 직물세법	
'49. 7. 17	一般換率 廢止	복수환율에서 단일환율제도로 환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對美달러 일반환율 900:1을 폐지하고 公定환율 450:1을 固守 	'49.6.13 시행
'49. 9. 4	輸出入 價格 算定方法 決定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 FOB가격 · 수입: CIF가격 	
'49. 9. 19	貿易業者 登錄制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역업 적격자의 등록제 실시 	

1950 年代



년 월 일	경 제 시 책	배 경 및 취 지	주 요 내 용	비 고
'50. 3. 4	經濟安定 15原則	해방이후의 惡性 인플레이를 완화하고 적자재정 억제 및 균형재정 도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정 및 금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정 및 금융의 건전화로 통화 최고발행제 堅持 - 세출을 철저히 긴축하고 회계운용을 규제 - 귀속재산 불하 등에 의한 정부수입 증진 도모 - 정부사업 특별회계와 정부 관리기업체의 독립채산제 확립 - 경비절약 및 지방과세 충실 화로 지방행정 건전화 ○ 산업생산 자본 조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저축운동 전개 및 國債 의 신속한 消化 - 민간부동자산의 생산자본화 로 기업의 자기금융력 강화 ○ 생산성 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동 생산성의 양양 및 최저임금제의 조속한 확립 	
'50. 3. 25	農地改革	韓日合併후 약 40년에 걸친 半封建的인 토지소유 관계는 생산성 低下 및 小作爭議의 구조적 원인 ※ '50.3.10 「농지개혁법」 공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耕者有田 및 농지소유 상한 제도 신설(3정보) - 정부는 自耕하지 않는 자의 농지, 최고소유한도 3정보 를 초과하는 농지 등을 유상수매하여 농민에 유상 분배 ○ 分配農地 가격 納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배농지의 地價는 5年間 均分 상환하고 정부가 지정 하는 현품 또는 대금을 정부에 납입 	관련 '50.3.10

년 월 일	경 제 시 책	배 경 및 취 지	주 요 내 용	비 고
'50. 4. 10	單一 換率制	'50. 4. 10 「외국환 관리규정」 및 「외국환 매매규정」 공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배농지에 대한 권리 제한 - 분배농지에 대해서는 지가상환이 완료될 때까지 소유권 처분이나 담보권 설정 등에 제한 · 朝鮮換金銀行에서 실시되는 圓貨경매의 가중평균치에 의한단일 환율제 채택 	
'50. 6. 12	韓國銀行設立	<p>중앙은행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여 온 조선은행(1911년 설립)은 중앙은행으로서의 신용통제권이 상대적으로 빈약하였으므로 새로운 중앙은행체제가 필요</p> <p>※ '50. 5. 5 「한국은행법」 공포(법률 제 138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립목적 - 인플레이션의 수급 건전한 금융제도의 건설 - 금융거래의 공개적 규격화, 신속·공정 - 외환의 집중 및 독점 취급 ○ 금융통화위원회 설치 - 재무부장관을 금융통화위원회 의장으로 하고 위원회의결권의 과반수를 실질적으로 정부에 부여 - 금융통화위원회의 자치적 결정권 허용 	
'50. 6. 12	外換 預置集中制度	중전 美軍政과 朝鮮換金銀行에 의하여 二元的으로 실시되어 오던 외환관리 업무를 한국은행에 一元化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外換은 한국은행 計定에 예치 · 정부 外換計定이외의 모든 예치 외환은 금융통화위원회 결정에 따라 처분 	'61. 2. 2 외환매각 집중제로 대체
'50. 6. 22	貸出 最高 限度制	한국은행 설립과 동시에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결정한	· '50. 6月末까지의 대출한도를 440억圓으로 결정	'65. 9. 30 폐지

년월일	경제시책	배경 및 취지	주요내용	비고
'50. 6. 25	<6·25 戰爭 勃發>	최초의 Ceiling로서, 방만한 여신을 억제하고 방출자금의 효율향상 도모	※ 6·25전쟁으로 일시 중단하였다가 '50年 4/4分期 부터 재개	관련 '53.10.1
'50. 6. 28	預金支拂制限	6·25전쟁 발발로 국민의 예금인출 현상이 극심하여 예금지불 제한에 관한 기본 규정 제정 (대통령 긴급명령 제 1호) ※ '50.6.28 「금융기관 예금 등 지불에 관한 특별 조치령」 제정, 공포	· 비상사태하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은행, 신탁회사, 보험회사 등 금융기관의 예금 및 기타자금의 지불을 제한	관련 '50.7.19
'50. 7. 6	駐韓美軍 및 UN軍에 圓貨 貸與	'50.7.6 「한국정부와 주한 미군간의 圓貨 貸與에 관한 협정」 체결 '50.7.28 「한미정부간 UN군 총사령관 隷下部隊에 의한 경비 지출 협정」 체결	· 韓銀이 주한 미군 등 UN군에게 圓貨를 대여 · 圓貨대여 當日에 실시되는 환율을 적용하여 상환	'52.12.15 대여 중단
'50. 7. 19	預金支拂制限 範圍 決定	'50.6.28 「예금지불제한」 조치를 구체화 (대통령 긴급명령 제 4호) ※ '50.7.19 「금융기관 예금에 관한 특별 조치령」 공포	o 예금주에 대한 예금지급기준 - 1주일 1만圓 이내 지급 - 1개월 3만圓 이내 지급	관련 '50.6.28

년 월 일	경 제 시 책	배 경 및 취 지	주 요 내 용	비 고
'50. 8. 28	貨幣 交換	敵性通貨의 붕쇄 및 통화 수축 목적으로 舊은행권을 新은행권으로 교환 (대통령 긴급명령) ※ '50.8.28 「조선은행권의 유통 및 교환에 관한 件」 공포	o 5회에 걸친 화폐 교환 ('50.9.15 ~ '52.1.16) o 제 1회('50.9.15~9.22) 및 제 2회 교환('50.10.25 ~11.14) - 新舊은행권을 무제한 等價 교환 - 교환 마감일까지 舊券의 유통 인정 o 제 3회('50.11.11~11.18) 제 4회('51.4.18~4.30) 제 5회('51.9.24~ '52.1.16) - 世帶當 2만圓까지 교환하고 그 초과금액은 지정 금융기관에 예치케 한 후 月 5만圓이내의 인출 허용 - 新舊券間 不等價 교환 사례가 유발되었으므로 3회 이후에는 교환 실시 初日부터 舊券 유통 금지 조치 ※ 제4회 및 제5회는 「재무부 告示」로 실시	
'50. 10月	貸出 事前 承認制	'50.6.28 「예금지불 제한 조치」에 근거	· 건당 5천만圓이상 대출에 대하여는 한국은행의 사전 승인	'51.4.1 페이지
'50.11. 1	換率決定	한미경제안정위원회 결정	· 환율: 2,500圓/달러	

년월일	경제시책	배경 및 취지	주요내용	비고
'50.11.16	外換 緊急措置	외환사용기간에 대한 규정 개정	· 매입일로부터 60日(경매) 또는 120日(수출)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 외환 사용 기간 연기	
'50.11.30	組稅 臨時 增徴法 制定	「6·25전쟁」으로 인한 군사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戰時稅制로 전환하고, 각종 세율 인상 목적으로 제정		'54.3.31 폐지
'50.11.30	地稅法 制定		· 토지 보유분에 대한 과세 ※ '60.12.31 「토지세법」으로 대체	'60.12.31 폐지
'50.12.1	臨時 組稅 措置法 制定		· 전쟁 재해지역에 대하여 국세징수 猶豫	'61.12.8 폐지
'50.12.1	登錄稅法 制定			
'50.12.13	<UNKRA 設置>	UN 韓國再建團		
'50.12.22	地方稅法 制定	지방재정 수입의 기본이 되는 조세의 종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	· 지방세를 보통세와 목적세로 구분 · 道 보통세: 국세 부가세와 독립세 · 市, 邑, 面 보통세: 국세 부가세, 도세 부가세, 독립세	

년 월 일	경 제 시 책	배 경 및 취 지	주 요 내 용	비 고
'51. 1. 1	組稅 特例法 制定	전쟁의 長期化 및 인플레이 격화에 대처하기 위한 목적		'54.3.31 폐지
'51. 2. 1	金融機關 資金運用 要綱	비상사태하에서 통화금융의 自主的 관리 및 자금 흡수 목적 ※ '51.2.1 「금융기관 자금 운용에 관한 임시要綱」 결정	· 금융기관의 戰時 자금운용 요령	
'51. 3. 1	營業監察制 實施		· 중소기업체를 대상으로 영업 감찰(사업자 등록)	
'51. 4. 1	貸出 事前 承認制 廢止	'50.6.28 「금융기관 예금 등 지불에 관한 특별 조치 령」에 근거하여 '50.10월 부터 대출 사전 승인 제도를 실시	· 민간대출에 대하여는 한국 은행의 대출 사전 승인 폐지 · '52. 1월부터는 특수대출 중 導入外貨 인수자금, 설비 자금 등을 제외하고는 사전 승인제 폐지	관련 '50.10월
'51. 4. 19	預金 支拂準備 制度 實施	통화관리 목적		
'51. 5. 7	租稅犯 處罰法 制定	국민납세의무의 이행을 확 보하고 의무 위반자에 대한 처벌 목적		
'51. 9. 24	財政法 制定	「예산회계법」('61.12.19) 의 前身	· 회계년도: 매년 4월1일 ~ 익년 3월31일 · 국가 歲出財源의 근거	'61.12.19 폐지

년월일	경제시책	배경 및 취지	주요내용	비고
'51. 9.25	土地收益租稅物納制	糧穀 需給조절, 軍糧米 확보 및 인플레이 억제 목적 ※ 臨時 土地收得稅法 制定 ('51.9.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산상 잉여금의 처리방법 · 재정증권의 발행 · 회계년도 독립의 원칙 · 특별 회계의 설치 · 예산 總計主義 원칙 · 國庫債務 부담행위 · 明示移越費 · 예비비의 세입세출 예산計上 ·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 · 예산의 移用 · 세입·세출 결산의 작성 및 국회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지수익에 관한 조세를 物納制로 단일화 · 임시 토지수득세법에 의하여 「地稅法」 시행 정지 	'61.12.31 폐지

년 월 일	경 제 시 책	배 경 및 취·지	주 요 내 용	비 고
'52. 1. 31	預金支給 準備金 決定	금융통화위원회 결정	· 預金種別로 10~20%의 예금 지급준비금 결정	
'52. 2. 1	無記名 定期預金制 實施	예금 비밀보호 목적		
'52. 2. 26	搗精制限	양곡절약 목적	· 搗精: 5分이하 · 釀造: 3割減	
'52. 4月	農地改革事業 特別會計法 制定		· 귀속농지 지가 상환 대금을 재원으로 농지개량 및 농촌 건설	
'52. 5. 24	合同 經濟 委員會 設置	경제원조의 효율적 활용 및 인플레이션 收拾 목적 ※ '50.5.24 「대한민국과 UN사령부간의 경제원조 에 관한 협약(한미경제 조정협정)」 체결	o 종합경제정책을 통제, 조정 하는 기능 - 미 원조물자를 최고 가격 으로 판매하여 정부의 韓銀 차입금 상환에 우선 사용 - 외국환은 경제안정에 긴요 한 판매용 물자 도입에 우선 사용 - 수출입계획 작성시 합동위 원회 건의를 존중	
'52. 12. 4	外貨貸付制度 實施	인플레 억제정책의 일환으 로서 통화의 흡수, 물가안정, 신속한 물자도입 및 산업복 구 도모	· 무역업자의 수출과 실수요 업자의 원자재 조달을 위하 여 外貨 할당	

년 월 일	경 제 시 책	배 경 및 취 지	주 요 내 용	비 고
'52.12.15	圓貨貸與 中斷	<p>※ '52.11.27 금융통화위원회는 「제 1 특별외화대부 취급 규정」 의결</p> <p>주한미군 등 UN군에 대한 원화대여는 '52.3.15현재 5,300餘億圓에 달하여 韓銀券 발행고의 80%를 차지 하였으나 상환은 부진</p>	<p>※ 제 2 특별외화대부 취급 규정('53.1月): 산업복구를 위하여 설비·기자재 등 자본재 도입용으로 외화 할당</p> <p>· UN군의 精算遲延과 적용환율의 의견 차이로 圓貨 대여 중단</p>	'50.7.6 대여시행

년 월 일	경 제 시 책	배 경 및 취 지	주 요 내 용	비 고
'53. 2. 15	緊急 通貨金融 措置	<p>전쟁으로 인한 생산침체와 통화증발로 물가가 등귀하고 구매력의 편중으로 인한 買占賣惜과 투기 극심</p> <p>그러므로 통화개혁으로 不動 購買力을 흡수하고 滯納 國세징수, 延滯貸出金 회수 및 통화의 대외가치 향상 등을 도모 (대통령 긴급명령 제 13호)</p> <p>※ '53.2.21 국회에서 「긴급통화조치령」 사후 승인</p>	<p>○ 화폐 평가절하(100圓→1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舊화폐 100圓을 新화폐 1환으로 교환 - '53.2.17 이후 한국은행이 새로 발행하는 통화만을 法貨로 유통(환화표시은행권, 錢匣표시은행권 또는 鑄貨) <p>○ 예금인출 제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3.2.17부터 9日間 은행 등 금융기관이 보유한 예금 성격 예치금의 인출 또는 지불 금지 - 일체의 舊券과 수표 등은 '53.2.17~2.25의 9日間 은행 또는 금융조합에 세대주별로 예입 -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은 세대를 기준으로 1인당 500환의 新券을 교부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는 일정비율로 지불 동결 - 동결금액은 2年 또는 3年 만기 정기에금으로 간주 <p>※ 긴급조치 시행 前日(2.14)의 舊券발행고 11,367억圓 중 11,066억圓(97.4%)이 회수되고 301억圓(2.6%) 미회수</p>	
'53. 2. 23	換率 決定	韓美 경제위원회 결정	<p>· 外資도입 油類價 환율: 60환/달러</p>	

년 월 일	경 제 시 책	배 경 및 취 지	주 요 내 용	비 고
'53. 3. 8	勞 働 基 本 法 制 定	노동자 보호 이념을 구체적 인 法制化를 통하여 실현하 고 노동조건 개선을 통해 노동자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과 국민경제발전 도모	o 「노동조합법」, 「노동위원 회법」, 「노동쟁의 조정법」 등 노동기본법 -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 체행동권을 보장 - 노동쟁의의 공정한 조정	
'53. 5.10	動 勞 基 準 法 制 定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보장, 향상 및 균형있는 국민경제 의 발전		
'53. 7.27	<6·25 戰 爭 休 戰>			
'53.10. 1	融 資 順 位 制	자금의 공급재원이 절대적 으로 부족한 실정하에서 증가하는 자금수요를 충족시 킬 수 없었으므로 우선 순위 에 따라 자금배정 ※ '50.6.22 「대출한도제 (Ceiling)」의 보완조치	o 각종 자금을 국민경제상의 중요성과 긴급성에 따라 甲, 乙, 丙 3종류로 분류 - 갑종자금: 농림업, 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업, 전매사업 등 - 병종자금: 不要不急하거나 비생산적 사치품생산업, 오락업 등 - 을종자금: 갑종과 병종에 속하지 않는 것 o 자금 차등 배정 방법 - 갑종자금: 韓銀 재할인 허용 - 을종자금: 원칙적으로 금융 기관이 자기자금으로 취 급하되 특수한 경우에만 韓銀 재할인 허용 - 병종자금: 韓銀 재할인 불허	관련 '50.6.22 '60.6월 폐지

년 월 일	경 제 시 책	배 경 및 취 지	주 요 내 용	비 고
'53.12.14	經濟再建과 財政安定計劃에 관한 合同 經濟委員會 協約	휴전이 성립되자 미국은 국방성 방위기금 중 2억달러를 한국에 제공할 계획이므로 이에따라 導入外資의 構成比, 新환을, 對充資金 活用방법 등을 협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對充資金 적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新환을 「180환/달러」로 정하고 이 환율로 對充資金을 적립 ○ 용자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對充資金에 의한 용자이의 금융기관 용자증가 한도를 年 50억환으로 제한 	

년 월 일	경 제 시 책	배 경 및 취 지	주 요 내 용	비 고
'54. 1. 23	會計年度 變更	'51.9.24 제정한 「재정법」 개정 ('54.1.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회계년도: 매년 7月1日 ~ 익년 6月30日 (중전: 4.1~3.31) 다만 1954年 회계년도는 '54.4.1~'55.6.30 	'56.6.27 再 변경
'54. 3. 3	貨幣 最高 發行制	통화증발 억제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54. 6月까지 290억환을 한도로 통화 발행 	
'54. 3. 31	稅制 改編	戰時세제를 平時세제로 환원하고 국민조세부담 적정화에 의한 稅收확보와 경제부흥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세특례법」 과 「租稅 增徴法」 폐지 소득세 등 직접세제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득세를 단일비례세인 분류소득세와 누진세인 종합소득세로 양분 법인세를 누진세에서 단일 비례세로 전환 酒稅 등 간접세제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酒稅率 인하 및 종량세 체계에 종가세 병행 면허세의 지방세 이양 직물세를 물품세에 편입 	
'54. 4. 1	韓國産業銀行 發足	'53.11.28 「산업은행법」 국회 의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업부흥국채와 산업금융 채권 발행 對充資金 및 기타 정부자금을 재원으로 용자 활동 용자사업요강결정 ('54.5.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용자한도: 소요자금의 75% 擔保査定比率: 時價의 85% 	

년 월 일	경 제 시 책	배 경 및 취·지	주 요 내 용	비 고
'54. 7. 28	經濟復興 5個年 計劃 樹立	독자적인 경제부흥 계획	· 소요재원: 29억 달러	
'54.10. 1	入札公賣에 의한 外換買入		· 입찰공매에 의하여 수입용 外換 배정	'55. 8. 30 폐지
'54.11.17	換率 決定	韓·美 경제 협정	· 公定換率: 180환/달러	

년 월 일	경 제 시 책	배 경 및 취 지	주 요 내 용	비 고
'55. 5. 31	美剩餘農産物 導入協定 調印	'55.5.31 「미국농업고역 발전 및 원조법」 제 1조에 의하여 韓·美間 잉여농산물 도입 협정 체결	· 小麥중심의 양곡과 原綿, 牛脂 등의 무상도입	'81.5.18 도입 종결
'55. 7. 1	貸出 最高 限度制 變更	'54.8.15 「은행법」 실시를 계기로 금융기관의 자율적 운영을 촉진하기 위하여 신 용 통제에 중심을 중앙은행 으로 이행	· 금융기관별 Ceiling(대출최 고 한도제) 폐지 · 한국은행의 재할인 최고 한도제로 一元化 ※ 금융기관 대출은 실제로는 '54년이후의 「국가 종합 자금계획」에 따라 한국은 행이 內示하는 부문별 대출최고 기준액 범위내 에서 운영	
'55. 8. 8	證券去來所 開場			
'55. 8. 15	單一公定換率 制定	재외공관 경비 등에 공정환 율이 적용되는 多元환율제 하에서는 輸入用 외환공급이 계획적이지 못하고 수입물가 의 안정성 결여 그러므로 경제실정에 알맞 는 환율을 책정하여 물가체 계를 조정하고 환貨가치 적정선을 회복할 필요 ※ '55.8.15 「韓·美간에 합의된 의사록 부록 A 제1조 改定の件」 관련	○ 환율 결정 - 公定換率: 500환/달러 ○ 환율유지 및 재조정 - 同 환율 유지조건으로 年間 물가 등귀율이 '55年 9月 서울 도매물가를 기준으로 25%선을 넘을 때에는 同 환율을 재조정하기로 韓美 간에 합의	

년 월 일	경 제 시 책	배 경 및 취 지	주 요 내 용	비 고
'55. 8. 22	新外換政策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허가제 폐지 - 상공부가 전담하던 수출입 허가제 폐지 - 수출허가는 세관, 수입허가는 자동 승인 품목만 한국은행에서 취급 - 무역업자의 등록제 폐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쿼타제(외화할당제) 폐지 	
'55. 8. 30	抽籤(추첨)에 의한 外換配定	'54.10.1 시행 「입찰 공매 제도」는 환율을 지나치게 인상시키는 등의 문제점 야기	· 추첨에 의하여 수입용 외환 배정	'57.5.17 폐지
'55. 8月	IMF 및 IBRD 加入	대외무역 및 외환거래에서 갖추어야 할 국제적 信義의 뒷받침		
'55. 9. 1	輸出入 節次 改正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칙적으로 자유거래제이나 일부 허가제를 가미 · 禁輸 품목 제정 	
'55. 12. 15	商業어음制 實施	금융통화위원회 결정		

년 월 일	경 제 시 책	배 경 및 취 지	주 요 내 용	비 고
'56. 5. 1	農業銀行設立	'56. 5. 1 「일반은행법」에 의하여 농업은행 설립 ※ '58.4.1 「농업은행법」 제정, 공포로 特殊銀行化	· 長期水利資金(산업은행), 농산물 수매자금 등 모든 농업자금을 농업은행이 공급	'61.7.29 농협과 통합
'56. 5. 1	油類·有煉炭 配定 中止	「연료 종합 5개년 계획」에 의거	· 油類 및 유연탄을 무연탄으로 전환	
'56. 6. 27	會計年度 變更	'54.1.23 변경한 회계년도를 再 變更 ※ 「재정법」 개정 ('56.6.27)	· 회계년도: 매년 1月1日 ~ 12月31日 · 다만 1955年 회계년도는 '55.7.1 ~ '56.12.31	'67.3.30 再 변경
'56.11.28	韓·美間 友好 通商 및 航海 에 관한 條約	무역 및 외환거래의 대외 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국제 협약	· 상호 통상관계의 助長과 互惠原則을 명문화	

년 월 일	경 제 시 책	배 경 및 취 지	주 요 내 용	비 고
'57. 2. 14	農業協同組合 設立	농촌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영세한 농민을 협동조합으로 조직화 ※ '57.2.14 「농업협동 조합법」 공포	· 사업자금 융자 및 조합원 교육	'61.7.29 농은과 통합
'57. 4. 1	支給準備金 制度 改善	종전의 지불준비금제도는 각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支準充當을 위해 韓銀 차입 에 더욱 의존하게 하고, 금융기관의 운영난 가중	○ 預金種別 기준을 변경 - 지급준비율 적용상의 예금 을 저축성예금과 요구불 예금으로 양분 - 기준을 인하 · 종전: 公金예금 30%, 정기예금 10%, 기타예금 25% · 변경: 저축성예금 10%, 요구불예금 25%	
'57. 4. 20	財政安定計劃	戰後 복구사업에 따른 재정 적자 및 극심한 인플레이션 완화 목적 ※ 최초의 年次的 경제, 財政 안정 계획으로서 4분기별로 세부적인 계획수립 ※ 통화지표(M ₁)에 의한 통화관리 시작	○ 재정의 안정 - 세입 예정액의 확보 - 세출예산 삭감(100억원) ○ 통화관리 - 규제지표: 挾義의 통화 (M ₁) ○ 통화팽창억제 - 신규대출은 다음과 같은 財源 범위내로 억제 · 민간정기예금, 대출금의 상환, 對充資金에서의 차입, 양곡관리 특별회계 에서의 차입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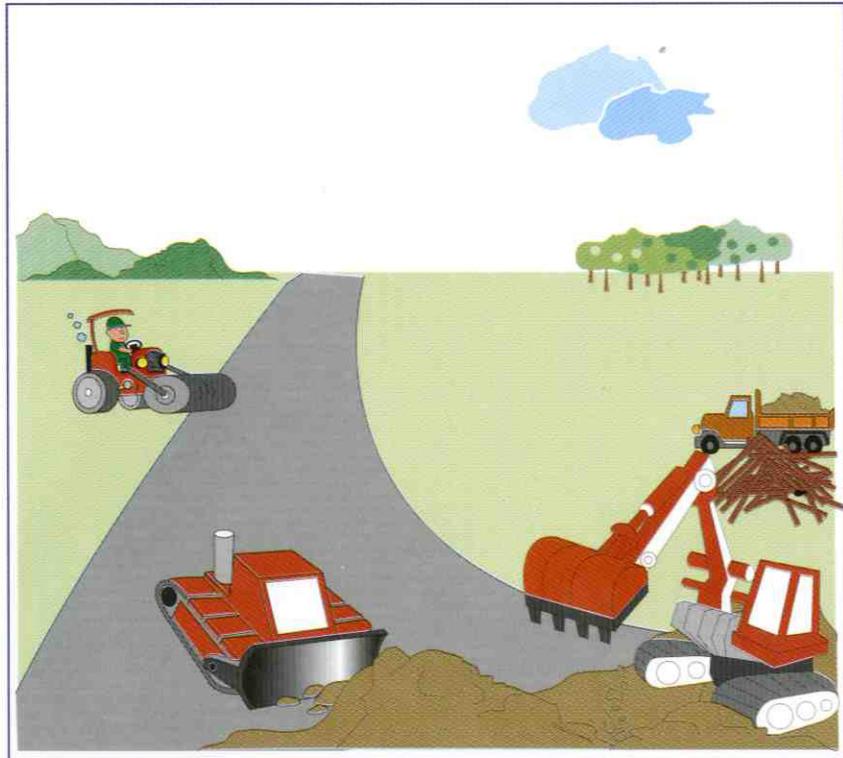
년월일	경제시책	배경 및 취지	주요내용	비고
'57. 5. 18	國債添加에 다른 外換 配定制	수입용 외환배정에 있어서 종전의 「입찰 공매제」 ('54.10.1 ~ '55.8.29)는 환율을 지나치게 인상시키고 입찰방법에 혼란 초래 「추첨제」('55.8.30 ~ '57.5.17)도 사행심 助長, 무역업자가 아닌 자에게 수입용 외화 획득의 기회를 주는 모순 등 문제점 야기	· 高率積立金(환貨) 신청순위 로 수입용외화의 배정 · 1달러당 500환의 積立率에 의한 배정신청의 총액이 배 정액을 초과할 때에는 多額 의 국채 매입 신청 순위로 결정	
'57.11. 1	米穀擔保融資 制度	농민의 米穀 投賣를 방지 하고 米價 안정 도모	· 농업은행에 의하여 '57.11월 ('58 米穀年度)부터 미국 담보 용자제도 실시 ※ '57.11.25 현재 米穀 담보 용자실적은 계획량의 1.75%인 17,500석	
'57.12. 5	計定間 移替 를 통한 外換 配定制	외환거래를 증대시키고 민간외환의 韓銀 집중 촉진	· 종래 금지되었던 수입계정간 의 移替를 정부 승인에 따라 허용 · 一般計定の 宗教달러도 정부 승인을 통해 수출달러에 이 체 가능	

년월일	경제시책	배경 및 취지	주요내용	비고
'58. 1. 2	資産再評價法 制定	기업자산의 현실적 평가로 재무제표를 현실화하고, 기업경영의 합리화 및 자본 축적을 통한 경제부흥 도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평가기한: 1年(限時法) '58.1.2~12.31 · 재평가 방법 법인: 강제 재평가 개인: 임의 재평가 · 재평가 대상: 資産 · 재평가액책정방안: 倍數평가 · 재평가 稅: 1% · 조세 감면: 법인세(소득세), 배당이자 소득세, 지방세 	'62.5.24 폐지
'58. 3.11	財政安定計劃	'57년에 착수한 재정안정 계획의 계속적 추진 및 그 목적 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歲入증대 · 주식공매, 사채발행 등으로 필요자금 조달 · 비인플레이적인 對充計定 운영 계속 · 산업은행, 농업은행 및 시중 은행 운영 효율화 · 공익사업용역 사용료 청산금 이용 	
'58. 3.18	貿易關聯法規 整備	상공부령에 의하여 수시로 조정되어 오던 무역행정을 하나의 통일된 법규로 一元化 (대통령 제 1352호, 1353호) ※ '57.12.13 「무역법」 제정 '58.3.18 동 시행령 및 「무역위원회규정」 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증진과 수입억제로 국제수지의 불균형 시정 - 신시장개척 지원 - 무역업자 등록제의 강화 - 정부관리자금에 의한 물자 도입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무역위원회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계공무원, 학계 및 언론 계와 업계대표를 포함한 위 원장 1人, 위원 10人으로 무역위원회 구성 	

년 월 일	경 제 시 책	배 경 및 취 지	주 요 내 용	비 고
'58. 8. 28	外換特別稅 新設	<p>通貨還收로 물가상승을 억제하고, 稅源의 음성화 방지 및 외환 公賣에 대한 투기와 폭리 제거</p> <p>※ '58.8.28 「임시외환 특별세법」 공포</p>	<p>- 상공부장관의 자문에 따라 무역에 관한 사항 심의</p> <p>○ 外換稅 부과대상</p> <p>- 수출달러, 軍納달러, 기타 일정 외국기관이 취득하는 외화 등을 제외하고는 모든 외화의 취득에 대하여 외환세 부과</p> <p>○ 정액세와 公賣稅</p> <p>- 외환 취득의 경우 표시가격 미화 1달러에 대하여 150환의 정액세 부과</p> <p>- 公賣외환에 대하여는 정액세외에 별도로 100%의 公賣稅 부과</p>	
'58.12.28	稅制改編	<p>大衆稅目的 稅率 인하로 민간자본 축적과 기업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 자동차稅를 신설하여 油類 소비 억제, 油類도입 외화 절약 및 稅收 확대</p>	<p>· 12개 租稅法 개정 및 稅率 인하</p> <p>· 자동차稅 신설</p>	

년 월 일	경 제 시 책	배 경 및 취·지	주 요 내 용	비 고
'59. 2. 16	貯蓄預金制度 新設	소액예금 증대 촉진	· 월이율: 0.3%	
'59. 2. 20	財政安定計劃	생산기업에 자금이 용이하 게 투입되도록 하고, 민간 저축 증대조치 강구	· 도매물가지수가 3개월간 계 속 상승시 물가안정을 위한 조치 강구 · 투자증가를 위한 국내 저축 증대 · 외환보유량 증대 · 통화량을 '57年 및 '58年 증가율 이하로 억제	
'59. 3. 1	貸出最高限度 一時 廢止	물가안정 및 시중은행 歸屬株 拂下 완료('57年)	· 금융기관 대출에 대한 부문 별 최고한도 內示制 폐지 · 금융기관 대출은 원칙적으로 저축성예금 증가 범위내에 국한 · 보완조치로서 금융기관은 매 4분기별 자금계획을 韓銀 에 제출	'60.6.1 再 실시
'59. 6月	對日通商中斷	재일동포 北送 조치로 對日 통상 중단		'60.4.19 통상 재개
'59. 11月	輸出支援金融	금융통화위원회에서 「대출 자금에 대한 수출진흥기금 융자 취급 세칙」 규정	· 수출진흥기금 20억환 조성 · 융자지원대상: 수출 L/C를 발급 받은 수출품 생산업자 또는 수출업자의 물자구입 자금	
'59. 12. 30	公務員 年金制度 實施	「공무원연금법」 및 「공무원연금 특별회계법」 국회 의결 ('59. 12. 30)		

1960年代



년 월 일	경 제 시 책	배 경 및 취 지	주 요 내 용	비 고
'60. 1. 1	定期積金新設	零細 가계저축 유치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약기간 1年 미만: 최고 年利 4% · 계약기간 1年 이상: 최고 年利 6% 	
'60. 1. 1	外資導入 促進法 制定	<p>'57년이후 미국의 원조방식이 無償援助에서 借款형식으로 전환되어 재정 소요자금 부족</p> <p>그러므로 제1차 5개년 계획 사업 소요자금 조성을 위하여 外資의 적극적 유치 필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稅制혜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된 外資에 일정기간 소득세, 법인세, 지방세 및 관세의 감면조치 등 租稅上의 특혜조치 인정 ○ 투자의 안정성 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자본에 대한 차별대우의 배제 - 투자된 자본의 회수 및 果實 송금의 보장 - 전쟁 또는 국내사정으로 인한 외국자본의 收用과 징발에 대비한 보상조치 마련 	'66.8.3 폐지
'60. 1. 30	緊急 物價抑制 對策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자재 도입 촉진 · 輸入財源 확대 및 생산책임 제 실시 	
'60. 4. 12	對日通商 再開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9.6月이후 중단된 對日 통상 재개 	관련 '59.6月
'60. 4. 19	<4·19 革命>			
'60. 6. 1	貸出 最高 限度制 再開	인플레 우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9.3.1 임시 폐지한 금융 기관 대출 최고한도제 再開 · 韓銀 재할인 한도제 폐지 	관련 '59.3.1
'60.12.31	土地稅法 制定	'50.11.30제정한 「地稅法」을 대체		'61.12.2 폐지

년 월 일	경 제 시 책	배 경 및 취 지	주 요 내 용	비 고
'61. 1. 10	韓國 經濟 協議會 發足	「전국경제인 연합회」의 前身		
'61. 2. 1	換率 決定		· 公定환율: 1,300환/달러	
'61. 2. 1	輸出金融規程 制定	수출 지원금융을 제도화하기 위하여 「금융통화 운용 위원회」에서 제정	· 수출업자가 發注에서부터 대금 회수시까지의 기간 중 필요한 제조자금, 集荷자금, 선적자금 등을 융통	
'61. 2. 2	外換制度 改編	복잡한 환율구조를 통합하여 환율 현실화를 모색하고 자원분배의 개선과 援助 자금 사용의 효율화 도모 ※ '61.2.1 「현실적 단일 환율 실시 개요」공포	○ 단일 公定환율 채택 - 환율: 1,300환/달러 ○ 外換예치 및 매각 집중제도 시행 - '50. 6월부터 시행한 「외환 예치 집중제」를 보완 - 非居住者의 외환 등을 제외한 모든 외환은 銀行率로써 한국은행에 매각, 예치 ○ 外換證書 - 한국은행에 외환을 매각한 대가로 외환증서를 교부 - 외환증서의 유효기간은 3個月이며 양도 不可 - 외환증서 소지자는 향후 매각 당시의 銀行率로 한국은행으로부터 외환 매입 가능 ○ 銀行率 - 은행률(1,300환)은 기본율(1,250환)과 證書率(50환)로 구성	관련 '50.6.11

년 월 일	경 제 시 책	배 경 및 취 지	주 요 내 용	비 고
'61. 5.16	<5·16 軍事 政變>			
'61. 5.16	金融 및 物價 凍結	軍事革命委 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동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금인출 제한: 1회 10만원 이내(月間 50만원이하) ○ 물가동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물가는 '61.5.15현재 수준 유지 	布告 2호~8호
'61. 5.20	<國家再建 最高會議發足>			
'61. 5.25	農漁村 高利債 整理	최고회의령으로 「농어촌 高利債 정리령」 공포 ('61.5.25) ※ '61.6.10 「농어촌 高利債 정리법」 공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高利債 신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高利債: '61.5.25 이전에 빌려 쓴 年利 20%이상의 부채 - 채권자 또는 채무자는 이러한 고리채를 「고리채 정리 위원회」에 신고 ○ 農協의 代位辨濟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고된 고리채는 농협이 대위변제 - 농협은 채권자에게 농업 금융 채권을 발행하고 채무자는 농협에 채무를 상환토록 조치 · 농업금융채권: 年 20% 1年 거치 4年 분할 상환 (액면 1,000환 이하는 1年内 상환) 	

년월일	경제시책	배경 및 취·지	주요내용	비고
'61. 6. 1	緊急經濟對策	「5. 16政變」으로 야기된 생산, 투자, 수출 등 경제 활동의 위축을 해소하기 위해 경제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채무자는 농협이 대위변제한 채무를 年 12%, 5年이내의 상환기간에 농협에 균등분할 상환 ※ 고리채 신고실적 537억환 고리채 판정 296억환 고리채 代位辨濟 237억환 ○ 농어촌진흥을 위한 긴급대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年利 20%이상의 高利債 정리(237억환) - 농협과 농업은행 통합 ('61.7月) - 농업자금 확대공급 (60年 28억환 → 61年 252억환) - 水利組合의 합병(1郡 1조합 원칙): 695개 → 198개 ○ 긴급실업대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 토목사업에 의한 실업자 구제 - 개인사업에 의한 歸農 정착사업 ○ 산업활동 촉진대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자금 방출(80억환) - 산업개발 회전기금 실시 (재원: 對充자금 80억환) - 금융자금 확대 공급 - 상업어음 할인제도 적극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퇴인 할인 한도: 5천만환 → 1억환 · 지불어음 발행 한도: 1천만환 → 2천만환 	

년 월 일	경 제 시 책	배 경 및 취 지	주 요 내 용	비 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수지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세가공 수출장려금 교부 (250환/달러) - 수출장려보조금 교부 (45억환) - 수출조합법 제정 - 수입금지 품목 확대 ○ 단일환율 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자재 도입은 원칙적으로 ICA자금 사용 - ICA달러 도입 품목의 관세율 50% 인하 - 수입품에 10~100%의 임시 특별관세 부과 	
'61. 7. 9	金利引上 및 支給準備率 引下	市中の浮動購買力과 私 금융시장의 자금을 금융기관으로 흡수하여 산업자금 공급 도모 한편 수신금리 조정이 금융기관 採算에 미칠 불균형을 中和하기 위하여 지급준비를 인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기관의 예금금리 인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기, 거치 및 特約예금: 각각 60%인상 - 국민저축조합예금: 68%인상 ○ 지급준비율 인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구불예금: 20% → 14% 	
'61. 7. 22	經濟企劃院 創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장, 부원장, 4국 1과 (종합계획국, 예산국, 物動 계획국, 통계국, 총무과) 	閣令 제 57호
'61. 7. 28	經濟緊急施策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업자 대책 · 재정금융의 원활화 · 단일환율 유지 · 外資도입 촉진 · 세무행정의 개선 · 경제활동의 자유분위기 조성 	

년 월 일	경 제 시 책	배 경 및 취 지	주 요 내 용	비 고
'61. 7. 29	預金, 積金 秘密保障	「예금, 적금 등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정 ('61. 7. 29)	· 금융기관에 예입한 예금, 적금 등에 관한 비밀보장	법률 제 668호
'61. 7. 29	農協과 農銀의 統合 (農業協同 組合發足)	신용업무의 농업은행과 기타 경제업무의 농업협동조합간에 有機的 협력 관계 미약 ※ '61. 6. 1 「긴급경제대책」에 의거, '61. 7. 29 舊 농협법과 농은법 폐기 및 새로운 「농업협동조합법」 공포	○ 농협과 農銀의 통합 - 새로운 농업협동조합 발족 - 새로이 발족한 농협은 舊 농협과 農銀의 조직체계를 그대로 인수 ○ 농협 신용업무의 특징 - 조합원 출자에 의하여 조직되는 조합금융기관 -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의 兼營	관련 '56. 5. 1, '57. 2. 14
'61. 8. 1	中小企業銀行 設立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한 특별법인	· 중소기업의 경제활동 지원	
'61. 8. 24	金融凍結 解除	「국가재건최고회의 포고 제 15호의 제 1호 및 제 3호 폐지에 관한 법률」 공포		법률 제 691호
'61. 9. 9	稅務士法 制定	세무사 제도의 확립 목적		
'61. 9月	<OECD發足>	경제협력개발기구	· 가입국: 미국, 캐나다 및 유럽 18개국	
'61. 10. 5	調達廳 設立			
'61. 10. 20	輸入 信用狀 開設 保證金 制度 改善	은행保有弗의 消化 촉진 및 원자재 공급의 원활화 도모	· 현재 수입업자는 수입신용장 개설 보증금을 한국은행에 전액 外貨로만 납부	

년월일	경제시책	배경 및 취지	주요내용	비고
		※ '61.10.12 「수입신용장 개설 환貨보증금에 관한 규칙」 제정 (금융통화위원회)	· 환貨보증금 및 시중은행보증 으로도 신용장 개설이 가능 토록 개선	
'61.11. 9	物價凍結 措置	「물가조절에 관한 임시 조치법」 공포('61.11.9)	· 양곡, 석탄, 연탄, 비료 등 주요품목을 '61.5.15현재 가격으로 동결	'63.1.3 후속조치
'61.11.16	通貨安定證券 發行	통화량 증가 및 예금금리 인상조치 등으로 일반은행의 예금이 증가하므로, 同 자금 의 활용책을 만들어 주는 동시에 팽창된 통화량을 흡수할 목적	· 할인율: 年 8% · 만기상환일: 발행일로부터 19日 · 총발행금액: 34억원	최초의 통안증권
'61.12. 2	<國土建設團 設置>	「국토건설단 설치법」 공포 ('61.12.2)		법률 제 779호
'61.12. 2	稅制改編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62~'66年)과 보조를 맞추 어 開發財政의 기틀을 마련 할 목적 ※ '61.12.1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 공포	○ 간접세율 인상 - 불건전한 소비세 계통의 간접세율 인상 - 영업세 과세대상 통합 (32 → 18種) 및 세율인상 ○ 직접세 정비 - 법인과 사업소득세율 인하 - 공개법인 稅부담 경감 - 주요산업 감면 범위 확대 ○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 「국세와 지방세 조정에 관한 법률」 제정	
		※ '61.12.2 제정 세법: 국세와 지방세 조정 에 관한 법률, 국세 심사 청구법 '61.12.2 폐지 세법: 마권세법, 鑛稅法, 자동차세법, 유흥음 식세법, 토지세법		

년 월 일	경 제 시 책	배 경 및 취 지	주 요 내 용	비 고
'61.12.17	外資導入 運營 方針	'61.12.8 제정 세법: 석유류세법 '61.12.8 폐지 세법: 조세징수임시조치법, 교육세법, 임시토지 수득세법 '62년부터 착수되는 제 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소요 되는 外資의 원활한 확보를 위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國稅인 토지세, 유흥음식세 馬卷稅 등을 지방에 이양 - 國稅인 鑛稅 중 鑛山稅는 영업세(국세)로, 鑛區稅는 재산세(지방세)로 흡수 - 지방세인 특별행위세, 어업 세, 교통세를 국세에 흡수, 통합 o 租稅救濟節次 및 세무행정 개선 - 「국세심사 청구법」 및 「조세범 처벌 절차법」 제정 o 사업순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개년 계획에 책정된 사업 외자 소요는 KFX로써 需給 조절 - 민간차관 및 민간外資 도입 은 제 2차 산업부문에 중점 - 5개년 계획에 책정된 사업 을 우선 선정 o 경영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의 權益에 증대한 영향 을 미치지 않는 한 외국투 자의 기업경영 참여 허용 o 지불보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차관의 지불보증은 後取擔保로 실시 - 「외자도입 촉진법」을 개 정하여 지불보증조항 신설 o 內資의 조달과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개년계획의 재정투자계획 	

년월일	경제시책	배경 및 취지	주요내용	비고
'61.12.19	豫算會計法 制定	舊 「財政法」을 대체	<p>에 책정된 사업의 소요內資는 예산에 계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同 투자계획에 책정되지 않은 민간外資사업은 민간자본 동원 원칙 <p>○ 舊 「財政法」과 다른 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산상 잉여금의 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舊法: 잉여금의 1/2이상은 잉여금 발생년도의 익년도까지 國債 또는 차입금의 상환에 사용 · 新法: 잉여금은 그 발생년도의 익년도까지 차입금 상환에 사용 - 豫算案의 국회 제출(新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는 예산안을 매년 정기국회 開會初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음 - 계속비 제도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완성에 數年度가 소요되는 공사 또는 제조 사업비를 5年이내 기간에 걸쳐 지출 - 예비비 설정 규모 명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舊法: 예비비로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 · 新法: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1/100이상 - 修正 豫算案 제도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회에 제출 중인 예산안의 일부 수정 - 보증채무 부담행위 제도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전 국회 동의 필요 - 특별기금설치 근거 신설 	관련 '51.9.24

년월일	경제시책	배경 및 취지	주요내용	비고
'61.12.31	企業豫算 會計法 制定	정부기업의 公共性과 기업성을 합리적으로 조화 ※ 舊「財政法」에서 분리 대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생주의와 複式會計 처리 방식 도입 · 원가계산 제도 확립 	관련 '51.9.24
'61.12.31	地方 交付稅法 制定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운영 財源을 교부하여 지방행정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 ※ '51.4.1 임시지방 分與稅法 '52.9.12 지방 分與稅法 '58.3.11 지방재정 조정 교부금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부세의 종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통교부세 및 특별교부세 ○ 교부세의 재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통교부세: 다음 금액의 합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업세, 입장세, 전기 가스세의 40% · 酒稅중 탁주, 약주세의 85% - 특별교부세: 보통교부세의 10% ○ 특별교부세 교부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基準財政需要의 산정방법으로 포착할 수 없는 특별한 재정 수요 - 보통교부세의 算定期日後에 발생한 특별한 재정 수요 - 자치단체의 廳舍, 공공복지 시설 등 특별한 재정 수요 	
'61.12.31	物價調節法 制定	「5·16 政變」 이후의 전면적인 물가억제를 해제하는 한편 주요 생필품가격에 대하여는 規制를 法制化 ※ 法명칭: 물가조절에 관한 임시 조치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쌀, 보리쌀, 가정용연탄 및 석탄, 비료가격 동결 · 군사혁명 위원회 포고 제6호 「물가억제령」 규정을 포함 	'73.3.12 폐지

년월일	경제시책	배경 및 취지	주요내용	비고
'62. 1. 5	第1次 經濟 開發 5個年 計劃 發表	종합경제계획의 嚆矢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의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경제적 악순환 시정 - 자립경제 기반 구축 ○ 경제성장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2~'66年 평균: 7.1% ○ 정책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생산력 증대에 의한 국민경제의 구조적 불균형 시정 - 에너지 공급원 확보 - 기간산업 및 SOC확충 - 유휴자원 활용 - 국제수지 개선 - 기술진흥 	기간 '62~'66年
'62. 1. 15	統計法 制定	각종 통계관계법령의 정비		
'62. 1. 15	利子 制限法, 證券去來法 制定			
'62. 1. 20	外換管理法 施行	<p>'61.9월 대외원조법에 의거 미국의 대외무상 원조가 감축된 반면 제1차 5개년 계획('62~'66년)으로 외환수요는 크게 증가</p> <p>그러므로 수출진흥과 수입대체산업 육성을 통하여 국제수지의 개선 및 외환의 합리적 관리가 필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外換관리체계의 일원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은행의 부분적 외환업무 취급 허용('62.4.1) - 換錢商 업무 인가 개시 - 外換需給의 효율화를 위한 외환수급계획 작성 실시 ○ 外國환 심의위원회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外換 需給계획 심의, 정부 외화사용계획 집행 및 심사 	

년 월 일	경 제 시 책	배 경 및 취 지	주 요 내 용	비 고
		※ '61.12.31 「외국환 관리법」 공포 '62.1.19 同法시행령 공포	○ 외국환매매율 및 취급수수료 ('62.4.1 시행) - 외국환 對顧客매매율, 전신 환매매율, 一覽出給換 매매 율 등 규정	
'62. 2. 3	蔚山工業地區 設定	울산공업지구 설정 및 起工式		
'62. 3. 9	農業振興廳 設立			
'62. 3.20	輸出振興法 制定	수출증대와 불요불급품의 수입억제를 통한 무역수지 개선 목적	· 수출품 제조업자에 대하여 수출용원자재 수입 특혜 · 담보력이 미약한 수출업자에 대하여 連帶保證에 의한 무역금융대출	
'62. 5.24	財産 再評價法 制定	'58.1.2제정 「자산 재평가 법」을 代替 ※ 법명칭: 재산재평가 특별조치법	· 재평가 기한 2年の 限時法: '62.5.2~'64.4.30 · 재평가 방법: 임의 재평가 · 재평가 대상: 자산, 부채 · 재평가액 책정방법: 倍數평가, 時價평가 · 재평가세(자산: 0.5%) (부채: 10%) · 조세면제: 법인세(소득세), 배당이자 소득세, 등록세, 지방세	'65.3.31 폐지→ 자산 재평가법 제정
'62. 6. 9	緊急通貨改革 (6·9 通貨措置)	5.16후 급격히 팽창된 통화 량 중 非生産的으로 退藏된 자금을 동결하여 인플레이의 顯在化를 未然에 방지	○ 화폐 평가 절하(10對1) - 「10환 → 1원」으로 평가 절하하고 「환」을 「원」 으로 변경	제 2차 통화개혁

년 월 일	경 제 시 책	배 경 및 취 지	주 요 내 용	비 고
'62. 7. 13	預金凍結解除	또한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62~'66年) 수행을 위한 장기산업 자금조달 목적 '62.6.9 「통화개혁」에 따른 예금 동결로 자금유통이 경색되고 산업활동 위축 ※ '62.6.30 저축성예금 동결 해제	○ 예금동결 - 非生産的 退職자금의 동결 · 모든 동결 예금의 전면 해제	
'62. 7. 25	零細民 對策 (當面 經濟 施策 第 1部)	도시 및 농촌지역의 영세민에 대하여 구호사업과 취업 기회 확대를 통한 생활안정	○ 無償敍護 실시 - 도시 및 농촌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無償敍護 실시 · 대상가구: 295천가구 · 所要敍護양곡: 71.9천석 · 기 간: '62.7~12월 ○ 도시 토목사업 실시 - 도시의 토지구획정리, 街路 築造, 街路포장 및 상수도 등의 도시토목사업 실시 및 실업자에 대한 취업기회 부여 · 대상지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마산 · 기 간: '62.8~12월	'62.8.10 제2부 시책
'62. 7. 31	外資導入 促進	「차관에 대한 지불보증에 관한 법률」 및 「長期 결제 방식에 의한 자본재 도입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정	○ 차관 지불 보증 - 국제수지 개선에 기여하는 사업 차관의 원리금 상환을 정부에서 지불 보증 ○ 長期결제 방식에 의한 자본재 도입 촉진	'66.8.3 관련법 폐지

년 월 일	경 제 시 책	배 경 및 취 지	주 요 내 용	비 고
'62. 8.10	當面 綜合經濟 施策 第 2部	<p>※ 兩法 모두 '66.8.3 「외자도입법」으로 대체</p> <p>생산활동의 활성화로 고용을 증대하고 경제개발사업에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 유도</p>	<p>- 국내자원 개발 사업 개시, 확장, 또는 개선 목적의 자본재 도입</p> <p>○ 가뭄대책</p> <p>- 가뭄이 심한 지역에 개간 사업 등을 시행하여 농가 소득 보완</p> <p>· 기 간: '62.8~12月</p> <p>- 가뭄으로 인한 양곡 需給 부족량 778천톤을 PL 480호 계획으로 도입</p> <p>- 釀造用, 製菓用 등 양곡소비를 억제하고 혼식을 적극 장려</p> <p>○ 농어촌 대책</p> <p>- 쌀, 보리 등 主穀에 대하여는 정부가 직접 買收하거나 담보 용자하여 가격 유지</p> <p>- 농어촌 高利債의 영세 채권자에 대하여는 농업협동조합을 통하여 一時拂로 반환</p> <p>○ 生産 增強策</p> <p>- 시설자금, 산업자금 중 未放出額의 적기 방출</p> <p>- AID 자기에 의한 원재료 수입 등 수입원료의 適期, 適量 확보</p> <p>- 공업제품의 標準化로('62年 300품목) 공산품 품질향상 및 원가 절하</p> <p>○ 商去來 촉진</p> <p>- 우량상품 전시로 국산품의 우수성 홍보</p>	'62.7.25 제1부 시책

년 월 일	경 제 시 책	배 경 및 취 지	주 요 내 용	비 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구성 생필품 및 농촌용 생산기구의 생산 장려 - 多店舖式 백화점을 단일 자본에 의한 直營體로 전환 - 수입물품을 분할 통관하여 수입업자의 세금부담 경감 및 자금경색 완화 <p>o 수출진흥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상품의 규격, 포장개선 및 검사제 강화 - 軍納확대 및 보세가공무역의 적극 추진 <p>o 금융대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증권시장의 정상화 - 상업어음 보급 및 부정어음 단속법 제정 - 저축운동의 강화 <p>o 稅制개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당이자 소득세 면세 	
'62. 8.13	政府 投資機關 豫算 會計法 制定	「예산 회계법」에 따라 정부 투자기관의 예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규정		'83.12.31 폐지
'62. 8.14	當面 經濟安定 및 物價對策 (價格統制 強化措置)	'62.7.13 「예금동결 해제」로 통화량이 급증하고 物價가 앙등 ※ 「물가조절에 관한 임시 조치법 제4조의 제1항 시행에 관한 건」 공포 ('62.8.13)	o 통화공급의 억제와 浮動자금의 흡수 - 不要不急한 재정지출의 억제 - 국유재산 매각 촉진 - 정부소유 주식 매각 - 귀속재산 불하대금 滯納 및 금융기관 연체 대출금 회수 강화	

년월일	경제시책	배경 및 취지	주요내용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험제도의 대중화 o 물자공급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3年度 원조자금 사용물자 구매가 年度內에 실현되도록 USOM 등과 협의 - 물가양등을 선도하는 물자 수입 촉진 - 국영기업체와 독과점 기업체 생산품 가격 인하 o 가격동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3종 물품의 가격 동결: 밀가루, 쇠고기, 돼지고기, 판유리, 콩, 팥, 녹두, 남자용 고무신, 여자용 고무신, 목재, 판재, 철근, 흑철판 	
'62. 8월	IBRD借款導入	최초의 IBRD(세계은행)차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철도청의 차량 구입비용 (1,400만달러) 	
'62. 9. 6	外貨表示資金供給	軍納業者 및 군납용 원자재 생산업자에 대한 금융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융자금리: 年 10.9% (수출금융과 동일) 	
'62.12.18	<브라질 이민 開始>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브라질 이민단 제 1진 부산항 출발 	

년 월 일	경 제 시 책	배 경 및 취 지	주 요 내 용	비 고
'63. 1. 3	最高價格 指定	'61.11.9 제정한 「물가조절에 관한 임시 조치법」 개정 ('63.1.3)	· 쌀, 보리쌀, 석탄, 연탄, 비료 등의 최고가격을 關稅으로 정함 ※ '63.1.8 품목별로 최고 가격 명시	'64.3.10 이후 해제
'63. 1. 5	新商法 發效	'62.1.20 제정	· 총칙, 상행위 등 5부분	
'63. 1. 9	輸出入 링크制	수출촉진 시책	· 수출실적에 따른 수입허가	
'63. 1月	混粉食 獎勵 運動	식량자급 및 쌀소비 억제 목적		
'63. 2. 1	當面 物價安定 對策	물가상승을 일시적인 현상으로 분석하고 이를 수습하기 위한 종합물가 대책의 수립 ※ '63年 물가대책위원회가 白書형식으로 발표	○ 물가상승 요인 - 농산물 減産 - 원조감소에 따른 외환사정 악화 우려 - 사치성 물품 수입 억제 - 수출입 링크제에 따른 프리미엄 발생 ○ 물가대책 수립 - 年末통화량 400억원선 유지 - 재정금융면에서의 인플레이션 억제 - 수출입 링크제도의 보완 조정 - 물자도입 移越 물량 130백만 달러 확보 ○ 물자의 품목별 수급 및 도입 계획 수립 - 국민생활품, 비료, 석유류, 原綿, 기타	

년 월 일	경 제 시 책	배 경 및 취 지	주 요 내 용	비 고
'63. 4. 1	<韓國標準 産業分類 制定>		<ul style="list-style-type: none"> o 종합물가 대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보유 쌀, 밀가루의 적기 방출 - 철강재 등 주요 원자재의 수급 조정 · 광업과 제조업에 대한 한국 표준산업분류 ※ 비제조업은 '64.4.1 제정 	
'63. 5. 31	豫備費 豫算의 總額 編成	[예산회계에 관한 특례법] 제정('63.5.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한 활동에 소요되는 예비비의 사용과 결산은 총액으로 계상 · 소 관: 경제기획원 	
'63. 7. 22	借款事業 推進 方針	외환사정의 완화를 위하여 공공차관, 외국인 투자사업을 우대하는 외자도입 정책으로 기본방향 전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차관으로 추진중이거나 앞으로 추진될 사업으로서 AID 기타 공공차관을 재원으로 하는 사업에 한해 계속 추진 · 계약보증금이 없거나 사용료를 현물 지불하는 이외의 기술원조계약 不許('63년중) · 외국의 직접 또는 합작투자 도입 촉구 · 민간상업차관 처리기준 수립 	
'63. 7. 24	綜合物價對策 7個原則	품귀현상과 가격등귀로 인한 물가체계의 불안정을 해소하고 안정기조의 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o 간접적인 방식에 의한 물가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가의 정상화와 상품의 시장유통을 촉진하고 직접적인 통제는 가급적 회피 - 정부행정력을 강화하여 가격과 유통을 조절 	'63.7.29 구체적 대책

년 월 일	경 제 시 책	배 경 및 취 지	주 요 내 용	비 고
'63. 7.29	綜合物價對策	<p>물자의 정상적인 시장유통을 촉진키 위하여 직접적인 통제는 가급적 회피하되, 행정력을 강화하여 주요 품목의 需給 및 가격 조절</p> <p>※ '63.7.24 「7개원칙」의 구체적 대책으로서 주요 식료품을 先導로 한 일반물가 상승추세에 대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정안정계획과 균형예산으로 통화가치의 안정 - 수출을 증대하는 대책을 마련하고 외화획득에 주력해서 外貨難을 해소 ○ 주요품목의 수급 조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족한 양곡은 잉여농산물 등의 도입으로 충당 - 생필품과 중요생산재는 증점적인 물가수급책을 세워 가격 안정 - 不要不急한 품목의 수급을 제한하기 위한 租稅수단의 활용 ○ 물가종합 시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定期 또는 隨時로 물가종합 시책을 발표하여 時勢의 충격적인 변동을 방지 ○ 가격 통제품목 대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곡: 外穀도입 및 주요 도시에 대한 배급제도 계속 - 석탄, 연탄, 비료, 철근, 목재, 면사, 시멘트, 설탕 등은 현재와 같은 가격통제 ○ 物資需給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필품 등 증점관리 품목을 선정, 물자수급의 원활 도모 - 소비물자 도입 억제 ○ 재정금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정 수지 균형 및 합리적인 통화량 조절 	

년 월 일	경 제 시 책	배 경 및 취 지	주 요 내 용	비 고
'63. 8.10	시멘트 統制價格	閣議에서 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國채발행을 원리금 상환에 필요한 한도로 제한 o 가격 및 유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公共料金, 官營요금 인상 不許 및 각종 협정요금 인상 억제 - 독점적 원자재 및 소비재 가격의 적정화 도모 · 시멘트의 통제가격 결정 (공장引渡가격, 도소매가격) 	
'63. 8.13	輸入信用狀 開設 保證金 制度 改善	외환 사정이 악화되므로 외환보유액 감소 억제 ※ 「은행보유 외환에 의한 수입신용장 개설 보증금에 관한 규정」 제정 ('63.8.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sance 조건의 수입신용장 개설보증금을 금융기관의 지불보증서로 대체 가능토록 조치 ※ 年末 외환보유액을 1억 1,500만달러이상 유지노력 	
'63.11.11	地方財政法 制定	지방자치단체의 財政 및 회계에 관한 기본원칙 규정		
'63.12.17	<박정희大統領 就任>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第 5代 박정희대통령 취임 · 제 3공화국 출범 	

년 월 일	경 제 시 책	배 경 및 취 지	주 요 내 용	비 고
'64. 3. 10	主要品目 統制價格 解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3.1.3 최고가격 지정된 목재, 철근, 설탕 등의 가격 통제 해제 	'64.7.8 후속조치
'64. 5. 3	基準換率 引上 과 外換證書 制度 採擇 (5·3 換率措置)	<p>인貨 가치를 實勢에 부합 시켜 수출촉진 및 수입억제</p> <p>※ 형식상 변동환율 제도로서 무역제도의 직접통제 방식을 간접통제 방식으로 전환 시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율인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最低限의 기준환율 범위내에서 환율 조정: 130원 → 255원/달러 ○ 「외환증서제도」 채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0日 기한의 외환증서가 거래되는 환시장의 시장률을 기준으로 외화 또는 외환증서의 매입률 결정 ※ 변동환율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나 재정금융상태가 취약하여 실제로는 기준 환율인 달러당 255원으로 고정 	'65.3.22 단일변동 환율제도
'64. 5. 6	換率改正에 따른 經濟施策	<p>환율의 현실화를 계기로 물가 등 경제시책의 기본방향을 제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가대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철도, 전기요금 및 석탄, 휘발유 가격 등 현행가격유지 - 통제가격 대상중 환율개정에 의하여 인가상승을 초래할 밀가루, 綿布 등 이외에는 가격 조정 不許 - 원자재, 양곡 등의 공급확대 ○ 재정금융 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정안정 계획 중심으로 긴축 재정 - 특별관세법 또는 과당이득세법(假稱) 제정 	

년 월 일	경 제 시 책	배 경 및 취 지	주 요 내 용	비 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정자금에 의하여 농업 및 중소기업에 대한 投融資 규모 확대 - 금융부문 與信증가 억제 ○ 무역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입 링크제도 폐지 및 수출보상 중지 - 求償무역은 최소한도의 수출 부진 품목에 국한 - 수입자동 승인 품목 확대 - 수출입관리 업무를 외국환 은행에 대폭 이관 	
'64. 6. 18	臨時特惠關稅法 制定 施行	수입상품의 수입 수요를 억제하고 수입업자의 과당 이윤 흡수		
'64. 7. 18	쌀 및 보리쌀 統制價格 解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3.1.3 최고가격 지정된 쌀, 보리쌀, 비료 등의 가격 통제 해제 	관련 '64.3.10

년 월 일	경 제 시 책	배 경 및 취 지	주 요 내 용	비 고
'65. 1. 26	<越南派兵 議決>	국회, 월남파병 동의안 의결		'75. 4. 30 월남 공산화
'65. 3. 22	單一變動換率 制度 實施	IMF로부터 외환시장 安定基 金用차관(Stand-by Credit, 936만달러)을 도입하고 이를 재원으로 외환증서 시장조작 을 통한 단일 변동환율제도 실시 ※ 형식적 변동환율 제도 ('64. 5. 3)를 보완하고, 직접적인 외환 통제방식 으로부터 외환증서 시장 을 통한 간접적 통제방 식으로 전환	o 환율결정 - 변동환율: 256.5원/달러 o 외환증서의 발행 및 사용 - 거주자는 외환이나 금을 대가로 외국환은행에서 외환증서(유효기간: 15日) 를 교부받고 이를 자유로이 매매, 양도 - 수입신청, 지급보증 결제 등에 외환증서 사용 가능 o 외환증서 시장 조작 - 한국은행은 계절적, 투기적 요인에 의해 외환증서의 需 給이 불균형해질 경우 시장 조작 - 한국은행은 매일 외환증서 의 시장을 상하 2% 범위내 에서 환율 결정	'80. 2. 27 폐지
'65. 3. 31	資産 再評價法 制定	자산 재평가법 운용 ('58. 1. 2 ~ '62. 5. 24) 재산 재평가법 운용 ('62. 5. 24 ~ '64. 4. 30)	· 재평가 방법: 任意 재평가 · 재평가 대상: 資産 · 재평가액 책정방법: 時價평가 · 재평가세: 3% · 조세면제: 법인세(소득세), 배당이자 소득세, 등록세, 지방세	

년월일	경제시책	배경 및 취지	주요내용	비고
'65. 4. 22	소금販賣價格自由化		· 소금의 指定 가격 해제	
'65. 6. 22	<韓·日協定 調印>	'65.2.20 「한일 기본조약」 假調印	· 한일 國交정상화 · 기본조약 등 25개 협정	
'65. 9. 22	最高利率決定	「이자제한법」 개정안 및 동법 시행령안 의결 (閣議, '65.9.22)	· 금융기관 최고이자율: 年 36.5%	'68.9.10 변경
'65. 9. 30	金利現實化	외국원조 감소에 대비한 內資 동원 목적의 高금리 정책(逆금리 체계) ※ 직접적 금융통제 방식을 간접적 통제방식으로 전환	○ 수신금리 조정 - 수신금리 최고 한도: 年利 30% - 연체금리: 年利 36.5% ○ 대출금리 조정 - 대출금리 최고 한도: 年利 25.5% - 수출금융, 産銀 및 중소기업 시설자금 등: 現行금리 에 20% 加算	
'65.11.18	<漁業水域 宣布>			대통령 고시 제 1호
'65.12.20	組稅減免 規制法 制定	조세의 減免에 관한 사항을 규제함으로써 課稅 公평과 稅收 확보 도모		
'66. 3. 3	國稅廳, 水産廳 設立			

년 월 일	경 제 시 책	배 경 및 취 지	주 요 내 용	비 고
'66. 3. 7	對日請求權 補償案 確定		<ul style="list-style-type: none"> 對日청구권 자금(推定): 총 4억 64백만엔(日貨) 	
'66. 7. 1	物價政策 樹立	제 2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 의 뒷받침	<ul style="list-style-type: none"> 3大 기본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物資需給의 원활 - 통화안정 - 유통기구의 근대화 	
'66. 7. 27	第 2次 經濟開發5個年 計劃 發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제성장률('67~'71): 年평균 7% 	기간 '67~'71年
'66. 8. 3	外資導入法 制定	<p>외자도입 관계법규간의 상호모순과 복잡성을 지양하 고 이를 통합 정비</p> <p>借款보다는 외국의 先進기 술을 도입하기 위하여 합작 투자 장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국인투자 제한 규정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 투자비율에 관한 제한 철폐 - 외국인이 국내의 법인체 또는 개인기업의 주식 및 持分을 인수하고자 할 경우 인가조건 완화 지불보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불보증 조치로 인한 每年 度 원리금 상환액은 당해년 도의 總外換 수입액의 9% 범위내로 한정 	
'66. 8. 12	<IECOK 發足>	對韓 국제 借款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참여국: 미국 등 선진 8개국 및 IMF, IBRD 등 5개 국제금융기구 	
'66. 10. 29	先輸出 金融	無 신용장 베이스인 D/P 또 는 D/A조건의 추심결제방식 수출등에 대하여 자금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융자금리: 年 6.5% 융자취급시 26%를 징수하고 수출代錢 회수시 19.5% 환불 	

년월일	경제시책	배경 및 취지	주요내용	비고
'67. 1.16	換率變動幅擴大		<ul style="list-style-type: none"> 對顧客 매도율 격차 확대: 0.6% → 1.8% 外換證書 유효기간 연장: 15日 → 30日 	
'67. 1.30	韓國外換銀行發足	'66.7.28 「한국 외환은행법」에 의해 특수법인으로 설립	· 외국환 거래와 무역금융 담당	'89.12.30 일반 법인화
'67. 3.30	會計年度變更	'56.6.27 변경한 회계년도를 再변경 ※ 「예산회계법」 개정 ('67.3.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종전: 매년 1月1日 ~ 12月31日 변경: 매년 4月1日 ~ 익년 3月31日 	'67.10.28 환원
'67. 4.15	GATT 加入	세계무역 자유화의 潮流에 참여		관련 '48.1月
'67. 6.12	外國銀行國內支店開設	금융시장 개방조치의 일환	· 美 「체이스 맨하턴」 은행 서울지점 개설	최초의 外銀지점
'67. 7.10	住宅銀行設立	한국 주택 금고법에 의하여 특별법인인 「주택금고」로 되었으며 '69.1.4 「한국주택은행」으로 명칭변경	· 庶民 주택자금의 조성과 공급, 관리담당	
'67. 7.25	輸入品目 네거티브制度 (Negative List System)	개방 경제체제로써 국내산업의 체질개선, 국제경쟁력 강화, 소비자보호 등 도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개방 품목 확대 (3,760→47,128품목) - 종전의 수입개방 품목은 계속 자유화 	상공부고시 제3189호 (수출입 기별 공고)

년 월 일	경 제 시 책	배 경 및 취 지	주 요 내 용	비 고
		또한 IMF 및 GATT 가맹국으로서 세계 무역 확대에 기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율 50%이상 품목과 외환대수 500對 1 이상 품목 o 수입금지 또는 수입제한 품목(Negative Lis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법에 따른 제한 품목 - 국민보건상 有害품목 - 국가보안상 有害 품목 - 기타 사치성 품목 등 	
'67. 7月	컴퓨터 導入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現 통계청)에서 「인구 및 주택 센서스」 자료처리를 위하여 최초로 컴퓨터 도입	· 機種: IMB 1401 (16KB)	
'67. 8月	<ASEAN 結成>	동남아 국가연합		
'67.10.28	會計年度 變更	'67.3.30 변경한 회계년도 再변경(환원) ※ 「예산회계법」 개정 ('67.10.28)	· 종전: 매년 4月1日 ~ 익년 3月31日 · 변경: 매년 1月1日 ~ 12月31日 ('68년부터 시행)	
'67.11月	稅制改編	경제개발 지원을 위해 공개 법인 육성, 저축증대 및 주요전략산업 육성 도모 또한 組稅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低소득층 부담 경감 및 高소득층 重課稅	o 법인세 및 조세 감면제도 조정 - 법인을 공개 및 非공개로 구분하고 공개법인은 低率의 차등 세율 적용 - 중요산업에 대한 투자세액 공제제도(6%) 도입 - 고정자산 내용년수 감축 및 特別償却제도(30%) 도입	

년 월 일	경 제 시 책	배 경 및 취 지	주 요 내 용	비 고
'67.11.22	彈力關稅制度 實施	<p>GATT가입, 네거티브 리스트 제도 등 무역자유화가 진전되고 있어 기술 수준이 낙후한 국내산업 보호 필요</p> <p>※ 「관세법」 개정 ('67.11.2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세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정액 이상 소득의 종합과세 - 근로소득세 면세점 인상 및 세액 공제제도 신설 ○ 酒稅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酒稅를 從量稅에서 從價稅로 전환 ○ 부당 廉賣 방지 관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관세에 附加하여 과세 ○ 긴급관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정물품의 수입이 국내 산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경우 과세 ○ 相計관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에서 보조금 등이 지급된 수입품이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될 경우 그 보조금 만큼 과세 ○ 제한적 관세 授權 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산업 보조 등의 일정 요건하에서 행정부가 과세율을 인상 또는 인하할 수 있는 제도 	
'67.11.24	換率構造變更 措置	<p>변동환율의 자동조절 기능이 작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현실수준을 반영하는 實勢 환율 모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은행이 매일 결정, 고시 하던 환율을 외환은행이 자율적으로 결정, 고시 · 한국은행은 집중기준율만을 고시 	

년 월 일	경 제 시 책	배 경 및 취 지	주 요 내 용	비 고
'67.11.29	不動産 投機 抑制에 관한 特別措置法 制定	경부고속도로 건설계획, 서울강남지역 개발계획 등에 따른 투기 조짐이 있으므로, 투기적인 부동산 투자를 억제할 목적으로 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세표준 및 세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지 양도차액의 50% ○ 과세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年이상 방치된 空地 - 건축물 면적의 10배를 넘는 건물 정착 토지 ○ 과세대상 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 부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 	'68.1.1 발효 '74.12.21 폐지
'67.12.2	外資導入 合理化 綜合 施策	<p>對外부채의 급속한 증가 추세를 억제하고 外資도입 사업의 효율적 규제</p> <p>※ '67.4.30 「외자도입 사업의 사후관리 강화와 경영합리화를 위한 지원 대책」을 경제장관 회의에서 의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外資도입 규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年度別 외자도입 규모는 외자도입에 따른 원리금 상황이 당해년도 경상 外換 수입의 9%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로 제한 ○ 민간 상업차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 상업차관을 규제하기 위하여 차관 신청인의 의무 강화 ○ 현금차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內資조달을 위한 현금차관은 재정안정계획의 범위내에서 허용 ○ 지급보증 은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급보증은행 정리 및 법적 뒷받침 마련 ○ 「외자도입법」 시행령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市銀 지불보증사업에 대해서도 財力조사 - 內國지불수단 관리강화 	

년월일	경제시책	배경 및 취지	주요내용	비고
'67.12. 5	輸出入 링크에 의한 輸出 被害補償	영국 파운드貨 평가切下에 따른 수출업자의 피해보상 목적	· 수출代金の 50%범위내에서 「링크품목」에 대한 輸入權 부여	

년월일	경제시책	배경 및 취지	주요내용	비고
'68. 1. 1	支給準備率 引下	長短期 저축성예금에 대하여 지급준비율상의 차별 폐지 및 비율 인하	○ 금융기관 최저 예금지급 준비율 - 저축성예금: 長期 18%, 短期 25% → 長短期 모두 18% - 요구불예금: 35% → 32%	
'68. 1月	<OPEC 結成>	아랍 석유수출국기구 (OPEC의 前身)		
'68. 2. 1	一般銀行에 대한 貸出 및 再割引 限度制 實施	인플레이 우려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은행의 일반은행에 대한 대출 및 재할인은 同行이 정하는 한도 범위내에서 허용 예외가 인정되는 대출(어음 담보대출): 수출어음, 外貨 표시 공급어음, 수출산업 육성어음 등 	
'68. 3. 16	實需要者の D/A輸入 許容	「수입허가요령」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A(引受渡) 수입허용 한도 - 원자재: 생산 신고량의 60% 해당 소요량 - 시설재: 自家 所要 全量 	
'68. 4. 1	與受信 最高 利子率 變更	逆金利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기예금 최고 금리인하: 年 30% → 27.6% · 與信 최고 금리는 現 수준 유지(年 26%) 	'68.10.1 변경
'68. 5. 11	造船事業 免許制 緩和	「造船공업 진흥법」 개정	· 조선사업 면허제를 등록제로 전환	

년 월 일	경 제 시 책	배 경 및 취 지	주 요 내 용	비 고
'68. 7. 3	輸入擔保金 制度 導入	外國換 거래의 합법성을 보장하고 수입수요를 억제 하여 外貨자금의 對外地금 을 제한 ※ 短期 특정외화 부채지급 준비금제를 외국환 거래 담보금제로 전환 ('68.7.3)	○ 수입담보금의 2분류 - 수입담보금을 수입신용장 개설 담보금과 無신용장 담보금으로 구분 ○ 差等積立率 - 기본관세율 등의 기준에 따라 담보금 면제에서부터 최고 200%까지의 차등 적립 률 적용	재무부 고시 제 439호
'68. 7. 4	先物換 去來 施行	수출업자의 환리스크 부담 輕減 ※ 「외국환 관리 규정」 개정('68.7.3)	· 외국환은행에 대하여 수출 계약 체결자와의 원貨 및 외국통화간의 선물환 매입 계약 체결 허용	
'68. 7. 9	輸入抑制 方案	'66年이후 수입이 급증하고 있어 국제수지 개선 및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해 수입을 억 제해야 할 필요	○ 일반수입 규제 - 250개 품목을 不要不急 품목으로 규정 - 不要不急품목은 L/C개설시 자기자본 적립률을 150%로 유지(종전 100%) ○ 단기 신용규제 - 不要不急 품목은 D/P 수입 (無신용장 支給渡) 및 BWT 거래(보세창고 入庫渡)不許 - D/A수입(無신용장 引受渡): 90日 또는 120日의 결재기간 준수 - Usance수입: 현행 적립률 30% 준수	

년월일	경제시책	배경 및 취지	주요내용	비고
'68. 8. 5	企業 畜産業 育成 施策	축산물의 需給안정 및 農家 소득 증대를 위하여 축산업 을 점차 기업 축산업으로 誘導,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기대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용 원자재를 국산으로 대체하는 경우 수출용 원자 재 수입과 동등한 금액을 용자 - 糧穀 기계류의 수입대체 촉진 ○ 기업 축산 개인 또는 법인체 에 대한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공유지의 우선 대부 또는 불하 - 장기자금 우선 대부 - 사료를 연중 평균가격으로 공급 - 組稅減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5년까지 소득세, 법인 세, 영업세를 전액 감면 · '76~'78년에는 50% 감면 	
'68. 8. 22	公認會計法人 制度 導入	「공인회계사법」 개정 ('68.8.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인이상의 공인회계사 단체 에 대하여 공인회계사 자격 부여 · 외국 공인회계사의 국내진출 허용 	
'68. 9. 16	農協預受金 差等 支給準備率	농협에 대하여는 일반금융 기관보다 유리한 차등 지급 준비율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금융기관에 대한 기준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축성예금: 18% - 요구불예금: 32% ○ 농협예수금에 대한 기준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축성예금: 15% - 요구불예금: 25% 	

년 월 일	경 제 시 책	배 경 및 취 지	주 요 내 용	비 고
'68.10. 1	與受信 最高利子率 變更	逆金利체계를 시정하기 위 해 與受信 최고금리를 동일 하게 下向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기예금 최고금리 인하 年 27.6% → 25.2% 與信 최고금리 인하 年 26% → 25.2% 	'69.2.3 변경
'68.10.10	<住民登錄證 制度>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새로운 「주민등록법」 에 의하여 주민등록증 휴대 의무화 	
'68.11. 8	資本市場 育成法 制定	<p>자본시장 정책을 종합적으 로 집약한 최초의 법률로서 근대적 자본시장제도 도입 목적</p> <p>※ 「자본시장 육성에 관한 법률」 국회의결 ('68.11.8)</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본시장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식분산 및 투자여건조성 - 기업 공개 유도 ○ 한국투자 개발공사 설립 ('68.12.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가증권 인수 매매 - 주가안정을 위한 시장조절 - 증권담보금융 및 증권신탁 - 자본금: 30억원 	
'68.12.10	韓國信託銀行 發足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單位運用 신탁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위운용 신탁 모집: '68.12.10~'69.1.10 - 6種의 수익증권 발행 	
'68. 12月	國富統計調查 實施			제 1회

년월일	경제시책	배경 및 취지	주요내용	비고
'69. 1.10	輸出保險制度 施行	「수출보험법 시행령」의결 ('69.1.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 수출보험에 의한 손실 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시설 및 그 부분품 - 특정 국가에의 수출을 위하여 생산된 화물 ○ 수출 금융보험에 의한 손실 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계약이나 생산, 가공 등이 시기적으로 집중되는 화물 ○ 中長期 延拂 수출보험에 의한 손실보상: 자본재 	
'69. 1.23	쌀의 消費代替 促進 施策	쌀소비 절약을 목적으로서 「양곡관리법」에 근거한 행정 명령 발표('69.1.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음식점, 여관, 호텔 등 모든 음식점소에서는 飯食에 25%이상 보리쌀이나 麵類를 포함하여 판매 · 모든 음식점소는 수요일과 토요일 오전 11시~오후 5시에는 쌀을 원료로 하는 飯食 판매 금지 · 관공서 및 국영기업체 구내 식당에서는 쌀을 원료로 하는 飯食 판매금지 · 엿제조업소에서는 고구마, 감자류, 國內產 옥수수이외의 糧穀은 사용금지 	
'69. 1.26	輸出金融單價 引上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금융 단가 10%인상: 200원 → 220원/달러 	

년 월 일	경 제 시 책	배 경 및 취 지	주 요 내 용	비 고
'69. 1. 29	地方 公企業法 制定	지방자치단체가 경영하는 기업의 조직, 재무, 기타 경영 기준에 관한 사항 규정		
'69. 1. 30	外國人 投資 誘致增進과 投資企業의 育成 施策	質的 규제를 통한 합리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입의 허가 확인 업무 및 通關절차의 간소화와 신속화 · 노사분규의 사전방지책 강구 · 외국인의 투자업무를 위한 창구 일원화 · 부분품의 면세수입 범위 확대 	
'69. 2. 1	證券去來制度 改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清算거래 제도를 폐지하고 보통 거래제도 실시 	
'69. 2. 1	쌀값 統制	'69年 中의 쌀값을 1가마 5,350원내에서 안정시키기 위하여 「양곡 관리법」에 근거한 행정명령 발표 ('69.1.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 부산시, 대구시에 반입되는 모든 쌀은 당해지 역 정부미 반출가격 범위내 에서 農協 供販場에 賣渡 · 농협 공판장은 買收한 쌀 전 량을 공판장에 등록된 소매 상에 대하여만 판매 · 공판장에 등록된 소매상은 공판장 이외 장소에서는 쌀 구매 금지 · 등록된 소매상은 농협으로 부터의 구매가격에 100ℓ 당 220원을 加算한 가격 범위내 에서 판매 	'69.3.11 통제 완화 '70.11.1 전면 해제
'69. 2. 15	道路公社, 地下水開發 公社 發足	'69.1.17 「한국 도로공사 법」 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로공사: 유료도로의 설치 및 운영 · 지하수개발공사: 지하수 (농업용수) 조사 및 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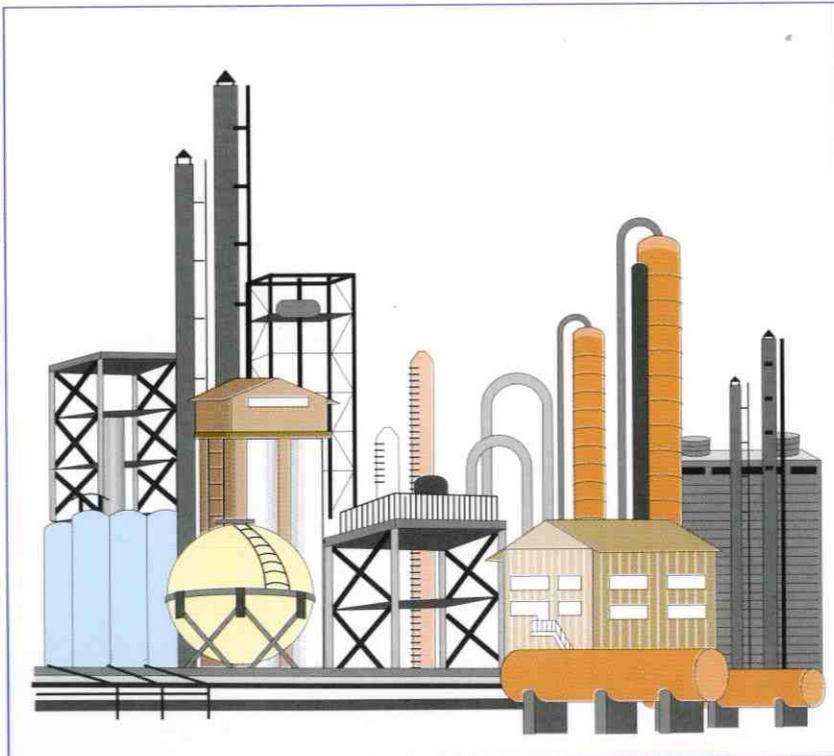
년 월 일	경 제 시 책	배 경 및 취 지	주 요 내 용	비 고
'69. 2. 21	外國銀行 國內支店 外貨貸出實施	외국은행의 자금으로 수출 산업용 시설재 도입 지원	· 外貨대출대상: 수출산업의 시설재 수입대금 결제 등 · 용자기간: 2年6月이내	
'69. 2. 21	外貨 與 受信 最高金利調整	국제 금리 변동을 감안	○ 외화 여수신 업무 최고금리 인상 - 정기에금: 年 7% → 8% - 외화대출: 年 7.5% → 9%	'69.6.20 재조정
'69. 3. 3	<家庭儀禮 準則 制定>	국민생활 합리화와 관습의 순화 목적		
'69. 3. 11	쌀값 統制緩和	'69.2.1 「쌀값 통제 시책」	· 서울, 부산, 대구 지역의 쌀값 통제를 우선 부산지역 부터 단계적으로 완화	'70.11.1 전면 해제
'69. 3. 31	<韓·美間 衛星直通電話 開通>	'68.6.3 韓日間에 개통된 OH스캐터 통신 중계로 太平 洋上の 통신위성 이용	· 위성통신 8회선 (중전 단파무선 6회선)	
'69. 4. 1	輸出 金融 金利 引下		· 수출금융 금리 인하: 年 25.2% → 12%	
'69. 4. 11	政府 借入金 金利 引上	금리체계의 현실화 및 韓銀 차입금 남용 억제	· 정부차입금 금리 인상: 年 2% → 3.5%	
'69. 6. 1	外貨 與 受信 最高利率 調整	국제 긴축금융 기조에 따른 국제금리 상승 감안	· 정기에금: 年 8% → 11% · 외화대출: 年 9% → 12%	

년 월 일	경 제 시 책	배 경 및 취 지	주 요 내 용	비 고
'69. 6. 27	本源通貨에 의한 通貨規制	IMF가 본원통화(Reserve Base)의 일부인 중앙은행 국내 純資産을 일정수준으로 유지하도록 권고함에 따라 '69年 하반기부터 본원통화를 통화지표로 채택	· 본원통화(리저브베이스)규제 방식에 의거하여 '69年度 재정안정계획 확정	'69.11.6 변경
'69. 7. 11	韓國 輸出入 銀行 設立	「한국 수출입은행법」 국회의결('69.7.11)	· 중장기 수출입 금융 전담 · 자본금: 300억원 (전액 정부 출자)	
'69. 7. 11	證券投資信託 制度 導入	「증권 투자신탁업법」 국회의결('69.7.11)		
'69. 7. 31	外貨 積金制 實施	派越기술자 등 해외취업자 의 외화예치금 유치 목적	· 적립식 외화 정기예금 제도 · 외화 정기예금 최저 단위 인하: 1천달러 → 1백달러	
'69. 7월	<아폴로宇宙船 달 着陸>		· 美 우주선 아폴로 11호, 달착륙에 성공	
'69. 8. 6	統計業務의 一元化		· 한국은행 및 산업은행 통계 업무를 경제기획원 조사통계 국에서 흡수하여 일원화	'70.4月 시행
'69. 8월	輸出用 施設材 輸入 代金 融資	수출 전환 업체의 시설 현대화 촉진 ※ 「외화표시 취급 규정」 개정('69.8월)	· 수출, 加工수출, 외화표시 軍納산업용 시설재의 수입 대금 용자	

년 월 일	경 제 시 책	배 경 및 취 지	주 요 내 용	비 고
'69. 9. 15	住宅福券 發行	주택복권 發賣로 마련한 기 금으로 서민주택자금을 용자 할 계획(한국주택은행)	· 액면가액: 100원 · 1등 복금: 3백만원	
'69. 10. 3	<SDR 創出>	金, 달러貨, 파운드貨 등을 강화하여 새로운 국제 결제 수단을 만들어 내기 위한 목적 ※ IMF 제24차 총회에서 의결	· 1SDR(特別引出權) = 金 1온스(35달러) · '70年~'72年間 35억달러의 SDR창출	
'69. 10. 23	輸出自由地域 設置	'69. 9. 16 「수출자유지역 설립 방안」 확정 ※ 「수출자유지역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의결 ('69. 10. 23)	· 마산에 「수출 자유지역」 설치 · 수출 자유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하여 租稅감면	
'69. 11. 3	安定基盤 構築을 위한 綜合對策	고도성장을 지속하기 위한 확대 재정으로 경기과열현상 이 초래되고, 수입품을 포함 한 주요물자의 품귀 및 가격 양등	o 종합대책 - 소비절약 및 투자억제 - 外資사업의 엄격한 선정 및 투자 심사제도 도입 - 우대금리제도 개선 등 - 환율인상: 291.4 → 304. 4원/달러 o 물가대책 - 越冬 생필품 물량확보와 가격안정 - 은행의 신규대출 규제 및 회수 강화 - 不要不急한 고층건물의 건축 규제	

년 월 일	경 제 시 책	배 경 및 취 지	주 요 내 용	비 고
'69.11. 6	國內 與信에 의한 通貨規制	'69年 하반기부터 본원통화 를 통화지표로 채택 그러나 기업투자 수요의 효율적 규제와 이를 통한 국제수지 개선이 요구되므로 국내투자와 직접적 관계가 있는 금융기관 여신을 규제 할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격상승 물자 수입 - 수입물자의 가격안정에 대해 관세율 조정 - 주요물자의 비축확대 <p>○ 통화규제 방식 변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원통화(Reserve Base)에 의한 통화 규제방식을 국내 여신(Domestic Credit) 규제방식으로 변경 - 규제기준기간 · '69.7.1 ~ '70.6.30 	관련 '69.6.27
'69.12.31	外貨國債 發行制度마련	「外貨국채 발행에 관한 법률」 제정('69.12.31)으로 外債발행을 통한 외화자금 조달을 법적으로 뒷받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外債발행을 통해 조달된 外貨자금은 「외국환 평형 기금」에 편입하여 운용 	

1970 年代



년월일	경제시책	배경 및 취지	주요내용	비고
'70. 1. 7	經濟安定對策	'69.11.3 「안정기반 구축을 위한 종합대책」의 보완대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o 경제성장률의 하향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과수요를 억제하기 위하여 성장률 하향조정: 15.9%('69) → 10%('70) - 국내與信 증가율 하향조정: 59.8%('69) → 32.3%('70) o 물가안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생필품 및 공업용 원자재의 비축 확대 - 原木 등 주요원자재의 관세를 減免하여 가격 안정 	
'70. 1. 9	輸出金融單價 引上	'69.11.3 「안정기반 구축을 위한 종합대책」에 따른 환율인상을 감안	· 수출금융단가: 220원 → 240원/달러	
'70. 1.27	農村近代化 促進法 施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진흥공사 설립 · 농업진흥채권 발행 	
'70. 4. 8	<臥牛아파트 崩壞>	不實工事に 기인		
'70. 5. 9	商業어음 再割引對象 擴大	상업어음 활용을 촉진할 목적(한국은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업어음 再割引 대상 선정 방법 변경: Positive → Negative제도 · 재할인 한도 증액: 80억원 → 100억원 	
'70. 7. 7	<京釜高速道路 開通>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길이: 428km · 총사업비: 429억 7천만원 	

년 월 일	경 제 시 책	배 경 및 취 지	주 요 내 용	비 고
'70. 7. 8	徵發 補償證券發行	「徵發재산 정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에 따라, 軍에 의해 징발된 재산을 보상하기 위한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행액: 230억원 · 발행방법: 被徵發者에게 징발재산의 買收 대금 및 징발 해제 보상금으로 교부 · 발행조건: 年利 5%, 1年거치 10年間 均分상환 · 발행기간: '70.4.1~ '71.12.31 	
'70. 8.12	糧穀管理基金 設置(二重穀價 制度)	<p>정부의 양곡 수매가격이 생산비에 미달하므로 정부는 의무적 수집에 의하여 양곡을 확보하는 실정</p> <p>이러한 低穀價 정책에 따라 소득이 농가에서 非農家로 이전하고 양곡생산농가의 생산의욕 감퇴 및 양곡 공급 부족 초래</p> <p>※ '70.8.12 「양곡관리 기금법」 제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곡관리기금으로 糧穀 收買 ○ 農工竝進을 위한 二重穀價 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收買價를 대폭 인상하여 농가소득 증진 - 가격인상 효과가 소비자에게 파급되지 않도록 放出價는 低率로 인상, 조정 	
'70. 8.12	大企業의 銀行 貸出金 延滯 整理方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7개 대기업에 대하여 대출 延滯額 200억원을 감도록 비업무용 부동산 처분 지시 	
'70. 8.26	關稅廳 開廳			
'70. 9.26	水産用 油類稅 免稅	漁民의 소득증대와 수산업 육성시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유 20%, 경유 40% 등을 부과하는 水産用 油類稅를 전액 免稅('71年 시행) 	

년 월 일	경 제 시 책	배 경 및 취 지	주 요 내 용	비 고
'70.11. 1	쌀값 統制 全面 解除		· '69.5.11시행한 쌀값 통제를 전면 해제	
'70.12.18	4大江 流域 綜合開發計劃 確定		· 10개년 개발계획 ('71~'81年) · 소요재원: 3,140억원	

년 월 일	경 제 시 책	배 경 및 취 지	주 요 내 용	비 고
'71. 2. 18	第 2次 內國 信用狀 制度 新設	수출용 원자재의 국내 조달 을 촉진시켜 국제수지 개선 을 도모 ※ 「수출금융 규정」 및 「내국 신용장 취급 규 정」 개정('71.12.18)	· 내국 신용장(Local L/C)의 수혜자가 국내에서 원자재를 매입하는 경우 외국환 은행 에 「2차 내국 신용장」 개설 가능 · 2차 내국 신용장 受惠者도 수출금융 지원 대상에 포함	
'71. 3. 4	輸出用 原資材 準備 生産 資金制 新設	수출용 원자재의 국내조달 을 촉진시켜 국제수지 개선 을 도모 ※ 「수출용 원자재 생산 및 비축자금 용자 취급 규정」 개정	· 국산 수출용 원자재 생산업 자에 대하여 수출업자와의 공급계약체결 이전단계에서 도 일정 범위내의 준비생산 자금 용자 · 용자단가: 260원/달러 · 용자기간: 90日 · 금리: 年 24%	
'71. 3. 11	KDI 設立	한국개발연구원		
'71. 6. 28	換率引上 및 金利引下	'60年代 개발 需要期에 국내 물가상승에 比하여 환율이 낮게 유지되어 국내 산업의 대외경쟁력을 약화 특히 수출용 원자재 수입은 관세감면 등의 혜택과 함께 환율면에서도 유리하여, 수입 대체산업 육성과 국제 수지 개선을 저해하는 요인 으로 작용	o 환율 현실화 - 환율 12.9% 인상: 328.9 → 371.6원/달러 ※ '65년이후 5年間 한국, 미국, 일본 등의 물가 상승률 감안 결정 o 환율인상 보완조치 - 수출금융 單價는 종전 수준 으로 고정: 260원/달러 - 수출용 원자재의 수입금융 금리 인상: 6.0% → 9.0% - 수출용원자재 수입 담보금 10% 積立 제도 신설	

년 월 일	경 제 시 책	배 경 및 취 지	주 요 내 용	비 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관 및 수출용 시설재 外貨貸付中 '72.3月까지 到來하는 원리금 상환 부담 분에 대하여는 환율인상 차액 해당자금을 일반금융 자금으로 지원 o 금리인하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기예금: 年22.8%→20.4% - 대출금리: 年24.0%→22.0% o 조치보완 종합대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축물자제도 활용 - 양곡 등 원자재 공급 확대 - 공정거래법 제정 - 延滯金融 회수 - 부동산투기 억제 및 소비 절약 	
'71. 6.30	輸入마진 積立	'71.6.28 「환율인상」 관련 조치	· 수출용 원자재 輸入時 10% 의 마진 적립	
'71. 7.30	밀가루 告示價格 解除	'69.11.9 제정된 「물가조 절에 관한 임시 조치법」에 의하여 쌀, 보리쌀 등 주요 품목과 함께 告示가격으로 통제 다른 품목들의 告示가격은 '64.3月이후 해제	· 밀가루에 대한 최고 가격 ('62.6.9 현재 時價수준)해제	
'71. 8.15	<Bretton Woods 體制 崩壞>	미국의 만성적 무역적자 등 으로 인하여 기축통화로서의 달러화 가치 불안정	o 美달러貨의 金兌換 정지 - 「1달러 = 金 0.88671g」의 金本位制度 폐지	

년 월 일	경 제 시 책	배 경 및 취 지	주 요 내 용	비 고
'71. 9. 4	※ 닉슨 독트린 物價安定 綜合對策	'71年 상반기 물가상승률을 3%이내로 억제하려 했으나 油類값과 환율의 인상으로 물가억제선 붕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달러화의 金兌換 정지에 따라 각국은 달러貨에 연계된 고정환율제도를 폐지하고 변동환율제도로 전환 ○ 당면대책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가절하 촉구와 독과점 가격의 인상 방지 - 생산자금 및 유통자금의 지원과 공급의 원활화 - 쌀값 안정 및 연탄, 油類, 소금 등 越冬物資의 확보 - 환율인상과 관계없는 물자의 가격인상 억제 ○ 長期대책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성장률의 안정화 - 주요 外資도입 사업의 타당성 조사를 위한 투자심사제도 확대, 강화 - 건전재정 유지 및 통화량 적정 공급 - 유통과정에서 中間商人의 과다한 이익 배제 등 ○ 물가안정 실천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당한 가격인상 不許 및 買占賣惜 금지 - 市道別 물가단속반 구성 - 官許 및 協定料金 인상 당분간 不許 	
'71.10.16	韓·美 纖維協定 締結	韓·美 양국간의 섬유류 수출 자율 규제에 관한 협정 (假調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제대상 품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으로 수출하는 섬유류 제품중 인조섬유, 毛제품 및 綿제품 	

년 월 일	경 제 시 책	배 경 및 취 지	주 요 내 용	비 고
'71.11.1	支給準備率 引下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제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조섬유 및 모제품: '71.10月 ~ '76.9月 -綿제품: '72.1月 ~ '76.12月 ○ 기준 「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조섬유 및 모제품: 320백만 YD² - 면제품: 70年中 수출실적량 ○ 年 「쿼터」 증가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조섬유: 年평균 75% - 모 제 품: 年평균 1% - 면 제 품: '71年 15%, '72年 이후 5% · 저축성예금: 16% → 12% · 요구불예금: 26% → 18% 	
'71.12.28	地方教育財政 交付金法 制定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기관 설치, 운영에 필요한 財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交付하여 교육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交付金の 종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통교부금 및 특별교부금 ○ 交付金の 財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통교부금: 다음 금액의 합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무교육기관 敎員의 봉급 (수당포함) 전액 해당금액 · 公立의 各급학교 교원 봉급의 50%(서울시 제외) · 內國稅 총액의 11.8% - 특별교부금: 보통교부금의 	

년월일	경제시책	배경 및 취지	주요내용	비고
'72. 1.17	與受信 金利 引下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기예금: 年 21.3%→17.4% · 與信금리: 年 22%→19% 	
'72. 2.14	景氣回復을 위한 當面 經濟施策	국제경제 여건의 급격한 변동으로 기업활동 침체 및 국제수지 악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합리화 특별자금 조성 (100억원) - 단계적인 금리인하 - 長期低利의 산업자금조성 및 공급 - 短資市場 개발, 주식공개 및 社債발행 촉진 등 직접 금융 확대 ○ 國內需要 振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마을 및 농어촌 소득증대 사업 早期 추진 - 노동집약적 공공사업 早期 집행 - 건축활동 제한의 완화 (부동산투기 억제세의 控除率 인상 등) ○ 국제수지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금융단가: 350원/달러 - 수입적립률: 10% → 100% - 수출금융 용자 조건: 용자기간 135日, 이자율 6% - 수입금융 지급보증제 실시 ○ 관세감면 제도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간산업, 방위산업 등에 대한 관세 감면 축소 ○ 물가대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화량증가: 年 20% - 가격구조의 합리화로 소비 억제 및 국산화 촉진 	'72.4.21 관련

년월일	경제시책	배경 및 취지	주요내용	비고
'72. 2. 25	輸出支援 金融制度 改編	수출을 효율적으로 지원하 기 위한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당한 가격인상의 강력 단속 - 국민소비생활의 건전화 촉진 <p>o 수출지원 금융제도의 단순화 및 용자單價 인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금융, 수입금융, 선수출금융, 국산원자재 금융 등을 「수출금융」으로 통합 - 수출금융 용자單價 인상: 295원→350원/달러 <p>o 수입금융 관련 제도 개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립률 인상: 10%→100% - L/C베이스에 의한 수입용자 금리 인하: 年 9% → 6% - 수입금융 지급 보증제도 폐지 	
'72. 3. 15	物價凍結措置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쌀을 제외한 모든 農·工産品 가격을 '72.3.6 수준에서 동결 	
'72. 4. 21	當面 經濟 施策의 補完	'72.2.14 「경기회복을 위한 당면 경제시책」의 보완조치	<p>o 물가대책의 보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2.3.6 현재 수준의 물가 동결 조치 지속 - 독과점 품목의 강력한 규제 - 공공요금 및 官許料金인상의 원천적 不許 · 다만 석탄과 油類가격은 需給事情등 감안하여 검토 - 산업합리화 자금을 長期 低利의 차관 代錢으로 확보 - 가격 등락폭이 큰 품목의 비축 강화 	관련 '72.2.14

년 월 일	경 제 시 책	배 경 및 취 지	주 요 내 용	비 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기대책의 보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민주택건설 촉진 - 세금의 繰上徵收 지양 - 高米價 정책 유지 - 國內興信 한도를 150~200억원 증액 - 短資市場(KIFC) 업무개시 ('72.5月中) ○ 국제수지 改善策의 보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율의 지속적인 상향 조정 - 원자재의 국산화 촉진 및 식량, 석탄 증산 - 關稅 감면폭 축소 - 外資도입 기업의 無限책임 규제 및 투자심사 강화 - 현금차관의 원칙적 不許 및 물자차관 규제 (실수요자에게만 허용) 	
'72. 6. 24	酒類輸出檢査制度	수출 酒類의 품질 향상을 통하여 對外 公信用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사기관: 국제청기술연구소 · 검사대상: 과실주, 일반증류주, 기타 주류 	'93. 4. 1 폐지
'72. 8. 3	經濟의 安定과 成長에 관한 緊急命令 (8·3 措置)	<p>'60年代 고도성장 과정에서의 과도한 시설확장은 주로 간접금융과 高利私債 자금에 의존하였으므로 기업의 재무구조가 크게 악화</p> <p>이에 따른 수출경쟁력의 약화 및 수요 감퇴에도 불구하고, 물가 급등, 민간설비 투자 저조 및 경제성장 둔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企業社債의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2.8.2 현재 기업이 보유한 모든 社債를 申告 - 申告社債를 동결하고 年利 16.5%, 3年거치 5年 분할 상환 ※ 신고사채 약 3,500억원은 예금은행 총 대출잔고의 1/3 수준 ○ 特別 金融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短期대출을 長期로 代換 	대통령 긴급명령 제 15호

년 월 일	경 제 시 책	배 경 및 취 지	주 요 내 용	비 고
'72. 9.14	信用組合 與受信金利 決定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0억원의 특별금융채권을 발행하여 조달한 長期 低利 자금으로 기업 短期性 대출의 30% 해당액을 代換 o 與受信 金利 인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대출: 年 19% → 15.5% - 정기에금(1年): 年 17.4% → 12.6% o 신용보증제도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는 중소기업 신용보증기금 및 농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에 10억원씩 출연 - 각 금융기관은 신용보증기금을 설치하고 향후 5年間 대출의 0.5% 범위내의 금액을 기금에 출연 o 조세 특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산업 고정 설비투자 감가상각 비율조정: 30% → 40~80% - 법인세 및 소득세 투자 공제율 인상: 6% → 10% o 財政의 硬直性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法定 交付率 효력 정지 (地方交付稅, 지방교육재정교부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용조합 대출 최고금리: 年 25%(利子 制限法上的 上限線) · 예탁 및 적금금리: 年 20% 	

년월일	경제시책	배경 및 취지	주요내용	비고
'72. 9.16	糧穀流通規制措置	'72.7.1 실시된 「정부미 유통 자유화 조치」 이후 일부 중간상인의 정부미 再搗精, 소비자 米價조작 등 부작용 발생 ※ '72.9.8 「양곡유통에 관한 행정명령」 발표	o 양곡유통에 관한 행정명령 - 정부미 販賣 登錄商에 한하여 정부미 판매 허용 - 정부미 판매 등록상의 일반 양곡 취급 금지 - 소매마진 규제: 80kg가마당 500원 - 소매상의 판매가격 표시 o 규제 실시지역 -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등 4개 도시	
'72.10.17	<10月 維新>			'72.12.27 維新헌법
'72.10.25	새마을事業 本格推進	새마을 사업이 주민복지사업이 되도록 공장 및 農加工 상품 개발 등 소득증대사업에 목표를 두고 추진	o '73年度 새마을 계획 확정 - 사업대상: 전국 34,868개 마을중 18,500개 - 소요재원: 451억원 o 새마을 사업 내용 - 勞賃사업: 국토가꾸기, 소도읍가꾸기, 소하천가꾸기 등 - 정부지원사업: 전화, 통신 시설, 簡易給水, 표준 주택, 농업기계화 등 - 새마을 운동 관련 우선지원 사업: 식량증산, 韓牛증식, 農特사업, 水利시설 관리 등	
'72.12.16	通安證券의 民間 賣却		· 한국은행 통화안정 증권을 민간에 매각	

년월일	경제시책	배경 및 취지	주요내용	비고
'72.12.16	支給準備率 引上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축성예금: 12% → 14% · 요구불예금: 18% → 19% 	
'72.12.30	政府工事의 落札制度 變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찰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전의 최저가 낙찰제를 부찰제로 변경 - 예정가격 80%이상 입찰자 평균치에 가장 가까운 입찰자에게 낙찰 	'75.12.31 최저가 낙찰제로 환원

년 월 일	경 제 시 책	배 경 및 취 지	주 요 내 용	비 고
'73. 1. 5	企業公開促進	자본시장제도 개선과 투자 여건 조성 ※ '72.12.30 「기업공개 촉진법」 개정, 공포	○ 기업공개 - 公開適格 법인을 지정하여 기업의 공개를 의무화 ○ 공개법인에 대한 租稅 특례 - 비업무용 토지에 대하여 再 評價 容認 - 優待稅率에 의한 과세 - 배당소득에 대한 세액 공제 허용	
'73. 1. 9	勤勞所得 基礎控除制度		○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기초 공제제도 채택 - 근로소득: 月급여에서 15천원 공제 - 사업소득: 1분기 소득에서 90천원 공제	
'73. 1. 14	不當利得稅法 制定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 제 3호에 의함	· 기준가격을 초과하는 거래가 격에 의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은 경우에 과세	대통령 긴급조치 제 3호
'73. 2. 5	關稅率 引下	중화학공업 등 중간재 산업 의 보호를 통한 산업구조의 개선과 생필품 등의 물가 안정	· 관세율인하: 33.8% → 31.3%	
'73. 2. 6	政府投資機關 管理法 制定	정부투자기관의 운영과 관 리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		'83.12.31 폐지
'73. 2. 13	<國際通貨 波動>	이탈리아의 二重환율제 및 스위스의 변동환율제 채택	· 달러貨 投賣 압력으로 인하 여 동경 및 유럽 外換시장	

년 월 일	경 제 시 책	배 경 및 취 지	주 요 내 용	비 고
'73. 2. 16	豫算制度改善	<p>('73.1.23)과 이에 따른 주요국 외환시장에서의 달러화 投賣를 계기로 국제통화 파동 발생</p> <p>「예산회계법」 개정 ('73.2.16)</p>	<p>일시적으로 폐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달러貨 평가절하: 금 1온스 당 38달러 → 42.22달러 (1달러당 0.83SDR) · 신규 및 주요사업에 대하여 사전 심사제도 도입 · 회계년도 開始前 예산배정 및 집행 근거 마련 · 일반회계 예비비를 轉入받아 특별회계 세출 지출 가능 	
'73. 3. 12	物價安定法 制定	'61.12.31 제정한 「물가조절에 관한 임시 조치법」을 폐지하고 同 법률을 대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물자의 가격, 임대료 및 料金の 최고가격 지정 가능 · 買占 및 판매거절 등 금지 · 가격표시제 실시 가능 	'75.12.31 폐지
'73. 3. 16	쌀消費節約과 流通秩序 確立 施策	「쌀 소비절약과 유통질서 확립에 관한 행정명령」 발표 ('73.3.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o 음식점업자에 대한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음식업소에서의 잡곡 혼식 비율 인상: 20% → 30% - 쌀이 들어있지 않은 식사를 週2食으로 하고 관광업소도 그 대상에 추가 - 중국음식 판매업소도 「분식 센터」와 동일하게 飯食 판매 금지 - 쌀을 원료로 하는 과자류 및 엷의 제조, 판매 금지 o 양곡 매매업자에 대한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판매 양곡의 종류별 판매가격 표시 의무화 - 별도 지정하는 판매가격 및 판매 마진 준수 	

년 월 일	경 제 시 책	배 경 및 취 지	주 요 내 용	비 고
'73. 4. 3	基準地價 告示對象地域 指定	'72.12月 제정 「국토이용 관리법」에 의거 제 1차로 지정, 告示	<ul style="list-style-type: none"> o 양곡 가공업자에 대한 조치 - 일등품 밀가루 생산금지(단 수출용 및 관광용은 제외) · 공업단지 건설 예정지: 구미, 여수·광양, 창원, 낙동강 하류, 온산, 군산·비인 · 제주도 일원의 관광개발지역 	
'73. 5.12	重化學工業 開發을 위한 外資誘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기자본과 차입금의 비율은 최소한 30:70 유지 · 합작투자의 외국인 투자 비 율을 50%이내로 제한 	
'73. 5.16	支給準備率 引上	공공부문 및 해외부문에서 의 통화증발을 금융면에서 흡수, 상쇄하기 위한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축성예금: 14% → 18% · 요구불예금: 19% → 22% 	
'73. 6.15	쌀값 安定 緊急 對策	※ '73.3.12 제정 「물가 안정법」의 최초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미의 최고 판매가격 指定告示: 1만원/80kg(도매) · 전국 46개 지역에 정부 保有 米 무제한 방출 및 방출가격 인하: 9,600원 → 9,500원 	
'73. 7.11	美國의 禁輸 措置에 따른 安定對策	세계적인 원자재 품귀현상 으로 인하여 미국은 古鐵 및 41개 농수산물목에 대하여 수출금지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o 가격조정 - 철근, 세탁비누, 라면, 배 합사료 등 5개 품목 가격 인상 · 인상률: 9.3%~39.9% o 가격안정 및 需給대책 - 고철 	

년 월 일	경 제 시 책	배 경 및 취 지	주 요 내 용	비 고
'73.10月	<第 1次 石油波動>	제 4차 중동전쟁 발발로 OPEC가 이스라엘을 견제하기 위하여 수출제한조치를 취하 자 원유가격 급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철확보를 위한 경제외교 의 강화 · 不要不急한 건축수요 억제 · 최고 가격제 및 생산량 할당제 - 세탁비누 · 수출용원료를 내수로 충당 · 합성세제 사용 권장 · 牛脂에 대한 관세 면제 - 라면 · 牛脂 수입촉진 및 유채유 사용 촉진 <p>· OPEC(석유수출국기구) 原油 價 21.2%인상 및 원유생산 每月 5%씩 감축</p> <p>※ '73.12月 OPEC, 原油價 2배 인상</p>	'79.9月 제 2차 석유파동
'73.12. 4	物價安定對策	제 1차 석유 파동에 의한 油價 등 물가상승에 대처	<p>○ 總需要의 적절한 규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행예산의 편성 집행 - 적정 流動性 유지 - 不要不急한 건축투자 규제 - 부동산 투기의 강력한 규제 <p>○ 에너지의 원활한 需給</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유공급원의 다변화 - 에너지 소비 절약 운동 <p>○ 가격 조정 事前 承認 품목 지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경제 운용에 필요한 품목 및 생필품(60여개) 	

년 월 일	경 제 시 책	배 경 및 취 지	주 요 내 용	비 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산품 중 1회 50%이상 또는 年間 10%이상 가격 인상 품목 - 기타 가격조정을 꾀하는 품목은 사후보고 대상으로 지정 <p>○ 합동물가 단속반 설치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기획원, 국세청 등에 합동단속반 상설 - 所管別로 원료 및 제품의 需給과 물가안정 책임제 	
'73.12.14	國民投資 基金法 制定	중화학공업 등 중요 산업의 건설과 수출증대에 필요한 자금을 국민의 저축으로 조달할 목적	<p>○ 국민투자기금 설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화학공업 등 중요 산업에 대한 자금 공급 - 재원: 채권발행, 국고전입금 등 <p>○ 국민투자 채권발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리수준: 1년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보다 높은 수준 - 채권인수: 국민저축조합예금, 국민복지연금, 금융기관 저축성예금 등 <p>- '74年 채권발행 한도: 1,100억원</p>	'74.11 시행

년 월 일	경 제 시 책	배 경 및 취 지	주 요 내 용	비 고
'74. 1. 14	國民生活 安定을 위한 大統領 緊急措置(1·14 緊急措置)	제 1차 석유파동이 資源품귀, 인플레이션 등 국민경제에 미칠 악영향에 능동적으로 대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민 생활안정 도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低소득층의 소득세 부담 경감(月소득 5만원미만: 100% 면제) - 「국민복지연금」 및 「사립학교 교원연금제」 실시 1年 연기('74.1月 → '75.1月) - 滯拂임금지불 및 영세민 就勞事業 추진 - '73年産 추곡수매가 소급 인상(가마당 500원) - 중소기업자에 대한 특별 低利 금융 지원 (300억원, 年 12%) ○ 사치성 소비 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치성 입장세 및 물품세율 인상 - 高소득에 대한 重課稅 ○ 부동산투기 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업단지 지역에 대한 투기 방지 및 지역개발 촉진 - 투기억제세 과세대상 地價 告示지역에 畝, 面 추가 ○ 근로조건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금의 「우선 辨濟 청구권」 신설 - 단체협약 不遵守에 대한 벌금 - 부당 노동행위 처벌 강화 ○ 가격안정과 부당이득세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품목에 대하여 최고가격 지정 - 부당이득세 신설 	대통령 긴급조치 제 3호

년월일	경제시책	배경 및 취지	주요내용	비고
'74. 1. 16	基準價格告示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수지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彈力稅制 확대 및 관세 감면제도 개선 · 쌀, 철근, 석유류 등 80여개 품목에 대한 기준가격 告示 	
'74. 1. 31	外貨貸出 連動金利制度 採擇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화대출금리를 年12% 범위 내에서 국제금리 동향에 맞추어 신축적으로 조정 	
'74. 2. 1	主要 品目 價格 現實化	原油가격 폭등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품목 가격 대폭 인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석유류 82%, 전력 30%, 철도 50%, 택시요금 66.1% 	
'74. 2. 5	綜合物價安定 對策	<p>'74年初 原油가격이 폭등하면서 세계각국의 자원경쟁이 격화되고 古鐵, 原木, 펄프, 농산물 등 수입원자재 가격이 급등</p> <p>이에따라 국내시장은 거래 질서가 왜곡되고 需給 불균형 현상 발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가관계 法令의 활용과 물가행정의 보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고가격 및 기준가격제도의 신축적 운용 - 관계법령의 有機的 운용 - 기동단속반 常設 운영 ○ 流動性 증가 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통화는 年間 30% 증가 범위내 운용 - 選別金融制 강화 및 저축 증대 ○ 투자수요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不急한 건축투자 규제 강화 - 민간투자의 選別 규제 	

년 월 일	경 제 시 책	배 경 및 취 지	주 요 내 용	비 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자공급의 증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원자재 안정 확보 지원 - 주요물자의 책임 생산재 - 철근, 시멘트 등 內需공급 부족 품목 수출 제한 ○ 流通정상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슈퍼마켓 등 근대적 유통구조 확충 - 생필품 및 주요품목의 유통 단계별 기준가격 告示 ○ 근로자 生計 안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금조정은 기업의 경영합리화로 자체 흡수 - 중소기업과 취약 산업부문 특별 지원 	
'74. 2.18	建築規制措置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건물 및 50평이상 주택 건축 억제 	
'74. 2.25	流通構造 改善 對策	<p>도소매업의 영세성 및 가족 중심의 전근대적 경영과 유통구조의 복잡성으로 가격 체계의 문란, 需給障礙 등의 불공정거래 성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短期대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청소재지이상의 市에 法人형태의 대규모 연쇄점 설치 - 인구 10만이상의 도시에 생필품 지정판매소 설치 - 농협연쇄점의 대폭 증설과 集荷場의 併設 운용 등 - 중소기업 제품의 공판장 설치 - 생필품 및 주요 농·공산품 (144개)의 直配制 강화 	

년 월 일	경 제 시 책	배 경 및 취 지	주 요 내 용	비 고
'74. 3. 2	輸出金融單價 引下		<ul style="list-style-type: none"> ○長期대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매센터 설치 지원 및 - 유통단지 설치 운용 - 농수산물 도매시장 기능 정비 - 유통관계 법령정비 등 · 수출금융단가: 350원 → 295원/달러 	
'74. 5. 24	公共借款의 導入 및 管理 에 관한 行政 改善	장기개발 계획기간 중 소요 되는 막대한 外資의 원활한 도입과 도입된 外資의 효율 적인 이용을 위한 관계법규 의 정비 및 보완	<ul style="list-style-type: none"> ○貸主 및 借主의 범위 설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차관의 貸主인 경제 경제협력기구와 借主인 법인의 범위를 정하여 상업 차관과 구분 ○공공차관 협의 위원회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기획원장관의 자문기관 	
'74. 5. 29	企業의 體質 改善과 內資 動員을 위한 措置 (5·29 措置)	많은 기업이 기업공개를 꺼 리고 혈연중심의 前近代의 경영방식을 답습하고 있으며 정부의 지원시책에 지나치게 의존	<ul style="list-style-type: none"> ○系列企業群에 대한 與信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지원금융외의 금융기 관 대출이 많은 企業群에 대하여 여신 관리 - 이들 기업군에 대하여 기업 공개, 傍系기업처분, 非업 무용 부동산 매각 등 유도 ○자본시장 受容態勢 확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기관 출자 및 IFC자금 으로 株式引受基金 설치 - 한국투자공사, 단자회사 등 출자금으로 社債引受基金 설치 	

년 월 일	경 제 시 책	배 경 및 취 지	주 요 내 용	비 고
'74. 7. 1	系列企業群에 대한 興信管理	<p>기업의 자기자본 충실화와 재무구조 개선을 촉진하고 금융자금 운용의 효율화를 도모</p> <p>※ '74.5.31 대한금융단은 「계열기업군에 대한 여신관리 협정」 체결</p>	<p>○ 興信관리대상 기업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신총액 50억원이상의 동일계열 기업군 - 대상기업군의 구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기업군: 재무구조가 취약 · B기업군: 재무구조가 비교적 양호 <p>○ A기업군에 대한 興信관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의 여신담보지급 보증 금지 - A기업군 초기업체 거래 금융기관은 향후 3年間の 재무구조 개선 계획을 심사 <p>○ B기업군에 대한 조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기업군 초기업체 거래 금융기관은 非업무용 부동산 불취득 확약서 및 기업 공개계획서 심사 	
'74. 7. 13	우리社株組合 制度 採擇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社株組合제도 채택 · 종업원 持株制를 비공개기업 까지 확대하고 금융 및 세제 지원 	
'74. 8. 1	支給準備率 引下	<p>오일쇼크에 따른 수요 둔화와 시중의 경색된 자금사정을 반영</p>	<p>○ 일반금융기관에 대한 기준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축성예금: 18% → 15% - 요구불예금: 22% → 19% <p>○ 농협예수금에 대한 支準備率</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축성예금: 16% → 13% - 요구불예금: 19% → 16% 	

년 월 일	경 제 시 책	배 경 및 취 지	주 요 내 용	비 고
'74. 8. 15	<首都圈 電鐵 開通>	최초의 지하철	· 서울시 지하철 1호선 「서울역~청량리」 간 개통	
'74. 8. 15	<朴大統領 狙擊 事件>		· 광복절 記念式典 朴대통령 저격 사건으로 俞夫人 (육영수氏) 사망	
'74. 10. 25	外換 賣却 集中制 強化	外換포지션 유지를 통한 외환집중 강화로 貿易外 支給 등 억제	· 수출업자 居住者 計定 폐지 · 수출업자에게 허용하던 외화 예치집중제를 매각집중제로 전환	
'74. 11. 12	輸出金融 單價 引上	수출업체에 대한 자금지원 강화 목적	· 수출금융 단가(원자재 구매 자금 제외): 350원 → 380원/달러	'74. 12. 7 변경
'74. 12. 1	國民投資基金 設置	주요산업자금 조달을 위한 長期內資 동원계획의 일환으로서, 기존의 設備金融체제를 보완하여 자본의 對外 依存을 벗어나기 위한 포석 ※ '74. 12. 1 「국민투자 기금법」 제정	o 기금설치 목적 - 기금에 형성된 자금을 금융 기관에 貸下하여 중화학 공업등 指定된 산업에 공급 o 기금의 主된 財源 - 국민투자채권을 발행하고 이를 국민저축조합예금, 국민복지연금 등에서 인수 - 정부로부터의 轉入 또는 차입금 ※ 主財源이 될 국민복지연금 제도의 시행 연기('74. 1. 14 조치)로 실적이 비교적 부진	

년월일	경제시책	배경 및 취지	주요내용	비고
'74.12. 7	國際收支 改善 과 景氣回復을 위한 特別措置 (12·7措置)	'73년 「오일쇼크」 이후 세 계 경제 침체에 따른 수출부 진으로 수요 및 고용감소 등 景氣 침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수지 개선 대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율인상: 398→484원/달러 - 수출금융 단가인상: 380→420원/달러 - 短期 外債 상환을 위한 금융 지원 - 수입담보금 적립률 인상: 5% → 15% - 수출용 원자재 관세 환급 제도 도입('75.7.1시행) ○ 종합물가대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석유류제품, 전기요금 등 인상조정 - 전기가스 세율 및 석유류 세율 인하 - 가격 事前 承認 대상품목 (58개) 중 인상요인이 크지 않은 설탕 등 7개 품목 가격 인상 不許 - 정부 인정 인상요인을 초과하는 가격에 대하여는 원가 조사 후 최고가격 지정 ○ 통화팽창 억제 대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기 저축성예금 금리인상: 16% → 18% - 지급준비율 인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축성예금: 15% → 17% · 요구불예금: 19% → 21% - 정책금융 금리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투자기금: 9% → 12% ○ 투자촉진대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投融資사업비 早期집행 - 중소기업에 대한 설비자금 지원 	

년월일	경제시책	배경 및 취지	주요내용	비고
'74.12.12	建築規制 解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特別償却制등 민간투자 촉진 - 서민주택건설(87천호) 및 건축규제 완화 · 국민주택 채권 消化를 조건으로 50평이상 허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규제를 '75년부터 전면 해제 	
'74.12.20	稅制改編	<p>제 3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72~'76年)의 성공적인 마무리 지원 및 제 4차 계획 수행을 위한 세제의 확립</p> <p>또한 사회계층간 균형있는 분배, 각 稅目간 세부담의 공평, 認定課稅 문제의 是正 및 납세자 권익보호 등을 도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o 國稅基本法 제정 - 모든 국세의 기본적인 通則을 규정 - 납세자의 權益보호를 위해 국세에 관한 법률 관계 명료화 - 국세심판소 설치 o 소득 再分配 기능의 강화 - 전면적인 종합소득세제도의 실시 및 分類 소득세율의 종합, 단일화 - 부동산 투기억제세를 폐지하고 양도소득세 및 법인세 特別附加稅 신설 - 자산소득의 가족단위 合算 과세 및 상속세율의 15단계화 o 중산층 및 低소득층의 부담 경감 - 소득세율 인하조정 - 償與소득공제, 저축공제 제도 등 신설 	

년 월 일	경 제 시 책	배 경 및 취 지	주 요 내 용	비 고
'74.12.21	信用保證基金 法 制定	<p>담보능력이 취약한 기업이 부담하는 채무를 보증하여 자금유통을 원활히 하려는 목적</p> <p>※ '74.12.21 「신용보증기금법」 제정</p>	<p>○ 企業課稅의 개선 및 경제 개발 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 稅부담 輕減 등 - 법인세율 구조 조정 - 공개법인의 要件 현실화 등 <p>○ 관세환급제도 채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용 원재료 수입시 관세 및 내국소비세를 우선 課稅 (일정기간 徵收猶豫)하고 수출시에 이를 환급 <p>· 정부 및 금융기관 출연으로 기금조성</p>	
'74.12.26	決算上 剩餘金 의 處理方法 變更	「예산회계법」 개정 ('74.12.26)	<p>○ 잉여금의 차입금 상환을 임의 規定化</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산상 잉여금을 국채원리금 또는 차입금 상환에 사용 가능 <p>○ 예산 轉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관서장은 세출 예산 각 細項 또는 目的 金額을 승인없이 轉用 가능 <p>○ 수입대체 경비 (수입금 마련 지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과 수입에 직접 관련되는 경비의 초과지출 허용 	

년 월 일	경 제 시 책	배 경 및 취 지	주 요 내 용	비 고
'75. 1. 25	輸入擔保金 凍結 措置	수입억제 및 통화 환수를 위하여 「외국환거래 담보금 운용 지침」 마련	· 수출용 원자재 등을 제외한 일반수입품에 대하여 수입 담보금 적립액을 90日間 거 치후 환급	
'75. 3. 1	支給準備率 調整	저축성예금 금리인상에 따 른 금융기관의 收支압박요인 을 감안	· 저축성예금: 17% → 16% · 요구불예금: 21% → 23%	
'75. 4. 17	輸出支援 綜合 對策	수출업계의 자금부담을 완화하고 경쟁력을 강화	○ 수출금융 금리인하 - 수출금융, 外貨표시 공급 자금 및 中長期 延拂輸出 금융금리: 年 9% → 7% ○ 수입금융기간 연장 및 금리 인하 - 수출 부진품목의 수출용 원 자재 비축 수입금융 기간: 180日 → 270日 - 금리인하: 年15.5% → 12%	
'75. 4. 30	綜合貿易商社 制度 實施	지속적 수출증대, 안정적인 시장확보 및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무역회사의 자본규모 및 거래 규모의 대형화 필요	○ 종합무역상사 선정기준 - 수출실적, 자본금, 수출상 품수, 海外支社數 등 ○ 무역과 생산의 분리 촉진 ○ 무역업의 자금력 증대 및 자금유통의 간편화 ○ 해외조직망의 확충, 무역 및 해외활동에 대한 제한 완화	

년 월 일	경 제 시 책	배 경 및 취 지	주 요 내 용	비 고
'75. 7. 1	關稅還給制度 實施	<p>종전 관세감면정책이 長期化되어 공평과세에 위배되고 國庫 수입감소, 자원배분의 非效率, 산업구조 왜곡 등을 초래</p> <p>※ '74.12.12 「수출용 원자재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별법」 공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용 원자재에 대한 事前 면세제도를 事後 환급제도로 변경 · 관세환급제의 시행과 동시에 일정기간 동안 관세 징수를 猶豫하는 제도 병행 	
'75. 7. 1	支給準備率 引上	<p>해외부문이 통화공급부문으로 反轉되었으므로 과잉유동성 규제 목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축성예금: 16% → 17% · 요구불예금: 23% → 24% 	
'75. 7. 16	防衛稅 新設	<p>越南의 공산화('75.4.30) 및 북한의 남침 위협에 대처하기 위하여 국방비 증대 필요</p> <p>※ 限時법인 「방위세법」 제정('75.7.16~ '80.12.3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세액에 추가하여 방위세 과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세분 방위세(月 70만원 이하 소득): 소득세액의 10% - 물품세분 방위세: 물품세액의 20% ○ 기본세액이 감면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세액이 과세되는 것으로 간주하고 방위세를 산출하여 과세 	'90.12.18 폐지
'75. 7. 25	輸出秩序維持 措置	<p>輸出入에 관한 해외신용의 강화와 질서 유지를 위하여 수출입 질서 문란행위의 금지범위 확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시장에서 수출 질서유지와 덤핑행위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명령 또는 사전조정 · 수출입 질서 위반자에 대한 制裁대상을 수출입업자 및 실수요자로 확대 	

년 월 일	경 제 시 책	배 경 및 취 지	주 요 내 용	비 고
'75.10. 1	商業어음制度 改編	<p>※ '75.7.25 「무역거래법」 제정</p> <p>신용도가 높고 재무구조가 건실한 업체의 어음할인을 촉진시켜 단기 운전자금의 공급을 원활히 할 목적</p> <p>※ '75.8.29 「상업어음 할인 및 매출 취급규정」 제정</p>	<p>· 수출입업자의 자격 및 취소 요건 신설, 강화</p> <p>○ 적격업체 선정 및 어음할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기관(상업은행)은 지급인 중심으로 적격업체를 자율적으로 선정 - 적격업체가 발행, 인수, 양도 배서한 어음은 일반대출에 우선하여 할인 <p>○ 할인율의 자율결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기관이 적격업체 어음(적격어음)의 할인율을 자율적으로 결정 <p>○ 한국은행의 재할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격어음 할인 총액의 70% 범위내에서 韓銀이 재할인 	
'75.11. 1	韓國 綜合金融 會社 設立決定	최초의 종합금융회사 (합작회사)	<p>· 자본금: 1천만달러</p> <p>· 한국측 합작기업: 대우실업 등 5개 사</p> <p>· 외국측 합작기업: 라자드· 브러더스社(英)</p> <p>· 합작비용: 50 對 50</p>	'76年 설립
'75.11.14	物資節約 推進方案	油類 등의 에너지源과 기타 수입물자에 대한 범국민적인 절약운동의 전개	<p>○ 「물자절약 점검의 날」 설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의존도가 큰 소비재를 중심으로 절약추진 상황을 每月 10日 정기적으로 점검 - 대상품목: 석유, 석탄, 전력, 쌀, 설탕, 기계류 등 	

년 월 일	경 제 시 책	배 경 및 취 지	주 요 내 용	비 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별 절약방안 - 油類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버스 정차구간의 재조정: 1km → 1.5km · 노후차량 대체: 버스 8年, 택시 5年 · 학교 방학일수 조정: 여름 27日, 겨울 55日 · 겨울철 실내풀장 영업금지 - 네온사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치성 광고용 네온사인 규제 · 유흥접객업소 영업시간 단축 · 백화점, 상가의 電球美粧 금지 · 나이터 사용 경기 금지 (국제경기 제외) - 펄프 및 종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폐·휴지 확대사용 의무화 · 저급지 생산 촉진 및 고급지 억제 · 과잉포장 억제 · 국산 벗짚 펄프 개발 - 설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당 수입 한도제 · 다방용 小포장 설탕사용 의무화 · 상품권 발행, 판매선전 등 제한 - 쌀, 보리, 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쌀 搗精率 인하: 9분도 → 7분도 · 非主食用 밀가루 소비억제 · 정부양곡을 전량 혼합곡으 로 방출 	

년.월.일	경 제 시 책	배 경 및 취 지	주 요 내 용	비 고
'75.12. 5	中東進出促進 方案	中東諸國이 막대한 오일머 니로 의욕적인 경제개발계획 을 추진하므로 침체된 우리 경제의 활로를 위한 돌파구 로 등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지원체제 확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계부처와 現地公館에 업무전담반 설치 ○ 지원시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수출 자금 지원 - 複保證을 위한 신디케이트 구성 - 현지은행과의 거래 및 현지 금융 확대 - 법인세 및 소득세 감면 - 건설기능 훈련원 설립 	
'75.12.31	物價安定法 制定	'73.3.12 제정 「물가안정 에 관한 법률」 및 「공공요금 심사위원회 설치법」을 一元 化하여 「물가안정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 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품의 표준가격 지정 가능 · 경제기획원에 「물가안정 위원회」를 설치하여 종전의 공공요금 심사위원회 기능 수행 · 독과점 사업자 및 동 가격 지정 가능 · 주요 품목에 대하여 緊急 需給 지정 가능 · 불공정 거래 행위와 경쟁 제한행위 금지사항 규정 	
'75.12.31	豫算制度 改善	「예산 회계법」 개정 ('75.12.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단할 수 없는 사업은 회계 년도 開始前 계약체결 가능 · 長期 계속 계약제도 신설 · 정부투자기관과의 위탁 또는 代行 계약의 경우 概算계약 가능 	

년월일	경제시책	배경 및 취지	주요내용	비고
'76. 2. 2	輸出金融 限度 去來制 實施	수출준비생산 자금을 원활 히 공급하여 수출 촉진 ※ '76.1.15 「수출금융규 정」 개정	○용자대상 및 용자한도 - 전년도 또는 최근 1年間の 수출실적이 3천만달러 이상 이고 평균 外貨 가득률이 30%이상인 업체 - 용자한도: 평균 외화 가득 액에 달러당 420원을 곱한 금액 ○용자조건 - 금리: 年 9% - 용자기간: 90日	
'76. 3. 4	完製品 備蓄 金融 實施	「수출금융 규정」 및 「내국 신용장 취급 규정」 개정	· 종합무역상사의 비축용 完製 品 구매를 위한 내국신용장 의 개설 허용 · 同 어음결제를 위한 수출 금 용 受惠 가능	
'76. 3.15	貯蓄增大計劃		· 근로자 재산형성 저축제도 실시 · 公課金の 受納代行制 확대 및 서비스 개선을 통한 저축 환경 정비 · 저축기획조사 기능 확충	
'76. 3.19	港灣廳 開廳			
'76. 3.29	延拂輸出 金融支援基準	중화학공업의 延拂輸出에 대한 선별지원 강화	○용자대상품목 - 선박, 철도차량, 플랜트, 산업기계	

년월일	경제시책	배경 및 취지	주요내용	비고
'76. 4. 1	物價安定 및 公定去來에 관한 法律制定	물가에 대한 직접 규제방식을 지양하고 포괄적인 물가관리 체계 확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延拂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先受金 20%이상 (선박: 30%이상) ○ 대출금리 및 용자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출금리: 年 7%이상 - 延拂輸出 船積 前後 소요액의 80% 용자 	
'76. 5. 1	價格表示制 實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종 協定料金を '76.4.15 수준에서 억제 · 전국 35개 도시에서 가격 표시제 실시 	
'76. 5. 1	車主 賠償 責任保險制度	「한국 자동차보험」에서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고피해를 전액 보상하는 자가용차 車主 배상 책임 보험제도 실시 	
'76. 5.28	機械類 國産化 促進 支援	산업은행의 「기계류 국산화 촉진자금」으로 기술개발 촉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금융자 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年 10.6%, 3년거치 5년 분할 상환 ○ 자금융자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기계 국산화: 100억원 - 플랜트 국산화: 300억원 - 계획조선: 100억원 - 용역비: 30억원 (年12%) 	

년 월 일	경 제 시 책	배 경 및 취 지	주 요 내 용	비 고
'76. 6. 10	信用保證基金 設立	'74.12.21 「신용보증기금 법」 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담보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 보증 · 기금조성: 278억원 	
'76. 8. 1	現金 및 物資 借款 認可要件 強化	해외경기 회복으로 수출이 호조를 보이고 있으므로 현금 및 물자차관의 억제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금차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 및 민간기업: 시설재 도입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 不許 - 예외적인 許容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 및 정부투자기관 · 신규건설 중화학공업 계획 사업 및 基幹産業 수행기업 · 외국인 투자 500천달러 이 상 업체의 신규 건설사업 - 허용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리: LIBOR+2%이내 · 상환기간: 거치기간 포함 7年 초과 · 수수료: 총 1.5%이하 ○ 물자차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자금 차관을 위한 물자 조달은 不許 - 예외적인 許容대상: 자원 확보를 위하여 장기적 물자 공급계약의 일부로 도입하 는 물자차관 - 허용품목: KFX로 年間 50 백만달러 이상 수입 하는 주요 원자재 - 허용조건: 현금차관과 동일 	
'76. 8. 2	金利引上	'73년 석유파동 이후 침체 했던 경기가 본격적으로 회 복되고 있어 물가상승 우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기예금: 年 15.0%→16.2% · 일반대출: 年 15.5%→18.0% 	

년월일	경제시책	배경 및 취지	주요내용	비고
'76. 8. 2	<UN 海洋法 會議>	領海, 경제수역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한 해양법 회의, 第 6會期('76. 8. 2 개막, 뉴욕)	· 영해: 12해리 · 경제수역: 200해리 · 대륙붕: 영해를 초과하는 영토의 자연적 延長	'78. 4. 30 한국영해 선포
'76. 12. 22	稅制改編	부가가치세법시행('77. 7. 1) 에 따른 전면적인 세법 조정	○ 新設稅法 - 부가가치세법 및 특별소비 세법 - 부가가치세 실시에 따른 세 법조정에 관한 임시 조치법 ○ 廢止稅制 - 부가가치세로 흡수 · 통행세, 입장세, 전기가스 세, 물품세, 석유류세, 직물류세, 유홍음식세, 영업세 ○ 國稅와 지방세의 조정 - 등록세: 국세 → 지방세 - 유홍음식세: 지방세 → 국세(부가가치세) ○ 법인세제 - 공개법인세율의 차등화 - 임시투자세액 공제제도 신설 -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의 益金 不算入 ○ 소득세제 - 근로자의 복리 후생적인 급여 非과세	

년 월 일	경 제 시 책	배 경 및 취 지	주 요 내 용	비 고
'77. 1월	關稅率 構造改編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제 4차 5개년계획('77~'81년)을 효과적으로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實效관세율 인상('81년부터 시행): 5.5% → 8.1% • 보호관세율 인하: 최고관세율 80~100% → 80% • 중화학공업 등 우선순위 산업에 대한 規制관세율 인상 	
'77. 1. 4	輸出金融支援 制度 改編	수출여건 변화와 수출규모 확대에 종전 획일적인 수출 지원 금융이 탄력적인 통화 관리를 저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자기간(90日)을 품목별로 차등화 • 自動延長制 및 초과特認制를 폐지하고 용자기간을 합리적으로 조정 	
'77. 2. 1	GIRO制度 實施	전기료 수납 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計定移替제도 	
'77. 3. 7	首都圈 人口 再配置 計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도권인구 재배치 계획을 국가 기본계획으로 확정 • 서울시 인구를 700만명으로 고정 	
'77. 4. 25	國民住宅 請約賦金制	아파트 분양에 따른 가수요 억제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주택 청약 가입자(무주택자)에게 아파트를 우선 분양 	
'77. 5. 14	流動性 規制 強化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급준비율과는 별도로 저축성예금 증가액의 40% 및 요구불예금 증가액의 70%를 동결 	
'77. 6. 19	原子力 發電 開始	최초의 원자력 발전기인 古里 1호기 점화		

년월일	경제시책	배경 및 취지	주요내용	비고
'77. 7. 1	附加價值稅法 施行	<p>복잡, 다기화한 간접세 구조를 단순화하고 부가가치세의 상호 검증기능에 의하여 탈세를 원천적으로 방지</p> <p>또한 5개년계획 등 증대되는 재정수요의 충족을 위한 안정적 세수 확보</p> <p>※ '76.12.22 「부가가치세법」 제정</p>	<p>○ 과세대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거래단계에서 창출되는 부가가치 <p>○ 과세표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격 <p>○ 세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행세율10%(기본세율13%) <p>○ 零稅率</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물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제 <p>○ 課稅特例</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年間 매출 1,200만원 미만의 소규모 영세사업자에 특례세율(2%) 적용 	
'77. 7. 1	特別消費稅法 施行	<p>「부가가치세」의 單一稅率 적용에서 오는 조세부담의 逆進性을 완화하고, 사치성 물품의 소비 억제</p> <p>※ '76.12.22 「특별소비세법」 제정</p>	<p>○ 과세대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치성 품목, 高價 耐久性 소비재 등의 최종 소비재 <p>○ 세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3단계 세율구조: 10~160% <p>○ 납세의무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세물품의 제조 반출자, 수입신고자 등 <p>○ 과세표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판매 또는 반출하는 실제 가격 <p>○ 신고납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월 실적을 다음달 20일까지 신고 납부 	

년 월 일	경 제 시 책	배 경 및 취 지	주 요 내 용	비 고
'77. 7. 1	附加價値稅 補完 對策	'77.7.1 「부가가치세」 실시 에 따른 물가불안 요인을 기업의 금융비용 부담 경감 을 통해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정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정증권 500억원 추가발행 - 歲計剩餘金 중 500억원을 韓銀차입금 상환에 사용 - 양곡관리기금 적자 억제 ○ 무역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外貨 純資産 증가를 10억 달러로 억제 - 수입자유화 확대 - 수입담보 적립률 인하 ○ 금융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7.6~12月中에 月평균 800억원의 國內興信 공급 - 중소기업 지원 자금 증액: 1천억원 → 1천 500억원 - 대출금리 인하: 年18%→17% (예금금리는 '77.10月인하) ○ 관세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原木, 牛脂 등 31개 품목 관세율 인하 - 保稅 공장제도 확대 	
'77. 8. 1	外資導入要件 強化	경상수지의 흑자와 외환보 유고 증가에 따라 현금 및 물자차관의 도입을 더욱 규제함으로써 통화 증발요인 억제 필요 또한 일부 불리한 조건의 자본재 차관 도입 개선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資本財借款 認可 방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선지원업종: 중화학공업, 電源開發, 수출산업, 관광 호텔업 및 기타 중요 산업 - 허용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관금액: 300만달러이상 (외국인 투자업체는 예외) · 상환기간: 거치기간 포함 7年 초과 · 이자율: LIBOR+2%이하 · 수수료: 1.5%이하 	

년월일	경제시책	배경 및 취지	주요내용	비고
			<p>○ 현금차관 인가 방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원칙: 자본재 도입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현금차관은 不許 - 예외적 허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료 지불(용역비 포함) · 既도입한 차관을 더욱 유리한 조건으로 대체 · 정부투자기관 사업, 중화화학공업 사업, 電源開發 사업 및 관광호텔 사업을 위한 국산기자재 구매가능 - 허용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관금액: 300만달러이상 · 상환기간: 5年이상 · 이자율: LIBOR+2%이하 · 수수료: 1.5%이하 <p>○ 물자(원자재)차관 인가 방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원칙: 물자차관은 원칙적으로 不許 - 예외적 허용 품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시세 변동예상 원자재로서 비축이 필요한 품목 · 長期 원자재 공급계약에 의해 도입되는 품목 · 방위산업 소요 주요 품목 · 기타 국민생활에 긴요한 품목 - 허용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관금액: 300만달러이상 · 상환기간: 3.5~5年 · 이자율: LIBOR+2%이하 · 수수료: 1.5%이하 	

년 월 일	경 제 시 책	배 경 및 취 지	주 요 내 용	비 고
'77.10. 4	金利引下	부가가치세 실시에 따른 물가상승 압력을 완화할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대출금리: 年 17.0% → 16.0% · 정기에금금리: 年 16.2% → 14.4% 	
'77.11. 1	主要原資材 輸入金融制度 新設	원자재의 需給을 원활히하여 물가안정 도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금융 지원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위산업용 원자재, 原綿 등을 一覽出給 조건의 貨換信用狀 방식으로 수입하는 업체 ○ 수입금융 지원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대금의 70%까지 180日間 용자 	
'77.12.28	最高價格 解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철근, 우유, 커피 등 43개 품목의 최고가격 (도매 및 공장도가격) 해제 	
'77. 12月	<東京라운드 協商>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일·EC 40% 관세 인하 합의 	

년월일	경제시책	배경 및 취지	주요내용	비고
'78. 1. 1	動力資源部 發足			
'78. 2. 15	特定地域告示	제 1차 특정지역 고시		'78. 7. 19 제 2차 고시
'78. 2. 23	支給準備率 引上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축성예금: 17.0% → 20% · 요구불예금: 24% → 27% 	
'78. 4. 20	外資導入 行政의 改善	외자의 질적 개선을 도모하 고 세계경제의 국제화에 부 응하여 경제협력제도 개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도입 자유화 촉진 - 주무부장관 자동인가 대상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약기간 또는 代價지불 기간이 3年 이하인 계약 · 先拂金 3만달러 이하이며 기술도입료가 제품 순매출 액의 3%이하 · 代價지불이 定額으로 10만 달러 이하인 계약 · 사업분야: 기계조선, 금 속, 전기, 전자, 화학, 섬유산업 - 경제기획원장관의 準自動 認可 대상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약기간(대가지불기간): 3年~10年 · 先拂金 1만달러 이하이며 경상기술료 10%이하 · 사업분야: 원자력, 전자 계산조직 및 방위 산업이외의 산업 - 「외자도입 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 경제기획원장관 의 準自動인가 대상이외 사항 - 기술도입 심사위원회 신설 	

년 월 일	경 제 시 책	배 경 및 취 지	주 요 내 용	비 고
'78. 4. 30	<12海里 領海 宣布>	「영해법」 제정, 공포 ※ '78.9.20 同法 시행령 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자도입인가 방침 변경 - 상업차관 도입은 가급적 억제하고 외화대부를 확대 - 예외적 허용대상 사업: 중화학공업, 電源 開發, 방위산업, 기타 중요산업 - 허용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관금액: 1천만달러이상 · 허용용도: 시설재 도입 · 상환기간: 거치기간 포함 7年이상 · 이자율: LIBOR+1.5%이하 · 수수료: 1%이하 	'75.5월 UN결정관련
'78. 5. 11	第 1次 輸入 自由化	국내산업의 경쟁력 강화, 물가안정과 품질경쟁에 의한 소비자보호 도모 또한 수입상대국의 수입규 제 강화 및 수입자유화 요청에 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輸出入期別 公告上의 수입 금지 품목 폐지 - 수입자유화율 제고: 53.8% → 60.7% (CCCN 4단위 기준 1,097개 품목중 666개 품목 자유화) ○ 수입감시제 도입 - 수입자유화에 따른 국내 산업의 충격 완화 ○ 수입자유화 품목 事前豫示制 - '79~'80年 자유화 대상 품목 63개 - '81~'82年 자유화 대상 품목 89개 	'78.9.18 제 2차 수입자유화

년월일	경제시책	배경 및 취지	주요내용	비고
'78. 5.13	<建築材 品貴 및 價格 暴騰>	건축경기 과열과 가뭄에 기인		
'78. 5.22	建築規制措置		· 70평이상 주택, 商用 및 公用 건물의 건축허가 금지	'78.6.26 후속 조치
'78. 6.13	金利引上	中東特需, 수출호조와 이에 따른 생산 및 투자증대 등으 로 국내경기 과열 징후	○ 여수신 금리의 대폭적인 인상 - 정기에금: 年14.4%→18.6% - 일반대출: 年16.0%→19.0%	
'78. 6.14	中小企業 振興工團設立		· 중소기업 진흥공단 설립 및 중소기업 특별기금 조성 ('79~'83年, 5천억원)	
'78. 6.26	建築規制措置	건축자재 부족현상 해소 목적	· 40평이상 주택 및 45평이상 아파트 건축허가 금지	'78.5.22 관련조치
'78. 8. 8	不動産 投機 抑制 및 地價 安定을 위한 綜合 對策 (8·8 措置)	부동산 투기가 성행하고 地價가 계속 상승하여 低소득층을 위한 주택보급이 어렵고 소득분배 불균형	○ 토지거래 허가 및 신고제 도입 검토 -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심의 위원회 구성 - 기본구상 · 투기규제 지역 지정 · 투기규제 지역에서의 토지 거래 허가제 · 투기규제 以外지역에서 토지거래 신고제 ○ 기준지가 고시 대상지역 확대	

년 월 일	경 제 시 책	배 경 및 취 지	주 요 내 용	비 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 36개市 도시계획구역 전역에 대하여 基準地價 고시 o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동산 소개업을 허가제로 전환 - 부동산 등기 신청시의 첨부 서류 보장 - 등기소는 등기신청 副本을 관할 세무서에 송부 - 인감증명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감증명을 부동산 양도용 과 기타용도로 구분 · 유효기간 단축: 3個月 → 1個月 · 거래상대방 明示 o 양도소득세 개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세율 조정 (토지, 건물 均一 과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지: 50%→50% · 건물: 30%→50% - 2년이내 양도 및 未登記 轉賣에 대하여 차등세율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년이내 양도: 70% · 未登記 轉賣: 100% - 실수요자의 세부담 경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지개발공사, 주택공사, 工團 등에 토지 양도시: 50%감면 · 토지개발공사의 토지 매입 채권으로 양도시: 100% 감면 	

년 월 일	경 제 시 책	배 경 및 취 지	주 요 내 용	비 고
'78. 8.16	農産物 増産 및 價格安定 對策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空閑地稅 개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한지세 과세 범위 확대 · 현행: 대지 및 잡종지 · 개정: 법인 비업무용 토지 추가 - 空閑地 보유기간에 따른 누진을 적용 · 세율조정: 5% → 5%~10% ○ 토지개발공사의 설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휴 토지를 적극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토지금고」를 토지개발공사로 개편('78.11.14) - 업무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지를 매입하여 택지개발 공급 · 公共用地 조성 · 空閑地 매매 受託 · 개인 및 법인의 遊休地를 收用하여 택지 개발 · 오이, 호박 등 11개 채소류 收買制 실시 · 마늘 등 5개품목 가격 安定帶 설정 · 농어촌진흥공사에 농수산물 가격 안정 사업단 설치 	
'78. 9.18	第 2次 輸入 自由化	'78.5.11 「제 1차 수입 자유화」의 후속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자유화 대상 품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가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품목 및 독과점 품목 - GATT 多者間 협상의 讓許 품목 - 국제경쟁력을 갖춘 품목 	'78.12.18 제 3차 수입자유화

년 월 일	경 제 시 책	배 경 및 취 지	주 요 내 용	비 고
'78.12. 5	土地去來許可 및 申告制 實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자유화율 제고 - 총품목 1,097개중 자동승인 품목: 666개 → 712개 - 수입자유화율: 60.7% → 64.9% · 국토이용 관리법 개정으로 토지거래 규제 구역 지정 · 遊休地 지정제도를 도입하여 적극적 개발 유도 	
'78.12. 5	證券去來稅法 制定	<ul style="list-style-type: none"> '62.11.28 증권거래세법 제정 '71.12.28 증권거래세법 폐지 '78.12.5 증권거래세법 再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株券 또는 持分の 양도에 증권거래세 부과 · 세율: 5/1,000 	
'78.12.18	第 3次 輸入 自由化	'78.9.18 「제 2차 수입 자유화」의 후속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자유화 대상 품목 - '79년도 자유화예시 품목 및 국제경쟁력 있는 품목 - 물가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품목 - 국산품 품질 향상 및 열관 리 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품목 ○ 수입자유화율 제고 - 총품목 1,097개중 자동승인 품목: 712개 → 753개 - 수입자유화율: 64.9% → 68.6% 	관련 '78.9.18

년 월 일	경 제 시 책	배 경 및 취 지	주 요 내 용	비 고
'78.12.22	〈農水産物 價格暴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추 9배, 김 20배, 미역 35배 	
'78.12.30	稅制改編	<p>중산층 및 근로소득자의 생활안정 도모, 중소기업 육성 지원, 부동산투기 방지 및 재산소득에 대한 重課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세법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소득 人的 공제액인상: 10만원 → 13만원(5인가족 기준) - 양도소득세를 조정 ('78.8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세율: 30% → 50% · 2年이내 양도: 70% · 未登記 轉賣: 100% - 官認 매매 계약서에 의한 부동산거래 의무화 ○ 법인세법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 범위 확대 및 중소기업에 대한 세율 인하 - 특별부가세의 세율도 3구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년이상 보유: 25% · 2년미만 보유: 35% · 未登記 양도: 40% ○ 증권거래세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인의 株券 또는 會社社員 持分 양도시 거래액의 0.5%를 賦課 	

년 월 일	경 제 시 책	배 경 및 취 지	주 요 내 용	비 고
'79. 1. 1	輸入擔保金 制度改善	기업의 자금부담 및 물가 상승 압력 완화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율 50%이상 품목 등의 一覽出給 조건(At Sight) 방식 수입에 대하여 수입 담보금 적립 면제 · 延支給 수입의 담보금적립률 인하: 50% → 20%(최고율) 	
'79. 2. 5	商業어음 支給保證制度 實施	<p>금융기관이 할인의뢰 받은 상업어음증 여신한도의 제약 으로 할인할 수 없는 어음에 대하여 지급 보증</p> <p>※ 「금융기관의 상업어음 지급보증 지침」 제정 ('79. 2. 15)</p>	<p>o 보증대상 어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격업체가 상품구입 및 임 가공 대금으로 발행한 상업 어음(양도배서 포함) - 어음 금액 200만원이상, 보증기간 90日이내의 약속 어음 <p>※ '79. 3. 15 상거래에 수반되 는 모든 어음으로 확대 (「지침」 개정)</p> <p>o 보증한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개월 또는 4개월 지급어음 금액에서 재할인 한도를 차감한 금액 <p>※ '79. 3. 15이후 금융기관이 자율결정(「지침」 개정)</p>	'79. 3. 15 지침 개정
'79. 3. 2	證券去來稅法 引下	<p>주식양도에 따른 세부담 완화 목적</p> <p>※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개정('79. 3. 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증권거래세율: 0.5%→0.2% · 영세율 적용확대: 보험사, 短資社, 綜金社, 증권사 주 식 포함(중전에는 액면가 이하 주식 및 은행주식에만 해당) 	

년 월 일	경 제 시 책	배 경 및 취 지	주 요 내 용	비 고
1979. 4. 17	景氣安定化 綜合對策 (4·17對策)	안정기반을 구축하기 위하 여 제도 및 경제운용 방식 등에 관한 구조적 개선과 근원적 대책의 수립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필품 需給 원활화 및 가격 안정 - 농수산 식품의 需給 원활화 · 채소, 과실 등 園藝作物의 增産 · 고추, 마늘, 양파 등 8개 품목 비축 · 18개 농수산식품의 價格 安定帶 운용 · 종합무역상사의 농수산물 수입 허용 · 農水協 판매 조직 확충 - 생활 緊要물자 생산 자금 지원 확대 · 지원업종(50개): 국민생활 필수품, 건축자재, 원자재 · 시설자금의 지원: 1천억원 · 생필품생산기업 우선 지원 - 생필품 생산시설의 新·增設 圓滑化 · 新·增設 제한제도와 규제 정비 · 외자도입 認可時의 시설 규모 제한 폐지 - 원재료 需給 圓滑化 · 內需 부족 품목 수출 조정 · 원자재 관세인하 · 사업자단체 수입추천제 및 수입금융 배정제 폐지 - 稅制의 탄력적 운용 · 생필품 관세인하 및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 품목 할당 관세 · 석탄, 두부제조업 등 생필품 영세업종의 소득표준을 인하 	

년 월 일	경 제 시 책	배 경 및 취 지	주 요 내 용	비 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급양복점등 사치성업종의 소득표준을 인상 - 물가행정 개선 · 독과점 품목 축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74개 → 30개内外 · 국내가격이 국제가격보다 높은 품목의 수입자유화 - 유통구조의 개선 · 소매기구의 協業化, 대형화 촉진 · 직장, 지역단위 소비조합 육성 · 상품별 전문도매상 육성 <p>○ 재정긴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산절감, 집행유보 - 공공용건물 건축억제 - 不急한 지방사업 억제 <p>○ 중화학투자 조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리한 투자사업 연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과잉 또는 중복 투자 사업 · 자기자본 투입비율이 낮은 사업 - 조정방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사업: 철저한 타당성 검토 · 계속사업의 연기 가능성 검토 - 「투자사업 조정위원회」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자금 규모 결정 · 개별사업의 타당성 검토와 자금 배정 순위 결정 	

년 월 일	경 제 시 책	배 경 및 취 지	주 요 내 용	비 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운용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형저축 확대 · 금리인상(3年制): <ul style="list-style-type: none"> 年 23.0% → 24.3% · 1年制 신설 - 정기예금 금리 인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年 13.2% → 16.2% - 단기어음 시장 육성과 회사채 발행 원활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사채 발행 한도 확대 (자본금의 100%~200%) · 단자회사 보증어음, 중개어음 등의 分離과세(15%) - 수출금융제도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실적 한도 거래제 대상 확대(평균가득률: 30%이상 → 무제한) (年間수출실적: 3천만불 이상 → 1천만불이상) · 원자재 비축 금융제도의 간소화 ○ 부동산투기 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지거래 허가 및 신고제 도입 - 전국 36개 도시계획 구역에 대한 기준지가 告示 - 부동산중개업의 허가제 실시 - 官認계약서 사용을 부동산 거래의 효력 要件化 ○ 생필품 안정 특별 대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需給 점검 품목(50개) · 쇠고기, 조기 등 농수산물 · 무연탄, BC油 등 연료 · 쌀 등 식료품 	

년 월 일	경 제 시 책	배 경 및 취 지	주 요 내 용	비 고
79. 4.19	輸出金融支援 制度 改編	수출금융 용자 절차 간소화 와 사후 관리의 효율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작물 생산을 위한 主生産 團地 조성 및 계약 재배 확대 - 농산물가격 安定帶 운용과 최소 비축제 - 수입원활화와 관세 인하 o 영세민 생활안정 대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세민 연탄가격 인상 차액 보조(119억원) - 영세민자녀 중학교 수업료 지원(114천명, 70억원) - 영세민 就勞 구호사업 (100억원) · 수출금융 單價 인상 · 先輸出계약서 거래의 업체별 금융한도제 · 원자재 내국신용장 개설 의 퇴인에 대한 수출이행 의무 부과 · 신용장 件別 금융 한도 확대 · 수출산업 특별설비 자금의 용자대상 확대 	
79. 4.24	技術導入 自由化 措置	수입자유화 추세에 맞추어 산업구조를 고도화 하기위한 기술확보의 필요성 증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o 自動認可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자력 및 방위산업과 관련 되지 않는 기술도입 계약 · 先拂金 50만달러 이하 · 경상기술료가 제품 純매출 액의 10%이하 또는 백만달 러 이하 o 개별심사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자력 및 방위산업과 관련 된 기술도입 계약 	

년 월 일	경 제 시 책	배 경 및 취 지	주 요 내 용	비 고
'79. 5.25	重化學 投資 調整 計劃 (第 1次)	경제안정화 시책의 일환으 로 '79.4月 중화학공업 투자 조정 착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허가 대상이외의 모든 기술도입 계약 ○ 발전설비 제작사업 - 현대양행 및 현대중공업을 제 1그룹으로 하고, 대우 중공업 및 삼성중공업을 제 2그룹으로 하여 二元化 ○ 디젤엔진 - 기존 현대엔진, 쌍용중기, 대우중공업 이외에는 신규 설비투자 불인정 ○ 현대양행 중장비 엔진공장 건설계획 白紙化(400억원 투자 중지) 	
'79. 6.12	機械工業 戰略 輸出 産業化	기계공업을 전략수출산업으 로 육성하고 생산기반을 확 충하기 위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전설비, 석유화학, 시멘트 제지, 베어링 등 36개 기계 공업 업종 선정 · 동업종에 대하여 각종 자금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稅制 上 혜택 부여 	
'79. 7月	<第 2次 石油 波動>	이란 혁명 勃發		관련 '73.10月
'79. 7.13	下半期 經濟 運用 對策	OPEC 석유 수출가격 대폭 인상으로 석유파동 재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유공급 확보와 석유류 소비 절약 - 정부간 베이스에 의한 원유 도입 확대 - 發電 및 시멘트제조업 원료 를 유연탄으로 대체 권유 	

년 월 일	경 제 시 책	배 경 및 취 지	주 요 내 용	비 고
'79. 7. 16	太陽熱住宅 普及 對策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에너지 절약 설비투자 지원 강화. ○ 투자계획의 選別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업용 건축규제의 短期的 완화 ○ 통화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月別 통화 需給 계획 - 단자회사 수신금리 인상 ○ 서민생활을 위한 보완대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月 50만원이하 사업소득자 및 근로소득자의 소득세율 30% 인하 - 농지세 기초공제액 인상 - 免稅대상 능가 확대 - 원자재 관세율 인하 - 가정용 전력요금의 차등 인상 - 등유가격 인하 · 난방이 필요한 모든 건물에 단열재 사용 의무화 · 40평이상 단독주택은 태양열 주택에 한하여 건축허가 · '72.9月~'82.12月까지 태양열주택 실수요자에게 취득세, 등록세 및 국민주택 채권 매입의무 면제 · 태양열 단독주택은 25평을 초과해도 국민주택 자금융자 (4백만원한도) 	
'79. 8. 1	外換管理 制度 改善	「외국환 관리 규정」 개정 ('79.7.31)	· 延支給 수입기간 연장: 90日 → 120日	

년월일	경제시책	배경 및 취지	주요내용	비고
'79. 8. 23	콜市場 擴大改編	「금융기관 콜거래실규약」 개정('79.8.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취업방문 동거 여권소지자의 여행기본경비 축소: 3천달러 → 1천달러 · 민간기업의 해외 선물거래자금의 현지보유 및 운용 허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콜거래 참가기관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전: 예금은행 및 韓銀 자금운용부 - 추가: 서울시소재 단자사, 종금사, 투신사 ○ 콜금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은행 공급자금: 年 19%이내 - 비은행 금융기관 공급자금: 年 19%~25%이내 	
'79. 9. 1	公共 建築物 新築 全面許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8.5월부터 억제되어온 정부청사, 비영리 법인 및 은행의 사무실 등에 대한 규제 해제 	
'79. 9. 6	金利 連動制 採擇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기관 與信 최고금리 폐지 · 금융기관 여신금리는 韓銀 재할인율을 기준으로 결정 	
'79. 9. 18	防衛稅 時限 延長	「방위세법」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위세법」 적용 시한연장: '80年 → '85年 · 세율 최고 50%인상 	

년 월 일	경 제 시 책	배 경 및 취 지	주 요 내 용	비 고
'79.10. 6	外國人 投資 最低限度額 擴大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자본 집약적 산업의 육성을 위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투자 최저한도액을 20만 달러에서 50만 달러로 확대 · 同 部門의 외국인투자에 대해서 持分率도 50%이상 허용 	
'79.10.18	外貨 與受信 最高利率 廢止	국제금리의 변동에 따른 외화자금의 원활한 조달 및 운용 도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外貨 與受信 최고 이율은 폐지하고 실행금리만 운용 	
'79.10.19	新規教育借款 導入推進	산업구조 고도화에 따른 人力需要의 전문화와 고급화 에 대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BRD·美수출입은행 등 국제 금융기관으로부터 약 4억달러 규모의 신규 교육차관 도입을 추진 	
'79.10.26	<10. 26事件>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박정희대통령 逝去 	
'79.11.15	建築制限 措置 全面 解除	고용증대 및 경기 부양책의 일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제한 조치 전면 해제 	
'79.12. 8	그린벨트 建築規制 緩和	그린벨트 지역내 주민생활 의 불편해소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린벨트내 기존 주택의 개 축 또는 재건축시 최소 대지면적 조정 · 소형 흠숨는 허가없이 건축 가능 	
'79.12.21	<최규하 大統領 就任>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第 10代 대통령 	

1980 年代



년 월 일	경 제 시 책	배 경 및 취 지	주 요 내 용	비 고
'80. 1. 1	支給準備率 引下	금융기관의 경영수지 개선 도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저축성예금: 20% → 11% 요구불예금: 27% → 20% 	
'80. 1. 4	流通産業 近代化 促進法 制定	유통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유통구조를 개 선하고 소비자 및 생산자를 보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통산업 근대화 기본계획의 수립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시행 및 國庫지원 유통단지의 지정 및 조성 유통근대화 촉진위원회 설치 (경제기획원) 	
'80. 1. 12	最高 利子率 引上	「이자 제한법 제1조 제1항 최고 이자율에 관한 규정」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금전 대차에 관한 최고 이자 율 인상: 年 25% → 40% 	
'80. 1. 12	換率 및 金利引上 (1·12 措置)	제 2차 석유파동과 사회불 안으로 물가상승, 국제수지 악화, 성장둔화, 실업증가 등 경기침체 그러므로 수출을 획기적으 로 증대하여 經濟難局을 타개하고 국제수지 개선으로 對外信認度를 제고할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환율인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율: 484원 → 580원/달러 금리인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기예금(1年): 年 18.6% → 24.0% - 일반대출: 年 18.5% → 24.5% - 수출지원금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年 9.0 → 12.0%(6月末까지) · 年 12.0 → 15.0%(7月以後) 보완시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가안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통화증가율: 20%이내 · 사치품에 대한 세율 인상 · 일부품목 관세율 인하 등 - 국민기본 생활의 안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政府米 무제한 방출 	

년 월 일	경 제 시 책	배 경 및 취 지	주 요 내 용	비 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混合穀 및 보리쌀의 현재 가격 유지 · 주택가격안정 및 투기방지 - 국제수지방어 · 開放자율화 추진 · 외국인 합작투자 촉진 · 해외건설 용역 확대 - 고용안정 · 중소기업 外貨 대출지원 (4억원) · 주택건설 확대 · 중소기업으로부터의 정부 물자 구매 확대: 500억원 → 1,500억원 	
'80. 1. 29	石油類 價格 自由化	'80.1.12 조치에 따른 환율 인상 및 원유가격 상승	· 석유류 가격 평균 59.4%인상	
'80. 2. 1	<이란 革命>			
'80. 2. 27	複數通貨 바스켓制度	長期間 환율 고정후의 급격한 환율조정에 따른 충격을 해소하고, 원貨환율에 엔貨 등 달러以外 통화 가치를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전의 「단일변동」 환율제도에서 「복수통화바스켓」에 의한 변동환율제도로 전환 · IMF의 SDR바스켓 (\$, DM, FF, £ , 엔 등)에 의한 달러 환율, 内外 金利差, 국제수지 등을 고려하여 韓銀 집중 기준율을 결정 	'90. 3. 2 폐지
'80. 2. 28	外國銀行과의 스왑限度 擴大	외국은행 국내지점을 통한 外貨 자금조달 확대	· 支店當 SWAP 基本限度를 5백만달러에서 1천만달러로 확대	

년 월 일	경 제 시 책	배 경 및 취 지	주 요 내 용	비 고
'80. 2. 29	生必品 價格 特別管理		<ul style="list-style-type: none"> · 追加限度制 및 특별한도제 실시 · 50개 생필품 需給 및 가격 특별관리(식료품 25개, 식료품以外 25개) 	
'80. 3. 28	제로베이스 豫算編成 方式 採擇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투자의 우선순위와 재정 규모를 재점검하여 '81年 예산부터 Zero Base 예산 편성 방식 채택 	
'80. 4. 21	<舍北事態>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원도 정선군 舍北邑의 鑛夫 流血 亂動 사건 	
'80. 5. 4	石炭價格 調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석탄 및 연탄가격 대폭 인상 (석탄 41.9%, 연탄 35.3%) 	
'80. 5. 18	<光州 民主化 運動>			
'80. 6. 5	當面 經濟運用 的 課題와 對策	학원소요와 광주 민주화 운동 등 사회불안으로 경제 운용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경제와 사회불안의 악순환을 방지하고 경제성장의 잠재력 회생을 도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용 및 서민생활 안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민생활안정 대책비 지원 (2,000억원) - 서민 및 주택자금 확대 (6,000억원 → 7,600억원) - 중소기업 지원 자금 증액 (4,000억원 → 5,000억원) ○ 국제수지방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금융 금리인상 猶豫 	관련 '80.9.16, '80.11.18

년월일	경제시책	배경 및 취지	주요내용	비고
			('80.12月까지 현행금리 12% 적용) - 수출금융 單價인상: 507원 → 525원/달러 - 사치성 不要不急 품목에 대한 긴급 관세 - 延支給 수입품목 축소 o 기업支援과 성장잠재력 확충 - 금리인하 · 與信금리 1% 인하 · 단자회사 어음할인율 1.5% 인하 · 會社債 수익률 2.0% 인하 - 통화공급 확대 · 총통화: 20% → 25% · 통 화: 15% → 20% - 元利金 償還用 특별 外貨 貸付 - 상업어음 할인제도 개선 · 어음할인 기간 폐지 · 중화학업체 할인한도 확충 - 설비자금의 選別的 지원 · 生必需品 생산업체 1,300 억원 - 임시투자세액 공제대상에 중소기업 추가	
'80. 7. 1	先物換 去來 制度 實施		· 원貨와 미달러貨간 3개월 物 先물환 · 무역 신용을 포함한 수출입 거래에만 적용	'80.10.15 확대 실시
'80. 7. 5	에너지 管理工團 設立			

년월일	경제시책	배경 및 취지	주요내용	비고
'80. 8. 2	<칼러 TV 市販 開始>			
'80. 8. 20	第 1次 重化學 投資 調整 完決	'79.5.25 [제1차 투자조정] 이 투자재원의 한계 등으로 지연되어 '80.8.20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 결정으로 단행	· 發電設備, 자동차 및 建設 重裝備 부문 투자 조정	'79.5.25 관련 조치
'80. 8. 27	短資社의 中小企業 支援 擴大	담보 및 신용력이 취약한 중소기업 자금난을 완화하고 금리 부담 등을 경감하기 위 한 조치	· 단자사의 중소기업 의무비율 확대: 할인어음 보유액 20%이상 → 30%이상 · 중소기업 적격업체 선정요건 완화: 4등급(A, B, C, D) → 5등급(A, B, C, D, E) · 신용보증기금 및 은행의 지 급보증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보험료(1%) 만큼 어음할인율 인하(年27% → 26%) · 중소기업 所持 어음할인기간 연장: 90日이내 → 180日이내	
'80. 9. 1	<전두환大統領 就任>		· 第 11代 대통령	
'80. 9. 13	第2次 重化學 投資 調整方針 確定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 (國保衛)] 主管	· 重電器機, 디젤엔진, 전자 교환기, 銅製鍊 등 4개부문 17개업체	'80.10.17 시행
'80. 9. 16	經濟活性化 方案 (9·16措置)	정치적 안정에 따라 수출 등 일부 지표가 호전되고 있으나, 負의 성장, 물가	o 宅地 및 주택공급 원활화 - 부동산 양도소득세를 인하 및 탄력 세율 적용	관련 '80.6.5, '80.11.8

년 월 일	경 제 시 책	배 경 및 취 지	주 요 내 용	비 고
		<p>상승, 국제수지 악화의 3重苦가 지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세율: 50% → 40% · 2年이내 양도: 70% → 50% · 未登記 轉賣: 80% → 75% - 주택건설업체 운영 자금 지원(200억원) - 토지개발공사의 토지매입 자금 추가지원(300억원) o 수출촉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금융 單價 인상: 평균 525원 → 540원/달러 - 零細기업 (100人以下)에 대한 수출지원 금융한도 확대: 3천만원 → 2억원 - 해외건설 지급보증 원활화 및 延拂 수출지원 o 금리 流動化 <ul style="list-style-type: none"> - 與受信금리 2%P 인하 o 식료품 공급의 원활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양곡 방출 확대 및 外米 도입 - 營農 및 營漁資金 확대: 4,600억원 → 5,520억원 o 서민생활안정 대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세민 취로사업 - 저소득층을 위한 우대특별 예금 신설(금리 年 24%) 	
'80. 9. 25	外國人 投資 誘致 擴大 方案	投資先의 다변화(미국 편중도 74%)와 우리경제의 국제화 도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o 외국인투자 적격사업의 범위를 확대 - 현행: 기계, 금속, 전기·전자, 화학공업 등 4개분야 	

년 월 일	경 제 시 책	배 경 및 취 지	주 요 내 용	비 고
'80. 9. 27	企業 體質強化 對策	※ 투자 認可額이 차관 확정액의 15%에 불과한 낮은 수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가: 식품, 의약품, 제조업과 유통 및 서비스산업의 4개 업종 ○ 투자 下限線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二元化된 투자 하한선(원칙 5만달러, 해외교포투자 20만달러)을 10만달러로 통일 ○ 외국인 투자 비율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內·外國人 투자비율은 50 : 50 원칙 - 例外산업 (100%까지 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高度의 선진기술 수반사업 · 他國에서도 과반수이상 투자하는 다국적기업 투자사업 · 投資先 다변화에 기여하는 사업 · 「외자도입법」상 조세 감면 혜택 배제 조건 투자사업 ○ 元金회수 기한 폐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업개시후 2년이 지나야 원금회수 보장하던 조항 폐지 ○ 토지 취득 규제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 투자자의 토지 취득에 대한 규제도 신축성있게 운용 · 기업과 기업인 소유의 비업무용 부동산 처분 촉진 	'81. 3. 27 후속조치

년 월 일	경 제 시 책	배 경 및 취 지	주 요 내 용	비 고
'80.10. 2	中小企業 義務貸出比率 調整	중소기업 자금조달의 活路 를 마련하기 위하여 「금융 통화운영위」는 중소기업에 대한 의무대출 비율 인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벌그룹 소유 계열기업을 자율적으로 정리 · 주식회사에 대한 외부 감사 제도 확대 ○ 5大 市中은행의 중소기업 의무대출비율 - 年間 총 대출증가액의 30%이상 → 35%이상 ○ 지방은행의 중소기업 의무대 출비율 - 年間 총 대출증가액의 40%이상 → 55%이상 	
'80.10. 7	第 2次 重化學工業 投資 調整完決	'80.9.13 「제2차 중화학 공업 투자 조정 방침」이 확정되었으나 관련업체의 자율조정 실패로 「國保衛」 에서 職權 조정 단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發電설비 및 자동차 - 발전설비는 대우, 승용차는 현대로 각각 一元化 · 현대자동차와 새한자동차 의 통합 - 승용차이외 부문은 기아 산업과 동아자동차가 합병 하여 중 소형 버스 및 트럭, 소방차 등 特裝車 생산 ○ 전자교환기 - 第 1機種(ITT/BTM)의 경우 삼성계열의 한국전자통신 (KTC)이 동양정밀을 흡수 - 第 2機種은 금성반도체가 대한통신을 흡수 ○ 重電器機 - 154KV급이상 초고압변압기 는 효성중공업이 쌍용전기 	'80.9.13 관련 조치

년 월 일	경 제 시 책	배 경 및 취 지	주 요 내 용	비 고
			<p>와 코오롱종합기계를 흡수 통합하여 독점 생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대중전기는 수출과 선박용 등 자체 수요에 한하여 생산 - 금성전선은 차단기 전문 생산 <p>○ 디젤엔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대엔진(大型), 쌍용중기(中型), 대우중공업(小型)의 3元化 체제 유지 - 대우의 선박용 엔진사업을 쌍용중공업에 통합시키고, 대우는 버스, 트럭 등 육상용 엔진만 생산 <p>○ 銅製鍊</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광업제련이 온산동제련을 흡수 통합 	
'80.10.15	先物換去來制度擴大	'80.7.1 시행한 선물환거래 제도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거래 확대: 종전 무역거래에만 허용되었으나 자본거래인 차관 및 外貨대출 원리금 지급을 추가 · 거래기간연장: 3개월→6개월 · 외국환 은행의 선물환 Position 한도 확대: 1백만달러 → 5백만달러 · 거래대상통화: 종전 미국 달러貨에만 허용되었으나 파운드, 마르크 및 엔貨를 추가 	
'80.10.15	外換管理節次簡素化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투자 요건 완화 및 절차 간소화 	

년월일	경제시책	배경 및 취지	주요내용	비고
'80.12. 4	土地開發債券 擔保貸出	'80.9.27 「기업체질 강화 대책」과 관련하여 금융기관이 토지개발공사 발행 토지개발 채권으로 대출금을 회수하는데 따른 收支補填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출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지개발채권을 담보로 韓銀이 금융기관에 대출 - 대출한도: 500억원 ○ 용자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자기간: 1年 이내 - 용자금리: 年 2% 	관련 '80.9.27
'80.12.13	不動產 景氣 活性化 對策	경기부양 대책의 일환으로서 주택부문 수요진작 및 주택공급의 원활화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도소득세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彈力稅率(실행세율) 제도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주택 : 30% → 15% · 일반부동산 : 40% → 25% · 2年미만 : 50% → 35% · 未登記 轉賣: 75% → 75% - 물가상승률 공제제도 도입 ○ 특별부가세율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인세 특별부가세율 인하: 25~40% → 20~35% 	

년 월 일	경 제 시 책	배 경 및 취 지	주 요 내 용	비 고
'81. 3. 1	景氣綜合指數 編制	景氣動向을 나타내는 종합 적 景氣指標	· 先行·同行 및 後行종합지수	
'81. 3. 3	<전두환大統領 就任>	'81.2.25 第 12代 대통령 선거 실시	· 第 12代 대통령 · 第 5공화국 출범	
'81. 3.14	企業및 企業人 所有 不動産 處分 促進措置	'80.9.27 「기업체질 강화 대책」에 따른 후속조치	o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 처분 - '82.3월까지 기업의 비업무 용 부동산 처분완료 - 현재 매각 계획이 확정된 부동산은 '81.9월까지 자체 처분 · 자체 처분이 안될 경우 토지개발공사에 의뢰하여 '81年末까지 매각 o 부동산 처분 지원 - 주거은행에 부동산 매각 안내 창구 설치 - 부동산 소유자와 願買者를 연결	관련 '80.9.27
'81. 4. 1	公正去來制度 施行	기업간의 경쟁촉진과 시장 기능의 활성화 목적 또한 독과점업체 및 그 가격에 대한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직접적 가격관리 방식에서 사후적 간접규제 방식으로 전환 ※ '80.12.3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공포	o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濫用 行爲 규제 -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그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하게 경쟁 제한 행위를 할 경우 이를 단속 - 가격의 同調的인 引上에 대한 시정조치 o 경제력 집중 억제 - 타기업의 주식소유, 합병 및 營業讓受 등을 통하여	

년월일	경제시책	배경 및 취지	주요내용	비고
'81. 4. 1	外換 Position管理 制度 整備	'81.4.1 同法 시행령 공포 「외국환 관리 규정」 개정 ('81.2.24) 및 「외국환 포 지션 관리세칙」 제정 ('81.3.17)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 는 행위 규제 - 사업자단체에 의한 경쟁 질서저해 행위 규제 o 불공정 거래 행위 규제 - 사업자 또는 사업자 단체의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 국제계약 규제 - 불공정한 거래방법과 과대 광고, 부당표시 등 규제 o 현물환과 선물환의 종합관리 (Overall Position) - 외국환의 매입 및 매각초과 종합 한도를 한은에서 결정 하여 외국환 은행에 통보 o 현물환 Position - 현물환의 매각초과는 원칙 적으로 불인정 o Position 관리기간 - 종합 포지션 10日 平殘관리	
'81. 4. 3	産業合理化 및 投資 獎勵	수출산업과 중소기업에 대 한 지원을 강화하여 위축되 어 있는 투자를 촉진하고 경 제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	o 경제활성화를 위한 설비 금융 지원 - 용자대상: 수출산업 및 중 소기업의 시설 改替 또는 증설에 소요되는 자금 - 총 용자한도 · 수출산업: 2,000억원 · 중소기업: 1,500억원 - 용자조건 · 용자금리: 年 15%	

년월일	경제시책	배경 및 취지	주요내용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자기간: 8년이내 (거치기간 3年 포함) ○ 운전자금을 中長期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환대상: 기업에 대한 운전자금 대출중 시설자금으로 轉用된 부분 ○ 당좌대출 및 제2 금융권 금리 인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좌대출: 年 22% → 21% - 제2금융권: 與受信 금리 年 0.5%~2.1%P인하 ○ 회사채 발행 촉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사채발행 최고금리인하: 23.5% → 22.5% - 일률적으로 3%인 리受 수수료율 인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증사채(2年): 2.2% · 무보증사채(2年): 2.4% 	
'81. 5. 7	公正去來委員會 發足	'80.12.31 「공정거래법」에 의거		관련 '81.4.1
'81. 5.18	美 剩餘農産物 導入 終結	'81年度 「美잉여 농산물 도입 협정」 체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美 公法(PL) 480호에 의거 · '55.5.31 이후 계속된 잉여농산물 지원 완전 종결 	
'81. 5.21	海外建設用役 支援制度 改善	對外거래 원활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덤핑 입찰행위 규제 · 국산기자재 사용촉진 	

년월일	경제시책	배경 및 취지	주요내용	비고
'81. 6. 26	住宅景氣 活性化 措置	원유 등 수입원자재가격의 안정으로 국내물가도 안정세를 회복하였으나 경기가 침체되어 있으므로 安定基調를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투자 촉진을 도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도소득세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탄력세율 적용시한 1年 연장('81.9.30→'82.9.30) - 양도소득 특별공제 限度率 인상: 10% → 15% ○ 주택공급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양주택 공급가격 통제 일부 해제 - 국민주택 규모의 50%이상 건설의무 폐지 - '78년 告示된 특정지역 해제 - 집단주택자금(400억원) 등 자금 지원 	
'81. 7. 1	特定地域 解除	'81.6.26 「주택경기 활성화 조치」에 의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8年 국세청이 告示한 특정지역(363개洞 4개APT地區) 해제 	
'81. 7. 1	支給準備率 引下 및 單一化	높은 지급준비율하에서의 만성적인 중앙은행 차입현상을 시정할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기관의 지급준비율을 평균 4.7%인하 · 모든 예금 및 금융기관에 지급준비율을 단일화하여 적용: 5.5% 	
'81. 8. 1	外國換 管理 制度 改善	기업의 대외활동 지원 및 대외거래의 불편해소 도모 ※ '81.7.21 「외국환 관리 규정」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은행 집중매매율 격차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중기준율의 上下2.5/1000 (종전 3/1000) ○ 외국환은행 업무제한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환은행 해외지점의 업무용 부동산 취득 허용 	

년월일	경제시책	배경 및 취지	주요내용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투자 규제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상대국 요건 폐지 등 해외투자 요건 완화 - 투자억제업종 폐지 등 해외투자 업종 확대 - 해외투자 허가절차의 간소화 ○ 현지 법인의 외환보유 한도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건설 및 용역사업: 계약 잔액의 2% → 계약 금액의 2% - 영업기금 및 이익금 유보 범위내에서 부동산 취득 허용 - 결산 영업 순이익금 보유 인정 	
'81.11.16	支給準備率 引下	금융기관의 수익 기반확충 과 자금운용의 자율성 제고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준율: 5.5% → 3.5% 	
'81.11.19	外國人 專用 收益證券 發行	投信社의 外受證券을 통하 여 外國人의 국내 증권 투자 를 허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행사: 한국투자신탁 · 발행규모: 1,500만달러 · 主幹社: Credit Swiss First Boston(영국) · 신탁자금의 운용: 국내 유가 증권중 주식 90%, 채권 10% <p>※ 대한투자신탁은 '81.11.26 발행(1,500만달러)</p>	

년월일	경제시책	배경 및 취지	주요내용	비고
'81.12.15	人口増加抑制 対策	선진국의 2배가 넘는 인구 증가율과 높은 인구밀도 지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계획사업의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임실천율 제고 ('80年 50% → '86年 67%) - 가족계획사업 확산을 위한 지원 시책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임시술을 의료보험대상 에 포함 · 불임시술자에 대한 특별 생계비 지원 확대 및 유급 휴가 - 가족계획 사업 운영 및 영리체계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건요원 통합운영 · 가족계획 시설 병의원 지정 확대 ○ 小子女 가정에 대한 사회 지원 시책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녀수에 따른 주민세 차등 과세, 의료보험 차등 적용 - 공공주택 입주 등 사회복지 제도의 우선권 부여 ○ 男兒 선호 관념 불식과 여성 의 사회적 지위 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법개정 등 남녀차별 법령제도 개선 ○ 교육 및 홍보활동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구문제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 	
'81.12.29	預金制度 改編	다기화 되어있는 예금제도 를 단순화하고, 가계저축 증 심의 예금제도 확립을 도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금제도의 개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축성예금 중 할인식 양도 성 정기예금 및 6개월 단위 정기적금 폐지 	

년 월 일	경 제 시 책	배 경 및 취 지	주 요 내 용	비 고
'81.12.29	稅制 改編	재정수입 확보와 소득 재분배 ※ '81.12.5 「교육세법」 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기적금과 정기에금 금리를 단계적으로 일치 - 기업적금 폐지 및 개인적금 계약 上限 설정 (구좌당 1천만원) ○ 與受信 金리 인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기에금(1年): 年 17.4% → 16.2% - 여신금리: 1%P인하 (상업어음할인: 年18%→17%) ○ 조세감면제도 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요산업에 대한 조세지원 축소 및 직접 감면 방식 지양 - 特別償却, 투자준비금 등 간접지원 방식 채택과 중복 지원 배제 - 기술개발, 중소기업 특정 시설 투자 등에 대한 조세 지원 확대 ○ 직접세제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세 공제제도 확대 및 근로소득세액 공제제도 도입 - 법인세 및 상속세율 인하 ○ 교육세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시설과 敎員 처우개선 등 재원 조달 - 限時的 목적세('82~86年) 	

년.월.일	경제시책	배경 및 취지	주요내용	비고
'82. 1. 7	民間信用 限度制 廢止	'80년대에 들어 고도 경제 성장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개선 및 안정 위주로의 정책기조 전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與信규모 자율 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신규모를 금융기관 조성 자금 한도내에서 자율 결정 ○ 간접적인 통화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화 관리방식을 직접규제 방식에서 간접규제 방식으로 전환 	
'82. 1. 14	當面經濟 對策 方案 (1·14 措置)	세계경기회복 遲延과 달러 貨 강세 등으로 수출 저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정기조의 정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화의 안정적 공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통화는 20~22% 증가율 범위내에서 공급 · 再割引, 支準率 등을 통한 간접적 방법으로 통화관리 방식 전환 - 재정운용의 합리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산절감, 예산개혁 작업 추진 - 물가관리의 합리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가의 事前指導 지양 및 사후 점검 품목 최소화 (97 → 67개 품목) · 공정거래제도 확충과 경쟁 촉진 ○ 수출의 촉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금융 單價 인상 (540 → 580원/달러) - 수출용원자재에 대한 관세 徵收 猶豫 時限 1年 연장 ('82.6.30 → '83.6.30) ○ 투자의 촉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정사업 早期집행 	관련 '82.5.18. '82.6.28

년월일	경제시책	배경 및 취지	주요내용	비고
'82. 5. 4	〈巨額어음 不正 事件〉	「이철희, 장영자」의 거액 어음사기 사건으로서 사채시장 경색 현상 초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需要者 금융대상 확대 (내화벽돌 등 10개 추가) - 임시투자稅額 공제時限 6個月 연장('82.6.30→12.31) - 수입담보금 적립제도 폐지 - 조달청의 중소기업 제품 구매 확대 <p>○기업의 수익성제고 및 산업 합리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에너지절약 시설자금 지원 ('82年 2천억원) - 비업무용 부동산 매각 촉진 <p>○주택경기 활성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 소득세 100% 면제(아파트 지구 이외지역은 50%면세) -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면제기간 6개월 연장: 1年 → 1年 6個月 - 양도세 탄력세율 時限 연장 ('82.9.30 → '84.3.31) - 일반주택자금지원(3천억원) - 토지개발공사 택지의 민간 공급 <p>○營農支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농, 營漁資金 지원 확대 및 금리 인하 - 농어민 자녀 학자금 지원 (200억원) 	

년월일	경제시책	배경 및 취지	주요내용	비고
'82. 5.15	核心戰略 育成 品目 選定	전자공업구조 高度化를 통한 수출기반 확충	○ 전략품목: 미니컴퓨터, 마이 크로컴퓨터, 磁氣디스크 및 테이프장치, 인텔리전트터미 널, 전용 터미널, 모뎀 등 7개 품목	
'82. 5.18	當面 經濟對策 (5·18 措置)	물가가 안정되고 국제수지 도 개선되고 있으나 국내 수요부진, 중화학 과잉투자 등으로 경기회복이 지연 또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균형발전 미흡, 기업재무구 조 취약 등 구조적요인이 실물경제 활성화를 저해 ※ '82.1.14 조치의 보완 대책	<p><당면 경제시책></p> <p>○ 농촌소득 기반의 확충</p> <p>- 지방정부의 地方道 포장 사업추진</p> <p>· 금융기관 차입으로 2천억 원 조달</p> <p>○ 중소기업지원 강화(2천억원)</p> <p>- 중소기업 계열화 촉진으로 부품공업 발전 지원</p> <p>- 중소기업 금융지원폭 확대</p> <p>· 중소기업 납품代錢어음의 재할인율 인상: 70%→80%</p> <p>· 중소기업 의무대출 비율 적용 강화(기준 35%, '82 1/4 실적 28.9%)</p> <p>· 국민은행의 중소기업 자금 확대(1천억원 추가 지원)</p> <p>· 중소기업 시설자금에 대한 同一人 한도(5천만원)철폐</p> <p>- 국산기계 구입자금 확대 공급</p> <p><1·14조치 보완 대책></p> <p>○ 주택경기의 활성화</p> <p>- 稅制개선</p> <p>· 신축주택 양도시 양도세율 인하: 15~35% → 5%</p>	관련 '82.1.14, '82.6.28

년 월 일	경 제 시 책	배 경 및 취 지	주 요 내 용	비 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5.7평이하 주택신축용 택지 양도시 양도세 100% 감면 · 25.7평이하 주택 취득세 및 등록세 30% 세액 감면 - 사원용 임대주택건설 권장 <p>○ 수출지원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 금융單價 인상: 580원 → 600원/달러 <p>○ 기업투자 촉진 및 재무구조 개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인세율 單一化 - 紙上配當稅 적정留保線의 상향 조정 	
'82. 5. 23	流動性 調節方式 一部變更	<p>종전에는 지급준비율을 낮게 유지하면서 「통안증권」 및 「통안계정」을 통하여 금융기관의 유동성을 조절</p> <p>이에따라 금융기관이 교환결제 및 고객의 자금수요 충족 등에 애로를 겪는 실정</p>	<p>○ 지급준비율 인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준율: 3.5% → 5.5% - 이에따라 추가 예치된 지급준비금에 대하여는 年 12%의 이자 지급(附利기간: '81.5.23~'83.1.7) 	
'82. 6. 3	輸入商品 品質檢査 強化	不良 수입상품으로부터 소비자 보호	· 檢査對象 품목 확대 (32개→54개)	'82.8.1 시행
'82. 6. 28	投資促進을 통한 經濟 活性化 對策 (6·28 措置)	'81年 하반기 이래 6회의 금리인하 및 2회의 경기부양 대책의 효과가 경제 각 부문에 나타나기 시작하였으나 투자는 아직 저조	<p>○ 금리인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은행금리 · 예금금리: 年12.6→8.0% · 대출금리: 年14.0→10.3% 	<p>관련</p> <p>'82.1.14, '82.5.18</p>

년월일	경제시책	배경 및 취지	주요내용	비고
		<p>그러므로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금융·稅制面의 지원과 은행의 民營化 및 금융제도 개선 필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2금융권 (단자회사) · 受信(발행어음): 年13.0 → 8.0% · 與信(어음할인): 年16.5 → 12.0% ○ 서울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인세율 인하: 33~38% → 20% - 특별소비세 탄력세율 확대 적용 ○ 優良중소기업 증점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계부품 생산업체 중심으로 증점 육성업체 선정 (1,000개 이상) - 사채시장 경색(이철회, 장영자 사건)을 감안하여 시설자금 등 금융지원 - 同業者간의 상호보증으로도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대출 가능 ○ 금융제도 개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은행 民營化: 제일은행 및 서울신탁은행('82年), 조흥은행('83年) ○ 통화와 與信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가안정을 위하여 통화, 與信의 안정기조 견지 - 與信증가는 중소기업, 기계공업, 주택자금 등 생산과 수요에 직결되는 방향으로 운용 	

년 월 일	경 제 시 책	배 경 및 취 지	주 요 내 용	비 고
'82. 7. 3	金融 實名去來 와 金融資産 所得에 대한 綜合課稅 (7·3 措置)	私債거래를 양성화하여 금융거래의 정상화 도모 ※ 「이철희·장영자」의 거액 어음 부정사건의 영향	○ 방안내용 - '83.7.1일 이후의 모든 금융거래에 實名制 실시 - 소득세율의 差等化 (實名사용시 10%, 假名사용시 15%) ○ 立法化 - 금융실명거래에 관한 법률 ('82.12.31) ※ 同 법률에서는 실명제 실시 시기를 「'86.1.1 대통령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는 但書 조항을 붙이고 있어 결국 실시 보류	'82.12.31 실시보류
'82. 7.15	外貨貸出制度 改編	설비투자 촉진을 통하여 경 기활성화를 도모하고, 外貨 금융의 원貨 금융으로의 전환을 억제 ※ 「외화대출 취급 규정」 및 「원리금 상환용 특별 외화대출 취급 규정」 개정	○ 中長期 외화대출 - 용자대상 확대 · 내수용 시설재 및 電源개 발용 기자재의 구입자금, 수입대금 등 포함 - 용자기간: 5年이상 10년이 내 → 10年이내 ○ 원리금 상환용 특별 외화 대출 - 短期 외화 차입상환 자금을 용자대상에 포함	'83.2.25 개편
'82. 7.26	對外去來規制 緩和	對外거래 원활화	○ 대외거래 규제 축소 - 制限 면제거래의 확대 - 認許可權의 下部 위임 확대	

년 월 일	경 제 시 책	배 경 및 취 지	주 요 내 용	비 고
'82. 8. 2	與信關聯制度 改編	<p>금융의 자율화 및 효율화를 촉진하고 금융자산의 건전화 를 도모</p> <p>※ '82.7.22 「금융부문 자 금운용 규정」을 「금융 기관 여신운용 규정」 으로 개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건설 및 용역사업 관리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보유 외화자금 한도 확대: 2% → 3% ○ 해외투자 허가 절차 간소화 ○ 금융기관의 대출기간 자율 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전 대출기간(최장): 운전 자금 1年, 시설자금 10年 - 변경: 자금조달 재원 범위 내에서 대출기간을 자율적 으로 결정 ○ 대출금 구분방법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전: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 - 변경: 기업자금(운전자금 및 시설자금), 가계자금, 공공 및 기타 자금 ○ 운전자금 대출방법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전자금은 상업어음 할인 등 단기자금 중심으로 공급 	
'82. 8. 2	輸出支援 金融制度 改編	<p>수출금융을 보다 탄력적으 로 공급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복잡 다기화 되어 있는 관련규정을 통합, 정비</p> <p>※ '82.7.22 「수출금융 규 정」 개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지원 금융과 관련된 각종 심의회 폐지 · 생산자금(실적 기준 稼得額 금융) 수혜 기준확대: 수출실적 3백만달러이상 → 1백만달러이상 · 韓銀이 담당하던 사후 관리 업무를 외국환은행에 위임 	

년 월 일	경 제 시 책	배 경 및 취 지	주 요 내 용	비 고
'82.11. 3	金融機關의 RP取扱許容	국공채 消化를 촉진하고 금 융기관의 업무 다양화 도모 ※ '82.9.17 「환매 조건부 채권 매매 업무규정」 개정(증권관리 위원회)	· 증권회사에서만 취급하던 RP (還賣 조건부 채권)매매를 금융기관에도 허용	
'82.11.18	輸出金融 單價 引上		· 수출금융 용자 單價: 590원 → 610원/달러	
'82.12.21	벤처 캐피탈社 發足	한국개발투자	· 사업내용: 연구개발, 도입기 술의 기업화 사업 에 대한 투자 · 서울지역 7개 단자회사가 7억5천만원씩 공동 출자	
'82.12.22	住宅投機 抑制 對策	서울 일부지역 投機現象의 전국적 파급이 우려되고 주택가격 및 집賃가 급등 하여 물가 안정기조 위협	○ 주택분양가격 및 청약제도 개선 - 획일적인 주택분양가격을 層別로 차등화 - 청약예금 가입자중 「0순위」 제도 폐지 · 1순위: 청약예금 가입후 9개월 경과한 者 · 2순위: 청약예금 가입후 3개월 경과한 者 ○ 분양시기 조정 - 종전: 着工時 분양 가능 - 개선: 指定業者 10%, 등록 업자 20% 工程後 분양 가능	

년월일	경제시책	배경 및 취지	주요내용	비고
'82.12.23	海運産業의 合理化 計劃	<p>'79年 제2차 오일쇼크후 세계무역량은 감소한 반면 船腹量은 꾸준히 증가하여 船舶需給의 불균형이 지속되고 운임이 하락하는 등 세계 해운경기 침체</p> <p>이에따라 국내 海運船社의 결손 규모가 커지고 일부 기업이 도산하는 등 해운 불황이 심각하므로 이를 타개하기 위하여 해운산업을 합리화 대상사업으로 지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o 小型 및 임대주택 건설 권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양세대의 일정비율 이상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건설 o 국민주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양가격의 지역별 차별 가격차 확대 - 轉賣 제한기간 연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 및 투기에상지역: 6개월 → 2年 - 분양자격요건 및 입주관리 강화 o 합리화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海運船社들을 그룹별로 통합하거나 운영船社 체계로 운영 · 위탁船社는 합리화 계획 승인 2年以內에 운영船社에 합병 - 운영船社 요건(원양부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벌크船社: 船腹量 1,300천 G/T이상 · 컨테이너 專用船社: 1,000천 G/T이상 o 해운산업 합리화 船社에 대한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세감면 규제법」에 의거 등록세, 취득세, 특별 부가세 등 감면 - 부채元利金 상환 지원 · 거치기간 연장 또는 운전 자금 대출, 특별외화자금 대출 등으로 代換 	'84.5月 시행 '87.2月 보완대책

년월일	경제시책	배경 및 취지	주요내용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中古船 改造자금 지원제도 신설 o 합리화 추진상의 보완 대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합리화대상 船社에 대한 재무조사(거래은행) - 陸上 종사자 失業이 발생하지 않도록 흡수 가능한 인력 최대 활용 - 備船, 貨船 등 기존 계약의 존중 - 용자비율 조정으로 기업 체질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조선 용자비율: 90% → 80% · 선박도입 용자비율: 100% → 80% 	

년월일	경제시책	배경 및 취지	주요내용	비고
'83. 1. 1	遞信預金 및 保險 施行	<p>체신관서로 하여금 예금 및 보험업무를 취급토록 함으로써, 금융의 대중화 및 보험의 보편화를 도모</p> <p>※ '82.12.31 「체신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제정</p>	<p>○ 체신예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금의 종류: 요구불예금 및 저축성예금 - 예금금리: 체신부장관 결정 - 예금의 사용: 금융기관에 대한 예탁이나 국공채 매입 등에만 사용 <p>○ 체신보험('83.7.1 시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험의 종류: 생명보험 및 상해보험 등 人的 보험 - 보험기간 등 보험업무 취급 요령: 「체신부령」으로 결정 - 보험자금의 운용: 보험가입자에 대한 대부, 금융기관 예탁, 국공채 매입 등에 국한 	
'83. 2. 1	銀行의 Factoring 業務 取扱	<p>은행업무 다양화 방안의 일환</p> <p>※ '82.12.3 「Factoring업무취급에 관한 금융단체협정」 제정</p>	<p>○ 취급업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상매출 채권의 매입 및 회수 관리 - Factoring대출 <p>○ 매입방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환청구권부 매입 및 비상환청구권부 매입 - 수수료: 年 1%이내 	
'83. 2. 16	不動産 投機 抑制 對策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동산 중개업 허가제 실시 검토 · 채권입찰제에 의한 아파트 분양 및 분양가격 實勢化 검토 	

년월일	경제시책	배경 및 취지	주요내용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정지역 양도소득세 과세 표준을 實去來가격으로 적용 · 토지 용도변경에 의한 地價 상승과 투기 억제를 위하여 공공기관이 매수한 후 개발·분양 	
'83. 2.18	特定地域 告示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 34개洞, 압구정洞 및 개포洞 등 2개 아파트 지역 	
'83. 2.24	金融機關에 대한 再割引 및 貸出比率 調整	통화관리를 강화하는 동시에 유동성 조절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업어음 재할인 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 금융기관 할인 총액의 80%이내→70%이내 - 중화학업체중 적격업체: 금융기관 할인 총액의 60%이내 → 40%이내 ○ 대출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에너지 절약 시설자금: 금융기관 취급 용자금액의 100%이내→80%이내(수출지원 금융과 동일수준) - 군수산업지원 자금: 80%이내 → 70%이내 	
'83. 2.25	外貨貸出制度 改編	<p>外貨대출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外貨대출 업무의 효율화를 도모</p> <p>※ 「外貨대출 취급 규정」 등 外貨대출 관련 규정을 「外貨대출 규정」으로 단일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자대상 확대: 수출용 원자재 수입자금, 화물운임 등 9개 항목의 貿易外 지급자금 추가 · 해당업체는 「수출금융규정」에 의한 원貨 금융과 「외화대출 규정」에 의한 外貨 금융을 선택적으로 이용가능 	관련 '82.7.15

년 월 일	경 제 시 책	배 경 및 취 지	주 요 내 용	비 고
'83. 3. 14	輸出金融 單價 引上	세계경기 회복지연과 각국 의 보호무역주의로 계속 부 진 상태를 보이고 있는 수출 촉진 목적	· 수출금융 단가(생산자금): 610원 → 640원/달러	
'83. 3. 26	自動車保險 制度 改編		· 자동차 보험업무 취급회사 다원화: 손해보험사 추가 · 종합보험료율 조정: 평균 15% 인상	
'83. 4. 15	輸出基準 價格制 廢止		· 신발, 칼라TV 등 59개 품목 에 대한 수출기준가격 제도 (Check Price) 폐지	
'83. 4. 18	土地 및 住宅 問題 綜合對策	주택가격 안정과 투기적 수요억제를 위해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통화의 안정적 운용과 대체 투자대상의 개발	○ 토지稅制 개편 - 양도소득세의 탄력 세율 適用時限 단축: '84. 3. 31 → '83. 6. 30 - 토지 종합재산세제 도입 검토 ○ 주택 및 택지공급 확대 - 公營개발에 의한 대도시 택지공급 확대 방안 (例, 木洞신시가지 개발) ○ 투기수요 억제 - 기업의 비업무용토지 취득 억제를 위한 행정지도 강화 ○ 통화의 안정적 운용 - 긴축 재정으로 총통화율 억제	

년월일	경제시책	배경 및 취지	주요내용	비고
'83. 5. 1	APT分讓 債券入札制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파트 당첨자 결정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청약예금 가입자중 주택 채권 高額 매입자 순으로 결정 ○ 채권입찰대상 및 주택 채권의 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25.7평이상의 APT - 20年 거치 年利 2%의 국민 주택 채권 	
'83. 5. 18	短資會社の 業務運用準則 改定	제 2금융권의 자본금 증액 및 중소기업 대출 촉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자회사의 납입자본금 증액 자율화 · 중소기업에 대한 의무 대출 비율을 기업어음 할인 보유 잔액의 35%로 인상(종전30%) · 투자신탁회사의 중소기업 발행어음 매입 허용 	
'83. 5. 20	延支給 輸入 期間 短縮	短期外債 축소로 外債구조 개선	· 延支給 수입기간 단축 (180日 → 150日)	'83. 12. 1 추가 단축
'83. 6. 1	短資社 및 相互信用金庫 新設 抑制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자사의 신규 설립 불허 · 특정지역내의 상호신용금고 신규 설립 불허 	'83. 11. 25 후속조치
'83. 6. 10	시멘트 共販制 廢止	시멘트가격 및 판매의 자율 경쟁 유도	· 시멘트 공판제를 폐지하되 가격의 급격한 변동을 방지하기 위해 가격 사후관리	
'83. 7. 1	信用管理基金 制度 施行	단자사, 종금사, 상호신용금고 등의 경영부실로부터	· 예금보증 대상기관: 短資社, 綜金社, 상호신용금고	

년 월 일	경 제 시 책	배 경 및 취 지	주 요 내 용	비 고
'83. 7.12	外國商標 導入 促進	예금주를 보호하고, 단기금융회사 상호간의 원활한 자금유통을 도모 ※ '82.12.31 「신용관리 기금법」 제정 국내상품 고급화 및 품질 향상 도모	· 기금의 조성: 정부출연, 단자사 등의 출연 ○ 외국상표 사용 전자제품의 수출 의무화율 조정 - 단독상표: 80% → 50% - 결합상표: 70% → 폐지 ○ 외국상표 사용 전기제품의 수출 의무화율 인하 - 수출의무화율: 30% → 5%	
'83. 7.13	相互信用金庫의 小規模企業 支援 強化	소규모기업에 대한 원활한 금융지원 목적 ※ '83.7.7 「상호신용금고 법 시행령」 개정	○ 동일인 與信한도 확대 - 소규모기업: 2천만원 → 자기 자본의 5%이내(최고 1억원) - 대기업: 2천만원 → 자기자본의 2%이내(최고 3천만원) ○ 대출의무 비율 설정 - 총 여신의 80%이상을 소규모기업 또는 개인에 대출	
'83. 7.18	資本市場機能 擴充 方案	직접 금융시장(증권시장)을 활성화함으로써 기업의 자금 조달을 원활히 하고 기업 공개의 촉진을 통한 국민기업화	○ 주식 時價 발행 - 有價增資時 주식의 시가 발행 허용 ○ 기업공개 요건 완화 - 자본금 5억원이상 중규모 기업까지 기업공개 대상 확대	

년 월 일	경 제 시 책	배 경 및 취 지	주 요 내 용	비 고
'83. 8月	<明星事件>	「명성그룹(김철호)」의 금융 사고로 사채시장의 경색 초래	- 주식公募 비율 하향 조정 (총발행 주식의 20%이상) o 증권시장의 다양화 및 증권 회사 업무영역 확대 - 1부市場(대기업 중심), 2부市場(중규모, 신규기업) - 자본금 200억원 이상의 증 권회사에 CP의 인수·매출 및 어음증개업무 취급 허용	
'83. 9.13	單獨住宅地 供給計劃	자투리땅의 택지 조성으로 토지 이용의 효율성 제고 (한국토지개발공사)	o 주택지 공급 규모 - '85년까지 총 1,554천㎡의 택지를 조성하여 공급 - 가구당 분양규모: 165.3~231.4㎡(50~70평)	
'83.10. 1	民營아파트 分讓制度 改善	아파트의 과열투기 억제	o 분양제도를 3元化 (0순위제 폐지) - 투기과열지구: 1순위자만을 대상으로 채권입찰제 실시 - 경쟁과열지구: 분양가구수 의 20배까지 1순위자로 신청자격 제한 - 일반지구: 1~3순위별로 신청자격 부여 o 서울시 全域을 경쟁과열지구 로 지정	

년월일	경제시책	배경 및 취지	주요내용	비고
'83.10.24	首都圏 整備計劃	수도권내의 인구집중 유발 시설을 규제하기 위한 「수도 권 정비계획법 시행령」 확정 ('83.10.24)	○ 신축 규제대상 - 연면적 3만㎡이상 또는 21층이상의 일반업무 시설 - 연면적 2만㎡이상 또는 11층이상의 판매 시설 - 고등학교이상의 모든 교육 시설	'84.6.23 기본계획
'83.11. 2	環境汚染 防止 基金 新設	公害방지 시설 설치 촉진	○ 기금규모 - '86년까지 총590억원 조성 ○ 용자조건 - 금리: 年 8.5~9% - 용자기간: 3년거치 10년 상환	
'83.11. 7	輸出金融 單價 引上	수출촉진과 수출의 外貨가 득률 제고	· 수출금융 단가(생산자금): 640원 → 660원/달러	
'83.11.15	株式時價發行 制度實施 方案	證市를 통한 기업의 원활한 자금 조달 도모	○ 주식 발행 가격 - 權利落 가격의 20%이내로 할인한 가격 ○ 時價발행 한도 - 增資額의 20~40%로 제한	
'83.11.17	商業어음 割引 限度 擴大	기업의 單期운전자금 조달 의 원활화 도모	○ 現행 상업어음 할인 한도 - 결산일 기준 直前 1年間 받을어음 금액의 1/4범위내 - 최근 3개월 매출액에 과거 1年間 받을어음 수취율을 곱한 금액 범위내	

년 월 일	경 제 시 책	배 경 및 취 지	주 요 내 용	비 고
'83.11.25	相互信用金庫 新規設立 不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업어음 할인한도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 할인한도 외에 「최근 1年間 받을어음 금액의 1/4 범위내」를 새로이 추가 · 상호신용금고 신규 설립인가 전면 중지 	관련 '83.6.1
'83.12.1	延支給 輸入期間 短縮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延支給 수입기간: 150日 →120日 	'84.7.30 추가 단축
'83.12.8	組稅減免 擴大	금융보험의 新技法 기업화 투자 촉진 ※ 「조세감면 규제법」 시행령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개발 준비금 인정 대상 업종에 금융보험업 추가 	
'83.12.12	組稅減免 基本通則 制定	課稅의 객관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조세감면 규제법 기본통칙」 제정('83.12.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세 감면 대상의 객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세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 사업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 · 주택신축판매업, 자동차 再生 및 改造사업, 屠畜場 경영업 등 	'83.12.1 소급시행
'83.12.12	住宅投機 抑制 對策	「명성사건」 등 거액어음 사건, 금융실명거래 계획 등 으로 금융시장이 동요되면서 투기자금이 부동산으로 流入 이에따라 '83.6月 이후 서울 의 신축아파트 중심으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기지역에 대한 행정 단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부처 합동 투기 단속 ○ 아파트 분양시기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파트 분양시기를 工程의 10% 완료시로 변경 - 분양후 1年内 입주 조치 	

년 월 일	경 제 시 책	배 경 및 취 지	주 요 내 용	비 고
'83.12.31	政府 投資機關 管理 基本法 制定	부동산 투기가 재발되고 10월에는 전국으로 확산 정부 투자기관의 책임 경영 체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 ※ 「정부 투자기관 관리법」과 「정부 투자기관 예산 회계법」을 대체	○ 轉賣 제한기간 연장 - 아파트를 분양 받은 후 轉賣할 수 있는 기간 연장: 6개월 → 2年 · 정부 투자기관: 정부가 납입 자본금의 50% 이상을 출자한 기업체 · 경제기획원에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위원회」 설치 · 정부 투자기관의 경영조직 二元化: 理事會, 社長	

년 월 일	경 제 시 책	배 경 및 취 지	주 요 내 용	비 고
'84. 1. 23	金利調整	금리의 자금수급 조절 기능 제고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與受信 金리 제도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출금리를 年 10.0~10.5% 범위내에서 借主의 신용도에 따라 차등 적용 - 장기 저축성금리를 인상하여 장단기 예금간의 금리 격차 확대 - 지방은행의 1年이상 정기예금금리를 전국은행보다 0.5%P 높게 조정 ○ 여수신 金리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기예금: 8.0% → 9.0% (지방은행 9.5%) - 與信金리: 10% → 10.0~10.5% 	
'84. 2. 1	市中銀行의 信託業務 取扱	신탁업무 취급 금융기관간 경쟁여건을 조성하고, 시중은행의 수익기반 확충을 도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신탁은행('76.8月)과 10개 지방은행('83.5月)만 취급하여 온 신탁업무를 市中은행도 취급할 수 있도록 허용 	
'84. 2. 16	商業用 建物 賃貸料 管理 指針 確定	대도시지역을 중심으로 주기적인 부동산 투기로 상업용건물 임대 공급 애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대료 조정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지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 대상건물: 백화점, 지하상가 등 常設市場 및 연건평 3,000㎡이상의 상업용 임대건물 ○ 임대료 조정기준 내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直前 임대료 인상시기를 감안하여 임대료 인상률 上限 결정 	

년월일	경제시책	배경 및 취지	주요내용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전 임대료 조정 후 1년 미만시 인상 불가 · 1년이상 2년미만: 5%이내에서 인상 · 2년이상: 10% 이내에서 인상 · 다음 경우는 조정 上限에 10 포인트 추가 · 인근지역의 類似건물에 비해 임대료가 현저히 낮은 경우 · 改築, 시설개량, 도시계획 등에 의해 임대조건이 현저히 개선된 경우 	
'84. 3. 7	現地金融 및 外國換銀行 借入에 관한 管理 強化	現地금융의 증대 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現地 금융 허가권자의 상향 조정 - 일정한 경우의 現地 금융 허가권자를 外國환은행장 등에서 韓銀총재로 변경 · 해외건설 관련 한도 초과 現地금융 · 5천만달러 이상의 現地금융 차입 및 1억달러 이상의 지급보증 계약 	
'84. 3. 15	住宅建設 綜合計劃 確定	주택보급률이 낮아지고 있으며 불량주택까지 감안할 경우 주택부족 문제는 심각한 상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수요자 본위의 주택공급제도 확정 - 公營개발방식에 의한 대단위 주택단지 개발 - 조합주택 지원체제 확립 - 임대주택 건설 확대 ○ 주택공급 계획 - 공공부문 11만戶, 민간부문 	

년월일	경제시책	배경 및 취지	주요내용	비고
'84. 3. 23	消費者保護 綜合施策	유통구조가 복잡多岐하고 前근대적이므로 물가안정과 국민경제의 균형적 발전에 制約을 초래	<p>16만戶(국민주택 11만戶, 임대주택 1만 5천戶 건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격 표시업소 추가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백화점, 연쇄점, 슈퍼마켓 등 3만개소 ○ 가격표시 優秀業所에 조세· 금융혜택 부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표준을 10% 경감 - 유통근대화 지원자금에서 업소당 5백만원씩 모두 10 억원 지원 ○ 約款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비자에게 불리한 은행, 보험, 신용카드 등의 約款 을 개정 ○ 품질관리시책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량상품 113개 추가 지정 - KS표시품목 27개 추가 지정 	
'84. 6. 1	讓渡性 定期預金證書 導入(CD)	<p>최근 수년간 제 2금융권에 서 CP, CMA 등 수익성이 높 은 단기금융상품이 개발되고 '84.1.23 「금리조정」으로 은행과 비은행간 수신금리 격차가 확대되어 은행의 경쟁력이 크게 약화</p> <p>또한 시장 실세금리에 보다 근접할 수 있는 금융상품을 취급하여 금리 자유화의 여 건조성을 도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도성 정기에금 증서(CD, Certificate Deposit)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행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행금리: 최고 年 11.0% · 최저 발행단위: 1억원 · 91日이상 180日이내 滿期 로 무기명 할인방식에 의 하여 발행 - 취급기관: 7개 시중은행, 외환은행 및 지방은행 - CD발행 채무는 지급준비금 예치대상에서 제외 	

년 월 일	경 제 시 책	배 경 및 취 지	주 요 내 용	비 고
'84. 6. 21	債券 去來 大衆化 方案	금융긴축, 금리인상 및 채권이자에 대한 과세제도 변경으로 기업이 발행하는 社債 消化의 어려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場外市場의 제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채권의 場外거래에 관한 법 률을 제정하여 지금까지 음 성적으로 거래되어 오던 환 매채 거래를 정규 장외거래 로 제도화 ○ 新상품의 개발 유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업무를 개발한 증권회 사에 대하여 6개월간 同업 무의 독점취급 허용 ○ 기관투자가 및 基金의 채권 투자 유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기관 각종 기금등의 유가증권에 대한 투자제한 완화 - 보험회사의 유가증권 투자 비율 제고 ○ 投資信託의 자산 운용방법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신탁의 특정주식에 대한 편중투자 제한 - 신탁계정 및 固定計定을 합 하여 투자대상 주식을 총 發行株數의 10%이내로 제한 ○ 증권거래소 市場의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채권매매 방법을 종목별 매 매에서 채권종류별 매매로 전환 - 채권인수 금융의 재원확대 를 위한 주식, 채권의 인수 수수료 조정과 對替 決済 제도의 개선 	

년월일	경제시책	배경 및 취지	주요내용	비고
'84. 6. 23	首都圈 整備 基本計劃 確定	수도권의 인구 및 산업집중을 막고 지방으로의 분산을 촉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도권을 5구역으로 분류 - 移轉 촉진권역: 공장, 학교 등 인구집중 유발시설을 권역 밖으로 이전 - 제한정비권역: 이전 촉진 권역에서 이전되는 건물, 시설외에는 신규 건축허가 규제 - 개발유도권역: 이전촉진 및 제한정비권역에서 이전되는 공장 등 수용 - 자연보전권역: 한강오염시설 규제 - 개발유보권역: 安保목적상 개발 규제 	관련 '83.10.24
'84. 7. 1	外資導入制度 改編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문호를 개방하고 투자 환경 개선 ※ '84.7.1 「외자도입법」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투자 가능 업종 확대 - 투자가능업종 告示 방식을 Positive-system에서 Negative-system으로 변경 ○ 외국인투자 규제 완화 - 투자허용률 확대 - 투자절차 간소화 및 이익 배당금 송금제한 철폐 	
'84. 7. 9	貿易外去來 管理制度 調整	不要不急한 경비지급 억제로 무역수지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예, 흥행, 오락관련 貿易外支給 허가권자를 외국환은행장에서 韓銀총재로 상향 조정 · 해외지급 경비를 세분화하여 필요 경비만 지급 	

년월일	경제시책	배경 및 취지	주요내용	비고
'84. 7.19	海外建設 振興 綜合 對策	건설공사의 自國化 추진으로 해외건설 發注量이 감소하고 있으며 후진국 건설업체와 경쟁 치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現地 금융지원한도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전업체로 판단되는 건설업체에 대한 현지 금융지원한도 확대 · 공사계약 잔액의 30%→50% ○ 現地인력 사용비율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現地인력 사용비율을 20%에서 30%로 상향 조정 ○ 延拂 수출지원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年內에 1억달러의 延拂수출자금을 조성하여 공사의 20~25%내에서 지원 - 자율적으로 철수를 원하는 업체의 遊休설비는 면세로 국내반입 허용 	
'84. 7.21	外 賣買率 및 手數料 決定方法 變更	「金融團 協定」의 폐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통화운영위원회의 자율적 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전 금융단 협정에 의한 외국환 매매율 및 수수료를 앞으로는 「金通委」에서 자율 결정 ○ 외국환 매매율 및 수수료를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신용장 開設수수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每 3개월마다 0.15~0.17% → 0.18% 이내 - 지급보증수수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每 3개월마다 0.115~0.125% → 0.16% 이내 - 외국환 매매율 및 換價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전 금융단 협정 실행수수료율과 동일 	

년 월 일	경 제 시 책	배 경 및 취 지	주 요 내 용	비 고
'84. 7. 30	延支給 輸入期間 短縮		<ul style="list-style-type: none"> 延支給 수입기간: 120日 → 90日(原油제외) 	
'84. 8. 2	農村地域 綜合開發事業 計劃	현재 개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각종 농촌정책을 앞서는 종합적, 체계적으로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농업 개발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郡단위로 생산시설, 유통시설, 농업기계, 농촌편의시설을 종합 지원 ○ 農工地區 조성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산물과 관련된 공업개발 촉진지구를 각 1만명 内外로 지정 - 同 地區內에 사회간접자본을 건설하는 한편 각종의 금융세계 지원 실시 ○ 농촌所得源 도로건설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農工地區와 유통중심지 都市간의 도로 건설 ○ 사업실시 기간: '85~'87年 	
'84. 8. 29	<KF 設立>	Korea Fun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본금: 150백만달러 - 上場거래소: 뉴욕 및 오사카 증권거래소 - 설립지: 미국 Maryland주 - 판매지역: 미국지역 중심 ○ 관리회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主幹社: First Boston, 대우증권 등 - 투자관리회사: Scudder, Stevens & Clark(미) 	

년월일	경제시책	배경 및 취지	주요내용	비고
'84. 9. 8	支給準備率 引下	금융기관의 수익기반을 확 충하고, 책임경영체제의 조 기 정착을 도모	- 주식보관 기관: Citicorp 서울지점 o 투자한도 - 종목당: 5% - 업종당: 25% · 예금지급준비율: 5.5% → 4.5%	
'84.10.23	最低賃金制 試案 마련		o 최저임금제 적용시기 및 대상 - '87년부터 제조업 등 低賃 업종을 대상으로 단계적 으로 시행 o 운영방법 - 勞·使·政·公益代表로 구성되는 중앙 및 지방 최저임금 심의회를 설치 - 노동부장관은 동 심의회에 서 결정된 최저임금을 告示 o 적용범위 - 13개 市·道別로 업종별 또 는 직종별 최저임금을 결정 - 광업, 綿紡, 生絲, 運輸 등 근로조건이 유사한 특수 업종은 전국 또는 지역별 최저임금을 결정	
'84.12.20	土地去來 申告制	중부고속도로 건설계획의 차질없는 수행	o 토지거래 신고대상 지역 - 경기, 충남, 충북 등 29개 지역	

년월일	경제시책	배경 및 취지	주요내용	비고
'84.12.31	<p>下都給 不公正去來 規制強化</p>	<p>종래 「공정거래법」에 의거 한 하도급 거래상 「불공정 거래행위 지정 告示」를 法 制化하고, 분쟁조정협의회 설치 및 벌칙 강화</p> <p>※ 「하도급 불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정 ('84.12.31)</p>	<p>○ 토지거래 신고 기간 - 향후 5年間 ('84.12.20 ~ '89.12.19)</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原사업자의 의무사항 규정 · 사업자 단체에 「분쟁조정 협의회」 설치 · 常習위반자에 대하여 政府 입찰 참가제한 등을 요청 · 하도급 대금 2배 상당금액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 	

년 월 일	경 제 시 책	배 경 및 취 지	주 요 내 용	비 고
'85. 2. 18	物價 및 不動産 對策	물가가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일부 농산물은 作況 부진 등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개발계획 발표 지역을 중심으로 地價 상승 기대감이 잠재적 불안 요인으로 작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가대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속의 날 (舊正)」 成需品の 需給 및 가격 안정 -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개인서비스요금 인상 자제 유도 - 주요공산품(47개)의 需給, 가격 및 원자재가격 동향 점검 - 상업용 건물 임대료의 안정적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업용 건물 임대료 관리 지침」 ('84.2.16)의 적용대상 확대 - 물가 관련 총량 지표의 안정적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동성의 효율적 관리 · 임금은 생산성, 국제 경쟁력 등을 감안하여 안정 수준 조정 유도 · 공공요금 및 官認요금 인상 억제 ○ 부동산 대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市中 유동성의 효율적 관리 - 아파트 분양가격의 현 수준 유지 - 중개업자의 투기 조장 행위 색출 및 처벌 강화 	
'85. 3. 2	主去來 銀行 與信管理制度 改編	계열기업군에 대한 與信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非主力 업종에 대한 신규투자 억제 등을 통하여 계열기업군이 주력업종을 통하여 전문화 하도록 유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與信관리대상 계열기업군 선정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 여신 1,000억원 이상 (중전 200억원) - 非계열기업체를 여신관리 대상에서 제외 	

년 월 일	경 제 시 책	배 경 및 취 지	주 요 내 용	비 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거래은행의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전: 계열기업군의 주거래은행이 계열소속 전기업체의 주거래은행 - 변경: 계열기업별로 주거래은행을 선정 ○ 여신관리 기준지표의 一元化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기자본 비율, 대출금 비율 등을 「자기자본 비율」로 일원화 ○ 기업투자 또는 부동산 취득에 대한 규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주력 업종에 대한 투자, 비주력 업체의 투자 등을 금지 - 부동산은 업무용 부동산 취득만을 허용하고, 비주력 업체 사용목적 또는 借入에 의한 취득은 금지 - 기업투자 또는 부동산 취득 시 自救 노력에 의한 자금 조달 의무 강화 	
'85. 3. 4	輸出金融 單價 引上	外貨 가득를 제고 및 국제 수지 개선 촉진	· 수출금융단가(생산자금): 660원 → 700원/달러	
'85. 4. 19	自由貯蓄預金 新設 및 金利引上	'82.6.28 「금리인하 조치」로 은행이 제 2금융권에 비하여 수신경쟁력 약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유저축예금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유저축예금을 신설하여 부분적으로 금리인상 - 隨時引出이 가능하면서도 6개월 이상 예치시 1年만기 정기예금(10%) 보다 높은 年 12%의 이자율 부여 	

년월일	경제시책	배경 및 취지	주요내용	비고
'85. 5. 3	輸出金融單價 引上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금융단가(생산자금): 700원 → 720원/달러 	
'85. 5.20	不動産 綜合對策	부동산 투기를 근본적으로 봉쇄함으로써 물가오름세 심리근절 및 소득분배구조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동산 관련 세제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동산 매매 差益의 조세 환수를 위해 양도소득세제 개편 · 定率課稅 방식에서 累進課稅 방식으로 전환 · 양도소득세 소멸시효 연장: 5年 → 10年 - 과다한 토지 보유를 억제할 수 있도록 종합토지세제 도입 - 대형주택에 대하여 재산세 重課 ○ 遊休 토지의 과다보유 억제 및 이용 효율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空閑地 대상기준 강화 · 여러곳에 공한지를 보유하는 경우 총면적 200평 초과시 空閑地稅 과세 - 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 보유 한도 축소 - 成長도시 주변지역을 市街化 조정구역으로 지정하고 개발 제한 ○ 부동산 관련 電算化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지기록 및 관련 대장 전산화 - 토지평가제도 개선 및 토지 관리 기구 설치 	

년 월 일	경 제 시 책	배 경 및 취 지	주 요 내 용	비 고
'85. 6. 28	臨時 投資稅額 控除制度	경기둔화 및 수출부진 등 경제여건 변화에 대처하고 기업 설비투자 촉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시 투자 세액 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조업 및 광업부문의 기계 장치에 대하여 투자액의 일정 비율을 세액에서 공제 - 國產機資材: 투자액의 10% 공제 - 外國產機資材: 투자액의 3% 공제 	
'85. 7. 1	産業構造調整 支援 貸出制度	해외 건설업, 해운업 등 일부 구조적 불황산업에 대한 選別的 지원을 통해 산업구조 조정을 촉진하고, 금융기관의 자금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목적 ※ '85.6.20 「한국은행의 기타 어음 등 증권담보 대출 취급규정」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기관의 산업구조 조정지원 대출에 대하여 韓銀이 당해 금융기관에 자금지원 · 대출금리: 年 3% 	
'85. 7. 11	地方 쇠고기의 서울 搬入許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전: 지방소재 특급 도축장 중 1개 도축장에 대하여만 쇠고기 脂肉의 서울 반입허용 · 변경: 전국의 특급 도축장 (54개) 냉동시설을 갖춘 1급 도축장에 대하여도 서울市, 市, 郡 및 道간의 脂肉반입, 반출 허용 	
'85. 7. 15	輸出金融單價 引上	우리상품의 수출 경쟁력을 높이고 영세, 중소기업의 소액·소량 수출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금융단가(생산자금): 720원 → 750원/달러 	

년월일	경제시책	배경 및 취지	주요내용	비고
'85. 8. 14	設備投資 促進을 위한 金融 및 稅制 支援 擴大	수출산업 등의 공급 능력을 확충하고 안정적인 고용수준 유지 및 기업의 투자의욕 振作 도모	o 금융지원 - 설비자금 규모 확대: 6천억원 → 8천억원 - 여신관리 신축운동 등 설비 자금 지원제도 개선 o 세제지원 - 紙上配當 과세 폐지 - 감가상각 내용 년수 단축	
'85. 9. 5	住宅建設 活性化 措置	수출부진 등으로 경기가 침체됨에 따라 주택경기 활성화 조치 마련	· 토지개발시 公公共과 민간의 공동개발 유도 · 주택分讓價의 지역별 차등제 실시 및 건축규제 완화 · 주택금융 지원 확대 (2,000억원)	
'85. 9. 6	外債節減 對策	외채절감을 위해 輸入需要 억제 및 투자의 효율화 도모	o 高位공직자 등 사회지도층의 생활건전화 술선 수법 - 공직자의 고급 유흥업소 출입 자제 - 공식·비공식 집회에 일류 호텔이나 호화음식점 이용 삼가 o 각종행사 간소화 및 非自發 的 準組稅의 정리 - 각종 지방행사의 간소화 지침 마련 - 비자발적 기부금, 성금 등 을 과감히 정리 o TV방송의 건전소비 유도 기능 강화 - TV방송시간 단축 검토	

년 월 일	경 제 시 책	배 경 및 취 지	주 요 내 용	비 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알뜰살림 지혜, 저축성공 사례 등을 定期 홍보 ○ 해외유학자격 강화 및 외화 경비 절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유학 자격기준 마련 - 세미나 등 순수학술 목적 이외의 단체여행 규제 ○ 사치성소비재 수입 절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상품과 국산품간 가격, 품질 비교 - 수입상품에 우리말 사용 설명서 부착 의무화 ○ 저축증대를 위한 제도 발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마련 장기저축제도 도입 - 직장단위별 저축 추진위원회 설치 ○ 原油 등 10가지 주요 수입 원자재 소비 절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승용차의 週末 고속도로 통행료 100% 인상 - 原油재고 감축: 60日分 → 50日分 ○ 상품 및 기계류의 국산화 촉진 및 化工원료의 수입 대체 촉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2개 수입대체 유망 품목 선정 ○ 展示的인 대형빌딩 및 유흥업소에 대한 투자 억제 	

년월일	경제시책	배경 및 취지	주요내용	비고
'85. 9. 22	<플라자 합의>	레이건대통령의 「강한 달러」 및 高金利 정책으로 미국의 무역적자 확대 ※ G-5 긴급회의 (뉴욕, '85.9.22)	- 대형빌딩 건축 및 유흥업소에 대한 금융 규제 - 유흥업 개시 요건 완화 ○ 제조업의 투자 촉진 - 기업 설립 절차 간소화 - 「창업 지원 센터」 설치 · G5 재무장관은 엔, 마르크貨 등의 切上 (對美환율 切下) 을 위한 공동노력에 합의 · 미국의 高金利 정책 포기	
'85. 9월	海外證券投資 許容		○ 투자기관: 증권사 ○ 투자한도 - 1백만달러 또는 증권발행액의 1% ○ 투자대상 - 국내법인의 해외 발행증권 引受團 참여 (발행시장 참여만 허용)	
'85.10. 8	<第40次 IMF, IBRD서울總會>	Volker 미 FRB의장, Baker 미 재무장관 등 1백 48개 회원국대표 및 국제금융기구 관계자 3천여명 참석	○ 협의 내용 - 세계경제회복 및 보호무역 주의 완화 - 선진 5개국의 對美달러환율 切下 합의 재확인	

년월일	경제시책	배경 및 취지	주요내용	비고
'85.10.17	包括輸出金融 制度導入	수출금융제도를 간소화하고 중소 소액 수출업체에 대한 수출금융 지원의 원활화 도모 ※ 수출금융 규정, 외화표 시공급 금융 규정, 농수산물 수출 준비자금 용자 취급 규정 등을 「무역금융 규정」으로 단일화(금융통화운영위, '85.10.17)	○용자방법 - 자금용도별 구분없이 수출 신용장 또는 과거 수출실적 을 기준으로 수출이행 소요 자금을 일괄 용자 ※ 자금용도별 구분(일반수출 금융): 생산자금, 원자재 수입자금, 원자재 구매자금, 완제품 구매자금 ○용자대상 - 自社제품만을 직수출하는 중소기업체 - 과거 1年間 수출실적 50만 달러이내 ○용자한도 - 신용장기준금융: 1억원이내 - 수출실적기준: 5천만원이내	
'85.11.12	證券海外發行 許容	국제화 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국내 증권시장의 質的 고도화를 도모 또한, 기업의 해외자금조달 경로를 다양화하는 한편 우리나라 증권에 대한 외국 인의 직접투자 허용 계기	○ 해외발행 증권의 종류 - 전환사채(CB), 新株引受權 附社債(BW), 주식예탁증서 (DR) 등 주식 관련 증권 ○ 해외발행 대상기업 - 순자산 500억원이상인 우량 대기업 ○ 해외발행 한도 - 발행한도: 발행기업 자본금 의 15%이내 - 외국인 1인당 持分한도: 발행기업 자본금의 3%이내	

년월일	경제시책	배경 및 취지	주요내용	비고
'85.11.22	雇傭 綜合對策	<p>수출과 투자가 부진하여 경제성장률이 크게 둔화되면서 기업의 減量 경영, 임시직 근로자 대거 활용 등으로 고용 불안 야기</p> <p>※ '85.11.22 경제기획원, 재무부, 상공부, 노동부 등 관련부처와 경제단체 대표들이 참석한 고용대책위원회에서 「고용종합대책」 수립</p>	<p>○ 조달자금의 용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본재 도입자금, 해외투자자금 등으로 제한 <p>○ 재정부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조 3천억원 규모의 '86년 공공사업 年初 착공 (고용증대, 9만명) - 시흥·화성지구 간척 '86年初 착공 (고용증대, 1만 3천명) - 반월 電鐵사업 年內 조기 착공(고용증대, 3천 8백명) - 정부투자기관 신규채용 (고용증대, 2천 8백명) - 공무원 早期채용, 敎員임용 확대 등 <p>○ 민간부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 창업절차 간소화 · 창업지원센터 설립 - 세제, 금융지원 및 準組稅 정비 - 30대 대기업 減員의 자체 흡수 유도 - 민간 직업훈련기관 활성화 - 대도시 공단에 취업정보 센터 설치 등 <p>○ 中長期 대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6年 이후 7% 성장 회복 - 고용흡수를 위한 산업구조 조정 촉진 - 실업자 再취업 轉職 훈련 확대 	

년월일	경제시책	배경 및 취지	주요내용	비고
'85.12. 2	税制改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용보험제 등 사회보장제 도입 등 · 방위세법 적용 시한 연장: '85年 → '90年 · 증자소득 공제제도의 恒久化 (법인세법) · 지상배당제 폐지(소득세법) · 부실기업 정리에 따른 조세 특례(조세감면 규제법) 	

년월일	경제시책	배경 및 취지	주요내용	비고
'86. 1. 27	第2金融圈 金利引下	물가안정과 인플레 기대 심리의 진정으로 시장금리의 下向 안정세 지속 이에 따라 기업 금융비용 부담완화 및 제2금융권간의 금리격차 축소를 도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채권발행 금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保證附 회사채의 표면금리 인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2年: 0.05%인하 · 3年이상: 0.22~0.35%인하 - 개발신탁금리: 0.22~0.39%인하 ○ 還賣條件附 채권(R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매조건부채권 매도금리를 기간별로 0.25~2.75%인하 ○ 상호신용금고의 차입금 금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個月미만 滿期の 경우를 제외하고 각각 0.5% 인하 - 6個月이상 만기차입금을 신설하여 年 13.0% 금리 적용 ○ 일반신탁 자금과 적립신탁 자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출금리를 각각 0.5%인하 	
'86. 2. 21	機械類 및 部品 産業育成 對策	기계류, 부품 등의 자본재 底邊이 취약하여 수입 유발 적 産業구조를 나타내고 있 으며, 수입의 절반을 일본에 의존하고 있고 對日 수입비 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汎정부차원 추진 체제 확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정책심의회」 산하에 기계류·부품산업육성 실무위원회 설치 ○ 품목별 기능별 육성대책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 수입기계류 및 부품에 대한 국산개발 유망품목 육성 대책 	
'86. 3. 6	農漁村 綜合對策	'79년 이후의 돼지파동, 소값파동, 어패류 비브리오 균파동 등으로 농어촌 소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어민 부담 경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가에 융자한 자금의 이자상환 연기 및 이자율 인하 	

년월일	경제시책	배경 및 취지	주요내용	비고
		<p>기반 약화 및 농가 부채 과중</p> <p>또한 국가사회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 汎정부적 차원에서 농어촌 문제에 접근할 필요성 대두</p>	<p>(10% → 8%)</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지임대차 규제법」 제정으로 농지 임대료율의 上限 조정(논 20%, 밭 10%) - 기계화 營農團을 每年 1천 개소 신설하고 농기계 구입 자금의 15% 지원 <p>○ 農漁家 所得源의 확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農外소득 증대를 위해 농어촌지역 공장건설 확대 및 稅制 등 지원 - 쌀소비 장려, 長期低利의 농지구입 지원대출 등 추진 <p>○ 농어촌 생활여건의 개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어촌 도로포장률 확대 ('91년까지 29% → 60%) - 보건소와 母子보건센터의 통합 등 농어촌 의료시설 확충 - '87년부터 面단위에 종합복지관 건립 등 <p>○ 농수산금융 지원제도 개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營農, 營漁자금 규모 확대 - 농가의 私債의존율을 낮추고, 영농준비기에 자금 집중 공급 - '88년까지 5천억원 규모의 농어촌개발 특별기금 조성하여 低利 자금으로 공급 (年利 5%, 기간 3~20年) <p>○ 지방정부조직과 기능정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정부의 농어촌 지원 체계 강화 	

년 월 일	경 제 시 책	배 경 및 취 지	주 요 내 용	비 고
'86. 3. 7	CD 및 會社債 金利 自由化	시장금리가 하향 안정세를 보이면서 公金利와의 격차가 축소되고 있으므로, 금리의 자금 需給조절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림청을 농림수산부로 이관 o 양도성예금증서(CD) 발행 및 대출 최고利率 폐지 - 同 利率를 각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 - 다만, 자유화이후 同 利率가 급격히 상승할 경우 韓銀이 CD대출 최고이율 결정 가능 o 회사채 발행 利率 자유화 - 증권회사, 증권투자신탁 등 회사채 인수 관련기관이 상호 협의하여 회사채 발행 利率를 자율 결정 - 다만 同 발행利率의 급격한 변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증권관리 위원회」에서 발행조건에 관한 필요조치 가능 o 金融債 발행利率 자유화 - 종전 신고 또는 승인 형식으로 규제되던 금융채 발행 利率 자유화 	
'86. 3. 15	外換管理制度 改善	「외국환 관리 규정」 개정 ('86.3.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o Factoring방식에 의한 수출 거래범위 확대 - 단순 송금방식 수출에 제한되던 Factoring을 無신용장 인수·인도방식 수출에도 허용 	

년 월 일	경 제 시 책	배 경 및 취 지	주 요 내 용	비 고
'86. 3. 24	貸出金利 引下	국제금리의 하락추세 등에 따른 대외 경제여건 호전에 상응해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고 대외경쟁력 강화를 유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거래규모 확대: 5만달러이내 → 10만달러이내 o 수출선수금 領受자격 완화 - 과거 1년간 수출 100만달러 이상 → 50만달러이상 o 長期시설자금 금리 - 1年초과 장기시설자금 대출 최고금리를 1% 인하 o 기간별 차등금리 - 자금용도별 대출금리의 차등 체계를 기간별 차등체계로 전환 o 특수자금 금리 - 수출산업 설비금융 및 에너지절약 시설자금대출 실행 금리인하: 年 11.5%→11.0% 	
'86. 4. 3	與信禁止部門 調整	한정된 금융자금의 효율성 제고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o 부동산업에 대한 여신규제 강화 - 종전 부동산 중개업으로 한정되던 여신금지 대상을 전체 부동산업으로 확대 o 숙박업시설 改補修 자금 여신 허용 - '86, '88 대회 관광객용 지정 숙박업소에 대하여는 改補修 자금 금융지원 	

년월일	경제시책	배경 및 취지	주요내용	비고
'86. 5. 1	韓銀貸出制度調整	금융기관의 방만한 여신 운용을 억제하고 자율적인 자금관리를 강화하도록 유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벌칙성 자금 대출 - 자금이 부족하게 된 금융기관에 대해 지원하는 한국은행의 기타어음 등 증권담보대출(B₂ 자금)의 벌칙적 성격 강화 - 금리를 종전의 月 콜거래 평균금리 1%에서 年 15%로 인상 	
'86. 5. 9	不實企業 整理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실기업 정리방법 -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른 조세지원 및 금융지원을 통하여 제3자에게 인수시키는 형식 - 4차에 걸쳐 국제상사 등 56개 부실기업 정리 ○ 주요 부실기업 정리내용 - 국제그룹(23개 기업): 한일합섬, 동국제강 등에서 인수 - 경남기업, 경남금속: 대우그룹에서 인수 - 남광토건: 쌍용에서 인수 - 한양유통: 한국화약에서 인수 - 대한준설공사: 상업은행에서 인수 - 남선물산그룹(4개기업): 동양철관 등에서 인수 - 정아(명성)그룹(6개기업): 한국화약에서 인수 - 삼호그룹(4개기업): 대림산업에서 인수 	

년월일	경제시책	배경 및 취지	주요내용	비고
'86. 6. 19	通貨安定證券의 一般公募制度 改善	국제수지 흑자로 해외부문을 통한 통화공급이 증대하고 제2금융권의 비중이 커지고 있어, 통화안정증권을 통한 통화관리의 중요성 증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지원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은행이 부실기업에 대한 대출금을 결손 처리 - 부실기업에 대한 대출금을 인수기업이 長期低利 상환 - 인수기업에 대한 신규대출 지원 ○ 통화안정증권의 종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의 63日, 91日, 182日 滿期외에 364日 만기의 통화안정증권을 추가 발행 ○ 발행금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82日, 364日物은 회사채 유통수익률에 連動 - 63日, 91日物은 還賣條件附 국공채 매출 등 유사금융상품금리수준을 감안해 결정 	
'86. 7. 1	外資導入 制度 改善	<p>외자도입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외국인 투자 및 기술도입 환경개선을 위하여 절차의 간소화, 규제완화를 도모</p> <p>※ '86.7.1 「외자도입법」 시행령 개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도입의 원활화 및 무역 마찰 소지 제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세를 면제받지 않는 상표의 도입 허용 ○ 外資도입 절차 간소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차관 轉貸借主의 지휘 감독을 받는 기관이 外資를 사용, 관리하는 경우 재무부 장관의 外資처분허가권을 당해 轉貸借主에게 위임 - 외국투자자가 출자금을 전액 회수한 경우 재무부장관에게 신고하는 절차를 폐지 	

년 월 일	경 제 시 책	배 경 및 취 지	주 요 내 용	비 고
'86. 7. 10	韓銀 再割引 制度 改善	전통적 통화관리수단으로서 의 중앙은행 재할인제도의 기능을 강화하고 통화관리의 효율성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再割引率 등 인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韓銀의 금융기관에 대한 상 업어음 재할인 및 무역어음 담보대출 금리 인상: 年 5% → 7% ○ 재할인비율 등 인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관련 상업어음 재 할인 비율 및 무역어음 담 보대출 비율 인하: 70% → 50% ○ 農協에 대한 자금지원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農事어음 담보대출 비율을 水産어음과 동일하게 50%로 上向조정 	
'86. 7. 21	韓美通商 懸案 一括妥結	미국은 '85年末 知的소유권 보호, 보험시장개방 등이 이행되지 않으면 「통상법 301조」를 발동하여 관세부 과, 수입규제 등의 무역 보복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한국측에 통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험시장 개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6.7月까지 미국 2개사에 화재보험 참여 허용 - '86年末까지 미국 생명보험 회사 1개사의 한국 진출을 허용하되, 추가진출은 양국 협의를 따라 결정 ○ 저작권 보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7.7月부터 저작권을 보호 하고 '87.9月에 국제저작권 협약(UCC) 가입 - 저작권 보호기간을 30年에 서 50年으로 연장 - 음반저작권도 '87.9月 음반 협약 가입후 보호 - 서적의 無斷 복제에 대하여 는 '77年이후 발생분부터 소급해서 보호 	
		이에따라 駐美대사와 미국 통상대표부(USTR) 대표간의 워싱턴협상 결과 知的소유권 보호, 담배 및 보험시장개방 에 관한 통상협상을 일괄 타결		

년 월 일	경 제 시 책	배 경 및 취 지	주 요 내 용	비 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프트웨어 저작권 보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컴퓨터 프로그램보호법을 제정하여 50年間 보호 - 法시행 7年前에 창작된 것도 소급하여 보호 ○ 물질특허 보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7.7月부터 물질특허 보호 - 특허기간은 공고일로부터 15年間을 원칙으로 하고, 3年 연장 가능 ○ 담배시장 개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6.9.1부터 국내판매허용 할 예정이므로 「통상법 301조」 협상과는 별개 事案 	
'86. 8. 1	外國銀行 國內支店에 商業어음 再割引 許容	외국은행 국내지점에 대한 업무 제한을 단계적으로 완화함으로써 금융 국제화를 추진하고, 국내 금융산업의 체질 개선 및 경쟁력 강화 촉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은행 국내지점에 대하여 상업어음 제한인 허용 •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중소기업 대출의무 비율 상향조정: 금융자금 대출금 증가액의 25% → 35%(상업어음 제한인 을 받지 않는 경우 25%) 	'86.8.21 추가 조치
'86. 8. 7	商業借款 導入 抑制方案	경상수지흑자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차관도입을 억제할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업차관 대상업종을 대폭 축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계, 전자, 철강, 자동차 등으로 제한 ○ 상업차관 허용요건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기관 「興信 운용규정」에 의한 업종별 자기자본비율 이상의 기업에 한하여만 허용 	

년월일	경제시책	배경 및 취지	주요내용	비고
'86. 8. 21	外國銀行 國內支店에 CD取扱 許容	외국은행 국내지점에 대한 업무 제한을 단계적으로 완 화함으로써 금융 국제화를 추진하고 국내 금융산업의 체질 개선 및 경쟁력 강화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이 없 는 경우에만 허용 - 공공차관에 대하여 대상사 업 선정방법 개선 등을 통 하여 투자사업의 차관의존 축소 o 현금차관 도입 不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본재 도입을 위한 경우에 도 所要外資의 85%이내의 차관만 허용 o CD취급 허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은행 국내지점에 대하 CD발행 및 대출업무의 취급 허용 o 보완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CD발 행한도를 750억원으로 제한 - 스왑(SWAP) 특별한도에서 CD발행액을 차감 - 스왑 일반한도 축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외국은행 국내지점에 대하여는 현행 일반한도를 인정하되 한도 증액은 불인정 · 신규 진출 외국은행의 스왑한도 축소: 1천5백만 달러 → 1천만달러 	관련 '86.8.1
'86. 9. 1	韓·美 纖維協商妥結	'86.8.5 한미 섬유협상타결 내용발표('86.9.1부터 기존 협정대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9년까지 4年間 미국에 대 한 섬유수출 물량 증가율: 年평균 0.825% · 쿼터품목 추가: 실크, 라미, 린넨 	

년 월 일	경 제 시 책	배 경 및 취 지	주 요 내 용	비 고
'85. 9. 1	〈外國産 담배 國內 販賣 開始〉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룹간 전용은 1%범위내에서 허용 	
'86. 9. 2	國民福祉 增進 對策	급속한 경제발전과정에서 소외된 영세민, 低賃金근로자 등 취약계층의 복지향상 문제대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보험 적용대상을 전국민으로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8年 농어촌지역, '89年 도시지역 順으로 확대 ○ 국민연금제도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人 이상 사업장 근로자부터 실시('85年 380만명) ○ 최저임금제도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기준법」 적용사업장 (5人以上)의 근로자 ○ 도시영세민 등 低소득층 생활 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就勞事業費 규모 확대 ('86年 250억원 → '87年 400억원) ○ 장애인보호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등록제 실시('87年) ○ 서민주택의 공급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주택 건설을 위한 재정 금융 지원 확대 - 실수요 소형주택위주로 주택건설(국민주택보급: '87~'91년 630천호) 	'88.1.1 국민연금 등 실시

년 월 일	경 제 시 책	배 경 및 취 지	주 요 내 용	비 고
'86. 9. 3	經濟力 集中 抑制 施策	방만한 기업확장은 계열기업 보조 등의 방법으로 공정경쟁을 제한하고 국제 경쟁력 향상을 저해할 우려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 마련('86.9.3)	○ 大規模企業 집단의 지정 - 대규모기업 집단 지정대상 · 계열회사 자산 총액의 합계가 4천억원 이상인 기업 집단 · 32개 기업 집단, 509개 계열회사 ○ 相互出資의 규제 - 대규모기업 집단은 소속 계열회사들간 상호출자 금지 - 대규모기업 집단 지정당시의 상호 출자분은 1年內에 처분 ○ 出資 總額 제한 - 대규모기업 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국내의 他 회사에 대한 출자액이 純 자산액의 40% 초과 금지 - 대규모기업 집단 지정당시의 출자한도 초과분은 1年內에 처분	
'86. 9. 12	輸出金融單價 引下	국제수지가 개선되고 해외 부문에서의 통화증발이 가속화되고 있으므로 통화의 안정적 공급을 도모할 필요	· 수출금융단가(평균): 720원 → 700원/달러 ※ '86.7.25 1차 인하: 740원 → 720원/달러	
'86. 9. 23	中小企業 業種 外國人 投資 規制 緩和	합자투자를 통한 기술력 향상을 위해 중소기업업종에 대한 외국인 투자 규제를 완화	○ 중소기업 고유업종 - 종전 중소기업 고유업종에 대한 외국 대기업 투자는 원칙적으로 제한	

년월일	경제시책	배경 및 취지	주요내용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 대기업이 50%미만으로 국내 중소기업과 합작하는 경우에는 허용 o 중소기업 계열화 품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 계열화품목에 대한 외국대기업 투자는 국내 기존업체와의 합작투자만 허용 - 외국인이 중소기업규모로 투자하는 경우 허용 	
'86.10.31	大企業에 대한 輸出金融單價 引下	국제수지 흑자에 따른 해외 부문 통화증발에 대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기업에 대한 수출금융단가 (생산자금): 710원 → 690원/달러 ※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현행 수준 유지 	
'86.12.2	對外 協力基金 設置	개발도상국과의 경제협력에 필요한 자금의 확보 및 공급 목적 ※ 「대외 경제 협력 기금 법」 제정('86.1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금조성: 정부출연 · 필요시 대외 경제협력 기금 채권 발행 	
'86.12.26	稅制改編		<ul style="list-style-type: none"> o 조세감면 규제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 적용시한을 '91年末까지 연장 - 농어촌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 중소기업 창업 투자회사 또는 신기술 사업 금융회사의 주식 양도차익 면세 (법인세) 	

년월일	경제시책	배경 및 취지	주요내용	비고
'86.12.31	都市交通整備 制度 마련	IBRD 차관사업으로 '82.5 ~'85.4月까지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5大도 시에 대하여 교통조사사업을 실시하고, 조사결과에 따른 개선안을 토대로 「대도시 교통개선 5個年 계획」 수립 ※ 교통시설의 정비를 촉진 하고, 도시교통의 원활 한 소통과 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86.12.31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정	o 교육세 - 법 적용시한을 '91年末까지 연장 - 외제 담배에도 교육세 부과 o 중장기 교통정비 기본계획 수립 - 기본계획 수립지역 · 인구 100만이상 도시 및 그 도시와 같은 생활권에 있는 지역 · 인구 30만이상 도시 중 교통계획의 필요성이 있는 지역 o 교통영향평가 실시 - 도시교통 정비지역내에서는 교통영향평가 실시 - 실시의무자: 대규모 교통 수요를 유발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 및 시설을 설 치하고자 하는 자 o 교통개발연구원 설립 - 교통계획 및 교통정책의 수 립, 시행에 관한 조사 연구 - 교통기술의 연구개발	
'86.12.31	消費者保護 制度整備	「소비자 보호법」을 전면 개정하여('86.12.31) 소비자 보호 관련 기본법적 성격을 강화하고 「소비자 보호원」 의 설립 근거 마련	o 소비자 보호법 全面 개정 - 소비자 보호법을 다른 법률 에 대해 우선 적용 - 소비자의 7大권리 규정 및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同 권리 보장 의무 부과 - 「소비자 보호원」 설립	

년 월 일	경 제 시 책	배 경 및 취 지	주 요 내 용	비 고
'86.12.31	補助金 豫算法 制定	<p>또한 「約款 규제법」을 제정하여 사업자측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작성되는 약관에 대한 포괄적 규제장치 마련</p> <p>※ '80.1月 「소비자 보호법」 제정 '82.9月 동법 시행령 제정 '86.12月 「約款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정</p> <p>보조금 예산의 편성, 交付 및 사용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p> <p>※ 法명칭: 「보조금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p>	<p>- 소비자 피해 규제절차 규정</p> <p>o 約款 규제법 제정</p> <p>- 사업자에게 約款의 明示, 설명의무 賦課</p> <p>- 約款 조항의 무효에 대한 일반 원칙 규정</p> <p>- 불공정한 약관의 是正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p> <p>- 경제기획원에 「약관 심사위원회」 설치</p> <p>· 보조금 예산편성 방법 및 절차</p> <p>· 보조금 交付 신청 및 교부 결정 방법</p> <p>· 보조사업 수행</p> <p>· 보조금의 반환</p> <p>· 벌칙</p>	

년월일	경제시책	배경 및 취지	주요내용	비고
'87. 1. 5	部品, 素材의 國産化 推進	수입유발적 산업구조 및 對日무역 逆調 현상의 근원 적 개선	· '91년까지 13천여 기계류의 부품 및 소재의 국산화	
'87. 1. 9	企業어음 去來慣行 是正	은행과 短資會社 간의 금융 거래를 정상화	· 종전: 단자회사가 할인매각 한 기업어음을 최종적 으로 은행이 결제 · 변경: 단자회사가 최종책임 부담	
'87. 2. 4	財政 投融資 特別會計 新設	공공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재정의 경기조절기능 확대	o 출자, 出捐, 용자의 운영방 식을 단일 회계로 체계화 - 출자, 출연은 「일반회계」 용자는 「자금관리 특별회 계」로 구분되어 있는 운영 방식을 단일회계로 체계화 o 財政 投融資 특별회계의 計定 구분 및 기능 - 출자계정: 公기업 및 기금 출연 - 용자계정: 기술개발 공익사 업 등에 용자 - 차관계정: 차관원리금 상환 o 財政 投融資 특별회계의 財源 - 각종 특별회계, 기금 및 체 신예금으로 조성된 자금 중 1年이상의 여유자금 일부를 「재정투융자특별회계」에 예탁	

년월일	경제시책	배경 및 취지	주요내용	비고
'87. 2. 9	生命保險會社 地方運用比率 上向調整	생명보험회사의 지방 조성 자금 조정을 통해 지방경제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운용비율 인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명보험회사 지방조성자금 의 지방운용비율 상향조정: 95%이상 → 100%이상 ○ 公私債 인수의무 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명보험회사는 지방기업발 행 회사채에 대하여 발행총 액의 20%를 의무적으로 인 수 - 지방공채의 경우 발행총액 의 30%를 의무적으로 인수 	
'87. 2.10	建設業 育成施策	건설업의 건전한 육성발전 과 부실공사의 근원적 방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면허 허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4년부터 동결되어온 건설 업의 신규면허를 '89년부터 허용 ○ 종합낙찰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 최저가격 낙찰제를 '90년부터 기술능력, 시공 경험을 감안한 종합낙찰제 로 전환 	
'87. 2.12	CD 發行單位 金額 引下	제 2금융권에 대한 受信경 쟁력을 강화하고, CD 유통시 장의 활성화를 도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D발행단위 금액: 1억원 → 5천만원 	
'87. 2.19	海運産業 合理化 補完對策	해운산업 합리화 조치('84. 5月)이후 심화된 해운업계의 경영난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박량을 현수준으로 유지: 7,300천톤 • 노후선박(1,624천톤) 매각 촉진 및 소요자금 低利융자 • 계획조선자금 금리인하: 年 11% → 年 8%선 (LIBOR+1.5%) 	관련 '82.12.23

년 월 일	경 제 시 책	배 경 및 취 지	주 요 내 용	비 고
'87. 3.11	輸入賦課金	수입부과금으로 「농어촌 개발기금」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조선자금의 자기자금부담 비율 인하: 20% → 10% · 자금난이 심한 범양상선 등 5개 원양船社에 대하여 5~10年間 은행부채 상환 猶豫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부과금 賦課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당, 코피, 코코아 등 3개 품목의 수입농산물에 대하여 수입금액의 5%를 수입 부과금으로 부과 - 수출용 원재료에 부과한 수입부과금은 수출시 환급 	'87.5.1 시행
'87. 3.12	<KEF 設立>	Korea Europe Fun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립지: 영국 Guernsey · 자본금: 3천만 달러 · 上場증권거래소: 런던 · 主幹社: Barny Brothers, 쌍용투자증권 	
'87. 3.16	農漁家 負擔 經減對策	농어가 부채부담 경감을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그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므로 그동안 농어촌 부채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시켜줄 방안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私債 代체자금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高利私債(年24.2%)를 低利의 公金용으로 대체 (代체자금 1조원 지원) - 1ha이하 농가 및 無동력선 漁家에 5천억원 지원 (年利 8%, 2年거치 3年상환) - 기타 農漁家에 상호금융 자금 5천억원 지원 (年利 14.5%) ○ 영세農漁家の 증장기 자금을 低利자금으로 대체 	

년월일	경제시책	배경 및 취지	주요내용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5ha이하 영세농가와 無동력선 漁家에 대한 증장기 정책자금(7,740억원)을 저리자금으로 대체 (年利3%, 3年거치 7年상환) ○ 농수산 관련자금 금리 인하 - 운영비 절감을 위한 증장기 관련자금(11,213억원): 年10~11%→8% ○ 기타 - 축산기금에서 83年 및 84年 소 入殖자금 이자 代支給 - 농지구입자금 2천억원지원 (年利5%, 2年거치 18年상환) 	
'87. 3. 21	證券去來稅率 引上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개정('87.3.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은행, 短資, 보험, 증권사 등 금융기관 주식에 대하여 과세: 0% → 0.5% · 기타주식: 0.2% → 0.5% 	
'87. 4. 1	株式 場外市場 開設	유망 중소기업 등에게 주식장외시장을 통한 자금조달 기회 부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망중소기업 등 참여 유도 - 유망중소기업, 증권수출기업, 新기술사업회사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등록기준을 거래소의 上場 要件보다 크게 완화 ○ 자율규제에 의한 주식거래 - 顧客間 매매의 중개를 담당하도록 전문취급 증권회사 설치 - 기업公示나 시장관리는 증권업협회의 자율적 규제에 一任 	

년월일	경제시책	배경 및 취지	주요내용	비고
'87. 4. 1	經濟力 集中 抑制 施策	<p>대규모 기업집단에 대한 상호출자금지, 출자총액 제한제도의 엄격한 운용을 통하여 소수 대규모 기업집단에 경제력이 과도하게 집중되는 현상 시정</p> <p>※ '87.4.1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p>	<p>○ 상호출자금지 및 출자총액 제한제도의 대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속계열회사 자산총액의 합계액이 4천억원 이상되는 기업집단 - 동 기준에 해당되는 32개 기업집단(509개 계열회사)을 상호출자 등 규제대상으로 지정 <p>○ 상호 출자 또는 他會社에 대한 출자금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호출자 등 규제대상 기업집단소속 계열회사는 계열회사 상호간 출자나 純자산의 40%를 초과하는 타회사에 대한 출자금지 <p>○ 他會社 주식 처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상호출자를 하고 있거나 출자한도를 초과하고 있는 경우 3~8년 이내에 매각, 합병 등의 방법으로 처분 	
'87. 4. 2	證市安定對策		<p>○ 기관투자가 주식 보유حد 축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신사의 고유계정 주식 보유حد 신설: 자기자본의 50% - 증권사의 상품주식 보유حد: 자기자본의 60% → 40% <p>○ 증권회사 고객 예탁금의 증권금융 예치비율 인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치비율: 20% → 30% 	

년 월 일	경 제 시 책	배 경 및 취 지	주 요 내 용	비 고
'87. 4.10	産業災害 防止	기업내 産災를 효율적으로 예방하기 위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체에 대한 벌칙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벌금외에 과징금 별도 부과 - 개선명령 위반일수에 따른 벌과금 累進制 실시 	
'87. 4.21	大企業에 대한 貿易金融 支援 縮小	수출호조로 국제수지 흑자 폭이 확대되고 기업의 자금 사정이 호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기업에 대한 무역금융 단가인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산자금 용자단가: 650원 → 580원/단가 (중소기업은 현행유지) ○ 시설 투자자금 지원 중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상품을 생산하기 위한 시설 투자자금 용자 대상에서 30대 계열기업군 소속 기업체를 제외 	
'87. 4.25	對美 輸入擴大	對美 무역마찰 해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상품특별수입(26억달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부문, 장비 등 (4억8천만달러) - 농산물(7억달러) - 원료 및 부품(14억달러) 	
'87. 5. 4	海外旅行經費 支給限度 引上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 유학생, 해외연수 및 기술훈련생의 체재비 인상: 月 1,000달러이하 → 1,500달러이하 · 가족과 동거하는 경우 배우자는 月 500달러 자내는 1인 당 月 300달러씩 추가 인정 (가족 동반의 경우 종전에는 일률 1,500달러이하) 	

년 월 일	경 제 시 책	배 경 및 취 지	주 요 내 용	비 고
'87. 5. 4	信用卡에 의한 海外旅行經費 使用制度 改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용카드 특례 사용자에게 대하여 준비금 한도 인상: 500달러 → 1,000달러 · 특례 사용자의 신용카드 이용범위 확대: 도서 및 자료, 의약품 구입비, 치료비 등 추가(종전에는 항공운임, 음식숙박료 등 해외여행 직접경비에 국한) 	
'87. 5.14	輸出 推薦制度	전자제품 수출시장의 효율적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추천에 의한 수출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자레인지 등 수출급증제품에 대해 수출 추천제도를 실시 - 對日 수입의존형 제품의 수출 自製를 통해 對美무역 흑자를 줄이고 對日무역 逆調를 시정 	
'87. 5.15	綜合 物價管理 對策	경쟁국과의 가격경쟁력 유지 및 지속적인 성장기반 구축을 위한 물가안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수요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수지 흑자에 따른 해외 부문 통화증발 억제: 총통화 증가율 18% ○ 가격 및 需給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요금 관리강화 - 수입애로 품목의 해소로 공산품가격 안정 - 油價 및 도시가스 요금인하 - 농축수산물 需給 및 가격안정 - 부동산투기 억제시책의 지속적 추진 	

년 월 일	경 제 시 책	배 경 및 취 지	주 요 내 용	비 고
'87. 5. 21	第2 金融圈 金利引下	은행금융기관과 비은행금융 기관간의 과도한 금리격차로 인한 자금흐름의 왜곡을 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가관련 법규 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가안정법」 개정 등 물 가관련법규 및 제도의 정비 ○ 단기금융회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신금리: 0.5%이하 - 여신금리: 年 1.0~12.0% 범위내에서 기업신용도에 따라 차등화(중전 年12.0%) ○ 상호신용금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신금리: 年 7.0~13.0% → 6.5~12.5% - 여신금리: 年 18.0%→17.5% ○ 생명보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정이율: 年 8.0% → 7.5% 	
'87. 6. 2	貿易金融制度 改編	국제수지 흑자에 따른 해외 부문 통화증발 압력을 완화 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배분을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무역금 융단가 차등 인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기업(생산자금): 580원 → 480원/달러 - 중소기업(생산자금): 680원 → 630원/달러 - 중소기업 범위를 갖 벗어나 아직 경쟁력이 충분하지 못 한 비계열대기업(年間 수출 실적 3천만달러 이하)에 대 하여는 현행 대기업 단가를 그대로 유지(580원/달러) ○ 수출산업 설비금융제도 개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기업 및 계열 기업군 소 속 중소기업을 「수출산업 설비금융」 용자에서 제외 	

년 월 일	경 제 시 책	배 경 및 취 지	주 요 내 용	비 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에 준하여 지원하는 「중견 수출기업」 지원 방법 마련 o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한국은행 대출비율 조정 - 금융기관이 취급한 무역금융에 대한 한국은행 대출비율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기업: 60%이내 → 40%이내 · 중소기업: 60%이내 <p style="text-align: right;">(현행유지)</p>	
'87. 7. 2	造船工業 支援	受注감소 등의 구조적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선공업의 국제경쟁력 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은행의 계획造船자금 증액: 700억원 → 1,760억원 · 대출금리인하: 年 11% → LIBOR+1.5% 	
'87. 7. 9	商品先渡 類似 去來에 대한 支給認證制度	주요 원자재의 수입가격 변동을 회피하기 위한 상품선도 거래의 원활화 도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품목: 原油 및 원유 정제품 · 계약한도: 전년도 수입실적 이내 · 계약기간: 1年이내 · 差額정산: 외국환은행의 확인을 거쳐 차액 및 부대 수수료 지급 	
'87. 7.20	貿易外 支給制限 緩和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대외 거래를 원활히 뒷받침하고, 경상수지 흑자 개선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의 일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o 내국인 및 국내기업의 대외 거래 관련사항 - 扶養金 지급금액 제한 폐지 <p style="text-align: right;">(현행 3천달러)</p>	

년 월 일	경 제 시 책	배 경 및 취 지	주 요 내 용	비 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천달러를 초과하는 해외 주택 수리비: 韓銀허가 → 외국환은행 확인 - 기술용역 대가 지급: 1만달러 초과시 韓銀허가→5만달러 이하는 외국환은행 확인 - 광고 전문회사를 통한 해외 광고비: 韓銀허가 → 외국환은행 확인 - 외국인 또는 해외교포 고용 (1年이상): 대가 지급시만 외국환은행 확인 <p>○ 외국인 및 외국기업 국내활동 관련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 거주자 퇴직연금의 對外 송금: 韓銀허가 → 외국환은행 확인 - 외국기업 국내지점에서 본사에 일반관리비 분담금 송금: 송금제한 → 외국환은행 확인 - 외국기업 주재원의 국내 급여 對外 송금: 月 500달러 이내에서 외국환은행 확인 → 체재경비를 제외한 잔액 송금은 외국환은행 확인 	
'87. 7. 21	建設都給 下限線 設定	중소건설업체의 공공부문 발주공사 受注기회 확대	<p>○ 업종별 건설도급하한선 설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급한도액 70억원 이상인 대형건설업체(108개사)에 대해 일정규모이하의 官給공사 受注제한 	

년월일	경제시책	배경 및 취지	주요내용	비고
'87. 8. 7	大企業에 대한 貿易金融支援 縮小	최근 수출호조로 자금사정이 호전된 수출 대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억제하는 대신 그 여력을 중소기업 자금 지원으로 전환하기 위한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기업에 대하여 무역 금융 단가 인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기업(생산자금): 480원 → 380원/달러 - 비계열 대기업(年間 수출 3천만달러이하, 생산자금): 580원 → 530원/달러 - 중소기업: 630원/달러 (현행유지) ○ 완제품 구매자금 지원제도 폐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同 자금의 대부분을 종합무역상사 등 대기업이 이용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폐지 	
'87. 9. 1	海外投資規制緩和	해외투자 지원시책의 일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투자 허가절차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 투자요건 확인제(사실상 자동허가) 대상 확대: 20만달러 → 50만달러 이하 - 現地법인의 이익금 유보한도 확대: 10만달러 → 50만달러 이하 ○ 해외 부동산 개발사업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업체의 해외 부동산 개발 목적(호텔, 아파트, 상가건물 등)의 現地 금융 受惠 허용 - 해외 부동산 투자 또는 건설업 現地법인 설립시 자기자본금 비율 준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기자금 비율: 자기자금/해외 투자금액 · 부동산 취득시: 50% · 건설업 현지 법인 설립시: 100%이상 	

년 월 일	경 제 시 책	배 경 및 취 지	주 요 내 용	비 고
'87. 9. 25	關稅引下	對美통상 마찰완화, 원자재 需給 원활화와 물가안정 도모	· 화장품, 컴퓨터 등 132개 품목: 관세율 5~10% 인하 · 39개 품목에 대해 할당관세 적용: 관세율 3~15%인하	'88.1월 시행
'87.10. 1	先物去來制度 改編		○ 금융 선물거래제도 신설 - 통화 및 이자율 선물 - 통화 및 이자율 옵션 ○ 스왑(SWAP)거래 확대 - 종전: 이자율 스왑거래만 허용 - 개선: 통화 및 이자율스왑, 선도금리 계약 거래 ○ 선물환 거래 계약기간 제한 폐지 - 對顧客 원貨 및 외국 통화 간 선물환 거래시 1年으로 제한하던 계약기간 폐지	
'87.10.19	<뉴욕證市 株價 暴落> ※ BLACK MONDAY	미국의 무역적자 누증으로 87.7月이후 달러貨 하락	· 다우지수(DJIA)가 前日對比 22.6% 하락 · 동경, 런던 등 주요 주식시 장에 파급되어 세계적인 株價 파동 유발	
'87.10.26	地域經濟育成 綜合對策	지역간 경제의 균형발전 도모	· 공업배치, 수송체계 등 사회 간접자본의 확충 · 근무환경개선으로 지방교육 의 質的향상 · 地方 技能工 양성	

년월일	경제시책	배경 및 취지	주요내용	비고
'87.10.30	貿易金融單價 引下	계속되는 해외부문 통화 증발에 따른 통화관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기업(생산자금): 380원 → 270원/달러 · 비계열 대기업(생산자금): 530원 → 450원/달러 · 중소기업(생산자금): 630원 → 570원/달러 	
'87.10.30	證券去來制度 改編	<p>유가증권 발행의 원활화, 민영화한 공기업의 경영권 보호, 투자자층의 저변확대 직접금융의 촉진 등을 도모</p> <p>※ 「증권거래법」 및 「자본시장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87.10.3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증권거래법」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가증권신고서 제도 개선 - 내부자거래 규제강화 및 기업공시제도의 개선 - 對替決濟업무의 개선, 투자諮問業의 제도화 - 주식보유 제한, 의결권 제한 강화 및 외국인 주식 취득 제한 - 증권관리위원회 기능활성화 - 증권거래소를 회원제 조직으로 전환 ○ 「자본시장 육성법」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소유주식 분산 매각 및 종업원 持株제도 활성화 - 기업공개 및 有價增資 권고제도의 법제화 - 주식배당의 한도 확대 - 「기업공개촉진법」을 흡수 통합 	
'87.11.11	國際收支 黑字 對策	경상수지 흑자지속으로 인화가치 상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환은행 국내지점의 非거주자 元貨예금 預受 허용 · 국외지점의 元貨 매입한도를 상향조정: 50만원→100만원 	

년 월 일	경 제 시 책	배 경 및 취 지	주 요 내 용	비 고
'87.12. 1	保險會社의 資金運用 改善	「보험회사의 재산운용에 관한 준칙」 개정('87.11.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에 대한 의무대출 비율 신설 - 기업대출 증가액의 35%이상을 중소기업 대출로 할당 ○ 신용대출대상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전 신용대출대상: 한국은행 재할인 적격업체, 단기 금융회사, 어음할인 적격업체 및 지방소재 중소기업 - 신용대출대상에 공공단체를 추가하고 중소기업의 경우 에는 쏘지역 중소기업으로 확대 ○ 부동산 보유한도 재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자산 1조원 미만 → 총자산의 15% 이하 - 총자산 1조원 이상 → 1500 억원+1조원 초과액의 12% 	
'87.12. 1	資本市場의 國際化 推進	국내보유 外換의 적절한 관리운용과 국내 증권업의 국제투자 경험축적을 통한 대외경쟁력 강화 도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既발행 해외 전환사채의 주 식 전환 허용 · KEF(코리아-유러펀드)의 增 資 허용 · 국내에 해외증권 투자용 펀 드 설립 추진 	
'87.12. 1	電話通話 料金 夜間 割引制	통신이용자의 전화통화요금 부담을 완화하고 통화량의 주야간 분산으로 통신시설의 활용도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야간할인 통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외장거리 자동통화(DDD), 국제자동발신통화(ISD), 공중전화 및 차량전화 · 할인시간: 오후 9시~ 翌日 오전 8시 	

년 월 일	경 제 시 책	배 경 및 취 지	주 요 내 용	비 고
'87.12.10	農漁村 經濟活性化 綜合對策	농어촌이 상업적 營農漁業 으로 전환하여 가는 과정에 서 農漁家 부채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기반시설 보조지원 확대 - 農組長期債를 全額국고지원 - 水利施設을 사회간접 자본 으로 간주하여 全額보조 (70~85% → 100% 보조) - 耕地정리 사업시 농가 부담 완화: 20% → 10% ○ 農水産 中長期 자금 상환 기간연장 등 - 0.5ha이상 농가에 대출된 2조1천억원의 상환기간연기 (5年거치, 7年상환) - 특별 상호금융 5천억원을 농수산자금으로 代換: 年 14.5% → 10% 	
'87.12.28	地方 生命保險 會社 新設許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립지역: 직할시 및 도청 소재지 · 설립주체: 당해지역 商工人 으로서 「공정거래법」 상 대규모기업 집단에 속하지 않는 기업 등 · 납입자본금: 50억원이상 · 영업구역은 전국으로 하되 재산운용은 당해지역으로 국한 · 기금 예탁제도 적용: 납입자 본금의 일정비율(30%) 에 해당하는 국채를 매입하여 금융기관에 예탁 	

년월일	경제시책	배경 및 취지	주요내용	비고
'88. 1. 1	全國民 醫療保險制度	'86.9.2 「국민복지 증진 대책」에 의거	o 全국민 의료보험 - '88年 농어촌, '89년에 도 시지역으로 확대 - 低소득층에 대하여 50% 정부 부담	
'88. 1. 1	國民年金制度 導入	'86.9.2 「국민복지 증진 대책」에 의거	o 국민연금제도 적용대상 - 18세~60세미만의 쉰취업자 - 10인이상 사업장 근로자부 터 실시	관련 '86.9.2
'88. 1. 1	最低賃金制度 導入	'86.9.2 「국민복지 증진 대책」에 의거	o 최저임금제도 적용대상 - 근로자 5인이상 제조업 중 低임금 업종부터 실시 o 최저임금 결정방법 - 「근로기준법」상의 통상임 금을 기준으로 하되 물가, 경제성장 등 제반요건을 고려하여 신축성있게 운용 o 財源조달 - 근로자와 사용자가 균형있 게 분담하고 퇴직금도 단계 적으로 흡수	관련 '86.9.2
'88. 1. 1	公募株 請約 制度 改編	농어민, 근로자 등 저소득 층에 대한 주식 배정기회 확대	· 근로자 증권저축, 우리社株 組合 등의 배정비율을 제고 · 1인당 청약최고 한도 인하: 3천만원 → 2천만원	
'88. 1. 1	輸出 通關節次 簡素化	수출통관 사무처리 요령 등 14개 규정을 「수출통관 사무	o 수출검사제도 개편 - 수출검사방식: 開裝검사 →	

년월일	경제시책	배경 및 취지	주요내용	비고
		처리 규정」으로 통합 ('87.11.18)	무작위 추출검사 - 수출검사 품목: 전체의 35% → 10% o 수출 면허시기 사전 예약제 도 신설 - 종전: 제품생산 완료후 수 출 면허 신청 - 개선: 적기에 수출하기 위 해 수출계약체결 직 후 수출 면허시기 예약	
'88. 1. 1	HSK 制定	관세·통계 통합 품목 분류 표(HSK, Harmonized System of Korea) ※ 재무부 고시 제 87-12호 ('87.7.1)에 의거	· 종전 CCCNK를 HSK체계로 전환 · 10단위 품목 분류표 · 용도: 관세율표, 수출입 공 고 무역통계 작성	
'88. 1.12	不動産 投機 抑制 對策	국세청 발표	· 274개 부동산 특정지역 추가 告示: 269개지역 → 599개지역 · 서울, 부산, 대구의 10개 신규 분양 아파트를 당첨권 기준시가 적용 대상으로 추가고시 · 1억원이상 부동산 매입자금 출처조사	
'88. 2. 6	貿易金融制度 改編	수출호조에 따른 국제수지 흑자로 해외부문 통화공급이 늘어나 통화관리 부담이 가중	· 대기업(비계열 대기업포함) 에 대한 무역금융지원 중단 · 중소·중견기업의 무역금융 단가 소폭 인하: 평균 520원 → 450원/달러	

년 월 일	경 제 시 책	배 경 및 취 지	주 요 내 용	비 고
'88. 2. 7	國際收支 黑字 管理 對策	對外통상 마찰을 완화하고 對內的으로는 해외부문 통화 증발과 수출의존도 증대 등 구조적 문제점을 해소하고 물가안정을 뒷받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개방 확대 및 수출지원 제도 축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8年 개방豫示 품목(133개) 및 유보품목(370개) 중 농산물을 제외한 공산품 및 1차 산품 早期 개방 - 수입감시제도 철폐 - 개별법에 의하여 수입추천, 허가 등 수입을 제한하는 품목 축소 - 대기업에 대한 관세징수 猶豫제도 폐지('88.3.1) ○ 관세율 인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심관세율: 20% → 15% - 원자재에 대한 관세율 대폭 인하 ○ 內需확대 등을 통한 수입 촉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0억달러 규모의 특별 외화 대출 - 특별소비세 인하 ○ 外換자유화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천달러 이하의 외환은 國内外에서 보유 가능 - 해외투자절차 간소화(100만 달러 → 200만달러 신고제) ○ 해외 투자이민 적극유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移住 정착비 上向조정 (20만달러 → 30만달러) 	
'88. 2. 15	外貨與信 制限	경상수지 흑자로 해외부문 의 통화증발 규모가 확대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外貨용자대상 축소 조정 - 무역외지급 자금은 용자대 	

년월일	경제시책	배경 및 취지	주요내용	비고
		에 따라 통화안정을 위한 수단을 강구 ※ '88.2.15 「외화 여신 업무에 관한 규정」 개정	상에서 제외 - 경상 運航경비, 備船料, 港灣경비, 기술용역대가 및 특허권사용료 등 - 용자기간 3年以上인 용자금의 조달 財源에 대한 제약 조건 폐지 o 外貨 용자비율 인하 - 계획 造船用 기자재 수입 자금: 100% → 80% - 주요 시설재 수입자금: 100% → 80%(대기업) - 일반시설재 수입자금: 80% → 60%(대기업)	
'88. 2.19	土地去來許可 對象地域 擴大	부동산 투기가 심한 개발예정지역을 토지거래 허가대상 지역으로 지정	· 토지거래허가대상지역 지정: 6개개발예정지역 653.17km ² (아산, 시화, 명지·녹산, 성서, 대불, 군산·장항)	
'88. 2.25	< 노태우 大統領 就任 >	· 6.29민주화선언(87.6.29) · 대통령선거당선(87.12.17)	· 13代 대통령	
'88. 3. 1	大企業의 關稅猶豫制度 廢止	'86년이후 延 3年제의 높은 경제성장과 국제수지 흑자에 따른 통화관리대책의 일환 ('88.2.4 발표)	· 대기업의 수출용 원재료 수입에 대한 관세징수 유예 제도 폐지 · 중소·중견기업의 징수유예 기간 단축: 3個月 → 2個月	관련 '88.2.7
'88. 3.10	物價安定 綜合對策	국제수지 흑자에 따른 통화증발로 수요측면에서의 물가 상승 압력 우려	o 재정 및 금융 - 추경예산편성 지양, 歲計잉여금에 의한 韓銀차입금 상환(5천억원)	

년 월 일	경 제 시 책	배 경 및 취 지	주 요 내 용	비 고
'88. 3. 25	外換管理 自由化 方案	<p>우리경제의 국제화 추세에 상응하여 국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기업의 대외거래 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려는 목적</p> <p>또한 대외 통상마찰 및 통화관리의 어려움, 원貨 평가 절상 등의 애로요인 완화 목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통화 목표증가율 18%線 유지 ○ 稅 制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소비세 탄력세를 인하 및 할당관세 추가적용 ○ 물가안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油價 및 관련 에너지 가격 인하 - 공공요금의 인상 유보 - 농축산물 가격의 안정세 확보 - 공산품 需給 불안요인 해소 - 개인 서비스요금 관리강화 - 부동산 투기의 근절 ○ 貿易外 지급절차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액 송금 자유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당 2천달러 이하 송금 자유화 · 건당 1만달러 이하 경상거래 代價 지급 자유화 ○ 貿易外 포괄지급 인정대상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업체에 전년도 수출실적 또는 외화 획득 1% 범위 내에서 허용 ○ 무역관련 결제방법의 제한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대금 領收기간이 360日 이내인 경우 정상 결제방식으로 간주 	<p>관련 '88. 2. 7</p>

년월일	경제시책	배경 및 취지	주요 내용	비고
'88. 4. 1	輸入開放 擴大	'88.3.15 「수입개방 확대 방안」 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의 경우 360日 이내 사전 지급을 정상 결제방법으로 인정 ○ 외국환 집중제도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천달러 이내에서 거주자의 外貨 보유 허용 ○ 해외 이주비 지급제도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주 정착비 확대: 세대당 20만달러 - 이주비 지급대상 확대: 국제결혼 등에도 5만달러 이내의 이주 정착비 인정 ○ 해외지사등에 대한 제한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지점의 영업기금한도 폐지 - 해외지점 영업 이익금 자동 유보 금액을 年間 10만달러 이내로 확대 ○ 해외투자 지원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백만달러 이하의 개인기업 목적 해외투자 허용 - 이익금의 국내회수 의무 폐지 - 해외투자 허가절차 간소화 ○ 수입제한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감시 품목(48개) 중 대리석, 판유리, 가구 등 23개 공산품 해제 - 수입선다변화 품목축소: 147 → 98개 	

년월일	경제시책	배경 및 취지	주요내용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선 다변화 해제: 공기조절기, 세탁기, 전자계산기 등 56개 품목 · 수입선 다변화 신규 지정: 소형승용차, 자동선반, 냉연강판 등 수입급증이 예상되는 7개 품목 - 사전검사나 수입추천 등 특별법에 의한 수입절차 규제 해제 (39개 품목) ○ 통화금융 등 규제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리자유화의 年内 시행 및 중장기 채권시장의 육성 - 간접 규제방식에 의한 통화관리 및 중심통화지표의 변경 - 토지기록 전산화와 종합토지세제가 정착되는대로 금융실명제 및 금융소득종합과세 실시 - 대기기업의 興信비중 축소 등 경제력집중 완화와 경쟁제한적 정부규제의 단계적 제거 ○ 국제화의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實勢를 반영한 환율 운용 - 외환집중제 완화 등으로 경상수지 흑자폭 축소 - IMF 8條國 가입추진 등 대외개방 확대 및 국제화의 추진 - 北方경제협력 추진체제 정비와 산업구조조정 촉진 	

년월일	경제시책	배경 및 취지	주요내용	비고
'88. 4. 20	保險會社 海外進出 擴大 方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간, 계층간 균형 발전 - 농어촌, 도시저소득층 및 영세민에 대한 지원 ○ 해외 주재원 및 점포에 대한 규제 완화 - 해외주재 인원제한 철폐 (자유화) - 해외주재 사무소 설치 권장 - 지사, 지점, 현지법인 등 영업조직은 국가별, 사업형 태별 특수성을 감안하여 사례별로 허용 	
'88. 5. 6	稅制改編	간접세 중심의 세제로는 세수 확보에 한계가 있고 소득 재분배 기능이 미약하며, 각종 조세관련 특혜로 조세의 중립성 저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자 등 중산층 이하에 대한 세금경감 및 부담완화 · 高소득 계층에 대한 재산과세 강화를 통해 조세부담의 형평성 제고 · 조세감면 대폭 축소 	
'88. 5. 27	油價·換率 連動制度	원貨절상으로 인한 기업 부담 완화 및 국내물가 안정을 위해 국내 油價를 환율에 연동시킬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油價에 환율을 連動 - 환율변동에 따라 유가를 적절히 조정 ○ 국내 유가구조 개편 - 국제 유가보다 국내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은 휘발유와 LPG가격의 인하 - 휘발유에 대한 특별소비세 인하 추진: 100% → 70% 	

년 월 일	경 제 시 책	배 경 및 취 지	주 요 내 용	비 고
'88. 7. 1	金融機關 手數料率 自由化	<p>금융기관의 與受信 금리자유화에 앞서 금융기관간 경쟁 촉진과 책임경영체제의 정착을 도모</p> <p>※ 「금융기관 여수신 이율 등에 관한 세칙」 개정 ('88.6.3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기관 지급보증료 및 내국 신용장 취급 수수료율의 최고율 폐지 • 금융기관의 외국환 업무 관련 對顧客 취급 수수료율 자유화 	
'88. 7. 1	外換管理制度 改善	<p>국제수지 흑자 기조정착에 따른 흑자 財源의 효율적 활용 목적</p> <p>※ 「외국환 관리규정」 개정 ('88.6.3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 수입 자유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金, 地金 수입에 대하여 「외국환 관리규정」 상의 허가절차를 폐지하고 완전 자유화 ○ 기관투자자의 해외 증권투자 허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증권사, 투신사, 보험사는 해외에서 외화 증권매매, 보유 또는 외화 예금 가능토록 허용 - 투자 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증권사: 3천만달러 • 투신사 및 보험사: 1천만달러 ○ 기술도입 절차 간소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약기간 3年 이하 또는 代價 10만달러 이하의 기술도입은 외국환은행 認證으로 가능 ○ 신용카드제도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용카드 사용전 외국환은행 認證절차 폐지 	

년 월 일	경 제 시 책	배 경 및 취 지	주 요 내 용	비 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투자제도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대상국 對外 채무의 할인 매입을 통한 해외투자 (Debt/Equity SWAP) 허용 - 해외투자의 자본요건 폐지: 차입에 의하여도 해외 투자 가능 ○ 원貨표시 여행자 수표제도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貨표시 여행자 수표 종류를 10만원권 이내로 제한 - 1인당 판매한도 축소조정: 1천만원이내 → 5백만원이내 	
'88. 7. 20	不動産 投機 抑制政策	부동산투기 억제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규제 강화 · 부동산 과세기능 강화 	
'88. 7. 22	醫療保險制度 適用對象 擴大	영세 사업장에 의료 혜택 부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장의료보험 적용 사업장 규모 하향조정: 常時 16人 이상 → 5人 이상 · 퇴직후에도 3個月間 피보험자 자격부여 	
'88. 7. 28	都小賣業 振興 5個年 計劃	낙후된 도소매업을 집중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단위 도매센터 24개 및 공동 集配送단지 7개 건립 ('89年 ~ '93年) · 개인사업자의 법인 전환, 상업조합 결성 등에 있어 中小 제조업과 동일한 稅制혜택 부여 · 재래시장 근대화 및 보증보험의 보증한도 확대 	

년 월 일	경 제 시 책	배 경 및 취 지	주 요 내 용	비 고
'88. 8. 10	<p>不動産 綜合對策</p>	<p>국제수지 흑자 확대와 소득 증가에 따라 부동산 등 實物 투기에 의한 물가 불안 우려</p> <p>특히 올림픽('88.10月) 이후 부동산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심리 확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기간 중 3,810억원의 재정자금 지원 ○ 부동산가격 상승 기대심리 불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세 특정지역을 추가 告示 하여 투기소득을 組稅로 환수(1,710개 리·동 → 3,200개 리·동) - 1가구 2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要件 기간단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파트: 2年 → 6個月 · 일반주택: 2年 → 1年 - 1가구 1주택에 대한 非과세 요건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주: 1年 → 3年 · 소유: 3年 → 5年 ○ 부동산거래질서의 정상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기우려지역의 토지거래 허가제 확대 - 官認계약서 사용(88.10.1 시행) 및 등기 의무화 - 재산세 등 부동산 보유 과세 강화 방안 마련 - 89년부터 개발부담금 제도 (개발이익 환수제도) 실시 ○ 토지공개념에 의한 토지제도 관련 입법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계획지역내 택지보유 상한제 - 농지, 임야는 실수요자만 구입하도록 제한 - 不在地主 소유농지의 재산세 증가제도 	

년월일	경제시책	배경 및 취지	주요내용	비고
'88. 8. 23	〈美 綜合貿易 法 發效〉	미국의 막대한 무역적자 해소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山地形質 변경에 따른 개발 이익 전액 환수 o 「부동산 정책위원회」 계속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계장관으로 구성 (위원장: 부총리) - 지방국세청에 「부동산 투기 전담반」을 常設기구로 설치 	
'88. 9. 2	韓銀 再割引 및 貸出制度 改編	금리자유화 및 간접규제 방 식에 의한 통화관리의 전 환 여건조성 목적 ※ 한국은행의 「금융기관에 대한 여신업무 이율」, 「금융기관에 대한 재할인 및 대출에 관한 세칙」 등 관련규정 개정 ('88.9.1)	<ul style="list-style-type: none"> o 韓銀 재할인 및 대출금리 체 계를 단순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업어음 재할인을 인상: 年 7% → 8% - 무역어음 담보대출, 중소기업 기술개발자금 등의 대출 금리를 재할인율과 동일하 게 年 8%로 조정 (종전, 年 5%~7%) o 지원비율의 단순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업어음 재할인과 무역어 음 담보대출 등의 대출지원 비율을 동일하게 단순화 - 중소기업 지원 비율: 50~80% → 50% - 대기업 지원비율: 30~40% → 30% 	

년 월 일	경 제 시 책	배 경 및 취 지	주 요 내 용	비 고
'88. 9. 13	土地去來 許可 對象地域 擴大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금융 축소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개발자금 등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금융외에 추가 지원하던 일반 중소기업 자금 대출 폐지 ○ 토지거래 허가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 등 6대도시 線地지역 및 27市, 42郡, 49區를 허가제 실시대상지역으로 추가지정 (653㎢→9,336㎢, 전국토의 9.4%) ○ 토지거래 신고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원도 동해市 등 6市, 11郡 7,264㎢를 신고지역으로 추가 告示(56,557㎢ → 63,821㎢, 전국토의 64.4%) ○ 토지거래 감시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도권 및 중소도시 線地 지역, 안양市 등 13市, 12郡 6,072㎢를 감시지역으로 추가 설정 	
'88. 9. 17	<서울올림픽 開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60개국 1만3천여 선수참가 	'88.9.17 ~10.2
'88. 9. 19	金融機關 債券貸損 承認 業務 改正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기관 貸損償却 심사대상 채권규모 상향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은행과 단기금융회사: 500만원 → 5,000만원 - 농·수협, 상호신용금고: 50만원 → 1,000만원 	

년 월 일	경 제 시 책	배 경 및 취 지	주 요 내 용	비 고
'88. 9. 21	不動産 特定地域 追加 告示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지 1,367개 지역, 아파트 110개 지역 등 1,477개 지역을 부동산 특정지역으로 추가 告示 · 전국의 부동산 특정지역: 1,710개 지역→3,187개 지역 	
'88.10.14	經濟의 安定成長과 先進和合 經濟 推進 對策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에 따른 국민적 자신감과 축적된 경제력을 바탕으로 선진화합 경제기반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가안정기반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산물가격과 서비스요금 등 물가상승요인의 효율적 관리와 需給 원활화 - 총수요관리 철저 - 勞使관계 안정과 생산성 범위내의 임금인상 원칙 ○ 부동산 투기억제 시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합토지세제 마련 - 토지공개념 도입 추진 ○ 자금 순환의 정상화와 통화 관리 방법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리자유화 추진 - 은행별 與信한도 관리 제도 폐지(간접통화 관리방식) - 통화관리지표 변경 (예: $M_2 \rightarrow M_2 A$) ○ 공정 경제질서 확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실명제와 금융소득 종합과세 추진 - 대기업 與信 비중 축소 등 경제력 집중 완화 ○ 흑자 관리와 경제의 개방, 선진화 	

년 월 일	경 제 시 책	배 경 및 취 지	주 요 내 용	비 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수지 흑자 축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율의 실세 반영 · 延支給 수입억제 · 외채 조기상환 · 外換집중제 완화 - 무역업, 유통업 개방 - 자본시장 국제화 - 北方경제협력 추진 - 산업구조 조정 <p>○ 낙후부문 지원을 통한 국민 화합 경제 추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어촌에 대한 집중 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어촌 소득증대 사업 (1조 9,772억원) · 농어민 부담경감 (1조 769억원) ·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 (6조 9,154억원) - 주택공급 확대, 의료보장 강화 등 도시 低소득층의 기본수요 충족 - 자녀학비 지원 등 영세민 생활향상 지원 - 서해안 개발사업 등 지역간 균형발전과 토지이용의 효율화 	
'88.11. 1	外換管理制度 改善	<p>국제수지 흑자가 지속됨에 따라 외환 자유화 폭의 확대 를 통하여 대외거래 원활화 지원 및 적정 통화관리를 도모</p> <p>※ 「외국환 관리규정」 개정('88.10.25)</p>	<p>○ 외환집중제의 완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천달러 이내에서 개인의 外貨매입 또는 外貨 예금인 출 허용 - 개인의 경우 5천달러 이내 는 제한없이 보유 	

년.월.일	경제시책	배경 및 취지	주요내용	비고
		개정('88.10.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상 외환지급 제한 축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주자 보유 외화는 해외여행 경비 한도외로 추가사용 및 송금 허용 - 개인 송금 한도 확대: 2천달러 → 5천달러 ○ 원화의 교환성을 부분적으로 인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 입찰시 등에만 인정하는 원화표시를 무역거래에 전면 허용 - 해외여행경비 범위내의 원화를 반출하여 외국환 은행 국외점포에서 매각 가능 ○ 해외 직접투자 지원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고대상 해외투자 범위 확대: 100만달러 → 200만달러 	
'88.12. 5	金利自由化	'86年 이후의 경상수지 흑자로 총저축이 국내 총투자를 상회하고 기업의 자금부족 규모가 축소되는 등 금리자유화의 여건 성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與信금리의 자유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정자금, 국민투자기금 등 특정 정책 목적 이외의 모든 여신금리 자유화 - 무역금융에 대하여 우대금리 적용(年 10%) - 지방은행 대출 최고 금리에 年 1%p 가산 허용 ○ Prime Rate제도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리자유화 초기에 나타날 수 있는 과도한 금리변동 방지 - 韓銀 재할인 금리에 일정률을 가산하여 결정 	

년 월 일	경 제 시 책	배 경 및 취 지	주 요 내 용	비 고
'88.12.31	輸入監視制度 廢止	「수출입期別 公告」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부 長期受信금리의 자유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은행권의 2年이상 정기예금 금리 및 비은행권의 2年이상 정기 예탁금 금리자유화 - 자유저축예금금리를 年1%p 기계종합예금금리를 年2%p 인하 ○ CD, 회사채, 금융채 등의 금리 자유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D 매출금리는 액면가 3천만원이상인 경우에 한해 자유화 - 기업금전신탁, CMA, 수익증권, BMF 등 실적배당 금융상품의 수익률(금리)자유화 ○ 수입감시제도 완전폐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4개 수입감시 대상품목중 냉동고사리, 운전기 등 22개 품목의 수입을 자유화 - 생산농가의 큰 피해가 우려되는 냉동마늘, 생강, 인조꿀 등 12개 품목을 수입제한 승인품목으로 전환 ○ 수입확인 절차 폐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산권 국가로부터 원목, 유연탄 등 2개 품목 수입시 대한무역진흥공사의 수입확인 절차 폐지 	
'88.12.31	원貨切上 (換率引下)	3年 연속 국제수지 흑자로 원貨가치가 상대적으로 상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율인하(15.8%): 729.3원 → 684.1원/달러 	

년 월 일	경 제 시 책	배 경 및 취 지	주 요 내 용	비 고
'89. 1. 1	與信管理制度 改編	「계열기업군에 대한 여신 관리 시행세칙」 및 「금융 기관 여신업무 취급지침」 등 개정('88.12.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신관리대상 기업체의 국내 타기업 출자한도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전: 자기자본의 50%이내 (계열기업군에 대한 여신관리 시행세칙) - 변경: 순자산의 40%이내 (공정거래법) ○ 비업무용 부동산의 판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전: 「계열기업군에 대한 여신관리 시행세칙」 의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기준 적용 - 변경: 법인세법 시행규칙, 지방세법 시행령의 관련규정 운용 ○ 外資유입 장려 조치 중단 및 해외투자 규제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신관리 대상 기업체의 국 내 합작투자 기업에 대한 투자 허용 중단 - 여신관리대상 기업체의 해외 기업투자 및 부동산 취득 허용 ○ 근로자 복지후생시설 확충 시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근로자에게 제공되는 복지후생시설 건물 또는 부동산 취득시 自救노력의 무 면제 	
'89. 1. 9	中小企業 創業 支援	기술집약형 업종의 육성을 위하여 해당 중소기업의 창업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업유망 품목 선정 및 지원 (348개) - 운수장비업종(71개), 조립 	

년 월 일	경 제 시 책	배 경 및 취 지	주 요 내 용	비 고
'89. 2. 1	商業어음 再割引 適格 業體 擴大	중소규모 수출업체에 대하 여 상업어음 재할인을 통하 여 자금 지원 ※ '89.1.28 「상업어음할인 및 재할인 취급 세칙」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금속·기계제조(118개), 전기전자기기제조(77개)등 - 창업유망 품목중 106개 품목은 기술집약형 품목으 로 지정하여 「중소기업창 업 지원법」에 따른 稅制 및 자금혜택 · 현행 상업어음 재할인 대상: 정부투자기관, 정부출자기업 체, 금융기관관리업체, 산업 합리화기업, 유망중소기업 · 현행 대상에 증견수출기업을 추가 	
'89. 2. 13	海外投資 要件 緩和	「외환관리 규정」을 개정 하여('89.2.13) 해외투자 허 가요건 및 절차의 간소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o 해외투자 허가요건 완화 - 기업체 종합평가표상 일정 수준 이상의 평점을 要하는 투자자 요건 폐지 - 투자방법별 허가요건 완화 · 증권투자: 투자비율 20%이 상 또는 常勤임원을 파견하는 경우 · 貸付: 채권회수가 확실하 다고 인정되는 경우 o 해외투자 절차 개선 - 허가신청서류의 간소화 (7種→3種) - 개인투자자의 투자규모 및 절차상의 제한을 철폐하고 일반 해외투자절차 적용 	

년 월 일	경 제 시 책	배 경 및 취 지	주 요 내 용	비 고
'89. 2. 21	物價安定 綜合對策	'86년이후 3年間 지속된 고도성장에 따른 소비수요 증대로 수요측면에서의 물가 상승 압력 가중 한편 개인서비스요금, 부동산 가격, 임금 등을 중심으로 '87年 하반기이후 소비자 물가 상승 지속	○ 공공요금 등의 안정적 관리 - 휘발유 特消稅 탄력세율 조정으로 휘발유 가격 7.2% 인하('89.3.27시행) - 中·高 납입금 인상률을 평균 8%로('89.2.27시행) · 중학교: 6.5% · 고등학교: 9.5% ○ 주요품목의 需給인활화 도모 - 쇠고기 부족물량 早期수입 (상반기중 39,000톤) - 위생陶器 등 142개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 ('89.3.14시행)	
'89. 2. 22	大企業 與信 規制 強化	대기업에 대한 편중 여신 방지 및 규제 강화	· 50大 계열企業群의 은행부채 年内 상환 (1조5천억원~1조7천억원) · 30大 계열기업군의 與信점유 비율(바스켓비율) 대폭인하, 조정	
'89. 2. 24	零細民 住居對策	도시 영세민의 주거안정 도모	· 총85만 가구의 주택을 4年 동안 공급: 영구임대주택 25만, 장기임대주택 35만, 18명이하 분양주택 25만가구	
'89. 3. 18	證券市場 育成	주식, 회사채 발행 등 직접 금융시장을 통한 기업자금 조달 촉진	· 주식先買權附 公募增資제도 도입 · 無의결권 우선주 발행확대 · 부실공개 예방을 위해 공개 요건 중 자본금기준을 상향 조정: 5억원 → 10억원	

년 월 일	경 제 시 책	배 경 및 취 지	주 요 내 용	비 고
'89. 3. 31	國民年金 制度改善	국민연금 가입, 탈퇴 절차 의 간소화 및 연금지급 범위 확대 ※ 「국민연금법」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인미만 소규모 사업장, 지역주민 등의 국민연금 가입, 탈퇴 절차 간소화 (보건사회부 장관인가 → 국민연금관리공단 신청) • 障 碍 연금의 지급범위 확대 	
'89. 3. 31	豫算制度改善	예산의 효율성 제고 및 낭 비요인 제거, 국민 편익증진 등을 도모 ※ 「예산회계법」 개정 ('89.3.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비비제도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전: 세출예산의 1/100이 상을 예비비로 계상 - 변경: 세출예산중 상당하다 고 인정되는 금액을 예비비로 계상 ○ 결산보고서의 국회제출시기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계년도 개시 120日前까지 (종전 90日前) ○ 국가 배상금제도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 배상금을 歲計 잉여금 으로 우선 지출 가능 ○ 계속비제도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年으로 제한되어 있는 계속비의 年限 연장 가능 	
'89. 4. 8	農水産物 輸入 自由化 豫示	대의 통상마찰 완화 및 농 산물 수입개방에 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수산물 수입개방 豫示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243개 품목의 농수산물 수입개방('89~'91年) - 밀, 배합사료, 바나나, 파인애플, 복숭아통조림 등 (미국 수입개방요구 119개 중 62개 품목 포함) 	

년 월 일	경 제 시 책	배 경 및 취 지	주 요 내 용	비 고								
'89. 4.12	經濟社會의 公正·衡平 및 持續發展을 위한 實踐計劃	국민의 민주화 요구에 부응하여 공정·형평을 증진함과 동시에 장기적인 성장기반을 다지는데 필요한 실천계획 제시	<p>※농수산물 수입 자유화율(%)</p> <table border="1"> <tr> <td>'88</td> <td>'89</td> <td>'90</td> <td>'91</td> </tr> <tr> <td>71.7</td> <td>76.1</td> <td>80.3</td> <td>84.9</td> </tr> </table> <p>○ 경제의 공정성 확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동산 투기의 근절 - 재산 보유과세 강화 - 토지공개념 확대 도입 - 조세부담의 형평성 제고 - 금융실명제 종합과세제도 추진 <p>○ 균형과 형평 증진을 위한 구조조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어촌문제에 대한 종합적 대응 - 경쟁적 시장체제 확립과 중소기업 육성 - 복지제도의 확충 <p>○ 안정 궤도위에서의 성장지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전한 노사관계의 정착 - 국제 경쟁력 강화 등 국제화 시대에 능동적 대응 	'88	'89	'90	'91	71.7	76.1	80.3	84.9	
'88	'89	'90	'91									
71.7	76.1	80.3	84.9									
'89. 4.20	限界 支給準備 制度 導入	민간신용의 과도한 증가를 억제함으로써 해외부문의 통화 증발을 中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형저축, 주택마련저축 등을 제외한 예금에 대하여 매 卅月 평균잔액 증가액에 30%의 한계 지급준비율 적용 	'90.1.19 폐지								
'89. 4.20	大系列 企業群에 대한 與信 管理 強化		<p>○ 직접 금융을 통한 은행 대출금 상환 촉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신관리대상 50대계열기업 군중 직접 금융이 가능한 									

년 월 일	경 제 시 책	배 경 및 취 지	주 요 내 용	비 고
			<p>41개 계열기업군 소속 기업체에 대하여 은행대출금 상환 촉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은행 대출금 상환 의무액 · 자기자본 지도비율 달성 <p>계열기업군: 총 대출금 잔액의 5% 미달성 계열기업군: 15%</p> <p>○ 편중 여신규제 제도 개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제대상 계열: '87年末 총 자산 기준 30大계열 - 규제비율: '89年末 목표 대출금 Share 및 與信 Share부여(분기별 목표 비율 별도 책정) 	
'89. 4. 27	住宅 200萬戶 建設 計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등 5개 新도시 건설 	
'89. 4. 28	農漁村 發展 綜合對策	'86年이후 3회에 걸친 농어촌대책과 선진화합 경제대책('88.10)을 마련하였으나 농어촌문제의 근본적 해결이나 자생력 회복에는 미흡	<p>○ 농업구조 개선 촉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진흥공사」를 개편하여 「농지공사」(假稱)설립 · 농지의 매입 위탁관리 · 專業農의 농지구입자금지원 <p>- 農地관리기금 설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專業農의 농지구입자금 지원 등 - 농업振興圈域 설정, 운영 · 농업 집단화가 가능한 지역 대상 - 營農조합과 위탁營農회사 육성 - 농수산업 구조조정기금 신설 	

년월일	경제시책	배경 및 취지	주요내용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農地抵當기관 확대 및 營農자금 신용거래제 도입 - 산림개발 사업단 운영 등 산림자원의 所得源化 <p>○ 농수산물의 가격안정과 수요기반 확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쌀, 보리, 콩 등 주요작물의 안정적 가격 支持 - 가격안정대 제도의 내실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추, 마늘, 양파 등 主産단지 마을 營農會와 단위농협의 생산조정 約定 · 同 約定 이행 농가에 대하여 가격安定帶의 下限가격 보장 - 自助金を 적립하여 가격하락 보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作物: 돼지, 닭, 우유 - 농수산물가공 및 花盆산업 육성 <p>○ 農外所得源 개발 촉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자치단체의 농촌 공업 개발 기능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市·郡에 「농촌공업과」 신설 <p>○ 농어촌 定住圈 개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面소재지 개발 10個年 계획 수립 <p>○ 농어민 부담 輕減과 農漁家 경제 안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어촌 기존 부채 특별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한도: 戶當 200만원 	

년월일	경제시책	배경 및 취지	주요내용	비고
'89. 5. 4	土地去來 許可制 擴大 實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금리: 영세농(無이자) 小農(5%) · 상환조건: 2年거치5年상환 - '83~'84年 소入殖 자금 상환 연장 - 營農漁자금 금리인하: 8% → 5% - 농어민 자녀의 학자금 면제 대상 확대 · 1ha미만 농어가 자녀중 면 지역 소재 중학교 및 실업 계 고교생까지 확대 - 「농어촌 발전을 위한 특별 조치법」(假稱) 제정 	
'89. 5. 15	中小企業 情報 化 5個年 計劃	정보화 사회를 맞아 중소기업의 경영 합리화 도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향후 5年동안 중소기업 컴퓨터 보급률을 현수준의 3배이상 수준으로 제고 · 경영, 판매, 생산의 통합관리기업 지향 	
'89. 5. 25	中小企業에 대한 商業어음 再割引 支援	중소기업의 자금난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韓銀의 재할인을 인상 - 중소기업(계열기업군소속 기업체제외)이 할인의뢰한 재할인 적격어음에 대하여 	'89. 7. 27 기간연장

년 월 일	경 제 시 책	배 경 및 취 지	주 요 내 용	비 고
			<p>재할인 비용을 잠정적으로 10%인상: 50%→60%</p> <p>· 기간: '89.5.25~7.31</p> <p>○ 구조조정 자금 지원</p> <p>- '89.5.10~12.31 기간 중 중소기업은행이 취급하는 중소기업 구조조정 자금의 50%를 韓銀이 지원</p> <p>· 기간: '89.5.10~12.31</p>	
'89. 5.29	反덤핑 關稅 制度	韓美통상협상 타결 등 개방 확대에 따른 충격에 대비	<p>· 산업피해 모니터링제도 도입</p> <p>· 덤핑수입상품에 대해선 신속히 反덤핑관세 부과</p>	
'89. 6.16	綜合土地稅 導入	「지방세법」 개정 ('89.6.16)	<p>○ 토지분 재산세와 토지과다 보유세 통합</p> <p>- 전국에 소재하는 모든 토지를 소유자별로 합산한 후 累進稅率 적용</p> <p>- 농지, 공장용지, 사치성토지(골프장 등)는 合算대상에서 제외</p> <p>- 세율: 기본세율(0.2%)에 10단계 초과 누진세율 加算</p>	'90.1.1 시행
'89. 7. 1	外國人 投資 擴大	<p>외국인투자 자유화 업종 확대 및 투자절차 간소화</p> <p>※ '89.6.26 「외국인 투자 인가 지침」 개정</p>	<p>· 외국인투자 자동인가 대상 범위 확대: 3백만달러 → 5백만달러이하</p> <p>· 자동차 등 7개 산업합리화 업종에 대한 외국인투자 제한 철폐</p>	

년월일	경제시책	배경 및 취지	주요내용	비고
'89. 7. 4	臨時 投資稅額 控除制度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제조업 및 광업의 특정부문 투자에 대하여 임시투자세액 공제제도를 한시적으로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全量 수출산업 등에 대한 외국인 투자 특혜 폐지 · 외국인 투자에 대한 인가를 30日이내에 처리 · 의약도매업의 전면개방 등 · 세액공제대상: 제조업 및 광업의 사무용 기계장치에 대한 투자 · 대상기간: '89.7.1 ~ '90.6.30 ('89.12.31까지의 투자분에 한함) · 稅額공제율: 투자금액의 10% (外國産 3%)를 소득세액 및 법인세액에서 공제 	'94.12.31 시행종료
'89. 7. 4	最低賃金制 適用範圍 擴大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常時근로자 10人 이상의 광업, 제조업, 건설업 → 常時근로자 10人 이상 全산업 	
'89. 7. 27	中小企業에 대한 商業어음 再割引 時限 延長	노사분규, 임금인상, 수출부진 등으로 기업경영에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원활한 자금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에 대한 상업어음 재할인 비율의 잠정인상조치 (50% → 60%) 時限을 2個月 연장: '89.7月末 → 9月末 	관련 '89.5.25
'89. 8. 2	讓渡所得稅 課稅對象 調整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89.8.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세대1주택」이라도 양도 소득세가 부과되는 고급주택 기준조정 - 아파트 등 공동주택: 전용면적 100평이상→80평이상 - 단독주택: 연건평 100평이상이고 대지 200평이상 → 	

년월일	경제시책	배경 및 취지	주요내용	비고
'89. 8. 4	與信管理 制度 補完	30대 계열기업군에 대한 여신한도 관리제도를 보완하여 주택상환사채 및 전환사채발행 원활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건평 80평이상 또는 대지 150평이상 - 금액기준: 5천만원이상 → 1억8천만원이상 o 단독주택 신축양도시의 거주기간 - 3년이상 거주해야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o 偏重 與信 규제대상 제외 - 주택상환사채 및 전환사채에 대한 지급보증 o 偏重 與信 규제대상 포함 - 무역어음의 인수 및 할인 	
'89. 8.10	外換管理 制度 改善	해외부동산투자 제한 완화 및 외국환평형기금 채권의 발행방식 변경 ※ 「외국환관리법 시행령」 및 「외국환관리 규정」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o 海外 不動産 투자규제 완화 - 종전에는 사업에 필요한 경우에만 해외부동산의 취득, 처분을 허용 - 장래 사업기반 구축을 위해 필요한 경우 및 해외지사, 현지법인 등 장기 근무자의 주거용 주택매입의 경우에도 허용 o 「외국환 평형기금」 채권 개선 - 외국환 평형기금 채권의 만기 연장: 1년이내→3년이내 - 額面발행방식 도입 	

년 월 일	경 제 시 책	배 경 및 취 지	주 요 내 용	비 고
'89. 8. 18	中小企業 特別支援 對策	<p>중소기업은 노사분규, 임금 상승, 원화절상에 따른 수출 둔화, 자금사정 악화 등 어려움에 직면</p> <p>단기적으로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장기적으로는 성장잠재력을 배양하여 경쟁력있는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도모</p>	<p>○ 중소기업 지원자금 조기집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진흥공단이 금융기관으로부터 2천억원을 차입하여 중소기업에 용자지원 <p>○ 중소기업 담보력 보완을 위한 신용보증제도 개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용보증기금의 同一 企業 當 보증한도 확대: 10억원 → 15억원 - 簡易 審査保證 확대 및 심사기준 완화 <p>○ 중소기업자금 공급능력 확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기관 단기여유 자금의 전액 또는 총 여유자금의 일정률(20%) 이상을 중소기업 은행에 예치 - 중소기업의 특별 外貨대출 확대 - 상업어음 재할인율(60%)의 재검토 	
'89. 8. 28	造船産業 合理化 計劃	<p>국내조선업계는 '83年 이후 세계적인 조선 불황의 여파로 선박 受注量 감소, 船價 하락 등 경영상 어려움</p> <p>조선산업을 합리화하여 재무구조 개선을 촉진하고 국제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안정적 성장도모</p>	<p>○ 대우조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무구조 개선을 위하여 4천억원이상의 自救 노력 · 4개 계열사(제철화학, 풍국정유, 설악개발, 대우투금, 대우빌딩, 대우증권주식(김우중씨소유) 등 매각 - 自救 노력에 따른 조세부담 완화 · 계열사 매각시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와 증권거래세 면제 	

년월일	경제시책	배경 및 취지	주요내용	비고
'89. 8. 30	中小企業 固有業種 擴大	산업이 복잡, 多岐化함에 따라 기존의 고유업종을 일부 해제하고 신규지정을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천조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무구조 개선을 위하여 계열사에서 인천조선에 400억 원 출자 ○ 조선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정관리하에 있는 조선공사를 한진그룹에서 인수 - 조선공사와 그 계열사(부산수리조선소, 동해조선, 광명목재)의 합병 ○ 중소기업 고유업종확대 (205 → 237개 업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의 고유업종 해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속제 식탁용품제조업 등 17개 업종 - 신규지정 및 범위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 강관電柱제조업 등 49개 업종 · 범위변경: 생석회제조업 등 34개 업종 	
'89. 9. 1	段階別 換率 制度改編 計劃	국제금융시장의 통합화 추세와 우리경제의 개방화 및 국제화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 1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 제도하에서 환율의 가격기능 제고를 위한 보완 조치('89.9.20시행) - 외국환은행의 전신환 매매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중기준율±0.4%로 고정 → 집중기준율±0.4%이내에서 자율결정(달러貨기준) - 외국환은행의 현찰 매매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중기준율±1.5%로 고정 → 자율결정 	

년월일	경제시책	배경 및 취지	주요내용	비고
'89. 9. 1	輸出産業에 대한 金融機關 融資比率 調整	수출산업 및 수입대체 소재·부품산업에 대한 시설 자금공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의 용자비율을 상향 조정 ※ '89.8.31 수출산업 및 수입대체 素材·部品산 업시설자금 대출취급세 칙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은행의 집중 매매율 · 집중기준율±0.35%로 고정 → 對顧客 전신환 매매율 범위내에서 신축적 운용 ○ 제 2단계('90年中) - 자유변동환율제도의 시장 평균환율제도(假稱) 도입 - 시장평균환율: 前日의 은행 간 환율을 거래량으로 가중 평균하여 當日의 시장 평균환율 산출 ○ 제 3단계('90年이후) - 자유변동환율 제도 ○ 수출상품 생산관련 용자금액 - 소요자금의 70%이내에서 80%이내로 조정 ○ 수입대체 소재·부품산업 생산관련 용자금액 - 중소기업(系列企業群 소속 기업체 제외): 소요자금의 70%이내→ 80%이내로 조정 - 기타의 경우: 소요자금의 50%이내 	
'89. 9. 8	通貨管理 強化	실물경제의 발전을 뒷받침 할 수 있도록 통화관리의 효율성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리의 가격기능 제고 및 장단기 금융시장 육성을 적극 추진 · 콜시장 및 채권시장의 제도 정비를 통해 공개시장조작을 활성화 	

년 월 일	경 제 시 책	배 경 및 취 지	주 요 내 용	비 고
'89.11.10	中小企業 簡易還給 制度	중소 수출업체의 자금부담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소기업에 대한 간이환급제도를 도입하여 환급절차 간소화 제도의 적용범위 확대: 2만달러 → 3만달러 	
'89.11.14	再割引 金利 引下	금융기관의 여신금리 및 시장금리의 하락을 유도함으로써, 급속한 임금상승 및 원貨절상 등으로 위축된 기업의 투자 심리를 회복하고 대외 경쟁력 보강을 도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업어음 재할인율: 8.0% → 7.0% 무역어음 담보대출금리: 8.0% → 7.0% 중소기업 관련자금금리: 8.0% → 7.0% 	
'89.11.14	經濟社會 安定 과 競爭力提高 를 위한 當面 對策	경제사회 전반의 안정 분위기 정착과 약화된 경쟁력의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제사회 안정기조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勞使관계 및 임금안정 - 생산성향상 노력 강화 물가안정 및 부동산 투기 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투자 촉진과 병행하여 총수요를 안정적으로 관리 - 토지공개념 관련 법안의 연내 입법 추진 경쟁력제고(수출·투자촉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韓銀 재할인금리 인하(8%→7%) 및 제2금융권 금리인하 촉진 - 시장평균환율제도 도입 - 통화의 신축적 운용과 자금흐름의 정상화 - 제조업 설비투자 촉진을 위한 특별자금 설치(1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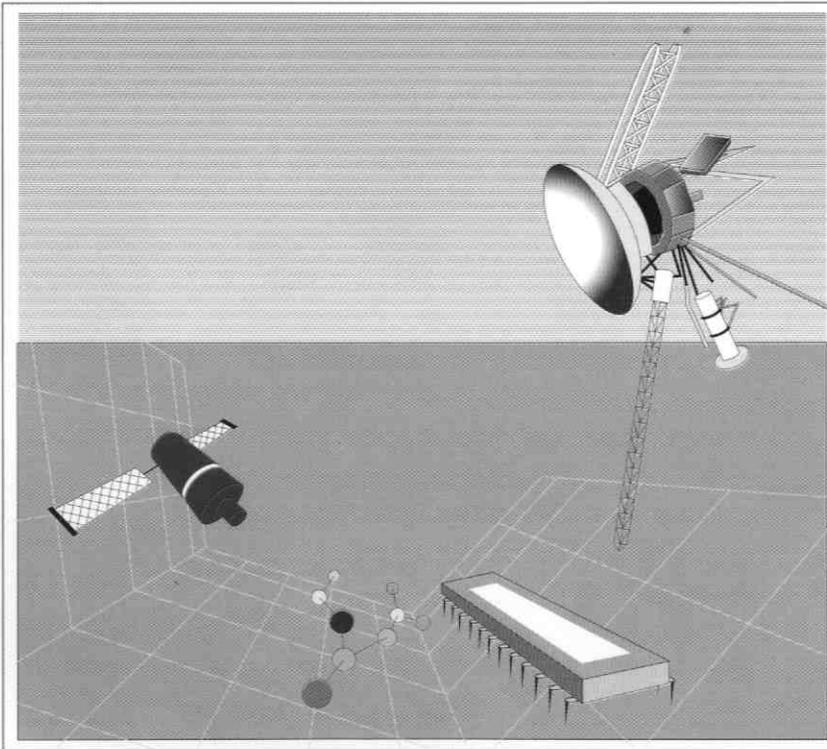
년월일	경제시책	배경 및 취지	주요내용	비고
'89.11.10	中小企業 簡易還給 制度	중소 수출업체의 자금부담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소기업에 대한 간이환급제도를 도입하여 환급절차 간소화 제도의 적용범위 확대: 2만달러 → 3만달러 	
'89.11.14	再割引 金利 引下	금융기관의 여신금리 및 시장금리의 하락을 유도함으로써, 급속한 임금상승 및 원물절상 등으로 위축된 기업의 투자 심리를 회복하고 대외 경쟁력 보강을 도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업어음 재할인율: 8.0% → 7.0% 무역어음 담보대출금리: 8.0% → 7.0% 중소기업 관련자금금리: 8.0% → 7.0% 	
'89.11.14	經濟社會 安定 과 競爭力提高 를 위한 當面 對策	경제사회 전반의 안정 분위기 정착과 약화된 경쟁력의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제사회 안정기조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勞使관계 및 임금안정 - 생산성향상 노력 강화 물가안정 및 부동산 투기 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투자 촉진과 병행하여 총수요를 안정적으로 관리 - 토지공개념 관련 법안의 연내 입법 추진 경쟁력제고(수출·투자촉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韓銀 재할인금리 인하(8%→7%) 및 제2금융권 금리인하 촉진 - 시장평균환율제도 도입 - 통화의 신축적 운용과 자금흐름의 정상화 - 제조업 설비투자 촉진을 위한 특별자금 설치(1조원) 	

년월일	경제시책	배경 및 취지	주요내용	비고
'89.11.23	外國換銀行의 域外金融去來 活性化	국내은행의 域外금융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외국환 은행의 역외 금융거래 운용 지침」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 外貨 대출조건 개선 - 첨단기술산업에 대한 투자 확대 · 지역금융계정의 자금조달 및 운용폭 확대 · 국내 외국환은행간의 역외금융거래 허용 	
'89.12. 1	外換管理制度 改善	투기성 外貨자금의 유입요인이 감소됨에 따라 外貨자금의 국내반입 및 換錢에 대한 규제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환 등록 및 국세청 통보 대상: 3천달러이상 → 5천달러이상 · 非거주자의 換錢 한도: 1만달러 → 5만달러 	
'89.12. 1	外換市場 運營 協議會 發足	외환거래 및 외환시장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 협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의회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환은행(10개은행), 한국은행, 외국환평형기금 및 금융결제원의 외환시장 담당책임자 ○ 협의회 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환거래에 관한 의견조정 및 지침의 설정 - 외환시장운영에 관한 정보 교환 - 외환거래지침 위반기관에 대한 제재 등 	
'89.12.12	證券市場 浮揚 對策 (12·12 措置)	'89.4月이후 종합주가지수의 지속적 하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市中은행 자금 2조 7천억원을 3大 投信社(국민, 대한, 한국투신)에 대출하여 주식을 매입토록 조치 	

년 월 일	경 제 시 책	배 경 및 취 지	주 요 내 용	비 고
'89.12.21	輸出企業 등에 대한 金融支援 強化	「무역금융 계정」 및 「수출산업 및 수입대체 素材, 부품산업 시설자금대출 취급 규정」 등 개정('89.11.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역금융 단가인상 - 중소기업(평균): 500원 → 550원/달러 - 비계열 대기업(평균): 200원 → 300원/달러 - 비계열 대기업의 범위확대: 전년도 수출실적 3천만달러 이하 → 5천만달러 이하 ○ 수출산업 및 수입대체 素材, 부품산업에 대한 시설자금 대출 확대 - 비상장 중소기업 및 비상장 증견 수출기업에 대한 융자 비율 상향조정: 소요자금의 80%이내 → 100%이내 - 대기업 및 계열기업군 소속 중소기업에 대하여 '90年末 까지 한시적으로 대출 	
'89.12.27	歲計 剩餘金에 의한 糧穀證券 償還	<p>양곡관리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정상적인 재정운용 도모</p> <p>※ 「예산회계법」 개정 ('89.12.27)</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곡증권법」에 의해 발행되는 양곡증권의 元利금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구애받지 않고 歲計 잉여금으로 직접 상환 가능 	
'89.12.30	勤勞所得稅額 控除制度	<p>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실질적인 세부담 형평을 도모하고 생산직 근로자의 근로의욕 고취</p> <p>※ 「소득세법」 개정 ('89.12.3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소득세액 공제 -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20% (30만원 한도)를 세액공제 ○ 근로수당 非과세 - 月급여 1백만원 이하인 생산직 근로자의 야간, 연장 또는 휴일 근로수당에 대하여 비과세 	

년 월 일	경 제 시 책	배 경 및 취 지	주 요 내 용	비 고
'89.12.30	農漁家 負債 輕減	'89.12.18 「농어가 부채 輕減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채輕減대상: 2정보미만 농 지를 소유하 는 農漁家の 農水畜協부채 경감 · 상환기간: 5年거치 5年 均分 상환(中長期 차입금) · 이자감면: 0.7정보미만 소유 자는 무이자, 0.7~2정보미만 소유자는 年 3% · 한도(中長期 차입금): 戶當 400만원 	

1990 年代



년월일	경제시책	배경 및 취지	주요내용	비고
'90. 1. 1	公共料金 現實化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버스요금 할인제 폐지 - 敬老無賃制, 대학생 및 군·경·국가유공자 할인제 폐지 ○ 시내통화요금 산정방법을 度數制에서 時分制로 변경 - 서울 등 10大 도시: 3分 통화시마다 25원씩 	
'90. 1. 1	輸出入 自由化 促進	수입자유화 촉진 및 수출 제한제도 대폭 완화 ※ '89.12.8 「輸出入公告」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자유화 - 위스키, 귀금속 등 총 95개 품목의 수입자유화 · 수입자유화율: 95.5% → 97.7% ○ 수출제한 완화 - 폴리에틸렌 등 14개 품목의 수출자유화 등 수출제한제도 완화 	
'90. 1. 13	與信管理制度 改編	대기업의 과도한 부동산 투자 및 유가증권 투자의 억제를 통해 시중 자금 흐름을 개선하고, 생산적인 부문에의 투자 확대를 유도하는데 목적 ※ '90.1.12 「개별 기업군에 대한 與信관리 시행세칙」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신관리 대상 기업체에 대하여 대규모 토지가 소요되는 업종에의 신규 진출 금지 - 골프장, 스키장, 축산업, 임업을 경영하기 위한 기업신설이나 引受 등의 기업투자 금지 - 골프장 및 스키장용 토지, 목장, 造林用 임야 등의 신규 취득 금지 ○ 自救노력에 의한 소요자금 조달 의무액 산정기준 변경 - 기준금액: 소요자금의 50~125% → 100~200% 	

년월일	경제시책	배경 및 취지	주요내용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금 용도별로 기준금액의 1~3배를 자구노력 조달의 무 금액으로 부과 - 대기업 보유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 처분 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구노력 실적으로 인정 <p>○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규제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업무용 부동산 처분촉구에 불응하는 경우 금융상의 불이익 	
'90. 1. 13	林野 賣買 證明制 導入	「산림법」 개정 ('90.1.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야 매매시 매수자가 실소요자임을 증명하는 임야매매 증명(시장, 군수발급)을 받도록 의무화 · 매수 임야를 5년이내에 매도할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先買權 부여 	
'90. 1. 19	限界 支準制度 廢止 및 基準 支準率 引上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9.4.20시행 한계 지준제도 폐지 · 저축성 및 요구불 예금에 대한 지급준비율 인상: 10% → 11.5% · 2년이상 정기에금 및 적금에 대한 지급준비율 인상: 7.0% → 8.0% 	관련 '89.4.20
'90. 1. 28	勞使紛糾 被害企業에 金融支援		<p>○ 금융지원대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체紛糾없이 母企業 또는 관련기업의 노사분규로 자금압박을 받고 있는 기업 	

년 월 일	경 제 시 책	배 경 및 취 지	주 요 내 용	비 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사분규가 타결되었거나 早期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긴급운영자금 지원이 필요 한 기업 ○ 금융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역금융 등 기존대출금의 용자기간 연장 - 기존대출금 용자기간 연장 만으로 임금체불 또는 부도 우려가 해소되지 않을 경우 긴급 운영자금 대출 	
'90. 3. 2	市場平均 換率 制度 導入	환율의 價格기능 提高로 국내외환시장을 활성화하고 對外거래의 원활화 및 對外 통상마찰요인 완화 도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市場平均 환율제도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전 複數通貨바스켓에 의 한 관리변동환율제도를 폐지 - 외국환은행의 當日 거래환 율을 거래량으로 加重平均 하여 다음날 환율로 결정 ○ 銀行間 환율 賣買率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환 은행간 賣買率은 시장평균환율의 上下 0.4% 범위내(日日 변동폭)에서 조정 	'91.9.1 일일변동폭 변경
'90. 3. 2	土地公概念 制度 施行	부동산 투기 및 不勞所得 을 방지하고 근로의욕을 고 취하며, 成長一邊倒 정책으 로 파생된 분배구조의 왜곡 현상 극복 ※ '89.12.30宅地所有上 限 法, 開發利益還收法, 土 地超過利得稅法 등 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宅地所有上限에 관한 법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정면적 이상의 宅地 소유 를 원칙적으로 금지 -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등 6大 도시: 1가구 소유 宅地한도를 200평으로 제한 	

년 월 일	경 제 시 책	배 경 및 취 지	주 요 내 용	비 고
'90. 3. 2	外換管理制度改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開發利益還收에 관한 법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발사업에 따른 토지 이익의 일부를 개발부담금으로 징수하여 還收 -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 도시계획, 土地 形質 변경, 토지구획정리, 택지개발 등 26개 개발사업 - 개발부담비율: 개발에 따른 토지이익의 50% ○ 土地超過利得稅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유토지의 地價上昇分에 대하여 세금부과(未實現 이익에 대한 과세) - 과세대상토지: 遊休地, 空閑地 및 기업의 비업무용 토지 - 과세표준: 正常 地價상승률을 초과하여 얻은 지가상승 이익 - 세율: 50% ○ 국내 집중의무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환 집중의무 유예기간 연장: 20日 → 30日 - 전년도 대외거래실적 1억달러 이상인 기업에 年間 1천만달러 이내의 外貨매입 허용 - 만기시까지 기한부 수출환어음의 직접 보유 허용 ○ 해외 외환보유 제한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합무역상사에 대해 5백만 달러 이내의 해외 외환보유 	

년 월 일	경 제 시 책	배 경 및 취 지	주 요 내 용	비 고
			<p>허용(다만 증권 및 부동산 투자는 금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투자자의 外貨보유한도 확대 · 해외증권업 허가받은 증권사: 3천만달러→5천만달러 · 국제업무 취급 투신사 및 총자산 5조원 초과보험사: 1천만달러 → 3천만달러 	
'90. 3. 5	金融機關 與信 禁止部門 調整	「금융기관 여신운용규정」을 개정하여('90.3.2) 비생산적 부문의 지원 축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與信禁止부문에 콘도미니엄 매입추가 · 여신금지대상 숙박업종에 콘도미니엄업을 추가 	
'90. 3. 13	價格動向 點檢品目指定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격동향 점검품목: 승용차, TV, 냉장고 등 33개 품목 	
'90. 3. 14	金融紛爭 調停 方法 改善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운영세칙」 제정('90.3.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접적인 이해관계인이 아닌 자의 調停신청은 분쟁조정대상에서 제외 · 당사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위원장의 결정으로 위원회에 출석·발언할 수 있도록 허용 · 위원회조정안의 관할 재판부 送付時期 변경: 소송제기시점 → 관할재판부 요구시점 	
'90. 3. 16	綜合土地稅制 改編	토지세의 현실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업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적용되는 別途合算稅의 최고 세율 인하: 5% → 2% · 일반 소유토지 綜合 合算課 	

년월일	경제시책	배경 및 취지	주요내용	비고
'90. 3. 28	企業公開要件 強化	신규 上場기업의 주가가 公募價 이하로 하락하고 公 開 1年만에 부도를 일으켜 회사정리 절차에 들어간 기 업의 증가	<p>稅 최저세율(0.2%) 적용범위 확대: 과세표준액 5백만원 이하 → 2천만원 이하</p> <p>○ 기업공개요건 강화 - 설립경과년수: 3年→5年 - 納入자본금: 10억원이상 → 20억원이상 - 자기자본요건 신설: 30억원 이상 - 納入資本 이익률: 정기예금 利率 → 정기예금 최고이율의 150%</p>	
'90. 4. 3	個人信用情報 管理制度	금융거래에 대한 신용정보 수요가 증대됨에 따라 발생 할 수 있는 고객의 權益침해 방지	<p>· 불량거래정보 관리기한설정: 15年</p> <p>· 登錄정보에 대한 당사자의 열람 및 利用權 보장</p> <p>· 등록정보 오류에 대한 訂正 窓口に 「전국은행 연합회」 포함</p>	
'90. 4. 4	經濟活性化 綜合對策 (4·4 對策)	수출감소, 제조업투자부진, 부동산투기, 물가불안 등으 로 경제활력 약화	<p>○ 企業意慾의 蘇生 - 금융실명제 실시 유보 (당초 '91.1月실시 예정) - 與信규제 및 정부규제완화 - 자금지원의 원활화 · 중소기업 상업어음 재할인 비율 70% 적용기간 연장 · 제2금융권 實勢금리 1% 이 상 引下유도</p> <p>○ 産業 構造調整과 기술개발 촉진</p>	<p>관련 '90.4.13 '90.4.20 '90.5.8</p>

년 월 일	경 제 시 책	배 경 및 취 지	주 요 내 용	비 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촉진을 위한 무역금융 單價 인상 · 중소기업: 550원 → 600원/달러 · 非系列 大企業: 300원 → 400원/달러 - 설비투자촉진 · 특별설비자금 1조원 증액: 1조원 → 2조원 · 중소기업 구조조정기금 2천억원 증액 · 임시투자세액 控除期間 연장('90.6 → 12月) ○ 부동산 투기강력 억제 - 세금추징 등으로 常習 부동 산투기 행위자 규제 - 주택 假需要억제 및 浮動資 金の 부동산 流入 방지 · 자금출처조사 강화 · 제2금융권의 토지매입 관 련자금 여신규제 - 기업부동산 관리 강화 · 업무용 부동산 인정기준을 엄격히 적용 ○ 庶民住宅難 완화 - 전세자금지원 확대 - 多世帶, 多家口 주택건설 촉진 ○ 물가안정 - 생산성 증가 범위내 임금 인상 - 공공요금 인상 억제 - 총통화 증가율: 15~19% 	

년 월 일	경 제 시 책	배 경 및 취 지	주 요 내 용	비 고
'90. 4. 7	農漁村振興 公社 設立 및 農地管理 基金 設置	UR협상 추이로 보아 농산물 시장개방이 가속화될 전망 ※ 농어촌 진흥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정 ('90. 4.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勞使관계 발전과 근로의욕 고취 - 근로자 주택지원 확대: 戶當 900만원→1200만원 - 근로소득세 부담 輕減 ○ 課稅公平 - 非實名 금융소득 重課稅: 40% → 소득세 최고세율 - 상속세 및 증여세 강화 ○ 농어촌진흥공사 설립 - 농업진흥공사 흡수 - 專業農 육성과 零細農지원 ○ 농지관리기금 설치 - 「농어촌지역개발기금」 중 농지구입부문과 농지기금을 흡수하여 「농지관리기금」 설치 	
'90. 4. 13	不動產 投機 抑制 對策	'89.12.12 「증권시장 부양 시책」 등에 따른 통화증발 과 물가 불안 이에 따라 부동산가격의 지속적 상승 및 市中遊動資 金の 부동산시장 流入 우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동산 투기행위 집중단속 - 관련부처 합동으로 부동산 투기 합동단속반 운영 - 부동산 투기행위 정보관리 센터 설치(국세청) ○ 부동산 登記 義務化 추진 - 부동산 등기 신청주의를 의무주의로 변경 ○ 증여세 강화 - '90. 5. 1이후 증여에 대하여 '90. 9. 1告示 公示地價 적용 (상속세법 시행령 개정) 	관련 '90. 4. 4 '90. 5. 8

년월일	경제시책	배경 및 취지	주요내용	비고
'90. 4. 20	物價安定對策	'90. 4. 4 「경제활성화 종합 대책」의 실효성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대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가격안정과 공급대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의 사원용 임대주택 건설 촉진 · 工團 주변지역의 토지이용 규제 완화 - 국민연금기금을 활용한 근로자 주택공급 - 주택건설 규제 완화 · 일반주거지역에서의 容積率, 建蔽率 기준완화 - 서민주택금융 확대 (3천억원 증액) ○ 토지 투기억제와 利用度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지거래 허가지역 확대 - 「林野매매 증명제」 적용 대상 확대 -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기준 엄격적용('90. 4. 4법 인세법 시행규칙 개정) - 토지 信託制度의 도입 ○ 통화의 안정적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통화를 분기별 抑制線內에서 안정적 운용 (분기별 증가율 15~19%) - '90. 4. 4 「경제활성화대책」 상의 생산 투자 지원자금을 기금 및 제2금융권으로 부터 조달(채권발행) - 재정의 긴축운용 ○ 공공요금의 안정적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 전화, 도시가스요금 인하 ('90. 5. 1시행) 	<p>관련</p> <p>'90. 4. 4</p> <p>'90. 5. 8</p>

년월일	경제시책	배경 및 취지	주요내용	비고
'90. 5. 1	外國換管理 強化	<p>해외여행자 급증 및 개인 송금의 해외지급 강화로 외환관리를 강화할 필요</p> <p>※ '90.4.27 「외국환 관리 규정」 개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문별 需給隘路의 해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보유미, 쇠고기 등 방출 확대 - 시멘트, 철근 등 건축건자재 수입확대 ○ 가격감시 기능강화 및 부동산 투기 근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공산품 需給 및 가격동향 정기 점검제 - 不勞 陰性 소득자에 대한 重課稅 - 소비절약운동 전개 ○ 外貨 換錢 규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천달러 이내에서 자유로왔던 거주자 外貨 換錢제도의 폐지 - 換錢畢 捺印제도의 부활 ○ 신용카드 사용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여행 직접경비 사후관리 대상확대(月3천달러 초과 사용자→月3천달러) ○ 거주자 對外送金の 사후관리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指定 거래은행이 한국은행 및 국세청에 통보하는 對外 송금내역 보고 대상 확대(年間 累積送金額 3만달러 이상 → 1만5천달러 이상) 	
'90. 5. 1	公示地價 告示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 30만 標準地의 公示地價 고시('90.1.1 기준) 	

년 월 일	경 제 시 책	배 경 및 취 지	주 요 내 용	비 고
'90. 5. 8	不動産 投機 抑制와 物價安定을 위한 特別補完對策 (5·8 措置)	「4·4 경제활성화 대책」, 「4·13 부동산투기 억제 대 책」, 「4·20물가안정대책」 등 일련의 시책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투기가 성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大企業의 過多保有 부동산 처분 및 新規 취득억제 - 49개 系列企業群의 비업무 용 부동산 처분(6개월내) - 與信管理 대상 계열 대기업 은 '91.6月까지 부동산 신 규 취득 불허 · 위반시 대출금에 대한 연 체대출금리 적용, 신규대 출 일체 중단 - 遊休土地, 비업무용 부동산 등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담 보 취득 금지 - 제3자 名義 부동산의 담보 제공 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기관의 過多保有 부동산 처분 및 新規취득 억제 - 당초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는 부동산 매각 - 90年末까지 금융기관 점포 신설 동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가안정대책 - 공공요금 인상억제 - 통화의 안정적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증권시장의 안정기조 구축 - 부동산투기억제 대책에 따 라 여유자금이 증권시장에 환류토록 조치 	관련 '90.4.4 '90.5.8
'90. 5. 8	證券市場 安定對策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증권시장 안정 대책 - 증시안정기금 확대: 2조 → 4조원 - 投信社의 자본금 증액 100% 허용 	

년 월 일	경 제 시 책	배 경 및 취 지	주 요 내 용	비 고
'90. 5. 11	輸入價格表示 對象品目擴大	「가격 표시제 실시요령」 개정('90.5.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증권거래세율 인하: 0.5 → 0.2% o 해외수요 확대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 專用 수익증권 추가 설정 - 혼합 투자펀드 설정 - 코리아아시아펀드(1억달러) 설립 추진 · 수입가격 표시대상품목확대: 9개 → 49개 품목 · 종전 표시대상 품목: 카세트, 테니스라켓 등 · 추가 품목: TV, 냉장고, 골 프채, 도자기세트, 가슴기, 설탕 등 	
'90. 5. 17	中小企業 立地 供給對策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도지역 변경 권한의 지방 위임 · 首都圈內 개발부진 지역의 공장입지 제한 완화 · 아파트형 공장의 허용지역 확대 · 공장立地 및 공장건축 규제 완화 · 지방세법상 重課稅 대상 공 장 범위 축소 	
'90. 6. 21	土地去來 許可制 擴大 實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부고속전철 건설예정지 등 1개 직할시, 5道 12,144㎢ (전국토의 12.2%) 추가 지정 · 전체 토지거래 허가지역: 전국토의 40.8%인 40,467㎢ 	

년 월 일	경 제 시 책	배 경 및 취 지	주 요 내 용	비 고
'90. 6. 28	第2金融圈 金利 引下	'89.11月の 金利인하 조치 로 하락했던 시장금리가 '90.3月이후의 통화긴축으로 다시 상승 한편 명목금리가 행정지도 로 규제되자 금융기관들은 꺾기 등을 통하여 실질금리 를 인상하는 경향	o 제2금융권 與受信금리 인하 - 수신금리: 평균 1%p 인하 (短資社 어음할인율: 14%) - 대출금리: 은행의 優待金利 보다 2% 높은 수준에 連動 - 회사채 발행률: 1%p 인하	
'90. 6. 29	地價 急騰地域 告示	제1차 地價 급등지역 告示	· 전국 184개 邑, 面, 洞을 地價 급등지역으로 告示 (국세청)	
'90. 7. 5	貿易金融制度 改編	중소기업에 대한 실효성있 는 금융지원 도모	o 抱括金融의 受惠對象 및 同 一人 용자한도 확대 - 受惠對象: 年間 수출실적 5백만달러 미만인 중소기업 에서 1천만달러 미만업체로 확대 - 同一人 용자한도 · 신용장 기준금융: 7.5억원 → 15억원 · 실적기준금융: 3.5억원 → 7억원 o 내국(수입)신용장 開設담보 금 예치제도 폐지 - 抱括金融 受惠業體가 내국 신용장 개설시 개설금액 만 큼 담보금으로 예치하던 종 전의 제도를 폐지 - 同 금액에 相應하는 용자금 을 일시 회수하였다가 신용 장 어음결제시 이를 다시 용자하는 방식으로 전환	

년월일	경제시책	배경 및 취지	주요내용	비고
'90. 7. 6	科學 및 産業技術 發展 基本計劃	<p>선진국의 기술이전 기피, 핵심기술에 대한 高率의 사 용료 지불 등으로 국가경쟁 력 제고 곤란</p> <p>따라서 산업경쟁력과 직결 되는 산업기술에 중점을 두 고 제한된 연구인력 및 財源 의 효율적 활용 및 선진기술 보유국과의 협력 관계 증진 도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개발투자 확충 - 산업발전에 긴요한 핵심기 술로서 민간이 수행하기 어 려운 과제에 대한 연구개발 추진 - 국방, 체신사업 등을 통한 연구개발 확대 ○ 기업의 연구개발 적극지원 - 기술개발에 대한 자금지원 및 금융·세제상 지원 ○ 기술인력공급 및 尖端團地 조성 지원 - 지역별로 産·學·研 連繫 尖端團地 조성 ○ 연구개발 및 기술행정체계 정비 - 國策연구사업과 산업관련 기술개발사업에 대한 정부 지원 체제 정립 	'90.11.10 후속조치
'90. 7. 6	産業人力 需給 對策	우리 산업이 겪고 있는 산 업인력 需給 불균형 현상 해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인력 공급확대 - 工高 신·중설 등 기능인력 공급 확대 - 理工大學 尖端 관련학과 증 원 등으로 기술인력 공급확 대 - 人力需給 정보전달체계보강 ○ 산업간 인력흐름 재조정 - 제조업부문으로의 人力流入 - 소비 지향적 서비스산업에 대한 稅制上 규제 	

년월일	경제시책	배경 및 취지	주요내용	비고
'90. 7. 21	消費者 金融去來約款 制定	<p>금융거래의 공정성과 건전성을 확보하고 날로 증대되고 있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목적</p> <p>※ '90.6.22 「가계용 은행 여신거래 기본약관(소비자 금융거래 약관)」 제정(전국은행연합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女性 인력의 제조업 부문 취업 촉진 o 취약부문에 대한 인력공급 유도 - 지방중소기업체 생산직 인력 우대 - 중소기업의 기능·기술인력 확보 지원 · 이자 납부가 延滯된 경우 1개월간은 미납 이자에 대하여만 연체이율 적용(종전에는 미납이자 및 대출원금에 대하여 연체이율 적용) · 은행이 借主의 예금을 중도 해지하여 대출금 상환에 상당할 경우, 同 예금에 대해 실제 예치기간에 상응하는 약정 이율 적용 · 은행이 등기설정료 등을 대신 지급할 경우 代支給 비용에 대하여 延滯이율 아닌 약정 이율 적용 · 대출기간 중도에 대출이율 변경시 차주는 1개월이내 계약 解止 가능 	
'90. 7. 31	勤勞所得稅額 控除 擴大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年間 80만원 한도내에서 근로소득세액 공제금액을 상향 조정 · 月급여 100만원 이하: 稅額의 40% 공제 · 月급여 100만원 이상: 稅額의 30% 공제 	

년 월 일	경 제 시 책	배 경 및 취 지	주 요 내 용	비 고
'90. 8. 2	<이라크의 쿠웨이트 侵攻>			'91.1.17 페만전쟁
'90. 8.28	特別外貨貸出 制度 改善	과다한 임금인상과 연화 약세에 따른 가격 경쟁력 약화 감안	· 총 대출한도(종전 40억달러) 폐지 · 輸入 지원한도 확대 (10억 → 20억달러)	
'90. 9. 7	證券會社의 貸出金 回收 義務化	株價가 폭락하므로 증권회사 信用貸與分을 신속히 회수토록 하여 금융거래의 안정성 제고	○ 증권회사 대출금회수 의무화 - 신용거래 용자금 등의 증권회사 대출금 未償還時 상환기일 翌日에 즉시 담보물을 처분(反對賣買)하여 대출금을 회수토록 의무화 ○ 담보 추가제공 - 신용거래시 담보비율(130%)에 미달할 경우 4日 이내에 담보를 추가로 제공 - 담보를 추가로 제공하지 않을 경우 즉시 반대매매	
'90. 9. 8	高油價時代에 對應한 中長期 에너지 政策 및 産業政策 樹立計劃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90.8.2)으로 원유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제 1차 페르시아만 사태 관련 특별위원회」 개최('90.9.8)	· 원유의 수입선 다변화, 장기 공급 계약 등 안정공급 확보 · 원자력, LNG 등 에너지源의 다원화 추진 · 수송체계 합리화, 에너지 多소비형 건물 신축제한 등 에너지 소비절약 시책 강화 · 산업구조의 고도화 및 高부가가치화	'90.8.2 관련

년월일	경제시책	배경 및 취지	주요내용	비고
'90. 9. 8	石油市場 動向 및 石油需給 安定計劃	「제 1차 페르시아만 사태 관련 특별위원회」 개최 ('90.9.8)	· 이라크 및 쿠웨이트로부터의 수입 중단분(109천배럴/일) 대체 확보 · 국내 석유류가격 안정도모 · 등유 소비억제 · 원유 및 석유류 제품 관세를 인하: 10% → 1% ('90.9.16 시행)	'90.8.2 관련
'90. 9.18	株式型 收益證券 發賣 許容	株價가 폭락하므로 증시 수요기반을 확충하도록 投信 社에 허용	· 발매규모: 총 2조 6천억원 · 만기: 3年(中途환매 不可) · 보장수익률: 1年만기 정기에 금 금리(年10%) · 주식 편입비율: 80%	
'90. 9.25	南北韓 交易 對象物品 搬出入 承認	3차례의 남북 高位級회담 등 남북교류 진전 ※ 「남북한 교역대상 물품 반출입 승인절차에 관한 告示」 제정('90.9.25)	○ 반출입 제한승인 품목 - 통일원장관이 상공부장관 등과 협의하여 승인 ○ 반출입 자동승인 품목 - 甲類 외국환 은행장에게 권한 위임	
'90.10. 3	<獨逸 統一>	'89.11.9 동·서독의 국경 개방 및 베를린 장벽 와해 '90.7.1 경제, 사회, 통화 공동체 형성 '90.8.31 동·서독 통일협 약 조인	· 동·서독 통일협약 발표 · 분단 45年만에 서독이 동독 을 흡수 합병	
'90.10. 6	中小企業育成 施策	高科技, 高부가가치 산업 구조로 전환하고 경영안정 및 경영기반 확충	· 중소기업자금 增額: 5조원('90年)→5조 5천억원 ('91年)	

년 월 일	경 제 시 책	배 경 및 취 지	주 요 내 용	비 고
'90.10.26	外換 管理制度 改善	금융의 국제화 및 개방화 추진 ※ 「외국환 관리규정」 개정('90.10.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금융기 관의 출연 기한연장: '90.12月末→'95.12月末 ○ 外國換 집중의무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外貨집중의무 猶豫期間 연 장: 20日→ 30日 - 前年度 對外거래실적 1억달 러 이상인 기업에 대해 年 間 1천만달러 이내의 외화 매입 허용 - 만기시까지 期限附 수출 환어음의 직접보유 허용 ○ 해외 外貨보유 제한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합무역상사에 대해 5백만 달러이내의 해외 외화보유 허용(다만 증권 및 부동산 투자는 금지) - 기관투자자의 외화보유한도 확대 · 해외증권업을 허가받은 증 권사: 3천만달러 → 5천만달러 · 국제업무취급 投信社 및 총자산 5조원 초과보험사: 1천만달러 → 3천만달러 ○ 不良기업의 상업어음할인 및 재할인 受惠방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위자료 제출업체에 대한 상업어음 할인금지 및 재할 인 적격업체 자격정지 기한 연장: (6개월 → 1年) - 赤色거래처로 규정된 모든 업체를 상업어음 재할인 적 격업체에서 제외 	

년월일	경제시책	배경 및 취지	주요내용	비고
'90.10.31	그린벨트내 建築規制緩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주택의 증축허용 (35평이내) · 간이 체육시설과 공공시설 건축의 제한적 허용 	
'90.11.10	産業構造 高度化 促進 對策	<p>자동화, 정보화를 통하여 생산, 경영을 최적 관리함으 로써 생산성향상 및 제조업 경쟁력 강화</p> <p>※ '90.7.6 「과학 및 산업 기술 발전 기본계획」에 의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現場기술지도 및 기술정보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500개 중소기업에 대하여 자동화, 정보화 지원 - 자동화, 정보화 지원센터를 주요 工團別로 설치 - 자동화 관련기술의 적극 개발('95년까지 1,800억원 투입) ○ 자동화, 정보화 투자촉진을 위한 금융, 稅制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화 設備금융: '91년중 6,500억원 조성, 운용 - 중소기업 자동화 투자에 대 한 투자세액 공제율 인상: 10% → 15% ○ 자동화, 정보화 인력 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업훈련공단 직업훈련과정 개선 - 학교의 전산교육 강화 ○ 엔지니어링 및 컨설팅산업의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용역업 등록제를 신고 제로 전환 	'90.7.6 관련

년 월 일	경 제 시 책	배 경 및 취 지	주 요 내 용	비 고
'90.11.29	融通어음割引 規制	「상업어음 할인 및 재할인 취급 세칙」 개정('90.11.29)	· 융통어음 할인업체에 대하여 1~3個月間 상업어음 할인 금지 또는 재할인 적격업체 자격 정지	
'90.12.14	北方國家와의 通商要領 告示	東歐圈의 개방으로 北方무 역이 증가 추세에 있으므로 대북방 교역을 효과적이고 질서있게 추진할 필요 ※ '90.12.4 「북방국가와 의 통상에 관한 요령」 고시	○ 對北方교역 事前 신고제 - 러시아 등 7개 공산권 국가 에 대한 1백만달러 이상의 상품수출과 제조업 해외투 자시 事前 신고 ○ 산업설비 수출 승인 - 北方국가에 대한 산업설비 수출은 모두 신고하고 2백만달러 이상인 경우에는 事前승인 의무화	
'90.12.18	稅制改編	소득세법 등 11개 세법의 개정 및 방위세 폐지	○ 소득세법 개정 - 소득세율인하 및 체계조정: 8단계 5.5~60% → 5단계 5~50% - 금융자산소득(10~20%) 및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 ○ 상속세법 개정 - 상속세율 체계 조정: 8단계 6~66% → 5단계 10~55% - 증여세율 체계 조정: 8단계 6~72% → 5단계 15~60% ○ 법인세법 개정 - 법인 종류별로 달리 적용하 던 세율 체계를 한가지로 통일	'91.1.1 시행

년월일	경제시책	배경 및 취지	주요내용	비고
'90.12.29	<p>勤勞者 長期 證券貯蓄制度 導入</p>	<p>「조세감면규제법」상 비과세 대상인 근로자 장기 증권저축제도 도입</p> <p>※ 「근로자 장기증권 저축 업무 규정」 제정 ('90.12.29, 증권관리위원회)</p>	<p>- 종전 · 일반법인: 24~37.5% · 비공개대법인: 24~41.25% · 비영리법인: 24~33.75% - 개정: 모든 법인 20~34%</p> <p>○ 조세감면규제법 개정 - 기술인력개발 및 중소기업 에 대한 稅制지원 확대 - 근로자 장기저축 및 장기증 권저축에 대한 非課稅제도 도입</p> <p>○ 방위세 폐지 - '75.7.16 제정한 방위세 폐지</p> <p>○ 교육세를 永久稅로 전환 - 과세대상 조정 (이자, 배당 소득 제외 등)</p> <p>· 저축대상: 급여액이 年360만 원이내의 모든 근로자 (봉급 생활자)</p> <p>· 저축기간: 3年 이상</p> <p>· 저축방식: 정액적립식, 임의적립식</p>	'91.1.11 시행

년 월 일	경 제 시 책	배 경 및 취 지	주 요 내 용	비 고
'91. 1. 1	外貨貸出制度 改編	그동안 경상수지 흑자관리 목적으로 한국은행 보유 外換을 재원으로 운용하던 外貨대출 중 일부를 폐지하고, 첨단산업, 제조업 및 중소기업의 시설재 수입 등을 지원하기 위해 용자대상과 비율을 조정 ※ '90.12.20 「외화 여수신 업무에 관한 규정」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부 外貨대출 폐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관 조기상환용 외화대출과 수입선 전환 시설재 수입자금용 특별외화대출 폐지 ○ 용자대상 및 용자비율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산대체가 가능한 시설재 수입자금용 용자금지 - 일본으로부터의 시설재 수입은 첨단산업 시설재로 한정 - 제조업 및 중소기업 시설재 수입이 우대받을 수 있도록 용자비율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조업(대기업 : 80%) (중소기업: 100%) · 기 타(대기업 : 60%) (중소기업: 80%) 	
'91. 1. 1	輸出入 規制 緩和	'90.12.27 「'91년도 품목별 수출자율규제 운영방안」 발표 '90.12.28 「수출입 공고」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자율 규제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부진으로 국내업체간 과당 경쟁의 우려가 없는 품목 - 봉제완구의 수출자율규제 폐지 및 신규 참여 허용 - 엘범의 수출거래선 지정제도 폐지 - 철강재 등의 수출자율규제 물량 조정 ○ 수입 자유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나나, 다아아몬드 등 93개 품목(농수산물 76, 공산품 17)의 수입 자유화 · 수입 자유화율: 96.3% → 97.2% 	

년월일	경제시책	배경 및 취지	주요내용	비고
'91. 1. 1	關稅 申告納付 制度 實施	「수입 통관사무처리규정」 개정('91.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완두, 수수 등 9개 농산물의 수입물량 제한 해제 · 통관심사: 수입 면허前에 실시 · 稅額심사: 수입 면허후 1年 이내에 심사 	
'91. 1.12	物價安定 對策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90.8.2)으로 걸프지역 전쟁위기가 고조되고 있어 原油價 및 油類제품 가격상승 우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4분기 물가안정에 주력 · 정부투자기관의 임금인상률을 5~7%로 억제 · 에너지가격 인상으로 에너지 절약 유도 · 물가관리체제 강화 	
'91. 1.14	經濟安定과 成長基盤擴充 對策	<p>걸프지역 전쟁위기 고조로 원유가격 상승이 우려되고 '91년 상반기중 지방의회의원 선거분위기를 틈타 強性 노동운동 세력이 勃起할 가능성</p> <p>한편 기업의 외형적인 팽창에 비해 기술개발 및 구조조정노력이 부족하고 근로자 임금은 상승했으나 근로의욕은 저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안정기반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건비 인상과 물가상승의 악순환 단절 - 통화의 적정관리 (총통화 17~19%) - 생산자금 공급확대 - 집세, 식료품, 대중서비스 요금 등 안정 ○ 부동산 대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동산 투기억제 강화 - 주택건설물량의 조정으로 임금상승 및 資材需給 불균형 방지 ○ 勞使 및 임금안정 유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투자기관과 대기업의 임금안정 선도 -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 	

년 월 일	경 제 시 책	배 경 및 취 지	주 요 내 용	비 고
'91. 1. 15	國民生活과 環境改善 對策	산업화, 도시화에 따라 대도시 교통적체 현상이 심화되고 환경오염이 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비절약 및 저축증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합리적인 소비생활유도 - 소비성 서비스산업 규제 강화 ○ 사회간접자본 확충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송부문 애로 타개 대책으 로 民資활용 및 토지보상 제도 개선 - 농업용 매립지 및 간척지를 공장용지로 전환 - 투자계획 조정을 위하여 「SOC 투자조정위원회」와 「SOC 투자기획단」 설치 ○ 산업인력 需給의 원활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년퇴직자, 부녀자 등 遊休인력 활용 - 工高 및 理工系 대학설립 유도 - 학교 교육체계 개편 ○ 기술개발의 촉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稅制, 금융 등 지원체계 정비 - 産·學·研 連繫 ○ 대도시 교통난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受益者 부담원칙 확대 적용 - 民資동원 방안 강구 ○ 서민 주거생활의 안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資材需給 불균형이 초래되 지 않도록 상업용 건축허가 규제 - 組立式工法 등 인력절감 가능 건축방식 확산 	

년 월 일	경 제 시 책	배 경 및 취 지	주 요 내 용	비 고
'91. 1.17	勤勞者 長期貯蓄制度 實施	근로자의 저축을 증대하기 위하여 세제상 혜택이 대폭 강화된 근로자 장기저축제도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개선 대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기준을 점진적으로 강 화하여 오염물질 배출 규제 ○ 사회복지시책 내실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업알선과 직업훈련 확대 ○ 근로자 장기저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입 대상자: 모든 근로자 - 저축기간: 3年, 5年 - 저축한도: 月 급여액 범위 내에서 최고 30만원 - 금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年: 年 12.5% · 5年: 年 13.0% - 세제혜택: 계약후 3年이상 경과시 이자소득 전액 면제 - 취급기관: 은행, 상호신용 금고, 우체국 ○ 근로자 장기수익증권 저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축기간: 3年~10年 - 금리: 실적배당 - 운용대상 증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채권형: 채권 100% · 주식형: 주식 40%, 채권 50%, 기타 10% - 취급기관: 투자신탁회사 - 가입대상자, 저축한도, 세 제혜택, 이자지급방법 등: 근로자 장기저축과 동일 ○ 근로자 장기 증권저축 제도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0.12.29관련 규정 제정 ('91.1.11허용) 	'90.12.29 관련

년 월 일	경 제 시 책	배 경 및 취 지	주 요 내 용	비 고
'91. 1. 17	<페灣 戰爭>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 ('90. 8. 2) 미국의 이라크 공격 ('91. 1. 17)		'91. 2. 28 終戰
'91. 1. 23	農漁村 對策	우리 농업은 米作 중심의 생산구조로서 농업인력이 高齡化되고 유통구조가 낙후 되어 있으나 UR 등으로 인하 여 對外開放이 불가피한 실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農漁業 구조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과, 배, 쇠고기 등 품목 별 경쟁력 향상대책 마련 - 농지 구입자금 확대: 2,054억원('90) → 2,842억원('91) - 농지소유 上限 완화검토 - 축산진흥기금 3,100억원 지원 ○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산 事前 조절제도(채소류 의 생산, 출하 約定제도) - 農協 등 생산자단체의 유통 기능 강화 - 품목별 등급화, 규격화제도 실시 - 대도시 公營 도매시장 15개 소 건설 등 ○ 農漁家 소득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農工단지 확대: 220→265개 - 다양한 農外所得源 개발 (特産단지, 농어촌관광 휴양단지 조성) - 내고장 으뜸품목운동 전개 ○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어촌 定住 생활권 개발 ('90年 16個面→ '91年 137個面) 	

년월일	경제시책	배경 및 취지	주요내용	비고
'91. 1. 25	高度技術 SW 關稅 減免	「고도기술 소프트웨어 關稅 감면 추천요령 고시」 ('91.1.25)	- 農漁家 子女 학자금 지원 ('90年 188千名→ '91年 208千名) · 특정 연구기관이나 기업체가 연구개발용으로 수입하는 고도기술 소프트웨어에 대해 관세 감면 혜택 부여	
'91. 1. 31	現地 金融制度 改善	국내 외국환은행의 해외점 포를 통한 現地금융 이용 원활화 ※ '91.1.26 「외국환 관리 규정」 개정	○ 용도제한 완화 - 무역 및 건설관련 現地금융 용도의 件別 세부적 규제를 포괄규제로 전환 ○ 韓銀 총채 허가제 폐지 - 종전 5천만달러의 차입 또 는 1억달러이상의 지급보증 시 韓銀 총채의 허가 필요 - 금액에 관계없이 외국환 은 행장의 認證으로 現地금융 차입이 가능토록 완화 ○ 現地금융 한도 확대 - 한도관리 대상 현지금융의 한도 확대 및 사후관리제도 간소화	
'91. 2. 2	物價安定對策	'86년이후 고도성장에 따라 소비수요가 급증하고 노동 생산성을 앞지르는 높은 임금상승 지속	○ 총통화의 안정적 관리 - '91年 1/4분기중 총통화증 가율 17~19% 수준 유지 - 與信금지업종에 포함되는 대중음식점 범위 확대 (건평100평, 대지200평초과 → 건평100평, 대지100평초과)	

년 월 일	경 제 시 책	배 경 및 취 지	주 요 내 용	비 고
'91. 3. 8	上場法人의 海外證券發行 制度 改善	「上場법인의 해외증권 발행에 관한 규정」 개정 ('91.3.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용카드 할부구매 축소 · 기간: 24개월 → 12개월 · 금액: 200만원 → 150만원 ○ 건설경기 과열의 사전방지 - 투기과열 지역내 신규분양 신청은 분양 주택수의 20배數 범위내로 제한 ('94.4.1) ○ 부동산가격 안정 - 基準 임대수입 비율 하향 조정: 7%미만 → 3%미만 ○ 품목별 需給대책 및 물가관리체제의 강화 - 정부보유 일반미 早期방출 및 통일미 放出價 인하 - 소 및 돼지가격 安定帶 설정, 운용 ○ 해외증권발행 가능 법인 요건 변경 - 발행 적격기준에 있어 株價 요건 및 社債평점기준 삭제 - 발행기업의 재무내용 평가 기준 강화 · 신용평가등급, 자기자본비율, 純자산비율, 총자본사 업이익률, 배당률 등 ○ 자금사용용도 명시 - 해외투자 및 사업자금 - 시설재 수입자금 	

년 월 일	경 제 시 책	배 경 및 취 지	주 요 내 용	비 고
'91. 3. 14	製造業 競争力 強化對策	산업인력이 건설, 서비스업 등 非제조업 부문에 치중되고, 기술개발 투자 미흡, 사회간접자본 애로심화 등으로 제조업의 경쟁력이 크게 약화되어 있는 실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o 산업기술력 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조업 분야의 919개 생산 기술 과제를 정부와 민간 공동개발 - '91~'95年間 총 1조 5,500 억원을 기술개발에 투자 · 매년 정부와 민간공동으로 3,100억원씩 투자 o 금융·稅制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산기계 구입자금을 3조8 천억원으로 확대 ('90年, 2조 7천억원) - 계열별로 3개이내 주력업체의 여신한도 관리 제외 등 興信관리제도 개편 - 임시투자세액 控除時限 연장('90年末 → '91年末) - 첨단 시설재에 대하여 관세 감면 - 제조업 및 중소기업을 우대하여 外貨대출 - 중소기업 상업어음 재할인을 70% 적용시한 연장: '91.3月末 → 9月末 o 산업인력 공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5년까지 理工系대학에 16천명 증원 (첨단학과 12천명포함) - '95년까지 전문대학 공업계 정원을 36천명 増員 (每年 9천명) - '95년까지 實業系 학생비율을 50%('91年 32%)로 확대 	

년월일	경제시책	배경 및 취지	주요내용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산직 人力難 해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社内훈련 의무투자비율 상향 조정: 임금총액의 0.48% → 0.6%('92年) - 직업훈련 의무대상 사업체 확대: 常時근로자 200人 以上 → 150人以上('92年) - 전문직업훈련원 10개소 건립 ○ 工場用地 공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산, 대불 공업단지 등에서 총 827만평의 工團용지 공급 - 20개 工團 1,900만평 신규 지정 - 석문, 남포지구 干拓매립지 1,070만평을 공장용지로 전환 ○ 과학기술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연기관 보유기술 企業化 - 韓·蘇 기술협력을 통한 기술개발 지원 	
'91. 3.26	調達物資 備蓄擴大	국제 원자재 비축 중심의 조달물자 비축 기능을 국내 물가안정 및 수급조절기능으로 전환	· 건축자재 비축확대: 시멘트 1백만톤(308억원), 철근 10만톤(232억원)	
'91. 3.26	<基礎自治團體 議會議員 選舉>	지방자치제도 30年만에 부활	· 총 4,304명의 市·郡·區 의원 선출	'91.6.20 시도의회 의원선거

년 월 일	경 제 시 책	배 경 및 취 지	주 요 내 용	비 고
'91. 4. 1	輸入自由化 計劃 ('92 ~ '94年)	국가간 국제수지 불균형 심화로 高潮되고 있는 통상 마찰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시장개방 확대	o '92 ~ '94年 수입자유화 계획 - 총 133개 품목을 수입자유 화 · 농·축·수산물 131개, 공산품 2개 품목 등 - 年度別 수입자유화율 목표 · '91年: 97.2% · '92年: 97.7% · '93年: 98.1% · '94年: 98.5%	
'91. 4. 2	工場自動化用 物品 關稅 減免	공장자동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과 품질개선 도모	· 공장자동화용 기계류 176개 품목에 대해 관세의 60%를 감면 · 다만, 實行관세율이 10%미만 인 품목은 관세감면 대상에 서 제외	
'91. 4. 6	不動産 擔保 制度 改善	중소기업의 短期운전자금 차입시 담보부족으로 인한 어려움 완화	· 중소기업 운전자금대출 및 지급보증시 제3자 名義 부동 산 담보취득 제한 완화 · 現地법인에 대한 與信취급시 母企業名義 국내부동산의 담 보취득 허용	
'91. 4. 10	<KAF 設立>	Korea Asia Fund	· 자본금: 100백만원 · 上場증권회사: 홍콩, 런던	
'91. 4. 10	都市零細民 住居環境改善 事業		o 주거환경 개선지구 지정 - 도시영세민 거주 노후, 불 량주택 밀집지역 131개지구	
'91. 4. 10	南北 直交易 承認	남북분단후 최초의 直交易	· 남한: 쌀 북한: 무연탄, 시멘트	

년월일	경제시책	배경 및 취지	주요내용	비고
'91. 4. 15	住宅分讓價 原價 連動制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용면적 18평이하 주택 분양가 8.8%인상 · 전용면적 18평 초과 주택: 규모 및 총수에 따라 12.4% ~ 13.1% 차등 인상률 적용 	
'91. 4. 16	海外建設 進出 指定制度 改善	해외건설 신규업체 또는 未지정업체의 해외진출 기회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건설 신규업체 또는 未지정업체의 受注허용 요건 - 수의계약이나 단독입찰초청 - 프랜차이즈출에 따른 건설공사 - 受注전략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91. 4. 17	外國 保險社 國內駐在 事務所 設置 許可	보험시장 개방시책의 일환	· 영국의 Eagle Star보험사 및 Willis Faber & Dumas 보험중계사	
'91. 4. 23	核心 生産技術 開發	제조업 경쟁력 강화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핵심 생산기술 개발과제 919개 선정 · '91년중 정부와 민간이 각각 1,550억원씩 투자 	
'91. 5. 3	建設投資 動向 診斷과 建設 景氣鎮靜 對策 (5·3 對策)	건설경기 과열로 건축자재 需給 및 人力難 惹起 우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 및 정부투자기관 건설공사 공기 연장 - 정부청사 신축사업 예산 배정 유보(837억원) - 정부투자기관 공사는 '91.9 月末까지 중단 - 지방자치단체 추진 사업중 時急을 要하지 않는 사업은 '91.9月 이후로 연기 	

년 월 일	경 제 시 책	배 경 및 취 지	주 요 내 용	비 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업용건물 건축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린생활시설(상점, 목욕탕, 약국 등) 중 200평(660㎡) 이상은 '91.9月末까지 건축허가 제한 - 백화점, 쇼핑센터 등 대규모 소매점은 '91.12月末(당초 '91.6月末)까지 건축허가 제한 연장 - 업무용시설중 6층이상 또는 연면적 1,500평(5,000㎡) 이상은 '91.9月末까지 건축허가 제한 - 숙박시설은 '91.12月末까지 건축허가 제한 - 사우나 등 위락시설은 인력난 해소시까지 건축허가 제한 ○ 주택건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용면적 50평(분양면적 63~65평)이상 빌라 및 연립주택은 '91.12月末까지 건축허가 제한 - 未분양 발생 지방도시의 민영아파트 착공, 분양은 '91.9月末 이후로 연기 ○ 건축자재 需給 원활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1년 상반기중 240만톤의 시멘트 수입 - 시멘트 재고 110만톤('91. 1/4분기 기준)이상을 '91年末까지 계속 유지 - 인천항의 시멘트專用船席 확대(6船席 → 9船席) 	

년월일	경제시책	배경 및 취지	주요내용	비고
'91. 5. 6	投信社 經營改善對策	'89.12.12 「證市안정화 대책」에 따른 投信社의 은 행차입금 상환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멘트 專用철도차량증가: 920량 → 1,100량/日 - 레미콘업체의 수입시멘트 사용 비율(10%) 준수 - 시멘트대리점 등에 대한 재 고조사 및 불공정거래행위 조사 - 각부처 합동으로 주요 건축 자재 需給상황 점검 <p>○ 投信社에 대한 자금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大 투신사(대한, 한국, 국 민)에 2조 2,564억원 지원 (원금 2조 892억원, 미지급 이자 1,672억원) · 이자: 年利 3% · 대출시한: '91年末 <p>○ 投信社의 경영개선 노력촉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허용 주식형 수익증권 은 還賣가 제한되는 單位型 에 국한 - 還賣자금 부족시 차입금대 신 보유증권 매각을 통해 자금 조달 - 점포, 인원의 현수준 유지 및 부동산 신규취득 억제 	
'91. 5.13	輸入先 多邊化 品目調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輸入先 다변화 품목축소: 268개 → 258개 품목 (30개 해제, 20개 신규지정) 	
'91. 5.17	畜産物 價格 安定帶 設定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큰 숫소 産地가격: 1,500 ~ 1,900천원/수 	

년월일	경제시책	배경 및 취지	주요내용	비고
'91. 6. 1	金融機關의 公共資金 運用 制度	금융기관이 각종 年基金 자 금을 경쟁적으로 유치함으로 써 與受信 금리가 상승하는 현상을 방지하고, 국공채의 원활한 매각 도모 ※ '91.5.27 「금융기관의 공공자금 운용지침」 제정(재무부) '91.5.31 「증권회사의 공공자금 운용지침」 제정(증권관리위원회)	· 돼지 産地가격: 100 ~ 145천원/수 ○ 공공자금 운용 금융기관 - 은행(신탁계정)과 단자사, 綜金社, 투신사, 生保社 등 계 2금융권 - 증권회사 ○ 운용대상 공공자금 - 국민연금기금, 공무원연금 기금 등 7개 기금 ○ 운용방법 - 은행 등 금융기관: 운용대 상 기금으로부터 신규예탁 받는 자금중 30~80%를 산 업금융채권, 중소기업 금융 채권, 통안증권, 국공채 등 매입에 사용 - 증권회사: 보유채권, BMF, CD, RP 등을 운용대상기금 에 매각하여 수취한 자금을 국공채 등 매입에 사용	'93.5.1 폐지
'91. 6. 1	與信管理制度 改善	제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금융 자유화, 개방화 추세에 부응하기 위한 목적 ※ '91.4.4 「금융기관 여신 운용 규정」 개정 '91.4.8 「계열기업군에 대한 여신관리 시행세 칙」 개정	○ 여신관리대상 계열기업군 선정 기준 변경 - 선정기준: 총여신 1,500억 원이상 → 대출금 기준 상 위 50대 계열 기업군(선정 기준에서 지급보증을 제외) ○ 주력업체는 여신한도 관리대 상에서 제외 - 주거래 은행은 상위 30대계 열 기업군별로 3개이내의 업체를 주력업체로 선정	

년월일	경제시책	배경 및 취지	주요내용	비고
'91. 6. 1	信用卡 利用制限	'91.4.25 「신용카드 이용 한도 하향조정 및 할부기간 단축 계획」 발표(재무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만 주력업체중 '90.5.8 「부동산 투기억제 대책」에 따라 비업무용으로 판정된 부동산 보유 기업체는 여신관리 대상에 포함 · 신용카드 이용한도금액 하향 조정 (일반구매: 300 → 200만원) (할부구매: 150 → 100만원) · 할부기간 단축: 24개월 → 12개월 	
'91. 6. 7	工業立地開發 指針	'91.6.5 「공업입지 개발지 침」 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工團 전체 면적의 2/3이상을 사용할 경우 당해 공단의 일괄 개발 가능 · 개별 공장 입지에 대한 농지 편입 허용면적 확대: 50% → 70% · 단지안의 공공녹지 조성을 의무화 · 水産자원 보전지역 등에서의 공장건설 제한 	
'91. 6.13	製造業 競爭力 強化를 위한 稅制支援 對策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및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91.6.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o 특별소비세율 인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캠코더(27.5%→2.5%)등 4개 품목 첨단 전자제품의 특별 소비세 인하('91.7.1시행) o 준비금 損費 인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발, 가전제품, 전자교환기, 의류 등의 해외시장개척 준비금, 수출손실준비금을 損費로 인정 ('91.6.28시행) 	

년 월 일	경 제 시 책	배 경 및 취 지	주 요 내 용	비 고
'91. 6. 17	短資會社 機能調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행어음 폐지 및 CMA발행한도 축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2年末까지 점진적으로 시행하되 '92年 하반기에 집중 처리 ○ 어음仲介기능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할인매출방식에서 순수증개방식으로 전환 	
'91. 6. 20	〈市道議會 議員選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 866명의 市道の의원 선출 	'91.3.26 시군구의의원 선거
'91. 7. 1	外換市場 活性化 (1段階 措置)	환율의 가격기능을 제고하고 外換시장 규모 확대를 도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外換거래 實需要 원칙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수요증빙 면제대상 外貨 예금범위 확대 - 은행간 자금移替 現物換거래의 실수요증빙절차 간소화 - 先物換거래에 선행하는 현물환거래 실수요증빙 면제 - 先物換거래시 실수요 증빙事後제출 허용범위 확대 ○ 외국환은행의 현물환 보유의무 단계적 폐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前月매입 外換平殘의 2%에서 1%로 축소('91.7.1) - 현물환 보유의무 폐지 ('92.1.1) ○ 換率의 日日변동 허용폭 확대('91.9.1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은행간 환율 일일변동폭 · 매매기준율의 $\pm 0.4\%$에서 $\pm 0.6\%$로 확대 	

년 월 일	경 제 시 책	배 경 및 취 지	주 요 내 용	비 고
'91. 7. 1	企業어음 信用評價制度 改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美달러貨에 대한 對顧客 환을 변동폭 · 매매기준율의 ±0.4%에서 ±0.6%로 확대 ○ 신용평가 의무화 - 외부감사 대상 법인으로 年 매출액 100억원이상 기업 또는 전년도 어음할인 (平殘) 50억원 이상 기업 ○ 無담보 대출 규제 - 신용도가 낮은 기업어음의 무담보 대출 규제 	'91.5.2 방안결정
'91. 7. 1	輸入商品 原產地 表示 制度 導入	<p>국내소비자 보호와 무역거 래질서 확립 목적</p> <p>※ '91.5.15 「대외무역관리 규정」 개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原產地 표시 의무화 대상품목 - 총 250개품목: 섬유류(50), 음식료품(8), 가전제품(44) 생활용품(54) 등 ○ 原產地 판정기준 - 완전생산기준: 당해물품의 전부를 생산한 국가를 원산지로 지정 - 실질변경기준: 원칙적으로 제품생산국가를 원산지로 인정 ○ 原產地 표시의무 면제 - 外貨획득 또는 自家소비 목적 	
'91. 7. 9	建設投資 適正化 및	물가안정기반 유지를 위해 建資材 및 人力需給 안정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파트 분양 연기 - '91年 하반기와 '92年 분양 	

년 월 일	경 제 시 책	배 경 및 취 지	주 요 내 용	비 고
	新都市建設 安全對策	유도하고 부실공사 및 안전 사고 방지	<p>예정이던 신도시 아파트중 각각 3만 가구의 분양을 1年씩 연기</p> <p>○ 건축허가 제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용면적 40평이상 연립주 택과 다세대 다가구주택의 신축을 '92.6月까지 不許 - 판매시설, 숙박시설, 위락 시설 등 상업용 건물에 대 한 건축규제를 '92.6月까지 연장(당초 '91年末) 	
'91. 7. 23	어음仲介 活性化		<p>○ 無보증 어음 취급 허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소재 단자회사(8개사) 가 신용평가 B급 이상 기업 의 무보증어음을 취급할 수 있도록 허용 <p>○ 대상 무보증 어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액면금액 1억원이상, 만기 60~180日 - 금리는 발행기업과 投資者 間 자율 결정 	
'91. 7. 28	土地去來 許可制 擴大 實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지거래허가 대상 지역 추 가 지정: 경북 고령郡, 달성 郡 등 3개郡 · 총 토지거래 허가지역: 41,025㎢(全國土의 41.3%) 	
'91. 8. 23	企業公開制度 改善	기업공개요건 및 主幹社의 사후관리 강화 등을 통해 공개기업의 不實化 예방	<p>○ 기업공개요건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납입자본금 상향조정 (20억원이상 → 30억원이상) - 매출액요건 신설 등 	

년월일	경제시책	배경 및 취지	주요내용	비고
'91. 9. 1	外換管理制度改善	<p>※ 「유가증권인수업무에 관한 규정」 개정 ('91.8.23)</p> <p>'91.7.1 「外換시장 활성화 조치」에 따라 「외국환 관리규정」 개정 ('91.8.30)</p>	<p>○ 공개기업에 대한 主幹社의 사후관리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개후 2年間 기업경영 및 자금조달 등을 점검 또는 협의 <p>○ 환율 日日변동폭 확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銀行間 환율 日日변동폭 확대: $\pm 0.4\% \rightarrow \pm 0.6\%$ <p>○ 경상 外換거래 자유화 확대 ('91.9.16 시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역외 경상거래의 원貨표시 계약체결 허용 - 수출 선수금 영수한도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견기업: 전년도 수출실적의 3% \rightarrow 5% · 중소기업: 6% \rightarrow 10% - 단순 송금방식 수출대금 영수한도 확대: 건당 5만달러 \rightarrow 10만달러 - 포괄무역외 지급한도 확대: 전년도 수출실적의 1% \rightarrow 3% <p>○ 자본거래 규제완화 ('91.9.16시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역관련 現地 금융확대: 전년도 수출실적의 30~40% \rightarrow 50% - 해외발행 CB 등에 의한 전환 주식 매각대금의 상장 주식 재투자 허용 - 기관투자자의 외국 政府債에 대한 투자 허용 	'90.3.2 관련 '92.7.1 추가조치

년 월 일	경 제 시 책	배 경 및 취 지	주 요 내 용	비 고
'91. 9. 1	揮發油 價格 自由化 및 精油社의 流通參與 許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휘발유, 등유, 납사 등의 판매가격 자유화 · 경유, BC油 등은 가격告示 · 정유사의 유통시장 참여허용 	
'91. 9. 17	<南北韓 同時 UN加入>	남북한 동시가입안의 UN안 전보장이사회 통과('91.8.9)		
'91. 9. 30	外國人의 株式 賣買去來 規程 制定	주식시장 개방('92.1.3)을 앞두고 외국인의 국내주식 매매거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증권관리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의 종목별 주식투자 한도 설정 · 외국인의 주식취득한도 관리 방법 규정 · 외국인에 대한 증권회사의 신용供與 금지 	'91.11.22 개정
'91.10. 2	<6大都市 宅地 電算化>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大都市 택지 총 3,034천필 지(소유자 2,699천명)에 대 한 전산화 완료 	
'91.10.10	關稅減免 對象 工場自動化 物品 指定告示	공장자동화를 통한 生産性 향상 및 품질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관세감면 대상에 192개 물품 추가(총 363개) · 관세 감면율: 기본관세 13% 의 60% 수준 	
'91.10.31	稅金優待貯蓄 加入限度 擴大	「조세감면 규제법」 시행령 개정('91.10.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자 長期저축: 月 30만원 → 60만원 · 근로자 長期증권저축: 年間 360만원 → 600만원 · 少額가계저축, 少額채권저축: 800만원 → 1,200만원 · 신탁형少額가계저축: 1,000만원 → 1,500만원 	

년 월 일	경 제 시 책	배 경 및 취 지	주 요 내 용	비 고
'91.11.11	中小企業 資金 支援對策	중소기업 短期운전자금 지원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에 대한 무역금융單價 인상: 600원→650원/달러 · 중소기업 구조조정 기금을 700억원 추가 지원 · 운전자금 대출에 대한 제3자 담보제한을 일부 완화 	
'91.11.18	輸出自由地域 活性化	<p>선진국의 기술이전 기피업종을 수출자유지역에 적극 유치함으로써 경쟁력 향상을 도모</p> <p>※ 「수출자유지역 물품의 域外 수리 加工 승인 요령」 개정('91.11.18)</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자유지역 入住허용 업종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전 식품가공, 고무 등 21개 업종에서 전기전자, 정밀기계 등 첨단산업관련 10개 업종으로 변경 ○ 域外加工 허용범위와 국내 搬入 허용량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域外加工 허용범위: 납땜기기류, 소형프레스류 및 운반이 용이한 단순기기 - 국내반입 허용량: 전년도 수출물량의 50%이내 	
'91.11.21	第 1段階 金利 自由化	<p>자금의 효율적 배분을 도모하고 금융기관간 경쟁과 경영 효율화 촉진</p> <p>또한 변칙적 금융거래에 따른 금리指標의 왜곡을 시정하고 금융시장 개방 및 금융국제화에 대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유화대상 與信금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좌대출 - 상업어음할인(韓銀 재할인 대상 제외) - 기업어음 및 무역어음 할인 ○ 자유화대상 受信금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D(5천만원, 91~180日) - 巨額상업어음 및 무역어음 매출(3천만원, 60일이상) - 巨額 RP(5천만원이상) - 3年만기 정기예금 - 巨額 RP(5천만원이상) - 3年만기 정기예금 	'93.11.1 제 2단계 금리 자유화

년월일	경제시책	배경 및 취지	주요내용	비고
'91.11.22	株式市場開放 關聯事項 補完	「외국인의 주식 매매 거래 등에 관한 규정」 개정 ('91.11.22 증권관리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투자 등록대상 외국인의 범 위 확대: 재투자 외국인 → 모든 외국인 既투자 허용 외국인에 대하 여 주식취득한도(종목당 3%) 의 적용을 당분간 배제 여타 외국인 투자관련 규정 을 폐지하고 同 내용을 「외 국인의 주식매매 거래 등에 관한 규정」에서 흡수 	'91.9.30 관련
'91.11.22	外國投資專用 會社의 債券 賣買限度 設定	「외국투자전용회사의 유가 증권 거래에 관한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채권거래 관 련사항을 규정하는 「외국투 자전용회사의 채권매매 거래 에 관한 건」 제정 ('91.11.22 증권관리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국투자전용회사의 채권투 자한도: 당해 투자전용회사 순자산액의 10%이내 외국투자전용회사의 채권장 외거래 한도: 월간 채권거래 대금 총액(RP제외) 의 3%이내 	
'91.11.22	會計監査基準 制定	증권관리위원회 제정 ('91.11.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부 감사인의 자격요건 및 독립성 명문화 감사위험 개념도입 등 감사 실시 과정의 체계화 감사의견: 적정, 한정, 부적 정, 의견 거절 	
'91.12. 9	<ILO 加入>	국제노동기구		
'91.12.18	外貨搬出入 制度 改善	국제수지 적자 확대 등 여건 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外貨搬入제한 완화 - 외국환은행 등 비거주자로 부터의 외환매입한도 폐지 (종전 10만달러) 	

년월일	경제시책	배경 및 취지	주요내용	비고
'91.12.25	<蘇聯 崩壞>	러시아, 우크라이나, 슬라브 등의 소련연방 해체 및 독립국가연합 결성 합의 ('91.1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만 5천달러 이상 반입시의 등록 및 국세청 통보제는 그대로 유지 o 外貨 搬出 사후관리 강화 - 개인 對外 송금실적 국세청 통보 대상확대: 年間 1만5천달러 이상 → 1만달러 이상 · 고르바초프 소련대통령 사임 · 69年間の 소련연방체제 종식 	
'91.12.27	印紙稅法 改定	'76年이래 不變인 인지세의 과세대상 조정 및 세액 현실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세대상 문서축소 (27種 → 19種) · 稅額 현실화: 차등정액세 조정 (14단계 → 8단계) 	
'91.12.27	外國人의 株式取得 例外 限度 設定	「외국인의 주식취득 예외 한도 적용에 관한 건」 제정 ('91.12.27 증권관리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o 종목별 10% 초과한도 적용대상 및 한도 - 대상기업: 「외자도입법」상의 외국인 투자기업 또는 해외증권발행기업 - 예외한도: 당해기업 발행주식 총수의 25%미만 o 8%한도 적용대상 - 「증권거래법」상의 공공적 법인으로서 상장법인 	

년월일	경제시책	배경 및 취지	주요내용	비고
'91.12.27	豫算會計法 改定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회계 歲計 잉여금을 양곡 증권 원리금 상환에 사용 가능 	
'91.12.28	輸出入 自由化 促進	「수출입 공고」 개정 ('91.12.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 자유화율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돼지, 명태 등 43개 농수축산 품목 수입 자유화 - 수입 자유화율: 97.2% → 97.7% ○ 수출제한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벤졸, 톨루엔 등 5개 품목 수출 자유화 - 가죽장갑 등 8개 품목의 수출 자율규제 해제 - 전자레인지, 컬러 TV의 對美 수출자율규제 해제 	'92.1.1 시행
'91.12.31	基金管理 制度 整備	「기금관리 기본법」 제정 ('91.12.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금관리 적용대상기금: 정부관리기금 및 공공성이 강한 민간관리 기금 · 기금운용원칙: 기금자금을 의한 주식 및 부동산 매입 원칙적 금지 · 기금운용심의회 설치 	

년월일	경제시책	배경 및 취지	주요내용	비고
'92. 1. 3	證券市場 開放	「외국인의 주식매매 거래 등에 관한 규정(91.9.30)」에 근거 ※ '91.11.30 주식시장개방 방침 확정 '91.12.2부터 외국인 사전 투자 등록 허용	○ 모든 상장주식에 대하여 외국인 투자 허용 - 개별 법령에 따른 투자제한 품목제외 ○ 종목별 및 1人當 限度 - 종목별 한도: 당해주식 발행 총수의 10% - 1人當 한도: 당해주식 발행 총수의 3%	
'92. 1. 9	中小企業 貸出 義務 比率 上向 調整	중소기업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폐업 및 부도가 크게 증가	· 市中은행의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의무비율: 35% → 45% · 적용시기: '92.2月 貸出分부터 적용하되 '92.11月末까지는 40%로 잠정운용	
'92. 1. 10	貿易어음 活性化 方案	수출증진을 위한 금융지원	○ CMA운용을 통한 무역어음 활성화 - CMA운용자산증 무역어음 편입 의무율 인상: 10%→20% - CMA예수금 한도 계산에서 무역어음 제외 ○ 여신규제 완화 - 短資社 및 綜金社의 여신한도 규제대상 무역어음의 추가 인수 및 할인허용 ○ 무역어음할인 금리인하 유도 - 무역어음을 A급어음에 준하여 할인	
'92. 1. 14	經濟安定과 産業 競爭力 提高 對策	지난 4年間 年평균 9%의 고도성장 과정에서 부동산 투기, 인력난과 高임금 등으	○ 통화의 안정적 운용 - 총통화 증가율을 18.5% 內外에서 운용	

년 월 일	경 제 시 책	배 경 및 취 지	주 요 내 용	비 고
		로 인플레이션상 및 산업 경쟁력 약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리의 下向 안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화를 年間으로는 안정적으로 공급하되 月別로는 신축적으로 운용 - 기업의 증복, 과잉투자 등 不要不急한 자금수요 억제 ○ 자금흐름의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은행의 제조업 대출 지도 비율 제고 - 제 2금융권의 제조업 대출 지도 비율 설정 ○ 저축증대 및 부동산 투기 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금이 면제되는 農·水·畜協과 새마을금고 등의 少額 저축한도 인상 (예탁금 1천만원→2천만원) - '91.5.3「건설경기 진정대책」에 따라 비업무용 부동산 早期 매각 추진 ○ 물가 및 임금안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필품가격 및 서비스요금이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안정되도록 집중관리 - 고위 공직자, 국영기업 임원의 봉급을 전년 수준에서 동결 - 정부투자기관 및 출연기관의 임금인상률을 총액기준 5%이내로 안정 - 민간 대기업과 금융기관 등 高임금 부문의 임금인상률을 총액기준 5% 수준에서 안정되도록 각종지원 및 규 	

년 월 일	경 제 시 책	배 경 및 취 지	주 요 내 용	비 고
'92. 1. 17	施設材 輸入 抑制	不要不急한 시설재 수입수 요 억제를 통하여 국제수지 개선 및 제조업의 국제경쟁 력 강화 ※ 「外貨 與受信 업무에 관한 규정」 개정 ('92.1.16)	제조차 병행(임금인상률 5% 이하 기업은 회사채 발행이 나 정책자금 지원시 우대) ○ 기술개발 및 설비투자지원 - 제조업부문 설비투자 18조 원 지원('91年 16조원) - 임시투자세액 공제時限을 '92.6月까지 연장 ○ 수출산업 지원 - 무역금융 지원대상 非계열 대기업 범위 확대: 年間 수 출실적 5천만달러 이하 → 1억달러 이하 ○ 중소기업 지원 - 중소기업 신용보증지원 확대('91年 8조원 → '92年 10조원) ○ 시설재 수입자금 용자대상 업종 제한 - 시설재수입 용자대상 업종 · 수출산업 · 수입대체산업 · 첨단기술산업 · 방위산업 ○ 시설재 수입 용자비율 및 기간 조정 - 용자비율조정(제조업) · 대 기 업: 60% → 50% · 중 소 기 업: 90% → 70% - 용자기간단축: 10年이내 → 8年이내	

년월일	경제시책	배경 및 취지	주요내용	비고
'92. 1. 25	신발産業 合理化 計劃	신발산업계의 과당 경쟁방지, 노후시설 근대화, 부품산업 육성기반 구축 등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발산업 합리화 지정시기: '92.3.1부터 3年間 · 지원규모: 2천억원 ('92年 7백억원) 	
'92. 2. 1	系列企業群 與信管理 強化	경제력이 소수 기업집단에 과다하게 집중되는 현상을 시정 ※ 「계열기업군에 대한 여신관리 시행세칙」 개정 ('92.1.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0대 계열기업군의 신규업종 진출시 自敎의무 강화 · 30대 계열 소속기업체의 대여금 및 假支給金에 대한 규제 강화 · 緊急貸를 과다하게 이용하거나 재무구조가 현저히 약화된 계열기업군에 대한 여신관리 강화 	
'92. 2. 10	輸入農産物 原産地表示制	수입품의 무분별한 국산품 둔갑을 방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종 포장단위에 生産國의 국적을 표시 · 원산지 표시 대상: 밀가루, 메주, 당면 등 85개 품목 	'92.4.1 시행
'92. 2. 15	不動産 投機 抑制 對策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동산 투기 단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동산투기 대책 본부를 설치하여 수시, 정기, 특별 단속 실시 ○ 주택분양질서 확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지거래 허가제 및 주택電算網의 內實있는 운영 	
'92. 2. 15	短資社의 企業어음 割引 金利體系 變更	단기금융시장 금리의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으므로, 이러한 금리안정 추세의 정착을 도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음할인 기간별 차등 금리 체계 채택(단자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 기업어음 할인금리 체계를 기업 신용도에 따라 차등화(A, B, C 등급) 	

년 월 일	경 제 시 책	배 경 및 취 지	주 요 내 용	비 고
'92. 2. 20	住宅建設物量 割當制	주택건설물량의 시기적 지 역적 편중으로 인한 資材難 및 人力難 사전예방 목적	· 변경: 자율적으로 결정한 기준금리(Prime Rate)에 연동되는 상한 금리를 어음 할인 기간별로 정하고 同 범위내에서 금리운용 · 기준금리결정: 콜금리, CD 등 實勢금리 및 자금시장 등을 감안하여 자율 결정	
'92. 2. 21	金融機關의 與信 禁止部門 擴大	금융자금이 생산부문으로 흐르도록 자금흐름 개선목적	o 여신 금지대상 확대 - 주택: 세대당 51.5평(170㎡) 초과 → 30.3평(100㎡)초과 - 대중음식점: 건평 또는 대지 100평(330㎡) 초과업소 → 건평 30.3평(100㎡) 또는 대지 100평초과 - 酒店: 모든 주점으로 확대 (현재 대포집, 선술집, 까 페 등 간이주점과 외국인 專用 유흥음식점은 제외)	
'92. 2. 25	短資社 等에 製造業 貸出 指導比率 設定	금융자금이 생산부문으로 흐르도록 자금흐름을 개선하 기 위하여 短資社 등 제 2급	o 여신금지 대상 신규지정 - 오피스텔, 골프장, 스키장 및 유원지 - 전자오락실 및 당구장 운영 업 · 서울소재 短資社(綜金社 포 함): 어음할인 잔액의 63% 이상을 제조업체에 운용	

년 월 일	경 제 시 책	배 경 및 취 지	주 요 내 용	비 고
'92. 2. 25	輸出關聯 金融制度改編	<p>용권에 대하여 제조업 지원 지도비율 제도 운용</p> <p>제1차 「무역애로타개 합동 회의('92.1.27)」 시 업계 건의사항에 대한 정부조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소재 短資社: 어음할인 잔액의 52% 이상을 제조 업체에 운용 ○ 무역금융대상 非系列 大企業 범위 확대 금융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 전년도 수출실적 1억 달러 이하 비계열 대기업 - 변경: 모든 비계열 대기업 · 지원한도: 年間 수출실적 1억달러 해당분 ○ 무역어음 할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D 발행금액의 10% 이상을 무역어음 할인에 운용 - 종합상사 등 무역상사 발행 무역어음을 은행할인 대상 에 포함(현재 수출품 생산 업체 발행 무역어음만을 은행 할인) ○ 종합상사 기능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합상사가 수출 유망 중소 기업에 투자시 自救義務를 기준액의 1배로 완화 (3배 부과 원칙) - 수출업체가 종합상사 등 원 자재 유통업체로부터 원자 재 구매시 원자재 금융지원 (현재 생산업체로부터 직 접 구매 또는 수입시에만 원자재 금융 지원) ○ 관세법상 담보물 인정 약속 어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정 신용평가 등급이상 업 체가 보증하는 약속어음을 담보물로 이용 	'92. 4. 1 시행

년 월 일	경 제 시 책	배 경 및 취 지	주 요 내 용	비 고
'92. 2. 27	連結財務諸表 作成義務化	연결재무제표로써 지배· 종속회사 전체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 파악 가능 그러므로 회계조작을 방지 할 수 있으므로 기업의 건전 경영 풍토를 조성하고 자본 시장 발전에도 기여	○ 연결재무제표 작성 의무화 대상기업 - 上場회사인 지배회사 ※ 향후 2단계로 非上場회사 를 포함 ○ 시행시기 - '92. 4. 1이후 시작하는 회계 년도분	
'92. 3. 5	尖端技術設備 投資稅額 控除 制度		· 첨단기술 설비투자 금액의 10% 상당액을 납부할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 (外産기자재의 경우 투자금 액의 3% 상당액)	
'92. 3. 6	地方銀行株式 同一人 所有 限度 新設	현재 동일인의 은행주식 소 유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8%이하로 제한하나, 지방은행 주식소유는 예외로 인정 ※ 「은행법 시행령」 개정 ('92. 3. 6)	· 동일인의 지방은행 주식소유 를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 수의 15%이하로 제한 · 한도초과 소유주식의 정리를 위하여 3年間の 猶豫期間 인정	
'92. 3. 9	建築許可制限 措置 延長		· 수도권 및 인구 30만명이상 도시에 적용했던 건축허가 제한기간을 '92. 6月末까지 연장(당초 '92. 3月末) ※ 건축허가 제한 대상: 공공용을 제외한 업무시설 과 200평 이상의 근린생활 시설	

년월일	경제시책	배경 및 취지	주요내용	비고
'92. 3. 10	地域制限立札 限度額 上向調整	지방 중소기업체의 정부 發注공사에 대한 受注기회를 확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지역제한 경쟁입찰 한도액 상향조정: 15억원미만 → 20억원미만	
'92. 3. 13	代替決濟會社 預託株式의 議決權 行事	「대체 결제회사 명의 예탁 주식의 의결권 행사 규정」 제정 ('92. 3. 13 증권관리위원회)	○ 의결권 행사 가능주식 - 실질주주가 대체결제회사에 예탁하여 名義改書한 주식 - 단 無議決權附 주식 및 의 국인소유 주식 제외 ○ 의결권 행사 방법 - 주주총회참석 주식수중 대 체결제회사가 행사할 주식 수를 제외한 주식수의 贊· 反 비율대로 의결권을 행사	
'92. 3. 18	中小企業 支援 擴大 方案		○ 지원대상기업 - 제조업 또는 제조업 관련 업종중 경쟁력이 있는 중소 기업 ○ 지원방법 - '92年 상반기중 2,500억원 지원 - 금융기관 자금 지원액의 50%를 韓銀에서 지원 ○ 중소기업에 대한 상업어음 할인 우대 - 재할인대상 상업어음의 最長期間: 90日 → 120日	
'92. 3. 20	農水産業者 信用保證支援 強化		· 보증지원 확대('92年): 8천억원 → 1조원 · 保證料率(대출기간3年以上): 0.3%	

년 월 일	경제시책	배경 및 취지	주요내용	비고
'92. 4. 4	消費財 輸入 抑制를 위한 調整關稅	소비재 수입이 급증하여 무역수지가 악화되고 농어민 과 중소기업에 피해 야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정관세 조치 대상물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신규개발 품목중 일시 적 보호 필요 품목 · 스위치 점검용 크래드메탈 등 - 수입급증으로 국내 산업피 해 물품 · 고사리, 꽃감, 도토리, 도 미 등 농수산물 · 인조숯, 면타올, 이수시개 등 중소기업 제품 ○ 관세율 수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관세율에 國內外 가격 차를 감안한 긴급 관세율 (최고 40%)추가 	
'92. 4. 24	海外 證券發行 制度 改善	'92.1.3부터 외국인 직접 주식투자가 허용되는 등 국 내 자본시장이 본격적으로 개방 이에 따라 해외증권 발행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우리 上場기업의 해외직접 금융 조달의 원활화 도모 ※ 「해외 증권발행 규정」 개정 ('92. 4. 24 증권관리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행 프리미엄 요건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轉換社債의 轉換價額 및 新株引受權附 사채의 행사 가격 완화 · 기준 株價의 105%이상 → 100%이상 ○ 發行限度 株式數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행주식 총수의 15%에서 既발행 해외증권 증 취득 가능분을 差減 ○ 제도보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열증권회사의 主幹社 참 여 제한 - 국내 증권회사의 主幹社 참 여 明文化 	
'92. 5. 1	先導 養畜農家 育成事業 支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先導養畜農家を 선발(310명) 하여 420억원 지원 	

년 월 일	경 제 시 책	배 경 및 취 지	주 요 내 용	비 고
'92. 5. 2	外國人投資 및 技術導入 活性化 方案	<p>'80年代 후반이후 노사분규 심화 및 노동비용 상승, 부동산 가격상승에 따른 공장 부지 확보난</p> <p>금융자금 調達上의 제약 등으로 인하여 외국인투자 감소 추세</p>	<p>○ 외국인 투자 허용 업종확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투자 자유화율: 80.7% → 82.8% - 금지 및 제한업종을 자유화 ('92年 하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만시설운영, 養苗, 伐木, 酒類도매, 무역仲介, 사료도매 등 - 일정기준 마련후 금지 및 제한업종을 제한적으로 認可 · 무선전신전화, 건설용모래 채취, 화장품 소매 <p>○ 외국인 투자 규제 완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기업과의 합작 의무 폐지: 식물제조, 식물성油脂, 경운기, 이양기 등 - 國產부품 사용의무 등 認可 조건 폐지 <p>○ 외국인 투자 절차 간소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투자 절차법」상 인가제를 자유화업종에 대하여는 신고제 확대 - 투자 인가서류의 간소화 - 외자사업 심사위원회 심의 대상 축소(既조치): 투자액 500만불 → 2천만불 <p>○ 외국인 투자기업의 토지이용 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 투자기업 專用공단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산공단(10만평) - 연구개발 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W개발, 기술훈련 등 서비스업에 대하여 토지취득 허용 	

년월일	경제시책	배경 및 취지	주요내용	비고
'92. 5.11	環境設備工事 入札方法 改善	<p>최근 하수처리장 등 환경설비 설치공사 發注가 급증하고 있으나 입찰참여 자격이 건설업체로 제한되고 있어 설비 제조업체의 受注 기회 배제</p> <p>※ 「환경설비 설치공사의 입찰방법에 대한 회계통첩」 시달</p>	<p>○ 高度技術事業의 자금조달 및 組稅감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增資를 통한 자금조달 지원 - 系列企業群에 속하는 국내 기업의 고도기술사업 합작 투자시 與信관리 규정완화 적용 - 조세감면대상 고도기술사업 범위 확대 <p>○ 기술도입 제도 개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도입 계약 승인업무의 외국환은행 위임 - 기술도입 승인 관련 구비서류 간소화 <p>○ 외국인 투자 홍보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공관, KOTRA 등을 통한 홍보 <p>○ 共同都給 契約 방식에 의한 입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발주 환경설비 설치공사에는 시공자(건설부문)와 설비제조회사가 대등한 입장에서 참여 - 대상: 환경설비설치 공사중 설비부문이 전체 계약금액의 50%이상인 공사 <p>○ 설계, 시공 일괄입찰 (턴키 베이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비제조회사, 시공회사 및 설계용역업체간에 공동 도급 계약방식 입찰 가능 	

년 월 일	경 제 시 책	배 경 및 취 지	주 요 내 용	비 고
'92. 5. 12	轉換 短資社의 短資業務 整理 補完 對策	信用度 및 담보력이 취약한 기업은 轉換短資社(하나은행, 보람은행 등)로부터 殘留短資社로 자금조달 窓口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애로를 겪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殘留 단자회사의 수신기능 축소계획 연기 - CMA 및 발행어음한도 축소 계획 6個月 연기: '92.12月末 → '93.6月末 ○ 殘留 단자회사로 조달창구 변경시 우선지원 - 전환단자사에서 잔류단자사로 거래선 변경시 우선적으로 適格업체 선정 및 자금 지원 	
'92. 5. 12	勤勞者 證券貯蓄 制度 擴大	주식需要 개발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자 증권저축(株式型) 가입확대 - 가입대상: 月給與60만원 이하근로자 → 모든근로자 - 가입한도: 年間 최고한도 216만원 → 500만원 	
'92. 5. 22	不動産 投機 抑制 對策 一部 緩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0대기업집단의 부동산 신규 취득 금지조치 등 부분 해제 - '92.7월부터는 물류시설, 신도시 지역의 백화점 및 쇼핑센터 등의 신규 취득 허용 - '90.5.8조치 이전에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는 상업용 건축물 아닌 건물 신축 허용 	관련 '90.5.8
'92. 5. 26	情報通信分野 技術開發資金 支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신기기, 컴퓨터 및 S/W분야, 반도체 등 총30개 분야 · 정부지원금 216억원 투입 	

년월일	경제시책	배경 및 취지	주요내용	비고
'92. 5.26	信用卡 利用限度 管理 體系 改善	신용카드 이용慣行이 質的으로 성장하여 延滯 증가액이 감소하는 등 새로운 지급결제수단으로 정착되고 있으나, 현행 관리체계가 미흡하여 限度 관리 등 시행상의 문제점 노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래승인방식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카드매출전표에 거래승인번호 기재('92.9.1시행) - 모든 가맹점은 거래승인 단말기 보유 필요 - 신용카드사와 거래승인 代 行 社 (Easy-check, Nice-check 등)간의 전산체계를 온라인화 ○ 현금서비스 수수료의 기간별 차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 현금서비스 수수료는 사용기간에 관계없이 일률 2.5~3.0% 적용 - 개선: 모든 신용카드회사는 현금서비스 수수료를 기간별로 차등화 	
'92. 5.27	投信社 經營 正常化 對策	3大 투신사(한국, 대한, 국민)는 '89.12.12대책에 따라 2조 7,692억원을 은행에서 차입 '92.4月末 현재 총 차입금은 5조 9,404억원(유가증권 보유 4조 9,581억원)에 달하고 있어 차입금이자 부담으로 경영수지가 계속 악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기관을 통하여 低利자금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규모: 2조 9천억원 (年利 3%) - 한국은행이 同一 금리로 대출은행에 소요자금 지원 - 투신사(信託計定)가 2조 9천억원상당 通安證券을 인수하여 통화증발요인 흡수 (통화증립) ○ 국고 여유자금 추가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2.5月 현재 지원액 1조 5,700억원에 더하여 3천억원 추가지원(年利 3%) 	

년월일	경제시책	배경 및 취지	주요내용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후생활 연금투자 신탁」 취급 허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은행(신탁계정)이 취급하고 있는 「노후생활 연금신탁」과 동일한 세제 혜택 부여 · 이자소득에 대하여 低率 (5%) 분리 과세 ○ 투신사의 自救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2年渡 임금을 '91年 수준 동결 - '92年 定員 동결 - 본점 기구를 축소 조정하고 잉여인력을 營業店에 배치 	
'92. 6. 3	輸出 檢査品目 縮小 調整	「제 1단계 수출검사 제도 정비 방안」 확정('92.5.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검사 대상품목 축소: 415개 → 208개 품목 · 서류검사제 확대 	'92.7.1 시행
'92. 6. 8	資源 再活用 및 에너지 節約 推進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철, 알루미늄 캔 등 10개 품목의 再자원화 추진 	
'92. 6.18	勤勞者 株式貯蓄 新設	근로자의 재산형성을 지원 하고 자금의 증시 유입유도 ※ 현행 「근로자 증권 저축」 제도의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입대상: 모든 근로자(현행 月定 급여 60만원 이하) · 저축한도: 年 500만원(현행 年 216만원) · 적용시한: 1年('92.7.1 ~ '93.6.30) 	
'92. 6.18	臨時 投資稅額 控除制度 時限 延長	「조세감면 규제법」 시행령 개정('92.6.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9.7.1시행 임시투자세액 공제제도 적용시한 6個月 연장: '92.6月末→'92.12月末 	

년 월 일	경 제 시 책	배 경 및 취 지	주 요 내 용	비 고
'92. 6. 20	消費者 被害補償 對象 品目 擴大	「소비자 피해보상 규정」 개정('92.6.20)	· 피해보상 대상 품목확대 (88개 업종, 571개 품목)	
'92. 7. 1	外國人의 株式 投資擴大	외국인 투자기업이나 해외 증권 발행기업의 외국인 持 分이 투자한도(10%)를 초과 하는 경우 이를 예외적으로 인정 ※ '92.6.11 「외국인의 주 식투자 확대방안」 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 투자한도(10%) 초과 종목 승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식시장에서의 투자를 10% 까지 인정하되 기존 外國人 持分과의 합계를 발행주식 총수의 25% 미만으로 한정 ○ 외국 금융기관 국내 지점 등 의 內國人 대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은행, 보험회사, 증권 회사 등의 국내지점에 대하 여는 외국인 투자한도 규정 배제 ○ 유통주식의 해외 예탁증서 (DR)발행 허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행요건: 기업재무 상태가 일정기준 이상인 上場기업 - 발행가격: 발행조건결정 前日 終價의 일정 비율 (예, 95%) 이상 - 발행한도: 외국인 투자한도 (10%)이내 - 발행지역: 미국 - 原株의 보관: 한국대체결제 (주) ○ 외국인 투자절차의 간소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 투자자를 대신하여 은행 등을 常任 대리인으로 설정 	

년 월 일	경 제 시 책	배 경 및 취 지	주 요 내 용	비 고
'92. 7. 1	換率 變動幅 擴大	'92.6.24 「외국환관리 규정」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율의 日日 변동폭 확대: 매매기준율(시장평균환율)의 上下 0.6%이내→ 上下 0.8%이내 	'93.10.1 추가확대
'92. 7. 1	保險市場 開放 懸案에 대한 自由化 方案	'87년부터 보험시장 개방이 진척되고 있으나, 최근 국내 진출 외국보험사들이 内外國 社間 동등한 경쟁을 제한하는 경쟁 제한적 조치의 철폐를 요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無配當 보험상품 도입 허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약자 배당이 없는 대신 보험료를 다소 저렴하게 책정할 수 있는 보험상품의 도입 - 대상상품: 保障性보험과 養老보험 - 무배당 보험료: 배당보험료에서 계약자 배당금을 차감한 수준 - 판매회사: 모든 보험회사 ○ 외국보험사의 업무용 부동산 취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 총자산의 10%이내에서 업무용 부동산 취득가능 - 개선: 일정기준아래 제한적으로 취득할 수 있도록 조치 ○ 再保險 산업의 자유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계적 절차를 거쳐 점진적으로 자유화 ○ 독립대리점 및 보험브로커 제도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장에 대한 충격이 상대적으로 작은 독립 대리점제도를 먼저 도입('96.4월) 	

년 월 일	경 제 시 책	배 경 및 취 지	주 요 내 용	비 고
'92. 7. 1	建築許可 制限 一部 解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건축물 규제 해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면적 1,500㎡이하의 근린 생활시설 - 세대당 135㎡미만 재건축 多世帶 · 다가구주택, 재개발아파트 재건축 ○ 건축허가 제한 연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大型 판매시설, 업무시설, 위락·숙박시설, 관람집회 시설 등은 '92.12.31까지 규제 연장 	
'92. 7. 1	第2段階 金融自律化 및 開放計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화표시^{*)}계약 및 원화결제 대상범위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당 10만달러 이하 수출입 거래에 대해 원화표시 및 원화 결제허용 ○ 先物換거래 허용범위 확대 ('92.9월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보험사 국내지점: 영업기금규모 범위이내 - 외국인 국내주식투자: 투자액 범위이내 ○ 외국환은행의 外換포지션 관리완화('92.9월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지션 한도 설정기준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B한도: 매입 외환의 2배 (자본금 또는 영업기금의 換 Risk-hedge分은 한도에서 제외) 	

년 월 일	경 제 시 책	배 경 및 취 지	주 요 내 용	비 고
'92. 7.10	中小企業의 公開要件 強化	<p>현재 중소기업의 공개는 원칙적으로 1사업년도이상 場外거래 실시후 거래상황, 재무상태 추이 등을 감안하여 허용</p> <p>※ 「중소기업의 公募주식 引受에 관한 규정」 제정 ('92.7.1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S한도: 매입 외환(평잔)의 20% 또는 1천만달러 중 큰 금액범위내 ○ 店外 ATM 설치 허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점외 ATM 설치장소 및 기준 확정('92.6月 현재 店內 ATM은 20개정도 설치) ○ 국내기관투자자의 해외증권 투자 한도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한도: 3천만달러 이내 → 5천만달러 이내 ○ 다음 기준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은 場外거래 않고도 공개 허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립년수: 10年이상 - 신용평가회사의 기업어음 평가 등급기준: 상위 2등급 이상 - 재무상황: 순자산이 총자산의 1/4이상 	
'92. 7.16	中小企業에 대한 擔保取得 制限 緩和	「금융기관 경영지도에 관한 규정」 및 同 시행규칙 제정('92.7.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담보취득 제한의 예외가 인정되는 중소기업 범위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숙박 및 음식점업, 부동산업, 오락·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 등을 제외한 모든 중소기업 ○ 중소기업에 대한 운전자금 대출 및 지급보증시 담보취득 가능한 부동산 범위확대 	

년월일	경제시책	배경 및 취지	주요내용	비고
'92. 7. 20	金融機關의 公共資金 運用制度 改善	'91.6이후 시행되고 있는 「공공기관의 공공자금 운용지침」의 적용을 받지 않는 年·基金의 경우 금융기관에 高금리를 요구하고 있어 同지침 적용 7개 年·基金과의 形명문제 야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전: 기업주 및 그 배우자와 이들의 직계존비속 名義 거주주택(호화주택 제외) - 변경: 모든 제3자 名義 부동산(단 연면적 1/2이상임대되거나 興信 금지업종에 제공되고 있는 부동산, 비업무용 부동산, 유희토지 및 사치성 재산 제외) o 「공공기관의 공공자금운용지침」 적용 대상 年·基金 범위 확대 - 여유자금 규모가 500억원 이상인 13개 年·基金에 대하여 추가적용 (7개 → 20개 年·基金) o 자금운용 비율 인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産金債 등의 의무매입 비율을 걱정수준으로 引下 조정 (月中 豫受額의 80%→40%) 	
'92. 7. 24	短資社 金利引下		<ul style="list-style-type: none"> o 短資社의 기업어음 金利인하 - 興受信金利를 0.5%~ 10%p인하 - 표지 팩토링발행 업무 개시 ('92.7.27) 	
'92. 7. 24	濟州道 開發 特別法 施行	「제주도 개발 특별법」 시행령 제정('92.7.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도 개발 財源확보를 위한 특별회계 설치 · 自然景觀 보전관리 대책의 제도화 · 農·林·畜·水産業 진흥계획 수립 	

년 월 일	경 제 시 책	배 경 및 취 지	주 요 내 용	비 고
'92. 7. 30	工場配置 및 設立 制度改善	「공장배치 및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92.7.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한정비지역 조정 · 공장건축기간의 연장 권한을 시장·군수에게 부여 · 기준초과 용지 산정방법을 지방세법과 통일 	
'92. 7. 30	基金管理 制度 改編	「기금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정 ('92.7.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금의 주식 및 부동산 매입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금운용계획」에 반영된 경우에 한해 기금의 주식 및 부동산 매입 허용 ○ 「기금운용심의회」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장포함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92. 7. 31	有價增資 時價割引率 適用 自律化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의 자율적 결정에 따라 유상증자시 時價할인 가능 	
'92. 8. 3	債券關聯 金利引下	채권유통수익률이 지속적 下向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므로 채권관련 금리의 下向 유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사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사채 발행 표면금리 인하 ('92.8.1): 15.0% → 14.0% ○ 노후생활 연금신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상수익률 인하: 17.0% → 16.0% ○ 은행개발 신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확정수익률 인하('92.8.1): 15.0% → 14.0%~14.5% 	

년 월 일	경 제 시 책	배 경 및 취 지	주 요 내 용	비 고						
'92. 8. 5	CD取扱 證券會社 擴大	CD 증개기관을 확대하여 유통 수익률 下向 안정화를 도모하고, 증권회사의 업무 를 다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D 취급 未認可 11개 증권회 사에 전부 허용 · 인가기간: 3年 							
'92. 8. 24	證券市場 安定을 위한 綜合對策	<p>최근 물가안정, 국제수지 개선 등 실물경제의 호전에 도 불구하고 株價가 460선까 지 하락하는 등 불안한 모습</p> <p>※ 株價 추이</p> <table border="1"> <tr> <td>'89.4</td> <td>'92.1</td> <td>'92.8</td> </tr> <tr> <td>1007.8</td> <td>624.2</td> <td>459.1</td> </tr> </table>	'89.4	'92.1	'92.8	1007.8	624.2	459.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實勢금리의 下向 안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화의 탄력적 운용 - 채권 유통수익률引下 유도 ('92年 채권발행규모: 51.6조원) - 콜금리, CD금리 등 인하 유도 - 금융기관 경영합리화와 불 건전 금융관행 시정 · 預貸 마진을 인하여유도 · 은행감독원의 꺾기 규제 ○ 주식需要 기반의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은행신탁계정, 보험회사 및 年基金 등의 주식매수 유도 · 은행신탁계정: 향후 6개월 간 月別 受託庫 純増分 의 25%(약 1조 5천억원) · 보험회사: 향후 6개월간 月別 보험收支差의 20% (약 7천억원) · 年基金: 향후 1年間 여유 자금의 10%이상 (약 1조2천억원) - 증시안정기금 추가 출자 (5천억원) · 上場법인: 약 3,600억원 · 轉換증권사 또는 新設증권 사: 약 1,400억원 	
'89.4	'92.1	'92.8								
1007.8	624.2	459.1								

년 월 일	경 제 시 책	배 경 및 취 지	주 요 내 용	비 고
'92. 9. 1	海外直接投資 制度改善	국제수지 관리측면에서는 해외 직접 투자를 확대하기 어려우나, 국제 경쟁력강화 등 산업정책적 측면에서는 해외 직접 투자의 보다 적극적 활용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기관 주식매매시 매수 금액이 매도금액을 상회하 도록 유도 - 投信社에 대해 自社株 펀드 발매 허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장법인이 자사주 매입을 희망하는 경우 투신사의 주식형 수익증권 매입 - 국민주(한전, 포철)에 대한 외국인투자 早期 허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한도 8%, 同一人 한도 1% 이내 ○ 주식투자에 稅制지원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당소득 분리과세 少額주 주의 범위확대(주식발행 총액의 1% 또는 1억원 중 적은 금액 → 주식발행 총액의 1% 또는 3억원 중 적은 금액) - 향후 1年間 주식투자計座에 대한 자금출처조사 중지 ○ 증권사의 巨額 RP거래 대상 을 개인에까지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래 超短期로 조달하던 차 입금을 안정된 자금으로 전환 ○ 산업정책과의 連繫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투자사업을 장려, 일반, 제한 3가지 범주로 구분하 여 허가 심사 및 금융지원 에 연계 · 장려사업: 첨단기술습득, 자원개발 등 	'93.11.26 후속조치

년 월 일	경 제 시 책	배 경 및 취 지	주 요 내 용	비 고
'92. 9. 1	外換 管理 制度 改編	<p>따라서 해외 직접투자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필요한 제도개선을 추진</p> <p>※ '92.8.29 「해외 직접 투자 지침」 제정</p> <p>對外去來 규모가 확대되고 기업 및 금융기관의 대외 진출이 활발해져서 규제중심의 외국환 관리 법령체계로는 대외거래를 뒷받침하기 곤란</p> <p>※ '91.12.27 「외국환 관리 법」 개정</p> <p>'92.8.14 「외국환 관리 규정」 개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한사업: 기술유출, 해외 생산제품의 역수입, 부동산 관련투자 등 · 일반사업: 장려 및 제한이 외의 모든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투자 허가절차 간소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투자 심의 대상축소 ○ 해외투자 요건의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持分이 20%미만이더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 해외 직접투자자로 허용 · 임원의 파견 · 중요제조기술의 제공 또는 도입 · 원재료 또는 제품의 장기 매매 - 국내자금 조달의무 폐지 ('88年 도입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기업 M&A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A 추진에 필요한 계약보증금 등의 事前지급 및 이를 위한 現地금융 이용 허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先受金 영수 한도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 수출선수금 영수한도 · 대기업: 年間 수출실적의 1% · 중소기업: 年間 수출실적의 5~10% - 개선: 年間 수출실적의 2% 또는 件當 거래액의 20%이내 	

년 월 일	경 제 시 책	배 경 및 취 지	주 요 내 용	비 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延拂수출 및 팩토링방식 수출한도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용장방식 연불 수출확대: 1年이내 결제(자유) → 3年이내 - 1年이내 100만달러 이하로 한정하고 있는 팩토링방식 수출에 금액한도 폐지 ○ 변칙적인 延支給 수입기간의 관행 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화물 先取보증서(L/G)를 발급하여 물품통과시 延支給 수입기간내(80日) 수입대금 결제 ○ 現地 금융규제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지 법인 신용차입은 금액에 관계없이 용도 및 한도 제한 폐지 - 현지법인 보증차입은 용도 및 한도제한 완화 ○ 해외건설 및 용역사업 규제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지 외화보유 한도확대: 계약 잔액의 3%이내 → 10% 또는 100만달러 이내 ○ 해외발행증권 종류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 보통채권, CB, BW, DR - 개선: CD, CP 등을 추가하여 모든 증권으로 확대 ○ 해외 移住費 제도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주정착비 · 世帶別 한도제(20만달러) 폐지 	

년 월 일	경 제 시 책	배 경 및 취 지	주 요 내 용	비 고
'92.10.14	輸出 信用保證 制度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移住世帯 구성원수에 비례 한 한도제 (世帯主: 6만 → 10만달러) (世帯員: 3만 → 5만달러) ○ 개인송금 관리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비 보조, 축의금 등 개인 송금의 용도 구체화 - 국세청 통보자료: 年間 1만 달러이상 → 件當 5백달러이상 ○ 先物거래 허용범위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주자의 先物換거래는 경 상거래에 한정하고 있으나 이를 자본거래로 확대 - 금융先物(場內)거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 통화, 이자율선물· 옵션만 가능 · 개선: 주가지수 선물허용 (외국환은행 및 기 관투자가에 한정) - 해외증권 투자대상에 일부 非上場 증권(미 NASDAQ) 포함 ○ 수출 신용보증 대상 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기업: 수출업 3년이상 및 年間 수출실적 300 만달러이상 - 중소기업: 수출업 2년이상 및 年間 수출실적 30만달러이상 ○ 보증대상거래 및 보증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어음 보험가입거래 중 결제기간 300日 이내 거래 - 보증비율: 90% 	

년월일	경제시책	배경 및 취지	주요내용	비고
'92.10.20	設備資金 供給 圓滑化 對策	설비투자 증가율이 둔화되는 추세이므로 설비투자 자금을 보다 원활히 공급하기 위한 목적 ※ '92.10.15 「외화 여수산업에 관한 규정」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外貨표시 원貨 수요자 금융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外産기계 구입에 대한 외화 대출과 동일한 조건으로 국산기계구입 소요자금 지원 · 지원대상: 생산개시 2년 이내의 신규개발 국산기계 · 지원금액: 외화표시 원화 1조원 ○ 수출산업 설비금융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수출산업 설비금융 확대 · '92年 4/4분기 및 '93年 상반기중 7,500억원 ○ 유망기업에 대한 설비자금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은행이 선정한 「설비투자 유망기업」 지원 · '92年 4/4분기중 2,500억원 ○ 외화대출의 원활한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규모: 30억달러 - 용자비율 인상 · 대기업: 60% → 80% · 중소기업: 80% → 90% ○ 중소기업 설비자금에 대한 신용보증지원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용보증 1조 5천억원 - 後取담보에 따른 결손액 보전 	
'92.10.23	關稅制度 改編	「관세법」시행령 개정안 확정('92.10.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 평가제도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로알티 과세기준 및 범위 명시 	

년 월 일	경제 시책	배경 및 취지	주요 내용	비고
'92.10.23	農林水産業者 에 대한 信用保證 支援 活性化	담보능력이 부족한 농어민 에 대한 보증지원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화필름 등 複製權의 개념 명확화 o 덤핑방지 관세제도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덤핑 제소후 관세부과까지 소요기간단축: 1年→8個月 - 덤핑방기관세 적용기간 연장: 3年 → 5年 · 同一人當 보증한도(개인): 5천만원 → 1억원 · 보증인 자격기준 완화: 보증인의 年수입액 등 外에 재산세 기준 추가 · 多數人 合算에 의한 보증인 요건 충족 인정 	
'92.11. 1	外國人 投資 및 技術導入 制度 改善	<p>'92.5.1 「외국인 투자 및 기술도입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p> <p>※ '92.10.28 「외국인 투자 에 관한 규정」 및 「기술도입에 관한 규 정」 개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o 외국인 투자 자유업종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만시설 운영업 등 8개업 종 자유화 - 무선전신화 등 4개 금지업 종의 제한적 허용 - 외국인 투자 자유화율: 80.7% → 81.7% o 일부 업종의 합작의무 폐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물제조업 등에 대하여 국 내 기업과의 합작의무 해제 o 기술도입 제한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主務部處 신고대상 기술도 입 계약 범위축소(外國換 은행 認證으로 대체) - 조세감면 대상 기술도입 범위 확대 	관련 '92.5.1

년 월 일	경 제 시 책	배 경 및 취 지	주 요 내 용	비 고
'92.11.11	有望 中小企業 設備資金 支援 擴充	'92.10.20 「설비자금 공급 원활화 대책」에 의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금액: 2,500억원 · 용도: 공장건물의 신설 또는 증설, 국산 기계설비의 구입 및 기술개발 시설 · 지원한도: 소요자금의 100% 이내(단 垆地구입비는 6개월 이내에 착공될 공장용 敷地의 경우에 한하여 50%) · 대출금리 및 대출기간: 일반 시설자금의 대출과 同一 · 한국은행의 자금지원: 금융기관 대출취급액의 50%지원 	
'92.11.23	金融事故 綜合對策	양도성예금증서(CD)의 위조 및 불법 유통사고 빈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도성예금증서 업무처리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D 先發行 행위 금지 - 受託 CD내역을 고객에게 정기적으로 통보 - 조폐공사에서 공동 제조한 통일된 양식의 CD 발행 ○ 보증어음 및 受託어음의 업무처리 절차 보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증어음 앞면 및 뒷면에 背書양도 不可 표시 - 수탁어음에 대한 특정 橫線 捺印의 의무화 	
'92.11.26	産地 소값 安定 施策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최고기 방출 물량 감축 ('92.11월중): 440톤→340톤/日 · 수입최고기 포장육 소매점 마진 하향조정: 출고가격의 25% → 18% 	

년월일	경제시책	배경 및 취지	주요내용	비고
'92.11.30	돼지 收買 備蓄資金 支援	돼지가격 안정목적	· 肉加工업체 돼지 수매 비축 자금 지원확대: 250억원 → 350억원	
'92.12. 2	에너지 節約 施設投資 促進 對策		· 에너지절약형 사업지정 육성 · 에너지절약 시설투자에 年 5천억원 지원 및 기술개 발에 '96년까지 980억원 지원 · 에너지절약 시설 투자액의 55% 稅制지원	
'92.12. 3	新規 開發品目 에 대한 調整 關稅		· 대상품목: 신규개발 8개품목 및 低價수입 9개품목 · 관세율: 9~13% → 18~100% · 적용기간: '94.12.31까지	
'92.12. 9	앞담배 耕作 機械化 支援		· 앞담배 경작 기계화에 의한 생산기반 구축에 '92년부터 10年間 2,500억원 투자	
'92.12.15	中水道施設 基準 制定	날로 심각해져 가는 水資源 부족 현상에 대처하기 위한 목적	· 中水道의 용도, 처리방식, 水質기준 등 규정	
'92.12.16	農水産物 産業被害 救助 制度 改善		○ 잠정조치제도 도입 - 계절적, 부패성 농수산물의 피해발생시 45일 이내 구제 조치 ○ 피해조사 專擔기구 설치 - 농수산물 생산자 단체에 피해 조사 전담기구 설치	

년월일	경제시책	배경 및 취지	주요 내용	비고
'92.12.24	農業振興地域指定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업진흥지역 지정 告示: 5,786천필지, 1,008ha 	
'92.12.26	外國人 投資의 原則的 申告制	「외자 도입법」 및 同 시행령을 개정하여 외국인 투자 절차를 原則的 認可制에서 原則的 申告制로 전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認可대상 외국인 투자사업의 축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가대상 사업을 신고대상 사업으로 전환 · 중소기업 계열화 업종 · 외국인투자 비율 50%초과 제조업, 서비스업 ○認可절차의 간소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 인가여부 심사항목 축소: 6개항목 → 2개항목 ○高度기술 사업에 대한 組稅 감면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조업에 한정된 조세감면 대상에 첨단서비스업 포함 	'93.3.1 시행
'92.12.29	産業技術 研究 開發用品 關稅減免對象 調整	'91.7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기술 연구개발용 물품에 대한 수입관세 감면대상 품목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關稅減免 대상기관: 기업부설연구소(1201개), 산업기술 연구조합(63개) · 감면대상 품목: 257개 → 253개 (신규지정 33개, 지정제외 37개) 	

년월일	경제시책	배경 및 취지	주요내용	비고
'93. 1. 1	建築許可制限 解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허가 제한 해제 · 다만 수도권 지역내 慰樂 施設에 대한 허가제한은 '93.6.30까지 연장 (당초 '92.12月末) 	
'93. 1. 1	住宅建設 物量 割當制 廢止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건설 물량 할당제 ('92.2.20 시행) 전면 폐지 	관련 '92.2.20
'93. 1. 1	外國人 投資 企業에 대한 短期外貨 資金 借入 許容	'92.12月末 미국 워싱턴에 서 개최된 「한·미 영업환경 개선 협의(PEI)」의 투자 분야 합의결과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o 外貨자금 차입허용 대상기업 및 자금 용도 - 대상기업: 고도기술 수반 제조업을 영위하는 외국인 투자기업 - 자금용도: 시설재 및 원자 재 수입, 부채상환 o 차입조건 - 차입잔액 한도: 외국인투자 금액의 50% 이내 - 차입기간: 3年 이내 	
'93. 1. 1	輸入自由化	'93.1.4 「수출입 公告」 및 「統合 公告」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자유화 추가 품목: 들깨 등 45개 품목 · 수출제한 완화: 190개 품목 	
'93. 1. 1	外國人 專用 收益證券 認可	외국인 專用 펀드설정을 원활히 하고 외국인 간접투 자정책의 일관성 제고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o 펀드의 규모 - 최소규모: 3천만 달러 o 펀드 설정조건 - 신탁기간: 5年 이상 	

년월일	경제시책	배경 및 취지	주요 내용	비고
'93. 1. 1	輸出積荷 保險料 引下	※ '93.1.29 「외국인 전용 수익증권 인가 지침」 제정('93.1.1 소급적용)	- 신탁재산운용 제한: 주식에 80%이상 투자 - 위탁자 報酬: 純자산 가치 의 1.0% 이상 · 수출적하 보험료 10%인하 · 包括契約방식 도입하여 가입 자 우대	
'93. 1. 8	農工團地 開發 施策	「농공단지 개발 시책 통합 지침」 개정('93.1.8)	· 농공단지 신규지정 요건 강 화: 부실 및 미분양 예방 · 주무부처 변경: 농수산부 → 상공부	
'93. 1. 21	政府 勞賃單價 現實化	정부공사의 不實방지	· 정부 노임단가를 대폭 인상 · 정부 노임단가의 市中 노임 접근율: 工事 80%, 제조 90%	
'93. 1. 26	金利引下	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을 경감하여 경쟁력을 강화하 고, 투자심리 회복 및 경제 성장 잠재력 확충 목적	o 韓銀 재할인 및 대출금리: 1~2%p 인하 o 은행금리 - 與信금리: 10.0~12.5% → 9.0~11.0% - 受信금리 · 3개월이상: 1%p 수준인하 · 3개월미만: 2%p 수준인하 o 제2금융권 - 與信금리: 2.0%p 이상인하 - 受信금리 · 3개월이상: 1~1.5%p인하 · 3개월미만: 2~3%p 인하	'93.2.17 후속조치

년월일	경제시책	배경 및 취지	주요내용	비고
'93. 1. 27	國債 發行金利引下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年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정증권, 양곡기금 증권: 12.7% → 12.5% ('93.2.5추가인하: 12.25%) ○ 3年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환 평형기금채권, 농어촌발전채권, 농지채권: 13.0% → 12.6% ('93.2.5 추가인하: 12.4%) 	
'93. 1. 29	投信社 支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大 투신사(한국, 대한, 국민)에 國庫여유자금 1조원 지원 	
'93. 1. 30	纖維産業 競爭力 強化 對策	생산설비 자동화 및 생산 工程 효율화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업발전기금 320억원 지원 	
'93. 2. 1	投資信託 規制緩和 및 收益者 保護 強化	'92.10月 「금융 규제 완화 추진」 방침에 따라 신탁재산 운용관련 규제완화 또한 固有計定과 신탁계정 간의 불공정거래방지 및 투 자신탁 가입자의 이익보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사채 발행시장 引受의무 폐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每月 회사채 총액의 50% 이상을 발행시장에서 인수해야 하는 의무 폐지 ○ 地方企業 회사채 인수의무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탁재산으로 보유하는 회사채 총액의 일정비율을 지방기업 회사채로 보유 · 3大 투신사: 30% 이상 · 지방투신사: 50% 이상 	

년 월 일	경 제 시 책	배 경 및 취 지	주 요 내 용	비 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탁재산의 還賣條件附 채권 (RP)매도 허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탁재산 純자산총액의 5% 이내에서 RP매도 (다만 短資社, 은행 등 금융기관만을 상대로 거래) ○ 신탁재산운용의 공정성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식 自轉거래 허용사유 및 범위 규제 - 고유계정과 신탁계정간의 유가증권 거래가격 조정 · 주식거래가격: 前日終價 → 當日終價 ○ 수익자보호 강화 ('93.3.1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信託約款 등 營業店 비치 및 교부 - 신탁재산 운용 보고서 작성 및 교부 - 信託約款 해석시 「作成者 不利 原則」 적용 	
'93. 2. 1	不動産 擔保 信託制度 施行	현행 금융담보제도인 저당 제도 등을 대신하여 「신탁」 제도를 이용하는 담보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고자 하는 자(위탁자)는 대출담보로서 자기 소유 부동산을 부동산 신탁회사에 신탁 · 위탁자는 신탁회사로부터 收益權 증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 	
'93. 2. 1	外換去來 規制 緩和	금융자유화 및 국제화 추세에 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제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現地금융의 차입조건(금리, 	

년월일	경제시책	배경 및 취지	주요내용	비고
		<p>※ '93.1.30 「외국환 관리 규정」 개정</p>	<p>수수료 등)에 대한 규제 폐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非거주자의 국내 부동산 賃借 절차 간소화: 韓銀 허가 → 신고 <p>○ 외국환은행 國外점포에 대한 업무제한 완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國外지점이 거주자에 대하여 先物거래 증거금 등 필요자금 대출 가능토록 조치 - 국내 외국인투자 기업에 대한 대출 허용 <p>○ 팩토링 전문회사에 대한 국제 팩토링 거래 허용</p>	
'93. 2. 6	割當 關稅運用	물가안정과 국내산업 보호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로판, 부탄 등 3개 물품의 할당관세 적용기간 연장: '93.2月末 → '93.12月末 · 냉동어류(명태, 고등어 등) 28개 물품에 대하여 새로이 할당관세 적용 · 관세율 변경 범위: 기본세율 ± 40% 	
'93. 2. 8	與信管理制度 改善	'93.2.4 「금융기관 여신운용 규정」 개정	<p>○ 與信관리대상 계열기업군의 범위 축소 조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출금 기준 상위 50대 → 30대 계열기업군 <p>○ 업종 분류기준 변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韓銀 「기업경영분석」상의 기준 →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중분류」 기준 	

년 월 일	경 제 시 책	배 경 및 취 지	주 요 내 용	비 고
'93. 2.12	政府工事의 落札者 決定 方法 改善	UR協商 등에 따른 국내시장 개방에 대비하기 위하여 관 련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도모하고, 政府工事의 不實 방지 ※ '93.2.11 「예산회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 의 의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政府工事의 落札者 결정방식 을 最低價 낙찰제로 전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 「低價審議制」를 폐지 하고 「최저가 낙찰제」로 전환 - 다만 예정가격 20억미만 공 사는 예정가격의 85%이상 입찰자 중 가장 낮게 입찰 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 (중소건설업체 보호 목적) ○ 차액보증금 납부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정가격의 85%미만 낙찰자 에 대하여 차액보증금 납부 강화 · 현금납부시의 차액보증금: 예정가격과 낙찰금액 의 차액 · 현금이외의 납부시의 차액보 증금: 예정가격과 낙찰금 액의 차액의 2배 ○ 先金給 지급배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계약 未決 즉시 지급하 고 있는 선금급(착수금)지 급 배제 ○ 입찰 참가자격 사전 심사제 (PQ제, '93.7.1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發注 관서가 입찰전에 심사 - 대상사업: 예정가격 100억 원 이상 대형공사 중 특수기술 工法이 필 요한지하철, 댐 공사 등 	

년 월 일	경 제 사 책	배 경 및 취 지	주 요 내 용	비 고
'93. 2. 13	會社債 支給保證 業務 改善	회사채 지급보증의 隘路로 회사채 발행을 포기하는 事 例 빈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瑕疵檢査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 監理기관에 의한 하자 검사 의무화 - 하자보수 보증금 상향조정: 계약금액의 2~5% → 10% ○ 중소기업 지급보증 의무비율 설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증권회사 회사채 지급보증 잔액의 50%이상을 중소기업 회사채 보증에 사용 ○ 회사채 지급보증한도 축소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증권회사별 회사채 지급보 증 한도: 자기자본의 2배 범위내(현행과 同一) - 同一 법인에 대한 지급보증 한도: 자기자본의 50%→25% 	
'93. 2. 17	財政資金 金利引下	「財政投融資 특별회계」 (財特)에서 지원하는 용자 사업의 금리인하 ※ '93.1.26 「금리인하」 의 후속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속도로 건설자금(年 10%) 등 24개 재정자금 금리 1%p 인하 · 시행일: '93.1.26(소급시행) 	'93.1.26 소급시행
'93. 2. 23	相互信用金庫 同一人 與信 限度 廢止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호신용금고의 同一人 與信 한도(5억원) 폐지 	
'93. 2. 25	遊休地 決定	'92.9.15~10.31 市·郡· 區대상 토지 실태조사 결과 에 의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遊休토지 결정: 96건, 714,970㎡ 	

년 월 일	경 제 시 책	배 경 및 취 지	주 요 내 용	비 고
'93. 2. 25	<김영삼大統領 就任>		· 第14代 대통령	
'93. 3. 2	中小 纖維業體 施設 自動化 支援		· 중소 섬유 자동화 시범업체 5개소 지정 · 직물, 편직, 봉제, 염색부문 老朽시설 改替에 공업발전기 금 320억원 지원('93年中)	
'93. 3. 20	國債 發行金利 引下	최근 市場 實勢금리가 지속 적으로 하락하는 추세	○ 금리인하 대상 국채 - 1年債(재정증권, 양곡기금 증권): 11.25% → 11.0% - 3年債(외국환 평형기금 채권, 농어촌 발전 채권, 농지채권): 11.4%→11.0%	
'93. 3. 22	農産物 等에 대한 調整關稅	농산물 등의 수입급증으로 국내 농업피해 및 영세중소 기업체 倒産 사례 발생	· 조정관세 대상 물품: 과, 미역 등 6개 품목 · 관세율 수준: 9~30% → 50~70% · 적용기간: '95. 3. 31까지	
'93. 3. 22	新經濟 100日 計劃	'87년이후 민주화 과정에서 각 계층의 욕구 분출과 집단 이기주의 확산으로 성장 잠 재력이 크게 약화 따라서 경제발전에 국민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행 정, 금융 등 각 분야에 개혁 이 필요	· 투자 振作을 통하여 경기활 성화 · 중소기업을 내실있게 육성 · 기술개발투자의 효율성 제고 · 행정규제 등 기업隘路 요인 을 제거하여 기업활동의 자율성 제고 · 농어촌 구조개선 사업의 획 기적 개혁 · 生必需品가격의 철저한 관리	'93. 7. 2 신경제 5개년계획

년 월 일	경 제 시 책	배 경 및 취 지	주 요 내 용	비 고
'93. 3. 26	金利引下	<p>※ 신경제건설을 위한 「신경제 5개년 계획」 ('93.7.2)에 앞서 추진</p> <p>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고 투자심리를 회복하여 성장 잠재력 확충</p> <p>※ 「신탁업무 운용 요강」 개정('93.3.26)</p>	<p>· 국민의식 개혁운동 추진</p> <p>○ 韓銀 재할인 금리 - 1.0%p 인하: 年 6.0~7.0% → 5.0~6.0%</p> <p>○ 은행금리 - 일반대출금리: 年 9.0~11.0% → 年 8.5~10.0% - 受信금리: 年 9.0%→8.5%</p> <p>○ 제2금융권 금리 - 與信금리: 年 1.0%p 수준 인하(信協 등 상호금융: 年 0.5%p 수준인하) - 受信금리: 年 1.0%p 수준 인하</p>	
'93. 3. 26	信託業務 運用 制限緩和	<p>금융 규제완화 시책의 일환으로서 금융산업의 효율성 제고 목적</p>	<p>○ 신탁자금 운용대상 확대 - 은행, 投信社 발행 수익증권과 短資社 증개어음을 신탁자금 운용대상에 포함</p> <p>○ 신탁자금 운용제한 완화 - 보증어음 매입한도: 금전신탁 총 受託금액의 10%→20% - 委託者가 운용방법을 지정하는 특정 금전신탁에 대하여 同一 종목 유가증권 매입한도 폐지(현행, 受託 금액의 10% 이하) - 가계에 대한 同一人 신탁 대출한도 폐지 (현행, 3천만원)</p>	

년월일	경제시책	배경 및 취지	주요내용	비고
'93. 4. 1	輸入積荷 保險 의 補償範圍 擴大	保稅창고 입고후 10日間만 책임지고 있는 현행 보험계 약은 국제 商去來에 어긋나 고 보험가입자에게 불편 초래 또한 화재사고에 대하여는 수입積荷보험과 보세화물 화재보험의 2重가입 가능성	○ 수입積荷보험의 보험기간 연장 - 保稅창고 入庫後 10日間을 「최종 도착항 下役완료후 30日」로 보험기간 연장 ○ 보세화물 화재보험제도 개선 - 2重가입 보험료 환급 안내 강화	
'93. 4. 1	外換集中制 緩和	최근 외환사정이 호전되고 대외거래확대, 해외자본 유 입 등으로 외환집중제 완화 필요 ※ '93.3.31 「외국환 관리 규정」 개정	○ 해외 外貨보유 대상기업 및 보유한도 등의 확대 - 대상기업: 종합상사 → 수출입 실적 1억달러 이상 - 外換보유한도: 1천만달러 → 수출입 실적의 10% (최고 1억달러) - 外換보유방법: 외환은행에 예치 → 부동산 취득 이외의 제한 완화 ○ 거주자 국내보유 外換집중 의무 완화 - 집중의무 면제: 5천달러 → 1만달러	
'93. 4. 1	海外 證券投資 緩和	국내 證市개방, 기업의 對外 거래 확대 등에 따라 환율 및 금리의 위험 해지 (Risk Hedge) 필요성 증대 ※ '93.3.31 「외국환 관리 규정」 개정	○ 해외증권투자가 가능한 기관 투자가의 범위 확대 - 해외증권 투자가 가능한 기 관투자가의 범위에 短資社 및 年基金 추가 · 현행: 증권사, 투신사, 보험사 - 투자한도: 5천만달러 (현행과 동일)	

년월일	경제시책	배경 및 취지	주요내용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의 해외증권 투자허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기업: 해외 外貨보유가 허용된 기업 · 수출입실적 1억달러 이상 - 투자한도: 보유外換 범위내 · 수출입실적의 10% (1억달러 이하) ○ 일반투자자의 해외증권 투자허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投信社 펀드 조성 참여를 통한 해외 증권투자 - 投信社의 해외증권 투자 펀드를 통한 간접투자 허용 · 펀드 조성에는 개인 및 법인 참가 가능 - 투자한도: 3개 投信社當 5천만달러 이내 	
'93. 4. 1	酒類輸出檢査制度廢止	<p>수출검사에 소요되는 인력, 시간 및 수수료를 경감하여 酒類산업의 對外 경쟁력 강화</p> <p>※ 「수출검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지정에 관한 규칙」 개정 ('93.4.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류 수출에 대한 검사제도 ('72.6.24 시행) 폐지 	'72.6.24 시행
'93. 4. 1	保險規制緩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修理費 지급 확대: 1백만원 → 2백만원 · 입찰보증보험 사용횟수 제한 철폐 · 해외점포 설치 제한 완화 · 사업용 자동차보험 모집허용 	

년월일	경제시책	배경 및 취지	주요내용	비고
'93. 4. 1	經濟力 集中 抑制 施策	<p>시장 지배적 사업자 및 대규모 기업집단의 지정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대기업 興信偏重의 주요 원인이 되어온 상호 채무보증을 대규모 기업집단에 대하여 제한</p> <p>※ '93.2.2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지정 기준 상향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지정 기준을 年間 국내 총공급액 500억원이상(종전 300억원 이상)으로 조정 ○ 「대규모 기업 집단」의 지정 기준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전: 계열회사 자산 총액 4천억원이상의 기업집단 - 변경: 자산 총액 합계액 순위가 30位이내인 기업집단 ○ 系列會社 相互間의 채무보증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한대상 계열회사 : 30대 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 - 제한방법 : 自己 계열사에 대한 채무보증 총액을 自己 資本의 200% 이하로 제한 - 경과기간(3年) 인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도 초과금액은 '96.3.31 까지 자기자본의 200%이내로 단계적 축소 ○ 出資 總額 제도의 例外인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개발 및 도로, 항만, 철도 등 산업 기반시설 확충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에 대한 출자 	
'93. 4. 1	SAL 小包 郵便 制度 施行	Surface Airlifted System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간에는 항공편, 국내에서는 일반운송편으로 운송 · 적용국가: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년 월 일	경 제 시 책	배 경 및 취 지	주 요 내 용	비 고
'93. 4. 2	貿易金融制度 改善	「무역금융 규정」 개정 ('93. 4.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에 대한 무역금융 단가인상(평균): 650원 → 700원/달러 · 포괄금융 용자한도 확대: 7억원 범위내에서 과거 3個 月間 수출실적의 1/3 해당분 이내 → 1/2 해당분 이내 	
'93. 4. 6	消費者 被害補償 擴大	「소비자 피해보장 규정」 개정('93. 4.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문판매, 할부거래에서의 請約철회 인정 및 교환시 차액 精算제도 · 「소비자피해보장 규정」 적용대상 확대: 506개 품목(83개업종) → 550개 품목(88개업종) 	
'93. 4. 15	價格變更 事後 報告制 運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격 및 수급동향 보고 등 폐지 - '81.7月이후 시행해 온 주요 공산품 수급동향보고 (매월), 원자재 수급 가격 동향보고(매월), 결산자료 제출(매분기)제도 등 폐지 ○ 주요 공산품에 대한 가격보 고 사후 보고제 실시 - 사후 보고 대상품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 생필품 · 시장 지배적 사업자 품목 · 기초 원자재 등 국민경제 상 주요 품목('93年 22개 품목, 29개 사업자) - 사후 보고시기: '93. 4月부 터 가격 변경후 3日 이내에 경제기획원 및 주무부처에 보고 	

년월일	경제시책	배경 및 취지	주요내용	비고
'93. 4. 29	臨時 投資稅額 控除制度 適用時限 延長	기업의 설비투자를 촉진하 여 경기회복 도모 ※ '93.3.22 「신경제100일 계획」에 의거	· 적용時限: '93.6.30까지의 투자분→'93.12.31	관련 '93.3.22
'93. 5. 1	信用卡 利用限度 調整		· 일반 購買 月한도(200만원), 割賦購買 잔액한도(100만원) 등을 카드사가 개인별로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 · 현금서비스 月한도 상향 조정: 30만원 → 70만원	
'93. 5. 1	勤勞者 長期 貯蓄方法 改善	경제행정 규제완화 시책의 일환	· 현행: 근로자는 사업주를 통 하여 금융기관과 장기저축 계약체결 및 저축금액 납부 · 개선: 현행 방법에 추가하여 근로자가 직접 금융기관과 계약체결 및 저축금액 납입 하는 방법도 허용	
'93. 5. 1	金融機關의 公共資金 運用制度 廢止	행정규제완화의 일환으로서 최근 금리가 낮아져 産金債 및 中金債 매각이 원활함을 감안 ※ '93.4.25 「금융기관의 공공자금 운용지침」	· 금융기관의 年基金 등 공공 자금 운용제도('91.6.1시행) 폐지 ※ 증권회사의 공공자금 운용 제도는 '93.5.14 폐지	관련 '91.6.1
'93. 5. 1	短資·綜金社 에 대한 行政規制 緩和	短資社 및 綜金社와 관련된 경제 행정규제 완화	○ 증개어음제도 개선 - 지방短資社(16개사)의 증개 어음 취급 허용 - 증개어음 발행 최저금액 하향 조정: 1억원 → 5천만원	

년월일	경제시책	배경 및 취지	주요내용	비고
'93. 5. 4	外國人 土地 取得要件 緩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短期 차입금 한도 등 폐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기 차입금 한도 폐지 (현행, 자기자본의 2배이내) - 수입 및 지급이자율, 각종 수수료율 등의 최고 한도제 폐지 ○ 綜合社의 유가증권 최고한도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고한도: 자기자본의 30% → 100% ○ 토지 취득 가능업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 투자가 자유화된 업종 ○ 취득대상 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수요 범위내에서 필요한 업무용 토지에 한정 - 제조업: 「공장 배치법」 상의 공장 및 토지 - 은행 및 보험업: 본사 및 지점 관련 건물과 토지 ○ 토지 취득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의 경우 200명 이내(내국인 택지 초과 소유한도) - 중도 轉賣 금지 	
'93. 5. 6	金融機關에 대한 行政規制 緩和	경제 행정규제 완화 목적으로 「인가업무 취급 규정」 등 관련 규정 개정('93.5.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기관 영업소 운영에 대한 규제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업소 신설, 이전 등에 대한 內認可 제도 폐지 - 국내지점 신설기준 완화: 반경 500m 이내 기존 지점수 3개 이하 → 4개 이하 	

년 월 일	경 제 시 책	배 경 및 취 지	주 요 내 용	비 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장소의 독립회계단위 운영 허용 - 店外 현금 자동입출금기(ATM) 설치기준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경 200m이내에 금융기관 영업소가 없는 경우 본 지점이 위치한 행정구역(시·군·구 기준)내에서는 거리제한 폐지 o 비업무용 자산 처분시 공매 예정가격 산정기준 자율화 - 제 2차 이후 공매는 제 1차 공매 예정가격의 50%를 초과하는 범위내에서 각 은행이 자율 결정 	
'93. 5. 7	市場支配的 事業者의 濫用 行爲規程 改正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남용 행위 심사지침」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濫用行爲에 포함: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 방해 행위 · 濫用行爲에서 제외: 同調의 가격 인상 	
'93. 5. 14	證券會社의 公共資金 運用制度 廢止	행정규제 완화시책의 일환 ※ '93.5.1 「금융기관의 공공자금 운용지침」 폐지 '93.5.14 「증권회사의 공공자금 운용지침」 폐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증권회사의 年基金 등 공공자금 운용제도('91.6.1시행) 폐지 	
'93. 5. 18	農水産 精銳人力 育成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등 개정('93.5.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農漁業士制度 도입 	

년 월 일	경 제 시 책	배 경 및 취 지	주 요 내 용	비 고
'93. 5. 20	下都給者 保護強化 및 入札保證金 免除	행정규제완화 시책의 일환 으로서, 예산회계법 시행령 개정('93.2.22)에 따른 하위규정 보완 ※ 「계약사무처리 규칙」 및 회계예규중 「공사계 약 일반조건」 등 개정 ('93.5.20)	○ 下都給者 보호 강화 - 하도급 금액의 直拂制 도입 · 예정가격의 85%미만 계약 체결 공사 중 일부 하도급 경우 · 계약자의 파산, 부도 경우 - 계약금액 조정 내용 통보 의무화 · 물가변동 등에 의거 계약 금액 조정시 계약담당 공무원은 下受給人에게 同 조정내용 통보 ○ 代價지급 遲延利子 지급 - 정부가 약속기일내 대가 미지급시, 지연이자 계상, 지급 ○ 입찰보증금 등 납부면제 - 정부로부터 면허, 허가 등 을 받은 후 3년이상 경과된 법인은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 - 중소기업 협동조합과 단체 수의 계약체결후 납부하는 先金에 대한 이행 보증보험 금 면제 ○ 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제 (PQ) 적용대상 확정 - 예정가격 100억원이상의 교 량, 댐 등 14종의 건설공사	
'93. 5. 25	保險會社의 資産運用制度 改善	보험회사의 자율성 제고 목적	○ 유가증권 보유제도의 개선 - 채권보유비율(총자산의 20% 이상) 폐지	

년 월 일	경 제 시 책	배 경 및 취 지	주 요 내 용	비 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매조건부채권(RP) 매도 허용 - 동일인 발행채권 취득한도 (10%) 폐지 - 중소기업체의 非上場 주식引受 허용 · 당해기업 총발행 주식의 10%이내 인수 <p>○ 대출운용의 자율성 제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대출한도: 3천만원 → 1억원 - 개인신용대출한도(1천만원) 폐지 - 중소기업 대출시 담보취득 허용범위 확대 	
'93. 5. 29	輸出推薦品目縮小調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향감시품목(230개) 중 178개 품목을 수출추천 대상에서 제외 	
'93. 6. 11	證券去來關聯規制緩和	<p>경제행정규제완화 시책의 일환</p> <p>※ 「증권거래법 시행령」, 「자본시장육성에 관한 법률시행령」, 「투자신탁업법 시행규칙」 등 개정('93.6.11)</p>	<p>○ 증권회사 任職員의 주식매매 거래 제한완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公募株 청약예금 가입에 의한 주식청약분 취득·처분 허용 <p>○ 증권회사의 채권 매매시 違約 손해배상 共同基金 징수 면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증권회사가 증권거래소를 통하여 채권매매시 違約 손해배상 공동기금 적립을 위해 거래대금의 「10만분의 1」을 납부하는 현행 제도 폐지 	

년월일	경제시책	배경 및 취지	주요내용	비고
'93. 6. 16	中小企業에 대한 外換規制緩和	<p>少額 多品種으로 수출하는 中小수출업자의 경우 수출 內譯제시가 어려워 수출승인서(E/L)발급 및 元貨換錢이 사실상 제한</p> <p>또한 '93.1月 수출先受金 영수한도를 상향 조정하였으나 일부 중소기업의 경우 종전보다 오히려 불리하게 되는 사례 발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社株 처분 제한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 종업원 퇴직시까지 우리社株 처분 제한 - 개정: 퇴직시 또는 우리社株 취득 7년경과시 처분 허용 ○ 업무절차 간소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채권발행절차, 투자신탁회사의 보고서류 등 간소화 ○ 外貨의 元貨換錢 제도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승인서(E/L)발급에 관계없이 外貨예치 증명서와 수출계약서만으로 元貨換錢 가능 · 제도개선 대상수출: 사전 송금방식에 의한 件當 2만 달러이하의 소액 수출 ○ 중소기업에 대한 수출先受金 領收限度 제도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선수금 영수한도를 최근 1年間 수출실적의 5% 또는 10% 적용 · 제도개선 대상 수출: 중소기업의 件當 20만달러 초과 수출 	
'93. 6. 18	最低價 落札制 適用對象 縮小	<p>정부공사의 落札者 결정방법을 低價 審議制에서 최저가 낙찰제로 변경('93.2.22)</p> <p>그러나 건설업체간의 과당 경쟁으로 대다수 공사가 예정가격의 60%수준에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最低價 落札制 적용대상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저가 낙찰제 대상을 예정가격 100억원이상 공사 (종전 20억원)로 상향조정 - 100억원 미만 공사는 제한적 최저가 낙찰제 · 예정가격의 85%이상 입찰 	

년월일	경제시책	배경 및 취지	주요내용	비고
		낙찰되는 등 부실공사 우려	<p>자 중 가장 낮은 금액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저가 낙찰제 적용공사의 덤핑입찰 방지 대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계변경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정가격 85%미만 낙찰공사의 설계 변경시에는 해당 중앙관서장의 사전승인 의무화 - 차액보증금 납부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정가격의 70%미만 낙찰시에는 예정가격 85% 상당 금액과 낙찰금액과의 차액은 현금으로만 납부 - 附帶입찰제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정가격 100억원이상 공사는 하도급 예정내역을 입찰서에 별도 기재하여 입찰 ○ 설계자 및 그 계열 건설회사의 입찰참가 허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계, 시공, 감리 등을 종합 수행하는 종합건설업체의 육성 ○ 代價 지급 遲延이자 면제 제도 폐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國庫債務부담행위에 의한 계약, 예산 配定遲延 등에 의하여 대가 지급이 지연된 경우 이자 지급 	
'93. 6.19	自動車 保險 制度 改善	자동차 보험 가입자 불편 해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보험 가입시 要約 約款 제공 	

년 월 일	경 제 시 책	배 경 및 취 지	주 요 내 용	비 고
'93. 6.19	奢侈, 享樂, 遊興業所 抑制 및 健全化對策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보험 牽引料 인정금액 현실화 · 자동차 수리비 현금지급 한도 확대 · 유흥업소 신규허가 제한 기간 1年 연장: '93.6.30 → '94.6.30 · 유흥접객업의 취업 제한연령 상향 조정: 18세미만 → 20세미만 · 유흥업소에 대한 특별소비세율 상향조정: 10%→15~20% 	
'93. 6.25	總事業費 管理 方案	정부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發注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대형공사 사업에 대하여는 정부에서 총사업비를 관리함으로써 투자계획 및 예산 집행의 효율성 도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總事業費 관리 대상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政府 또는 道路公社, 水資源公社 등 정부투자기관에서 發注하는 사업 - 사업기간 2年이상인면서 총공사비 100억원이상인 사업 ○ 總事業費 관리 대상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사업의 조사설계에서부터 계약체결 단계까지 관리 - 다만 계약체결후 설계변경 등으로 총사업비가 과다하게 증가할 경우 관리대상에 포함 	
'93. 6.29	特別會計 및 基金制度의 整備	「예산회계법」 개정 ('93.6.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회계의 신설 및 통합 - 「교통관련시설 특별회계」 신설: 도로 및 도시철도, 특별회계와 일반회계의 고속철도, 공항사업을 흡수 	

년월일	경제시책	배경 및 취지	주요내용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폐기물관리, 환경오염방지 기금 등을 「환경개선 특별회계」로 통합 - 국유임야관리, 정부청사시설 등 특별회계를 「國有재산 관리 특별회계」로 단일화 - 석유사업, 석탄산업 육성기금 등을 폐지하고 「에너지 및 자원관리 특별회계」 신설 - 조달, 양곡, 군인연금 등 특별회계와 기금이 같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특별회계 또는 기금으로 단일화 <p>○ 歲計 잉여금의 활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歲計 잉여금 발생시 財政投融資 財源으로 활용 	
'93. 7. 1	保險商品 認可制度 改編	<p>보험업계의 자율과 창의성 발휘도모</p> <p>※ 보험상품 관련규정을 「보험상품 관리 규정」으로 통합정비('93.7.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험상품개발은 원칙적으로 해당 보험회사 책임하에 자율화 · 보험상품 관리업무는 재무부에서 보험감독원으로 이관 	
'93. 7. 1	財政資金 運用方法 改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財特豫受金の 이자지급횟수: 年 2회 → 4회 · 재정자금의 이자계산 방식: 양면 넣기 → 한면 넣기 	
'93. 7.1	割引特賣 實施期間 擴大	<p>「할인특별판매 행위에 대한 불공정거래 행위의 유형 및 기준·지정고시」 개정 ('93.7.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할인특매실시 허용기간: 1회 10日, 年間 40日 → 1회 15日, 年間 60日 	

년 월 일	경 제 시 책	배 경 및 취 지	주 요 내 용	비 고
'93. 7. 1	土地利用制度 改編	토지공급을 원활히 하고 토지거래허가제의 실효성제고 ※ '93.6.2 「국토이용 관리법」 개정	· 10개로 세분화된 용도지역을 5개로 단순화: 도시, 준도 시, 농림, 준농림, 자연 환경 보존지역	'93.12.16 시행령개정
'93. 7. 1	對外貿易 規制 緩和	「대외무역 관리규정」 개정 ('93.7.1)	○ 무역업 허가 완화 - 무역업 허가제를 등록제로 변경 - 年度別 효력 확인제 폐지 ○ 수출입 절차 간소화 - 2만달러 이하의 소액 수출 에 대한 수출 승인 면제 - 포괄 수출 승인제도 도입 · 최초 1회의 수출승인으로 2年間 개별 수출승인 불필요	
'93. 7. 1	外國人 投資 自由化 推進 方案 (外國人投資 開放 5個年 豫示制 導入)	외국인투자가 제한되고 있 는 업종에 대한 5개년 개방 시기를 豫示('93~ '97年) 하여 외국인투자를 확대 유 치하고, 국내업계에 대하여 는 개방에 대비한 사전 준 비기간 부여 ※ '93.3.22 「신경제 100日 계획」 의 일환으로 추진	○ 외국인투자 개방 5개년 豫示制 - 제한업종(224개): '93~ '97 年間 개방 132개 업종 豫示 - 합작의무업종(50개): '93~ '97年間 개방 43개 업종 豫示 ○ 외국인 투자 허용범위 확대 및 절차 간소화 - 소매업과 상품연쇄화 사업 에 대한 점포매장 면적 및 점포수 허용 범위 확대 - 소매업('94.1.1자유업종)에 대한 외국인 투자 절차를 인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 - 2천만달러 초과 인가대상	관련 '93.3.22

년 월 일	경 제 시 책	배 경 및 취 지	주 요 내 용	비 고
'93. 7. 2	新經濟 5年 計劃	모든 국민의 참여와 창의를 발전의 원동력으로 하여 신경제를 건설하고 계획기간 중 선진 경제권에 진입 또한 통일에 대비하여 경제 적 비용을 감내하기 위해 기반 마련 ※ 계획기간: '93~'97年	사업에 대한 「외자사업 심사위원회」 심사 폐지 ○ 재정개혁 - 재정능력 확충 - 고정적, 소득보상적 지출의 축소 - 소득세 과세기능 강화 등 세제개혁 ○ 금융개혁 - 금융자율화의 적극추진 - 통화신용 정책의 효율화 및 금융감독 기능강화 - 금융기관 업무영역 등 금융 구조 개편 - 外換집중제 완화 등 금융국 제화 - 「금융實名制」의 조기 실시 ○ 행정규제 개혁 - 進入규제, 창업절차, 수출입 관련규제 개혁 등 ○ 경제의식 개혁 - 공직자, 민간의 의식개혁 ○ 경제시책 중점과제 - 성장잠재력 강화 - 국제시장기반 확충 - 국민생활여건 개선	관련 '93. 3. 22
'93. 7. 27	外國人의 有價證券 取得 規制體制 整備	자본시장 개방 확대에 대비 하기 위한 목적	○ 관련규정 정비 - 외국인의 주식매매거래 등 에 관한 규정을 「외국인의	

년월일	경제시책	배경 및 취지	주요내용	비고
		※ 「외국인의 주식 매매 거래 등에 관한 규정」 개정 및 명칭 변경 ('93.7.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가증권 매매 거래 등에 관한 규정」으로 명칭 변경 - 「외국투자전용회사의 채권 매매에 관한 건」 등 관련 규정을 同 규정으로 흡수 ○ 외국인 취득가능 유가증권의 범위 明示 - 상장주식, 외국 금융기관의 유가증권, 외국 투자전용회사의 상장 채권 등 	
'93. 8. 7	<大田 EXPO>		<ul style="list-style-type: none"> · 主題: 새로운 도약에의 길 · 참가국: 전세계 108개국과 33개 국제기구참가 · 총관람객: 약 1,400만명 (외국인 약 68만명 포함) 	'93.8.7~11.7 (93일간)
'93. 8.10	投信社 資金支援	'92.8.10이후 3大 투신사 (한국, 대한, 국민)의 경영 정상화 지원과 관련하여, 이들 투신사에 대출해 준 7개 시중은행에 대한 韓銀 대출 2조9천억원의 만기 到來 ('93.8.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再대출 금액: 既대출 2조9천 억원중 3천억원은 회수하고 나머지 2조6천억원을 再지원 · 대출이율: 年 3% · 대출기간: '93.8.10~'94.2.10(6개월) · 대출대상은행: 제일, 한일, 조흥 등 7개 시중은행 	관련 '92.8.10
'93. 8.12	金融實名制 實施	금융거래의 정상화를 기하여 경제 정의를 실현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實地名義 사용 의무 - 모든 금융기관과의 금융거래 대상 · 은행, 증권사, 보험사, 短資社, 농협 등의 단위조합, 우체국, 마을금고 등 모든 금융기관과의 금융거래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명령」 공포, 시행('93.8.12)		

년 월 일	경 제 시 책	배 경 및 취 지	주 요 내 용	비 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實名확인 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計座 開設時에는 거래자 본인확인에 의한 직접개설을 원칙으로 하되 대리인에 의한 개설도 가능 - 기존計座에 대해서는 금융실명제 시행후 첫거래시 신규계좌 개설에 準해 실명확인 ○ 기존 非實名금융자산에 대한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非實名에 의한 자금인출 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명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비실명으로 확인된 자산은 인출 금지 - 實名 전환 의무기간 설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실명제 실시 2개월내 ('93.8.12~'93.10.12)에 실명전환 - 자금출처 조사 면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개월내 실명전환된 금융자산은 일정금액(30세이상, 5천만원)이하까지 자금출처 조사 면제 - 다른 법률에 의한 벌칙 적용 면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명제 전환으로 상법, 증권거래법 등 다른 법률을 위반하는 경우 1年內에 당해 위반 사항이 시정되는 때에는 同 법률에 의한 벌칙을 1年間 면제 ○ 實名전환 의무기간 이후 實名전환에 대한 조치 	

년 월 일	경 제 시 책	배 경 및 취 지	주 요 내 용	비 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과기간에 따라 每年 10%씩 최고 60%(증여세 최고 세율 수준)의 과징금 부과 ○ 국세청 통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명전환 의무기간중 현금 인출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자의 명단을 국세청에 통보해 특별관리 - 既발행 수익증권 등 보유자의 금융거래액이 금융기관 점포별로 月 5천만원 이상인 때 그 내용을 국세청에 통보 ○ 금융거래의 비밀보장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기관은 名義人의 書面 요구나 동의없이 그 금융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는 것이 원칙 - 예외적으로 정보제공이 인정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의 영장에 의한 요구 · 조세법률에 의한 요구 · 기타 재무부장관의 감독·검사 필요에 의한 요구 등 - 비밀보장 의무 위반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93. 8. 14	製品의 包裝方法 및 包裝材質 等 基準制定	폐기물 발생억제 및 재활용 촉진	· 제품의 포장 空間비율, 포장 횟수 등 제품종류별 포장방법 明示	

년월일	경제시책	배경 및 취지	주요내용	비고
'93. 8.20	京釜高速電鐵 TGV選定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부산: 430.7km · 최고 시속 : 300km 	
'93. 8.24	<韓·中 修交>			
'93. 8.24	金融實名制 實施에 따른 分野別 對策	금융실명제 후속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긴급경영안정지원 자금」 지원 · 20人以下 영세기업에 2천억원 지원('93.8.16) · 2차로 2천억원 추가지원('93.8.25) - '93年 회사채 발행계획 14조 4천억원에 중소기업 회사채 1조원을 추가 - 국가기관의 중소기업에 대한 先給金 지급비를 확대 · 20억원 ~ 100억원 미만 공사: 선급금 20% → 25% ○ 해외자금 유출 규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증여성 개인송금에 대한 국세청 통보제도 강화 - 外貨 密搬出 단속 철저 ○ 부동산 부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동산투기단속반 활동강화 및 부동산가격 수시 점검 	관련 '93.8.12
'93. 8.25	零細中小企業 追加支援 對策	금융실명제 후속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긴급경영 안정지원 자금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 규모: 2천억원 · 기업은행: 1천억원 · 국민은행: 1천억원 	관련 '93.8.12

년월일	경제시책	배경 및 취지	주요내용	비고
'93. 9. 1	稅制改編	<p>금융실명제 실시에 따라 課稅자료가 양성화되어 稅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므로, 각종 세율 및 공제액 수준 조정 등으로 稅부담 완화</p> <p>또한 기업의 경영여건 및 재무구조 개선을 지원함으로써 실명제의 조기정착을 유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운전자금 · 재할인 지원대상이 아니나 상거래에 수반한 어음할인 o 상호신용금고를 통한 영세기업 지원확대 - 중소기업 할인의뢰 어음은 眞性어음 여부에 불문하고 할인 - 金庫의 受信기반을 강화하기 위하여 與受信금리를 각각 1.0%p 상향조정 o 실명제실시에 따른 稅制보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세 세율인하 및 공제액 조정: 5~50% → 5~47% - 법인세율 인하(과세표준 1억원 초과): 34% → 32% - 상속세 및 증여세 누진세율 인하 - 중소기업의 임시세액 감면(20%) 계속시행 (당초 '93.12月 종료) - 부가가치세제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限界稅額 공제제도 신설 · 매출채권 貸損時 세액 공제제도 신설 · 매입세액 공제요건 완화 - 배당세액 공제제도 확대 및 초과유보 소득 과세완화 -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 조정 	

년월일	경제시책	배경 및 취지	주요내용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조세 지원의 축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축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年間 100%, 2年間 50%감면 → 5年間 50%감면 - 축산업 소득공제 기간 축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발생후 5年間 20%소득공제 → 3年間 20% - 증자소득공제 축소 및 시한 연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용시한(2年 연장): '93.12.31 → '95.12.31 - 양도소득세 非과세 축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사업 用地 양도분: 5年이상 보유시 70%감면 → 50% 감면 ○ 상속·증여세 보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公益법인을 통한 우회적 상속, 증여 규제 - 公益법인에의 특수관계자 理事취임 허용범위 축소 ○ 소비課稅 제도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소비세 과세범위 및 세율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세탁기: 20% → 소형 15%, 대형 20% · VTR: 25% → 20% - 酒稅 세율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스키: 150% → 120% · 燒酒分에 교육세 부가 - 탁·약주의 공급구역 제한 폐지 ○ 10年 限時 交通稅(목적세) 신설 	

년 월 일	경 제 시 책	배 경 및 취 지	주 요 내 용	비 고
'93. 9. 9	政府工事 契約 制度 改善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예산 회계법 시행령」 개정('93.9.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석유류 중 휘발유 및 경유 특별소비세를 교통세로 전환(세율조정) · 휘발유: 100% → 150% · 경유: 10% → 20% · 최저가 낙찰제 적용대상 축소: 20억원이상 공사 → 100억원이상 · 덩핑공사에 대하여는 緣故權 배제 · 차액 보증금 납부 강화 · 附帶 입찰제 도입 	
'93. 9. 13	住宅 分讓價 原價 連動制 改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착공 및 분양보증제도 관련 수수료를 分讓價에 반영 · 택지평가時點 조정: 사업계획 승인 시점 → 분양시점 · 주택사업자가 설치하는 施設 공사비를 택지비에 반영 	
'93. 9. 17	韓牛 飼育 基盤 造成事業 支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韓牛사육기반 조성사업 대상자 99개소에 274억원 지원: 營農조합법인(33개소, 109억원), 한우단지(27개소 50억원) 등 	
'93. 9. 20	信協 設立要件 緩和 및 業務 活性化 對策	금융실명제 실시 이후 사채 거래가 위축됨에 따라 영세 商工人 등이 겪고 있는 자금 조달상의 어려움 해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용협동조합 설립요건 완화 - 최소출자금 규모 축소 · 특별시 및 직할시 地域 組合: 5억원 → 3억원 - 早期認可 추진 (1차, '93.12月末 인가) 	

년월일	경제시책	배경 및 취지	주요내용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용협동조합 업무 활성화 대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업어음담보대출 취급허용 - 同一人 대출한도 확대 - 法人인 조합원에 대하여 대출 허용 	
'93. 9.20	準農林地域內 行爲制限 緩和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개정('93.9.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준농림지역內에서의 행위제한을 허용행위 열거방식에서 제한행위 열거방식으로 전환 	
'93. 9.22	中小企業에 대한 緊急資金 支援 擴大	금융실명제 후속조치의 일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에 대한 긴급 운전 자금 3천억원 추가 지원 	
'93. 9.24	金融實名制 後續措置	일정한 세금을 납부하거나 長期低利채권을 매입하면 과거 세금에 대한 조사를 면제하며, 非실명자금의 산업자금화를 유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무조사 면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천만원 초과 현금 인출시 국세청조사 배제 - 과세표준 양성화 신고시 과거 세금에 대한 추적조사 배제 - '93.8.12현재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하는 법인 名義로 實名化할 경우 세무조사 면제 - 實名化 기간내에 실명전환 하면서 증여세를 자진 납부 하는 경우 세무조사 면제 ○ 記名式 長期低利채권 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행주체: 금융기관 - 발행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채권성격: 실명등록 채권 · 만기: 10年 	관련 '93.8.12

년 월 일	경 제 시 책	배 경 및 취 지	주 요 내 용	비 고
'93. 9. 24	障 碍 人 雇 傭 促 進 基 金 支 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자율: 年3%(30억원미만) 年1%(30억원이상) · 발행단위: 5천만원 - 조성자금의 활용: 공공자금 관리기금에 예치하여 長期 설비투자, 중소기업 지원, SOC투자 등에 사용 o 障 碍 人 작 업 시 설 등 지 원 - 장애인 작업시설, 화장실 등 설치 개선 비용의 2/3 無償지원(年 5천만원 한도) - 장애인용 작업장, 기숙사 신·증축, 통근버스 구입 등의 비용용자 조건 輕減 · 年利 6% → 3% o 장애인 고용촉진 자금지원 대상 확대 - 장애인 고용의무가 없는 300人미만 중소기업까지 	
'93. 9. 25	住 宅 建 設 基 準 改 定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93.9.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단지내 유치원 설치 의 무기준 변경: 500가구 이상 → 1,000가구 이상 · 주택단지내 購 買 시 설 설 치 의 무 폐 지 · 도시형 공장과의 거리가 30m 이상이면 공동주택 건설 허용 	
'93. 9. 27	그린벨트制度 改 善 方 案	그린벨트 주민들의 생활불 편을 덜어주기 위해 일정규 모 이내의 주택 증·개축 허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주민에 대한 주택 증·개 축 허용규모: 연면적 60평 · 전입자 증 5년이상 된 주민 에 대한 증·개축 허용규모: 연면적 40평 	'94.1月 시행

년 월 일	경 제 시 책	배 경 및 취 지	주 요 내 용	비 고
'93.10. 1	사우나탕 新規 營業許可 制限 解除	'91.1月 「폐황사태」 이후 에너지 소비절약 시책의 일환으로 사우나탕 신규 영업허가 제한	· 사우나탕 신규 영업허가 제 한 해제 · 週1回 「정기휴일제」 해제	
'93.10. 1	投金, 綜金の 私金庫化 防止對策	경제력 집중의 폐해를 방지 하고 금융기관이 大株主의 私金庫化 되는 현상을 방지 ※ 「신경제 5개년 계획」 중 1단계('93年中) 추진과제	○ 同一人 與信한도 신설 - 投金社·綜金社의 大株主 및 그 계열회사에 대한 동 일인 여신한도 신설 · 여신한도: 자기자본의 20% ○ 전체 與信한도 축소 - 投金社·綜金社의 대주주 및 그 계열회사에 대한 전 체 여신한도 축소 · 자기자본의 40%이내 → 35%이내 ○ 주식 소유한도 축소 - 投金社의 大株主 및 그 계 열회사 주식의 소유한도 축소 · 자기자본의 10%이내 → 5%이내	
'93.10. 1	外換 管理 制度改善	'93.9.28 「외국환관리 규정」 개정	○ 外換시장 활성화 - 환율의 日日 변동폭 확대 · 기준환율의 ±0.8% → ±1.0% - 外換 포지션제도 개선 · 매입외환 기준과 자기자본 기준 병행 적용 - 원貨의 국제화 · 건당 10만달러 이하 수출 입 거래 및 재보험 거래에 원貨 결제 허용	

년 월 일	경 제 시 책	배 경 및 취 지	주 요 내 용	비 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外換규제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환은행의 사전지급 보증서 발급 허용 - 기술도입을 위한 外貨증권 발생 허용 ○ 外貨의 不法 유출방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 사무소 근로자의 체재비 二重지급 금지 - 여행업자 代理 換錢제도 개선 	
'93.10. 2	地方 生命保險 會社의 持分制限 緩和	지방 생명보험회사의 증자 촉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 생명보험회사의 현행 持分 한도내에서 최대한의 増資 허용 · 失權株 발생시에 한하여 1人持分 40%(최고 수준)까지 허용 	
'93.10.14	葬儀, 結婚式 營業 規制緩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葬儀, 결혼식 영업허가제를 신고제로 전환 · 임대 및 수수료를 告示制를 폐지하고 자율화 	
'93.10.25	上場企業의 經營權 安定 支援對策	'93.10.31 「上場기업의 경영권 안정지원 대책」에 의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上場주식 5%이상 보유상황 公示 강화('94.4.1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투자자의 公示기간 단축: 分期 1회 → 月 1회 - 계열기업군 소속기업이 주식보유 상황 公示時 계열사 보유분을 합산 ○ 계열기업군 소속 非은행 금융기관의 上場 주식 	

년월일	경제시책	배경 및 취지	주요내용	비고
'93.10.25	勞使關係 模範社에 政策 資金 優先支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금융기관: 계열기업군 소속 보험사, 短資社, 綜金社 - 상장주식 소유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 발행주식 총수의 10%이내 · 개선: 의결권과 無의결권 주식을 구분하여 각각 5%이내 - 경과조치: 한도초과 보유 주식은 '94.6.30까지 매각 <p>· 勞使관계 모범업체(3年以上 無紛糾)를 선정하여 각종 정책자금을 우선 지원</p>	'94년시행
'93.10.27	特定物質 使用 合理化 基金 融資金利 引下	CFC 및 HALON 등 오존층 파괴물질의 사용감축과 대체 물질개발 등에 대한 융자 금리 인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개발자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융자비율: 소요자금의 70% 이내 → 90%이내 - 융자금리: 年 6.5% → 5% ○ 시설자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융자비율: 소요자금의 70% 이내 → 90%이내 - 융자금리: 年 7% → 5.5% 	
'93.10.27	業種 專門化 施策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종 전문화 시책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정거래법」상의 자산 총액 기준 30대 기업집단으로 하되 업계가 자율 선택 ○ 대상업종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수산업, 금융보험업, 기타 서비스업 제외 12개 업종을 대상으로 기업이 자율 결정 	

년 월 일	경 제 시 책	배 경 및 취 지	주 요 내 용	비 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大 기업집단은 3개, 11위 이하는 2개의 주력업종 선정 - 신규 참여 업종은 선정대상에서 제외 o 주력업종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年 경과후 변경 가능 o 업종 전문화 유도 시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신규제 완화: 그룹별 3개 이내 주력 기업은 여신 관리대상에서 제외 - 공정거래법상 출자 총액 제한 완화 - 공업입지 및 기술개발 관련 규제 완화 	
'93.10.29	外貨 貸出條件緩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外貨대출비율 상향조정 (대기업: 80% → 90%) (중소기업: 90% → 100%) 	
'93.10.30	自動車運輸業規制緩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운수업의 면허기준과 등록기준을 완화하여 신규 참여 확대 · 택시 운전사의 자격시험 횟수 조정: 每年 1회이상 → 每月 1회이상 	
'93.11.1	第2段階 金利自由化	모두 4단계의 금리자유화 계획 중 '91.11.1 시행된 「1단계 금리자유화」 조치의 후속으로 단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o 與信금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정지원 및 한국은행의 재할인 대상을 제외한 모든 여신금리 	'91.11.1 제 1단계 자유화

년 월 일	경 제 시 책	배 경 및 취 지	주 요 내 용	비 고
		금리의 가격기능을 높여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제고 하고 불건전한 금융관행 근절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受信금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2금융권의 2년이상 長期수신 금리 자유화 ○채권발행 금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기 2年미만 회사채 및 金融債의 발행금리 자유화 - 通貨債와 국공채 발행금리 實勢化 ○자유화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은행與信 中 62%를 자유화 하고, 非은행여신은 100% 자유화 - 은행수신 中에선 40%, 非은행수신 中에선 64%를 자유화 	'94.7.18 제 3단계 부분자유화
'93.11. 5	國債 引受團 運營	할당, 배정에 의한 國債 소화방식에서 탈피하여, 시장 원리에 따른 國債 발행 제도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대상: 국공채 인수 업무 를 허가받은 금융기관 (104개사) · 인수대표단: 1년간 국채발행 조건협의 등 幹社 회사로서의 역할 · 인수방식: 정부와 인수대표 단간에 협의된 발행조건에 따라 인수단이 전액 인수 	'93.12月 시행
'93.11.10	金融機關 增資 및 公開許容	'90.5.8 「증시안정대책」에 따라 금융기관의 增資, 공개 를 억제하여 왔으나, 그동안 금융기관의 영업기반 약화 등 增資, 공개의 필요성 대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기관 增資 규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식발행규모: 총 2,500억원 (납입금액 기준) - 금융권별로 필요성,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주식발행 물 량 배분 	관련 '90.5.8

년월일	경제시책	배경 및 취지	주요내용	비고
'93.11.23	實名制實施에 따른 土地去來許可制 解除		<ul style="list-style-type: none"> o 주식매입 의무 - 增資: 공개자금의 50%를 주식매입자금으로 사용토록 의무화 · 실명제 實施日로부터 3개월간 限時的으로 全國土에 적용되던 토지거래허가제 해제 	
'93.11.26	海外 直接投資 活性化	'92.8.29 「해외직접투자제도 개선」 시책의 후속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o 해외 직접투자 자유화 범위 확대 - 제조업에 대한 해외투자제한 폐지(8業種) · 중요기술 해외이전의 우려상실(3種, 營業隨件 화학 섬유제조업 등) · 수입자유화업종(3種, 적토 벽돌 제조업 등) · 과다경쟁 우려로 투자제한한 업종(2種, 섬유제품제조, 기성복 제조) - 제조업에 대한 해외투자제한 완화(3種) · 기계류, 운동구류, 완구류 등의 1個國當 투자업체수: 15개업체 → 30개업체 - 非제조업에 대한 해외투자제한 완화 · 도소매업, 보관·창고업, 음식점업 등 o 해외부동산 취득범위 확대 - 보험회사의 자산운용 목적 부동산 취득허용 	'93.12월 시행

년 월 일	경 제 시 책	배 경 및 취 지	주 요 내 용	비 고
'93.11.27	銀行保證 定額 家計手票 制度 施行	가계수표의 이용 확대를 통 하여 금융실명제 조기정착을 도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근무자 개인의 주거용 주택 취득가능 (30만달러 이하) - 디자인 연구개발을 위한 부동산 취득 가능 o 해외투자 허가기관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韓銀 및 한국수출입은행의 에 産銀과 중소기업은행을 해외투자 허가기관에 추가 o 은행보증 대상 및 보증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계당좌예금 開設者 중 신용이 양호한 자를 대상 - 보증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 3천만원 · 自營業者: 5천만원 o 가계수표의 종류 및 취급 은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액수표로 4개종류 발행 (10, 50, 100, 200만원권) - 가계당좌예금을 취급하는 31개 소은행에서 취급 	
'93.12. 1	外國人 投資者 海外借入 및 組稅惠澤 擴大		<ul style="list-style-type: none"> o 시설재 수입자금용 해외차입 허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용대상기업: 일반 제조업 의 외국인 투자기업 - 허용한도: 외국인 투자금액 의 50% o 해외차입한도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高度기술 보유 외국인투자 기업에 대하여 해외 차입한 도 확대 	

년월일	경제시책	배경 및 취지	주요 내용	비고
'93.12. 6	關稅制度 改善	「관세법 시행령」 개정 ('93.1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입한도: 외국인투자금액의 50% → 75% · 製造前 수출신고 시기와 방법 구체화: 제조완료일 5日 前부터 신고가능 · 수입예정 신고 시기 구체화: 선박(항공기)이 수출국 항구(공항) 출항시 이후 수입예정 신고 가능 · 수입면허후 관세납부 명시 · 세관감시 기능 강화에 따른 집행절차 구체화 · 保稅區域 설정 특허기간 연장: 3년 → 10년 	'94.1.1 시행
'93.12. 8	廢資源 使用 義務化	再活用 지정 사업자 등에 대한 「재활용지침」 통합 고시('93.1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再活用 지정 제조업: 종이, 유리용기, 철강, 프라스틱제품 · 일정규모이상의 재활용 지정 사업자에 대하여 폐자원 사용을 의무화 	
'93.12.10	關稅 還給制度 改善	중소기업에 대한 簡易 定額 환급 적용제한 폐지 ※ 「관세환급 특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93.12.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簡易定額 환급 적용대상의 件當 수출금액 제한(10만달러)폐지 · 간이정액환급업체 범위확대: 年間 환급실적 5천만원 이하 → 1억원 이하 	
'93.12.12	環境影響 評價 強化	「환경영향 평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제정('93.12.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영향 평가대상 사업확대 - 일정규모이상의 주택·市街地 조성 등 사업을 환경영 	

년월일	경제시책	배경 및 취지	주요내용	비고
'93.12.14	稅制改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 평가대상 사업에 추가 · 주택·시가지 조성 (30만㎡이상) · 국방·군사시설 (33만㎡이상) · 유통단지 조성 (20만㎡이상) ○ 事後환경 영향조사 의무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工團개발, 발전소, 항만건설 등의 사업시행자는 완공후에도 사후환경 영향조사 의무 - 의무기간: 완공후 최장5年間 · 임시투자세액 공제제도 時限 1年연장: '93.12→'94.12月末 · 損費인정 기술개발 준비금 적용대상확대: 고유상품 및 디자인 개발비 · 農家부업소득 비과세 한도 확대: 500만원 → 600만원 · 자산 재평가 기업공개 시한 연장: 5年 → 8年 	
'93.12.16	土地利用規制緩和	[국도이용 관리법 시행령] 개정('93.12.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도지역의 축소 및 단순화: 10개용도지역(7개용도지구) → 5개용도지역(5개용도지구) · 준농림지역안에서의 행위 제한 완화 · 5年단위의 토지需給 계획제도 도입 	관련 '93.7.1

년 월 일	경 제 시 책	배 경 및 취 지	주 요 내 용	비 고
'93.12.23	中古船舶 導入基準 緩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中古 카페리의 도입 船齡 완 화: 10年이하 → 15年이하 · 4천톤이상 中古 일반화물선 및 벌크船 도입 허용 · 1천톤미만 中古 철강재 운반 선 도입 船齡 및 톤수제한 폐지 	
'93.12.23	小賣商의 連鎖事業 規制 緩和	유통시장 개방을 앞두고 가 장 큰 타격이 예상되는 중소 상인들의 協業化와 조직화를 유도 ※ 「소매상의 연쇄화 사업 운영 요령」 개정 ('93.12.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쇄화사업 지정 요건 완화: 지정요건 중 보관시설, 운송 장비, 販賣士 등 3개 요건 폐지 · 加盟店 인정기준 완화: 평균 매출액의 30% 이상을 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점포 (중전 50%이상) · 사업자 변경신고를 사후신고 로 전환 · 대표자 변경신고시 실질자본 진단 절차 폐지 	'95.3.14 후속조치
'93.12.28	廢建築資材 再活用 義務化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廢塵資材 再사용 의무화 사 업장 - 年間 시공금액이 250억원 이상 사업자 · 일정규모이상의 콘크리트, 아스콘 또는 土砂 발생 사업장 	
'93.12.29	戰略技術 輸出規制 緩和	「전략기술 수출공고」 개정('93.12.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통제대상 전략물자, 기 술의 범위 축소 · 수출통제기준 완화 	

년 월 일	경 제 시 책	배 경 및 취 지	주 요 내 용	비 고
'93.12.30	醫藥品 價格制度改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약품가격의 전면 자율화 - 가격통제를 받아 오던 69개 행정관리 품목 폐지 ○ 의약품 표준소매가격 제도 개편 - 시중가격이 표준소매가격보다 20%이상 낮을 경우 정부가 이들 품목에 대해 가격인하 조치 	
'93.12.31	豫算制度改善	재정운용의 건전성을 높이고,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 강구 ※ 「예산회계법」 개정 ('93.12.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國庫債務부담행위제도 개선 - 신속하게 재해복구를 할 수 있도록 每 회계년도마다 국회의결 범위안에서 국고채무부담행위 가능 ○ 예산 總額 計上 사업 - 예산 배정전에 사업시행계획 수립 ○ 예산 移越제도 개선 - 입찰공고후 지출원인행위까지 長期間이 소요되는 경비는 다음 회계년도 移越가능 ○ 歲計 잉여금 처리방법 개선 - 일반회계 歲計 잉여금을 「재정 투융자 특별회계」 및 「국채관리기금」으로 발행한 國債의 元利金 상환에 사용가능 ○ 공사계약의 瑕疵 담보 책임기간 연장 - 上限: 5年 → 10年 	

년월일	경제시책	배경 및 취지	주요내용	비고
'94. 1. 1	<NAFTA 發效>	北美 자유무역 협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 캐나다, 멕시코 3國間的 자유무역 협정 · 관세 및 非관세장벽 제거, 原產地규정 강화, 투자제한 규정 철폐 	
'94. 1. 1	輸入 農水産物 原産地 表示 義務化	<p>공정한 유통거래질서 확립 과 소비자 보호 목적</p> <p>※ '93.11.19 「수입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요령」 제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 · 원산지 표시대상: 전체 농수산물 255개((HS 4단위) 중 186개 품목 	관련 '94.5.16
'94. 1. 1	輸入 自由化 推進	<p>'91.4.1 발표한 '92~'94年 「수입 자유화 계획」에 의거 추진</p> <p>※ '93.12.21 「수출입 공고」 개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축수산물 45개 품목 및 1개 공산품(견직물) 수입을 자유화(농산물 14, 축산물 9 수산물 22) · 수입 자율화율: 98.1%('93年)→98.6%('94年) 	관련 '91.4.1
'94. 1. 1	企業의 外貨資金調達 擴大 措置	<p>기업의 설비 투자를 활성화 하고 국제 경쟁력을 제고 하기 위해 기업의 外資 조달 기회를 지속적으로 확대</p> <p>※ '93. 10. 29 「기업의 外貨자금 조달 확대 방안」 마련</p>	<p>o 外貨 대출제도 개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자대상 확대 · 제조업시설 再附着 부분 품, 中古선박 · 중소기업의 첨단기술 용역 비 및 도입비 - 용자기간 연장 : 8年以內 → 10年以內 - 용자비율 인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기업 : 80% → 90% · 중소기업: 90% → 100% <p>o 해외증권 발행제도 개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행조건 용도 확대 	

년 월 일	경 제 시 책	배 경 및 취 지	주 요 내 용	비 고
'94. 1. 1	尖端 및 防衛産業 關稅 減免 期間延長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식 連繫증권(CB, BW, DR): 최신 기술용역비 및 도입비 · 주식 非연계증권(고정금리부, FRN): 특정 해외시장 개척자금 - 발행 자격 조건 완화 · 주식 非연계증권 국제신용등급 A→BBB · 첨단산업 및 방위산업용 시설재 수입에 대한 관세감면 물품 지정기한 연장: 93年末 → 97年末 · 감면을 축소조정: 40% → 20~35% 	
'94. 1. 1	油價 連動制 實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 原油價 連動率을 감안하여 每月 15日에 油價조정 	
'94. 1. 5	建築士 報酬基準 變更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설계비 및 건축공사 감리비 현실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계·감리에 대한 報酬 算定방식 변경: 공사비 基準料率 방식 → 투입 인력 기준정액 積算 방식 · 공사 감리 건축사의 업무 범위 구체화: 시공계획 및 施工圖의 적합성, 주요 機資材 검토, 시험 성과표확인 	
'94. 1. 5	綠色 申告制度 實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녹색신고(그린카드)제도 - 수입업자가 수입 농산물에 사용한 농약성분을 원산지, 유통경로별로 자진신고 	

년 월 일	경 제 시 책	배 경 및 취 지	주 요 내 용	비 고
'94. 1. 11	都市 再開發 業務 改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제사항 아닌 권장사항이므로 성실 신고자에 대하여는 각종 우대 조치 ○ 재개발사업 공사 시공업체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전: 주택건설 지정업체 (110여개)만 재개발사업 공사 시행 - 개선: 6,600여개 등록업체 모두 재개발사업 시공가능 ○ 國公有地 매입 협의 시기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입 협의시점: 사업시행 인가→재개발사업 지정고시 	
'94. 1. 11	<EU의 2段階 經濟通貨統合>	마스트리히트 조약에 의한 ('93.11月 발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럽 경제통화 동맹(EMU)의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단계('90.7月 이후): 모든 EC통화의 환율조정 장치(ERM) 가입 	
'94. 1. 14	證市安定 對策 (1·14 措置)	주식시장의 異常 急騰勢에 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은행 등 기관투자자들에게 買收 自制 요청 · 증시안정기금 보유주식 중 8천억원 畧量 매각 · '90.5.8 「부동산 투기 억제 및 물가안정」 조치에 따라 금지된 貸株制 부활 · 기관투자자 및 외국법인에 대해 위탁 증거금 부과 	'94.1.28 후속조치

년월일	경제시책	배경 및 취지	주요내용	비고
'94. 1.15	外國人 投資 企業의 海外 借入에 대한 制限 緩和	외국인 투자 활성화를 도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 제조업을 영위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시설재 수입자금에 한해 외국인 투자금액의 50%범위내에서 해외차입 허용 · 高度기술 수반 외국인 투자기업의 해외 차입한도 확대: 외국인 투자금액의 50%→75% 	
'94. 1.18	官給 資材 品質管理 改善方案	부실공사 방지 대책의 일환	· 기동점검반을 구성하여 레미콘, 아스콘 등 시멘트 가공제품의 현장검사 실시	
'94. 1.20	與信管理制度 改善	「계열기업군에 대한 여신 관리 시행 세칙」 개정 ('94.1.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1~30대 계열기업군에 대한 기업투자 및 부동산 취득 승인관련 제도 폐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거래 은행의 사전승인 또는 사후 신고제 폐지 - 기업투자 및 부동산 취득에 대한 自敎노력 의무 폐지 - 비업무용 부동산 처분 의무 폐지 ○ 업종 전문화 시책을 위한 주력업체 제도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력 기업에 대한 여신한도 (basket) 관리 제외 - 1~10대 계열기업군 소속 주력 기업에 대한 自敎노력 의무 경감 	
'94. 1.25	<貿易業務 自動化 開始>		· 수출입 승인, 신용장 개설 등의 무역업무가 전자 문서교환(EDI)방식으로 자동처리	

년 월 일	경 제 시 책	배 경 및 취 지	주 요 내 용	비 고
'94. 1. 27	價格表示制度 改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상은행: 32개 외국환은행 가격표시대상 제외품목: 시멘트, 타일 등 8개 품목 가격표시대상 포함품목: 礮石요, 무선호출기 등 14개 품목 	
'94. 1. 28	證市安定對策 (1.28 措置)	'94.1.14 「증시안정대책」 의 후속조치로서 주식시장의 과열현상 해소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개, 增資를 통한 新株 공 급규모 확대: 5조원→6조원 기관투자가 보유주식 매각 확대: 2조원 → 3조원 민영화 추진 관련 주식매각 (외환은행, 국민은행, 한국 통신 등): 1조2천억원 	관련 '94.1.14 '94.2.7 후속조치
'94. 2. 1	電氣使用 制限 緩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무실과 일반공장의 백열燈 사용 및 엘리베이터 운행 제한 등 폐지 네온사인, 電子式 전광판 등 전기사용 규제 완화 ('95.1月 시행) 	
'94. 2. 7	證市安定對策	'94.1.14 및 '94.1.28 「증 시안정대책」의 후속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탁 증거금률 인상 (개인투자: 40% → 80%) (기관투자: 20% → 40%) 고객예탁금 금리인하: 年 4% → 1% ('94.2.18 시행) 신용융자한도 축소: 자기자본의 18% → 12% 	관련 '94.1.28

년월일	경제시책	배경 및 취지	주요 내용	비고
'94. 2. 15	海外證券發行 規制緩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 증권발행에 대한 승인제도와 해당 주식의 株價 변동 심사제도 폐지 · 국내 증권사가 같은 그룹에 속하는 기업의 해외증권 主幹社 업무를 못하도록 한 규제조치 해제 · 해외 증권발행 관련 절차 간소화 	
'94. 2. 15	石油類 彈力 稅率 調整	'94.1.1 시행 「油價 변동제」에 따라 每月 油價를 조정하게 되었으나, 교통세 稅收감소로 교통시설 특별회계의 財源부족 우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휘발유: 150% → 190% · 경유: 20% → 25% · 등유: 10% → 13% 	
'94. 2. 16	國債의 競争 入札方式 變更	채권시장 활성화 및 實勢금리 발행제도 정착을 도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國債 입찰방식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消化방식: 부분 경쟁입찰 → 全額 경쟁입찰 - 발행금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전: 單一금리(낙찰 최고 금리를 一律 적용) · 개정: 複數금리 (各 落札價의 낙찰금리) 	
'94. 2. 25	外換規制緩和	「外換관리규정」개정 및 「外換관리규정 관련 통첩」시행('94.2.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상지급 규제 금액 상향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용역 계약 認證대상: 10만달러 초과 → 30만달러 초과 - 은행 認證대상 해외 사무소 유지 활동비: 사무소당 月 1만달러이하 → 月 2만달러이하 	

년 월 일	경 제 시 책	배 경 및 취 지	주 요 내 용	비 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환매각 실적없는 비거주 자 원貨의 外貨 환전 한도: 500달러 → 2천달러 o 외환 집중제 완화 - 해외 외화보유 대상기업: 종합상사 및 수출입 실적 1억달러이상 기업 → 종합상사 및 수출입 실적 1천만달러 이상 - 해외 外貨보유 한도: 전년도 수출입 실적의 10%이내(최고 1억달러) → 수출입 실적의 30%이내 (최고 3억 달러) - 해외 채권 보유 한도: 2천달러이하→2만달러이하 o 기관투자자의 해외 증권투자 활성화 - 증권사, 투신사, 보험사의 투자한도 폐지 - 年基金, 단자사의 투자한도 확대: 5천만달러→1억달러 - 투자대상 확대: 상장증권, NASDAQ(전국 증권업협회 자 동 呼價 시스템) 등록 증권 등에 韓銀 지정 외화증권 추가 o 기업의 現地금융 규제 완화 - 기업의 현지금융 한도제 폐지(종전: 전년도 수출실 적의 50%이내 등) - 기업 해외지점의 자체 신용 에 의한 현지금융은 은행 認證 면제 	

년월일	경제시책	배경 및 취지	주요내용	비고
'94. 2. 28	海外投資 擴大 方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산운용 목적의 해외 부동산 투자 허용 - 보험, 은행, 증권, 단자사: 총자산의 5%이내 - 종합무역상사: 1억달러 - 年基金 등: 5천만달러 ○ 해외투자 절차 간소화 - 1천만달러이하 사업: 韓銀 신고만으로 해외투자 가능 - 30만달러이하 사업: 거래 외국환 은행의 認證만으로 해외투자 가능 	
'94. 2. 28	先 輸出 및 後 通關 制度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정한 조건을 갖춘 수출업자는 물품을 먼저 수출 · 수출신고, 수출 면허발급 등 통관절차는 수출후에 一定 期間分을 일괄처리 	
'94. 3. 1	에너지 節約型 設計 義務化	'94. 2. 17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 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숙박시설, 병원, 수영장 등 에너지 소비가 많은 건물 건축시 에너지 절약형 설계를 의무화 · 시행지역: 서울, 부산 등 6大도시(기타지역은 '95. 1. 1시행) 	
'94. 3. 2	外資導入 規制 緩和	「외국인 투자에 관한 규정」 개정('94. 3.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 투자제한 완화 - 정부 특별지원을 받거나 에너지 과다 소비산업, 사치성 산업 등에 대한 투자제한 폐지(투자허용) 	

년월일	경제시책	배경 및 취지	주요내용	비고
'94. 3. 3	商業어음 擔保貸出 擴大	담보력이 취약한 영세 중소기업 지원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정거래법 위반 등의 신고 수리 거부 사유 축소 - 외국인투자 신고 대상업종을 인가대상업종으로 전환하는 제도 폐지 ○ 외국인 투자 認可外 사업규제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 투자비율 10%미만 기업은 認可外 사업에 대한 규제 철폐 - 외국인 투자비율 10%이상 기업의 경우 「신고대상업종」은 認可外 사업허용 ○ 他社 주식 취득제한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 투자비율 50%이상인 기업이 타사 주식 취득시 사전신고(중전 사전허가제) ○ 투자 절차 간소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억원이상의 투자 인가 또는 신고 신청시의 거래은행 지정제도 폐지 - 출자목적의 자본재 도입절차 간소화 - 신고서 등 처리기간 단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고: 20~30日 → 즉시 · 인가: 30日 → 5日 · 조세감면결정: 60日 → 30日 · 상업어음 담보대출이 가능한 신용협동조합과 새마을금고의 자산 기준 완화: 200억원이상 → 100억원이상 	

년 월 일	경 제 시 책	배 경 및 취 지	주 요 내 용	비 고
'94. 3. 3	證券去來制度 改善	증권거래법 시행령 및 시행 규칙 개정('94.3.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上場법인은 「가처분 이익잉여금」 범위안에서 발행 주식의 5%까지 自社 주식 취득 허용('94.4.1시행) · 上場주식의 대량보유에 대한 公示 의무 강화 	
'94. 3.22	事業 施行者의 公共施設費 負擔	공공시설 설치未備 또는 遲延으로 인한 주민 불편해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지 구획정리사업의 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사업 시행자가 상하수도, 진입도로 등의 공공시설비 부담 	
'94. 3.29	農地轉用 規制 緩和	토지이용의 효율성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준농림지역에서 주택이나 공장설립 등이 가능하도록 농지 轉用 허가 · 농수산부의 농지 轉用 권한을 市道(市郡)에 위임 	
'94. 4. 1	金融機關 店鋪 設置 自由化	금융기관의 자율과 창의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내부 경영 자율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점포설치, 이전 등에 대한 규제 폐지('94.3.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점포 운영의 자율성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점포 立地, 移轉 기준 폐지 - 店外 ATM설치시의 사전신고를 사후신고로 전환 - 점포 폐쇄, 格下時의 재사용 定數(4개)제한 폐지 - 출장소 신설 定數의 축소 - 지방은행 점포 신설의 단계적 허용 ○ 점포 신설 定數 책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기관 그룹별로 「표준 신설 定數」 책정 - 일정 자율화 요건충족 은행과 未充足 은행간 차등적용 	

년월일	경제시책	배경 및 취지	주요내용	비고
'94. 4. 1	保險會社 店鋪 設置의 自律化 擴大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年間 점포 설치 한도 확대 (生保: 60개 → 70개) (損保: 35개 → 50개) · 종전 점포 설치 한도내에서 개별인가 하였으나 이를 자유화 · 損保의 경우 종전 同一 市道內에서만 移轉이 허용되었으나 이러한 지역 제한 폐지 	
'94. 4. 1	投金, 綜金社 經營 評價制度 導入	금융기관의 자율성 확대에 상응하고 책임 경영 체제를 확립하며 수익성 및 건전성 제고 노력을 유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영평가기준」에 따라 매 사업년도마다 投金·綜金社의 경영실적 평가 · 평가결과는 增資, 배당, 점포 검사 등 감독업무에 정책 자료로 활용 	
'94. 4. 7	下都給法 適用對象 擴大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도급법 적용대상에 소프트 웨어 개발, 기술용역 위탁업종과 건설업의 資材 제조 위탁업종을 포함 	
'94. 4. 8	首都圈 建築 規制緩和	「수도권 정비법 시행령」 개정('94.4.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過密負擔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비의 5~10%를 과밀부담금으로 市道에 납부하면 대형 건축물의 신·증축 가능 ○ 過密 억제 圏域과 성장관리 권역에서의 개발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도권 심의 위원회 심의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업용지: 30만㎡초과 · 관광지 : 10만㎡초과 	

년월일	경제시책	배경 및 취지	주요내용	비고
'94. 4. 15	海外 中古 建設裝備 輸出入 規制 緩和	경제 행정규제 완화 시책의 일환 ※ 「수출입 별도 공고」 개정('94. 4. 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理工系 대학 증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5년까지 理工系 대학 정원을 每年 2천명씩 증원 · 해외에서 수입되어 평화의 담, 간척사업 등 특정용도에 사용하고 他용도로 轉用이 허용되지 않던 中古 건설장 비에 대해 해외 재수출 전면 허용 · 해외 건설현장 등에 所在한 中古 건설장비중 국산장비에 대해 국내수입 전면 허용 	
'94. 4. 15	<UR 協商終結>	냉전체제 붕괴이후 점증해 온 각국의 보호무역주의와 이에따른 통상마찰을 해소하 고, 무역의 확대균형을 위한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하여, '86. 9月 우루과이의 「폰타델 에스테」에서 UR협상시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산물 교역 자유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산물 교역의 非관세 장벽 을 없애는 대신 외국 농산 물과의 가격 차이만큼 관세 부과 - 국내농업에 대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例外없는 관세화 ○ 공산품 관세 인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국의 관세율 협상이 공식 선언된 '86. 9月과 對比 향후 5年內 3분의 1이상 인하 - 일부품목은 일정기간내 관 세를 전면 철폐 · 각국간 관세율 차이가 심 한 품목의 경우 5.5~6.5% 수준으로 관세율을 하향 평준화 · 관세철폐 대상품목: 	'95. 1. 1 WTO출범

년 월 일	경 제 시 책	배 경 및 취 지	주 요 내 용	비 고
			<p>철강, 건설장비, 의약품 등 8개분야 75개품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인하 품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화학제품 등 196개 품목 <p>o 서비스 교역 자유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방, 치안 등 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외한 모든 서비스의 개방 - 금융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기관의 설립 등 외국 금융시장에의 자유로운 진출 · 외국 금융기관에 대해 국내 금융기관과 동등한 영업활동상의 대우 보장 <p>o 知的 재산권 보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종 국제규범에 의해 보호되던 특허, 의장, 상표, 저작권외에도 Computer Program, Database, 반도체 칩 등과 같은 새로운 분야까지 폭넓게 보호 <p>o 무역거래 공정성 확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反덤핑제도의 명료화 - 보조금 및 相計 관세제도의 운용기준 마련 - 통상분쟁 해결의 공정성을 위해 세계무역기구(WTO) 설치 	
'94. 4. 18	兵役 特例對象 農水産物 加工業體 指定	「병역의무 특례에 관한 법률」 개정('94. 4. 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傳統식품 등 농수산물 産地 가공업체를 병역의무 特例 업체로 지정 	

년 월 일	경 제 시 책	배 경 및 취 지	주 요 내 용	비 고
'94. 4. 22	國策銀行 民營化 推進方案	일반은행의 정책 금융 및 설비자금 공급 축소에 대응 하여 특수은행을 정책금융 및 장기 설비자금 전문 공급 기관으로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정업체 근무 병역의무 특례자는 3年間 계속 근무시 병역의무 면제 ○ 대상기관별 추진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은행('94年): 국민은행법 폐지 및 민영화 추진 - 외환은행('94~'95年): 정부 및 韓銀 持分 매각 - 기업,주택은행('96~'97年) '94~'95年中 民資 참여 확대 ○ 국민은행 민영화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納入기준 2천억원 수준의 增資('94. 8月) - 공개 경쟁입찰 방식으로 정부 持分 매각('94. 11月) 	
'94. 4. 27	投信社 經營 評價制度 導入	금융개방에 대처하기 위하 여 금융기관의 책임 경영체 제 확립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 사업년도마다 「경영 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 실시 · 평가 결과를 점포 신설 등 각종 인허가 또는 감독업무 등에 정책 참고자료로 활용 	
'94. 5. 9	與信管理制度 改善	'94. 5. 7 「금융기관 여신 운용 규정」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은행의 중소기업 대출의 무비율 하향조정: 80%→70% · 제조업 대출 지도비율 조정 (시중은행: 55% → 50%) (지방은행: 폐지) · 농공단지 개발관련 여신허용 대상 확대: '91. 11月 이전 지정 농공단지 → '91. 11月 이전 지정 및 향후에 지정되는 모든 농공단지 	

년월일	경제시책	배경 및 취지	주요내용	비고
'94. 5.14	對外貿易 規制緩和	「對外무역 관리 규정」 개정 ('94.5.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광단지 소재 호텔, 여관 등 시설자금에 대한 여신 허용 · 사치성 소비재 수입, 호화예식장 등에 대한 여신 취급을 억제한 한국은행 통첩(9개) 폐지 · 위탁가공무역, 산업설비 수출시 소요되는 資材의 현지 조달 허용 · 輸入先 다변화 품목 수입 승인기관을 모든 외국환 은행으로 확대 	
'94. 5.15	農漁村 發展 對策	「농어촌 발전 특별 조치법 시행규칙」 개정 ('94.5.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農漁業士는 시장, 군수의 추천을 받아 농수산부장관이 선발 · 委託營農회사 설립자의 자격 중 농민의 居住요건 폐지 · 自營農家は 농지를 10ha까지 소유 가능(농지매매 증명이 있을 경우 20ha까지 소유 가능) 	관련 '94.5.21
'94. 5.16	國產 農水産物의 原産地 表示 義務化	<p>현재 「대외무역법」에 의거 수입 농수산물에만 원산지 표시('94.1.1 시행)</p> <p>※ 근거법률: 「농수산물 가공산업 육성 및 품질 관리에 관한 법률」 ('94.5.16)</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原産地 표시 國產 농수산물: 총 65개 품목(농산물 26, 임산물 9, 축산물 7, 수산물 23) 	관련 '94.1.1

년월일	경제시책	배경 및 취지	주요내용	비고
'94. 5. 21	農地 買入時의 農地 所在地 居住要件 廢止	「농지 임대차 관리법 시행규칙」 개정('94. 5. 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非농민이 신규 營農을 목적으로 농지를 매입할 경우 농지 所在地에 事前 6개월간 거주해야 하는 「居住要件」 폐지 	관련 '94. 5. 15
'94. 5. 25	政府工事 落札者 選定 方法 變更	낙찰 예정가격의 사전 누출 방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낙찰 예정가격을 5개 작성 (종전 2~5개) · 낙찰 예정가격 중 2개를 추천하여 이의 평균가격을 예정가격으로 결정 	
'94. 5. 29	<바젤協約 發效>	'93. 12. 7 「廢棄物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젤협약 가입국 이외의 국가와는 폐기물의 수출입 전면 금지 · 협약 가입국간에도 兩國 정부의 승인 없이는 폐기물 수출입 금지 	'94. 5. 27 후속조치
'94. 6. 1	外換規制 緩和	'94. 5. 17 「외국환 관리규정」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환은행 업무의 자율성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갑류, 을류 외국환은행 구분 폐지 - 외국환은행 해외 차입 및 대출업무 자유화 ○ 외환 집중제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주자의 外貨 매각, 예치 의무 폐지(단, 5만불 초과 소지시에는 등록의무) - 최근 3개월간 외환 매각 실적 범위내에서 개인 거주자의 매입, 所持 허용 	

년 월 일	경 제 시 책	배 경 및 취 지	주 요 내 용	비 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상 외환거래 자유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상거래 지급 제한품목 축소: 109건 → 61건 ○ 기술개발 관련 외화 지급 자유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 연구개발기관 또는 해외 현지 법인의 연구개발사업 경비 송금시 주무부장관 추천제도 폐지 - 기술도입 및 기술용역대가 지급시의 외국환은행 인증 절차 폐지 ○ 자본거래의 자유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 광고 선전비, 해외 자원 조사·개발비 등의 현지 차입 절차: 韓銀허가 → 지정거래 은행장 認證 - 국내기업 해외지사 및 현지 법인에 대해 해외 선물거래 등을 위한 현지 차입 허용 - 중소기업 전환사채(CB)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 허용 ○ 수출입 결제조건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無신용장 인도조건(D/A) 방식의 延拂 수출기간: 2年이하 → 3年이하 - 유망 중소 제조업체의 수출자 신용에 의한 내수용 延支給 수입기간 연장: 60日 → 90日 ○ 원貨의 국제화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당 30만달러이하의 무역거래와 재보험 거래의 원화결제 허용 	

년월일	경제시책	배경 및 취지	주요내용	비고
'94. 6. 1	舊共産圈에 대한 輸出統制 緩和	공산권에 대한 전략물자 수출통제기구인 COCOM이 '94.3月末 해체됨에 따라 일반 산업용 전략물자 등의 공산권 수출 통제를 완화 ※ 「전략물자 수출입 공고」 개정('94.6.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거주자 자유원계정 (Free Won a/c)에의 예치 또는 처분요건 완화 • 중국, 러시아 등 수출제한 대상 16개 국가 중 북한을 제외한 15개 국가를 전략물자 수출 제한지역에서 해제 • 일반 산업용 물자 중 전략물자로 분류된 195개 품목 중 152개 품목을 일반 수출허가 품목으로 전환 • 대형 컴퓨터 등 수출 허가금지된 첨단기술품목 중 43개 품목을 수출가능 품목으로 분류 	
'94. 6.10	系列企業群 與信管理制度 改善	「계열기업군에 대한 여신 관리 시행 세칙」 개정 ('94.6.9)	<ul style="list-style-type: none"> o 1~10대 계열기업군 소속 기업체의 해외 영업활동 규제 전면 폐지 - 주력기업의 해외 無關업종에 대한 기업투자 및 부동산 취득 허용 등 o 1~10대 계열기업군 소속 기업체의 自救 면제대상 확대 - 건설업자의 매각 조건부 부동산 중 분양용 건물, 근로자 복지후생시설용 토지 등에 대한 자구노력 면제 	
'94. 6.15	自動車 貸與 事業 登錄基準 制定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全國 자동차 대여사업: 자본금 150억원, 차량대수 5천대 • 地域 자동차 대여사업: 자본 	

년 월 일	경 제 시 책	배 경 및 취 지	주 요 내 용	비 고
'94. 6. 20	個人年金 制度 施行	기존의 公的 연금, 퇴직금 제도를 보완하여 개인의 노 후 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하고, 금융권의 長期 受信기반 확충에도 기여 ※ '94. 1. 25 「개인연금 제도 도입방안」 수립 '94. 5. 17 개인연금 저축 취급기관 확정	금 2억원, 차량대수 50대 ○ 개인연금 제도의 주요내용 - 명칭: 개인연금신탁, 개인연금보험 - 저축기간: 불입기간 10年 이상+연금지급기간 5年이상 - 연금 지급조건 · 불입기간 만료 · 수익자 연령 만 55세이상 · 불입누계액 100만원이상 - 이익배당은 실적배당 - 취급기관: 은행(신탁), 投信社, 보험사, 農·水·畜協 단위조합(共濟), 체신관서(보험) 등 ○ 稅制지원 - 소득공제 및 이자소득 非과세	
'94. 6. 25	中小企業 專擔 指導役 制度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배양 하고, 국내외 경제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	· 중소기업체별로 전담지도역 (Home Doctor System)을 지정 · 전담 지도역은 일정기간 당 해 중소기업 사후관리 및 지도 실시	
'94. 6. 30	農漁民 年金 制度 實施方案		○ 농어민 연금제도의 대상 - 농어촌(郡)에 거주하는 18 세이상 60세미만 농어민과 自營業者 ○ 각출료율 및 급여체계 - 각출료율은 표준 소득月額	'95. 7. 1 시행

년월일	경제시책	배경 및 취지	주요내용	비고
'94. 6. 30	農業目的 干拓事業 民間參與 許容	「공유수면 매립법」 상으로 는 간척사업에 민간 참여가 허용되어 있으나, 특정인의 과다 토지점유 및 부동산 투 기, 바다 매립에 따른 어업 권 보상문제 등을 우려하여 그동안 민간 참여를 사실상 제한	의 3%로 하되 每 5年마다 3%씩 상향조정 - 國庫에서는 농어민에 한해 서만 매월 2,200원씩 각출 료 지원(10年間) - 급여체계는 현행 국민연금 체계를 그대로 적용 - 관리 운영비는 전액 國庫지 원 · 향후 농업목적의 대규모 간 척사업에 민간 참여 허용방 침	
'94. 7. 1	農漁村 特別稅法 施行	WTO체제의 출범으로 어려움 을 겪게 될 농어촌의 경쟁력 강화, 산업기반 시설 확충 등에 필요한 財源 확보 목적 ※ '94.3.24 「농어촌 특별 세법」 공포	○ 과세표준 및 세율 - 組稅 감면액: 20% · 소득세, 법인세, 관세, 취 득세, 등록세 등의 減免分 - 저축 감면세액: 10% · 이자 및 배당 소득 減免分 - 증권 거래금액: 0.15% - 법인세 과세표준 5억원 초과금액: 2% - 취득세액: 10% - 종합토지세액 500만원 초과금액: 10~15% - 馬券稅額: 20% ○ 財源의 사용 - 농어촌 특별세는 全額 농어 촌 특별세 관리 특별회계에 편입	

년월일	경제시책	배경 및 취지	주요내용	비고
'94. 7. 1	債券市場 開放 推進方案	<p>'93.6月 「제 3단계 금융 자 율화 및 시장개방 계획」에 의한 단계적인 채권시장 개 방 추진방안</p> <p>※ '94.5.3 「'94 채권시장 개방 추진방안」 마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기술개발, 농수산물 유통개선, 주택개량 등에 사용 o 시행기간(限時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4.7.1부터 2004.6.30까지 (10年間) 限時的으로 시행 o 중소기업 전환사채(CB)에 대한 외국인 직접 투자허용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적격 증권: 上場 중소 기업이 발행한 無보증 上場 전환사채(CB) - 투자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액한도: 당분간 총액한 도 설정없이 허용 · 종목별 전체 투자한도: 중 소기업 CB 상장금액의 30% · 종목별 1인당 투자한도: 중 소기업 CB 상장금액의 5% - 투자 절차 및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의 최초 채권투자시 증권감독원에 채권투자 등록 · 외국인의 중소기업 CB매매 는 거래소 시장을 통해서 만 허용 · 외국인이 취득한 중소기업 CB는 증권예탁원에 집중 예탁 의무화 · 중소기업 CB 투자 元金 및 果實의 자유로운 송금허용 o 국제금리 수준의 低利 國公 債에 대한 외국인의 발행시 	

년월일	경제시책	배경 및 취지	주요내용	비고
'94. 7. 1	一般投資家の 海外証券 直接投資 許容	'93.6月「제 3단계 금융 자 율화 및 시장 개방 계획」에 의해 자본시장 개방 일정수 립 ※ '94.4.29「일반 투자가 의 해외증권 직접 투자 허용 방안」마련	<p>장인수 허용방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證管委」가 대상 국공채 및 인수 한도 지정 - 증권감독인으로부터 채권 투자 등록증을 발급받은 외국인에 한하여 低利 국공채 인수 허용 - 내국인에게만 매각 허용하여 국공채 유통시장 개방방지 - 국공채 매각자금 및 원리금의 자유로운 송금 허용 <p>○ 해외 증권 투자한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 1억원* - 기관투자자를 제외한 법인: 3억원 - 투자한도 제외: 해외 증권 투자를 통하여 발생한 투자수익, 이자, 배당금에 의한 再투자 <p>○ 투자대상 증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 有數 증권거래소에 上場된 증권, 채권, 수익증권 중 「증권관리위원회」가 지정하는 증권 - 투자대상 지정 증권거래소: OECD 회원국, 중국, 홍콩, 싱가포르 등 <p>○ 일반 투자가의 해외증권 투자 절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증권회사를 통한 해외 증권 투자 	

년월일	경제시책	배경 및 취지	주요내용	비고
'94. 7. 1	外國人 投資 開放 擴大	'94.6.10 「외국인 투자 환경 개선 종합 대책」에 의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증권회사 및 외국환 은행에 해외 증권투자 專用計座 및 計定 신설 - 해외 투자를 통하여 취득한 외화 증권은 외국 증앙예탁 기관에 개설된 「증권예탁원」計座에 집중 예탁 · 당초의 투자 개방 5개년 계획 對比 신규 또는 早期 개방되는 업종수: 57개업종 (조기 32, 신규 25) <li style="text-align: center;">'94.7 '95.1 '96.1 '97.1 <li style="text-align: center;">5 17 32 3 · 외국어 학원('95.1.1개방)에 대한 외국인 투자 허용 기준 明示 · '95.1.1 부분 개방 예정인 신용평가회사에 대한 持分 참여 허용범위 확정 	
'94. 7. 1	觀光호텔 信用卡 豫約制	숙박예정자의 No-show 및 초과예약에 따른 客室難 해소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特等級 관광호텔에 한하여 신용카드 예약제도 시행 	
'94. 7. 4	航空機 騒音 告示地域內 建築制限 緩和	「항공법 시행규칙」개정 ('94.7.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공기 騒音 告示지역 중 2種 구역내에서는 건축물의 신축 전면 허용 · 건물 増改築時의 防音시설 설치 의무 폐지 	

년월일	경제시책	배경 및 취지	주요내용	비고
'94. 7. 4	醫藥品 制度 關聯 規制緩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성, 유효성이 既立證된 의약품 제조시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 · 의약부외품 및 위생용품의 小分業 허용 · 의약품 製品名의 심사기준 완화 	
'94. 7. 4	리스社에 대한 外國換 業務 許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환 업무 지정기관 지정 기준 설정 - 총자산, 자기자본, 外貨 차입액 등에 있어서 대형 3社(산업, 개발, 한일)를 제외한 나머지 리스社(22개사)의 평균수준을 지정기준으로 설정 - 리스 의무 비율을 준수한 리스社에 한정 	
'94. 7. 6	消費者 被害補償制度 改善	「소비자 피해보상 규정」 개정('94.7.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家電제품 등 내구성 품목을 대상으로 購入價 換拂 범위 확대(88개품종, 555개품목) · 購入價 換拂 기간을 10日로 연장 	
'94. 7. 8	<김일성 死亡>			
'94. 7. 15	石油類 稅率 調整	국제 原油價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어 '94.2月 시행세율 인하 또는 기본세율로 환원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휘발유: 190% → 170% (탄력세율 인하) · 경 유: 25% → 20% (기본세율로 인하) · 등 유: 13% → 10% (기본세율로 인하) 	

년 월 일	경 제 시 책	배 경 및 취 지	주 요 내 용	비 고
'94. 7. 18	第 3段階 金利 自由化의 部分 早期施行	자유금리로 운용되고 있는 양도성예금증서(CD) 등의 최 단만기를 단축하여 자유화폭 을 확대하고, 은행의 표지어 음 발행을 허용하여 제 2급 응권에 대한 경쟁력 제고 ※ '94.6.15 同 방침 결정	o CD 등의 滿期 단축 - CD: 91~270日→60~270日 - 거액 RP: 91日~1年 → 60日~1年 - 거액 CP: 91日~180日 → 60日~270日 o 은행의 표지어음 취급허용 - 발행방법: 은행이 지급책임 을 지는 약속어음을 할인식으로 발행 - 액면금액: 2천만원이상 - 만기: 60日~180日(다만 원래 어음의 잔존기간이내) - 발행금리: 각 은행이 자율 결정 - 발행한도: 전월중 평균 어 음할인 잔액의 30%이내	'94.12.1 제 3단계 금리자유화
'94. 7. 21	서울市 양키본드 發行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양키 본드 발행	· 표면금리: 7.875% · 실질수익률: 7.91% (Treasury+99bp) · 만기: 10年(2004.8.1) · 主幹社(Lead Manager): Lehman Brothers	
'94. 7. 25	비닐백 使用 등 規制	1회용품 사용 억제 정책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한 목적	· 백화점의 비닐백 사용, 가전 제품 포장 스티로폴 등 사용 억제	
'94. 7. 25	投信社 支援	3大 투신사(한국, 대한, 국 민)들의 경영收支가 '93年부 터는 흑자로 전환되었으나 아직도 累積 缺損상태로 경 영상의 어려움 상존	· 대출금액: 1조3천억원 · 대출이율: 年3.0% · 대출기간: '94.8.12~ '95.2.12(6個月) · 대출대상은행: 7개 市中은행	관련 '93.1.29

년월일	경제시책	배경 및 취지	주요내용	비고
'94. 8. 1	中古船舶 輸入制限緩和	어업의 경쟁력 제고 및 공공목적 수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遠洋漁船 도입기준 하향조정 - 철강어선중 원양 유자망 어업 轉業 대책용 원양어선 도입기준 하향조정 · 300톤이상 → 200톤이상 ○ 특수用途 遂行 中古船舶 도입 허용범위 확대 - 소방선, 해난구조선, 공작선, 오염방제선 등 수입 허용 	
'94. 8. 1	自動車保險 商品單一化	자동차보험이 책임보험과 종합보험으로 二元化되어 있어, 사고발생시 보상절차가 복잡하고 인력과 경비 낭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합보험 신규 가입자는 同一 보험회사에 종합보험 및 책임보험 가입 	
'94. 8. 1	施設貸與 (리스)業務 改善方案	시설대여업무의 자율성을 높이면서 공정한 경쟁기반을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대여 금지업종 조정 - 리스 금지업종을 금융기관의 與信 금지업종과 동일하도록 개선 - 도소매업, 숙박업 등에 대한 리스 物件 제한 폐지 ○ 출자한도 확대 - 자기자본의 30%(현행 20%)까지 他회사 출자 가능 ○ 자금운용 완화 - 주식 및 회사채에 대한 여유자금 운용한도 확대 · 주식: 10%(현행과 동일) · 회사채: 10% → 20% 	

년 월 일	경 제 시 책	배 경 및 취 지	주 요 내 용	비 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리스업무 비율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리스社와 지방綜金社의 제조업 의무비율(현행 50%) 폐지 - 綜金社도 리스사와 동등한 중소기업 의무비율 50%적용 (현행 25%) ○ 렌탈(Rental)의무비율 폐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리스社의 렌탈사업에 대하여는 의무비율 적용을 폐지하고 렌탈사업의 표준화 추진 	
'94. 8. 3	首都圈 工場 總量 規制	국토의 균형있는 개발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도권에 年間 허용할 수 있는 工場 總량을 설정 · 총량 규제지역: 工業團地 以外지역(공업단지는 수도권 정비 계획법에서 따로 규제) 	
'94. 8. 3	民資誘致 促進法 制定	<p>기존의 財源 조달방식으로 는 사회 간접자본의 애로를 빠른 시일내에 해결할 수 없으므로 민간자본의 유치를 추진</p> <p>※ 法명칭: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민간자본 유치 촉진법('94.8.3)</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民資유치대상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第1種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성이 강한 시설로서 소유권은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에 歸屬(사업 시행자는 관리 운영권 보유) · 도로 및 도로 부속물, 철도, 항만, 공항 등 - 第2種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 편의 증진 차원에서 확충하는 시설로서 사업시행자에게 소유권을 인정 · 電源설비, 가스공급설비, 집단 에너지 시설, 電算網 유통단지, 화물터미널 등 	'94.11.4 시행

년 월 일	경 제 시 책	배 경 및 취 지	주 요 내 용	비 고
'94. 8. 5	國有地 開發信託 施行	그동안 이용되지 않고 방치 되어 都市美觀을 저해하거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民資유치 추진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民자유치 사업 심의위원회 설치(경제기획원) · 지방자치단체에 지방 심의 위원회 구성 - 民자유치 기본계획 및 시설 사업 기본계획의 수립 ○ 民資유치 誘引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을 경우, 他 법률 에 의한 認許可로 擬制처리 - 사업시행자의 토지 收用權 발동 및 國·公有 재산의 無償 사용 - 각종 부담금 감면 및 稅制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담금 감면 : 농지 및 산 림 전용 부담금, 대체 농 지 조성비, 개발 부담금, 과밀 부담금 등 - 출자총액 제한의 예외인정 ○ 경영권 및 收益性 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용료 결정의 자율화 - 수익성있는 附帶사업 허용 ○ 산업기반 신용보증기금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 간접자본 시설 사업을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投 資 財源을 차입하는 사업시 행자에 대하여 신용 보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國有地: 雜種財産 (토지 및 정착물)

년월일	경제시책	배경 및 취지	주요내용	비고
		<p>일반인에 의해 無斷 占有되고 있는 國有地 등을 부동산 信託방식을 도입하여 개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受託기관: 부동산 신탁업 專門會社 · 계약기간: 최장 20年 (계약 更新 가능) 	
'94. 8. 8	<p>不公正去來 行爲에 대한 課徵金 制度</p>	<p>「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94.8.8)</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장 지배적 사업자 濫用행위 및 再販賣 가격유지 행위에 대한 과징금제도 신설 	
'94. 8. 17	<p>電氣工事業 規制緩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공사업의 면허기준 중 공사용 차량 보유 의무조항 삭제 · 공사업체의 受給限度額을 자본금과 공사실적(매출액) 중 큰 금액을 기준으로 算定 	
'94. 8. 18	<p>稅制改革 方案</p>	<p>금융실명제 실시 및 WTO 체제의 출범 등 새로운 경제여건에 맞추어, 조세제도의 중장기 발전 방향을 설정하고 전반적인 세제개혁을 추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소득의 종합과세 ('96年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합과세 기준금액 설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6년부터 4천만원 초과 高額 금융소득의 종합과세 (夫婦 合算기준) · 4천만원 이하 금융소득은 원천징수 세율로 분리과세 - 원천징수 세율 인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율: 20%('94年) → 15%('96年) → 10%('97年) ○ 소득세 세율 및 공제 체계 개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세 세율 체계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율체계: 6단계(5~45%) → 4단계(10~40%) - 각종 소득공제 제도 개편 	<p>'95.1.1 시행 '94.12.14 시행령 개정</p>

년월일	경제시책	배경 및 취지	주요내용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稅制의 국제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인세율 인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법인: 과표 1억원 초과 32%→30% · 공공법인: 과표 3억원이하 18% → 1억원이하 18% - 감가상각제도의 개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용년수의 신축적 적용 · 殘存 價額제도 폐지(정률 법 적용시는 취득가액의 5% 인정) · 특별 감가상각제도 폐지 - 자산·부채 평가방법 등 기업회계의 受容 - 임시 투자세액 공제 적용시 한 종료('89.7月 시행) ○ 讓渡所得稅制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96.1月 시행) - 세율체계 조정(개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年이상 보유: 5단계(40~ 60%) → 3단계(30~50%) · 2年미만 보유: 60% → 50% · 未登記轉賣: 75%(현행유지) - 법인세율체계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 25% → 20% · 未登記轉賣: 40%(현행유지) - 각종 공제제도의 上向 조정 및 통합 ○ 土地 超過利得稅制의 보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헌법재판소의 결정사항보완 · 일정기간내 양도시 土超稅 를 讓渡稅에서 공제 ○ 相續·贈與稅制 개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율체계의 조정 	

년월일	경제시책	배경 및 취지	주요 내용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96.1이후 상속 증여분) · 상속세율: 5단계(10~50%) → 4단계(10~40%) · 증여세율: 5단계(15~55%) → 4단계(10~40%) - 상속·증여세 면제범위 확대 ○ 부가가치세제의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少額不徵收 금액 상향조정 · 1과세기간 납부세액: 6만원 → 12만원 - 畜産기자재에 대한 零稅率 적용 ○ 特別消費稅制의 세율체계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율: 6단계(10~60%) → 3단계(10~25%) ○ 酒稅제도의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탁주의 공급구역 제한 제외 · 6大도시에 공급하는 경우 · 長期 보존이 가능한 경우 (캔, 팩 등) - 기준 제조 수량제도 폐지 - 농민, 생산자 단체의 酒造社 고용의무 면제 - 납세證紙(병마개)제도 개선 - 自家消費 목적의 酒類제조 처벌 배제 - 燒酒에 대한 酒稅額에 10% 교육세 과세 ○ 납세자의 便宜 제고 및 權益 증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更正 청구권 제도 운영 	

년월일	경제시책	배경 및 취지	주요내용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액 증가사유: 修正申告 (현행과 同一) · 세액 감소사유: 修正申告 → 更正請求 - 稅務調査 사전 통지제도 · 稅務調査 7日전에 사전통지 · 天災地變 등의 사유로 납세자가 稅務調査 연기 신청 가능 o 不誠實 납세자에 대한 과세 강화 - 資料商(실물거래 없이 세금 계산서 授受)의 처벌근거 신설 - 조세범에 대한 公訴時效 기간연장: 3年 → 5年 - 장부 보존 의무기간 연장: 2年 → 5年 	
'94. 8. 27	關稅制度 改編	<p>「UR협정」의 發效에 대비하여 「UR 關稅協商」내용을 관세법 체계에 受容</p> <p>※ '94. 8. 26 「관세법」 개정안 경제장관회의 의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o UR 關稅協商에서 TE로 讓許한 농수산물 (특별 긴급관세 부과) - 수입물량이 급증하는 경우 TE의 1/3범위내에서 관세를 추가하여 부과 · TE(Tariff Equivalent): 國內外 價格差 상당 세율 - 국제가격이 하락하는 경우 국제가격 하락폭의 30%정도에 대하여 관세를 추가하여 부과 o UR 관세협상에서 TE 또는 限度 讓許稅率로 양허한 農畜 水産物 	

년 월 일	경제 시책	배경 및 취지	주요 내용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E 또는 한도 양허세율을 기본세율보다 우선 적용 · 한도 양허세율 품목 (Ceiling-binding): TE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 	
'94. 9. 1	中小企業 固有業種 縮小 調整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중소기업 고유업종을 단계적으로 축소할 계획	· 중소기업 고유업종 237개중 58개를 지정 해제	
'94. 9. 1	變動金利附 債券 導入	FRN(Floating Rate Not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행자: 정부, 금융기관, 기업 등 모든 채권 발행자 · 기준금리: CD유통 수익률 (91日) · 加算금리: 발행자의 신용도 및 시장 상황을 감안하여 자율결정 · 만기: 3年이상 10年미만 	
'94. 9. 2	機械類, 部品, 素材 國産化 開發品目 選定	「제 2차 기계류, 부품, 소재 국산화 5개년 계획」사업의 일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산화 대상 중 輸入이 많은 알루미늄, 高壓容器 등 396개 품목을 국산화 개발품목으로 選定, 告示 · 고시된 품목에 대하여는 試製品 개발자금으로 「공업발전 기금」을 우선적으로 지원 	
'94. 9. 3	신발, 纖維 産業에 대한 海外人力 支援計劃		· 해외 研修人力 1만명을 도입하여 섬유산업에 6천명, 신발산업에 4천명 배정	

년 월 일	경 제 시 책	배 경 및 취 지	주 요 내 용	비 고
'94. 9. 7	土地去來 許可區域 指定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 8,256㎢의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기간(3年)이 滿了됨에 따라 허가구역으로 再지정 · 투기적 거래가 우려되는 741㎢를 신규로 토지거래 허가지역으로 추가 지정 	
'94. 9. 7	商品券 發行制度 改善	「상품권 발행에 관한 규정」 제정('94.9.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품권의 年間 발행한도 설정: 直前年度 매출액의 50% · 상품권 발행자의 상품권 할인판매 금지 · 상품권 委託판매 금지 · 상품권 再販賣 목적의 상품권 구입자에 대한 상품권 판매 금지 	
'94. 9. 9	金融規制 緩和	<p>금융규제 완화를 통하여 금융 자율화를 추진하는 동시에 책임경영체제의 확립을 적극 유도</p> <p>※ 금융산업발전 심의회, 「은행법」 개정안 심의 ('94.9.9)</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은행增資 규제 폐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增資에 대한 事前 認可제도를 사후 보고제로 변경 ○ 子會社 출자 자율화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기자본의 20%범위내의 子會社 출자는 자율화 ○ 偏重與信 억제를 통하여 금융기관의 건전성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同一인 대출 및 지급보증 한도 인하 · 동일인 대출한도: 자기자본의 20% → 15% · 동일인 지급보증 한도: 자기자본의 40% → 30% 	

년 월 일	경 제 시 책	배 경 및 취 지	주 요 내 용	비 고
'94. 9.16	環境改善 負擔金 制度 改善	제도의 형평성을 도모하고 납세 의무자의 불편해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巨額與信 총액 한도제 신설 · 동일인 또는 동일계열 企業群에 대한 巨額 與信의 총액 한도 설정 · 巨額與信(대출+신용보증): 은행 자기자본의 15%를 초과하는 여신 ○ 은행의 소유 구조개선 - 同一人 소유지분 한도를 4%로 하향조정(현행 8%) - 순수 금융자본(금융 專業 기업가)에 대하여는 12%까지 예외 인정 - 다음과 같은 경우에도 「4% 원칙」의 예외 인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의 은행주식 소유 · 외국환 관리법 또는 外資 도입법에 의한 合作은행 · 全國을 영업구역으로 하지 않는 은행(15%까지 허용) · 「금융기관의 合併 및 轉換에 관한 법률」에 의한 轉換 은행 · 증시안정기금 등 경영권 지배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기관투자가(소유는 8%, 의결권은 4%까지 허용) ○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 규모 조정 - 업종 구분없이 160㎡이상의 시설물에 대하여 부과 ○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대상 지역 확대 	

년월일	경제시책	배경 및 취지	주요내용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토 이용관리법상 도시지역, 준도시지역, 준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 농림지역은 부과대상에서 제외 	
'94.10.15	<浦鐵 株式 뉴욕證券市場>	한국기업 최초로 뉴욕證券市場에 上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개선 부담금 免除 및 輕減대상 축소 - 면제대상: 주거용시설물, 외국정부 소유 시설물 - 경감제도 전면 폐지(종전, 정당, 연구기관, 교육기관 등 24개 종류) - 자동차 면제대상: 低公害자동차, 외국정부소유 자동차 	
'94.10.16	不法就業 外國人保護 綜合對策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법 취업자 중 産災사고를 입고 보상을 못받은 채 귀국한 외국인에 대해 산재 보상금 지급 - 재외 공관에 「외국인 재해 보상신고센터」 설치 - 신고기간: '94.9月~12月 	
'94.10.21	<聖水大橋 崩壞>	不實工事に 기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에 대한 임금체불, 폭행 등에 대해 강력 제재 - 전국 45개 지방 노동관서 민원실에 「외국인 근로자 민원신고센터」 설치 	

년월일	경제시책	배경 및 취지	주요내용	비고
'94.11.1	外換管理制度改善	<p>'95년부터 본격 추진할 외환제도 개혁을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하여 우선 외환시장 규모확대 및 외환 거래의 다양화가 필요</p> <p>※ '94.10.13 「외환 시장 선진화 방안」에 의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율의 日日 변동폭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준 환율±1.0%이내에서 ±1.5%이내로 확대 ○ 外換거래 결제방법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貨/外貨間 現物換 거래의 當日 결제제도를 翌日 결제 제도로 변경 ○ 實需要 증명 면제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先物換거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貨/外貨間 3백만달러 이내면제→1천만달러이내 면제 - 금융 先物거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場內거래: 1천만달러이내 면제 → 완전면제 · 場外거래: 1천만달러이내 면제→2천만달러이내 면제 ○ 금융 先物거래 제도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옵션매도(Put-option)가 옵션매입(Call-option)과 연결되고 지급프리미엄이 수취프리미엄 이상인 경우 옵션매도를 허용 - 옵션 행사가격에 대한 제한 폐지 ○ 외국환은행포지션(Position) 한도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합매입 초과포지션(O/B): 자기자본의 10%이내(최소 2천만달러)→15%이내(최소 3천만달러) - 현물환 매각 초과포지션(O/S): 자기자본의 	

년 월 일	경 제 시 책	배 경 및 취 지	주 요 내 용	비 고
'94.11. 1	市外버스 등 料金 規制緩和		1%이내(최소 2백만달러)→ 2%이내(최소 3백만달러) · 市外버스 요금: 교통부장관 인가제 → 신고제 · 전세버스, 특수여객 자동차, 특수 화물자동차 등: 요금 자율화(종전 신고제)	
'94.11. 3	電子게임産業 發展 方案		○ 정부의 기술개발자금 지원 - 관련업계의 기술 자립화 - 국산제품의 내수시장 정착 과 기업간 협력 활성화	
'94.11. 3	中小企業 固有業種 縮小調整方案	중소기업 고유업종을 단계 적으로 축소하여 나감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도모	· 현행 180개 중소기업 고유업 종 중 이미 경쟁력을 확보하 였거나 사양화된 업종 등 45개 업종은 '95.1.1해제 · 일정기간 더 보호하면 경쟁 력을 갖게 되거나 개방화로 인하여 실효성이 약화된 47개 업종은 '97.1.1 해제 · 중소기업형 업종으로서 해제 시 대기업의 독과점적 시장 지배가 우려되는 업종 등은 당분간 해제를 유보	'95.1.1 시행
'94.11. 4	輸出 保險制度 改善	'94.7월 「수출보험법」 개정	· 신규 도입 보험: 短期 수출 보험, 농수산물 수출 보험, 시장개척 보험 · 폐지하는 보험: 일반수출 보험, 수출금융보험, 위탁판매 수출보험	

년 월 일	경 제 시 책	배 경 및 취 지	주 요 내 용	비 고
'94.11. 5	어음 不渡 處理方法 改善	어음 부도 관련 제도의 악용을 방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中長期 延拂 수출보험과 수출대금 금융보험을 통합 (中長期 수출보험 신설) ○ 당좌거래 정지처분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좌거래 정지처분 취소대 상에 電子決濟시스템의 장애로 인한 경우 포함 - 당좌거래 정지처분 효력 일시 정지 제도 도입 ○ 어음 부도처리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급자금이 일부 부족한 경 우 지급은행이 어음 발행인 과 합의하여 지급 · 帳當 최고 발행한도 초과 가계수표 부도에 대하여 制裁猶豫 축소 (年2회→1회) · 가계수표의 事故 申告 담 보금을 帳當 최고 발행한 도내에서 어음금 전액으로 상향 조정 	
'94.11.17	<世界化宣言>	김영삼 대통령이 제시한 國 政 목표로서 APEC 정상회담 후 호주(시드니) 방문시 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화를 위한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래에 대한 透視 - 목표의 명확한 설정 - 구체적인 대책 ○ 세계화의 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 경영의 중심 국가화 - 국가간 경쟁과 협력을 조화 시킬 정책과 인력의 개발 - 제도와 의식의 개혁 	

년월일	경제시책	배경 및 취지	주요내용	비고
'94.11.21	林業協同組合 相互金融業務 實施	'94.11.14 「신용협동기구 與·受信 업무 要綱」 개정	- 창의성을 가진 자가 성공하 는 사회 - 정신과 人性의 중시 · 林業협동조합의 상호 금융업 무 실시	
'94.11.23	<OPEC 産油量 凍結>	'94.11.1 OPEC 석유장관회 의 개최(인도네시아, 발리섬)	· OPEC 석유장관회의에서 결정 (12개국, 이라크 불참) · '95年度 OPEC 원유 생산량을 現수준으로 유지 (2,452만배럴/日)	
'94.11.26	情報化 促進 基本法 制定		· 정보화 촉진 기본계획 및 시 행계획 수립 · 정보화 촉진 위원회 설치 · 정보화 촉진기금 설치	
'94.12.1	第3段階 金利自由化 部分施行 및 通貨管理方式 改善 方案	금융의 국제화·개방화 추세의 빠른 진전에 부응하 여 '94~'96年中 추진토록 되어 있는 제 3단계 금리 자유화를 가급적 조기에 추진 또한 간접규제 방식 통화관 리의 정착을 위하여 총액대 출 한도 조정, 환매채(RP) 매각 지양 등 현행 통화관리 방식의 개선방안을 강구	< 금리 자유화 조치 > ○ 受信 금리 자유화 - 제 1,2 금융권의 1년이상 2년미만의 수신금리 자유화 - 정기적금, 상호부금, 주택부 금 등은 2년이상 3년미만의 수신 금리 자유화 ※ 단계별 수신금리 자유화 비중('94.9月末 기준,%) 1단계 2단계 3단계(금번) 46.1 15.0 6.3 3단계(잔여) 4단계 27.7 4.9	'94.7.18 부분 조기시행

년월일	경제시책	배경 및 취지	주요내용	비고												
'94.12.1	外國人 株式投資 限度 擴大	정부는 제49차 IMF/IBRD 총회(스페인, 마드리드)에서 국내 上場주식에 대한 외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與信금리 자유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업어음 할인, 무역금융 등 운전자금은 각 은행이 Prime Rate(8.5~9.5%) 범위 내에서 자율 결정 ※ 단계별 여신금리 자유화 비중('94.9月末 기준,%) <table border="0" style="margin-left: 20px;"> <tr> <td>1단계</td> <td>2단계</td> <td>3단계(금번)</td> </tr> <tr> <td>15.2</td> <td>74.4</td> <td>5.3</td> </tr> <tr> <td colspan="3">3단계(잔여) 4단계</td> </tr> <tr> <td>5.1</td> <td colspan="2">-</td> </tr> </table> < 통화관리 방식의 개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할인 제도의 유동성 조절 기능 제고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할인 대상 대출금리의 자유화폭 확대에 상응하여 총액대출 한도를 점진적으로 감축 - 중소기업 자금지원, 비생산적 부분 與信취급 실적 등을 감안하여 은행별 총액대출 한도를 차등 배정 ○ 공개시장조작의 활성화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 환매채(RP) 매각규모의 상당액을 통화안정증권 발행으로 교체 - RP 및 통화안정증권 발행 금리를 단계적으로 實勢化 하고 경쟁입찰방식을 확대 ○ 종목별 전체 투자한도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 上場법인: 10%→12% - 공공적 법인(한전, 포철)에 	1단계	2단계	3단계(금번)	15.2	74.4	5.3	3단계(잔여) 4단계			5.1	-		
1단계	2단계	3단계(금번)														
15.2	74.4	5.3														
3단계(잔여) 4단계																
5.1	-															

년월일	경제시책	배경 및 취지	주요내용	비고
		인 주식 투자한도 확대 방침 발표('94.10.5)	<p>대하여는 현행 한도(8%) 유지</p> <p>○ 종목별 1인당 투자한도는 현행 한도(3%) 유지</p> <p>< '95年中 계획 ></p> <p>○ 종목별 전체 투자한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 上場법인: 12%→15% - 공공적 법인: 8%→10% <p>○ 종목별 1인당 투자한도는 현행 한도(3%) 유지</p>	
'94.12. 2	中小企業系列化 指定品目 調整	중소기업의 기술력 향상과 소재·부품의 국산화 추진을 위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분업생산 유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열화 업종: 42개 → 36개 · 계열화 품목: 1,160개 → 1,053개 (해제151, 통합11, 추가55) 	
'94.12. 5	外換制度 改革 方案(1段階)	<p>국내적으로는 금리 자유화 등 금융개혁이 가속화되고, 기업의 해외진출 등 국제화, 세계화 촉진</p> <p>대외적으로는 WTO출범 등 국경없는 무한경쟁시대가 도래</p> <p>이에 따라 기업의 대외활동 촉진과 국민의 생활편의 증진을 위해 외환제도를 「規制爲主」에서 「原則自由」로 전환해야 할 필요</p>	<p>< 經常 外換去來의 自由化 ></p> <p>○ 外換 지급절차의 간소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대외 지급에 대하여 외국환 은행장의 認證制를 폐지하고 통계 파악 목적의 신고제 실시 - 少額 지급에 대한 實需要 증명 의무면제(현재는 件當 5천달러이내만 면제) - 신고서류의 當日 업무처리 제도 도입 <p>○ 기업관련 경비지급 자유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韓銀 허가를 받아야 하는 수출입 수수료 지급 한도 폐지 	'95.2.13 1차시행

년 월 일	경 제 시 책	배 경 및 취 지	주 요 내 용	비 고
		<p>※ 3단계 추진 1단계: '95年 2단계: '96~97年 3단계: '98~99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사무소 설치 및 경비 지급 자유화 - 해외여행 경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경비 5천달러, 月 체제비 3천달러, 정착비 2만달러→기본경비 1만달러, 月 체제비 1만달러, 정착비 5만달러 · 신용카드 사후관리 기준 금액 상향조정 (법인카드:분기별 3만달러 → 10만달러) (개인카드:분기별 3천달러 →5천달러) · '95年中 현금 서비스 한도를 폐지하여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포함 - 국제기구 등에 대한 贈與性 송금 자유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기구, 단체에 대한 증여성 송금 자유화 - 해외 移住費 지급제한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주 정착비 한도 확대 (세대주:10만→20만달러) (세대원당:5만→10만달러) · 투자 사업비 한도 확대: 30만달러→50만달러 ○ 代金결제 방법의 자유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延支給 수입기간 · 내수용(일반지역): 60→90日(중소기업 120日) · 수출용(일반지역): 150→180日(자유화 완결) - 수출 선수금, 착수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기업의 수출 선수금 영수한도 확대: 전년도 	

년월일	경제시책	배경 및 취지	주요내용	비고
			<p>수출실적의 5%→1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의 수출 선수금 영수한도 폐지(현행, 전년도 수출실적의 10%) - 중계무역의 활성화를 위하여 일정기간 범위내에서 수출대금 先領收를 허용 · '95年中 수출대금 先領收를 30日이내에서 허용 <p>〈資本去來의 自由化〉</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對内外 직접 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의 對内 직접 투자: 「외국인 투자 활성화 방안」('94.6月)으로 대체 - 내국인의 해외 직접 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5年中 투자 인가 기준금액 상향조정 ○ 외국인의 국내 증권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식: 종목당 투자한도 12% → 15% - 채권: 투신사 펀드 및 Country 펀드를 통한 간접투자 허용 ○ 내국인 해외자산 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국인의 해외 증권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투자가: 자유화 · 일반투자가: 개인 5억원, 법인 10억원 - 해외예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투자가: 1社當 1억 달러이하 자유화 · 일반법인: 1社當 100만 달러이하 자유화 	

년 월 일	경 제 시 책	배 경 및 취 지	주 요 내 용	비 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 신용 供與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투자가: 1천만달러 이하 자유화 - 해외 부동산 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산운용 목적 투자가능 기업 범위 확대 ○ 對內外 증권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의 국내 증권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식발행 자유화 - 내국인의 해외 외화 증권 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 증권발행 한도 확대 ○ 企業의 貸借, 보증계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업차관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高度기술 수반 외국인 투자기업: 외국인 투자 금액 범위내 허용 · SOC 또는 첨단기술 참여기업 및 중소기업: 일정기준 한도내에서 허용 - 現地금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지 금융 한도: '94.2月 폐지(既 自由化) · 현지 금융 용도제한: '96年이후 폐지 - 外貨대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5年中 外換 보유고 지원 외화 대출을 중소기업 중심으로 운용 - 보증 및 담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 거주자인 일반법인에게 제공하는 보증 및 담보는 1백만달러이내 자유화 	

년월일	경제시책	배경 및 취지	주요내용	비고
			<p>〈外換市場 構造의 先進化〉</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換率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日日 변동폭 확대 검토 - 元貨/外貨間 현물환 거래 결제방법: 翌日결제→제2 영업일 결제(Value Spot) ○ 외국환 은행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환 업무 취급기관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증권사에 외국인 투자관련 換錢업무 허용 · 一定요건 具備時 換錢商 설치 자유화 ('95年, 인가제→신고제) - 외국환 은행의 업무 자율성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외 판매 계약체결 인가 제 폐지 ○ 外換거래 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지션(Position) 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물환 매각초과 포지션 (O/S)한도를 추가확대하고 外銀지점 SWAP한도 업무 감축 · 先物換거래 등의 實需要 증명제도 · 실수요 증명 제출 의무 완전 면제('96年) - 外換 집중제도 정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外貨 매입: 1人當 年間 1만달러 이내 · 外貨 보유: 외환 집중제 정지 및 등록의무 폐지 	

년 월 일	경 제 시 책	배 경 및 취 지	주 요 내 용	비 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對外債權 회수의무의 완화 · 對外債權 회수의무 면제 금액 확대: 2만달러이하 → 3만달러이하 · 해외 外貨보유 가능기업 및 한도 확대: 수출입실적 1천만달러이상 수출입업체 → 5백만달러이상 <p>o 外換市場 제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실물제도의 발전 - 域外 금융시장 활성화 - 외환 브로커 제도 도입 - 원貨의 국제화 · 원貨 휴대 반출입 한도 2백만원 → 3백만원 · 원貨결제대상 거래를 모든 경상거래로 확대 ·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원貨 직접 거래를 Negative체계 로 전환 · 비거주자에 대한 원貨 표 시 여행자 수표(T/C) 매각 한도 확대 : 5백만원 → 1천만원 	
'94.12. 7	바젤協約 對象品目 設定	<p>'94.5.29 발효한 「바젤협약」에 따라 국가간 이동 및 처리가 규제되는 폐기물 품목 설정</p> <p>※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 품목」 고시('94.2.7)</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품목: 廢뺏데리, 廢타이어 등 118개 품목 · 유보품목('95.4월 이후 규제 여부 확정): 고철 등 자원 再生用 폐기물 42개 품목 	<p>관련 '94.5.29</p>

년월일	경제시책	배경 및 취지	주요내용	비고
'94.12.14	稅制 改編	<p data-bbox="395 280 732 349">'94.8.18 「稅制 개혁방안」에 의함</p> <p data-bbox="395 396 732 511">※ 「소득세법 시행령」 등 9개 세법 시행령의 개정 ('94.12.14)</p>	<p data-bbox="743 280 875 311">○ 所得稅制</p> <ul data-bbox="743 318 1108 666"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자금 공제제도 개선 <ul data-bbox="775 357 1108 473" style="list-style-type: none"> · 無주택자가 주택마련저축 가입시 불입액의 40% 공제 · 공제한도: 年 72만원 - 복지후생 급여 非과세제도 조정 <ul data-bbox="775 550 1108 666" style="list-style-type: none"> · 食事代, 연월차 수당, 정근수당 등 비과세 폐지 (과세로 전환) <p data-bbox="743 714 875 745">○ 企業稅制</p> <ul data-bbox="743 753 1108 1420"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개발 준비금 및 기술인력 개발비 세액 공제 적용 확대 - 감가상각제도 개선 <ul data-bbox="775 908 1108 1062"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용년수를 기준년수의 상하 25% 범위내에서 기업 실정에 맞게 조정 · 殘存가액 제도 폐지 · 즉시 價却 대상 확대: 취득가액 30만원 이하 → 100만원이하 - 기업회계의 受容 <ul data-bbox="775 1226 1108 1342"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화폐성 外貨자산 부채의 評價差損을 短期損益으로 처리 - 임시 투자세액 공제제도 폐지 <p data-bbox="743 1468 930 1499">○ 讓渡所得稅制</p> <ul data-bbox="743 1506 1108 1738"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속, 離農, 歸農 목적으로 농어촌 주택 보유시 1세대 2주택인 경우에도 양도세 비과세 - 양도소득 필요 경비 상향 조정 	'95.1.1 시행

년 월 일	경 제 시 책	배 경 및 취 지	주 요 내 용	비 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 신축 판매시 주택과 상가를 구분하여 별도 과세 ('96.1.1 시행) ○ 土地超過 利得稅制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세 猶豫기간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年間 유예: 공장 및 기업 부설 연구소 신축부지, 주택건설 사업용지 등 · 1年間 유예: 기타의 건물 신축용지 - 유희토지 판정기준 보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 건축물 부속 토지 기준 면적 계산방법 개선 ○ 相續, 贈與稅制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産·學·研 종합 연구단지 에 대한 증여세 면세 ○ 消費稅制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畜協 생산 배합사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기한 1年 연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세기한: '94.12.31 → '95.12.31 -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의 범위 조정 	
'94.12.19	關稅制度 改編	WTO체제 출범에 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정관세 및 할당 관세 대상 품목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가안정과 통상문제 등을 고려하여 대상 물품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정관세: 42개 → 38개 · 할당관세: 39개 → 46개 ○ UR협상내용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R협상에서 우리나라가 	'95.1.1 시행

년 월 일	경 제 시 책	배 경 및 취 지	주 요 내 용	비 고
'94.12.23	原價會計準則 制定	원가회계의 통일성 및 기업 간 비교가능성 제고 (증권관리위원회 제정)	제시한 관세 讓許품목 (9,580개)과 讓許세율을 관세에 반영 · 재무제표상의 매출원가 算定 時 적용할 일반적인 지침	
'94.12.23	政府組織 改編	세계화 추진을 위하여 작고 효율적인 정부조직 구축	· 경제기획원과 재무부를 통합 하여 재정경제원 발족 · 건설부와 교통부를 통합하여 건설교통부 발족 · 체신부를 정보통신부로 개칭 하고 기능 강화	
'94.12.24	小型住宅建設 義務 比率調整	「소형주택건설 확대지침」 개정('94.12.24)	· 종전: 전체 건설 戶數의 75% 이상을 25.7평(85㎡)이하 로, 40%이상을 18평(60㎡) 이하로 건설 · 개정: 18평이하 소형주택건 설 비율을 전체 건설 戶數 의 10% 범위안에서 조정	
'94.12.27	國民銀行 民營化	「국민은행법」 폐지 ('94.12.27)	○ 일반 상업은행으로 전환 - 특별법인 「국민은행법」의 폐지로 國策은행에서 일반 상업은행으로 전환 - 일반국민 및 소규모기업에 대한 지원 기능은 계속유지 ○ 정부보유 국민은행 주식매각 - 정부보유 주식 약 28백만주 를 희망수량 경쟁입찰방식 으로 매각('95.2月)	

년 월 일	경 제 시 책	배 경 및 취 지	주 요 내 용	비 고
'94.12.30	外貨證券 投資制度 改善	「외화 증권 매매거래 등에 관한 규정」 개정('94.12.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쟁입찰 참가조건 · 외국인을 제외한 모든 법인과 개인 · 同一人 매각한도: 총 매각물량의 4%이내 <p>○ 外貨 증권 매매대금의 국내 외국환 은행 예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증권회사가 고객의 外貨증 권 매매대금을 국내 외국환 은행 또는 외국 보관기관에 예치 가능 - 同 예치 外貨에 의한 매수 주문 허용 <p>○ 매매 증거금의 사용 및 징수 면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매체결 확인 종목의 결제 인 反對 賣買時 당해 외화 증권 매수 수량 또는 매도 價額 범위내에서 매매 증거 금의 징수 면제 - 증권회사가 고객의 外貨증 권 매매 증거금을 결제대금 으로 사용 가능 	
'94.12.31	銀行法 改定	<p>은행 경영의 자율성을 제고 하고 경영의 건전성 유지 및 책임 경영체제 확립을 도모</p> <p>이와함께 산업자본의 은행 지배를 방지하면서 금융자본 이 은행 경영을 주도할 수 있도록, 동일인의 은행주식 소유한도 인하 및 금융전업 기업가 제도 도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본금 변경 규제 완화: 유상증자 및 주식 배당을 「금융통화운영위」 인가사 항에서 제외 · 자회사 출자 규제 완화 · 동일인 여신한도 인하 (대출한도: 자기자본의 20% → 15%) (지급보증한도: 자기자본의 40% → 30%) 	

년 월 일	경제 시책	배경 및 취지	주요 내용	비고
'94.12월	<멕시코 페소貨 暴落>	멕시코의 政勢不安, 페소貨 의 인위적인 高평가 유지 등 에 기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일인 및 동일계열기업군에 대한 거액 여신 총액 한도제 신설 · 동일인의 은행주식 소유한도 인하: 의결권 있는 발행 주식 총수의 8%이내 → 4%이내 · 금융전업 기업가 제도 도입: 금융전업 기업가의 은행 주식소유 한 도를 12%까지 예외 적으로 인정 · 자유변동환율제('94.12.12) 실시와 함께 페소貨가 계속 대폭적으로 하락 · 미국, 유럽, 南美 등의 금융 시장 혼란 惹起 	

년월일	경제시책	배경 및 취지	주요내용	비고
'95. 1. 1	<WTO 出帆>	World Trade Organization ※ '94.4.15 終了한 UR협상에 의함	· 全世界 상품 및 서비스 교역을 規律하는 국제기구	관련 '94.4.15
'95. 1. 1	國內居住 外國人의 株式投資時 內國人 待遇	주식투자시 국내거주 외국인과 내국인의 동등한 대우 목적	○ 국내거주 외국인에 대해 주식투자 한도 적용 배제 - 국내거주 외국인(개인)요건 · 1年以上 국내 영업소 근무 · 2年以上 국내 滞在 - 국내거주 외국인(법인)요건 · 국내에 1年以上 主된 사무소 설치 · 2年以上 영업실적 있는 외국기업의 국내지점	
'95. 1. 1	合作 投資企業에 대한 外國人의 株式投資 制限緩和	합작 투자기업에 대한 외국인의 주식투자 기회 확대 및 합작투자 기업간 형평 도모	○ 투자제한 완화 대상 - 합작투자 비율 50%미만인 외국인 투자기업 ○ 投資限度 - 발행주식 總數의 12%이내에서 당해기업이 정하는 비율까지 추가 취득 가능 - 다만 당해기업의 외국인 총주식취득 비율(50%)을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추가 취득	
'95. 1. 1	非金融企業의 海外 金融業 進出 許容	최근 外換 및 자본 자율화를 본격 추진하고 있고 세계 시장에서 기업들간의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으므로, 국내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해치지	○ 해외 금융업 진출 허용대상 및 출자한도 - 허용대상: 국내에 本社를 둔 제조업체 및 종합무역상사	

년 월 일	경 제 시 책	배 경 및 취 지	주 요 내 용	비 고
'95. 1. 1	株式 場外市場 制度 改善	<p>없는 범위내에서 제조업체, 종합상사 등의 해외 금융업 진출 허용</p> <p>유망 중소기업이 직접 금융에 의해 필요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기회를 확충하기 위한 목적</p> <p>※ '94.12.9 「중소기업 등의 주식 場外 거래에 관한 규정」 개정</p>	<p>- 출자한도: 자기자본의 30% 이내</p> <p>○ 진출분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 割賦판매 금융회사: 自社제품 또는 취급 상품을 購買하는 소비자에게 금융지원 - 해외 리스會社: 현지 법인의 생산설비 構築 지원 - 해외 금융 子會社: 파생 금융상품 전문회사, Finance-Company 등 <p>○ 場外去來 대상기업 財務構造 面の 등록기준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등록기준의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본금: 2억→5억원이상 · 설립경과년수: 2年→3年 - 신설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산가치 및 수익가치: 額面價 이상 · 경영상태: 영업이익과 당기 순이익 흑자 · 부채비율: 등록법인 同業 種 平均의 1.5倍미만 <p>○ 주식 分散기준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행주식 총수의 10%이상 (종전 10% 또는 1억원이상) <p>○ 투자留意 종목 제도 도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래가 부진하거나 투자 위험이 있는 주식을 투자留意 종목으로 지정 告示 	

년월일	경제시책	배경 및 취지	주요내용	비고
'95. 1. 1	쓰레기 從量制 全面 實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稅制혜택 확대 - 少額주주의 일정금액이하 배당소득: 종합과세 → 분리과세 - 자산 재평가 적립금의 자본 轉入에 따른 無償주식취득: 과세 → 非과세 - 기관투자자의 배당수입: 과세 → 非과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쓰레기 수수료를 배출량에 따라 부과 · 市·郡·區 지정봉투로 쓰레 기 배출 · 연탄재, 재활용품은 무료배출 · 대형 쓰레기 등 봉투에 담기 어려운 쓰레기 배출방법은 市·郡·區 條例로 규정 	
'95. 1. 1	中小企業 固有業種 縮小調整	'94.11.3 「중소기업 고유 업종 축소 조정안」에 의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전 180개 중소기업 고유업 종 중 45개업종 해제 	관련 '94.11.3
'95. 1. 1	輸出推薦 및 輸入先 多邊化 品目 縮小調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추천 품목 축소조정 - 冷凍다랑어 등 56개 품목의 수출 추천 폐지 ○ 수입선 다변화품목 축소조정 - 카메라렌즈(35mm) 등 26개 품목을 수입선 다변화 해제 	
'95. 1. 3	證券業務 自律化 方案	'94.12.21 「증권업무 자율 화 방안」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상증자에 대한 규제 완화 - 상장기업(금융기관 제외)에 	

년월일	경제시책	배경 및 취지	주요내용	비고
'95. 1. 3	株式賣買制度 先進化 方案	<p>자본시장의 세계화를 추진하고, 주가지수 선물시장 개설에 대비하여 주식매매 거래제도를 선진화</p> <p>※ '94.12.22 「주식매매제도 선진화 추진 방안」 수립</p>	<p>대하여 유상증자 전면 허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상증자요건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행규모: 2천억원이내 → 3천억원이내 · 재무비율: 납입자본 이익률 및 경상이익률 5%이상 → 최근년도 당기 순이익 o 기업공개요건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사업년도의 납입자본 이익률이 정기예금(1年) 최저이율 이상(종전 1.5배) - 최근 3사업년도의 납입자본 이익률 합계가 30%이상 o 증권회사 영업활동규제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동산 취득제한 완화 - 점포신설 기준제정 및 점포신설 자유화 o 매매거래시간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은행개장시간보다 10분 늦은 주식개장시간(목적, 위탁증거금 40% 징수) 변경 · 오전장: 09:40~11:40 → 09:30~11:30 · 오후장: 13:20~15:20 → 13:00~15:00 o 위탁증거금 비율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전의 최소 위탁 증거금률 · 개인투자자: 현금 40% (관리종목 100%) · 기관투자자: 현금 20% ('94.2月 이후 징수) 	

년 월 일	경 제 시 책	배 경 및 취 지	주 요 내 용	비 고
'95. 1. 3	環境改善負擔金制度改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선: 기관투자자에 대하여 위탁 증거금 면제 o 가격제한폭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전 가격제한폭: 17단계의 정액제(2.0%~6.7%로서 평균 4.6%) - 조정: 정액제를 정률제로 전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단계('95.4.17): 4.6% → 6% · 2단계('96~'97年): 6% → 8% o 환경개선 부담금 賦課대상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닥면적: 1,000㎡ 이상 → 160㎡ 이상 - 국가, 지방자치단체 소유 시설물 및 자동차 부담금 면제 단계적 폐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7년까지 50% 輕減 - 공익법인 소유 시설물 50% 감면 폐지 o 환경개선 부담금 賦課지역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 準도시, 準농림 및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확대 	
'95. 1. 5	農産物特別緊急關稅制度施行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o 특별 긴급관세 賦課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물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國內外 가격차 상당률(TE)로 讓許한 111개 품목 중 	'95.1.1 소급 시행

년월일	경제시책	배경 및 취지	주요내용	비고
			<p>감자, 옥수수, 보리 등 76개 품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과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량기준: '91~'93년평균 수입량보다 일정규모 이상 수입이 증가하는 경우 TE의 1/3수준 추가 부과 · 가격기준: '88~'90년평균 수입가격보다 10%이상 하락시 일정률(30~90%)을 해당 금액에 추가 부과 o 특별 긴급관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량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 긴급관세 賦課日 以前에 계약된 물품 ·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해 船積된 물품 - 가격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량이 輸入신고일前 6개월이상 계속 감소하여 수입자가 특별 긴급관세 적용 해제 요청 	
'95. 1.11	리스社 經營評價制度 導入	리스社에 대한 경영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경영개선 및 업무 확대 등 자율규제 수단으로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대상: 專業리스社(25개) · 평가기관: 리스금융협회 · 평가기준: 영업성과, 재무구조, 公共性 · 시행시기: '94 경영실적('95.3末 결산)부터 적용 	
'95. 1.16	農畜水産物 輸入 自由化	「統合公告」 개정('95.1.16)	수출입 제한 102개 품목의 자유화(수출 8, 수입 94)	

년 월 일	경 제 시 책	배 경 및 취 지	주 요 내 용	비 고
'95. 1. 17	建設工事의 不實防止 綜合對策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입 추천 59개 품목(수출 22, 수입 37)을 신고제로 전환 ○ 공사설계의 內實化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계감리제도의 도입 - 설계, 施工 입찰제도의 활성화 ○ 공사 監理 철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책임 감리제도 早期 정착 - 감리代價의 단계적 현실화 - 외국 감리회사의 早期 참여 ○ 不實 관련자 처벌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不實 감리업체 처벌 강화: 6개월 업무정지→1年이하 - 不實 설계자에 대한 制裁 규정 신설 ○ 기타의 不實工事 방지 대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격위주에서 시공 능력위주로 입찰제도 개선 - 불법 하도급 근절 	
'95. 1. 17	<日 阪神 大地震>			
'95. 1. 25	當座貸出金利 實勢 連動化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좌대출금리 결정방식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전: 기준금리에 최고 2.5%p의 加算금리 적용 · 중소기업 기준금리: 年 10%~10.5% · 대기업 기준금리: 年 11% 	

년 월 일	경 제 시 책	배 경 및 취 지	주 요 내 용	비 고
'95. 1. 27	<p>不動産 實名制 實施 計劃</p>	<p>他人 名義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탈세, 재산은닉 등 각종 위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부동산에 관한 모든 권리는 實所有者 본인 명의로 등기</p> <p>이에 따라 부동산 거래를 정상화하고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켜 경제 정의를 실현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p> <p>※ '95.1.27 「부동산 實所有者 名義 등기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변경: 실세금리를 반영하는 기준금리에 최고 1.5%p의 加算금리 적용 ○ 부동산 實所有者 名義 등기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5.7.1이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기타 物權의 변동은 실소유자 명의로 등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例外 인정: 信託法 등에 의한 신탁등기와 채무辨濟 목적의 양도 담보 - 소유권 移轉 등기 기한: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3年内 - 他人名義 「名義信託 約定」은 무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동산에 관한 어떠한 物權변동의 효력도 없음 - 부동산 실소유자 명의 등기의무 위반자에 대하여 처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他人명의로 등기한 명의 信託者 · 명의신탁 약정에 의하여 등기한 명의 受託者 ○ 기존 名義信託의 정상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5.6.30이전의 기존 명의 신탁자는 '95.7.1부터 1年 이내에 본인명의로 등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또는 명의 수탁자 명의의 등기 말소 - 1年이내에 實名 등기하지 않을 경우 그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또한 과징금 및 이행 강제금 부과 	'95.7.1 시행

년 월 일	경 제 시 책	배 경 및 취 지	주 요 내 용	비 고
'95. 1. 28	機械類, 部品 素材 國産化 事業 對策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행기관 - 과징금 부과 및 實名등기 의무 등의 위반여부 확인조사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수행 · 중소기업 試製品개발 지원자금규모 확대: 對日 수입대체 효과 300만달러이상 품목 우선지원 · 용자 취급은행을 市中 중소기업 專擔 은행까지 확대 	
'95. 2. 6	肉類 屠體 等級制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급 判定士에 의하여 등급을 받아야만 上場 또는 판매 허용 · 대상지역과 肉類 (서울, 제주도: 소, 돼지) (부산지역 : 돼지) 	
'95. 2. 8	産業用地的 供給 圓滑化 對策	부동산 實名制로 기업의 공장용지 확보가 어려워질 것에 대비한 지원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準農林地域의 공장 규제완화 - 준농림지역의 일정구역을 「농어촌 산업지구」로 지정 가능(시장, 군수) - 농어촌 산업 지구內 공장 설립 제한 폐지 · 종전: 준농림지역에서는 공장설립을 3만㎡이내만 허용 - 농어촌 산업지구內 농지 轉用신고절차 간소화: 농지소유자 사용 승낙서 → 농지매매 계약서 	'95. 7. 1 시행

년월일	경제시책	배경 및 취지	주요내용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준농림지역內 기존 공장 증설 규제 완화 · 총 부지면적 3만㎡까지만 증설 → 1회에 한해 4만5천㎡까지 증설 ○ 準都市地域 공장 규제 완화 - 「시설용지지구」의 공장설립은 15만㎡ 범위내에서만 허용했으나 이러한 上限 폐지 ○ 업무용 토지 인정범위 확대 - 増設 豫備敷地: 공장 기준 면적의 10%(최고 900명)→ 20%(上限 폐지) - 수도권 지역은 현행 유지 ○ 신규 공단개발시 농지 및 山地 轉用 부담금 완화 - 민간기업: 公示地價의 20% → 10% - 공공기관에 대한 감면을 확대: 50% → 70% ○ 기타 - 아산공단, 포승지구 대기업 입주허용 - 낙후지역 공단지원 확대 · 폐수 및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비 50% 재정지원 	
'95. 2. 9	중소기업 지원 9대 施策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지방화시대의 조기정착 기반을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 금융지원 확대 - 중소기업 상업어음 割引限度 확대(중소기업은행경유) · 財特에서 1천억원 지원 	

년 월 일	경 제 시 책	배 경 및 취 지	주 요 내 용	비 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은행 증자: 1,400억원('95年) - 延支給 수입기간 연장 ('95.2月) · 수출용: 150 → 180日 · 내수용: 60 → 90日 - 수출 先受金 영수한도 자유화('95.2月) - 상호신용금고에 표지어음 발행 허용('95.4.6) -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업지원 기금의 年次的 확대 · 창업 투자회사에 대한 10大그룹 투자한도 폐지 - 주식 上揚요건 완화 · 業歷: 10年 → 7年 - 신용장(一覽拂) 방식 수출 에 대하여 수출승인 폐지 · 기타 방식의 3만달러이하 수출은 승인면제 <p>○ 중소기업 신용보증제도 보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신용보증조합 신설: '95年中 2~3개 · 財源(조합당 200억원 규 모): 지방자치단체, 지방 금융기관 등 공동 출연 - 신용보증기관의 보증능력을 확충하기 위해 법정운용 배수 확대: 15倍 → 20倍 <p>○ 중소기업 구조개선사업 확대 추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조개선사업 지원기간 및 규모 확대 	

년월일	경제시책	배경 및 취지	주요내용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기간: '93~'96年 → '97年 · 지원금액: 4조원 → 5조원 - 공장 자동화 지원 목적의 「자동화 센터」 건립 · 경기도 시화공단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 품질혁신의 대대적 전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품 1백만개당 불량률을 100개이하로 관리하는 「100PPM 품질혁신사업」 본격 실시 - 중소기업이 「ISO 9000」 규격을 획득하도록 지원 ○ 중소기업의 기술력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연 연구기관 보유기술 無償 제공 · 첨단 연구 기자재의 廉價 활용 지원 - 기술개발자금 공급 확대 · 공업기반 기술자금: '94年 1,414억→'95年 1,888억원 · 한국기술금융: '94年 7,307억원→'95年 1조원 ○ 중소기업 專用 백화점 건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 木洞('97年 完工) - 지방 常設 展示판매장 단계적 건립 ○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실질적 협력 증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과 대기업간 분업적 협력관계 구축 	

년 월 일	경 제 시 책	배 경 및 취 지	주 요 내 용	비 고
'95. 2. 13	投 信 社 特 融 全 額 回 收	3大 투신사들이 '94年 中 7,400억원의 흑자를 기록하 는 등 경영 정상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기업의 협력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 o 지방 중소기업 지원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 중소기업 「특별지원 지역」 지정('95.2月) · 전북, 전남, 강원 3개도의 5개 공업단지 · 입주 중소기업에 稅制, 금융지원 - 지방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 건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5年: 대전, 광주 - 지방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역협동 기술지원센터」 건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1개 지방 공업기술원에 설치 o 지방 중소기업의 세계화 지원 및 규제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의 신용장(一覽拂) 방식 수출에 대하여 수출 승인 폐지 - 기타 방식의 3만달러이하 수출은 승인 면제 · '92.8月 지원한 2조9천억원 중 잔액 1조3천억원 전액 회수 · 금융 및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통화 안정증권」과 「외국환 평형기금채권」 매입으로 동일 금액을 공급 	

년 월 일	경 제 시 책	배 경 및 취 지	주 요 내 용	비 고
'95. 2.13	外換制度 改革 方案 施行 ('95年 1次)	<p>'94.12.5 「외환제도 개혁 방안」의 '95年中 조치사항을 우선 「외환관리규정」을 개정하여 시행</p> <p>※ 관련법 개정 필요사항은 「외환관리법」 개정후 '95年 하반기에 시행</p>	<p>○ 경상거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액 경상거래의 실수요 증명 면제 전면 확대 - 해외 여행경비의 한도 확대 - 신용카드 해외사용의 자유화 확대 - 국제기구 등에 대한 증여성 송금의 자유화 확대 - 해외 이주비의 지급한도 확대 - 해외사무소 설치요건의 자유화 - 수출입 수수료 지급의 자유화 - 중계무역의 자유화 확대 - 상호 계산방법에 의한 대외 결제의 자유화 <p>○ 자본거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 증권투자의 자유화 확대 - 해외 예금의 허용 - 해외 신용공여의 허용 - 외국환은행 국외점포 업무 제한 완화 <p>○ 외환시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환집중제의 정지 (등록의무 폐지) - 외화 현찰매입 허용 - 외화예금 인출의 자유화 - 국내에서의 외화결제 허용 - 대외채권 회수의무 면제금액 확대 - 해외 외화보유대상 기업의 범위 및 보유한도 확대 	<p>관련 '94.12.5</p>

년월일	경제시책	배경 및 취지	주요내용	비고
'95. 2.15	民資誘致事業 選定	'94.8.3 「民資 유치 촉진 법」에 의한 최초의 民資 유 치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화휴대 수출입 한도 확대 - 원화 T/C 매각한도 확대 - 환전상의 외화보유한도 확대 <p>○ '95년 民資유치 10개사업 선정(총사업비 99,149억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로(4개): 천안~논산, 대구~김해, 수도권 신공 항, 거제~부산간 大橋 - 고속전철(1개): 東西고속 - 輕軌전철(2개): 부산(사상)~김해, 서울(천호동)~하남 - 운하(1개): 京仁운하 - 공항시설(1개): 수도권 신공항 여객, 화물 터미널 - 항만시설(1개): 목포 新外 港 다목적 부두 	관련 '94.8.3
'95. 2.15	外銀支店에 대한 外國人 投資關聯 業務委託 및 貿易業 投資 節次 簡素化	외국은행 국내지점에 대하 여도 국내은행 본점('94.7.1 위탁)과 같이 외국인 투자관 련 업무를 위탁하여 형평을 도모하고, 외국인 투자를 활성화	<p>○ 외국인 투자 관련업무 위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무위탁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 투자 신고수리 · 신고대상업종 외국인 투자 기업의 사후관리 - 위탁 대상 은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5.1.17현재 국내 진출한 72개 지점 중 38개 지점 (은행) <p>○ 외국인 무역업 투자 신고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역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 절차를 인가제에서 신고제 로 전환 	
		※ '95.2.7 「외은지점에 대한 외국인 투자관련 업무 위탁 및 무역업 투자절차 간소화」에 의거		

년월일	경제시책	배경 및 취지	주요내용	비고
'95. 2.20	減價償却 耐用年數改善	WTO體制下에서 기업의 경쟁력 제고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만 年間 매출액 1조원이 상의 무역업 전문 외국기업에 대하여는 '96年末까지 현행 인가제 유지 - 감가상각 내용년수 분류기준 축소조정: 591개 → 8개 - 해당 품목별로 기존 내용년수의 25% 범위안에서 자율 조정 가능 	'95.1.1 소급 시행
'95. 3. 1	金融規制緩和 方案	<p>금융규제 완화를 통하여 금융 자율화를 추진하는 동시에 금융기관의 책임경영 체제의 확립을 적극 유도</p> <p>※ '95.2.24 「금융규제완화 방안」 마련</p>	<p>○ 은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대 계열기업군의 他회사 주식 취득 승인제도 폐지 - 主거래은행 사전 승인 및 自救의무 부과 → 폐지 ('95.4月) - 기업 金錢信託 가입대상 확대 - 기업, 개인 사업자 등으로 제한하여 왔으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도 포함 - 신탁 표준 계약서 및 約款 변경 자율화 - 財經院장관 승인 → 사후보고 <p>○ 증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還買債 매수 준비금 의무 예치제 폐지 - 환매채 殘高의 4.5%를 「증권 금융」에 예치 → 폐지 - 割賦式 증권 저축한도 확대 - 한도액 300만원 → 1천만원 (자기회사 직원은 금지) 	'95.4.1 후속조치

년 월 일	경 제 시 책	배 경 및 취 지	주 요 내 용	비 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증권저축 매입 단위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株 이상 → 소숫점 이하 6자리까지 - 投信社의 금융기관에 대한 수익증권 매각 허용 <p>○ 상호신용금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契 및 信用賦金 취급제한 폐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건제한, 신용부금과의 구분 計理 및 相互移替 금지 → 폐지 - 他人 名義의 豫受金 담보 대출 허용 - 신용관리기금의 어음 再매입 한도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기자본의 20%이내, 최고 30억원 → 최고 40억원 <p>○ 신용협동조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업구역 제한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리적으로 직접 인접한 行政 洞, 邑, 面에서의 영업 허용 - 고정자산 취득 제한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기자본 범위내 업무용 고정자산만 허용 → 업무용 부동산 모두 허용 - 대출 約定한도 폐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합과 조합원이 약정한 대출한도내에서 자유로운 대출 허용 - 신용협동조합 및 연합회의 설립, 합병 등 認可權의 위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財經院 인가 → 信協중앙회 인가 	

년월일	경제시책	배경 및 취지	주요내용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금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貿易外 지급 認證書 유효 기간 확대: 60日 → 6個月 - 國內은행 現地 법인 등에 대한 외국인 國內 주식투자 증개 수수료 지급 허용 - 기관 투자가의 해외 증권투 자 종목 제한 완화 · 上場주식 중심 투자허용→ 상장 및 非상장 주식투자 허용 ○ 보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有價增資에 대한 인가제도 폐지(자유화) · 無價증자는 현행 인가제 유지 - 생명보험사 점포 설치 및 모집인 한도 제한 폐지 (自由化) - 사업비 지출 제한 폐지 · 예정사업비 초과 집행정도 에 따라 점포설치 제한, 任職員 동결 등→폐지 - 생명보험의 새로운 위험률 사용 제한 완화 · 보험개발원 檢證 및 재경원 신고 受理→ 保險開發院 檢證 ○ 投金·綜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열기업군에 대한 與信한 도 제한 완화 · 종전: 어음할인 총액을 자 기자본의 1倍이내로 제한 · 변경: 主力업체에 대하여 는 與信한도에서 제외 	

년월일	경제시책	배경 및 취지	주요내용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본금 변경 규제 완화 · 재경원 장관 승인→ 필요한 경우 외에는 신고 - 유가증권 소유한도 규제 완화 · 종전: 猶豫기간(3개월)후에 소유한도 대상에 포함 · 변경: 유가증권 인수업, 증권투자 신탁업 등 수행에 따라 보유하는 유가증권은 소유한도에서 제외 <p>○ 신용보증기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점포설치 승인제도 폐지 <p>○ 리스社</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자한도 확대: 자기자본의 30%이내 → 50%까지 	
'95. 3. 1	地方 中小企業 特別支援地域 設定	'93.12月 「지역 균형개발 및 지방 중소기업 관련 법률」 제정	<p>○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 지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개工團: 정읍 제2,3공단, 대불공단, 북평공단(국가, 지방) 	관련 '95.2.9
'95. 3. 2	市内버스 등 排出가스 規制 強化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내버스 및 대형 경유차의 배출가스 허용기준 강화 	
'95. 3. 3	<IBRD 借款 導入 終了>	세계은행(IBRD)과 부산市 도시교통관리 사업비 등 1억75백만달러 차관도입 계약 체결('95.3.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BRD차관 최종 도입계약체결 및 IBRD차관 졸업 署名 <p>※ '62.8月 최초 도입</p>	

년월일	경제시책	배경 및 취지	주요내용	비고
'95. 3. 6	農漁村 發展 對策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專門 농어업인력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쌀, 축산, 원예, 水産 등 분야별로 경영과 기술혁신에 앞선 農漁家 15천호선정 - 경영규모 확대, 기계화 등의 종합지원 ○ 농업회사 법인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어민에게 企業的 경영기법을 확산 	
'95. 3. 7	證券社의 海外進出 擴大 方案	국내 증권회사의 해외점포 설치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 하여 해외진출 증진 도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 사무소 설치 限度制 폐지(자유화) · 해외 營業店 昇格을 위한 해외 사무소 설치기간 요건 단축(2年→1年) · 증권회사별 年間 해외점포 설치 한도 폐지 	
'95. 3.10	埋立港灣敷地 私有化 許容 計劃	·항만개발사업에 대한 民資 참여 촉진 ※ 「항만법 시행령」 개정 ('95.3.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개발 항만부지의 私有化 허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民資로 매립하여 조성한 항만부지는 荷役, 보관, 운송 시설 등에 필요한 구역만 공공용지로 지정(국가歸屬) - 나머지 背後 토지에 대하여는 民資 사업자가 소유권을 갖고 별도의 개발계획수립 가능 ○ 民資개발 港灣敷地의 국가 歸屬범위 (안벽에서부터의 거리) 	'95.7.5 시행

년 월 일	경 제 시 책	배 경 및 취 지	주 요 내 용	비 고
'95. 3. 14	그린벨트 規制 緩和	<p>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內에 농어촌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농산물 도매시장 등 농어업 관련시설 부지 확보</p> <p>또한 부산市의 도시발전을 지원하고 그린벨트지역 주민의 교육문제(학교시설), 주택상속 등 오랜 民願 해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화물 부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형부두(2만 DWT미만): 100m · 대형부두(2만 DWT이상): 200~300m - 다목적 부두: 300m - 컨테이너 부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더(환적)부두: 300~500m · 專用부두: 500~700m <p>○ 그린벨트內에 국·공립 고등학교 건축 허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구역 면적의 50%이상이 그린벨트지역에 들어있어 학교 시설부지가 부족한 市郡區 대상 <p>○ 그린벨트內 농어업 관련시설 등 설치 허용 또는 설치규모 확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산市의 농산물 도매시장 설치 허용 - 농협의 米穀 종합처리장 설치 허용 · 그린벨트內 논면적이 1천ha 이상인 25개지역 - 버섯재배사 규모확대: 300㎡ → 500㎡ - 水産種苗 배양장 및 농산물 종묘 조직 배양실: 100㎡이내 설치가능 - 해태 건조장: 100㎡→200㎡ - 정미소 이전 및 漁具 보관 용 건물설치(60㎡)가능 - 屠畜場 증축면적 확대: 기존면적의 50% → 100% 	

년월일	경제시책	배경 및 취지	주요내용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專門農協(농금농협 등)에만 허용하고 있는 共販場을 일반지역 단위농협도 설치 가능 - 그린벨트 지정 以前에 설치된 시멘트 블럭공장의 양생 시설 설치 허용 ○ 그린벨트內 相續 주택 增築 허용 - 그린벨트 指定 때부터 또는 5年이상 거주한 자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에 限定 - 주택 증축 가능 면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린벨트指定 당시 거주자로부터 상속: 200㎡(60평) · 5年이상 거주자로부터 상속: 132㎡(40평) 	
'95. 3.15	대그룹의 地方 生保 進出許容	<p>지방 생명보험사들의 增資 능력을 높여 經營 정상화 촉진</p> <p>※ 「보험事業者의 株主資 格 등에 관한 기준」과 「지방 생명보험회사 세부 설립허가 지침」 개정('95.3.15)</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 생명보험회사 주식소유 제한 대상 축소 조정 (30대그룹 → 15대그룹) - 16~30대그룹 중 현재 生保 社를 갖고 있지 않는 11개 그룹은 地方生保社 주식취 득 가능 ○ 地方生保社의 同一人 持分 한도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일인 지분율: 40%미만 → 50%미만 	
'95. 3.17	非業務用 不動產 判定基準 緩和	「법인세법 시행규칙」 개정 ('95.3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업무용 판정 猶豫期間 연장 - 공장용부지: 1~2年 → 3年 	'95.3月末 시행

년월일	경제시책	배경 및 취지	주요내용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企業附設 연구소용 부지, 주택신축 매매용부동산 등: 2年 → 3年 - 民資유치 사업용 토지 (신설, 3年) o 「法令에 의한 사용 제한時」의 판정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용제한 기간은 제외하고 사용제한 해제일로부터 3年 (현행, 사용 제한일로부터 3年) - 건물의 燒失, 철거: 철거일로부터 3年(현행 2年) o 기타의 판정기준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 부속 토지 기준면적 확대 - 주차장용 토지의 업무용 인정 범위 확대: 기준면적의 1.1 → 1.5倍 - 농지, 鹽田의 非업무용 판정 기준 완화 	
'95. 3. 20	EDI 通關對象 擴大	수출업체의 불편 해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DI(電子文書교환)방식 수출 通關대상 확대: 件當 5만달러이하 → 모든 수출 자동 승인 품목 · 수출제한 승인품목의 EDI 수출통관: '95年中 시행계획 	
'95. 3. 23	農漁村 住宅 讓渡所得稅 免除	농어촌 지역 주민의 양도소득세 부담을 경감하고 歸農을 장려	<ul style="list-style-type: none"> o 5年以上 거주 邑面 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제외 - 邑面지역에서 5年以上 거주 	'95.1.1 소급 시행

년월일	경제시책	배경 및 취지	주요내용	비고
		<p>※ 「소득세법 시행규칙」 개정('95. 3. 23)</p>	<p>했던 사람이 도시에서 주택을 취득했을 경우 읍면지역 주택은 과세대상에서 제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주택 양도시 「1가구 1주택」의 비과세 혜택 적용 - 대상 읍면지역: 서울 및 경기도 지역과 도시계획구역을 제외한 나머지 읍면지역 <p>○ 歸農時 도시지역 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제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에서 살던 사람이 본적지 또는 과거 5년이상 거주했던 농어촌 지역의 주택을 취득했을 경우 도시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 면제 - 양도소득세 면제 요건 · 歸農하면서 취득하는 농어촌 주택이 200명이내이며, 300명이상의 농지를 함께 취득 · 歸農後 3년이상 營農에 종사 <p>○ 相續 농어촌 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제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모가 5년이상 거주하다 상속한 농어촌 주택은 양도所得稅 과세대상에서 제외 	
'95. 3. 24	連鎖化 事業 指定要件 緩和	유통시장 개방을 앞두고 가장 큰 타격이 예상되는 중소기업들의 協業化와 조직화를 유도	<p>○ 연쇄점 사업자(본부) 지정 요건 완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부 공급비율 하향 조정: 30% → 10% 	관련 '93. 12. 23

년 월 일	경 제 시 책	배 경 및 취 지	주 요 내 용	비 고
'95. 4. 1	公正去來制度 改善	<p>경제력 집중의 폐해를 시정하고 국가 경쟁력 강화 시책을 지원하기 위하여 출자규제 제도를 보완하는 한편, 세계화에 부응하여 공정거래 제도를 국제적 기준에 맞게 개선</p> <p>※ '94.12.2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p>	<p>· 30개의 가맹점 확보후 이들의 평균 매출액 중 10%이상을 본부에서 공급</p> <p>○ 연쇄점 事業者에 대한 사후 관리 강화</p> <p>- 연쇄점 사업자 지정일 이후 酒類를 제외한 본부 공급비율을 1年마다 10%씩 상향 조정</p> <p>· 연쇄점 사업자 지정일 2年後에는 본부 공급비율을 30%이상 유지</p> <p>○ 출자총액 한도 조정</p> <p>- 대규모 기업집단의 출자총액한도: 순자산의 40%→25%</p> <p>· 한도초과 유예기간: 시행일로부터 3年이내</p> <p>- 사회간접자본시설 시행 민간사업자에 대한 출자는 출자총액한도의 예외 인정</p> <p>· 예외 인정기간: 20年이내 (필요시 10年이내에서 연장가능)</p> <p>- 국가 경쟁력 강화와 관련한 출자총액한도 초과에 대해 예외기간 연장</p> <p>· 증자, 주식배당에 따른 한도 초과: 1年 → 2年</p> <p>○ 소유분산 우량기업과 집단에 대한 출자총액 예외 인정</p> <p>- 소유분산 우량기업 집단 요건</p>	

년월일	경제시책	배경 및 취지	주요내용	비고
'95. 4. 1	金融分野 規制緩和	은행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금융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44개 금융규제항목을 개정 ('95.3.31, 은행감독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대주주 및 친인척 지분율이 10%미만이고 계열사 합계 내부 지분율 20%미만 · 또한 자기자본 비율이 20% 이상이고 기업공개비율 (자본금) 60%이상 - 소유분산 우량기업 요건 · 1대주주 및 친인척 지분율이 8%미만이고 내부 지분율이 15%미만 · 또한 자기자본이 자산총액의 20% 이상이고 주력기업이 아닐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계약에 대한 공정거래제도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계약 체결시 「공정거래 위원회」에 대한 신고 의무 폐지 - 국제계약 규정 위반여부에 대한 심사청구제도 도입 ○ 공정거래법 위반사건 시효연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로부터 5年(종전, 3年) ○ 은행경영 관련 부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상증자의 자율화: 금융통화운영위 사전인가→ 은행감독원에 사후보고 - 은행 자기자본의 20%범위내에서 자회사 출자 자율화 - 신상품 개발 보고제도 폐지 	관련 '95.3.1

년 월 일	경 제 시 책	배 경 및 취 지	주 요 내 용	비 고
'95. 4. 1	第 2 段 階 保 險 商 品 價 格 自 由 化	<p>보험사들간의 경쟁을 촉진하고 보험 계약자들의 권익 증대 목적</p> <p>※ '93.12月 「보험상품 가격 자유화 계획」에 의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손충당금 적립비율 및 부실여신 비율 수준에 따라 당기순이익의 40~60%범위 내에서 배당률 자유화 o 여신부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大 계열기업군의 부동산 취득시 自救노력 면제대상인 근로자 주택규모 확대: 전용면적 18평이하→25.7평 (국민주택규모)이하 o 리스부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리스사의 국산기계 의무지원 비율 삭제(종전, 리스 실행액 기준 40%) - 리스가 금지되어 있는 부동산 임대업 중 서민주택 임대업에 대하여는 리스 허용 o 신용카드 부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질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신용카드의 각종 요율 결정을 자율화 - 신용카드 전업사와 은행간의 업무 제휴 승인제도를 완화하여 자금이체 및 현금 서비스 대행 등은 자유화 o 손해 보험료의 자유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재, 손해, 수출입 적하 보험 등 18개 손해보험 상품의 보험료를 표준요율의 上下 5%~15% 범위내에서 자유화 	

년월일	경제시책	배경 및 취지	주요내용	비고
'95. 4. 1	高度技術 隨件 外國人 投資에 對한 支援	외국의 선진기술을 적극 도입함으로써 국내산업의 국제 경쟁력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험률차 배당률의 자유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정 사망률과 실제 사망률 차이에 따르는 이익배당률 (위험률차 배당률) 자유화 - 다만 '95년도 위험률차 배당 소요자금을 미리 적립하지 않은 25개 生保社에 대하여는 위험률차 배당률을 年間 위험보험료의 15%이내로 제한 ○ 외국인 투자지원대상 고도기술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자, 정보, 전기, 신물질 등 261개 ○ 금융지원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 투자금액 범위내에서 시설재 도입용 상업차관 및 3年이내 단기 해외차입 허용 - 지분율 49%이내에선 국내 할부금융업 진출 가능 ○ 租稅지원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인세 등 減免 개시 시기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개시년도→최초 소득 발생년도 - 減免기간 연장: 5年→8年 · 최초 5年間은 100% 감면 · 그후 3年間은 50% 감면 ○ 國有재산 長期, 低價임대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 전용 공단(천안, 광주 평동)에의 입주 우선권 	

년월일	경제시책	배경 및 취지	주요내용	비고
'95. 4. 1	株式價格 制限幅 擴大	주식가격을 기업의 본질가 치에 신속히 접근시켜 시장 정보의 효율성 제고 도모 ※ '95.1.3 「주식매매제도 선진화 방안」에 의거	- 20년의 범위내에서 임대 허용(임대기간 更新 가능) - 滿期時 기부채납 또는 원상 회복조건으로 永久시설물 설치 허용 · 주식가격 제한폭 확대: 전일 종가대비 평균 4.6%이 내(정액제) → 上下 6%이내 (정률제)	관련 '95.1.3
'95. 4. 1	建設機械型式 承認 免除	'95.3.10 「기업활동 규제완 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령」 개정	· 형식승인 대상 26개 건설 기 계 중 21개의 형식 승인면제 → 사후신고 · 형식승인 면제 대상(21개): 무한궤도식 굴삭기, 로우더, 기중기, 불도저, 지게차, 아스팔트 피니셔 등	
'95. 4. 1	準農林地域 工場增設 許容	'95.3.10 「기업활동 규제완 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령」 개정	· 준농림지역의 공장 중 '93年 末 이전 설립한 공장에 대하 여 增設 허용 · 다만 기존 공장敷地 면적의 50%이내에서 시설 자동화나 공장 개선 등을 위한 增設에 한정	
'95. 4. 3	株價指數 先物市場 試驗開場	국내 최초 개장되는 파생 금융시장	· 상장지수: KOSPI 200 · 종류: 3월물, 6월물, 9월물, 12월물 · 정식 개장시기: '96.1.1	

년 월 일	경 제 시 책	배 경 및 취 지	주 요 내 용	비 고
'95. 4. 3	割賦 金融業 許容 方案	<p>'97年 할부 금융시장 개방에 대비하여 국내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제조업체의 과도한 금융부담 경감 목적</p> <p>※ 「할부금융사 인가기준」 확정('95.4.3)</p>	<p>○ 할부금융사 인가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할부금융사의 납입 자본금: 200억원이상 · 30대 기업집단별 1개사만 인가 - 일반기업의 할부금융업 참여 · 내구재 제조업체만 최대 주주 가능 · 10%이상 출자사의 매출채권 잔액 합계 2천억원이상 (중소기업만 출자시: 1천억원 이상) - 금융기관의 할부 금융업 참여 · 리스 및 신용카드 專業社만 최대 주주 가능 · 단독, 금융기관간 또는 일반 기업과의 합작 허용 - 팩토링 회사의 할부금융사 전환 · '93年末 이전 설립업체: 채권(금융자산) 잔액 1천억원이상인 경우 전환가능 · 채권잔액 미달사와 '94年 이후 신설업체: 당해사와 10%이상 출자사의 채권잔액 합계가 2천억원 이상인 경우 전환 가능 - 외국인 합작회사의 할부 금융업 참여: 本國서 10年 이상 할부 금융업 영위 · 소유지분 49%이하 참여 허용 · 국내 일반기업, 리스 및 신용카드 전업사와의 합작 가능 	'96.1.1 영업개시

년 월 일	경 제 시 책	배 경 및 취 지	주 요 내 용	비 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구재 제조업체만 최대 주주 가능 ○ 할부 금융사 업무운용 준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지원 대상: 원칙적으로 모든 내구재를 대상 · 부동산 매입자금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채무한도: 채권발행 포함 자기자본의 10배 - 할부금융 수수료율: 최고한도 年 2% - 소비자 보호장치 · 구매일 후 일정기간내 철회 가능(철회권) · 하자담보 책임 불이행시 대금지급 거절(항변권) · 할부금 기한 도래전 상환 허용 ○ 설립인가 추진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서 접수: '95.5.1~6.30(2개월) - 내인가 및 본인가: '95.7月~12月 - 영업개시: '96.1.1이후 	
'95. 4. 6	相互信用金庫 制度 改善	<p>庶民과 소규모 기업에 대한 금융기회를 확충하고 금융 서비스의 質을 높이기 위한 목적</p> <p>※ '95.3.13 「상호신용금고 제도 개선방안」 마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호신용금고의 同一人 與信 한도 상향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인: 자기자본의 5%→10% (30억원) - 개인: 자기자본의 2%→5% (15억원) 	<p>관련 '95.3.1</p>

년월일	경제시책	배경 및 취지	주요내용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출대상 소규모기업의 범위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업, 제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업원 100人以下 또는 총자산 3억원이하→150人以下 또는 50억원 이하 - 건설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업원 20人以下 또는 총자산 5천만원이하→50人以下 또는 10억원 이하 ○ 신용관리기금의 권한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행업무와 관련된 권한을 財經院에서 신용관리 기금으로 위임 · 상호신용금고에 대한 검사권, 정관변경 및 영업소 위치 변경 인가권 등 ○ 상호신용금고에 대한 규제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유자금 운용대상에 은행의 신탁상품 추가 - 신용관리기금예탁 지급준비 자산 중 20%범위내에서 國債 및 재정증권 보유 가능 - 일반임원의 국가기관, 금융기관 등 근무경력(2~3年) 요건 폐지 	
'95. 4. 6	技術導入 申告制 廢止	기술도입의 원활화로 국내 산업의 경쟁력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主務部處에 대한 기술도입 신고제 폐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은 主去來 은행의 外換支給認證이나 사후 확인만으로 외국기술을 자유롭게 도입 	

년월일	경제시책	배경 및 취지	주요내용	비고
'95. 4. 6	巨額與信總額 限度制	<p>대기업에 대한 편중 여신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는 완화하되 은행을 통한 간접규제를 강화할 목적으로 「거액여신 총액 한도제」를 도입</p> <p>이에 따라 현행 「동일인 여신한도제」 및 「바스켓관리제도」에 추가하여 同 제도를 운용</p> <p>※ 「여신관리제도 개편방안」 확정('95. 4. 6)</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外資 도입법상의 조세 면제 대상 高度기술 도입도 신고 절차 불필요 - 例外업종(신고제 계속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공기, 우주비행체 및 부속품 · 원자력 기술 · 방위산업 기술 <p>○ 거액여신 총액 한도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일인 또는 동일 기업군에 대한 「거액여신」의 합계가 은행 자기자본의 5배를 넘지 못하도록 규제 - 거액여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은행 자기자본의 15%를 초과하는 여신 · 지급보증과 신탁대출금을 포함 - 경과기간: 거액여신 총액 한도의 기존 초과분에 대하여는 향후 5年内에 초과여신을 감축 <p>○ 10大 계열기업군에 대한 투자 규제 완화('95. 4. 10시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기업에 대한 투자규제 전면 폐지 - 사회 간접자본시설 투자를 위한 부동산 매입시 自敎노력 의무 폐지 - 自敎노력 의무가 면제되는 근로자 복지주택 규모확대: 18평(60㎡)→25.7평(85㎡) 	'95. 6. 1 시행

년 월 일	경 제 시 책	배 경 및 취 지	주 요 내 용	비 고
'95. 4. 11	附加 通信事業 自由化	<p>민간기업의 附加 通信사업 진출을 활성화하고 자율적인 가격 결정으로 낮은 가격의 다양한 통신서비스 제공 도모</p> <p>※ 전기통신 기본법 및 사업법 시행규칙 개정 ('95. 4. 11)</p>	<p>○ 부가가치(VA) 통신사업의 신고제 도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가를 받아야 하는 一定 사업 이외에는 신고만으로 서비스 사업 수행 가능 (Negative System) - 허가대상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화(시내, 시외, 국제) · 加入電信(텔렉스) · 專用回線 서비스 · 주파수를 할당받는 전기통신 서비스 <p>○ 後發 基幹 통신 사업자의 이용요금 차등 결정(3%범위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장 점유율이 20%이하인 경우 서비스 요금을 他사업자보다 3%까지 낮게 책정 가능 	
'95. 4. 12	AS마크 制度 導入	<p>공산품의 AS(After Service) 질을 높이기 위한 목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계적인 AS망을 갖추고 소비자에게 만족스런 사후봉사를 제공하는 업체에 대하여 제품이나 포장지에 「AS 마크」 부착 허용 	'95. 5월 시행
'95. 4. 13	宅地所有 上限制度 改善	<p>「택지소유 상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95. 4. 13)</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 부속 토지 기준 면적 산정방법 변경 · 주택분양용 택지의 의무처분 기간 연장: 취득일로부터 3年(1年 연장 가능) → 4年(1年 연장 가능) · 공익, 공공사업에 편입되거나 시장용지로 결정되는 경우 등에는 개발 부담금 면제 	'95. 6월 시행

년 월 일	경 제 시 책	배 경 및 취 지	주 요 내 용	비 고
'95. 4. 15	證券業務 規制緩和 方案	<p>증권사에 대한 타법인 출자를 완화해 증권사의 업무영역을 확대하고, 증권관련 업무를 간소화하여 투자자들의 불편해소 도모</p> <p>※ '95.4.10 「제1차 증권 업무 규제완화 방안」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 운수, 건설기계, 위험물 취급 사업자 등의 업무용 토지 허가기준 확대: 기준면적의 1.1배까지 → 1.5배까지 · 나대지에 시장용지를 제외 <p>○ 발행시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식 幹事회사 지정 취소 제도 폐지 - 공개전 대주주 등의 주식소유비율 변동제한 완화 · 공개전 3년동안 발행된 CB(전환사채)의 주식 전환으로 인한 지분변동 허용 - 해외 증권발행시 외국인 지분비율 50%이상인 경우의 우선주 발행의무 폐지 <p>○ 유통시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용 용자의 자격 제한을 폐지 · 증권사가 신용용자 여부 및 시기를 자율 결정 - 결제 완료전 다른 종목의 매매 주문 수탁금지조치 폐지 - 증권사 代用증권 확대 · 주식, 채권, 수익증권외에 신주 인수권도 대용증권으로 인정 - 채권 상장절차 간소화 · 국공채의 건별 상장→年間 발행예정물량 일괄 상장 - 증권거래소 呼價 정보 공개 범위 확대 	

년 월 일	경 제 시 책	배 경 및 취 지	주 요 내 용	비 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우선 순위의 매수·매도 가격 및 수량→3순위까지 - 증권거래소 결제 대응증권 발행 확대 · 隔地間 거래 등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도 발행가능 <p>○ 시장개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 합작투자기업 주식 에 대한 외국인 취득한도 (12%) 예외 승인제를 신고 제로 전환 - 내국인 대우를 받는 국내거 주 외국인에 대하여 주식형 수익증권 취득 허용 <p>○ 증권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 증권사 주식소유한도 중 일부 폐지 · 폐지되는 한도: 자본금의 1%와 타증권사 자본금의 0.2% 중 적은 금액 · 총한도(자기자본의 60%)와 종목당 한도는 그대로 유지 - 타법인 출자완화 · 출자한도 확대: 20%→40% · 금융기관 자회사 설립 때 는 자기계열 주식 소유한 도 적용 제외 - 점포 신설, 인가에 대한 건 별 인가제도 폐지 - 증권저축자의 주식 매매가 능 종목 확대 · 감리종목에 대한 매수주문 허용 	

년 월 일	경 제 시 책	배 경 및 취 지	주 요 내 용	비 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할부식증권저축 한도 확대: 3백만원 → 1천만원 - 증권저축 매입 단위 제한 폐지: 최소매입 단위 1주 → 소숫점 6자리까지 매입 허용 - 수납장소 제한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주택 채권 등 강제 소 화채권은 구청, 등기소 등 발행장소에서 증권사 직원 출장 매매 허용 - 還買受 준비금 예치제 폐지 · 종전: 환매채(RP) 잔고의 4.5%를 「한국증권금융」 에 예치 - 증권사 대주주 변경시 동의 제 폐지 - 증권사 상호변경 인가제 폐지 <p>o 투자신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일종목 투자한도 제한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탁재산의 5% → 10% - 해외 투자한도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기자본의 15%이내 → 30%이내 - 해외 투자신탁의 투자대상 유가증권 범위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채, 지방채, 외국법인 주권 등 외에 정기예금과 수익증권 포함 - 해외 투자신탁의 환매기간 제한(2年) 폐지 - 출장소의 지점 승격 인가제 폐지 	

년 월 일	경 제 시 책	배 경 및 취 지	주 요 내 용	비 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자문 - 주식관련 자산운용 허용 · 자기자본범위내에서 주식, CB, 신주 인수권부사채 등에 대한 투자 허용 	

附錄1 年度別 經濟施策 索引

1945年	547
1950年	548
1960年	550
1970年	555
1980年	560
1990年	568

1945年

- 8. 15 < 8·15 해방 >
- 9. 20 국고금의 獨立 金庫制 실시
- 10. 1 공정換率
- 10. 5 소작료 三一制 실시
- 10. 20 融資허가제(自由與信 한도제)
- 11. 2 稅制의 승계
- 11. 5 < 造船勞組 전국 평가회 결성 >
- 12月 < Bretton Woods 협정 발효 >

1946年

- 1. 3 貿易 허가제 실시
- 3. 10 < 大韓獨立促成 노동연맹 결성 >
- 6. 1 예금金利 인하
- 7. 4 輸出入 統制
- 10. 5 대출金利 인상
- 10. 8 關稅令 개정

1947年

- 6. 16 朝鮮換金銀行 설립
- 7. 15 공정換率
- 8. 25 貿易관계법령 정비

1948年

- 1月 < GATT 발효 >
- 2月 外換預置證 제도
- 4. 14 銀行檢査제도 실시
- 7. 1 자유매매 換率
- 9. 28 정부간 換率 책정
- 8. 15 < 政府樹立 >
- 9. 11 韓·美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 협정
- 12. 10 韓·美 경제원조 협정

1949年

- 2. 1 국세조사 실시
- 2. 15 輸入쿼터제
- 5. 17 輸出入 허가품목 발표
- 6. 1 國庫金の 朝鮮銀行 집중
- 6. 13 複數 換率제도 실시

7. 1	金利조정	利率調整	7. 1
7. 15	稅制개편	稅制改訂	7. 15
7. 17	일반 換率 폐지	一般 換率 廢止	7. 17
9. 4	輸出入 價格 가격방법 결정	輸出入 價格 價格方法 決定	9. 4
9. 19	貿易業者 등록제	貿易業者 登記制	9. 19
1950年			
3. 4	經濟安定 15원칙	經濟安定 15원칙	3. 4
3. 25	農地개혁	農地改革	3. 25
4. 10	단일 換率制	單一 換率制	4. 10
6. 12	韓國銀行 설립	韓國銀行 設立	6. 12
6. 12	外換 예치 집중 제도	外換 預貯 集中 制度	6. 12
6. 22	대출 최고 한도제	대출 最高 限度制	6. 22
6. 25	< 6·25 전쟁 발발 >	< 6·25 戰爭 爆發 >	6. 25
6. 28	預金 支給制限	預金 支給 制限	6. 28
7. 6	주한미군 및 UN군에 圓貨 대여	駐韓美軍 及 UN軍 到 圓貨 貸與	7. 6
7. 19	預金 支給制限 범위결정	預金 支給 制限 範圍 決定	7. 19
8. 28	貨幣 交換	貨幣 交換	8. 28
10月	貸出 사전 승인제	貸出 事前 승인制	10月
11. 1	換率 결정	換率 決定	11. 1
11. 16	外換 緊急 措置	外換 緊急 措置	11. 16
11. 30	組稅 임시 증징법 제정	組稅 臨時 增徵法 制定	11. 30
12. 1	임시 組稅 조치법 제정	臨時 組稅 措置法 制定	12. 1
12. 1	登錄稅法 제정	登錄稅法 制定	12. 1
12. 13	< UNKRA 설치 >	< UNKRA 設置 >	12. 13
12. 22	지방稅法 제정	地方稅法 制定	12. 22
1951年			
1. 1	組稅 特例法 제정	組稅 特例法 制定	1. 1
2. 1	金融기관 資金 운용요강	金融機關 資金 運用要綱	2. 1
3. 1	營業 監察制 실시	營業 監察制 實施	3. 1
4. 1	貸出 사전 승인제 폐지	貸出 事前 승인制 廢止	4. 1
4. 19	預金 支給準備制度 실시	預金 支給準備制度 實施	4. 19
5. 7	租稅犯 處罰法 제정	租稅犯 處罰法 制定	5. 7
9. 24	財政法 제정	財政法 制定	9. 24
9. 25	土地收益租稅 物納制	土地收益租稅 物納制	9. 25

- 7. 1 金利조정
- 7. 15 稅制개편
- 7. 17 일반 換率 폐지
- 9. 4 輸出入 價格 가격방법 결정
- 9. 19 貿易業者 등록제

1950年

- 3. 4 經濟安定 15원칙
- 3. 25 農地개혁
- 4. 10 단일 換率制
- 6. 12 韓國銀行 설립
- 6. 12 外換 예치 집중 제도
- 6. 22 대출 최고 한도제
- 6. 25 < 6·25 전쟁 발발 >
- 6. 28 預金 支給制限
- 7. 6 주한미군 및 UN군에 圓貨 대여
- 7. 19 預金 支給制限 범위결정
- 8. 28 貨幣 交換
- 10月 貸出 사전 승인제
- 11. 1 換率 결정
- 11. 16 外換 緊急 措置
- 11. 30 組稅 임시 증징법 제정
- 12. 1 임시 組稅 조치법 제정
- 12. 1 登錄稅法 제정
- 12. 13 < UNKRA 설치 >
- 12. 22 지방稅法 제정

1951年

- 1. 1 組稅 特例法 제정
- 2. 1 金融기관 資金 운용요강
- 3. 1 營業 監察制 실시
- 4. 1 貸出 사전 승인제 폐지
- 4. 19 預金 支給準備制度 실시
- 5. 7 租稅犯 處罰法 제정
- 9. 24 財政法 제정
- 9. 25 土地收益租稅 物納制

1952年

- 1. 31 預金 支給準備金 결정
- 2. 1 무기명 定期預金制 실시
- 2. 26 搗精 제한
- 4月 農地改革事業 특별회계법 제정
- 5. 24 合同 經濟委員會 設置
- 12. 4 外貨 대부제도 실시
- 12. 15 圓貨 貸與 중단

1953年

- 2. 15 긴급 通貨金融 조치
- 2. 23 換率 결정
- 3. 8 勞動基本法 제정
- 5. 10 勤勞基準法 제정
- 7. 27 < 6·25 전쟁 휴전 >
- 10. 1 용자 순위제
- 12. 14 經濟再建과 財政安定 계획에 관한 合同 經濟委員會 협약

1954年

- 1. 23 會計年度 변경
- 3. 3 화폐 최고 발행제
- 3. 31 稅制 개편
- 4. 1 韓國産業銀行 발족
- 7. 28 經濟復興 5個年 계획수립
- 10. 1 入札公賣에 의한 外換 매입
- 11. 17 換率 결정

1955年

- 5. 31 美 剩餘農産物 도입 협정 조인
- 7. 1 貸出 최고한도제 변경
- 8. 8 證券去來所 開場
- 8. 15 단일 공정 換率 제정
- 8. 22 新外換 정책
- 8. 30 주춤에 의한 外換 배정
- 8月 IMF 및 IBRD 加入
- 9. 1 輸出入 절차 개정
- 12. 15 商業어음제 실시

1956年

- 5. 1 油類·油煉炭 배정 중지
- 5. 1 農業銀行 설립
- 6. 27 會計年度 변경
- 11. 28 韓·美간 우호 협상 및 항해에 관한 조약

1957年

- 2. 14 農業協同組合 설립
- 4. 1 支給準備金 제도 개선
- 4. 20 財政安定 계획
- 5. 18 國債添加에 따른 外換 配定制
- 11. 1 米穀담보 응자제도
- 12. 5 계정간 이체를 통한 外換 配定制

1958年

- 1. 2 資産 再評價法 제정
- 3. 11 財政安定 계획
- 3. 18 貿易관련 법규 정비
- 8. 28 外換特別稅 신설
- 12. 28 稅制 개편

1959年

- 2. 16 貯蓄預金제도 신설
- 2. 20 財政安定 계획
- 3. 1 貸出 최고한도 일시 폐지
- 6月 對日통상 중단
- 11月 輸出 지원 금융
- 12. 30 공무원 年金制度 실시

1960年

- 1. 1 定期積金 신설
- 1. 1 外資導入 촉진법 제정
- 1. 30 緊急 物價抑制 대책
- 4. 12 對日通商 재개
- 4. 19 < 4·19 혁명 >
- 6. 1 貸出 최고한도제 재개
- 12. 31 土地稅法 제정

1961年

- 1. 10 韓國 經濟協會 발족
- 2. 1 換率 결정
- 2. 1 輸出 金融 규정 제정
- 2. 2 外換제도 개편
- 5. 16 < 5·16 군사 정변 >
- 5. 16 金融 및 物價凍結
- 5. 20 < 國家 再建 最高會議 發足 >
- 5. 25 農漁村 高利債 정리
- 6. 1 긴급 經濟대책
- 7. 9 金利인상 및 支給準備率 인하
- 7. 22 經濟企劃院 창설
- 7. 28 經濟 긴급대책
- 7. 29 預金, 積金 비밀보장
- 7. 29 農協과 農銀의 統合(農業協同組合 발족)
- 8. 1 中小企業銀行 설립
- 8. 24 金融등결 해제
- 9. 9 稅務士法 제정
- 9月 < OECD 발족 >
- 10. 5 調達廳 설립
- 10. 20 輸入信用狀 개설 보증금제도 개선
- 11. 9 物價凍結 조치
- 11. 16 通貨安定證券 발행
- 12. 2 < 國土建設團 설치 >
- 12. 2 稅制 개편
- 12. 17 外資導入 운영방침
- 12. 19 豫算會計法 제정
- 12. 31 기업 豫算會計法 제정
- 12. 31 지방交付稅法 제정
- 12. 31 物價調節法 제정

1962年

- 1. 5 제 1차 經濟開發 5個年 計劃 발표
- 1. 15 統計法 제정
- 1. 15 利子制限法, 證券去來法 제정
- 1. 20 外換 管理法 시행
- 2. 3 蔚山工業地球 설정
- 3. 9 農業振興廳 설립

3. 20	輸出 振興法 제정	輸出 振興法 制定	34
5. 24	財産 再評價法 제정	財産 再評價法 制定	34
6. 9	긴급 通貨개혁(6·9 통화조치)	緊急 通貨改革(6·9 通貨措置)	35
7. 13	預金凍結 해제	預金凍結 解除	35
7. 25	零細民 대책(당면 경제시책 제 1부)	零細民 對策(當面 經濟時策 제 1部)	35
7. 31	外資導入 촉진	外資導入 促進	35
8. 10	당면 綜合經濟施策 제 2부	當面 綜合經濟施策 제 2部	35
8. 13	정부투자기관 豫算會計法 제정	政府投資機關 豫算會計法 制定	35
8. 14	당면 經濟安定 및 物價대책(가격통제 강화조치)	當面 經濟安定 및 物價對策(價格 통제 強化措置)	35
8月	IBRD 借款도입	IBRD 借款 도입	35
9. 6	외화 表示資金 공급	外貨 表示資金 供給	35
12. 18	< 브라질 移民 開始 >	< 브라질 移民 開始 >	35
1963年			
1. 3	最高價格 지정	最高價格 指定	35
1. 5	新商法 발효	新商法 發效	35
1. 9	輸出入 링크제	輸出入 링크제	35
1月	混粉食 장려 운동	混粉食 장려 운동	35
2. 1	당면 物價安定 대책	當面 物價安定 對策	35
4. 1	< 韓國 標準産業分類 제정 >	< 韓國 標準産業分類 制定 >	35
5. 31	豫備費 예산의 총액 편성	豫備費 豫算의 총액 편성	35
7. 22	借款事業 추진방침	借款事業 推進方針	35
7. 24	綜合物價대책 7개 원칙	綜合物價對策 7개 原則	35
7. 29	綜合物價대책	綜合物價對策	35
8. 10	시멘트 統制 價格	시멘트 統制 價格	35
8. 13	輸入信用狀 개설 보증금제도 개선	輸入信用狀 개설 保證金제도 改善	35
11. 11	地方財政法 제정	地方財政法 制定	35
12. 17	< 박정희大統領 就任 >	< 朴正熙大總統 就任 >	35
1964年			
3. 10	주요품목 統制價格 해제	主要品目 統制價格 解除	35
5. 3	기준 換率 인상과 外換 證市制度 채택	基準 換率 인상과 外換 證市制度 채택	35
5. 6	換率 改正에 따른 경제시책	換率 改正에 따른 經濟時策	35
6. 18	임시 特惠 關稅法 제정 시행	임시 特惠 關稅法 制定 시행	35
7. 8	쌀 및 보리쌀 統制價格 해제	쌀 및 보리쌀 統制價格 解除	35
1965年			
1. 26	< 越南 派兵 議決 >	< 越南 派兵 議決 >	35
3. 22	단일 변동 換率제도 실시	단일 변동 換率제도 실시	35
3. 31	資産 再評價法 제정	資産 再評價法 制定	35

4. 22	소금 판매가격 자유화	鹽價自由化	4. 22
6. 22	< 韓·日協定 調印 >	韓日協定調印	6. 22
9. 22	最高 利子率 결정	最高利率決定	9. 22
9. 30	金利 현실화	利率現實化	9. 30
11. 18	< 漁業 水域 宣布 >	漁業水域宣布	11. 18
12. 20	組稅減免 規制法 제정	組稅減免規制法制定	12. 20
1966年			
3. 3	國稅廳, 水産廳 設立	國稅廳, 水産廳設立	3. 3
3. 7	對日 請求權 補償案 確定	對日請求權補償案確定	3. 7
7. 1	物價政策 樹立	物價政策樹立	7. 1
7. 29	제 2차 經濟開發 5個年 計劃 발표	第2次經濟開發5個年計劃發表	7. 29
8. 3	外資導入法 제정	外資導入法制定	8. 3
8. 12	< IECOK 발족 >	IECOK 발족	8. 12
10. 29	先輸出 金融	先輸出金融	10. 29
1967年			
1. 16	換率 변경폭 확대	換率 변경폭 확대	1. 16
1. 30	韓國外換銀行 발족	韓國外換銀行 발족	1. 30
3. 30	會計年度 변경	會計年度 변경	3. 30
4. 15	GATT 가입	GATT 가입	4. 15
6. 12	外國銀行 國內지점 개설	外國銀行 國內지점 개설	6. 12
7. 10	住宅銀行 설립	住宅銀行 설립	7. 10
7. 25	輸入品目 네거티브제도(Negative List System)	輸入品目 네거티브제도(Negative List System)	7. 25
7月	컴퓨터 도입	컴퓨터 도입	7月
8月	< ASEAN 결성 >	< ASEAN 결성 >	8月
10. 28	會計年度 변경	會計年度 변경	10. 28
11. 22	彈力 關稅制度 실시	彈力 關稅制度 실시	11. 22
11. 24	換率構造 변경 조치	換率構造 변경 조치	11. 24
11. 29	不動産 投機억제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	不動産 投機억제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	11. 29
11月	稅制 개편	稅制 개편	11月
12. 2	外資導入 합리화 종합시책	外資導入 합리화 종합시책	12. 2
12. 5	輸出入 링크에 의한 輸出 被害補償	輸出入 링크에 의한 輸出 被害補償	12. 5
1968年			
1. 1	支給準備率 인하	支給準備率 인하	1. 1
1月	< OAPEC 결성 >	< OAPEC 결성 >	1月
2. 1	一般銀行에 대한 貸出 및 再割引 한도제 실시	一般銀行에 대한 貸出 및 再割引 한도제 실시	2. 1
3. 16	實需要者の D/A수입 허용	實需要者の D/A수입 허용	3. 16

- 4. 1 與受信 최고 利率 변경
- 5. 11 造船事業 면허제 완화
- 7. 3 輸入 擔保金제도 도입
- 7. 4 先物換 거래 시행
- 7. 9 輸入抑制 방안
- 8. 5 기업 畜産業 育成 시책
- 8. 22 公認會計法人 제도 도입
- 9. 16 농협예수금 차등 支給準備率
- 10. 1 여수신 最高 利率 변경
- 10. 10 < 住民登錄證 制度 >
- 11. 8 資本市場 육성법 제정
- 12. 10 韓國信託銀行 발족
- 12月 國富統計調査 실시

1969年

- 1. 10 輸出保險制度 시행
- 1. 23 쌀의 消費代替促進 시책
- 1. 26 輸出金融 단가 인상
- 1. 29 지방 公企業法 제정
- 1. 30 외국인 投資 誘致增進과 투자 기업의 육성 시책
- 2. 1 證券 거래제도 개선
- 2. 1 쌀값 통제
- 2. 15 道路公社, 地下水開發公社 발족
- 2. 21 외화 여수신 最高金利 조정
- 2. 21 외국은행 국내지점 외화대출 실시
- 3. 3 < 家庭儀禮 準則 제정 >
- 3. 11 쌀값 통제완화
- 3. 31 < 韓·美間 위성직통전화 개통 >
- 4. 1 輸出金融 금리 인하
- 4. 11 정부 借入金 금리인상
- 6. 1 外貨 與受信 최고이율 조정
- 6. 27 本源通貨에 의한 通貨規制
- 7. 11 韓國輸出入銀行 設立
- 7. 11 證券投資信託제도 도입
- 7. 31 외화 積金制 실시
- 7月 < 아폴로 宇宙船 달 着陸 >
- 8. 6 統計업무의 일원화
- 8月 輸出用 施設材 輸入代金 용자

9. 15	住宅福券 발행	주택복권 발행	9. 15
10. 3	< SDR 창출 >	SDR 창출	10. 3
10. 23	輸出自由地域 설치	수출자유지역 설치	10. 23
11. 3	安定基盤 構築을 위한 종합대책	안정기반 구축을 위한 종합대책	11. 3
11. 6	국내 與信에 의한 通貨 規制	국내외신에 의한 통화 규제	11. 6
12. 31	外貨國債 발행제도 마련	외화국채 발행제도 마련	12. 31

1970年

1. 7	經濟安定 대책	경제안정 대책	1. 7
1. 9	輸出金融單價 인상	수출금융단가 인상	1. 9
1. 27	農村近代化 촉진법 시행	농촌현대화 촉진법 시행	1. 27
4. 8	< 臥牛아파트 붕괴 >	臥牛아파트 붕괴	4. 8
5. 9	상업어음 再割引 대상 확대	상업어음 재할인 대상 확대	5. 9
7. 7	< 경부高速道路 개통 >	경부고속도로 개통	7. 7
7. 8	徵發 補償證券 발행	징발보상증권 발행	7. 8
8. 12	糧穀 관리기금 설치(二重穀價 제도)	곡물 관리기금 설치(중복곡가 제도)	8. 12
8. 12	대기업의 은행 貸出金 연체정리 방안	대기업의 은행 대출금 연체정리 방안	8. 12
8. 26	關稅廳 개칭	관세청 개칭	8. 26
9. 26	水産用 油類稅 면세	수산물용 유류세 면세	9. 26
11. 1	쌀값 통제 전면 해제	쌀값 통제 전면 해제	11. 1
12. 28	4大江流域 종합개발계획 확정	4대강유역 종합개발계획 확정	12. 28

1971年

1. 1	支給準備率 인하	지급준비율 인하	1. 1
1. 9	외국인 投資誘致 정책	외국인 투자유치 정책	1. 9
2. 9	第 3次 經濟開發 5개년계획 발표	제3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 발표	2. 9
2. 18	第 2次 내국 信用狀制度 신설	제2차 내국 신용장제도 신설	2. 18
3. 4	輸出用 원자재 준비생산자금지 신설	수출용 원자재 준비생산자금지 신설	3. 4
3. 11	< KDI 설립 >	KDI 설립	3. 11
6. 28	換率인상 및 금리인하	환율인상 및 금리인하	6. 28
6. 30	輸入마진 積立	수입마진 적립	6. 30
7. 30	밀가루 告示價格 해제	밀가루 고시가격 해제	7. 30
8. 15	< Bretton Woods체제 붕괴 >	Bretton Woods체제 붕괴	8. 15
9. 4	物價安定 종합 대책	물가안정 종합 대책	9. 4
10. 16	韓·美 纖維協定 체결	한국-미국 섬유협정 체결	10. 16
11. 1	支給準備率 인하	지급준비율 인하	11. 1
12. 28	지방교육재정 交付金法 제정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 제정	12. 28

1972年

- 1. 17 與受信 金利인하
- 2. 14 景氣回復을 위한 당면 經濟施策
- 2. 25 輸出지인 금융제도 개편
- 3. 15 物價凍結조치
- 4. 21 當면 經濟施策의 보완
- 6. 24 酒類 수출 검사제도
- 8. 3 經濟의 安定과 成長에 관한 긴급 명령
- 9. 14 신용조합 與受信 金利 결정
- 9. 16 糧穀流通 규제 조치
- 10. 17 < 10月 維新 >
- 10. 25 새마을 사업 본격추진
- 12. 16 通安증권의 민간 매각
- 12. 16 支給準備率 인상
- 12. 30 政府工事의 낙찰제도 변경

1973年

- 1. 5 企業公開 촉진
- 1. 9 근로소득 기초공제 제도
- 1. 14 不當利得稅制法 제정
- 2. 5 關稅率 인하
- 2. 6 政府投資機關 관리법 제정
- 2. 13 國際通貨 파동
- 2. 16 예산제도 개선
- 3. 12 物價安定법 제정
- 3. 16 쌀소비절약과 유통질서 확립 시책
- 4. 3 基準地價 고시대상지역 지정
- 5. 12 증화학공업 개발을 위한 外資誘致
- 5. 16 支給準備率 인상
- 6. 15 쌀값 안정 緊急 대책
- 7. 11 미국의 禁輸措置에 따른 安定대책
- 10月 < 제 1차 石油波動 >
- 12. 4 物價安定 대책
- 12. 14 國民投資基金法 제정

1974年

- 1. 14 國民生活 安定을 위한 대통령 긴급 조치
- 1. 16 基準價格告示
- 1. 31 外貨貸出 連動金利 제도 채택

2. 1	주요품목 價格 현실화	主要品目價格 현실화	2. 1
2. 5	종합 物價安定 대책	綜合物價安定 대책	2. 5
2. 18	建築規制 조치	建築規制 조치	2. 18
2. 25	流通구조 개선 대책	流通구조 개선 대책	2. 25
3. 2	輸出金融 단가인하	輸出金融 단가인하	3. 2
5. 24	公共借款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행정 개선	公共借款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행정 개선	5. 24
5. 29	企業의 體質 改善과 內資 동원을 위한 조치	企業의 體質 改善과 內資 동원을 위한 조치	5. 29
7. 1	계열 기업군에 대한 與信관리	계열 기업군에 대한 與信관리	7. 1
7. 13	우리社株組合제도 채택	우리社株組合제도 채택	7. 13
8. 1	支給準備率 인하	支給準備率 인하	8. 1
8. 15	< 수도권 전철 개통 >	< 수도권 전철 개통 >	8. 15
8. 15	< 박대통령 저격 사건 >	< 박대통령 저격 사건 >	8. 15
10. 25	外換 매각 집중제 강화	外換 매각 집중제 강화	10. 25
11. 12	輸出金融 단가인상	輸出金融 단가인상	11. 12
12. 1	國民投資基金 설치	國民投資基金 설치	12. 1
12. 7	國際收支 改善과 景氣回復을 위한 특별 조치	國際收支 改善과 景氣回復을 위한 특별 조치	12. 7
12. 12	建築規制 해제	建築規制 해제	12. 12
12. 20	稅制 개편	稅制 개편	12. 20
12. 21	信用保證基金法 제정	信用保證基金法 제정	12. 21
12. 26	결산상 剩餘金의 處理方法 변경	결산상 剩餘金의 處理方法 변경	12. 26

1975年

1. 25	輸入擔保金 凍結 조치	輸入擔保金 凍結 조치	1. 25
3. 1	支給準備率 조정	支給準備率 조정	3. 1
4. 17	輸出支援 종합대책	輸出支援 종합대책	4. 17
4. 30	綜合貿易商社 제도 실시	綜合貿易商社 제도 실시	4. 30
7. 1	關稅 還給制度 실시	關稅 還給制度 실시	7. 1
7. 1	支給準備率 인상	支給準備率 인상	7. 1
7. 16	防衛稅 신설	防衛稅 신설	7. 16
7. 25	輸出 질서유지 조치	輸出 질서유지 조치	7. 25
10. 1	商業어음제도 개편	商業어음제도 개편	10. 1
11. 1	한국綜合金融會社 설립 결정	한국綜合金融會社 설립 결정	11. 1
11. 14	物資節約 추진방안	物資節約 추진방안	11. 14
12. 5	中東進出 촉진 방안	中東進出 촉진 방안	12. 5
12. 31	物價安定법 제정	物價安定법 제정	12. 31
12. 31	豫算제도 개선	豫算제도 개선	12. 31

1976年

- 2. 2 輸出金融 한도 거래제 실시
- 3. 4 完製品 비축 금융 실시
- 3. 15 貯蓄増大 계획
- 3. 19 港灣廳 개청
- 3. 29 延拂輸出 금융지원 기준
- 4. 1 物價安定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정
- 5. 1 價格表示制 실시
- 5. 1 車主 배상 책임보험제도
- 5. 28 機械類 國産化 촉진 지원
- 6. 10 信用保證基金 설립
- 8. 1 現金 및 物資借款 인가 요건 강화
- 8. 2 金利 인상
- 8. 2 < UN 해양법 회의 >
- 12. 22 稅制 개편

1977年

- 1. 4 輸出金融 지원제도 개편
- 1月 關稅率 구조 개편
- 2. 1 GIRO 제도 실시
- 3. 7 수도권 人口 再配置 계획
- 4. 25 國民住宅 청약부금제
- 5. 14 流動性 규제 강화
- 6. 19 原子力 발전 개시
- 7. 1 附加價值稅法 시행
- 7. 1 特別消費稅法 시행
- 7. 1 附加價值稅 실시 보완 대책
- 8. 1 外資도입 요건 강화
- 10. 4 金利 인하
- 11. 1 주요 原資材 輸入金融제도 신설
- 12. 28 最高價格 해제
- 12月 < 東京라운드 협상 >

1978年

- 1. 1 動力資源部 발족
- 2. 15 特定地域 고시
- 2. 23 支給準備率 인상
- 4. 20 外資導入 행정의 개선
- 4. 30 < 12海里 領海 공포 >

- 5. 11 제 1차 輸入自由化 시책
- 5. 13 < 建築材 품귀 및 가격 폭등 >
- 5. 22 建築規制 조치
- 6. 13 金利 인상
- 6. 14 中小企業 振興工團 설립
- 6. 26 建築規制 조치
- 8. 8 不動産 투기억제 및 地價 安定을 위한 종합 대책
- 8. 16 農산물 增産 및 가격안정 대책
- 9. 18 제 2차 輸入自由化 조치
- 12. 5 土地去來허가 및 신고제 실시
- 12. 5 證券去來稅法 제정
- 12. 18 제 3차 輸入自由化 조치
- 12. 22 < 農수산물價格 暴騰 >
- 12. 30 稅制 개편

1979年

- 1. 1 輸入 擔保金제도 개선
- 2. 5 商業어음 支給保證制度 실시
- 3. 2 證券去來稅法 인하
- 4. 17 景氣安定化 종합 대책
- 4. 19 輸出金融 지원제도 개편
- 4. 24 技術導入 자유화 조치
- 5. 25 重化學投資 조정 계획(제 1차)
- 6. 12 機械工業 전략 수출산업화
- 7. 13 하반기 經濟운용과 대책
- 7. 16 태양열住宅 補給 대책
- 7月 < 제 2차 石油波動 >
- 8. 1 外換 관리제도 개선
- 8. 23 竊市場 확대 개편
- 9. 1 公共 建築物 신축 전면허용
- 9. 6 金利 連動制 채택
- 9. 18 防衛稅 시한 연장
- 10. 6 外國人 投資 최저한도액 확대
- 10. 18 外貨 與受信 최고이율 폐지
- 10. 19 新規 教育借款 도입 추진
- 10. 26 < 10·26 사건 >
- 11. 15 建築제한 조치 전면 해제
- 12. 8 그린벨트 建築規制 완화
- 12. 21 < 최규하大統領 취임 >

1980年

- 1. 1 支給準備率 인하
- 1. 4 流通産業 근대화 촉진법 제정
- 1. 12 최고 利率 인상
- 1. 12 換率 및 金利 인상
- 1. 29 石油類價格 자유화
- 2. 1 < 이란 革命 >
- 2. 27 複數通貨 바스켓 제도
- 2. 28 外國銀行과의 스왑한도 확대
- 2. 29 生必品價格 특별 관리
- 3. 28 제로베이스 豫算編成 방식 채택
- 4. 21 < 舍北 事態 >
- 5. 4 석탄價格 조정
- 5. 18 < 光州民主化 운동 >
- 6. 5 당면 經濟運用의 과제와 대책
- 7. 1 先物換거래 제도 실시
- 7. 5 에너지管理工團 설립
- 8. 2 < 칼러TV 市販 개시 >
- 8. 20 重化學 투자 조정(제 1차)
- 8. 27 短資社의 중소기업 지원 확대
- 9. 1 < 전두환大統領 취임 >
- 9. 13 제 2차 重化學 투자 조정방침 확정
- 9. 16 經濟活性化 방안
- 9. 25 외국인 投資誘致 확대 방안
- 9. 27 기업 체질 강화대책
- 10. 2 中小企業 의무대출 비율 조정
- 10. 7 제 2차 重化學工業 투자 조정 완결
- 10. 15 先物換 거래제도 확대
- 10. 15 外換관리 절차 간소화
- 11. 8 景氣活性化 대책
- 11. 14 < 言論機關 통폐합 >
- 12. 4 토지개발채권 擔保貸出
- 12. 13 不動産경기 활성화 대책

1981年

- 3. 1 景氣綜合指數 편제
- 3. 3 < 전두환大統領 취임 >
- 3. 14 기업 및 기업인 소유 不動産 處分 促進 조치

4. 1	公正去來制度 시행	공정거래법 제정	1981. 12. 29
4. 1	外換 Position관리제도 정비	외환관리법 개정	1981. 12. 29
4. 3	産業合理化 및 投資 장려	산업합리화 및 투자촉진법 제정	1981. 12. 29
5. 7	公正去來委員會 발족	공정거래위원회 발족	1981. 12. 29
5. 18	美 剩餘農産物 도입 종결	미국 농산물 수입 종결	1981. 12. 29
5. 21	해외建設 用役 지원제도 개선	해외건설용역 지원제도 개선	1981. 12. 29
6. 26	住宅景氣 활성화 조치	주택경기활성화 조치	1981. 12. 29
7. 1	特定地域 해제	특정지역 해제	1981. 12. 29
7. 1	支給準備率 인하 및 단일화	지급준비율 인하 및 단일화	1981. 12. 29
8. 1	外換 관리제도 개선	외환관리제도 개선	1981. 12. 29
11. 16	支給準備率 인하	지급준비율 인하	1981. 12. 29
11. 19	외국인 전용 收益證券 발행	외국인 전용 수익증권 발행	1981. 12. 29
12. 15	人口增加 억제 대책	인구증가 억제 대책	1981. 12. 29
12. 29	預金제도 개편	예금제도 개편	1981. 12. 29
12. 29	稅制 개편	세제 개편	1981. 12. 29

1982年

1. 7	民間信用限度制 폐지	민간신용한도제 폐지	1982. 1. 7
1. 14	당면 經濟대책 방안	당면 경제대책 방안	1982. 1. 14
5. 4	<巨額어음 부정 사건>	<대액어음 부정 사건>	1982. 5. 4
5. 15	핵심전략 육성품목 선정	핵심전략 육성품목 선정	1982. 5. 15
5. 18	당면 經濟대책	당면 경제대책	1982. 5. 18
5. 23	流動性 조절방식 일부 변경	유동성 조절방식 일부 변경	1982. 5. 23
6. 3	輸入商品 품질검사 강화	수입상품 품질검사 강화	1982. 6. 3
6. 28	投資 促進을 통한 경제활성화 대책	투자 촉진을 통한 경제활성화 대책	1982. 6. 28
7. 3	金融實名 去來와 금융자산 소득에 대한 종합 과세	금융실명 거래와 금융자산 소득에 대한 종합 과세	1982. 7. 3
7. 15	外貨 貸出제도 개편	외화 대출제도 개편	1982. 7. 15
7. 26	對外 去來 규제 완화	대외 거래 규제 완화	1982. 7. 26
8. 2	與信관련 제도 개편	여신관련 제도 개편	1982. 8. 2
8. 2	輸出지원 금융제도 개편	수출지원 금융제도 개편	1982. 8. 2
11. 3	金融機關의 RP취급 허용	금융기관의 RP취급 허용	1982. 11. 3
11. 18	輸出金融단가 인상	수출금융단가 인상	1982. 11. 18
12. 21	벤처 캐피탈社 발족	벤처 캐피탈사 발족	1982. 12. 21
12. 22	住宅 投機 억제 대책	주택 투기 억제 대책	1982. 12. 22
12. 23	海運産業의 합리화 계획	해운산업의 합리화 계획	1982. 12. 23

1983年

1. 1 遞信預金 및 保險 시행
2. 1 은행의 Factoring업무 취급
2. 16 不動産 投機 억제 대책
2. 18 特定地域 고시
2. 24 금융기관에 대한 再割引 및 貸出比率 조정
2. 25 外貨貸出 제도 개편
3. 14 輸出金融 단가 인상
3. 26 自動車保險 제도 개편
4. 15 輸出 기준 가격제 폐지
4. 18 土地 및 住宅문제 종합 대책
5. 1 APT분양 債券入札制
5. 18 短資會社의 業務 運用 準則 개정
5. 20 延支給 수입기간 단축
6. 1 短資社 및 상호신용금고 신설 억제
6. 10 시멘트 공판제 폐지
7. 1 信用管理基金 제도 시행
7. 12 외국상표 도입 촉진
7. 13 相互信用金庫의 소규모기업 지원강화
7. 18 資本市場 機能 擴充 방안
- 8月 < 明星사건 >
9. 13 單獨住宅地 공급 계획
10. 1 民營아파트 분양제도 개선
10. 24 首都圈 정비 계획
11. 2 環境汚染 防止기금 신설
11. 7 輸出金融 단가인상
11. 15 株式시가 발행제도 실시 방안
11. 17 商業어음 할인한도 확대
11. 25 相互信用金庫 신규설립 불허
12. 1 延支給 수입기간 단축
12. 8 租稅減免 확대
12. 12 租稅減免 기본원칙 제정
12. 12 住宅投機 억제 대책
12. 31 政府投資機關 관리 기본법 제정

1984年

1. 23 金利조정
2. 1 시중은행의 信託業務 취급
2. 16 상업용 建物賃貸料 관리 지침 확정

- 3. 7 現地금융 및 外國換銀行 借入에 관한 관리 강화
- 3. 15 住宅建設 종합계획 확정
- 3. 23 消費者保護 종합시책
- 6. 1 讓渡性 定期預金證書(CD) 도입
- 6. 21 債券 거래 대중화 방안
- 6. 23 首都圈 整備 기본계획 확정
- 7. 1 外資 도입제도 개편
- 7. 9 貿易外去來 관리제도 조정
- 7. 19 해외建設 진흥 종합대책
- 7. 21 外換 매매율 및 수수료 결정 방법 변경
- 7. 30 延支給 수입기간 단축
- 8. 2 農村地域 종합개발 사업계획
- 8. 29 < KF 설립 >
- 9. 8 支給準備率 인하
- 10. 23 最低賃金制 시안 마련
- 12. 20 土地去來 신고제
- 12. 31 下都給 불공정거래 규제 강화

1985年

- 2. 18 物價 및 不動産 대책
- 3. 2 주거래은행 與信管理제도 개편
- 3. 4 輸出金融 단가인상
- 4. 19 自由貯蓄預金 신설 및 금리인상
- 5. 3 輸出金融 단가인상
- 5. 20 不動産 종합대책
- 6. 28 임시 投資稅額 공제제도
- 7. 1 産業構造 조정 지원 대출제도
- 7. 11 지방 쇠고기의 서울 반입 허용
- 7. 15 輸出金融 단가인상
- 8. 14 設備投資 촉진을 위한 금융 및 세계 지원 확대
- 9. 5 住宅建設 활성화 조치
- 9. 6 外債절감 대책
- 9. 22 < 플라자 합의 >
- 9月 해외 證券投資 허용
- 10. 8 < 제 40차 IMF, IBRD 서울 총회 >
- 10. 17 포괄 輸出金融제도 도입
- 11. 12 證券 해외발행 허용
- 11. 22 雇傭 종합대책
- 12. 2 稅制 개편

1986年

- 1. 27 제 2金融圈 金利 인하
- 2. 21 機械類 및 部品産業 육성대책
- 3. 6 農漁村 종합대책
- 3. 7 CD 및 會社債 金利 자유화
- 3. 15 外換관리 제도 개선
- 3. 24 대출금리 인하
- 4. 3 與信금지부문 조정
- 5. 1 韓銀대출제도 조정
- 5. 9 不實企業 정리
- 6. 19 通貨安定證券의 一般公募제도 개선
- 7. 1 外資導入제도 개선
- 7. 10 韓銀 再割引제도 개선
- 7. 21 韓美 通商 현안 일괄 타결
- 8. 1 外國銀行 국내지점에 상업어음 再割引 허용
- 8. 7 상업 借款導入 억제 방안
- 8. 21 外國銀行 국내지점에 CD취급 허용
- 9. 1 韓·美 섬유협상 타결
- 9. 1 < 외국산 담배 국내 판매개시 >
- 9. 2 國民福祉增進 대책
- 9. 3 경제력 집중억제 시책
- 9. 12 輸出金融 단가인하
- 9. 23 중소기업 업종 外國人投資 규제 완화
- 10. 31 대기업에 대한 輸出金融 단가인하
- 12. 2 對外協力基金 설치
- 12. 26 稅制 개편
- 12. 31 도시交通정비 제도 마련
- 12. 31 消費者保護제도정비
- 12. 31 보조금 豫算法 제정

1987年

- 1. 5 部品, 素材의 국산화 추진
- 1. 9 기업어음 去來慣行 是正
- 2. 4 財政投融资 특별회계 신설
- 2. 9 생명보험회사 地方運用比率 上向調整
- 2. 10 建設業 육성시책
- 2. 12 CD발행단위 금액 인하
- 2. 19 海運産業 합리화 보완대책

3. 11	輸入賦課金	輸入賦課金	1
3. 12	< KEF 設立 >	KEF 設立	1
3. 16	農漁家 부담 경감대책	農漁家 부담 경감대책	1
3. 21	證券去來稅率 인상	證券去來稅率 인상	1
4. 1	株式場外市場 開設	株式場外市場 開設	1
4. 1	經濟力 集中 억제 시책	經濟力 集中 억제 시책	1
4. 2	證市安定대책	證市安定대책	1
4. 10	産業災害防止	産業災害防止	1
4. 21	大企業에 대한 貿易 金融支援 축소	大企業에 대한 貿易 金融支援 축소	1
4. 25	對美輸入擴大	對美輸入擴大	1
5. 4	海外旅行經費 지급한도 인상	海外旅行經費 지급한도 인상	1
5. 4	신용카드에 의한 海外旅行經費 사용제도 개선	신용카드에 의한 海外旅行經費 사용제도 개선	1
5. 14	輸出추천제도	輸出추천제도	1
5. 15	종합物價管理 대책	종합物價管理 대책	1
5. 21	제 2금융권 金利 인하	제 2금융권 金利 인하	1
6. 2	貿易金融제도 개편	貿易金融제도 개편	1
7. 2	造船工業 지원	造船工業 지원	1
7. 9	商品先渡 類似去來에 대한 지급인증제도	商品先渡 類似去來에 대한 지급인증제도	1
7. 20	貿易外 지급제한 완화	貿易外 지급제한 완화	1
7. 21	建設都給 下限線 설정	建設都給 下限線 설정	1
8. 7	대기업에 대한 貿易金融지원 축소	대기업에 대한 貿易金融지원 축소	1
9. 1	海外投資규제 완화	海外投資규제 완화	1
9. 25	關稅인하	關稅인하	1
10. 1	先物去來제도 개편	先物去來제도 개편	1
10. 19	< 뉴욕證市 株價 폭락 > ※ BLACK MONDAY	< 뉴욕證市 株價 폭락 > ※ BLACK MONDAY	1
10. 26	地域經濟육성 종합대책	地域經濟육성 종합대책	1
10. 30	貿易金融 단가인하	貿易金融 단가인하	1
10. 30	證券去來制度 개편	證券去來制度 개편	1
11. 11	國際收支 흑자 대책	國際收支 흑자 대책	1
12. 1	電話通話料金 야간 할인제	電話通話料金 야간 할인제	1
12. 1	資本市場의 국제화 추진	資本市場의 국제화 추진	1
12. 1	保險會社의 자금운용 개선	保險會社의 자금운용 개선	1
12. 10	農漁村 經濟活性化 종합대책	農漁村 經濟活性化 종합대책	1
12. 28	지방 생명보험회사 신설 허용	지방 생명보험회사 신설 허용	1

1988年

- 1. 1 全國民 醫療保險제도
- 1. 1 國民年金제도 도입
- 1. 1 最低賃金제도 도입
- 1. 1 公募株 請約제도 개편
- 1. 1 수출 通關節次 간소화
- 1. 1 HSK 제정
- 1. 12 不動産 투기억제 대책
- 2. 6 貿易金融제도 개편
- 2. 7 國際收支 흑자관리 대책
- 2. 15 外貨與信제한
- 2. 19 土地去來 허가대상지역 확대
- 2. 25 < 노태우大統領 就任 >
- 3. 1 대기기업의 關稅稽豫制度 폐지
- 3. 10 物價安定 종합대책
- 3. 25 外換관리 자유화 방안
- 4. 1 輸入개방 확대
- 4. 20 保險會社 해외진출 확대방안
- 5. 6 稅制개편
- 5. 27 油價·換率 連動제도
- 7. 1 금융기관 手數料率 자유화
- 7. 1 外換관리제도 개선
- 7. 20 不動産 투기 억제정책
- 7. 22 醫療保險제도 적용대상확대
- 7. 28 도소매업 진흥 5개년 계획
- 8. 10 不動産 종합대책
- 8. 23 < 美 종합貿易法 發效 >
- 9. 2 韓銀 再割引 및 대출제도 개편
- 9. 13 土地去來 허가대상지역 확대
- 9. 17 < 서울올림픽 개최 >
- 9. 19 금융기관 債權貸損 승인업무 개정
- 9. 21 不動産 특정지역 추가 고시
- 10. 14 경제의 安定成長과 先進化合經濟 추진대책
- 11. 1 外換管理제도 개선
- 12. 5 金利자유화
- 12. 31 輸入監視제도 폐지
- 12. 31 원貨절상(換率인하)

1989年

- 1. 1 與信管理제도 개편
- 1. 9 中小企業 창업 지원
- 2. 1 商業어음 再割引 適格業體 확대
- 2. 13 海外投資 요건 완화
- 2. 21 物價安定 종합대책
- 2. 22 대기업 與信規制 강화
- 2. 24 零細民 주거대책
- 3. 18 證券市場 육성
- 3. 31 國民年金 제도개선
- 3. 31 豫算制度 개선
- 4. 8 농수산물 輸入 自由化 예시
- 4. 12 경제사회의 공정·형평 및 지속 발전을 위한 실천계획
- 4. 20 한계 支給準備제도 도입
- 4. 20 대계열 기업군에 대한 與信管理 강화
- 4. 27 住宅 200萬戶 건설 계획
- 4. 28 農漁村 발전 종합대책
- 5. 4 土地去來 허가제 확대실시
- 5. 15 중소기업 情報化 5개년 계획
- 5. 25 중소기업에 대한 商業어음 再割引 지원
- 5. 29 反덤핑 關稅제도
- 6. 16 綜合土地稅 도입
- 7. 1 외국인 投資 확대
- 7. 4 임시投資稅額 공제 제도
- 7. 4 最低 賃金制 적용범위 확대
- 7. 27 중소기업에 대한 商業어음 再割引 시한 연장
- 8. 2 讓渡所得稅 과세대상 조정
- 8. 4 與信管理제도 보완
- 8. 10 外換관리제도 개선
- 8. 18 中小企業 특별지원대책
- 8. 28 造船産業 합리화 계획
- 8. 30 中小企業 고유업종확대
- 9. 1 단계별 換率제도 개편 계획
- 9. 1 輸出産業에 대한 금융기관 용자비율 조정
- 9. 8 通貨管理 강화
- 9. 20 외국환은행의 대고객 換率 自律化 조치
- 10. 25 外貨 糶市場 개설방안
- 10. 30 貿易金融 단가인상

- 11. 1 不動産 특정지역 추가고시
- 11. 10 중소기업 簡易還給제도
- 11. 14 再割引 금리인하
- 11. 14 經濟社會安定과 競爭力제고를 위한 당면대책
- 11. 23 외국환은행의 域外金融去來 활성화
- 12. 1 外換관리제도 개선
- 12. 1 外換市場 운영 협의회 발족
- 12. 12 證券市場 浮揚 대책
- 12. 21 輸出企業 등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
- 12. 27 歲計 잉여금에 의한 양곡증권 상환
- 12. 30 勤勞所得稅額 공제제도
- 12. 30 農漁家 負債 경감

1990年

- 1. 1 公共料金 현실화
- 1. 1 輸出入 自由化 촉진
- 1. 13 與信管理제도 개편
- 1. 13 林野 賣買 증명제 도입
- 1. 19 한계 支準제도 폐지 및 基準支準率 인상
- 1. 28 勞使紛糾 피해기업에 금융지원
- 3. 2 시장평균 換率제도 도입
- 3. 2 土地公概念 제도 시행
- 3. 2 外換관리제도 개선
- 3. 5 금융기관 與信금지부분 조정
- 3. 13 價格動向 점검품목 지정
- 3. 14 金融紛爭 調停 방법 개선
- 3. 16 종합土地稅法 개편
- 3. 28 企業公開要件 강화
- 4. 3 개인信用情報 관리제도
- 4. 4 經濟活性化 종합대책
- 4. 7 農漁村振興公社 설립 및 농지관리 기금 설치
- 4. 13 不動産투기 억제 대책
- 4. 20 物價安定대책
- 5. 1 公示地價 告示
- 5. 1 外換 管理 강화
- 5. 8 不動産투기 억제와 物價安定을 위한 특별보완대책
- 5. 8 證券市場 안정대책
- 5. 11 輸入價格表示 대상품목 확대
- 5. 17 中小企業 입지 공급대책

- 6. 21 土地去來 허가제 확대실시
- 6. 28 제 2금융권 金利 인하
- 6. 29 地價 急騰地域 고시
- 7. 5 貿易金融제도 개편
- 7. 6 科學 및 産業技術 발전 기본계획
- 7. 6 産業人力 수급 대책
- 7. 21 소비자 金融去來約款 제정
- 7. 31 근로소득 稅額控除 확대
- 8. 2 <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 >
- 8. 28 특별外貨貸出 제도 개선
- 9. 7 證券會社의 貸出金 회수 의무화
- 9. 8 高油價시대에 대응한 증장기 에너지 정책 및 산업정책 계획수립
- 9. 8 석유시장 동향 및 석유수급 안정 계획
- 9. 18 株式型 收益證券 발매 허용
- 9. 25 남북한 交易 대상물품 반출입 승인
- 10. 3 < 獨逸 統一 >
- 10. 6 中小企業육성 시책
- 10. 26 外換管理제도 개선
- 10. 31 그린벨트내 建築規制 완화
- 11. 10 産業構造 고도화 촉진 대책
- 11. 29 融通어음할인 규제
- 12. 14 북방국가와의 通商요령 고시
- 12. 18 稅制개편
- 12. 29 勤勞者 長期 證券貯蓄제도 도입

1991年

- 1. 1 外貨貸出제도 개편
- 1. 1 輸出入 규제 완화
- 1. 1 關稅 신고납부제도 실시
- 1. 12 物價安定 대책
- 1. 14 經濟安定과 成長기반확충 대책
- 1. 15 國民生活과 環境改善 대책
- 1. 17 勤勞者 長期 貯蓄제도 실시
- 1. 17 < 浬灣 전쟁 >
- 1. 23 農漁村 대책
- 1. 25 고도기술 SW 關稅 감면
- 1. 31 현지 金融制度 개선
- 2. 2 物價安定대책
- 3. 8 상장법인의 海外證券發行 제도 개선
- 3. 14 製造業 경쟁력 강화대책
- 3. 26 調達物資비축 확대
- 3. 26 < 基礎自治團體 의회의원 선거 >
- 4. 1 輸入自由化 계획('92~'94年)

- 4. 2 공장자동화용품 關稅 감면
- 4. 6 不動産 담보제도 개선
- 4. 10 < KAF 설립 >
- 4. 10 都市零細民 거주환경개선 사업
- 4. 10 南北直交易 승인
- 4. 15 住宅분양가 원가 連動制
- 4. 16 海外建設 진출 지정제도 개선
- 4. 17 外國保險社 국내주재 사무소 설치 허가
- 4. 23 핵심 生産技術 개발
- 5. 3 建設投資 動向 진단과 건설경기진정 대책
- 5. 6 投信社 경영개선대책
- 5. 13 輸入先 多邊化 품목조정
- 5. 17 畜産物 가격 안정대 설정
- 6. 1 금융기관의 공공자금 운용제도
- 6. 1 與信管理制度 개선
- 6. 1 信用卡 이용 제한
- 6. 7 工業입지개발 지침
- 6. 13 製造業 競爭力 強化를 위한 세제지원 대책
- 6. 17 短資會社 기능조정
- 6. 20 < 市道議會 의원선거 >
- 7. 1 外換시장 활성화(1단계 조치)
- 7. 1 企業어음 信用評價制度 개선
- 7. 1 輸入상품 原產地表示제도 도입
- 7. 9 建設投資 적정화 및 新都市建設 안전대책
- 7. 23 어음仲介 활성화
- 7. 28 土地去來 허가제 확대 실시
- 8. 23 企業公開제도 개선
- 9. 1 휘발유 가격 자유화 및 정유사의 유통참여 허용
- 9. 1 外換관리제도 개선
- 9. 17 < 南北韓 同時 UN加入 >
- 9. 30 외국인 주식매매거래 규정 제정
- 10. 2 6大都市 宅地 전산화
- 10. 10 關稅減免 대상 공장자동화 물품 지정고시
- 10. 31 稅金優待貯蓄 가입한도 확대
- 11. 11 中小企業 자금 지원대책
- 11. 18 輸出自由地域 활성화
- 11. 21 第 1段階 金利 자유화
- 11. 22 株式市場개방 관련사항 보완
- 11. 22 外國 投資전용 회사의 채권매매 한도 설정
- 11. 22 會計監事 기준 제정

- 12. 9 < ILO 가입 >
- 12. 18 外貨 搬出入제도 개선
- 12. 25 < 소련 붕괴 >
- 12. 27 印紙稅法 개정
- 12. 27 外國인의 株式取得 예외한도 설정
- 12. 27 豫算 會計法 개정
- 12. 28 輸出入 자유화 촉진
- 12. 31 기금관리 제도 정비

1992年

- 1. 3 證券市場 개방
- 1. 9 中小企業 대출 의무비율 상향조정
- 1. 10 貿易어음 활성화 방안
- 1. 14 經濟安定과 産業 競爭力 제고 대책
- 1. 17 施設材 輸入 억제
- 1. 25 신발産業 합리화 계획
- 2. 1 계열기업군 與信관리 강화
- 2. 10 輸入農産物 원산지 표시제
- 2. 15 不動産 투기억제 대책
- 2. 15 短資社 기업어음 할인 금리체계 변경
- 2. 20 住宅建設물량 할당제
- 2. 21 금융기관의 與信 금지부문 확대
- 2. 25 短資社 등에 製造業 대출 지도비율 설정
- 2. 25 輸出관련 金融제도 개편
- 2. 27 連結財務諸表작성 의무화
- 3. 5 尖端技術設備 투자세액 공제제도
- 3. 6 지방은행주식 동일인 소유 한도 신설
- 3. 9 建築허가제한 조치 연장
- 3. 10 지역제한입찰 한도액 상향조정
- 3. 13 代替決濟會社 預託株式의 의결권 행사
- 3. 18 中小企業 지원 확대방안
- 3. 20 農水産業者 신용보증지원 강화
- 4. 4 消費財 輸入抑制를 위한 조정관세
- 4. 24 해외 證券發行제도 개선
- 5. 1 先導 양축농가 육성사업 지원
- 5. 2 외국인 投資 및 기술도입 활성화 방안
- 5. 11 環境설비공사 입찰방법 개선
- 5. 12 轉換 短資社의 단자업무 정리보완 대책
- 5. 12 근로자 證券貯蓄 제도 확대

5. 22	不動産 투기억제 대책 일부 완화	
5. 26	情報通信분야 기술개발 자금 지원	
5. 26	信用卡 이용한도 관리체계 개선	
5. 27	投信社 경영 정상화 대책	
6. 3	輸出검사품목 축소조정	
6. 8	資源 再活用 및 에너지 절약 추진	
6. 18	임시 投資稅額 공제제도 시한 연장	
6. 18	勤勞者 주식저축 신설	
6. 20	消費者 被害補償 대상품목 확대	
7. 1	외국인의 株式投資 확대	
7. 1	換率 변동폭 확대	
7. 1	保險市場 開放 현안에 대한 자유화 방안	
7. 1	建築허가 제한 일부 해제	
7. 1	제 2단계 金融自律化 및 개방계획	
7. 10	中小企業의 公開要件 강화	
7. 16	中小企業에 대한 담보취득 제한 완화	
7. 20	金融機關의 공공자금 운용제도 개선	
7. 24	短資社 金利인하	
7. 24	濟州道 開發 특별법 시행	
7. 30	工場配置 및 설립 제도 개선	
7. 30	基金管理制度 개편	
7. 31	有價增資 時價割引率 적용 자율화	
8. 3	債券關聯 金利인하	
8. 5	CD취급 증권회사 확대	
8. 24	證券市場 安定을 위한 종합대책	
9. 1	海外直接投資 제도개선	
9. 1	外換 管理 제도 개편	
10. 14	輸出 신용보증 제도	
10. 20	設備資金 공급 원활화 대책	
10. 23	關稅제도 개편	
10. 23	農林水産業者에 대한 信用保證 지원 활성화	
11. 1	外國人 投資 및 技術導入 제도 개선	
11. 11	유망 中小企業 설비자금 지원 확충	
11. 23	金融事故 綜合對策	
11. 26	산지 소값 安定시책	
11. 30	돼지 수매 비축자금 지원	
12. 2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촉진 대책	
12. 3	新規 開發品目에 대한 조정 關稅	

- 12. 9 앞담배 耕作 機械化 支援
- 12. 15 中水道 시설기준 제정
- 12. 16 農水産物 산업피해 구조제도 개선
- 12. 24 農業振興地域 지정
- 12. 26 외국인 投資의 原則的 申告制
- 12. 29 産業技術 연구 개발용품 關稅감면대상 조정

1993年

- 1. 1 建築허가제한 해제
- 1. 1 住宅建設 물량 割當制 폐지
- 1. 1 外國人 투자기업에 대한 단기 外貨資金 차입 허용
- 1. 1 輸入자유화
- 1. 1 外國人 전용 수익증권 인가
- 1. 1 輸出積荷 보험료 인하
- 1. 8 農工團地 개발 시책
- 1. 21 정부 勞賃單價 현실화
- 1. 26 金利인하
- 1. 27 國債발행金利 인하
- 1. 29 投信社 지원
- 1. 30 纖維産業 경쟁력 강화 대책
- 2. 1 投資信託 규제완화 및 수익자 보호 강화
- 2. 1 不動産 담보 신탁제도 시행
- 2. 1 外換거래 규제 완화
- 2. 6 割當 關稅운용
- 2. 8 與信管理제도 개선
- 2. 12 政府工事的 낙찰자 결정 방법 개선
- 2. 13 會社債 支給保證업무 개선
- 2. 17 財政資金金利 인하
- 2. 23 相互信用金庫 동일인 여신한도 폐지
- 2. 25 遊休地 결정
- 2. 25 〈 金永三 大統領 취임 〉
- 3. 2 中小 纖維業體 시설 자동화 지원
- 3. 20 國債發行金利 인하
- 3. 22 農産物 등에 대한 조정관세
- 3. 22 新經濟 100日 計劃
- 3. 26 金利인하
- 3. 26 信託業務 운용제한 완화

- 4. 1 輸入積荷 保險의 보상범위 확대
- 4. 1 外換集中制 완화
- 4. 1 海外 증권투자 완화
- 4. 1 酒類輸出검사 제도 폐지
- 4. 1 保險규제 완화
- 4. 1 經濟力 집중 억제 시책
- 4. 1 SAL 소포 우편제도 시행
- 4. 2 貿易金融制度 개선
- 4. 6 消費者 被害補償 확대
- 4. 15 價格變更 사후 보고제 운용
- 4. 29 임시 投資稅額 공제제도 적용시한 연장
- 5. 1 信用卡도 이용한도 조정
- 5. 1 근로자 長期貯蓄 방법 개선
- 5. 1 金融機關의 공공자금 운용제도 폐지
- 5. 1 短資·綜金社 행정규제 완화
- 5. 4 外國人 토지 취득요건 완화
- 5. 6 金融機關에 대한 행정규제 완화
- 5. 7 市場支配的 사업자의 濫用行爲 규정 개정
- 5. 14 증권회사의 공공자금 운용제도 폐지
- 5. 18 農水産 정예인력 육성
- 5. 20 下都給者 보호강화 및 入札保證金 면제
- 5. 25 保險회사의 자산운용제도 개선
- 5. 29 輸出추천품목 축소 조정
- 6. 11 證券거래관련 규제 완화
- 6. 16 中小企業에 대한 外換규제 완화
- 6. 18 最低價 落札制 적용대상 축소
- 6. 19 自動車保險제도 개선
- 6. 19 사치, 향락, 유흥업소 억제 및 건전화 대책
- 6. 25 총사업비 관리방안
- 6. 29 特別會計 및 기금제도의 정비
- 7. 1 保險商品 인가제도 개편
- 7. 1 財政자금 운용방법 개선
- 7. 1 割引特賣 실시기간 확대
- 7. 1 土地利用제도 개편
- 7. 1 對外貿易 규제 완화
- 7. 1 外國人 투자 자유화 추진방안
- 7. 2 新經濟 5年 計劃
- 7. 27 外國人의 有價證券 취득 규제 체제정비

- 8. 7 < 大田 EXPO >
- 8. 10 投信社 資金支援
- 8. 12 金融實名制 실시
- 8. 14 제품의 포장방법 및 포장재질 등 기준제정
- 8. 20 京釜高速電鐵 TGV선정
- 8. 24 < 韓·中 修交 >
- 8. 24 金融實名制 실시에 따른 분야별 대책
- 8. 25 零細中小企業 추가지원 대책
- 9. 1 稅制개편
- 9. 9 정부 공사계약제도 개선
- 9. 13 住宅 분양가 원가 연동제 개선
- 9. 17 한우사육 기반조성사업 지원
- 9. 20 信協 설립요건 완화 및 업무 활성화 대책
- 9. 20 華農林地域내 행위제한 완화
- 9. 22 中小企業에 대한 긴급자금 지원 확대
- 9. 24 金融實名制 후속조치
- 9. 24 장애인 雇傭促進基金 지원
- 9. 25 住宅建設 기준 개정
- 9. 27 그린벨트제도 개선방안
- 10. 1 사우나탕 신규 영업허가제한 해제
- 10. 1 投金, 綜金の 私금고화 방지대책
- 10. 1 外換 管理제도 개선
- 10. 2 지방 생명보험 회사의 지분제한 완화
- 10. 14 장의, 결혼식 영업 규제완화
- 10. 25 上場企業의 경영권 안정 지원대책
- 10. 25 勞使關係 모범사에 정책자금 우선지원
- 10. 27 특정물질 사용 합리화 기금융자금리 인하
- 10. 27 業種 專門化 시책
- 10. 29 外貨 貸出조건 완화
- 10. 30 자동차 운수업 규제 완화
- 11. 1 제2단계 金利 자유화
- 11. 5 國債 引受團 운영
- 11. 10 金融機關 增資 및 公開 허용
- 11. 23 實名制실시에 따른 土地去來 허가제 해제
- 11. 26 海外 直接投資 활성화
- 11. 27 銀行保證 정액 가계수표 제도 시행
- 12. 1 外國人 投資者 해외차입 및 조세혜택 확대
- 12. 6 關稅制度 개선
- 12. 8 廢資源 사용 의무화

12. 10	關稅 환급제도 개선	12. 10
12. 12	環境영향 평가 강화	12. 12
12. 14	稅制개편	12. 14
12. 16	土地利用규제 완화	12. 16
12. 23	中古船舶 도입기준 완화	12. 23
12. 23	小賣商의 연쇄화 사업규제 완화	12. 23
12. 28	廢建築資材 재활용 의무화	12. 28
12. 29	전락기술 輸出규제 완화	12. 29
12. 30	의약품 價格制度 개선	12. 30
12. 31	豫算制度 개선	12. 31

1994年

1. 1	< NAFTA 발효 >	1. 1
1. 1	輸入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의무화	1. 1
1. 1	輸入 자유화 추진	1. 1
1. 1	기업의 外貨 자금조달 확대조치	1. 1
1. 1	첨단 및 防衛産業 關稅減免 기간연장	1. 1
1. 1	油價 連動制 실시	1. 1
1. 5	建築士 보수기준 변경	1. 5
1. 5	녹색 신고제도 실시	1. 5
1. 11	都市 再開發 업무 개선	1. 11
1. 11	< EU의 2단계 經濟通貨統合 >	1. 11
1. 14	證市安定 대책	1. 14
1. 15	外國人 투자기업 海外借入 제한 완화	1. 15
1. 18	官給 자재 품질관리 개선방안	1. 18
1. 20	與信管理제도 개선	1. 20
1. 25	< 貿易業務 자동화 개시 >	1. 25
1. 27	價格表示制度 개선	1. 27
1. 28	證市安定 대책	1. 28
2. 1	전기사용 제한 완화	2. 1
2. 7	證市安定 대책	2. 7
2. 15	해외 證券發行 규제 완화	2. 15
2. 15	석유류 彈力稅率 조정	2. 15
2. 16	國債의 競爭入札방식 변경	2. 16
2. 25	外換規制 완화	2. 25
2. 28	海外投資 확대 방안	2. 28
2. 28	先 輸出 및 後 通關制度	2. 28

- 3. 1 에너지 節約型 설계 의무화
- 3. 2 外資導入 규제 완화
- 3. 3 商業어음 담보대출 확대
- 3. 3 證券去來제도 개선
- 3. 22 사업 시행자의 공공시설비 부담
- 3. 29 農地전용 규제 완화
- 4. 1 金融機關 점포 설치 자유화
- 4. 1 保險會社 점포 설치의 자율화 확대
- 4. 1 投金, 綜金社 경영 평가제도 도입
- 4. 7 下都給法 적용대상 확대
- 4. 8 수도권 建築規制 완화
- 4. 15 해외 中古 建設裝備 輸出入 규제 완화
- 4. 15 < UR 協商終結 >
- 4. 18 병역 특례대상 農水産物 가공업체 지정
- 4. 22 國策銀行 民營化 추진방안
- 4. 27 投信社 경영평가제도 도입
- 5. 9 與信관리제도 개선
- 5. 14 對外貿易 규제 완화
- 5. 15 農漁村 발전 대책
- 5. 16 국산 農水産物의 원산지 표시 의무화
- 5. 21 農地 매입시의 농지 소재지 거주요건 폐지
- 5. 25 政府工事 낙찰자 선정방법 변경
- 5. 29 < 바젤협약 발효 >
- 6. 1 外換규제 완화
- 6. 1 구 공산권에 대한 輸出統制 완화
- 6. 10 계열기업군 與信관리제도 개선
- 6. 15 자동차 貸與사업 등록기준 제정
- 6. 20 個人年金 제도 시행
- 6. 25 中小企業 전담지도역 제도
- 6. 30 農漁民 年金制度 실시방안
- 6. 30 농업목적 干拓事業 민간참여 허용
- 7. 1 농어촌 特別稅法 시행
- 7. 1 債券市場 개방 추진방안
- 7. 1 일반 투자가의 해외증권 直接投資 허용
- 7. 1 外國人 투자개방 확대
- 7. 1 觀光호텔 신용카드 예약제
- 7. 4 항공기 소음고시지역내 建築制限 완화
- 7. 4 의약품 제도 관련 규제 완화
- 7. 4 리스社에 대한 外換 업무 허용

- 7. 6 소비자 피해보상제도 개선
- 7. 8 < 김일성 死亡 >
- 7. 15 석유류 稅率조정
- 7. 18 제 3단계 金利 自由化의 부분 조기사행
- 7. 21 서울시 양키본드 발행
- 7. 25 비닐백사용 등 규제
- 7. 25 投信社 지원
- 8. 1 중고선박 輸入制限 완화
- 8. 1 自動車保險 상품 단일화
- 8. 1 시설대여(리스) 업무 개선방안
- 8. 3 首都圈 工場 총량 규제
- 8. 3 民資誘致 촉진법 제정
- 8. 5 國有地 개발신탁 시행
- 8. 8 不公正去來행위에 대한 課徵金 제도
- 8. 17 전기공사업 규제 완화
- 8. 18 稅制改革 방안
- 8. 27 關稅制度 개편
- 9. 1 中小企業 고유업종 축소 조정
- 9. 1 變動金利附 채권 도입
- 9. 2 기계류, 부품, 소재 국산화 개발품목 선정
- 9. 3 신발, 纖維産業에 대한 해외 인력지원 계획
- 9. 7 土地去來 허가구역 지정
- 9. 7 상품권 발행제도 개선
- 9. 9 金融規制 완화
- 9. 16 環境改善 부담금 제도 개선
- 10. 15 < 浦鐵 株式 뉴욕 證市 上場 >
- 10. 16 不法就業 外國人 보호 종합대책
- 10. 21 < 성수大橋 崩壞 >
- 11. 1 外換관리제도 개선
- 11. 1 시외버스 등 料率 규제 완화
- 11. 3 電子게임 산업발전 방안
- 11. 3 中小企業 고유업종 축소조정 방안
- 11. 4 輸出 보험제도 개선
- 11. 5 어음 不渡處理방법 개선
- 11. 17 < 世界化 宣言 >
- 11. 21 林業協同組合 상호금융 업무실시
- 11. 23 < OPEC 산유량 동결 >
- 11. 26 情報化 촉진 기본법 제정

- 12. 1 제 3단계 金利自由化 부분시행 및 통화관리방식 개선 방안
- 12. 1 外國人 株式投資 한도 확대
- 12. 2 中小企業 계열화 지정품목 조정
- 12. 5 外換제도 개혁방안(1단계)
- 12. 7 바젤 협약 대상품목 설정
- 12. 14 稅制 개편
- 12. 19 關稅制度 개편
- 12. 23 原價會計準則 제정
- 12. 23 정부조직 개편
- 12. 24 小型住宅건설 의무비율 조정
- 12. 27 國民銀行 민영화
- 12. 30 外貨 證券投資 제도 개선
- 12. 31 銀行法 개정
- 12月 < 멕시코 페소貨 暴落 >

1995年

- 1. 1 < WTO 出帆 >
- 1. 1 국내거주 외국인의 株式投資시 내국인 대우
- 1. 1 합작 투자기업에 대한 外國人의 株式投資 제한 완화
- 1. 1 非金融企業의 해외 금융업 진출 허용
- 1. 1 株式 場外市場제도 개선
- 1. 1 쓰레기 從量制 전면 실시
- 1. 1 中小企業 고유업종 축소조정
- 1. 1 輸出추천 및 輸入先 多邊化 품목 축소조정
- 1. 3 株式賣買 제도 선진화 방안
- 1. 3 證券業務 자율화 방안
- 1. 3 環境改善 부담금제도 개선
- 1. 5 농산물 특별 緊急關稅제도 시행
- 1. 11 리스사 經營評價제도 도입
- 1. 16 農畜水産物 輸入 자유화
- 1. 17 建設工事의 부실방지 종합대책
- 1. 17 < 日 阪神 대지진 >
- 1. 25 當座貸出金利 실세 연동화
- 1. 27 不動産 實名制 실시 계획
- 1. 28 기계류, 부품소재 국산화 사업 대책
- 2. 6 肉類 屠體 등급제
- 2. 8 産業用紙의 공급 원활화 대책
- 2. 9 中小企業 지원 9대시책

- 2. 13 投信社 特融 전액 회수
- 2. 13 外換제도 개혁방안 시행
- 2. 15 民資留致 사업 선정
- 2. 15 外銀支店에 대한 외국인 투자관련 업무위탁 및 절차 간소화
- 2. 20 減價償却 내용년수 개선
- 3. 1 金融규제 완화 방안
- 3. 1 지방 中小企業 특별지원지역 설정
- 3. 2 시내버스 등 배출가스 규제 강화
- 3. 3 < IBRD 借款 導入 종료 >
- 3. 6 農漁村 발전 대책
- 3. 7 證券社의 해외진출 확대방안
- 3. 10 埋立港灣敷地 私有化 허용 계획
- 3. 14 그린벨트 규제 완화
- 3. 15 대그룹의 지방生保 진출허용
- 3. 17 비업무용 不動産 판정기준 완화
- 3. 20 EDI 通關대상 확대
- 3. 23 農漁村 주택 양도소득세 면제
- 3. 24 連鎖化事業 지정요건 완화
- 4. 1 公正去來制度 개선
- 4. 1 金融분야 규제 완화
- 4. 1 제 2단계 保險상품 가격 자유화
- 4. 1 고도기술 수반 外國人 投資에 대한 지원
- 4. 1 株式價格 제한폭 확대
- 4. 1 建設기계형식 승인 면제
- 4. 1 準農林地域 공장증설 허용
- 4. 3 株價指數 先物시장 시험개장
- 4. 3 할부 金融業 허용방안
- 4. 6 相互信用金庫 제도 개선
- 4. 6 技術導入 신고제 폐지
- 4. 6 巨額與信총액 한도제
- 4. 11 부가 通信사업 자유화
- 4. 12 AS마크 제도 도입
- 4. 13 宅地소유 상한제도 개선
- 4. 15 證券업무 규제완화 방안

附錄2 部門別 經濟施策 索引

綜合經濟運用	583
租稅·財政	584
通貨·金融	587
資本市場(外國人 投資 포함)	594
產業·流通	597
農水產業	599
貿易·關稅·貿易金融	601
外 換	605
對外經濟協力(借款 포함)	607
不動產·建設·交通	608
情報·通信	611
物價·勞動·賃金	612
公正去來	614
國民生活·環境·에너지	614
其 他	615

綜合經濟運用

1950. 3. 4 經濟安定 15원칙
1952. 5. 24 合同 經濟委員會 設置
1953. 12. 14 經濟再建과 財政安定 계획에 관한 合同 經濟委員會 협약
1954. 7. 28 經濟復興 5個年 계획수립
1957. 4. 20 財政安定 계획
1958. 3. 11 財政安定 계획
1959. 2. 20 財政安定 계획
-
1961. 1. 10 韓國 經濟協義會 발족
1961. 6. 1 긴급 經濟대책
1961. 7. 22 經濟企劃院 창설
1961. 7. 28 經濟 긴급대책
1962. 1. 5 제 1차 經濟開發 5個年 計劃 발표
1962. 7. 25 零細民 대책(당면 경제시책 제 1부)
1962. 8. 10 당면 綜合經濟施策 제 2부
1962. 8. 13 정부투자기관 豫算會計法 제정
1962. 8. 14 당면 經濟安定 및 物價대책(가격통제 강화조치)
1964. 5. 6 換率 改正에 따른 경제시책
1966. 7. 29 제 2차 經濟開發 5個年 計劃 발표
1969. 11. 3 安定基盤 構築을 위한 종합대책
-
1970. 1. 7 經濟安定 대책
1971. 2. 9 제 3차 經濟開發 5개년계획 발표
1971. 3. 11 < KDI 설립 >
1971. 9. 4 物價安定 종합 대책
1972. 2. 14 景氣回復을 위한 당면 經濟施策
1972. 4. 21 당면 經濟施策의 보완
1972. 8. 3 經濟의 安定과 成長에 관한 긴급 명령
1973. 7. 11 미국의 禁輸措置에 따른 안정대책
1974. 1. 14 國民生活 安定을 위한 대통령 긴급 조치
1974. 12. 7 國際收支 改善과 景氣回復을 위한 특별 조치
1978. 8. 8 不動產 투기억제 및 地價 安定을 위한 종합 대책
1979. 4. 17 景氣安定化 종합 대책
1979. 7. 13 하반기 經濟운용과 대책
-
1980. 6. 5 당면 經濟運用的 과제와 대책
1980. 9. 16 經濟活性化 방안

1980. 11. 8	景氣活性化 대책
1982. 1. 14	당면 經濟대책 방안
1982. 5. 18	당면 經濟대책
1982. 6. 28	投資 促進을 통한 경제활성화 대책
1986. 9. 2	國民福祉增進 대책
1987. 10. 26	地域經濟육성 종합대책
1988. 10. 14	경제의 安定成長과 先進化合經濟 추진대책
1989. 4. 12	경제사회의 공정·형평 및 지속 발전을 위한 실천계획
1989. 11. 14	經濟社會安定과 競爭力제고를 위한 당면대책
1990. 4. 4	經濟活性化 종합대책
1991. 1. 14	經濟安定과 成長기반확충 대책
1992. 1. 14	經濟安定과 産業 競爭力 제고 대책
1993. 3. 22	新經濟 100日 計劃
1993. 7. 2	新經濟 5個年 計劃
1994. 11. 17	< 世界化 宣言 >

租稅 · 財政

1945. 11. 2	稅制의 增稅
1949. 2. 1	國稅조사 실시
1949. 7. 15	稅制개편
1950. 11. 30	組稅 임시 증징법 제정
1950. 12. 1	임시 組稅 조치법 제정
1950. 12. 1	登錄稅法 제정
1950. 12. 22	지방稅法 제정
1951. 1. 1	組稅 特例法 제정
1951. 3. 1	營業 監察制 실시
1951. 5. 7	租稅犯 處罰法 제정
1951. 9. 24	財政法 제정
1951. 9. 25	土地收益租稅 物納制
1954. 1. 23	會計年度 변경
1954. 3. 31	稅制 개편
1956. 6. 27	會計年度 변경
1958. 1. 2	資產 再評價法 제정
1958. 8. 28	外換特別稅 신설
1958. 12. 28	稅制 개편

1960. 12. 31	土地稅法 제정
1961. 9. 9	稅務士法 제정
1961. 10. 5	調達廳 설립
1961. 12. 2	稅制 개편
1961. 12. 19	豫算會計法 제정
1961. 12. 31	기업 豫算會計法 제정
1961. 12. 31	지방交付稅法 제정
1962. 5. 24	財産 再評價法 제정
1963. 5. 31	豫備費 예산의 총액 편성
1963. 11. 11	地方財政法 제정
1965. 3. 31	資産 再評價法 제정
1965. 12. 20	組稅減免 規制法 제정
1966. 3. 3	國稅廳, 水産廳 設立
1967. 3. 30	會計年度 변경
1967. 10. 28	會計年度 변경
1967. 11월	稅制 개편
1969. 1. 29	지방 公企業法 제정
1970. 9. 26	水産用 油類稅 면세
1971. 12. 28	지방교육재정 交付金法 제정
1972. 12. 30	政府工事的 낙찰제도 변경
1973. 1. 9	근로소득 기초공제 제도
1973. 1. 14	不當利得稅制法 제정
1973. 2. 6	政府投資機關 관리법 제정
1973. 2. 16	예산제도 개선
1974. 12. 20	稅制 개편
1974. 12. 26	결산상 剩餘金의 處理方法 변경
1975. 7. 16	防衛稅 신설
1975. 12. 31	豫算제도 개선
1976. 12. 22	稅制 개편
1977. 7. 1	附加價値稅法 시행
1977. 7. 1	特別消費稅法 시행
1977. 7. 1	附加價値稅 실시 보완 대책
1978. 12. 30	稅制 개편
1979. 9. 18	防衛稅 시한 연장
1980. 3. 28	제로베이스 豫算編成 방식 채택
1981. 12. 29	稅制 개편
1983. 12. 8	租稅減免 확대
1983. 12. 12	租稅減免 기본원칙 제정
1983. 12. 31	政府投資機關 관리 기본법 제정

1960. 12. 31	土地稅法 제정
1961. 9. 9	稅務士法 제정
1961. 10. 5	調達廳 설립
1961. 12. 2	稅制 개편
1961. 12. 19	豫算會計法 제정
1961. 12. 31	기업 豫算會計法 제정
1961. 12. 31	지방交付稅法 제정
1962. 5. 24	財産 再評價法 제정
1963. 5. 31	豫備費 예산의 총액 편성
1963. 11. 11	地方財政法 제정
1965. 3. 31	資産 再評價法 제정
1965. 12. 20	組稅減免 規制法 제정
1966. 3. 3	國稅廳, 水産廳 設立
1967. 3. 30	會計年度 변경
1967. 10. 28	會計年度 변경
1967. 11월	稅制 개편
1969. 1. 29	지방 公企業法 제정
1970. 9. 26	水産用 油類稅 면세
1971. 12. 28	지방교육재정 交付金法 제정
1972. 12. 30	政府工事的 낙찰제도 변경
1973. 1. 9	근로소득 기초공제 제도
1973. 1. 14	不當利得稅制法 제정
1973. 2. 6	政府投資機關 관리법 제정
1973. 2. 16	예산제도 개선
1974. 12. 20	稅制 개편
1974. 12. 26	결산상 剩餘金の 處理方法 변경
1975. 7. 16	防衛稅 신설
1975. 12. 31	豫算제도 개선
1976. 12. 22	稅制 개편
1977. 7. 1	附加價値稅法 시행
1977. 7. 1	特別消費稅法 시행
1977. 7. 1	附加價値稅 실시 보완 대책
1978. 12. 30	稅制 개편
1979. 9. 18	防衛稅 시한 연장
1980. 3. 28	제로베이스 豫算編成 방식 채택
1981. 12. 29	稅制 개편
1983. 12. 8	租稅減免 확대
1983. 12. 12	租稅減免 기본원칙 제정
1983. 12. 31	政府投資機關 관리 기본법 제정

1985. 6. 28	임시 投資稅額 공제제도
1985. 8. 14	設備投資 촉진을 위한 금융 및 세제 지원 확대
1985. 12. 2	稅制 개편
1986. 12. 26	稅制 개편
1986. 12. 31	보조금 豫算法 제정
1987. 2. 4	財政投融資 특별회계 신설
1988. 5. 6	稅制개편
1989. 3. 31	豫算制度 개선
1989. 6. 16	綜合土地稅 도입
1989. 7. 4	임시 投資稅額 공제 제도
1989. 8. 2	讓渡所得稅 과세대상 조정
1989. 12. 27	歲計 잉여금에 의한 양곡증권 상환
1989. 12. 30	勤勞所得稅額 공제제도
1990. 3. 16	종합土地稅法 개편
1990. 4. 7	農漁村振興公社 설립 및 농지관리 기금 설치
1990. 7. 31	근로소득 稅額控除 확대
1990. 12. 18	稅制개편
1991. 3. 26	調達物資비축 확대
1991. 6. 13	製造業 競爭力 強化를 위한 세제지원 대책
1991. 12. 27	印紙稅法 개정
1991. 12. 27	豫算 會計法 개정
1991. 12. 31	기금관리 제도 정비
1992. 3. 5	尖端技術設備 투자세액 공제제도
1992. 3. 10	지역제한입찰 한도액 상향조정
1992. 5. 11	環境설비공사 입찰방법 개선
1992. 6. 18	임시 投資稅額 공제제도 시한 연장
1992. 7. 30	基金管理制度 개편
1993. 1. 21	정부 勞賃單價 현실화
1993. 2. 12	政府工事의 낙찰자 결정 방법 개선
1993. 4. 29	임시 投資稅額 공제제도 적용시한 연장
1993. 5. 20	下都給者 보호강화 및 入札保證金 면제
1993. 6. 18	最低價 落札制 적용대상 축소
1993. 6. 25	총사업비 관리방안
1993. 6. 29	特別會計 및 기금제도의 정비
1993. 7. 1	財政자금 운용방법 개선
1993. 9. 1	稅制개편
1993. 9. 9	정부 공사계약제도 개선
1993. 12. 14	稅制개편
1993. 12. 31	豫算制度 개선

1994. 2. 15	석유류 彈力稅率 조정	석유류 彈力稅率 조정	1994. 2. 15
1994. 1. 18	官給 자재 품질관리 개선방안	官給 자재 품질관리 개선방안	1994. 1. 18
1994. 5. 25	政府工事 낙찰자 선정방법 변경	政府工事 낙찰자 선정방법 변경	1994. 5. 25
1994. 7. 1	농어촌 特別稅法 시행	농어촌 特別稅法 시행	1994. 7. 1
1994. 7. 15	석유류 稅率조정	석유류 稅率조정	1994. 7. 15
1994. 8. 18	稅制改革 방안	稅制改革 방안	1994. 8. 18
1994. 12. 14	稅制 개편	稅制 개편	1994. 12. 14
1995. 2. 20	減價償却 내용년수 개선	減價償却 내용년수 개선	1995. 2. 20
1995. 3. 23	農漁村 주택 양도소득세 면제	農漁村 주택 양도소득세 면제	1995. 3. 23

通貨 · 金融

1945. 9. 20	국고금의 獨立 金庫制 실시	국고금의 獨立 金庫制 실시	1945. 9. 20
1945. 10. 20	融資허가제(自由與信 한도제)	融資허가제(自由與信 한도제)	1945. 10. 20
1946. 6. 1	예금金利 인하	예금金利 인하	1946. 6. 1
1946. 10. 5	대출金利 인상	대출金利 인상	1946. 10. 5
1947. 6. 16	朝鮮換金銀行 설립	朝鮮換金銀行 설립	1947. 6. 16
1948. 4. 14	銀行檢査제도 실시	銀行檢査제도 실시	1948. 4. 14
1949. 6. 1	國庫金の 朝鮮銀行 집중	國庫金の 朝鮮銀行 집중	1949. 6. 1
1949. 7. 1	金利조정	金利조정	1949. 7. 1
1950. 6. 12	韓國銀行 설립	韓國銀行 설립	1950. 6. 12
1950. 6. 22	대출 최고 한도제	대출 최고 한도제	1950. 6. 22
1950. 6. 28	預金 支給制限	預金 支給制限	1950. 6. 28
1950. 7. 19	預金 支給制限 범위결정	預金 支給制限 범위결정	1950. 7. 19
1950. 8. 28	貨幣 交換	貨幣 交換	1950. 8. 28
1950. 10月	貸出 사전 승인제	貸出 사전 승인제	1950. 10月
1951. 2. 1	金融기관 資金 운용요강	金融기관 資金 운용요강	1951. 2. 1
1951. 4. 1	貸出 사전 승인제 폐지	貸出 사전 승인제 폐지	1951. 4. 1
1951. 4. 19	預金 支給準備制度 실시	預金 支給準備制度 실시	1951. 4. 19
1952. 1. 31	預金 支給準備金 결정	預金 支給準備金 결정	1952. 1. 31
1952. 2. 1	무기명 定期預金制 실시	무기명 定期預金制 실시	1952. 2. 1
1953. 2. 15	긴급 通貨金融 조치	긴급 通貨金融 조치	1953. 2. 15
1953. 10. 1	용자 순위제	용자 순위제	1953. 10. 1
1954. 4. 1	韓國産業銀行 발족	韓國産業銀行 발족	1954. 4. 1
1954. 3. 3	화폐 최고 발행제	화폐 최고 발행제	1954. 3. 3
1955. 7. 1	貸出 최고한도제 변경	貸出 최고한도제 변경	1955. 7. 1
1955. 12. 15	商業어음제 실시	商業어음제 실시	1955. 12. 15

1956.	5.	1	農業銀行 설립		
1957.	2.	14	農業協同組合 설립		
1957.	4.	1	支給準備金 제도 개선		
1959.	2.	16	貯蓄預金제도 신설		
1959.	3.	1	貸出 최고한도 일시 폐지		
1960.	1.	1	定期積金 신설		
1960.	6.	1	貸出 최고한도제 재개		
1961.	5.	16	金融 및 物價凍結		
1961.	7.	9	金利인상 및 支給準備率 인하		
1961.	7.	29	預金, 積金 비밀보장		
1961.	7.	29	農協과 農銀의 統合(農業協同組合 발족)	55	1961
1961.	8.	1	中小企業銀行 설립		
1961.	8.	24	金融동결 해제		
1961.	11.	16	通貨安定證券 발행		
1962.	1.	15	利子制限法, 證券去來法 제정		
1962.	6.	9	긴급 通貨개혁(6·9 통화조치)		
1962.	7.	13	預金凍結 해제		
1962.	9.	6	외화 表示資金 공급		
1965.	9.	22	最高 利子率 결정		
1965.	9.	30	金利 현실화		
1967.	1.	30	韓國外換銀行 발족		
1967.	6.	12	外國銀行 국내지점 개설		
1967.	7.	10	住宅銀行 국내지점 개설		
1968.	1.	1	支給準備率 인하		
1968.	2.	1	一般銀行에 대한 貸出 및 再割引 한도제 실시		
1968.	4.	1	與受信 최고 利子率 변경		
1968.	9.	16	농협예수금 차등 支給準備率		
1968.	10.	1	여수신 最高 利子率 변경		
1968.	12.	10	韓國信託銀行 발족		
1969.	2.	21	외화 여수신 最高金利 조정		
1969.	2.	21	외국은행 국내지점 외화대출 실시		
1969.	4.	11	정부 借入金 금리인상		
1969.	6.	1	外貨 與受信 최고이율 조정		
1969.	6.	27	本源通貨에 의한 通貨規制		
1969.	7.	11	韓國輸出入銀行 설립		
1969.	7.	31	외화 積金制 실시		
1969.	10.	3	< SDR 창출 >		
1969.	11.	6	국내 與信에 의한 通貨規制		
1969.	12.	31	外貨國債 발행제도 마련		

1970. 5. 9	상업어음 再割引 대상 확대
1970. 8. 12	대기업의 은행 貸出金 연체정리 방안
1971. 1. 1	支給準備率 인하
1971. 6. 28	換率인상 및 금리인하
1971. 11. 1	支給準備率 인하
1972. 1. 17	與受信 金利인하
1972. 9. 14	신용조합 與受信 金利 결정
1972. 12. 16	支給準備率 인상
1972. 12. 16	通安증권의 민간 매각
1973. 5. 16	支給準備率 인상
1974. 1. 31	外貨貸出 連動金利 제도 채택
1974. 7. 1	계열 기업군에 대한 與信관리
1974. 8. 1	支給準備率 인하
1974. 12. 21	信用保證基金法 제정
1975. 3. 1	支給準備率 조정
1975. 7. 1	支給準備率 인상
1975. 10. 1	商業어음제도 개편
1975. 11. 1	한국綜合金融會社 설립 결정
1976. 3. 4	完製品 비축 금융 실시
1976. 3. 15	貯蓄増大 계획
1976. 5. 1	車主 배상 책임보험제도
1976. 6. 10	信用保證基金 설립
1976. 8. 2	金利 인상
1977. 2. 1	GIRO 제도 실시
1977. 5. 14	流動性 규제 강화
1977. 10. 4	金利 인하
1978. 2. 23	支給準備率 인상
1978. 6. 13	金利 인상
1979. 2. 5	商業어음 支給保證制度 실시
1979. 8. 23	콜市場 확대 개편
1979. 9. 6	金利 連動制 채택
1980. 1. 1	支給準備率 인하
1980. 1. 12	최고 利率 인상
1980. 1. 12	換率 및 金利 인상
1980. 8. 27	短資社의 중소기업 지원 확대
1980. 10. 2	中小企業 의무대출 비율 조정
1980. 12. 4	토지개발채권 擔保貸出
1981. 7. 1	支給準備率 인하 및 단일화
1981. 11. 16	支給準備率 인하
1981. 12. 29	預金제도 개편

1982.	1.	7	民間信用限度制 폐지
1982.	5.	4	< 巨額어음 부정 사건 >
1982.	5.	23	流動性 조절방식 일부 변경
1982.	7.	3	金融實名 去來와 금융자산 소득에 대한 종합 과세
1982.	7.	15	外貨 貸出제도 개편
1982.	8.	2	與信관련 제도 개편
1982.	11.	3	金融機關의 RP취급 허용
1982.	12.	21	벤처 캐피탈社 발족
1983.	1.	1	遞信預金 및 保險 시행
1983.	2.	1	은행의 Factoring업무 취급
1983.	2.	24	금융기관에 대한 再割引 및 貸出比率 조정
1983.	2.	25	外貨貸出 제도 개편
1983.	3.	26	自動車保險 제도 개편
1983.	5.	18	短資會社의 業務 運用 準則 개정
1983.	6.	1	短資社 및 상호신용금고 신설 억제
1983.	7.	1	信用管理基金 제도 시행
1983.	7.	13	相互信用金庫의 소규모기업 지원강화
1983.	8月		< 明星사건 >
1983.	11.	17	商業어음 할인한도 확대
1983.	11.	25	相互信用金庫 신규설립 불허
1984.	1.	23	金利조정
1984.	2.	1	시중은행의 信託業務 취급
1984.	6.	1	讓渡性 定期預金證書(CD) 도입
1984.	9.	8	支給準備率 인하
1985.	3.	2	주거래은행 與信管理제도 개편
1985.	4.	19	自由貯蓄預金 신설 및 금리인상
1985.	7.	1	産業構造 조정 지원 대출제도
1985.	8.	14	設備投資 촉진을 위한 금융 및 세제 지원 확대
1985.	10.	8	< 제 40차 IMF, IBRD 서울 총회 >
1986.	1.	27	제 2금융권 金利 인하
1986.	3.	7	CD 및 會社債 金利 자유화
1986.	3.	24	대출금리 인하
1986.	4.	3	與信금지부문 조정
1986.	5.	1	韓銀대출제도 조정
1986.	6.	19	通貨安定證券의 一般公募제도 개선
1986.	7.	10	韓銀 再割引제도 개선
1986.	8.	1	外國銀行 국내지점에 상업어음 再割引 허용
1986.	8.	21	外國銀行 국내지점에 CD취급 허용

1987. 1. 9	기업어음 去來償行 是正	1987
1987. 2. 9	생명보험회사 地方運用比率 上向調整	1987
1987. 2. 12	CD발행단위 금액 인하	1987
1987. 5. 21	제 2금융권 金利 인하	1987
1987. 10. 1	先物去來제도 개편	1987
1987. 11. 11	國際收支 흑자 대책	1987
1987. 12. 1	保險會社의 자금운용 개선	1987
1987. 12. 28	지방 생명보험회사 신설 허용	1987
1988. 2. 7	國際收支 흑자관리 대책	1988
1988. 2. 15	外貨與信제한	1988
1988. 4. 20	保險會社 해외진출 확대방안	1988
1988. 7. 1	금융기관 手數料率 자유화	1988
1988. 9. 2	韓銀 再割引 및 대출제도 개편	1988
1988. 9. 19	금융기관 債權貸損 승인업무 개정	1988
1988. 12. 5	金利자유화	1988
1989. 1. 1	與信管理제도 개편	1989
1989. 2. 1	商業어음 再割引 適格業體 확대	1989
1989. 2. 22	대기업 與信規制 강화	1989
1989. 4. 20	한계 支給準備제도 도입	1989
1989. 4. 20	대계열 기업군에 대한 與信管理 강화	1989
1989. 5. 25	중소기업에 대한 商業어음 再割引 지원	1989
1989. 7. 27	중소기업에 대한 商業어음 再割引 시한 연장	1989
1989. 8. 4	與信管理제도 보완	1989
1989. 9. 8	通貨管理 강화	1989
1989. 10. 25	外貨 竊市場 개설방안	1989
1989. 11. 14	再割引 금리인하	1989
1989. 11. 23	외국환은행의 域外金融去來 활성화	1989
1990. 1. 13	與信管理제도 개편	1990
1990. 1. 19	한계 支準제도 폐지 및 基準支準率 인상	1990
1990. 1. 28	勞使紛糾 피해기업에 금융지원	1990
1990. 3. 5	금융기관 與信금지부문 조정	1990
1990. 3. 14	金融紛爭 調停 방법 개선	1990
1990. 6. 28	제 2금융권 金利 인하	1990
1990. 7. 21	소비자 金融去來約款 제정	1990
1990. 8. 28	특별外貨貸出 제도 개선	1990
1990. 11. 29	融通어음할인 규제	1990
1991. 1. 17	勤勞者 長期 貯蓄제도 실시	1991
1991. 1. 31	현지 金融制度 개선	1991

1991. 4. 6	不動産 담보제도 개선
1991. 4. 17	外國保險社 국내주제 사무소 설치 허가
1991. 5. 6	投信社 경영개선대책
1991. 6. 1	금융기관의 공공자금 운용제도
1991. 6. 1	與信管理제도 개선
1991. 6. 1	信用卡 이용 제한
1991. 6. 17	短資會社 기능조정
1991. 7. 1	企業어음 信用評價制度 개선
1991. 7. 23	어음仲介 활성화
1991. 10. 31	稅金優待貯蓄 가입한도 확대
1991. 11. 21	제 1단계 金利 자유화
1992. 1. 9	中小企業 대출 의무비율 상향조정
1992. 2. 1	계열기업군 與信관리 강화
1992. 2. 15	短資社 기업어음 할인 금리체계 변경
1992. 2. 21	금융기관의 與信 금지부문 확대
1992. 2. 25	短資社 등에 製造業 대출 지도비율 설정
1992. 2. 25	輸出관련 金融제도 개편
1992. 3. 6	지방은행주식 동일인 소유 한도 신설
1992. 3. 13	代替決濟會社 預託株式의 의결권 행사
1992. 5. 12	轉換 短資社의 단자업무 정리보완 대책
1992. 5. 26	信用卡 이용한도 관리체계 개선
1992. 5. 27	投信社 경영 정상화 대책
1992. 7. 1	保險市場 開放 현안에 대한 자유화 방안
1992. 7. 1	제 2단계 金融自律化 및 개방계획
1992. 7. 16	中小企業에 대한 담보취득 제한 완화
1992. 7. 20	金融機關의 공공자금 운용제도 개선
1992. 7. 24	短資社 金利인하
1992. 8. 3	債券關聯 金利인하
1992. 10. 20	設備資金 공급 원활화 대책
1992. 11. 11	유망 中小企業 설비자금 지원 확충
1992. 11. 23	金融事故 綜合對策
1993. 1. 1	外國人 투자기업에 대한 단기 外貨資金 차입 허용
1993. 1. 26	金利인하
1993. 1. 27	國債 發行金利 인하
1993. 1. 29	投信社 지원
1993. 2. 1	投資信託 규제완화 및 수익자 보호 강화
1993. 2. 1	不動産 담보 신탁제도 시행
1993. 2. 8	與信管理제도 개선
1993. 2. 17	財政資金金利 인하

1993. 2. 23	相互信用金庫 동일인 여신한도 폐지
1993. 3. 20	國債 發行金利 인하
1993. 3. 26	金利인하
1993. 3. 26	信託業務 운용제한 완화
1993. 4. 1	保險규제 완화
1993. 4. 2	貿易金融制度 개선
1993. 5. 1	信用卡드 이용한도 조정
1993. 5. 1	근로자 長期貯蓄 방법 개선
1993. 5. 1	金融機關의 공공자금 운용제도 폐지
1993. 5. 1	短資·綜金社 행정규제 완화
1993. 5. 6	金融機關에 대한 행정규제 완화
1993. 5. 25	保險회사의 자산운용제도 개선
1993. 6. 19	自動車保險제도 개선
1993. 7. 1	保險商品 인가제도 개편
1993. 8. 10	投信社 資金支援
1993. 8. 12	金融實名制 실시
1993. 8. 24	金融實名制 실시에 따른 분야별 대책
1993. 9. 20	信協 설립요건 완화 및 업무 활성화 대책
1993. 9. 24	金融實名制 후속조치
1993. 10. 1	投金, 綜金の 私금고화 방지대책
1993. 10. 2	지방 생명보험 회사의 지분제한 완화
1993. 10. 27	특정물질 사용 합리화기금 용자金利 인하
1993. 10. 29	外貨 貸出조건 완화
1993. 11. 1	제2단계 金利 자유화
1993. 11. 5	國債 引受團 운영
1993. 11. 10	金融機關 增資 및 公開 허용
1993. 11. 27	銀行保證 정액 가계수표 제도 시행
1994. 1. 20	與信管理제도 개선
1994. 2. 16	國債의 競爭入札방식 변경
1994. 3. 3	商業어음 담보대출 확대
1994. 4. 1	金融機關 점포 설치 자유화
1994. 4. 1	保險會社 점포 설치의 자율화 확대
1994. 4. 1	投金, 綜金社 경영 평가제도 도입
1994. 4. 22	國策銀行 民營化 추진방안
1994. 4. 27	投信社 경영평가제도 도입
1994. 5. 9	與信관리제도 개선
1994. 6. 10	계열기업군 與信관리제도 개선
1994. 7. 18	제 3단계 金利 自由化의 부분 조기시행
1994. 7. 25	投信社 지원

1994. 8. 1	自動車保險 상품 단일화
1994. 8. 1	시설대여(리스) 업무 개선방안
1994. 9. 9	金融規制 완화
1994. 11. 5	어음 不渡處理방법 개선
1994. 12. 1	제 3단계 金利 自由化 부분시행 및 통화관리방식 개선 방안
1994. 12. 27	國民銀行 민영화
1994. 12. 31	銀行法 개정
1995. 1. 1	非金融企業의 해외 금융업 진출 허용
1995. 1. 11	리스사 經營評價제도 도입
1995. 1. 25	當座貸出金利 실세 연동화
1995. 2. 13	投信社 特融 전액 회수
1995. 2. 15	外銀支店에 대한 외국인 투자관련 업무위탁 및 절차 간소화
1995. 3. 1	金融규제 완화 방안
1995. 3. 15	대그룹의 지방生保 진출허용
1995. 4. 1	金融분야 규제 완화
1995. 4. 1	제 2단계 保險상품 가격 자유화
1995. 4. 3	할부 金融業 허용방안
1995. 4. 6	相互信用金庫 제도 개선
1995. 4. 6	巨額與信총액 한도제

資本市場

1955. 8. 8	證券去來所 開場
1960. 1. 1	外資導入 촉진법 제정
1961. 12. 17	外資導入 운영방침
1962. 1. 15	利子制限法, 證券去來法 제정
1962. 7. 31	外資導入 촉진
1966. 8. 3	外資導入法 제정
1967. 12. 2	外資導入 합리화 종합시책
1968. 8. 22	公認會計法人 제도 도입
1968. 11. 8	資本市場 육성법 제정
1969. 2. 1	證券 거래제도 개선
1969. 7. 11	證券投資信託제도 도입
1971. 1. 9	외국인 投資誘致 정책
1973. 1. 5	企業公開 촉진

1973. 5. 12	중화학공업 개발을 위한 外資誘致
1973. 12. 14	國民投資基金法 제정
1974. 5. 29	企業의 體質 改善과 內資 동원을 위한 조치
1974. 7. 13	우리社株組合제도 채택
1974. 12. 1	國民投資基金 설치
1977. 8. 1	外資도입 요건 강화
1978. 4. 20	外資導入 행정의 개선
1978. 12. 5	證券去來稅法 제정
1979. 3. 2	證券去來稅法 인하
1979. 10. 6	外國人 投資 최저한도액 확대
1980. 9. 25	외국인 投資誘致 확대 방안
1981. 11. 19	외국인 전용 收益證券 발행
1983. 7. 18	資本市場 機能 擴充 방안
1983. 11. 15	株式시가 발행제도 실시 방안
1984. 6. 21	債券 거래 대중화 방안
1984. 7. 1	外資 도입제도 개편
1984. 8. 29	< KF 설립 >
1985. 9月	해외 證券投資 허용
1985. 11. 12	證券 해외발행 허용
1986. 7. 1	外資導入제도 개선
1986. 9. 23	중소기업 업종 外國人投資 규제 완화
1987. 3. 12	< KEF 設立 >
1987. 3. 21	證券去來稅率 인상
1987. 4. 1	株式場外市場 開設
1987. 4. 2	證市安定대책
1987. 10. 19	< 뉴욕證市 株價 폭락 > ※ BLACK MONDAY
1987. 10. 30	證券去來制度 개편
1987. 12. 1	資本市場의 국제화 추진
1988. 1. 1	公募株 請約제도 개편
1989. 3. 18	證券市場 육성
1989. 7. 1	외국인 投資 확대
1989. 12. 12	證券市場 浮揚 대책
1990. 3. 28	企業公開要件 강화
1990. 5. 8	證券市場 안정대책
1990. 9. 7	證券會社의 貸出金 회수 의무화
1990. 9. 18	株式型 收益證券 발매 허용
1990. 12. 29	勤勞者 長期 證券貯蓄제도 도입
1991. 3. 8	상장법인의 海外證券發行 제도 개선
1991. 4. 10	< KAF 설립 >

1991.	8.	23	企業公開제도 개선
1991.	9.	30	외국인의 주식매매거래 규정 제정
1991.	11.	22	株式市場개방 관련사항 보완
1991.	11.	22	外國 投資전용 회사의 채권매매 한도 설정
1991.	11.	22	會計監事 기준 제정
1991.	12.	27	외국인의 株式取得 예외한도 설정
1992.	1.	3	證券市場 개방
1992.	2.	27	連結財務諸表작성 의무화
1992.	4.	24	해외 證券發行제도 개선
1992.	5.	2	외국인 投資 및 기술도입 활성화 방안
1992.	5.	12	근로자 證券貯蓄 제도 확대
1992.	6.	18	근로자 株式貯蓄 신설
1992.	7.	1	외국인의 株式投資 확대
1992.	7.	10	中小企業의 公開要件 강화
1992.	7.	31	有價增資 時價割引率 적용 자율화
1992.	8.	5	CD취급 증권회사 확대
1992.	8.	24	證券市場 安定을 위한 종합대책
1992.	9.	1	海外直接投資 제도개선
1992.	11.	1	外國人 投資 및 技術導入 제도 개선
1992.	12.	26	외국인 投資의 原則的 申告制
1993.	1.	1	外國人 투자기업에 대한 단기 外貨資金 차입 허용
1993.	1.	1	外國人 전용 수익증권 인가
1993.	2.	13	會社債 支給保證업무 개선
1993.	5.	4	外國人 토지 취득요건 완화
1993.	5.	14	증권회사의 공공자금 운용제도 폐지
1993.	6.	11	證券거래관련 규제 완화
1993.	7.	1	外國人 투자 자유화 추진방안
1993.	7.	27	外國人의 有價證券 취득 규제 체제정비
1993.	10.	25	上場企業의 경영권 안정 지원대책
1993.	11.	26	海外 直接投資 활성화
1993.	12.	1	外國人 投資者 해외차입 및 조세혜택 확대
1994.	1.	14	證市安定 대책
1994.	1.	15	外國人 투자기업 海外借入 제한 완화
1994.	1.	28	證市安定 대책
1994.	2.	7	證市安定 대책
1994.	2.	15	해외 證券發行 규제 완화
1994.	2.	28	海外投資 확대 방안
1994.	3.	2	外資導入 규제 완화
1994.	3.	3	證券去來제도 개선

1994. 7. 1	債券市場 개방 추진방안
1994. 7. 1	일반 투자가의 해외증권 直接投資 허용
1994. 7. 1	外國人 투자개방 확대
1994. 7. 21	서울市 양키본드 발행
1994. 9. 1	變動金利附 채권 도입
1994. 10. 15	<浦鐵株式 뉴욕 證市 上場>
1994. 12. 1	外國人 株式投資한도 확대
1994. 12. 23	原價會計準則 제정
1994. 12. 30	外貨 證券投資 제도 개선
1995. 1. 1	국내거주 외국인의 株式投資시 내국인 대우
1995. 1. 1	합작 투자기업에 대한 外國人의 株式投資 제한 완화
1995. 1. 1	株式 場外市場제도 개선
1995. 1. 3	株式 賣買 제도 선진화 방안
1995. 1. 3	證券業務 자율화 방안
1995. 2. 15	外銀支店에 대한 외국인 투자관련 업무위탁 및 절차 간소화
1995. 3. 7	證券社의 해외진출 확대방안
1995. 4. 1	株式價格 제한폭 확대
1995. 4. 1	고도기술 수반 外國人 投資에 대한 지원
1995. 4. 3	株價指數 先物시장 시험개장
1995. 4. 15	證券업무 규제완화 방안

産業 · 流通

1954. 4. 1	韓國産業銀行 발족
1961. 8. 1	中小企業銀行 설립
1962. 2. 3	蔚山工業地球 설정
1968. 5. 11	造船事業 면허제 완화
1971. 10. 16	韓·美 纖維協定 체결
1972. 9. 16	糧穀流通 규제 조치
1973. 3. 16	쌀소비절약과 유통질서 확립 시책
1974. 2. 25	流通구조 개선 대책
1976. 5. 28	機械類 國産化 촉진 지원
1978. 1. 1	動力資源部 발족
1978. 6. 14	中小企業 振興工團 설립
1979. 4. 24	技術導入 자유화 조치
1979. 5. 25	重化學投資 조정 계획(제 1차)
1979. 6. 12	機械工業 전략 수출산업화

1980.	1.	4	流通産業 근대화 촉진법 제정
1980.	8.	20	重化學 투자 조정(제 1차)
1980.	9.	13	제 2차 重化學 투자 조정방침 확정
1980.	9.	27	기업 체질 강화대책
1980.	10.	7	제 2차 重化學工業 투자 조정 완결
1981.	4.	3	産業合理化 및 投資 장려
1982.	5.	15	핵심전략 육성품목 선정
1982.	12.	21	벤처 캐피탈社 발족
1982.	12.	23	海運産業의 합리화 계획
1986.	2.	21	機械類 및 部品産業 육성대책
1986.	5.	9	不實企業 정리
1987.	1.	5	部品, 素材의 국산화 추진
1987.	2.	19	海運産業 합리화 보완대책
1987.	4.	10	産業災害防止
1987.	7.	2	造船工業 지원
1988.	7.	28	도소매업 진흥 5개년 계획
1989.	1.	9	中小企業 창업 지원
1989.	8.	18	中小企業 특별지원대책
1989.	8.	28	造船産業 합리화 계획
1989.	8.	30	中小企業 고유업종확대
1990.	5.	17	中小企業 입지 공급대책
1990.	7.	6	科學 및 産業技術 발전 기본계획
1990.	9.	8	高油價시대에 대응한 증장기 에너지정책 및 산업정책 계획수립
1990.	10.	6	中小企業육성 시책
1990.	11.	10	産業構造 고도화 촉진 대책
1991.	3.	14	製造業 경쟁력 강화대책
1991.	4.	23	핵심 生産技術 개발
1991.	6.	7	工業입지개발 지침
1991.	11.	11	中小企業 자금 지원대책
1992.	1.	25	신발産業 합리화 계획
1992.	3.	18	中小企業 지원 확대방안
1992.	7.	30	工場配置 및 설립 제도 개선
1993.	1.	30	纖維産業 경쟁력 강화 대책
1993.	3.	2	中小 纖維業體 시설 자동화 지원
1993.	8.	7	< 大田 EXPO >
1993.	8.	14	제품의 포장방법 및 포장재질 등 기준제정
1993.	8.	25	零細中小企業 추가지원 대책
1993.	9.	22	中小企業에 대한 긴급자금 지원 확대

1993. 10. 27 業種 專門化 시책
1993. 10. 30 자동차 운수업 규제 완화
1993. 12. 23 中古船舶 도입기준 완화
1993. 12. 23 小賣商의 연쇄화 사업규제 완화
-
1994. 6. 15 자동차 貸與사업 등록기준 제정
1994. 6. 25 中小企業 전담지도역 제도
1994. 7. 4 의약품 제도 관련 규제 완화
1994. 8. 17 전기공사업 규제 완화
1994. 9. 1 中小企業 고유업종 축소 조정
1994. 9. 2 기계류, 부품, 소재 국산화 개발품목 선정
1994. 9. 3 신발, 纖維産業에 대한 해외 인력지원 계획
1994. 9. 7 상품권 발행제도 개선
1994. 11. 3 中小企業 고유업종 축소조정 방안
1994. 11. 3 電子게임 산업발전 방안
1994. 12. 2 中小企業 계열화 지정품목 조정
-
1995. 1. 1 中小企業 고유업종 축소조정
1995. 1. 28 기계류, 부품소재 국산화 사업 대책
1995. 2. 8 産業用紙의 공급 원활화 대책
1995. 2. 9 中小企業 지원 9대시책
1995. 3. 1 지방 中小企業 특별지원지역 설정
1995. 3. 24 連鎖化事業 지정요건 완화
1995. 4. 1 建設기계형식 승인 면제
1995. 4. 12 AS마크 제도 도입

農水産業

1945. 10. 5 소작료 三一制 실시
1950. 3. 25 農地개혁
1952. 2. 26 搗精 제한
1952. 4月 農地改革事業 특별회계법 제정
1956. 5. 1 農業銀行 설립
1957. 2. 14 農業協同組合 설립
1957. 11. 1 米穀담보 융자제도
1961. 5. 25 農漁村 高利債 정리
1961. 7. 29 農協과 農銀의 統合(農業協同組合 발족)

1962. 3. 9	農業振興廳 설립
1965. 11. 18	< 漁業 水域 宣布 >
1966. 3. 3	國稅廳, 水産廳 設立
1968. 8. 5	기업 畜産業 育成 시책
1970. 1. 27	農村近代化 촉진법 시행
1970. 8. 12	糧穀 관리기금 설치(二重穀價 제도)
1970. 9. 26	水産用 油類稅 면세
1971. 2. 18	제 2차 내국 信用狀制度 신설
1972. 9. 16	糧穀流通 규제 조치
1976. 8. 2	< UN 해양법 회의 >
1978. 4. 30	< 12海里 領海 공포 >
1984. 8. 2	農村地域 종합개발 사업계획
1986. 3. 6	農漁村 종합대책
1987. 3. 16	農漁家 부담 경감대책
1987. 12. 10	農漁村 經濟活性化 종합대책
1989. 4. 28	農漁村 발전 종합대책
1989. 12. 30	農漁家 負債 경감
1990. 4. 7	農漁村振興公社 설립 및 농지관리 기금 설치
1991. 1. 23	農漁村 대책
1992. 3. 20	農水産業者 신용보증지원 강화
1992. 5. 1	先導 양축농가 육성사업 지원
1992. 10. 23	農林水産業者에 대한 信用保證 지원 활성화
1992. 11. 30	돼지 수매 비축자금 지원
1992. 12. 9	앞담배 耕作 機械化 支援
1992. 12. 16	農水産物 산업피해 구조제도 개선
1992. 12. 24	農業振興地域 지정
1993. 1. 8	農工團地 개발 시책
1993. 5. 18	農水産 정예인력 육성
1993. 9. 17	한우사육 기반조성사업 지원
1994. 3. 29	農地전용 규제 완화
1994. 4. 18	병역 특례대상 農水産物 가공업체 지정
1994. 5. 15	農漁村 발전 대책
1994. 5. 16	국산 農水産物의 원산지 표시 의무화
1994. 6. 30	農漁民 年金制度 실시방안
1994. 6. 30	농업목적 干拓事業 민간참여 허용
1994. 11. 21	林業協同組合 상호금융 업무실시
1995. 2. 6	肉類 屠體 등급제
1995. 3. 6	農漁村 발전 대책

貿易 · 關稅 · 貿易金融

1946. 1. 3	貿易 허가제 실시
1946. 7. 4	輸出入 統制
1946. 10. 8	關稅令 개정
1947. 8. 25	貿易관계법령 정비
1948. 1月	< GATT 발호 >
1949. 2. 15	輸入쿼터제
1949. 5. 17	輸出入 허가품목 발표
1949. 9. 4	輸出入 價格 가격방법 결정
1949. 9. 19	貿易業者 등록제
1955. 8月	IMF 및 IBRD 加入
1955. 9. 1	輸出入 절차 개정
1958. 3. 18	貿易관련 법규 정비
1959. 6月	對日통상 중단
1959. 11月	輸出 지원 금융
1960. 4. 12	對日通商 재개
1961. 2. 1	輸出 金融 규정 제정
1961. 10. 20	輸入信用狀 개설 보증금제도 개선
1962. 3. 20	輸出 振興法 제정
1963. 1. 9	輸出入 링크제
1963. 8. 13	輸入信用狀 개설 보증금제도 개선
1964. 6. 18	임시 特惠 關稅法 제정 시행
1966. 10. 29	先輸出 金融
1967. 1. 30	韓國外換銀行 발족
1967. 4. 15	GATT 가입
1967. 7. 25	輸入品目 네거티브제도(Negative List System)
1967. 11. 22	彈力 關稅制度 실시
1967. 12. 5	輸出入 링크에 의한 輸出 被害補償
1968. 3. 16	實需要者の D/A수입 허용
1968. 7. 3	輸入 擔保金제도 도입
1968. 7. 9	輸入抑制 방안
1969. 1. 10	輸出保險制度 시행
1969. 1. 26	輸出金融 단가 인상
1969. 4. 1	輸出金融 금리 인하
1969. 7. 11	韓國輸出入銀行 설립
1969. 8月	輸出用 施設材 輸入代金 융자
1969. 10. 23	輸出自由地域 설치

1970.	1.	9	輸出金融單價 인상
1970.	8.	26	關稅廳 개청
1971.	2.	18	제 2차 內國信用狀제도 신설
1971.	3.	4	輸出用 원자재 준비생산자금제 신설
1971.	6.	30	輸入마진 積立
1972.	2.	25	輸出지원 금융제도 개편
1972.	6.	24	酒類 수출 검사제도
1973.	2.	5	關稅率 인하
1974.	3.	2	輸出金融 단가인하
1974.	11.	12	輸出金融 단가인상
1975.	1.	25	輸入擔保金 凍結 조치
1975.	4.	17	輸出支援 종합대책
1975.	4.	30	綜合貿易商社 제도 실시
1975.	7.	1	關稅 還給制度 실시
1975.	7.	25	輸出 질서유지 조치
1975.	12.	5	中東進出 촉진 방안
1976.	2.	2	輸出金融 한도 거래제 실시
1976.	3.	29	延拂輸出 금융지원 기준
1977.	1.	4	輸出金融 지원제도 개편
1977.	1月		關稅率 구조 개편
1977.	11.	1	주요 原資材 輸入金融제도 신설
1977.	12月		< 東京라운드 협상 >
1978.	5.	11	제 1차 輸入自由化 시책
1978.	9.	18	제 2차 輸入自由化 조치
1978.	12.	18	제 3차 輸入自由化 조치
1979.	1.	1	輸入 擔保金제도 개선
1979.	4.	19	輸出金融 지원제도 개편
1982.	6.	3	輸入商品 품질검사 강화
1982.	7.	26	對外 去來 규제 완화
1982.	8.	2	輸出지원 금융제도 개편
1982.	11.	18	輸出金融 단가 인상
1983.	3.	14	輸出金融 단가 인상
1983.	4.	15	輸出 기준 가격제 폐지
1983.	5.	20	延支給 수입기간 단축
1983.	11.	7	輸出金融 단가인상
1983.	12.	1	延支給 수입기간 단축
1985.	3.	4	輸出金融 단가인상
1985.	5.	3	輸出金融 단가인상
1985.	7.	15	輸出金融 단가인상
1985.	10.	17	포괄 輸出金融제도 도입

1986. 7. 21	韓·美 通商 현안 일괄 타결
1986. 9. 1	韓·美 섬유협상 타결
1986. 9. 1	< 외국산 담배 국내 판매개시 >
1986. 9. 12	輸出金融 단가인하
1986. 10. 31	대기업에 대한 輸出金融 단가인하
1987. 3. 11	輸入賦課金
1987. 4. 21	大企業에 대한 貿易 金融支援 축소
1987. 4. 25	對美輸入擴大
1987. 5. 14	輸出추천제도
1987. 6. 2	貿易金融제도 개편
1987. 8. 7	대기업에 대한 貿易金融지원 축소
1987. 9. 25	關稅인하
1987. 10. 30	貿易金融 단가인하
1988. 1. 1	수출 通關節次 간소화
1988. 1. 1	HSK 제정
1988. 2. 6	貿易金融제도 개편
1988. 3. 1	대기업의 關稅擔豫制度 폐지
1988. 4. 1	輸入개방 확대
1988. 8. 23	< 美 종합貿易法 發效 >
1988. 12. 31	輸入監視제도 폐지
1989. 4. 8	농수산물 輸入 自由化 예시
1989. 5. 29	反덤핑 關稅제도
1989. 9. 1	輸出産業에 대한 금융기관 용자비율 조정
1989. 10. 30	貿易金融 단가인상
1989. 11. 10	중소기업 簡易還給제도
1989. 12. 21	輸出企業 등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
1990. 1. 1	輸出入 自由化 촉진
1990. 5. 11	輸入價格表示 대상품목 확대
1990. 7. 5	貿易金融제도 개편
1990. 9. 25	남북한 交易 대상물품 반출입 승인
1990. 12. 14	북방국가와의 通商요령 고시
1991. 1. 1	輸出入 규제 완화
1991. 1. 1	關稅 신고납부제도 실시
1991. 1. 25	고도기술 SW 關稅 감면
1991. 4. 1	輸入自由化 계획('92~'94년)
1991. 4. 2	공장자동화용물품 關稅 감면
1991. 4. 10	南北直交易 승인
1991. 5. 13	輸入先 多邊化 품목조정
1991. 7. 1	輸入상품 原產地表示제도 도입

1991. 10. 10	關稅減免 대상 공장자동화 물품 지정고시	12	1991
1991. 11. 18	輸出自由地域 활성화	8	1991
1991. 12. 28	輸出入 자유화 촉진	9	1991
1992. 1. 10	貿易어음 활성화 방안	11	1992
1992. 1. 17	施設材 輸入 억제	16	1992
1992. 2. 10	輸入農産物 원산지 표시제	17	1992
1992. 4. 4	消費財 輸入抑制을 위한 조정관세	1	1992
1992. 6. 3	輸出검사품목 축소조정	25	1992
1992. 10. 14	輸出 신용보증 제도	13	1992
1992. 10. 23	關稅제도 개편	5	1992
1992. 12. 3	新規 開發品目에 대한 조정關稅	8	1992
1992. 12. 29	産業技術 연구 개발용품 關稅감면대상 조정	12	1992
1993. 1. 1	輸入자유화	1	1993
1993. 1. 1	輸出積荷 보험료 인하	1	1993
1993. 2. 6	割當 關稅운용	4	1993
1993. 3. 22	農産物 등에 대한 조정관세	1	1993
1993. 4. 1	輸入積荷 保險의 보상범위 확대	1	1993
1993. 4. 1	酒類輸出검사 제도 폐지	17	1993
1993. 5. 29	輸出추천품목 축소 조정	18	1993
1993. 7. 1	對外貿易 규제 완화	6	1993
1993. 12. 6	關稅制度 개선	12	1993
1993. 12. 10	關稅 환급제도 개선	1	1993
1993. 12. 29	전략기술 輸出규제 완화	26	1993
1994. 1. 1	< NAFTA 발효 >	01	1994
1994. 1. 1	輸入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의무화	18	1994
1994. 1. 1	輸入 자유화 추진		
1994. 1. 1	첨단 및 防衛産業 關稅減免 기간연장	1	1994
1994. 1. 11	< EU의 2단계 經濟通貨統合 >	11	1994
1994. 1. 25	< 貿易業務 자동화 개시 >	1	1994
1994. 2. 28	先 輸出 및 後 通關制度	12	1994
1994. 4. 15	해외 中古 建設裝備 輸出入 규제 완화	11	1994
1994. 4. 15	< UR 協商終結 >	1	1994
1994. 5. 14	對外貿易 규제 완화	1	1994
1994. 6. 1	구 공산권에 대한 輸出統制 완화	4	1994
1994. 8. 1	중고선박 輸入制限 완화	1	1994
1994. 8. 27	關稅制度 개편	1	1994
1994. 11. 4	輸出 보험제도 개선	1	1994
1994. 12. 19	關稅制度 개편	1	1994

1995. 1. 1	< WTO 出帆 >	1995. 1. 1	輸出추천 및 輸入先 多邊化 품목 축소조정
1995. 1. 1		1995. 1. 5	농산물 특별 緊急關稅제도 시행
1995. 1. 16		1995. 1. 16	農畜水産物 輸入 자유화
1995. 3. 20		1995. 3. 20	EDI 通關대상 확대

外 換

1945. 10. 1	공정換率	1945. 10. 1	공정換率
1945. 12月	< Bretton Woods 협정 발효 >	1945. 12月	< Bretton Woods 협정 발효 >
1947. 6. 16	朝鮮換金銀行 설립	1947. 6. 16	朝鮮換金銀行 설립
1947. 7. 15	공정換率	1947. 7. 15	공정換率
1948. 2月	外換預置證 제도	1948. 2月	外換預置證 제도
1948. 7. 1	자유매매 換率	1948. 7. 1	자유매매 換率
1948. 9. 28	정부간 換率 책정	1948. 9. 28	정부간 換率 책정
1949. 6. 13	複數 換率제도 실시	1949. 6. 13	複數 換率제도 실시
1949. 7. 17	일반 換率 폐지	1949. 7. 17	일반 換率 폐지
1950. 4. 10	단일 換率制	1950. 4. 10	단일 換率制
1950. 6. 12	外換 예치 집중 제도	1950. 6. 12	外換 예치 집중 제도
1950. 11. 1	換率 결정	1950. 11. 1	換率 결정
1950. 11. 16	外換 緊急 措置	1950. 11. 16	外換 緊急 措置
1952. 12. 4	外貨 대부제도 실시	1952. 12. 4	外貨 대부제도 실시
1953. 2. 23	換率 결정	1953. 2. 23	換率 결정
1954. 10. 1	入札公賣에 의한 外換 매입	1954. 10. 1	入札公賣에 의한 外換 매입
1954. 11. 17	換率 결정	1954. 11. 17	換率 결정
1955. 8. 15	단일 공정 換率 제정	1955. 8. 15	단일 공정 換率 제정
1955. 8. 22	新外換 정책	1955. 8. 22	新外換 정책
1955. 8. 30	추첨에 의한 外換 배정	1955. 8. 30	추첨에 의한 外換 배정
1957. 5. 18	國債添加에 따른 外換 配定制	1957. 5. 18	國債添加에 따른 外換 配定制
1957. 12. 5	계정간 이체를 통한 外換 配定制	1957. 12. 5	계정간 이체를 통한 外換 配定制
1961. 2. 1	換率 결정	1961. 2. 1	換率 결정
1961. 2. 2	外換제도 개편	1961. 2. 2	外換제도 개편
1962. 1. 20	外換 管理法 시행	1962. 1. 20	外換 管理法 시행
1964. 5. 3	기준 換率 인상과 外換 證市制度 채택	1964. 5. 3	기준 換率 인상과 外換 證市制度 채택
1965. 3. 22	단일 변동 換率제도 실시	1965. 3. 22	단일 변동 換率제도 실시
1967. 1. 16	換率 변경폭 확대	1967. 1. 16	換率 변경폭 확대
1967. 11. 24	換率構造 변경 조치	1967. 11. 24	換率構造 변경 조치
1968. 7. 4	先物換 거래 시행	1968. 7. 4	先物換 거래 시행

1971. 6. 28	換率인상 및 금리인하
1971. 8. 15	< Bretton Woods체제 붕괴 >
1973. 2. 13	國際通貨 파동
1974. 10. 25	外換 매각 집중제 강화
1979. 8. 1	外換 관리제도 개선
1979. 10. 18	外貨 與受信 최고이율 폐지
1980. 2. 27	複數通貨 바스켓 제도
1980. 2. 28	外國銀行과의 스왑한도 확대
1980. 7. 1	先物換거래 제도 실시
1980. 10. 15	先物換 거래제도 확대
1980. 10. 15	外換관리 절차 간소화
1981. 4. 1	外換 Position관리제도 정비
1981. 8. 1	外換 관리제도 개선
1983. 2. 25	外貨貸出 제도 개편
1984. 3. 7	現地금융 및 外國換銀行 借入에 관한 관리 강화
1984. 7. 9	貿易外去來 관리제도 조정
1984. 7. 21	外換 매매율 및 수수료 결정 방법 변경
1984. 7. 30	延支給 수입기간 단축
1985. 9. 22	< 플라자 합의 >
1986. 3. 15	外換관리 제도 개선
1987. 5. 4	海外旅行經費 지급한도 인상
1987. 5. 4	신용카드에 의한 海外旅行經費 사용제도 개선
1987. 7. 9	商品先渡 類似去來에 대한 지급인증제도
1987. 7. 20	貿易外 지급제한 완화
1987. 9. 1	海外投資규제 완화
1987. 10. 1	先物去來제도 개편
1988. 3. 25	外換관리 자유화 방안
1988. 7. 1	外換관리제도 개선
1988. 11. 1	外換管理제도 개선
1988. 12. 31	원貨결상(換率인하)
1989. 2. 13	海外投資 요건 완화
1989. 8. 10	外換관리제도 개선
1989. 9. 1	단계별 換率제도 개편 계획
1989. 9. 20	외국환은행의 대고객 換率 自律化 조치
1989. 12. 1	外換관리제도 개선
1989. 12. 1	外換市場 운영 협의회 발족
1990. 3. 2	시장평균 換率제도 도입
1990. 3. 2	外換관리제도 개선
1990. 5. 1	外換 管理 강화
1990. 10. 26	外換管理제도 개선

1991. 1. 1	外貨貸出제도 개편
1991. 7. 1	外換시장 활성화(1단계 조치)
1991. 9. 1	外換관리제도 개선
1991. 12. 18	外貨 搬出入제도 개선
1992. 7. 1	換率 변동폭 확대
1992. 9. 1	外換 管理 제도 개편
1993. 2. 1	外換거래 규제 완화
1993. 4. 1	外換集中制 완화
1993. 4. 1	海外 증권투자 완화
1993. 6. 16	中小企業에 대한 外換규제 완화
1993. 10. 1	外換 管理제도 개선
1994. 1. 1	기업의 外貨 자금조달 확대조치
1994. 2. 25	外換規制 완화
1994. 6. 1	外換규제 완화
1994. 7. 4	리스社에 대한 外換 업무 허용
1994. 11. 1	外換관리제도 개선
1994. 12. 5	外換제도 개혁방안(1단계)
1994. 12. 30	外貨 證券投資 제도 개선
1994. 12月	< 멕시코 페소貨 暴落 >
1995. 2. 13	外換제도 개혁방안 시행

對外經濟協力

1948. 9. 11	韓·美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 협정
1948. 12. 10	韓·美 경제원조 협정
1950. 7. 6	주한미군 및 UN군에 圓貨 대여
1950. 12. 13	< UNKRA 설치 >
1952. 12. 15	圓貨 貸與 중단
1955. 5. 31	美 剩餘農産物 도입 협정 조인
1956. 11. 28	韓·美간 우호 협상 및 항해에 관한 조약
1962. 8月	IBRD 借款도입
1963. 7. 22	借款事業 추진방침
1965. 6. 22	< 韓·日協定 調印 >
1966. 3. 7	對日 請求權 補償案 確定
1966. 8. 12	< IECOK 발족 >
1967. 8月	< ASEAN 결성 >
1969. 1. 30	외국인 投資 誘致增進과 투자 기업의 육성 시책

1971. 10. 16	韓·美 纖維協定 체결
1974. 5. 24	公共借款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행정 개선
1976. 8. 1	現金 및 物資借款 인가 요건 강화
1979. 10. 19	新規 教育借款 도입 추진
1981. 5. 18	美 剩餘農産物 도입 종결
1983. 7. 12	외국상표 도입 촉진
1985. 9. 6	外債절감 대책
1986. 8. 7	상업 借款導入 억제 방안
1986. 12. 2	對外協力基金 설치
1993. 8. 24	< 韓·中 修交 >
1995. 3. 3	< IBRD 借款 導入 종료 >
1995. 4. 6	技術導入 신고제 폐지

不動産·建設·交通

1967. 7. 10	住宅銀行 설립
1967. 11. 29	不動産 投機억제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
1969. 2. 15	道路公社, 地下水開發公社 발족
1969. 9. 15	住宅福券 발행
1970. 4. 8	< 臥牛아파트 붕괴 >
1970. 7. 7	< 경부高速道路 개통 >
1970. 12. 28	4大江流域 종합개발계획 확정
1973. 4. 3	基準地價 고시대상지역 지정
1974. 2. 18	建築規制 조치
1974. 8. 15	< 수도권 전철 개통 >
1974. 12. 12	建築規制 해제
1975. 12. 5	中東進出 촉진 방안
1976. 3. 19	港灣廳 개청
1977. 3. 7	수도권 人口 再配置 계획
1977. 4. 25	國民住宅 청약부금제
1978. 2. 15	特定地域 고시
1978. 5. 13	< 建築材 품귀 및 가격 폭등 >
1978. 5. 22	建築規制 조치
1978. 6. 26	建築規制 조치
1978. 12. 5	土地去來허가 및 신고제 실시
1979. 9. 1	공공 建築物 신축 전면허용
1979. 11. 15	建築제한 조치 전면 해제
1979. 12. 8	그린벨트 建築規制 완화

1980. 12. 13	不動産경기 활성화 대책	1980. 12. 13
1981. 3. 14	기업 및 기업인 소유 不動産 處分 促進 조치	1981. 3. 14
1981. 5. 21	해외建設 用役 지원제도 개선	1981. 5. 21
1981. 6. 26	住宅景氣 활성화 조치	1981. 6. 26
1981. 7. 1	特定地域 해제	1981. 7. 1
1982. 12. 22	住宅 投機 억제 대책	1982. 12. 22
1983. 2. 16	不動産投機 억제 대책	1983. 2. 16
1983. 2. 18	特定地域 고시	1983. 2. 18
1983. 4. 18	土地 및 住宅문제 종합 대책	1983. 4. 18
1983. 5. 1	APT분양 債券入札制	1983. 5. 1
1983. 9. 13	單獨住宅地 공급 계획	1983. 9. 13
1983. 10. 1	民營아파트 분양제도 개선	1983. 10. 1
1983. 10. 24	首都圈 정비 계획	1983. 10. 24
1983. 12. 12	住宅投機 억제 대책	1983. 12. 12
1984. 2. 16	상업용 建物賃賃料 관리 지침 확정	1984. 2. 16
1984. 3. 15	住宅建設 종합계획 확정	1984. 3. 15
1984. 6. 23	首都圈 整備 기본계획 확정	1984. 6. 23
1984. 7. 19	해외建設 진흥 종합대책	1984. 7. 19
1984. 12. 20	土地去來 신고제	1984. 12. 20
1984. 12. 31	下都給 불공정거래 규제 강화	1984. 12. 31
1985. 2. 18	物價 및 不動産 대책	1985. 2. 18
1985. 5. 20	不動産 종합대책	1985. 5. 20
1985. 9. 5	住宅建設 활성화 조치	1985. 9. 5
1986. 12. 31	도시交通정비 제도 마련	1986. 12. 31
1987. 2. 10	建設業 육성시책	1987. 2. 10
1987. 7. 21	建設都給 下限線 설정	1987. 7. 21
1988. 1. 12	不動産 투기억제 대책	1988. 1. 12
1988. 2. 19	土地去來 허가대상지역 확대	1988. 2. 19
1988. 7. 20	不動産 투기 억제정책	1988. 7. 20
1988. 8. 10	不動産 종합대책	1988. 8. 10
1988. 9. 13	土地去來 허가대상지역 확대	1988. 9. 13
1988. 9. 21	不動産 특정지역 추가 고시	1988. 9. 21
1989. 4. 27	住宅 200萬戶 건설 계획	1989. 4. 27
1989. 5. 4	土地去來 허가제 확대실시	1989. 5. 4
1989. 6. 16	綜合土地稅 도입	1989. 6. 16
1989. 11. 1	不動産 특정지역 추가고시	1989. 11. 1
1990. 1. 13	林野 賣買 증명제 도입	1990. 1. 13
1990. 3. 2	土地公概念 제도 시행	1990. 3. 2
1990. 4. 13	不動産투기 억제 대책	1990. 4. 13

1990. 5. 1	公示地價 告示
1990. 5. 8	不動產투기 억제와 物價安定을 위한 특별보완대책
1990. 6. 21	土地去來 허가제 확대 실시
1990. 6. 29	地價 急騰地域 고시
1990. 10. 31	그린벨트내 建築規制 완화
1991. 4. 15	住宅분양가 원가 連動制
1991. 4. 16	海外建設 진출 지정제도 개선
1991. 5. 3	建設投資 動向 진단과 건설경기진정 대책
1991. 7. 9	建設投資 적정화 및 新都市建設 안전대책
1991. 7. 28	土地去來 허가제 확대 실시
1991. 10. 2	6大都市 宅地 전산화
1992. 2. 15	不動產 투기억제 대책
1992. 2. 20	住宅建設물량 할당제
1992. 3. 9	建築허가제한 조치 연장
1992. 5. 22	不動產 투기억제 대책 일부 완화
1992. 7. 1	建築허가 제한 일부 해제
1992. 7. 24	濟州道 開發 특별법 시행
1992. 12. 15	中水道 시설기준 제정
1993. 1. 1	建築허가제한 해제
1993. 1. 1	住宅建設 물량 割當制 폐지
1993. 2. 25	遊休地 결정
1993. 7. 1	土地利用제도 개편
1993. 8. 20	京釜高速電鐵 TGV선정
1993. 9. 13	住宅 분양가 원가 연동제 개선
1993. 9. 20	準農林地域내 행위제한 완화
1993. 9. 25	住宅建設 기준 개정
1993. 9. 27	그린벨트제도 개선방안
1993. 11. 23	實名制실시에 따른 土地去來 허가제 해제
1993. 12. 16	土地利用규제 완화
1994. 1. 5	建築士 보수기준 변경
1994. 1. 11	都市 再開發 업무 개선
1994. 1. 18	官給 자재 품질관리 개선방안
1994. 3. 22	사업 시행자의 공공시설비 부담
1994. 4. 8	수도권 建築規制 완화
1994. 5. 21	農地 매입시의 농지 소재지 거주요건 폐지
1994. 6. 30	농업목적 干拓事業 민간참여 허용
1994. 7. 1	觀光호텔 신용카드 예약제
1994. 7. 4	항공기 소음고시지역내 建築制限 완화

1994. 8. 3 首都圈工場 총량 규제
 1994. 8. 3 民資誘致 촉진법 제정
 1994. 8. 5 國有地 개발신탁 시행
 1994. 9. 7 土地去來 허가구역 지정
 1994. 10. 21 < 성수大橋 崩壞 >
 1994. 12. 24 小型住宅건설 의무비율 조정
1995. 1. 17 建設工事의 부실방지 종합대책
 1995. 1. 27 不動産 實名制 실시 계획
 1995. 2. 15 民資誘致 사업 선정
 1995. 3. 10 埋立港灣敷地 私有化 허용 계획
 1995. 3. 14 그린벨트 규제 완화
 1995. 3. 17 비업무용 不動産 판정기준 완화
 1995. 4. 1 準農林地域 공장증설 허용
 1995. 4. 13 宅地소유 상한제도 개선

情報 · 通信

1962. 1. 15 統計法 제정
 1963. 4. 1 < 韓 · 國 標準産業分類 제정 >
 1967. 7월 컴퓨터 도입
 1968. 12월 國富統計調査 실시
 1969. 3. 31 < 韓 · 美間 위성직통전화 개통 >
 1969. 7월 < 아폴로 宇宙船 달 着陸 >
 1969. 8. 6 統計업무의 일원화
1980. 8. 2 < 칼리TV 市販 개시 >
 1981. 3. 1 景氣綜合指數 편제
 1987. 12. 1 電話通話料金 야간 할인제
 1989. 5. 15 중소기업 情報化 5개년 계획
1990. 4. 3 개인信用情報 관리제도
 1992. 5. 26 情報通信분야 기술개발 자금 지원
 1993. 4. 1 SAL 소포 우편제도 시행
 1994. 11. 26 情報化 촉진 기본법 제정
 1995. 4. 11 부가 通信사업 자유화

物價・勞動・賃金

- 1945. 11. 5 <造船勞組 전국 평가회 결성>
- 1946. 3. 10 <大韓獨立促成 노동연맹 결성>
- 1953. 3. 8 勞動基本法 제정
- 1953. 5. 10 動勞基準法 제정

- 1960. 1. 30 緊急 物價抑制 대책
- 1961. 5. 16 金融 및 物價凍結
- 1961. 11. 9 物價凍結 조치
- 1961. 12. 31 物價調節法 제정
- 1963. 1. 3 最高價格 지정
- 1963. 2. 1 당면 物價安定 대책
- 1963. 7. 24 綜合物價대책 7개 원칙
- 1963. 7. 29 綜合物價대책
- 1963. 8. 10 시멘트 統制價格
- 1964. 3. 10 주요품목 統制價格 해제
- 1964. 7. 8 쌀 및 보리쌀 統制價格 해제
- 1965. 4. 22 소금 판매價格 자유화
- 1966. 7. 1 物價政策 樹立
- 1969. 2. 1 쌀값 통제
- 1969. 3. 11 쌀값 통제완화

- 1970. 11. 1 쌀값 통제 전면 해제
- 1971. 7. 30 밀가루 告示價格 해제
- 1971. 9. 4 物價安定 종합 대책
- 1972. 3. 15 物價凍結조치
- 1973. 3. 12 物價安定법 제정
- 1973. 6. 15 쌀값 안정 緊急 대책
- 1973. 12. 4 物價安定 대책
- 1974. 1. 16 基準價格告示
- 1974. 2. 1 주요품목 價格 현실화
- 1974. 2. 5 종합 物價安定 대책
- 1975. 12. 31 物價安定법 제정
- 1976. 4. 1 物價安定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정
- 1976. 5. 1 價格表示制 실시
- 1977. 12. 28 最高價格 해제
- 1978. 8. 16 농산물 增産 및 가격안정 대책
- 1978. 12. 22 < 농수산물價格 暴騰 >

1980. 1. 29	石油類價格 자유화
1980. 2. 29	生必品價格 특별 관리
1980. 5. 4	석탄價格 조정
1984. 10. 23	最低賃金制 시안 마련
1985. 2. 18	物價 및 不動産 대책
1985. 7. 11	지방 쇠고기의 서울 반입 허용
1985. 11. 22	雇傭 종합대책
1987. 5. 15	종합物價管理 대책
1988. 1. 1	最低賃金제도 도입
1988. 3. 10	物價安定 종합대책
1988. 5. 27	油價·換率 連動제도
1989. 2. 21	物價安定 종합대책
1989. 7. 4	最低 賃金制 적용범위 확대
1990. 1. 1	公共料金 현실화
1990. 3. 13	價格動向 점검품목 지정
1990. 4. 20	物價安定대책
1990. 5. 8	不動産투기 억제와 物價安定을 위한 특별보완대책
1990. 7. 6	産業人力 수급 대책
1991. 1. 12	物價安定 대책
1991. 2. 2	物價安定대책
1991. 3. 26	調達物資비축 확대
1991. 5. 17	畜産物 가격 안정대 설정
1991. 12. 9	< ILO 가입 >
1992. 11. 26	산지 소값 安定시책
1993. 4. 15	價格變更 사후 보고제 운용
1993. 9. 24	장애인 雇傭促進基金 지원
1993. 10. 25	勞使關係 모범사에 정책자금 우선지원
1993. 12. 30	의약품 價格制度 개선
1994. 1. 1	油價 連動制 실시
1994. 1. 27	價格表示制度 개선
1994. 10. 16	不法就業 外國人 보호 종합대책
1994. 11. 1	시의버스 등料金 규제 완화

公正去來

1981. 4. 1	公正去來制度 시행
1981. 5. 7	公正去來委員會 발족
1983. 6. 10	시멘트 공판제 폐지
1986. 9. 3	경제력 집중억제 시책
1987. 4. 1	經濟力 集中 억제 시책
1993. 4. 1	經濟力 집중 억제 시책
1993. 5. 7	市場支配의 사업자의濫用行爲 규정 개정
1993. 7. 1	割引特賣 실시기간 확대
1994. 4. 7	下都給法 적용대상 확대
1994. 8. 8	不正去來행위에 대한 課徵金 제도
1995. 4. 1	公正去來制度 개선

國民生活 · 環境 · 에너지

1956. 5. 1	油類 · 油煉炭 배정 중지
1959. 12. 30	공무원 年金制度 실시
1963. 1월	混粉食 장려 운동
1968. 10. 10	< 住民登錄證 制度 >
1969. 1. 23	쌀의 消費代替促進시책
1969. 3. 3	< 家庭儀禮準則 제정 >
1970. 7. 8	徵發 補償證券 발행
1972. 10. 25	새마을 사업 본격추진
1973. 10월	< 제 1차 石油波動 >
1975. 11. 14	物資節約 추진방안
1977. 6. 19	原子力 발전 개시
1979. 7. 16	태양열住宅 補給 대책
1979. 7월	< 제 2차 石油波動 >
1980. 7. 5	에너지管理工團 설립
1983. 11. 2	環境汚染 防止기금 신설
1984. 3. 23	消費者保護 종합시책
1986. 12. 31	消費者保護제도정비
1988. 1. 1	全國民 醫療保險제도
1988. 1. 1	國民年金제도 도입
1988. 7. 22	醫療保險제도 적용대상확대
1989. 2. 24	零細民 주거대책
1989. 3. 31	國民年金 제도개선

1990. 4. 3	개인信用情報 관리제도
1990. 9. 8	석유시장 동향 및 석유수급 안정 계획
1991. 1. 15	國民生活과 環境改善 대책
1991. 4. 10	都市零細民 거주환경개선 사업
1991. 9. 1	휘발유 가격 자유화 및 정유사의 유통참여 허용
1992. 6. 8	資源 再活用 및 에너지 절약 추진
1992. 6. 20	消費者 被害補償 대상품목 확대
1992. 12. 2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촉진 대책
1993. 4. 6	消費者 被害補償 확대
1993. 6. 19	사치, 향락, 유흥업소 억제 및 건전화 대책
1993. 10. 1	사우나탕 신규 영업허가제한 해제
1993. 10. 14	장의, 결혼식 영업 규제완화
1993. 12. 8	廢資源 사용 의무화
1993. 12. 12	環境영향 평가 강화
1993. 12. 28	廢建築資材 재활용 의무화
1994. 1. 5	녹색 신고제도 실시
1994. 2. 1	전기사용 제한 완화
1994. 3. 1	에너지 節約型 설계 의무화
1994. 5. 29	< 바젤협약 발효 >
1994. 6. 20	個人年金 제도 시행
1994. 7. 1	觀光호텔 신용카드 예약제
1994. 7. 6	소비자 피해보상제도 개선
1994. 7. 25	비닐백사용 등 규제
1994. 9. 16	環境改善 부담금 제도 개선
1994. 11. 23	< OPEC 산유량 동결 >
1994. 12. 7	바젤 협약 대상품목 설정
1995. 1. 1	쓰레기 從量制 전면 실시
1995. 1. 3	環境改善 부담금제도 개선
1995. 3. 2	시내버스 등 배출가스 규제 강화

其 他

1945. 8. 15	< 8·15 해방 >
1948. 8. 15	< 政府樹立 >
1950. 6. 25	< 6·25 전쟁 발발 >
1953. 7. 27	< 6·25 전쟁 휴전 >

1960. 4. 19	< 4·19 혁명 >		
1961. 5. 16	< 5·16 군사 정변 >		
1961. 5. 20	< 國家 再建 最高會議 發足 >		
1961. 9月	< OECD 발족 >		
1961. 12. 2	< 國土建設團 설치 >		
1962. 12. 18	< 브라질 移民 開始 >		
1963. 1. 5	新商法 발효		
1963. 12. 17	< 박정희大統領 就任 >		
1965. 1. 26	< 越南 派兵 議決 >		
1968. 1月	< OAPEC 결성 >		
1972. 10. 17	< 10月 維新 >		
1974. 8. 15	< 박대통령 저격 사건 >		
1979. 10. 26	< 10·26 사건 >		
1979. 12. 21	< 최규하大統領 취임 >		
1980. 2. 1	< 이란 革命 >		
1980. 4. 21	< 舍北 事態 >		
1980. 5. 18	< 光州民主化 운동 >		
1980. 11. 14	< 言論機關 통폐합 >		
1981. 3. 3	< 전두환大統領 취임 >		
1981. 12. 15	人口增加 억제 대책		
1988. 2. 25	< 노태우大統領 취임 >		
1988. 9. 17	< 서울올림픽 개최 >		
1990. 8. 2	<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 >		
1990. 10. 3	< 獨逸 統一 >		
1991. 1. 17	< 페灣 전쟁 >		
1991. 3. 26	< 基礎自治團體 의회의원 선거 >		
1991. 6. 20	< 市道議會 의원선거 >		
1991. 9. 17	< 南北韓 同時 UN加入 >		
1991. 12. 25	< 소련 붕괴 >		
1993. 2. 25	< 金永三大統領 취임 >		
1994. 7. 8	< 김일성 死亡 >		
1994. 12. 23	정부조직 개편		
1995. 1. 17	< 日 阪神 대지진 >		

光復이후 50年間の

經 濟 日 誌

(景氣循環變動과 主要經濟施策)

發 行 日 1995年 5月

發 行 人 李 康 雨

發 行 處 統 計 廳

☎ : 135-080

서울特別市 江南區 驛三洞 647-15

印 刷 處 江 聞 印 刷 社

이 책자의 내용에 관한 문의가 있으시면 통계청 통계조사국
통계분석과(☎ 222-1922~3)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